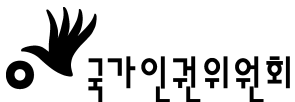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 | 침해구제 | 차별시정 |

제 5 집
2012





발 간 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 10주년을 뒤로 한 지도 어느덧 두 해가 흘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4월까지 6만 8천여 건의 진정 사건과 200건에 가까운 직권조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연구 및 개선에도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시정되었고 인권친화적 제도와 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외형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그 내실을 다져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린 주요 결정 사례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인권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앞으로 더욱 설득력과 신뢰성 높은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밑거름으로 삼고자 2004년부터 2007년, 2009년 그리고 2012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제5집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발간하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결정례를 보다 시의성 있게 소개할 수 있도록, 종래 2~3년에 한 번씩 발간하였던 것을 올해부터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정례화하였습니다. 그 대신 '인권정책 분야/ 침해구제 분야/ 차별시정 분야'별로 1권씩 발간하였던 것을 이번부터는 1권으로 통합하여 발간하고 각 분야를 제1편 내지 제3편으로 나누어 해당 결정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 제1편 인권정책분야에서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인권상황 전반을 개관하였고, 개별·구체적인 사안들로서 노동인권, 사회적 약자 및 특수계층의 권리보호, 외국인·이주민 인권 그리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등 인권교육과 학교인권에 관련한 권고 결정과 의견 표명 16건을 수록하였습니다.
- 제2편 침해구제분야에서는,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검찰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비롯하여 군 관련 인권침해, 구금시설 또는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그리고 교육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주요 사례와 그 시정·구제조치 관련 권고 결정 54건을 수록하였습니다.
- 제3편 차별시정분야에서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건과 장애차별 사건, 나이차별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밖에도 사회적 신분, 전과나 수사 받은 전력,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한 차별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주요 사례 및 관련 권고 결정 39건을 수록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결정레집이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에서 뿐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인권시민단체 등 관계자, 학계 및 관계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명환**



일 러 두 기

- 이 결정례집은 2012년 1월초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1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사례 총 109건을 인권정책분야, 침해구제분야, 차별시정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각각의 영역 또는 사유별로 선정·분류하여 실었습니다.
- 각 결정문의 앞부분에는 해당 결정사항 및 그 결정에 이르게 된 취지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였습니다.
- 결정문은 되도록 원문 그대로 게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의 이름,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 등은 익명으로 처리하였고, 일부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단순한 오기(誤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별지의 관계법령이나 관계인 명단 또는 복잡한 도표 등은 결정문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면관계상 일부 생략하였습니다.
- 각 결정례에서 피권고기관 또는 관계기관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명칭 등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대 목 차

■ 제1편 인권정책분야 ■ ■ ■

- 제1장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평가·평가 3
- 제2장 경제적·사회적 권리 관련 결정 23
- 제3장 사회적 약자 및 특수계층의 권리보호·구제 관련 결정 61
- 제4장 외국인·이주민 인권 관련 결정 121
- 제5장 인권교육 및 학교인권 관련 결정 153

■ 제2편 침해구제분야 ■ ■ ■

- 제1장 경찰, 검찰 및 국가정보원 관련 인권침해 233
- 제2장 군(軍) 관련 인권침해 419
- 제3장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573
- 제4장 외국인·이주민 관련 인권침해 655
- 제5장 학교 및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717

■ 제3편 차별시정분야 ■ ■ ■

- 제1장 성별,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및 성희롱 773
- 제2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825
- 제3장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999
- 제4장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1037
- 제5장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 1071



목 차

【 제1편 인권정책분야 】

【 제 1 장 】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 · 평가

- 1** 2012. 10. 8.자 결정 5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정부(총괄부처 법무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정부가 충실히 심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 제 2 장 】

경제적 · 사회적 권리 관련 결정

- 1** 2012. 5. 17.자 결정 2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권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 배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보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정성 · 전문성 강화, 급여 신청서상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을 권고
- 2** 2012. 6. 14.자 결정 35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정책권고]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 및 기본적 근로조건 준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 운영 등 방안에 관하여 권고

3 2012. 11. 22자 결정 48
[공격적 직장폐쇄 관련 정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의 공격적 직장폐쇄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노동관계법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4 2012. 11. 22.자 결정 56
[노사관계 경비업체 투입 관련 정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경찰청장에게 노사관계에 투입되는 경비업체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경비업법」 등 개정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 제 3 장 】

사회적 약자 및 특수계층의 권리보호·구제 관련 결정

1 2012. 3. 29.자 결정 63
[안마사 자격 관련 의료법 개정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안마사 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을 권고

2 2012. 4. 18.자 결정 67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 대책 마련 등 권고]

국방부장관에게 군 이명 피해의 실상 확인 및 예방대책 마련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명 피해자의 치료보상 및 국가유공자등록 등 대책 마련을 권고

3 2012. 10. 11.자 결정 8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회의장에게, 미귀환 국군포로의 묘지안장 및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족 중 국내입국자를 전몰군경 유족의 지위로 대우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

4	2012. 10. 25.자 결정 91 [형법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국회의장에게, 성폭력범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과 같이 해당 법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	---

5	2012. 12. 6.자 결정 110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초기 안정적 진료 및 보건의료 정보 접근권, 의료지원체계 등을 강화하도록 의견표명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나원 보건의료인력 증원에 협력하도록 의견표명
----------	--

【 제 4 장 】
외국인 · 이주민 인권 관련 결정

1	2012. 11. 29.자 결정 123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의 인권개선 방안 권고]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외국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그 시설과 운영을 개선할 것을 권고
----------	--

2	2012. 12. 6.자 결정 133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국토해양부장관과 수협중앙회회장에게,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
----------	---

3	2012. 12. 6.자 결정 147 [인도적 체류자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인도적 체류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을 권고
----------	--

【 제 5 장 】

인권교육 및 학교인권 관련 결정

- 1** **2012. 2. 23.자 결정** 155
[교실 내 CCTV 설치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 2** **2012. 7. 9.자 결정** 159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국무총리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학교폭력 예방 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권교육의 제도화, 학생인권 증진, 교원의 교권 존중, 차별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 등 5개 영역 20개 분야의 52개 정책을 권고
- 3** **2012. 8. 30.자 결정** 220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표명]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정비, 연도별 공무원교육훈련 지침상 인권교육 반영, 각 교육훈련기관별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의 개설·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

【 제2편 침해구제분야 】

【 제1장 】

경찰, 검찰 및 국가정보원 관련 인권침해

■ ■ ■ 직무수행상 가혹행위 및 부당한 처우 등

- 1** **2012. 4. 13.자 11-진정-0531200 결정** 235
 [경찰관의 폭행 등]
 ○○경찰서장에게, 수갑으로 결속된 피의자를 걸어서 넘어뜨린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주의조치 및 재방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
- 2** **2012. 5. 24.자 12-직권-0000200 결정** 241
 [경찰의 과도한 수갑사용에 대한 직권조사]
 경찰청장에게, 과도한 수갑사용으로 인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
- 3** **2012. 7. 10.자 11-진정-0547400 결정** 252
 [과도한 수갑 사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근로감독관들이 피해자의 수갑 착용 부위를 노출시킨 채 호송차량까지 데리고 간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4** **2012. 8. 16.자 12-진정-0325300 결정** 261
 [경찰의 부당한 가스분사기 사용 및 의료조치 소홀]
 ○○경찰서장에게, 경찰장비 사용 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5** 2012. 10. 22.자 10-진정-0546300 결정 268
[경찰의 장애인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해당 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6** 2012. 11. 2.자 11-진정-0696500 결정 274
[경찰의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조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과 소속 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년범죄 업무처리 시 보호자의 조력 보장 등과 관련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 7** 2012. 11. 2.자 12-진정-0467600 결정 281
[경찰의 폭행]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 8** 2012. 11. 23.자 12-진정-0111600 결정 285
[경찰의 심야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9** 2012. 11. 23.자 12-진정-0728600 결정 290
[경찰의 폭행 등]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

■ ■ ■ **적법절차 위반**

- 10** 2012. 1. 17.자 11-진정-0402500 결정 296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 및 개인정보 유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징계하고, 수사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11** 2012. 2. 16.자 11-진정-0161300 결정 303
[경찰의 부당한 신체수색]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각각 주의조치하고 신체수색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12** 2012. 4. 13.자 10-진정-0785200, 11-진정 311
-0329300 (병합) 결정
[지명수배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경찰청장에게,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영장 없이 체포하는 수사 관행의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과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를 권고
- 13** 2012. 7. 30.자 10-진정-0767600 결정 318
[불법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각각 피진정인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비밀 등 침해

- 14** 2012. 3. 6.자 10-진정-0489900 결정 328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 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경찰서장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에 공개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15** 2012. 3. 26.자 10-진정-0694700 결정 336
[경찰의 전과사실 누설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 16** 2012. 4. 13.자 10-진정-0537100 결정 340
[경찰의 부당한 이동권 침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17** **2012. 6. 20.자 11-진정-0517300 결정** 347
[국가정보원 직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폭언]
국가정보원장에게, 북한이탈주민 상대 업무수행 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18** **2012. 8. 16.자 11-진정-0315700 결정** 358
[교통참여교육 대상자에 대한 모자 등 착용 제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각 경찰서의 교통참여교육 시 참여자의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19** **2012. 8. 16.자 12-진정-0102900 결정** 369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 등]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사건의 언론 공개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0** **2012. 11. 2.자 12-진정-0529400 결정** 374
[경찰의 부당한 야간 자택 방문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서장에게, 경찰의 야간주택 방문에 관한 규정을 미련·공유하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1** **2012. 11. 2.자 11-진정-0675800 결정** 380
[경찰의 욕설 등]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2** **2012. 12. 18.자 11-진정-0341500 결정** 386
[속옷탈의 및 실명공개에 의한 인권침해]
피의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업무편람」의 ‘자살·자해 위험 도구’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할 것과,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

■■■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23	2012. 9. 18.자 12-직권-0000400 결정 393 [수원 여성살해 사건 직권조사]
	경찰청장에게, 112신고 접수처리의 개선을 위하여 직무교육 강화, 관련 시스템 개선, 종합상황실 근무환경 개선 및 상시적 점검체계 마련 등을 권고

■■■ 기타

24	2012. 11. 23.자 12-진정-0837000 결정 410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의료조치 소홀]
	경찰청장에게, 격오지 근무 전투경찰순경의 의료접근권 강화대책을 마련 하고, 협진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

【 제 2 장 】

군(軍) 관련 인권침해

■■■ 부당한 기본권 제한 및 보호조치 미흡 등

1	2012. 3. 6.자 12-진정-0032900 결정 421 [군대내 과도한 금연 강요]
	국방부장관 및 ○○○사령관, ○○부대장에게, 장병들에 대한 강제 금연 조치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할 것 및 금연조치로 인한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을 조치할 것을 권고

2	2012. 4. 13.자 11-진정-0270700 결정 431 [의료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부적절한 응급조치로 인한 훈련병 사망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

- 3** 2012. 12. 18.자 12-진정-0072100, 12-진정 448
-0111100 (병합) 결정
[군대내 스마트폰 앱 점검·삭제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방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

■■■ 병영 내 가혹행위 및 부조리

- 4** 2012. 4. 13.자 11-진정-0317500 결정 467
[해군 훈련병 사망사건]
해군참모총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5** 2012. 4. 30.자 11-진정-0321900 결정 480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부대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지원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

- 6** 2012. 6. 20.자 11-직권-0002400, 11-진정 497
-0653000 (병합) 결정
[군대 내 성추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육군참모총장에게, 000레이더기지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전반적 재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형사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과,
00사단내 격오지부대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차원의 부대진단 실시를 권고

- 7** 2012. 11. 23.자 12-진정-0491600 결정 525
[군대 내 집단 구타 및 의료조치 미흡 등]
00사단장에게, 부대 지휘관들에 대하여 각각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군의관에 대하여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의무기록의 정확한 기록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8	2012. 12. 18.자 12-직권-0001200, 12-진정 543 -0527500(병합) 결정 [육군 제00사단 총기사망사건 및 폭행·가혹행위 직권조사 등] 육군참모총장에게 00사단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사망자에 대하여 ‘순직’ 대상으로 심사할 것을, 00사단장에게 0대대장의 욕설과 폭행 등 책임을 물어 징계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권고
----------	--

■ ■ ■ 기타

9	2012. 8. 16.자 11-진정-0625000 결정 565 [폭언 및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해군기지 건설 관련 취재기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행위 관련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	---

【 제 3 장 】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 ■ ■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1	2012. 4. 24.자 11-진정-0091200 결정 575 [교도관의 직무유기 등] ○○교도소장에게, 교도관의 부주의로 인한 수용자 간 상해사고 발생 관련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2012. 6. 28.자 12-진정-0440800 결정 582 [중증장애인 구금시설 수용 관련 긴급구제] ○○교도소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 및 목욕시설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점을 감안하여 적합한 편의가 갖추어진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검토할 것을 권고

■ ■ ■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 3** 2012. 2. 29.자 11-진정-0176900 결정 588
[아동 그룹홈의 피보호아동 재위탁 관리 소홀]
○○○○관장 및 ○○구청장에게, 소속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본 결정을 알리고, 아동인권 관련 직무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 4** 2012. 5. 1.자 11-진정-0471300 결정 601
[부당한 작업치료 등에 대한 인권침해]
○○병원장에게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한 적극적 지도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
- 5** 2012. 5. 25.자 11-진정-0632500 결정 616
[정신병원 의료조치 소홀 및 통신제한 등]
진정인의 입원 중 상해 발생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하며,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
- 6** 2012. 6. 13.자 11-진정-0683200 결정 629
[보호자 1인에 의한 부당한 입원]
○○병원장에게,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준수와 직원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구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
- 7** 2012. 7. 18.자 12-진정-0216600 결정 634
[임신 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
피진정인의 가혹행위·통신제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진정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며, ○○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8	2012. 7. 25.자 12-진정-0196400 결정 647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 ○○병원장에게 입원 관련 규정 준수 및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구청장에게, 입원환자의 보호의무자 요건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

【 제 4 장 】
외국인·이주민 관련 인권침해

부당한 단속 및 강제연행 등

1	2012. 3. 27.자 11진정0554000 결정 657 [부당한 강제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불법체류자 단속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

2	2012. 4. 24.자 11-진정-0548400 결정 669 [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침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불법체류자 단속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련 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

3	2012. 7. 10.자 12-진정-0189800 결정 682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과잉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수갑을 채운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할 것과,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 수행 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

- 4** 2012. 8. 2.자 12-진정-0349300 결정 690
[부당한 강제연행에 의한 인권침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과 단속에 참가한 단속반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 ■ 부당한 처우 등

- 5** 2012. 4. 24.자 11-진정-0147700 결정 701
[재외동포 고충해소 합법화 조치로 인한 비동포 외국인에 대한 차별]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대상 출입국 관련 구제 등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비동포 외국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 6** 2012. 9. 25.자 11-진정-0703800 결정 707
[난민 신청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대처 미흡]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출입국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난민인정 신청’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 정비와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 제 5 장 】

학교 및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 ■ ■ 학교에 의한 인권침해

- 1** 2012. 4. 24.자 11-진정-0181800 결정 719
[고정식 명찰 부착으로 인한 인권침해]
○○광역시 교육감 및 해당 학교장에게 교복에 고정식 명찰을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 등을 권고

2 2012. 5. 7.자 12-진정-0054700 결정 729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소홀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동료 학생들로부터 폭행 및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데 대하여, ○○고등학교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직원 대상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3 2012. 5. 7.자 12-직권-0000100 결정 736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직권조사]

○○초등학교장에게,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과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상설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

4 2012. 8. 2.자 12-진정-0391700 결정 743
[중학교 배구선수에 대한 이적동의 거부]

○○중학교장에게, 피해자의 이적동의서를 지체 없이 발급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5 2012. 9. 3.자 12-진정-0338800 결정 748
[불공정한 학교폭력 대처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에게, 학교 내 인종차별적 발언의 예방적 차원에서 전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6 2012. 9. 3.자 11-진정-0471500 결정 757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인격권 침해]

교사가 피해자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침해

7 2012. 6. 14.자 12-진정-0030600 결정 765
[출퇴근용 지문인식 강요]

○○시장에게,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 도입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으므로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제3편 차별시정분야 】

【 제1장 】

성별,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및 성희롱

■ ■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 1** 2012. 4. 12.자 12-진정-0077900 결정 775
 [항공운항학과와 여학생 입학 정원 제한]
 ○○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모집 시 특정 성별에 대한 별도 정원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모집요강 등의 개정·시행을 권고
- 2** 2012. 8. 22.자 12-진정-0315200 결정 788
 [기혼여성 직원의 친정부모에 대한 진료비 할인 배제]
 ○○대학병원의 진료비 감면대상에서 ○○대학 기혼여성 직원과 기혼남성 직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기준의 개선을 권고
- 3** 2012. 9. 17.자 12-진정-0480102 결정 793
 [남성에 대한 전문대학 간호과 입학제한]
 ○○대학교 간호과 신입생 모집 시 남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기준의 개선을 권고

■ ■ ■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 4** 2012. 11. 30.자 결정 799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권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 수유시간 또는 산전후휴가 사용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도록 권고

■ ■ ■ 성희롱

5	2012. 4. 27.자 11-진정-0594500결정 810 [국가유공자단체 임원의 직원 성희롱]
----------	---

직장 상사인 피진정인이 부하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한 언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

6	2012. 12. 26.자 12-진정-0688100결정 816 [토목설계회사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

직장 상사인 피진정인의 언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소속 회사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

【 제 2 장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 ■ 장애인에 대한 배제 및 불리한 대우

1	2012. 1. 10.자 10-진정-0710700 결정 827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배제 등 차별]
----------	--

소속 학교장 및 관할 교육감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 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2012. 5. 25.자 11-진정-0555300 결정 841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의 차등 부과]
----------	--

○○아파트에 대해,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2층 거주 장애인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 부과를 3층 이상 거주세대와 균등하게 할 것을 권고

3	2012. 7. 18.자 12-진정-0222500 결정 849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	--

활동보조인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대책을 권고

■ ■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 4** 2012. 1. 10.자 11-진정-0586500 결정 85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제한에 따른 차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권고
- 5** 2012. 5. 1.자 10-진정-0563400 등 93건(병합) 결정 865
[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방송사 웹 사이트에 대하여 「웹 접근성 지침 2.0」에 따른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개선할 것과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 6** 2012. 6. 13.자 10-진정-0375400 결정 888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에 의한 차별]
시에서 소유·지원하는 수련관의 수영장 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 등을 권고
- 7** 2012. 6. 13.자 11-진정-0074901 결정 898
[장애인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에 의한 차별]
○○시장 등에게 실내수영장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 및 입수보조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조속히 제공할 것을 권고
- 8** 2012. 6. 13.자 11-진정-0371500 결정 905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제한]
○○시장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도서관 내 자료실, 열람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 9** 2012. 7. 4.자 10-진정-0484500 결정 912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검찰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에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 10** 2012. 7. 18.자 11-진정-0527400 결정 920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항공에 대해,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기 탑승을 위하여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할 것을 권고
- 11** 2012. 7. 18.자 11-진정-0317900 결정 931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구청장에게, 장애인이 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12** 2012. 8. 22.자 11-진정-0188500 결정 944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광역시장에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시티투어 버스 이용을 위하여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 13** 2012. 2. 13.자 11-직권-0002300 결정 951
[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폭행 등]
생활인을 폭행·상해를 입힌 생활지도원을 고발하고, 관할 구청장 및 시설장에게 담당자 징계·적절한 시정조치·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
- 14** 2012. 2. 13.자 11-진정-0306100 결정 974
[장애인시설의 예배 참석 및 헌금 강요 등 인권침해]
관할 구청장 및 시설장에게, 생활인의 의사에 반한 종교활동 참석과 헌금 납부 등 강요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시행 등을 권고
- 15** 2012. 5. 25.자 11-진정-0586400 결정 989
[장애아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시설장·법인 이사장 및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장애아동에게 대한 교사의 체벌·학대 및 모욕·비하 행위에 대하여 시정 및 재발방지조치 등을 권고

【 제 3 장 】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 1** 2012. 2. 22.자 11-진정-0337500 결정 1001
[○○시 통·반장 위촉시 나이제한]
○○시장 및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 통·반장 위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
- 2** 2012. 10. 17.자 12-진정-0356500 결정 1009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자 선정 시 나이 제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우체국창구 업무 위탁자의 나이를 만 70세 이하인 자료 제한하지 않도록 우편취급국 운영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 3** 2012. 10. 17.자 12-진정-0426900 결정 1018
[지하철역 운영 위탁자 모집시 나이제한]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역 운영 위탁자 모집 시 나이 제한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 운영 위탁자 지원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
- 4** 2012. 12. 26.자 12-진정-0397900 결정 1023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민간위탁 관리책임자 나이 제한]
○○광역시장에게,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에 나이를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지침의 개정을 권고
- 5** 2012. 12. 26.자 12-진정-0704300 · 12-진정 1029
-0782500(병합) 결정
[아파트 동 대표자 선출 시 나이 제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동 대표자의 피선거 연령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이를 폐지할 것을 권고

【 제 4 장 】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 1** **2012. 4. 27.자 11-진정-0181700 결정** **1039**
 [기간제교원의 맞춤형복지 제도 적용대상 제외]
 ○○광역시교육감에게, 맞춤형복지 제도 설계·운영 시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
- 2** **2012. 4. 27.자 11-진정-0472600 결정** **1047**
 [사도교육원 운영 시 편입학 학생에 대한 차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에게, 편입학 학생에 대해서만 사도교육원 입사 시 생활 관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3학년 연속학기 입사를 불허하는 등의 차별적 규정 및 운영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
- 3** **2012. 10. 17.자 11-진정-0644700 결정** **1055**
 [타 시·도 전출 교원 선발 시 국가유공상이자 부양자 차별]
 ○○○교육감에게, 타 시·도 전출 교원 선발에서 장애인 부양자에게 우선 순위 부여 시 실제 장애정도가 같은 국가유공상이자의 부양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 4** **2012. 11. 30.자 12-진정-0041400 결정** **1062**
 [건설설계분야 위원선임 시 전문가 진입 제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설계심의분과위원 위촉 시 「고등교육법」상 ‘대학’ 이외의 학교에 재직 중인 기술 관련 학과 교수를 차별하지 않도록 위원 위촉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

【 제 5 장 】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

■ ■ ■ 전과, 수사 ·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 1** **2012. 1. 27.자 11-진정-0367600 결정** 1073
 [징계처분자의 학급 임원자격 박탈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 제한]
 해당 학교장에게,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여 학급 임원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 시행할 것을 권고
- 2** **2012. 3. 21.자 11-진정-0307100·11-진정-1081-0658600·11-진정-0668500(병합) 결정** 1081
 [경찰 채용 면접시험 시 신원조사 결과 활용 관련 제도 개선 권고의 건]
 경찰청장에게, 수사 받은 전력 등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공무담임권의 행사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제도의 개선을 권고
- 3** **2012. 10. 17.자 12-진정-0166200 결정** 1089
 [공단 직원채용시 양심적 병역거부 전력을 이유로 한 합격 취소]
 ○○○○공단 이사장에게, 임용 결격사유로서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를 규정한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제8호의 개정을 권고
- 4** **2012. 10. 31.자 12-진정-0720400 결정** 1098
 [불기소처분 경력을 이유로 한 군무원 채용 불허]
 공군참모총장에게, 실효된 전과 또는 보존기간이 도과한 수사경력을 이유로 군무원 임용을 거부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조치 및 진정인의 재심사를 권고

■ ■ ■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 5** **2012. 5. 10.자 결정** 1106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 사건에 관한 의견표명]
 정부, 관련 단체 및 업체에게 외국인 선원 인권보호 대책 마련 및 피해자 구제 필요성에 대해 의견 표명

■ ■ ■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 6** 2012. 12. 26.자 12-진정-0485900 결정 1112
 [지방자치단체의 동성애 차별 반대 광고 게재 거부]
 ○○구청장에게, 동성애 또는 성적 지향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광고 게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 ■ 학력 ·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

- 7** 2012. 10. 31.자 12-진정-0194400, 0194403, 1118
 0194404, 0194405(병합) 결정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전국 중등학교장과 시·도교육감들에게,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자제 및 지도·감독하도록 의견 표명

■ ■ ■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 8** 2012. 3. 21.자 11-진정-0304500 결정 1122
 [병력을 이유로 한 ROTC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육군참모총장에게, ROTC 선발시 단지 수술병력만을 이유로 지원자의 현재 건강상태나 예후를 고려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

■ ■ ■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

- 9** 2012. 4. 12.자 11-진정-0646000 결정 1127
 [재개발조합의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비 지급 거부]
 해당 재개발사업 조합장에게,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아니라도 건물의 실지 용도 등을 검토하여 실거주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



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제 1 편

인 권 정 책 분 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 1 장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

1 2012. 10. 8자 결정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사항】

정부(총괄부처 법무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정부가 충실히 심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 【1】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지난 4년 간 추진된 법제도와 정책의 나열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상황의 진전을 점검하기 어렵다고 평가됨. 또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건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과 관련한 내용이 기술이 미흡하거나 기존에 밝힌 입장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국내에서의 정부 입장과 달리 작성된 부분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2】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심의에서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숙고하여 충실히 심의에 임하고 차기 회의에서도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 내용을 유념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

【참조조문】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이 가입한 인권규약,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 인권이사회의 결의 16/21(A/HRC/RES/16/21) 및 첨부 문서, 인권이사회의 결정 17/119(A/HRC/DEC/17/119), 인권이사회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총괄부처 법무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아래 이유의 내용을 참고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정부가 충실히 심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I.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2012. 8. 13. 유엔 인권이사회(이하 ‘인권이사회’라 한다)에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이라 한다)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한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붙임자료 참조)를 제출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보고서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 이는 2012. 10.에 있을 UPR 심의에서 정부가 충실히 심의에 임하고 차기 회의에서도 인권이사회의 권고 내용을 유념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II. 판단기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이 가입한 인권규약,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 인권이사회의 결의 16/21(A/HRC/RES/16/21) 및 첨부 문서, 인권이사회의 결정 17/119(A/HRC/DEC/17/119), 인권이사회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

III. 판단

1. 총평

가. 실질적 인권상황의 진전에 대한 기술 부족

인권이사회의 UPR은 인권상황의 개선,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약속의 이행, 그리고 긍정적인 진전사항과 정부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평가 등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UPR 이행 국가보고서는 국제인권규범과 제1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충실한 해석을 통해 UPR 이행과 관련된 요소 및 어려움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제시되어야 하며 법제도 시행의 효과와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4년 간 추진된 법제도와 정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권상황의 진전을 점검하기 어렵다.

나. 인권이사회의 제1차 UPR 권고에 대한 기술 미흡

UPR 이행 국가보고서에는 인권이사회가 이전 회기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형식적으로 4장과 5장에서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에 관해 정부가 수용한 사항과 불수용한 사항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1)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이 미흡하거나 2) 기준에 밝힌 입장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3) 국내에서의 정부 입장파 달리 작성된 부분이 있는 등 한계가 있음이 지적된다.

2. 세부 주제에 대한 의견

가. 작성방법과 협의 과정(1~2항)

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과정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간담회를 보고서 제출에 임박하여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에 어려움이 있었다.

나. UPR 심의 이행을 위한 관련 경과(3~6항)

정부가 법무부 주관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UPR 권고사항의 이행방안을 채택하고, 산하 실무협의회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에 참여를 요청한 적이 없고, 관련 규정(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제3조2항)에도 필요시 참석토록 한다고 하고 있다.

UPR을 포함한 유엔인권메커니즘의 심의 준비 및 권고 이행을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및 UPR과 관련된 회의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1차 심의 이후 법률·제도의 발전

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확대 등(8항)

2012. 3. 2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립학교나 공기업 등 공직유관 단체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앞서 2009년 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한 바 있는데¹⁾, 위와 같은 위원회의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요청도 수용하지 않아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정 인력을 조속히 증원하여야 한다.

2) 국제인권조약 유보 철회(9항)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는 철회하였지만, 관계당국의 허가에 의한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는 협약 제21조 a항에 대한 유보도 철회하여야 하고, 아울러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이그협약」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 (b) (v) 상소권 조항 관련하여 국내 법률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및 공적개발원조(ODA) 확대(10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를 위해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한 것, 또한 2010년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 순지출 규모가 12억불로 2009년 규모(8억 2000만불) 대비 25.7%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공적개발원조 증가율이 1위인 점은 긍정적이다.

1) 인력 21% 축소(208명→164명, 감44명), 조직 대폭 축소(5국 22과 4소속기관→3국 11과 3소속기관)

그러나, 우리나라의 2010년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23개 회원국 중 18위,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은 0.12%로 최하위(23위)이므로 정부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고 아울러 인권에 기반한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정신보건법」 일부개정(12항)

정부가 「정신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 10. 26. 권고한 바에 따라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을 구분할 것, 계속입원의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것 등의 권고에 대하여는 이행이 미흡하므로 충실한 이행이 촉구된다.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3항)

정부가 연령차별금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사회적으로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낮고 차별관행이 여전하므로 정부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5~16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응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체계나 재범방지를 위한 표준적인 프로그램과 재범방지 정책의 운영 실태 및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6. 정부에 대해 위와 같은 문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그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정부에 대해 아동 성폭력의 급증과 음란물의 높은 소비율,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등을 우려하면서 아동 성폭력 예방 조치와 성착취의 효과적인 기소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개정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19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제정 등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액수가 적고²⁾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여러 종류의 지원은 하나 상담이나 정신적 치료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정부는 범죄피해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구조금을 늘리고, 범죄피해자지원기관들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아동, 외국인 등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보호가 필요하다.

8)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제정(23항)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제정으로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 7. 한국 정부에게 성별영향평가가 사전적이 아닌 사후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공공정책의 형성, 계획 및 시행에 있어 그 영향력이 적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범죄피해자의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최대 6,000만원), 장해구조금(최대 5,000만원), 중상해구조금(최대 5,000만원)으로 임. 피해자나 유가족이 치료와 재활에 들이는 비용에 비해 부족함.

9)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조치(26항)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새터민, 이주노동자,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내용에는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여전히 존재하고³⁾, 교육현장에서는 체벌,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교육 정책이 경쟁 중심, 성과 지향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인권존중의 측면이 부족하였다고 평가된다.

10) 비정규직 대책(27~28항)

가) 정부의 2011. 9. ‘비정규직 고용대책’과 2012.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책’은 상용직의 확대, 상여금 등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해소라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상용직도 정규직이 아닌 고용계약기한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안정은 보장되었으나 임금과 처우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또한 정부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법률로서 인정하였으나 적용제외 제도를 두어 보험가입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인권보호를 위해 2007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년 ‘법원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 권고’, 2009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9년 ‘사내하도급근로자 인권개선 정책권고’ 등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고용대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3) 인권위,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2009. 12. 17),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권고’(2010. 9. 2)

나) 정부가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확대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08. 10.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사업'⁴⁾을 통해 예방적 근로 감독도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상 사업장의 수와 점검내용 추가 등 제도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2011. 7.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주40시간)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 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정책권고'⁵⁾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1)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29항)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것은 성과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주거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정립하며, 기준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숙인, 비주택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주거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강제철거절차에 있어서 거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1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료보험 보장성 강화(32~33항)

의료급여 대상자, 산모 및 영유아, 노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건강권보장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4) 이 사업은 노동부가 근로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점검표와 컨설팅 등을 기업 측에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사전적 법 준수를 유도하는 것임. 이러한 제도는 사후적/교정적 근로감독에 비해 근로자 권리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실효적임.

5) 2008. 4. 위원회는 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1)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단계적인 전면적용을 명문화할 것, (2)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 규정은 즉시 적용할 것, (3) 예방적 근로감독, (4)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인쇄하여 배포할 것 등을 권고했음.

앞으로는, 건강권 관련 모니터링 체계 수립과 다문화가족, 이주 노동자 및 그 가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한 건강권 보장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및 알권리, 개인정보 열람권과 정정권, 진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13)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34~35항)

가)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은 성과이다.

그러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1급 장애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의 중증⁶⁾ 장애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한도의 제한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불충분하며,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지급수준이 낮은 문제점⁷⁾이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한 단계적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나) 정부가 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성과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즉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측정하는 별도의 판정기준을 만들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서비스가 장애인고용공단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을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연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6) 보건복지부의 중증기준은 1급, 2급, 지적·자폐성장애 3급으로 중복 장애인
7)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과 동일, 부가급여액은 월평균 20.8만원(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로 생계보장에 어려움이 있고 보건복지부가 장기적으로 인상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 계획 마련이 없음(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p119)

라. 1차 심의 수용권고 이행 상황

1)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 이행 및 홍보(36항)

정부가 UN 핵심인권조약에 따라 정부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고 협약기구 견해의 이행을 위해 정부 내 논의구조를 갖춘 점은 성과이다.

나아가, 정부는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이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권고나 견해에 관한 홍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중매체 보도 및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37~38항)

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고 시위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인권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 정부는 일부 지역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1차 UPR 권고의 이행 상황으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 26.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내는 등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실상 위와 같은 이행 성과의 제시와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39항)

보고서는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제한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의 완화여부를 적시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 제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권 제22조의 유보조항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의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이나, 동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자유권규약위원회가 1999년부터 철회를 권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유보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4)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43~4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공공기관 및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있어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1. 10.부터 2012. 8.까지 7개 회사에서 총 26,590,00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직원 부주의로 유출되었고 그 이전에도 35,000,000명이 가입한 포털사이트가 해킹되어 유출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치이다. 이렇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해외에서 이용 및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2기(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하여 정부에 권고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5) 차별금지법(45항)

유엔 인권협약기구들은 2009년부터 계속하여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3년 반 동안 일반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의견조회, 학계 및 차별전문가와 인권단체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06. 7.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정부가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이 필요하다.

6) 여성권리증진 정책 및 양성평등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46~47항)

정부가 여성권리증진 관련 다양한 과제를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는 점은 성과이다.

그러나 여성의원비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소득격차 등으로 구성되는 성별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109개국 중 61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134개국 중 115위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치 분야에서는 여성 국회의원 및 지방 의원 비율 확대, 행정 분야에서는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목표제 도입,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 및 성별 균형적 임용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 및 가정폭력 법령 강화(49~50항)

가) 정부는 현행 「형법」에 의해서도 부부강간을 처벌할 수 있고 부부강간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에서 범죄성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나, 2012. 2. 14. 광주고등법원의 판결(2011노229)은 부부강간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강간죄에 대한 입법적 조치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나)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들이 마련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경찰관들이 여전히 사적 사안이라는 인식이 강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력의 적극적 개입 관행의 정착이 필요하다.

8) 인신매매에 대한 대처(51~55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내외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인신매매를 다루는 포괄적인 법이 없고 인신매매와 성매매가 팽배하며, 특히 예술홍행사중(E-6)으로 입국한 이주여성노동자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입국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초기입국심사 절차 강화 및 현장감시가 요구되며 나아가 법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9) 아동학대의 처벌 및 형사절차상 아동 권리 보호(56~59항)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6. 정부에게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최초진술에서 경찰 등 관련자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 전문수사팀의 신설, 신뢰관계자 동석 규정의 오용 방지, 아동친화적인 법정 구성 등 형사절차상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0)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 및 비폭력적 방식의 훈육 촉진(60~61항)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얼차려나 모욕을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한 간접적 체벌도 금지되는가에 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간접적 체벌을 포함하여 체벌의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2011. 3. 권고한 바 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정부에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위 권고의 취지에 따른 관련법령의 정비와 대안적 훈육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정서학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강화하여야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변 보호 등 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11)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62~65항)

정부가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우리 사회의 외국인 혐오증 문제 대처 등 인종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2)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 보장(66~68항)

정부가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외국인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근로시간·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2011년 9월말 현재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170,614명인데, 이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여야 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시설 의무화,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2012. 2.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행 및 난민인정절차 개선(69항)

정부가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인정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성과이다. 정부는 「난민법」의 취지에 맞게 난민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14)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70항)

정부가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이 통상 1-2시간 강의로 이루어지거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고,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아직 없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유엔이 주관하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등 국제 인권 교육기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인권교육의 의무화, 체계화, 내실화를 위하여 인권교육법 제정과 인권교육원 등 전문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마. 도전과제 및 장애 요인

1) 사형제(71항)

정부가 1998년 이래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09. 7.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형제폐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2010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하고, 최근 강력범죄나 흉악범죄의 증가 등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사형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는 범죄수를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국가보안법(72항)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자의적 해석이나 남용 우려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나,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적용사범이 지속되고 특히 제7조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가보안법」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보안관찰법(73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남용의 가능성을 이유로 「보안관찰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위 법에서 보안관찰처분의 처분근거가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행정부 내에 설치된 위원회에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맡겨져 있어 오용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정비와 합리적 운용 등 대책이 필요하다.

4) 입영 및 징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74항)

정부가 입영 및 징총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계획을 제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1차 UPR 권고 이후 관련 상황의 진전은 미흡하였다.

양심이나 종교적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185명에 이르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군 복무의무를 요구하는 국민정서와의 갈등 등 현실적 어려움은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형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5)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75항)

정부가 아동, 19세 미만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에 대하여는 비친고죄로 법을 개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비장애인 성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중 일부는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제 조항을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여성단체 등도 같은 요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

6)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과 유보 철회(76~79항)

「장애인권리협약」을 서명·비준하고 「아동권리협약」 제9조 3항(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협약이나 유보철회 취지의 실천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강제실종협약,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 미가입 협약에 대해서도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하나, 이는 제1차 UPR 권고 당시의 정부 입장에서 진전된 바가 없다.

자녀의 성 선택과 관련하여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가 성을 선택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예외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1(g)항(자녀의 가족성 선택에서 부부의 동일한 권리 보장)에 대해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ILO 주요협약에 가입하겠다고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인권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공약하였으나 보고서에는 그 성과와 제약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미가입 협약에 관한 세부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유보조항의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바. 향후 계획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의 입후보(80항)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2006~2008년 초대 인권이사국으로, 이후 재선되어 2008-201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권이사국으로 활동하였으며, 다시 2013년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후보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자발적 공약의 작성과정에서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입후보한 사실이나 공약의 내용에 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바, 정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2. 10. 8.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윤남근	위원 양현아	위원 김성영
위원 곽란주	위원 한위수	위원 강명득	



제 2 장

경제적·사회적 권리 관련 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권고
-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정책권고
- 공격적 직장폐쇄 관련 정책권고 등
- 노사관계 경비업체 투입 관련 정책권고 등

1 2012. 5. 17.자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권고]

【결정사항】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을 개정할 것, 2003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기적으로 추가·보완할 것,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권고

【결정요지】

- 【1】 현행 제도상 피해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하여 현실적으로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헌법」 이념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피해근로자와 상대방 간에 입증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함.
- 【2】 산업의 발달·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병이 생겨나고 질병과 업무 간 인과성이 변화하여 왔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질병은 2003년 이후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질병이 삭제되기도 함. 이는 산업재해 환경의 변화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개선이 필요함.
-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위원장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이 공단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4】 피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는 목적으로 악용되는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제도는 폐지해야 함.

【참조조문】

「헌법」 제34조(사회보장) 제2항·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의 (b)

【주 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주장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을 개정할 것,
2. 2003년 이후로 새로운 질병목록을 추가·보완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기적으로 추가·보완할 것,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별 위원회 회의에 산업의학전문가가 참가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배경

서울행정법원은 2011. 6. 23. ○○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2인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1. 6. 23. 선고 2010구합1149판결). 이는 그 동안 유사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업성 암 등에 대한 업무

상 질병 인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이 행정소송의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만 남게 되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의 지연 및 비용 가중의 결과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11. 10.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성 암 협약(Occupational Cancer Convention)」을 비준함으로써 국가가 근로자의 직업성 암에 대한 예방과 치료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였고, 또한 동년 6월에 승인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바, 이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기반의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해 전반적 검토를 하게 되었다.

II. 판단기준

「헌법」 제34조 제2항·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의 (b)

III.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대한 검토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의의 및 운영 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산업재해도 늘어남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1964년부터 시행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 대비 불승인율은 2007년 54.6%에서 2010년 63.9%로 9.3% 증가하였고, 특히 뇌심혈관 질환의 불승인율은 2007년 59.8%에서 2010년 85.6%로 25.8% 급증하였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도 2007년 44.7%에서 2010년 52.3%로 7.6% 증가하였다.

2010년 고용노동부와 노동건강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 관련 질병 현황에는 근골격계 질환이 전체 질병 중 1위, 뇌심혈관계 질환이 3위로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불승인율은 점점 높아가는 추세이다.

암질환에 관하여는, 미국 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암의 2~8%를 직업성 암으로 2007년 경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립암센터 내 중앙암등록사업부는 우리나라에 이 비율을 적용할 경우 2007년 발생한 암 환자 총 161,920명 중 3,238~12,954명이 직업성 암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 2007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직업성 암은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바, 우리의 산업구조가 전통적 제조업 일변도에서 화학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첨단 전자제조업(반도체, 정보통신 부품 등 IT 제조) 및 서비스업의 확대로 변화함을 반영하여 상해 중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업무상 질병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

2.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 절차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 혹은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통상 이 때,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문답서, 직업력 확인자료, 담당의사의 진료소견,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록 등을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때는 '사업주 날인 누락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급여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및 질병의 업무관련성 등을 조사하고, 직업성 질환의 발생원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2와 동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2에 따라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그 역학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그 역학조사결과는 다시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통보된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피해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피해 근로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절차이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IV. 판단

1.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과 입증책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피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위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질병은 업무관련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에 대하여는 결국 피해 근로자가 위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상의 조사 및 증명에 대한 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 있으며, 피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라는 주장(신청)만 하면 된다는 견해를 표한 바 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지, 유해·위험요인 취급 및 노출된 업무시간, 종사기간 및 업무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한 것인지, 유해·위험요인 취급 및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게 되므로 그 증명의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의 입증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서, '어떤 사실의 존재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판단을 받게 될 위험 또는 불이익'을 의미하는 법률상의 입증책임과는 다른 것이다.

결국, 당해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함으로써 위험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피해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에 관하여 제3자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질병의 업무관련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조사할 책임을 가지는 것이지, 이를 들어 입증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은 아니다. 또한 비록 입증책임이 소송상의 법리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단계의 비사법적 구제절차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여부의 판단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바,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서는 피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밝혀야 한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09. 12. 2. 선고 2009누8849 판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283 판결)에서, 이러한 입증책임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사업주 측 또는 국가 측이 발병원인물질이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든가, 그 질병이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물질에 대한 발병원인이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 과정에서도 업무상 질병의 증명 책임을 배분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주장된 질병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의 이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관한 구체적 인정기준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질병은 업무관련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쉽게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산업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병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과거에는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질병의 업무와의 인과성이 수시로 변함에도 불구하고, 2003. 7. 1. 이후로 위 별표 3에 해당하는 질병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08. 7. 1. 이전 동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존재하던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이 동법 시행령 별표 3으로 바뀌면서, 고혈압성 뇌증이나 협심증 같은 질병이 삭제된 바 있다. 이는 결국 산업재해환경의 변화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산업의 발달과 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발생, 증가하고 있는 직업병 등을 조사·검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기적으로 추가·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관련

2008. 7. 1.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 내의 자문의사회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나 구성원들이 보건학, 통계학 그리고 반도체 산업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 및 위원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산업위생관리 및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별 위원회는 그 중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승인율은 2006년 54.3%에서 2009년 39.3%로 감소하였고,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은 40.1%에서 15.6%로 급감하였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연구동향 2010년 10월호). 이러한 통계수치가 바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지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지적되는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직원(고용노동부 퇴직 후 공단에 입사한 전직 공무원 포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별 위원회의의 구성원을 지명할 수 있는 위원장으로 위촉됨으로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이해관계나 재정상황(연금수급권자의 누적증가로 인하여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의 부족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별 회의에 산업의학 전문의가 참여하지 않는 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질병의 업무관련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전문성 결여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고용노동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개별 회의에 산업의학 전문의가 참가할 수 있도록 위원제도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제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제도는 피해 근로자가 기재한 담당업무, 발병경위 등의 사실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확인을 받음으로써 업무관련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를 강박, 회유하여 보험급여 신청을 포기하도록 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사업주의 회유 등으로 피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는 이후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항변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해야 할 질병을 국민건강보험이 떠맡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주 날인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2005년부터 사업주 날인이 없을 경우, '사업주 날인누락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실무에서도 피해 근로자가 보험급여 신청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피해 근로자가 기재한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이미 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날인제도의 의의는 반감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제도는 그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이나 행정적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막을 가능성도 있고, 사업주 날인제도 외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확인할 다른 방법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주 날인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7.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장명숙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2 2012. 6. 14.자 결정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정책 권고]

【결정사항】

-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 방안 마련, 재가(在家)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등 기준 마련 및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감사 등을 권고
-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근로조건이 지켜지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금로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3】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이 적정한지, 요양보호사의 근로권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권고
-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요양보호사의 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수급자 교육 실시 등을 권고

【결정요지】

- 【1】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정비하고 최소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인력배치 기준을 조정하여 야간 및 장시간 근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2】 요양보호사의 산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전 예방교육 및 대처 매뉴얼의 마련이 시급함.
-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분별한 재가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2조 제1항·제3항, 제3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제1항·제7조 (b), (d)·제9조,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제56조·제58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제3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권고」 및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9호 등

【주 문】

1.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가. 요양보호사의 노동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 1) 요양보호사 표준 근로계약서에 기본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실비변상, 휴게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포괄 임금제가 남용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 2) 요양보호서비스 수가(酬價) 중 인건비율을 고시하는 등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 3) 교대, 휴가, 휴식 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1명이 담당 가능한 수급자의 수를 반영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강구해야 한다.
- 4) 장기요양기관에 야간에도 간호 인력을 배치하여 수급자들이 적절한 응급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요양보호사가 의료 비상상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운영 등 설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경영이나, 비영리 법인에 의한 운영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인력배치 기준,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사 성희롱의 경우 수급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포괄임금제가 남용되지 않고 요양보호사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근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3.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이 법령 및 각종 고시·기준에 부합하고 적정한지, 요양보호사의 근로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 가.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 관련 상병, 수급자 측의 폭행·폭언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 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행·폭언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해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유】

I. 배경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의 건강호전, 부양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2012. 5. 7.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진정사건’ 및 2010년 제2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요양보호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포괄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노출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고 수급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폭행·폭언·성희롱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였다.

II.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제3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제1항, 제7조 (b), (d), 제9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제56조, 제58조,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권고 및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9호 등을 참고하였다.

III. 판단

1. 저임금 및 포괄임금 남용 개선

가. 저임금 및 포괄임금 남용 실태와 문제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요양보호사 운영실태 보고서'⁸⁾(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서'라 한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요양보호사 노동조건과 근로격계 질환 실태조사'⁹⁾(이하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조사'라 한다.)에 의하면 재가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6,000 ~ 7,000원 선이나 상여금, 식대 등 부가급여가 없거나 시급에 포함되어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업무상 실비,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2011년 기준 4,320원) 수준이고, 시설 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료를 제하면 실질적으로 월 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보호사가 생계형 일자리로 정착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고시 제2011-137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로 하여

8) 2011년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전국 총 2,694명의 요양보호사를 면접 조사함.

9) 2011년 5월~7월 전국 25개 요양기관의 재가 요양보호사 175명, 40개 요양기관의 249명을 면접 조사

하루에 두 군데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실비지급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조사대상 기관 중 42%가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제 수당, 퇴직금 없음'이란 문구가 포함되어 있거나 휴일근무, 가산임금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표상의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실제로 12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휴게(수면)시간 명목으로 4시간을 공제해 8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여 법정 휴게시간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나. 저임금 및 포괄임금 남용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은 그에 대한 평가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2호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평가지표를 보면 주로 기관운영, 환경이나 안전, 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요양급여 관련 사항 위주로 되어 있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항목은 직원의 후생복지 부문으로 비중이 작은 편이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이 수급자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의 제공이므로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주목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실적에 따라 보험료 수가가 지불되는 현행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기관의 운영비(임대료, 수도세, 전기세 등), 요양보호사 및 실무자 임금 등이 수가에 포함되어 기관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임금의 수준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이 없다. 따라서 설령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은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어려운 바,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제대로 보전하기 위하여 전체 수가 중 인건비 비율을 설정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의 작성도 요청된다.

2. 장시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개선

가. 근로시간,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실태와 문제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12시간 교대 또는 24시간 격일교대 등 2교대 근무형태가 41.87%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국여성노동조합의 2010년 ‘고령화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 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¹⁰⁾’(이하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보고서’라고 한다.)에 따르면 주당 근무시간이 44시간 이하라고 대답한 경우는 27.13%, 44시간 초과 56시간 이하라고 근무한 응답자는 41.7%에 이르러,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9시간이었다.

시설 요양보호사와 같이 수급자를 24시간 돌봐야 하는 돌봄 직무의 경우 교대근무 형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심야근무를 포함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조화를 잃기 쉽다는 것을 감안하고 지나친 장시간 근로와 야간 근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b), (d)항¹¹⁾ 및 ILO 제47호 협약(붙임 참고)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도 지양하고 있으므로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10) 2010년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주관(노동부의 노동단체 지원 사업)으로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975명(재가요양보호사 792명, 시설요양보호사 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11)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 휴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기준은 ‘전체 입소자 : 전체 요양보호사’로 요양보호사의 교대근무, 휴일, 휴가로 인한 공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인이 실제로 돌봐야 하는 입소자 수는 주간에는 평균 9.7명, 야간에는 평균 16.5명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시설 요양보호사가 치매, 중풍 등으로 전면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체위변경, 식사, 목욕 등을 담당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 1인이 돌봐야 하는 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문제일 뿐 아니라 수급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한 요양보호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휴게와 관련하여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식사장소가 병실인 경우가 53.63%, 식사장소가 없는 경우가 32.6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시설 기준에서는 요양보호사 휴게 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위에서 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휴게시설이나 요양보호사의 휴식권과 관련된 평가지표가 없다.

나. 장시간 노동,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개선방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의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야간근무로부터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대근무, 휴일, 휴가 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현실적 근로조건과 위 인력배치기준 등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이를 수차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합당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재가 장기요양기관 난립 방지를 통한 고용 안정 방안 강구

가. 재가 요양보호사의 고용불안정 실태 및 원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 시간은 30시간~40시간미만이 21.31%, 20시간 초과 30시간 이하는 20.71%, 20시간 이하는 42.6%로 나타났으며, '근무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생활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항목에 '아주 그렇다'가 36.36%, '약간 그렇다'가 22.42%로 전체 응답자의 약 59%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재가 요양보호사가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2인 이상 수급자를 확보해야 하나, 수급자의 사망이나 시설 입소 등으로 갑작스럽게 요양보호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여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1년 5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약 19,918개소로 2008년 시행 초기에 비해 5배 증가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요양 3등급 수급자(2010년 기준 175,272명)들이 일반적으로 재가 기관을 이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재가 기관 1곳 당 평균 서비스 대상자는 8.8명으로,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 중 인력기준이 한 기관 당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 수요에 비해 난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재가 요양보호사가 안정적으로 고정수입을 얻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신고함으로써 설치할 수 있어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요양보호서비스의 공급은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내용은 방문요양이나 방문 목욕에만 편중¹²⁾되어 있고 특히, 기관이 도시지역에 집중

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는 부족하여¹³⁾ 요양보호서비스 접근성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역적 편중과 난립으로 수급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받는 보험료 수가를 수급자의 자기부담금 대납이나 마케팅 비용으로 충당하여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저하시키거나,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까지 제공하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현행 법률상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평가지표를 활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와 그 평가결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보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대상인 전국 3,195개소 장기요양기관 중 83.5%가 ‘우수’ 또는 ‘양호’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변별력이 없고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차등적 평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나. 재가 장기요양기관 난립 방지 방안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평가 지표를 내실화하여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공정한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처분 등 실질적인 시정조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기준을 엄격히 마련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나아가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및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적 제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경영이나 비영리 법인에 의한 운영 등 합리적 운영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12) 공공운수노동조합(2011), 장기요양보험 시행 3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p. 34

13) 이윤정(2009),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별 공급 형평성 시계열 변화분석’, 보건복지포럼, p. 63

4. 요양보호서비스 외 노무 제공 개선

가. 요양보호서비스 외 노무 제공의 실태 및 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서비스 외의 노무 제공을 강요받거나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이를 업무상 애로사항으로 꼽은 경우가 약 44%로 조사되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재가 요양보호사 조사대상자 중 58%가 손님접대(24%), 김장(23%), 농사일(14%), 기타(14%) 등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를 강요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21.12%가 드레싱, 50.85%가 석션, 5.36%가 배뇨관 삽입, 56.41%가 관장에 해당하는 처치를 해보았다고 답하여 의료행위 등 부당 업무를 하게 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보고서에 의하면 70.54%가 야간 근무 시 간호사 없이 요양보호사만 근무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해고 또는 수급자의 기관 변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위와 같은 부당한 업무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특히,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서비스 외 노무 제공을 공공연하게 요구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증인 1등급과 2등급 수급자를 돌봐야 하는 시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직원배치기준에 의하면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간호인력이 시설에 부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2011-137호에 따르면 ‘야간 배치 인력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의무적 배치를 명시하지 않아 야간에 의료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나. 요양보호서비스 외 노무 제공의 개선 방안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서비스 외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의 건강을 지키고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려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이 요양급여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의료인력 관련 규정의 미흡,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석션, 관장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처치를 하는 것 역시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당한 업무부담일 뿐 아니라 요양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도 위험부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5. 산업안전 보호 조치 마련

가. 산업안전 실태 및 문제점

요양보호사는 치매 혹은 정신질환 등의 질병상태를 가진 수급자의 특성상 업무수행 중 폭력·폭언·성희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폭행이나 폭언)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80.72%,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30.41%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에 대하여는 시설 요양보호사가 33%, 재가 요양보호사가 16%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가해자로 수급자 외에 수급자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을 당한 후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49%,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25%가 '대응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간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시설 재가 요양보호사 모두 '치매 등 질환 증상으로 여기거나'(시설 51.72%, 재가 31.25%), '이야기해봐야 안될 것 같아서'(시설 17.24%, 재가 25%)를 들고 있으나,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일자리를

않게 될까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5%로 시설 요양보호사(1.72%)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체위변경, 이동 보조, 목욕 등의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및 재가 요양보호사 모두 근골격계 통증으로 지난 1년 내에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45~67%였으며, 1일 이상 일을 못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도 14~23%였다.

요양보호서비스 대상자가 치매, 뇌혈관 질환 또한 파킨슨병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요양보호의 업무와 관련된 안전 및 보건 지침 마련이나 이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56.9%였으며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44%로 절반 정도의 요양보호사는 안전보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요양보호사 산업안전 보호 방안

보건복지부는 2011년 11월 노인질환별 요양보호기술 등을 담고 있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를 발간하였으나 관련 교육을 기관의 자율에 맡겼고, 직무교육 교재의 내용 또한 요양보호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또는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사후 구제절차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매뉴얼 및 사후 구제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인 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폭행·폭언·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을 요양보호사 뿐 아니라 수급자 및 수급자의 보호자나 동거 가족에게도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할 필요성이 있으며,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발생 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2. 6. 14.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3

2012. 11. 22자 결정 [공격적 직장폐쇄 관련 정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사항】

-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선제적이거나 상당성이 결여된 직장폐쇄, 직장폐쇄를 수단으로 한 노동조합 탈퇴 압박,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업무 복귀 의사 표시 이후 직장폐쇄 지속, 직장폐쇄 중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원의 사업장 접근 제한을 위한 직장폐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와 근로감독 강화를 권고
- 【2】**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관련 법률 개정 시 위 권고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 【1】** 최근 노사분규 관련 직장폐쇄가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과 법적 공방이 빈번하게 발생함. 사용자의 쟁의수단인 직장폐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나 법률에 구체적 규정 없이 사법부에 의해 그 정당성 여부가 가려지고 있어,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즉각적인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음.
- 【2】**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노사 양측의 쟁의 수단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질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3권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직장폐쇄와 관련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 필요

【참조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8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회의장에게, 사용자에게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를 방지하고 직장폐쇄가 본래의 취지인 방어적·대항적

성격을 벗어나 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전의 선제적 직장폐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규모나 방법에 대응하는 정도를 벗어나 상당성이 결여된 직장폐쇄, 직장폐쇄를 위협수단으로 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업무복귀 의사 표시 이후 직장폐쇄의 지속, 직장폐쇄 중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제한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원의 사업장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직장폐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교육 포함)와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관련 법률 개정 시 위 권고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I.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배경

최근 노사분규 대비 직장폐쇄 조치 비율의 증가에 따라, 직장폐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직장폐쇄의 적법성을 놓고 적지 않은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바, 노동인권 개선 차원에서 이를 살핀다. 노동조합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쟁의수단인 직장폐쇄가 노사 간 힘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반해, 법률에 구체적 규정이 없이 주로 사법부의 판례에 의해 그 정당성 여부가 가려지고 있어, 즉각적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노사 양측

의 쟁의 수단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질서,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자주적·집단적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3권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직장폐쇄 관련 제도 및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권고하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 기준

본 검토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33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제8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을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III. 판단

1. 노동기본권으로서의 노동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로이 단결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함께 노동기본권에 해당한다. 노동3권 행사는 상기 보장 취지, 노조법 등 관련 법규 그리고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 등에 의한다. 현행법상 정당한 단체행동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민·형사상 면책되고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과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정당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노사 양측은 노사 갈등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노동쟁의(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상태에서 노사 양측은 조정 등 절차를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이다.

쟁의행위는 그 주체와 목적, 수단과 방법 모두가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또는 폭력·파괴행위를 통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뒤따른다. 참고로 2002~2006. 노동조합원에 대한 쟁의행위 관련 형사 사건(1심) 1,470건을 살펴보면 사건들에 적용된 7,624개 죄중 「형법」 위반이 3,183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2,400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573개, 노조법 위반이 241개, 기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이 1,227개로, 노동3권 행사 시 실정법 위반의 죄책을 중히 염두에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파업 관련 민사배상이 노동조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추세여서 쟁의행위 시 비단 임금 상실뿐만 아니라 여러 제한이 노동3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

2. 직장폐쇄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근로자측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소극적 방어수단이자 최후수단(ultima ratio)이다.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3권의 행사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그 대항행위로서 방어적 직장폐쇄를 단행할 수 있을 뿐이다. 사용자가 세력관계에서 근로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사 대등 내지 세력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쟁의권을 보장하였으나 노사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되어 사용자가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노사 간 세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인정한 것이다. 사용자는 정당한 직장폐쇄 시 직장폐쇄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노조법에서는 직장폐쇄에 대해 별도의 명시적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개시시기 외에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직장폐쇄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학설 및 판례, 행정해석 등을 통해 개별적·사후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

서는 노사 간의 교섭 경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태양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 사용자측이 받은 압력의 정도 등을 비교하여 직장폐쇄가 대항적·방어적 수단으로서 그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 등을 통해 직장폐쇄의 요건 등을 살펴보면 첫째 대항성 요건, 시기상 노동조합 쟁의행위 개시 이후 직장폐쇄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 직장폐쇄가 금지된다. 그리고 둘째 방어성 및 상당성 요건 다시 말해 목적·태양(態樣)상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로만 직장폐쇄가 단행되어야 하고 공격적 직장폐쇄가 금지된다.

그런데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단행된 경우 노사 간 세력 불균형, 임금 상실에 따른 조합원 이탈과 조직 축소, 쟁의행위 중단 및 포기, 구제신청과 법적 공방으로 인한 조직력 소진 등 노동조합이 입는 피해는 즉각적이고 금세 회복하기 어렵다. 반면 법원의 사후적인 직장폐쇄의 위법성 판단은 노동조합이 위축된 이후 오랜 소송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

게다가 노동조합에서 고용노동부에 즉각적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요청해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폐쇄의 개시시점 외에는 법규정이 없는 점, 쟁의행위 이전의 선제적 직장폐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공격적·과잉방어적 직장폐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점, 유사 선례가 있어도 개별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직장폐쇄를 신속히 중단시키거나 제재하지 못하므로 적시의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직장폐쇄는 재산권 보호·노사균형 회복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하는데 위법한 직장폐쇄 시 즉각적인 노동조합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권리구제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2011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65건으로 전년(86건) 대비 24.4% 감소하였고, 근로손실일수는 429,335일로 전년(511,307일) 대비 16.0% 감소하였다. 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24.7일로 2008. OECD 국가 평균인 26.8일보다 낮고 최근 노사분규 발생추이는 감소

추세이다. 그런데 2006.~2010. 직장폐쇄 신고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6. 노사분규 대비 직장폐쇄 비율이 15.2%(노사분규 138건, 직장폐쇄 21건)에서 2010. 23.3%(노사분규 86건, 직장폐쇄 20건)로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노사분규와 직장폐쇄 건수는 줄었지만 직장폐쇄를 활용하는 사업장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2005.~2007.에 비해 2008.~2011.의 경우에도 노사분규 대비 직장폐쇄 비율이 16.3%에서 22.9%로 늘어났다.

위법한 직장폐쇄 시 노동조합이 입은 즉각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권리구제에 의존해야 하는 점 등을 살필 때 직장폐쇄가 증가하는 상황은 직장폐쇄를 둘러싼 노사 양측의 입장과 해석의 차이 때문에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나아가 오랜 분쟁, 소송기간 소요로 노사갈등 장기화에도 일조할 수 있다.

기존의 판례·행정해석 등으로 축적된 직장폐쇄의 세부 요건들을 살펴보면, 직장폐쇄는 구체적인 노동쟁의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가 오히려 노사 간의 적정한 세력 균형을 깨뜨려 사용자측이 현저하게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평의 원칙상 사용자 측에게도 근로자 측의 부당한 노동쟁의에 의한 압력을 저지함으로써 노사 간의 적정한 세력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항수단으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직장폐쇄가 선제적·공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 측에서 쟁의상태에 이르기 이전에 선행적으로 직장폐쇄를 실행하는 경우, 근로자 측이 이미 쟁의상태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 규모·방법에 대응하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직장폐쇄를 실행하는 경우, 적법한 직장폐쇄 개시 후에 있어서도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직장폐쇄가 대항적·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에게 심한 타격을 주어 이들을 굴복시키고 나아가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으로 전환한 경우,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 정당성을 상실한다. 한편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를 방지하고 직장폐쇄가 본래의 취지인 방어적·대항적 성격을 벗어나지 않도록 상기 직장폐쇄의 요건과 기준들을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3. 방어성을 상실한 직장폐쇄(이른바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우선 노동조합원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조간부 등 특정인을 지명하여 직장폐쇄함으로써 조합원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킬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까지 의심되는 경우로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경우 직장폐쇄 본래의 방어의 한계를 넘어설 소지가 크다.

그리고 직장폐쇄를 이유로 사업장 전체로부터 노동조합원을 배제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노동조합원의 ‘사업장 체류 내지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90도1413, 1990.10.12. 선고)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교섭기간 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평상시보다 노동조합 사무실의 이용 필요성이 높으므로 일과시간 이후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하더라도 평상시의 이용시간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직장폐쇄의 방어적 본질상 직장폐쇄를 이유로 정당한 사업장 내 조합활동·쟁의행위를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이 진행 중인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복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사용자는 당연히 직장폐쇄를 철회하여야 하는데, 노동조합의 조업복귀 의사의 진정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종료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불신이나 의도적 무시로 인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노사쟁의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불신이 고조될 때,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개입과 객관적 판단이 요청되고 있다. 사업주가 직장폐쇄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의무가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신고된 직장폐쇄를 지속적으로 살펴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직장폐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사 간의 침해한 갈등이 사후에 사법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되고 있는바, 그 이전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감독기능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2012. 11. 22.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4 2012. 11. 22자 결정 [노사관계 경비업체 투입 관련 정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사항】

- 【1】** 경찰청장에게, 노사관계에 투입되는 경비업체가 「경비업법」 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노동조합 활동 채증(採證), 노동조합원 강제 해산 및 퇴거 등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행위자 및 위탁 시설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
- 【2】** 국회의장에게, 「경비업법」 및 관련 법률 개정 시 위 권고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 【1】** 예방적·방어적 범위를 넘는 무장경비원들의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헌법」과 법률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동3권의 실질적 후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2】** 노사관계에 투입되는 경비업체의 수행업무는 물적 시설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국한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 및 위탁 시설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국가인권위원회법」,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의 한국에 대한 권고(2012. 3. 28.)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사관계에 대한 경비업체의 투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한다.

1. 경찰청장에게,

노사관계에 투입되는 경비업체의 수행업무는 「경비업법」 규정과 그 해석상 물적 시설 보호와 이에 관련되는 업무로 국한되어야 하므로 이 범위를 벗어난 노동조합 활동 채증, 노동조합원 강제 해산 및 퇴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 및 위탁 시설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회의장에게,

「경비업법」 및 관련 법률 개정 시 위 권고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I.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배경

2012. 7. 27. ○○도 ○○시 소재 (주)○○○○○의 노동쟁의 현장에 회사의 의뢰를 받아 투입되었던 경비업체 직원들의 경비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일각에서 무장경비원들이 경비라는 예방적·방어적 업무의 범위를 넘어 노동조합활동 채증, 노동조합원 해산 및 시설에서의 퇴거 등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폭력사태를 일으키고 경찰이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었다.

노사관계에 투입된 경비업체의 인력이 경비 본연의 업무를 넘어 부당하게 노동조합활동 채증, 노동조합원 강제 해산 및 퇴거 등을 수행함으로써 노사분규 현장에 폭력사태를 야기한 것이라면, 이는 우선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동3권의 제한이나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으로 노동3권의 실질적 후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3권의 보장 취지와 노사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노사 양측의 쟁의 수단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질서 등을 고려하여 노사관계에 대한 경비업체의 투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33조, 「국가인권위원회법」,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을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의 한국에 대한 권고(2012. 3. 28.)를 참고하였다.

III. 판단

1. 민간 경비권의 한계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 나뉘는데, 노동쟁의와 관련해서는 경비대상시설의 위험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경비인력이 주로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경비인력은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과는 달라서 재산 보호를 위하여 경비를 요청한 시설주의 권한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사람·물건에 대한 수색이나 구금의 권한이 없다. 동법에도 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경비업무의 예방적·방어적 한계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 경비인력이 노사분규 중인 노동조합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해산시키거나 사업장 밖으로 퇴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가 된다. 물론, 경비인력의 행위가 폭력 등 위법한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형법」상의 정당방위(제21조)·긴급피난(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제212조) 또는 시설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행사에 의한 「형법」상 자구행위(제23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정당성 인정의 전제로 필요성이나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2. 경비업체 투입과 노동3권

노사분규 상황에서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업체를 투입하여 공세적·물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 노사관계는 힘의 균형을 잃게 되어 결국 노동 3권이 위축될 수 있고, 대화에 의한 노사 교섭과 이를 통한 갈등해소보다는 경비업체 투입과 이에 대한 대항의 과정에서 폭력사태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폭력·과괴행위를 통한 정의행위를 엄금하는 노조법 규정과 산업평화 유지·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공세적·물리적 경비업체 투입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2012년판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65건으로 전년(86건) 대비 24.4% 감소하였고 근로손실일수는 429,335일로 전년(511,307일) 대비 16.0% 감소하였다.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24.7일로 2008년 OECD 국가 평균인 26.8일보다 낮고 최근 노사분규 발생추이는 감소 추세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노사분규에 대한 경비업체 투입사례를 보면 2010년 38건 1,134명, 2011년 20건 1,871명, 2012년 22건 3,088명으로 건수는 줄었지만 투입 인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노사분규가 감소하였음에도 경비업체 투입사례가 증가한 것이라고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노사관계에 대한 경비업체의 투입이 예방적·방어적 업무를 넘어 공세적·물리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또는 이에 의해 사실상 노동 3권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직장폐쇄와 경비업체

노사분규 현장에 투입된 경비업체의 신고건수 중, 2010년 38건 중 36건, 2011년 20건 중 15건, 2012년 22건 중 15건이 직장폐쇄가 단행된 사업장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보면 경비업체의 투입은 주로 직장폐쇄 조치와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

폐쇄는 사용자에게 의한 정의행위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단인데, 그 자체가 근로자 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에 더하여 경비업체의 강제적 물리력이 수반된다면 노사 간 힘의 균형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노사분규 상태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직장폐쇄를 통보하지 않은 채 갑자기 경비업체를 투입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위협하여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볼 여지가 있다는 문제를 함께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관할관청인 경찰청장은 노동쟁의 상황에서 직장폐쇄 등으로 생산시설 유휴가 발생하여 이를 순찰·보호할 경비인력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더라도 경비업체의 업무는 물적 시설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국한되도록 하고 본래의 업무를 넘어 부당하게 노동조합 활동 채증, 노동조합원 강제해산 및 퇴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하거나 사용자나 경비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비업체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국회에서는 「경비업법」 및 관련 법률 개정 시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2012. 11. 22.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제 3 장

사회적 약자 및 특수계층의 권리보호·구제 관련 결정

- 안마사 자격 관련 의료법 개정 권고
-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 대책 권고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개선 의견표명

1 2012. 3. 29.자 결정 [안마사 자격 관련 의료법 개정 권고]

【결정사항】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안마사 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적어도 중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소양이 있어야 전문적인 안마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마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나 안마사는 일정기간 이상의 숙련이 필요한 자격이며, 이는 2년간의 교육기간 동안 충분히 익힐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과 직접적 연관이 적은 학력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 제11조 제1항 · 제15조 · 제34조 제5항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 배경

2011. 8. 8.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시각장애인이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 내용이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진정은 각하 결정하였으나, 시각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본 규정이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II. 판단 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4조 제5항

III. 판단

1. 문제의 소재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학습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어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자 비율이 49.9%(출처: 「2011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년 기준)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맹학교 고등부 과정에 직업교육으로 안마과정만 있어 안마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고려하기도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이 사실상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

본 「의료법」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자질 미달의 안마사가 야기할 수 있는 의료사고 등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양질의 안마 서비스를 확보하고 안마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안마사의 자질과 능력은 안마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서 중요하다 할 것이지만, 자격 취득 요건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진정직업자격 및 비례의 원칙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이 요구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시각장애인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고입검정고시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과연 고입검정고시 과목이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인지 살펴보면, 고입검정고시 과목은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별표에서 필수 5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및 선택 1과목(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택일) 등 총 6과목으로 안마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교양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과목별 교육 교재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안마수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안마 이론 및 실기 수업을 위해 반드시 중학교 수준의 영어나 수학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상기 고입검정고시 과목은 실제 안마사 교과과정의 이해를 위한 기초과목이라 할 수 없고 그 내용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바, 결국 안마사 직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마사라는 직업은 시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바,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열악

하여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꼭 학력제한이라는 진입규제 방식이 아니더라도 2년간의 안마수련과정의 이수 관리 강화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과 안마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시각장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안마사라는 직업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다면 안마사 이외의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라는 「헌법」 제34조 제5항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선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3. 평등권 관련

안마사는 일정기간 이상의 숙련이 필요한 자격으로 이는 2년간의 교육과정 기간 동안 충분히 익힐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학력을 기준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도 있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12. 3. 29.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2 2012. 4. 18.자 결정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 대책 마련 등 권고]

【결정사항】

- 【1】 국방부장관에게, 군복무로 인한 이명(耳鳴) 피해에 대한 실상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2】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명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치료보상 및 국가유공자 등록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우리나라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군 복무로 인한 이명 증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전체적인 피해 정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군이명 피해자들 중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바, 군 이명 피해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큰 반면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
- 【2】 또한 추가적인 군 이명 피해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군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바, 적어도 이명/난청의 위험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포병 등 고위험군 부대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청각검사 및 측정결과 데이터의 보관·활용, 개인 청력보호구 착용 의무화, 피해예방 교육 등 방안을 매뉴얼화 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과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군 전역자들의 이명(난청 포함)피해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피해실상을 확인 할 것.
 - 나. 소음노출 평가 및 예방교육, 주기적 검사와 보호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추가피해를 예방할 것.
 - 다. 각 군의 고소음 발생부대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소음측정 및 청력검사, 피해예방 교육, 관련 데이터의 보관 및 활용 등 관련 대응책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얼화 하여 시행할 것.
2. 국가보훈처장에게, 군이명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군병원 진료기록이 없는 피해자의 실효적인 치료보상을 위하여 입증책임 완화 등의 방법을 마련할 것.
 - 나. 상대적으로 높은 군 이명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명검사시 삶의 질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다. 국가유공자등록 청력검사에서 고주파영역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이명 피해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검사방법을 채택할 것.

【이 유】

I. 권고 배경

군이명피해자연대는 2010. 6. 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군생활로 인해 평생의 불치병인 이명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나 소음성 난청이 동반되어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여 신청자 대부분이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에서 탈락하고 있으니 군이명 피해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과 보상방법 및 예방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의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위 진정사건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나, 군 제대 후 귀울림 병을 호소하는 국민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II. 검토기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항, 제34조(사회보장) 제6항, 제36조(국민보건보호) 제3항

III. 군이명 피해자 현황 파악의 필요성

‘이명’이란 외부에서의 자극 없이 소리를 느끼는 증상을 말하며 ‘군이명’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이명증상을 말한다. 우리나라 군이명 피해자의 현황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는 진행된 바가 없으나 외국의 군이명 피해자 조사와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군이명 피해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임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과 군이명으로 인한 2차피해(우울증)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함께 살피고자 한다.

1. 외국의 군이명 피해자 현황

가. 미국

제대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군이명 피해자 조사를 한 미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대군인의 복무관련 장애중 이명이 9.5%의 비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는 6.6%의 난청이다.

<표1> 제대군인의 일반적인 복무관련 장애(미국)

장애	제대군인수	접유비
1. 이명	77,486	9.5%
2. 난청	54,450	6.6%
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3,129	4.0%
4. 요부 혹은 경부 염좌	30,086	3.7%
5. 건초염	29,079	3.6%
6. 무릎 굴곡장애	27,578	3.4%
7. 퇴행성 척추 관절염	25,682	3.1%
8. 당뇨병	23,508	2.9%
9. 일반 외상	20,089	2.5%
10. 외상성 관절염	18,334	2.2%
합계 - 가장 일반적인 장애	339,421	41.5%
종합 - 모든 장애	818,954	100.0%

출처: 미국 보훈부(FY 2009): <http://www.vba.va.gov/REPORTS/abr/index.asp>

나. 호주

호주의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의 전역 군인 권리보장법에 따른 장애신청의 상위 15개 질환에서도 1위인 변형성 관절증에 이어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이 2, 3위로 보고되고 있다.

<표2> 전역군인 장애신청질환(호주)

장애	계	비율	통과	통과비율	기준미달 건수
1. 변형성 관절증	2,810	20.9%	2,069	74%	741
2. 감각신경성 난청	2,147	16%	2,118	99%	29
3. 이명	2,010	15%	1,933	96%	77
4. 요추증	1,721	12.8%	1,423	83%	298
5. 일광성 각화증	981	7%	967	99%	14
6. 비후색성 피부 악성종양	878	6.5%	868	99%	10
7.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803	5.9%	624	78%	179

8. 후천성 백내장	709	5.2%	707	100%	2
9. 허혈성 심장질환	675	5%	442	65%	233
10. 고혈압	654	4.9%	208	32%	446
※ 호주 보훈부[보훈심사위원회 발간 '주요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점검에 관한 연구(난청 이명) 표7에서 재인용]					

다. 캐나다

캐나다에서 지급 승인된 전역군인의 장애인 연금 상위 10개 질환에서도 이명과 난청이 각각 1, 2위로 상위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3> 전역군인 장애인 연금 질환(캐나다)

지급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장애	이명	난청	슬내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요추 추간판 질환	만성 요통/염좌	공황 장애/불안 장애	평발	경추디스크	만성 견관절 충돌
※ 캐나다 참전용사의 목소리 http://www.veteranvoice.info/db/general_info_more.asp?search_fd0=474										

2.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소음에 노출된 군인들의 이명증상이 확인되는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문인석의 연구(Moon IS, Noise-induced hearing loss caused by gunshot in South Korean military service, Military medicine, 2007)에 의하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사격연습을 시행한 3,650명의 공군병사를 대상으로 사격 훈련 후 청력검사를 시행하였는바, 7명의 병사에서 소음성 난청(좌측 귀, 평균 33.1dB)이 발생하였고 10일간의 치료 후 청력은 치료시작 후 4일 ~ 72일 사이에 모든 환자에서 호전되었으나 이명은 개선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나. 장은철 등의 연구(장은철 등, 일개 공군부대의 소음 노출 작업자의 이명, 군진의학회지, 2004)에 의하면 일개 비행단 항공기 정비 작업자 4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바, 현 부서 근무 후 149명(33.2%)에서 이명을 경험하였으며, 그 중 56.2%는 양측 귀 모두에서 이명이 발생하였고, 14.4%에서는 수면장애를 겪었다. 난청은 113명(24.6%)에서 발생하였고 난청과 심한 이명을 16명(3.5%)에서 호소하였다.

다. 문성호 등의 연구(문성호 등, 0군단 지역에서의 소음성 난청 유행률 조사, 군진의학회지, 2006)에 의하면 1년 간 국군○○병원 이비인후과 내원 환자 중 사격으로 인한 난청 및 이명환자가 247명 (9.7%)을 차지하고 특정 포병대대 병사 327명을 대상으로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37명 (11.3%)에서 소음성 난청을 보였다.

라. 윤성호, 유지영의 연구(윤성호, 유지영, 군 사격훈련시 병사들의 소음성 난청 발생에 대한 연구, 군진의학회지, 2006)에 의하면 사격장예조교로 근무하는 38명에게 순음청력검사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바 이 중 7명(18.4%)이 이명을 호소하였고, 7명(18.4%)이 일시적 청력손실을 경험하였다. 이명이 발생한 7명의 청력검사역치(주파수별(125Hz - 8000Hz)로 순음을 들려주었을 때 각 주파수대에서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나 말)가 이명이 없는 31명의 역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마. 황성주·전태준의 연구(황성주·전태준, 귀 보호구의 착용이 소음성 난청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역학적 조사 연구, 군진의학회지)에 의하면 1991. 10. 30. ~ 1991. 11. 05.까지 전차 승무원 162명, 포병 2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바, 소음성 난청은 전차병 8.6%, 포병 11.9%에서 발생하였으며 복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소음성 난청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국가보훈처 연구 결과

국가보훈처가 2011. 6월 ~ 8월까지 진행한 군이명피해자연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명 관련 설문조사결과(총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중 설문완성도가 높은 295명분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표4> 이명장애지수와 우울증상

이명의 영향		N(%)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우울증 점수)]		p-value
			20점이하(%)	21점이상(%)	
이명장애지수	장애없음 (17점이하)	1 (0.3)	1(100.0)	0	< 0.001
	경도장애 (18-37점)	9 (3.1)	9(100.0)	0	
	중도장애 (38-57점)	59(20.0)	52 (88.1)	7(11.9)	
	고도장애 (58점이상)	226(76.6)	98 (43.4)	128(56.6)	
이명장애지수	57점이하	69(23.4)	62 (89.9)	7(10.1)	< 0.001
	58점이상	226(76.6)	98 (43.4)	128(56.6)	

가. 이명장애와 우울증상과는 서로 높은 관련성을 보이며 고도의 이명장애가 있는 집단에서 우울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장애와 우울증상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변수간의 인과관계 분석방법)결과 서로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이명으로 인해 직업을 전환한 경험, 치료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우울증세가 나타나는 비율이 현저히 높고 우울증 발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소결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경우 이명이 보상을 받은 장애유형 중 1 -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사례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격 훈련 등으로 인한 난청/이명 피해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의 군이명 피해자 모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명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2차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건군 이래 2010년까지 일반병에서 장교까지 전역자는 약 16,778,16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명 증상과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로 인한 이명피해의 정도가 전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 국가차원에서의 실태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다. 이명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안 등 대책 마련의 출발점은 정확한 이명 피해의 실태조사로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군 이명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군이명 피해자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나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현행 구제제도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행 구제제도와 외국 구제제도를 비교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기하기로 한다.

1. 현행 구제제도 개요

군이명 피해자들이 전역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방법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전역자 전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법」상 구제제도를 살펴본다.

가. 우리나라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軍警)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제도를 두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하고 있다(「국가유공자법」 제1조). 국가유공자에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인 공상군경(公傷軍警)이 포함되어(「국가유공자법」 제4조) 군이명 피해자도 공상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여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판정된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보상금, 보훈급여금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되며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된다(「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4항).

2. 이명상이를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가. 이명상이(耳鳴傷癢)를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귀의 장애 중 다. 준용 등급 결정 2)의 기준인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등록요건인 7급이 인정된다.

나. 청력의 측정은 2012. 1. 30. 이전에는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 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및 2,000(c) 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 $(a+2b+c/4)$ 으로 판정하였으나 2012. 1. 30. 이후에는 500(a) · 1,000(b) · 2,000(c) 및 4,000(d) 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 $[(a+2b+2c+d)/6]$ 으로 판정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3. 이명환자의 청각능력의 특성

가. 기존의 저주파영역 중심의 청력검사는 고주파영역에서 난청현상이 발생하는 군이명 피해자들의 청각능력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아 군이명 피해자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다는 비판이 있다. 2011년 연구 ‘고주파 난청과 이명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명환자 중 88%가 2kHz 이상 고주파에서 난청을 보이고 있다(Kim DK, Park SN, Kim HM, Son HR, Kim NG, Park KH, Yeo SW. Prevalence and significance of high-frequency hearing loss in subjectively normal-hearing patients with tinnitus. Ann Otol Rhinol Laryngol, 2011). 김규상 등이 행한 2002년 연구도 ‘이명과 청력역치’에 의하면 이명증상이 있는 집단이 2kHz 이상 고주파 영역에서 청력역치가 현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명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저주파영역에서는 난청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2kHz영역에서는 난청현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규상·정호근, 소음 노출 작업자의 이명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산업의학회지, 2002).

나. 국가보훈처는 청각능력검사의 합리성제고를 위해 2012. 1. 30. 부터 4000Hz인 고주파영역의 청력역치도 포함하여 청각능력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저주파영역 중심의 청력검사가 갖는 문제점을 다소 완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4. 외국의 난청/이명 장애판정기준

가. 난청 기준

군 관련 난청/이명의 평가 및 보상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호주, 캐나다, 미국 세 나라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2012. 1. 30.까지는 $(500 + 1000 * 2 + 2000) / 4$ 의 3구간 4분법으로 계산한 값은 양쪽 귀 상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 데 반하여, 호주, 캐나다, 미국의 경우는 다각도에서 난청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호주는 난청 장애등급 결정에 있어서 합산한 청력역치값뿐 아니라 삶의 질 계수를 함께 고려하며, 캐나다는 순음청력역치 합산에서 100dB 이상이거나 특정음역 4kHz에서 50dB이상이면 장애로 판정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미국은 순음역치 평균, 어음(語音) 명료도 점수, 보조검사를 통한 양이 상태 검사를 통해 이 세 가지 사항을 조합한 표를 이용하여 장애율을 결정하고 있고 전반적인 난청뿐 아니라 어느 한 주파수에서 심한 난청이 있는 경우 혹은 어음인식점수가 매우 낮은 경우 등도 추가로 장애로 간주하고 있다.

<표5> 국가별 난청판정 항목과 기준비교

구분	판정항목	판정기준	비 고
호주	- 500, 1000, 1500, 2000, 3000, 4000(Hz)의 순음청력역치별 청력손실계수 합산(APHL) - 연령조정 (59세 이상) - 삶의 질 계수	- 난청 형태/양이의 APHL/ 삶의 질을 고려하여 최종장애 등급 결정	호주보훈부 장애평가지침

캐나다	- 500, 1000, 2000, 3000(Hz)의 순음청력역치의 합산(DSHL) - 4000 (Hz) 청력역치 - 삶의 질 평가	- DSHL이 양이의 하나에서 100 dB 이상 혹은 - 4000 Hz에서 양이에서 50dB 이상 ; 위의 조건이 되면 장애테이블에서 등급결정	장애자격을 심사 지침 삶의 질 평가 지침
미국	- 순음청력역치평균 ; 1000, 2000, 3000, 4000 (Hz) - 어음명료도점수(메릴랜드 CNC) - (보조검사 - Stenger 검사, 고막운동성검사, 등골근반사)	- 순음역치평균 / 어음명료도 점수 / 양이 상태를 조합한 테이블로 장애유를 결정 ; 다음도 장애로 간주함. · 40dB이 한 주파수라도 존재 (500 Hz 포함) ·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26dB 이상인 경우(“) · 어음인식점수가 94% 미만인 경우	제대군인보상처(VBA) ; \$4.85 청취 감각장애 ; 청각심사 워크시트
한국	- 500, 1000, 2000(Hz)의 순음청력역치	(500+1000*2+2000)/4 의 3구간 4분법으로 계산한 값을 양이 상태에 따라 장애 등급 결정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이명 기준

다음으로 세 나라의 이명장애 판정기준을 살펴본다. 이 세 나라도 이명의 경우 질병 특성상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 정확한 판단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관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세 나라 모두 이명을 군복무 관련 질병으로 인정하는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난청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것에 비하여 외국의 경우는 난청과 독립적으로 이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 표는 호주, 캐나다, 미국 그리고 한국의 전역 군인 이명평가 항목 및 기준들이다. 호주의 경우 이명여부에 대해 의사가 참여한 구술심리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삶의 질이 평가되었다. 실제로 이명은 역학적 특성상 단순한 크기를 파악하는 것보다도 크기와 형태가 같은 이명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이명의 심각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요소로 판단된다.

<표6> 국가별 난청판정 항목과 기준비교

구분	항목 (평가)	장애율(%)	기준	비 고	
호주	- 이명 유무 구술 심리 (의사참여) - 삶의 질 평가 (설문 조사-자유 선택, 비선택시 의학적 평균치 적용)	독립	0	이명이 없거나 간헐적인	호주 보훈부 장애평가 지침 (140p)
			2	약한 이명이 있지만 매일 발생하지는 않는	
			5	매일이명이 일어나지만, 많은 시간은 견딜 수 있는	
			10	심한 이명, 매일 발생하여 마스크 장치가 필요한 거의 심각	
			15	매우 심각한 이명, 휴식을 방해하고, 집중력을 잃게 하며, 극단의 불편함을 야기, 주기적 수면에 방해, 매일 발생	
캐나다	- 이명 유무 구술 심리 (6개월 이상 이명을 경험한) * 복무시 소음노출 - 3000, 4000, 6000 (Hz) 중 하나에서 25 dB 이상의 청력 손실 - 삶의 질 평가 (설문)	독립	0	주당 1회 미만 돌발성	장애자격 심사지침 (기타장애- 이명표 9-3)
			1	주당 1회 이상	
			3	일일 1회 이상	
			5	24시간 발생, 처방적 억제장치나 물리치료는 필요치 않음 비처방적 장치(예: 라디오) 사용이 필요할 수 있는 상태	
			10	24시간 발생. 의학적 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태	
미국	- 이명 유무 구술 심리 (州면허 Audiologist 가 워크시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구술 심리)	독립	10	이명에 관한 진술유무와 현재의 이명여부, 발병일자와 환경, 발병 후 생활환경등 관련 진술을 통해 판정	제대군인보상처(VBA) 청각심사워크시트; 이명10% 장애등급 허가
한국	- 이명검사 (Tinnitusgram)	조건	7 등급 - 3회 이상의 검사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검출 - 하나 이상의 귀에서 50dB의 청력 장애의 난청 동반 - (이명에 반드시 난청이 50dB이 동반되어야 함. 이명+난청 혼합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5. 현 구제제도의 문제점

가. 현 구제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군이명 피해자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3028 사건 진정인이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군 이래로 준용등급 7급(이명+난청 혼합법)이 포함되어 있는 상이등급 7급 302호 국가유공자는 총309명이다. 이 수치에는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명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 수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군이명으로 보상대상으로 인정을 받은 수가 전체 상이유형 중 1~3위를 차지한 점, 제대군인의 9.5%에 이명장애가 있다는 점, 캐나다의 경우 1년 동안 (09년부터 10년 사이)에 이명장애자가 1,933명이 확인된 점을 종합하면 건군 이래 약 17,000,000여 명이 전역한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의 이명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실상 거의 대부분 이명피해에 대해 치료 및 보상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7> 청각상으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인원수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등급별 인원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자	3급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175명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9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dB 이상 골전도 30dB 이상의 하강(下降)이 있는 자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221명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 1항3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 하강이 있는 자 	461명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 애가 있는 자	7급301호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 의 하강이 있는 자	222명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 애가 있는 자	7급302호	·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 이 있는 자	309명
준용등급 7급(이명+난청혼합법)		·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usgram)에서 모 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해야 7급을 인정한다.	
※ 군이명피해자연대가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자료이다.			

다. 군이명 피해자가 국가에 의해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군부대의 특성상 군이명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이 어려워 이명피해가 군생활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의 어려움, 둘째 이명피해와 군생활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이명으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점, 특히 이명증세가 있을 뿐 아니라 한쪽 귀 청력역치가 50dB이상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난청장애로 인한 산재보상 기준인 40dB보다 높은 점, 셋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난청검사방법이 저주파영역(500, 1000, 2000Hz)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주파영역(4000Hz이상)에서 난청현상이 특징적인 이명피해자의 난청을 잡아내기 어려웠던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구제제도는 앞의 검토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명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개선 방안

가. 인과관계 입증 부분

군이명 피해자들이 이명피해가 군생활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명과 난청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 등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명/난청인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병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994년 이전에는 일부 진료기록 보존연한이 4년이어서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폐기되어 진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치료혜택(「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을 받는데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 대하여는 관련 군병원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입증책임의 정도를 완화시켜 실효적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예를 들면 인우 보증을 입증방법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부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군이명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완화내용으로는 현행의 이명/난청 동반규정에서 난청부분을 떼어내고 이명만으로 유공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난청부분을 포함시키더라도 산업재해(업무상 질병)의 소음성난청 인정기준과 같이 청력역치를 40dB로 낮추는 방법 그리고, 호주 및 캐나다와 같이 이명검사에 삶의 질과 사회적 활동에 이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방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지원제도에 다양한 보상이 포함되어 재정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명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서 난청요건을 즉시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기준과 같이 청력역치를 40dB로 낮추는 것과 이명검사 시 삶의 질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청력역치 검사 부분

이명환자들이 저주파영역에서는 정상의 청력역치를 보이더라도 고주파영역에서는 높은 청력역치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명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저주파영역 위주

의 난청검사를 하는 것은 이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왔다. 2012. 1. 30. 기준으로 고주파 영역인 4000Hz에서의 청력역치를 포함시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일부 제고하였으나 이명 증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4000Hz 이상의 고주파 영역 청력역치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방안, 6000 ~ 8000Hz이상의 초고주파영역의 청력역치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 저주파영역과 고주파영역의 청력역치의 평균값이 아니라 고주파영역에서의 청력역치 값만으로 난청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이명상이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V. 이명/난청 피해 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도 군복무로 인한 이명/난청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예방방안 마련이 이미 피해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대한 구제방안 모색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산업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의 개요를 살펴보고 복무중인 군인들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산업현장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개요

가. 우리나라는 군인에 대한 종합적인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군인의 소음노출과 관련한 주기적인 청력검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현장의 소음노출 근로자에 대한 소음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및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은 군인의 청력보존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여 산업현장의 청력보존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본다.

나. 산업현장에서의 청력보존프로그램은 작업장에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1983년부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일일 8시간 평균 90dB를 넘을 때는 소음제어를 실시하고 85dB를 넘을

때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소음 수준이 90dB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 장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 청력보존프로그램은 1) 소음측정, 2) 공학적 소음제어와 행정적 관리, 3) 청력보호구 착용, 4) 청력검사 및 의학적 판정, 5) 보건교육 및 훈련, 6) 기록보관, 7) 프로그램 효과 평가 등 총 7개의 요소로 종합 구성되어 있다(www.kosha.or.kr).

2. 군대에서 청력보존프로그램 적용이 갖는 의미와 한계

청력보존프로그램의 각 절차가 군대에 적용되었을 때 갖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소음측정은 군대에서의 소음 등 이명/난청 발생 위험인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소음 발생원을 파악하여 이명/난청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군대의 경우 병과별 소음발생원의 특징이 뚜렷하므로 이의 실태파악을 위해서도 소음측정이 필요하다.

나. 공학적 소음저감 대책은 장기간 소음노출과 관련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소음문제는 발생원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방법이며 산업현장에서는 소음의 발생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군대에서는 훈련과정에서 소음발생이 불가피하여 공학적 대책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청력보호구 착용은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앞에서 살펴본 황성주, 전태준의 ‘귀보호구의 착용이 소음성난청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역학적 조사연구’ 결과가 보여준 바와 같이 귀마개를 사용한 포병 10명에서는 소음성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귀마개를 사용하지 않은 병사 중에서는 12.4%의 인원이 소음성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그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력검사는 이명과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병사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병사들에 대한 이명/난청에 대한 교육은 병사들이 그 위험성을 인식케 하여 스스로 소음노출을 주의하게 하여 이를 예방하는 출발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보관과 효과평가는 예방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군복무로 인한 이명/난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군대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소음노출 측정 평가, 청력의 주기적 검사, 소음노출 예방교육, 공학적 개선 등의 소음노출 저감, 청력보호구 착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어도 이명/난청 발생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포병부대 등에 대한 소음측정, 고위험군 부대원 등에 대하여 입대 시, 제대 시, 매 1년마다 그리고 주요 훈련 직후 청각검사 실시, 개인 청력보호구 착용 의무화, 부대원들에 대한 이명/난청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측정결과 데이터의 보관 및 예방대책 마련 시 활용방안을 매뉴얼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V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8.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3

2012. 10. 11.자 결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사항】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2012. 8. 24. 국회에 제출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묘지안장 규정’ 및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족을 ‘전몰군경 유족의 지위로 대우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 【1】**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북한 내에서 갖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아 왔으며,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의 가족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2】** 따라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군포로의 명예와 유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 및 그 유족들을 전몰군경 유족의 지위로 대우하도록 하는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제11조,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18조·제120조

【주 문】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2012. 8. 24. 국회에 제출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 1. 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묘지안장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 2.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 유족들 중 국내에 입국한 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이들을 ‘전몰군경 유족의 지위로 대우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유】

I. 의견표명 배경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동 법률 개정안은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위 개정안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II. 판단기준

가. 「헌법」 제10조, 제11조

나.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18조 및 제120조

III. 판단

1. 국군포로 관련 인권상황

가. 한국전쟁 이후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는 북한 내에서 최하층인 적대계급으로 분류되어 전후 복구사업에 동원되거나 탄광에 배치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갖은 인권침해를 당해왔다.

나. 국군포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북한의 엄격한 계급제 신분사회와 연좌제로 인하여 대학 진학이나 취업과 승진, 군 입대, 당원 배제 등 갖은 차별을 받으면서 체제에 반하는 발언이나 비판을 할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에 잡혀가 실종되는 등 일상적인 감시와 처벌 속에서 생활했다.

다. 억류지 출신 포로와 그 가족들은 이런 일상적인 차별과 고통 속에

생활하다 1994년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억류지를 탈북하여 귀환한 포로는 80명(24명 사망, 56명 생존), 탈북한 억류지 출신 국군포로 가족들도 91가족 320여명(2012. 8.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라. 이들은 국내에 정착하기까지 귀환과정에서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억류지 출신 국군포로 가족들은 북한 내에서 상대적으로 교육받을 기회 차별로 인한 저학력, 탄광촌이라는 열악한 생활환경과 빈곤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해 일반 탈북자들 보다 취업 등 국내 정착과정에 가중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 따라서,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명예와 그 가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사망한 국군포로의 묘지안장 등에 관한 규정 신설의 필요성

가.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18조 및 제120조에 따르면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하고, 사망한 경우 분묘의 목록 및 묘지와 기타의 장소에 매장된 포로들에 관한 명세서는 그 포로들의 소속 국에 송부하여야 하며 본국의 희망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때까지 분묘 등록 기관이 보관하는 유골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제네바협약을 지키지 않고 국군포로를 강제로 억류하고 있으며,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분묘 등의 명세는 물론 유골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교섭 및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금번 개정안이 15조의4(국군포로에 대한 예우)를 신설하여 억류지 사망 국군포로에게도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법에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다.

라. 현행 법령상 유해로 송환된 국군포로의 경우에도 국방부의 6.25 참전 유공자 인정을 통해 국립호국원 안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안장을 위해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국방부에 6.25참전 유공자 인정을 받을 때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라목(6.25 전쟁에 참전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에 따라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마. 따라서 국내법령에 익숙하지 못하고 탈북하여 한국사회에 적응하기도 벅찬 억류지 출신 국군포로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해로 송환되는 국군포로의 대우에 관한 규정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이를 법에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개정 법률에 이들을 전몰군경 유족의 지위로 대우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의 필요성

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었던 국군포로들의 경우 1998년 4월 국방부 정책에 의해 '전사'로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남한에 있던 가족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전몰군경' 유족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받았다.

나. 그런데 전사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억류지에서 남아 있었던 국군포로(북한에서 사망)가 결혼하여 생성된 가족이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하였을 때에는 전몰군경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전몰군경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물론 국가가 이들을 ‘전사’로 처리(사망시점은 1953년 휴전협정 이전의 실종시점임)한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반적인 적용은 곤란할 수 있다.

다. 억류지 출신 국군포로나 그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적대계급으로 분류되어 북한 내에서 온갖 인권침해를 받았던 이들의 인권문제는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발생한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이를 해결 할 수는 없으며, 결국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입법적인 조치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는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라. 따라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하기 위하여서는 특별법인 개정 법률에 이들을 전몰군경 유족의 지위로 대우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2012. 10. 11.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4 2012. 10. 25.자 결정 [형법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결정사항】

- 【1】 국회의장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 삭제, 「형법」 상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규정 신설,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객체를 성중립적으로 변경, 강간죄 성립에 폭행·협박의 정도요건 완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장애인 준강간죄 규정을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 친족성폭력의 ‘친족’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 포함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 【2】 법무부장관에게, 위 내용과 같이 「형법」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친고죄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중대한 공백을 발생시키며, 합의종용·협박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성폭력을 단순히 개인 간의 범죄로 인식케 하는 문제가 있는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폐지가 필요함.
- 【2】 현행법상 비장애 성인에 대한 유사성교행위는 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면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적행위로 인한 피해는 강간 피해와 다르지 않아 「형법」에서 유사성교행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현행법상 성인남성은 강간죄의 보호객체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성폭력은 성별이나 성적지향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강간죄 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범죄의 보호객체를 성중립적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4】 강간죄 성립에 대해 판례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는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을 축소하고 성폭력범죄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바, 폭행·협박의 정도요건을 완화하는 「형법」 개정이 바람직함.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죄는 「형법」의 준강간죄 규정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심신상실에 준하는 ‘항거불능’을 요건으로 하여 장애인의 특성 등을 간과한 것인바, 장애인 준강간죄 규정은 그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에 의한 강간죄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거하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의한 것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인바,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당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참조조문】

「육군규정 000」 제62조 및 제65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형법」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1. 국회의장에게,

첫째,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관련 조항인 「형법」 제306조 및 제296조, 「군형법」 제92조의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강간죄 행위유형과 관련하여 「형법」에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셋째, 강간죄 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범죄의 보호객체를 성중립적인 ‘사람’으로 변경하고,

넷째, 강간죄에 대한 최협의(最狹義)의 폭행·협박의 정도 요건을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 등,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형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섯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장애인 준강간죄 규정을 도입한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여섯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친족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당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위 의견표명의 내용과 같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의견표명 및 권고의 배경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강력한 대응 여론에 힘입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다양한 재범방지정책이 도입돼 왔는데, 이는 기본법인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을 여러 차례 제·개정하는 형식을 통해 이뤄져왔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조치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기소율이나 유죄선고율도 낮아 현행 법률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본적인 범죄인 성폭력범죄를 「형법」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 규율하여 야기된 일반법과 특별법의 이원화 체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어왔다.

「형법」은 성폭력법제의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1995년 제32장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하였을 뿐 1953년 제정 이후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어온 핵심적인 사항의 대부분이 「형법」의 강간죄 등의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궁극적으로는 기본법인 「형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관련법률이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형법」 등 성폭력 법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권고하기로 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2조 및 제3조를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19(여성에 대한 폭력, 1992년), 제5·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2007년) 및 제7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1년),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최종견해(2006년), 제1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2008년) 등을 참고하였다.

III. 판단

1. 친고죄 규정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6조는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의 성폭력범죄 중 강간 등 상해·치상죄(제301조)와 강간 등 살인·치상죄(제301조의2) 및 성폭력범죄 상습범(제305조의2)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15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 제1항),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2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2012. 2. 개정을 통하여 「성폭력특례법」 상 친고죄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 제1항)도 종전의 반의사불벌죄에서 비친고죄로 전환하였고, 다른 두 개의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여전히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성인 대상 「형법」 상 강간·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그 미수범,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친고죄 규정은 범죄를 소추하여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의 원만한 유지를 위하여 그 소추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여 범죄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으로 공익보다 사익을 더 중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존치하는 이유로 거론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보호이다. 그런데 친고죄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친고죄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낮은 처벌률을 초래한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2007~2010년 성폭력범죄 구속률은 평균 18.9%로 전체범죄 평균 구속률(2.5%)보다 거의 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성폭력범죄 기소율의 평균은 42.7%로 전체범죄의 기소율 평균(46.1%)보다 낮다. 또한 친고죄 여부에 따라 기소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가령, 검찰청의 검찰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죄의 평균 기소율이 50%에 가까워 전체범죄 기소율보다 다소 높은 반면 친고죄인 강간죄의 경우 15% 정도로 전체범죄 기소율에 비해 매우 낮다.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폭행·협박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폭력범죄이지만 친고죄 여부에 따라서 기소율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친고죄가 기소율에 미치는 영향은 불기소 사유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고소가 취하된 사건은 소추요건이 구성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되는데, 성폭력범죄의 불기소 사유 중 ‘공소권 없음’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친고죄 조항의 부정적 영향은 친고죄인 강간죄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비율 평균(73.0%)이 전체범죄 공소권 없음 불기소비율 평균(31.5%)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의 경우 이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평균 7.6%) 나타난 데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기소율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 심각한 공백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다.

둘째,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09~2011년 성폭력 상담사례 총 3,739건 중 친고죄 관련 고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451건을 분석한 결과, 친고죄 조항으로 인한 피해유형은 고소 여부 결정 관련 중압감(191건, 37.3%), 가해자 측에 의한 피해(139건 27.2%), 수사·재판기관에 의한 피해(68건, 13.3%), 고소기간도과(65건, 12.7%), 피해자 지인에 의한 피해(28건,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가해자에 의한 피해 중 가장 많은 것이 합의종용(43.2%)이었고, 수사·재판 기관에 의한 피해 가운데서도 합의 권유 및 종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5.6%).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을 숨겨야 하는 경험이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 대응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고소를 망설이기도 하는데, 친고죄 조항은 이러한 두려움을 강화시켜 피해자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여기에 가해자 측과 수사·재판기관 등의 합의종용 등으로 피해자의 고소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를 기준으로 고소된 사건만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친고죄 조항의 영향 때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여 2차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비친고죄로 규정된 성폭력범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합의여부가 실제 실행과 집행유예 판결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우선적으로 매달리게 되면서 이로부터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합의에 의하여 형사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친고죄 특징으로 인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가족, 지인, 직장 등에

까지 접촉을 시도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고, 성폭력 사실의 공개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친고죄 존치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친고죄를 폐지하면 가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것인데, 처벌과 보상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며, 고소 전 합의를 통한 정신적·물질적 피해회복이라는 명분은 친고죄로 인하여 가해자 측이 과도한 합의종용이나 협박 등의 2차 피해를 가함으로써 그 정당성이 퇴색된다.

셋째, 친고죄 규정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강화하고 실효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친고죄 폐지가 성폭력 피해자의 숨기고 싶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통념과 편견,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왜곡된 성문화에 기인한다는 점,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비친고죄인데 이들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궁극적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강화시키고 극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쉽게 고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강간죄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형벌권의 발동 여부를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성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이해하게 하고, 더욱이 합의를 통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 간의 용서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강화시킨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회적 통념이나 편견 때문에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 보호의 문제는 형사절차상의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여 달성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 부담을 높이고 합의종용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장을 위해 현행법은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영상물의 촬영·보존, 심리의 비공개, 증거보전의 특례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실제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면 이를 보완하여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를 보다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높은 고소율과 처벌의 확실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에도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에 이어 2011년에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친고죄 조항과 이로 인한 낮은 기소율 및 유죄 선고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형법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2008년 제1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친고죄 폐지가 있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간죄를 비롯한 성폭력범죄 일반에 대한 친고죄 규정(「형법」 제306조 및 제296조, 「군형법」 제92조의8)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특례법」 제15조(고소) 규정의 삭제 또한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 제1항)는 「형법」의 강제추행죄보다 행위 불법 등이 가중되어 별도의 구성요건을 마련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형법」의 강제추행죄에서 친고죄 적용을 배제한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도 비친고죄로 함이 타당하다. 친고죄 대안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형사소추 저지 결정권이 피해자에게 있어 발생하는 부담이나 합의중용에 따른 문제는 여전히 남고,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피해자에게 형사소추를 저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 제1항)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제11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제12조)에 대한 친고죄 규정(제15조),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제16조) 또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강간죄 행위유형 규정에 대한 판단

「형법」은 간음행위와 추행행위의 2개의 유형만 규정하고, 그 중간의 행위인 남성성기의 (남성 또는 여성의) 항문 또는 구강에의 삽입,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분 또는 도구를 이용한 여성성기, (남성 또는 여성의) 항문 또는 구강에의 삽입 등의 유형(이하 “유사성교행위”라 한다)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성폭력특례법」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과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2항에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성교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전자의 보호객체는 장애인 및 13세 미만의 자이고 후자의 보호객체는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는 아동·청소년에 한정된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5도 유사성교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으로 남성간의 항문성교를 의미하는 계간을 추행의 일종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유사성교행위의 경우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비장애 성인에 대하여서는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현저히 낮은 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

폭행·협박에 의한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역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데도 강간죄를 ‘남성성기 삽입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개념으로 한정하는 것은, 강간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아니라 여성에게만 발생 가능한 범죄라는 사고에 기반하여 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공고히 하는 것인바, 이러한 개념 하에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비교법적으로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의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신체 삽입”에 두는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필리핀 등은 강제유사성교행위를 간음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 독일 「형법」은 성적강요죄와 강간죄를 같은 조문에 규정하고 성적강요죄를 성범죄의

기본범죄로서 구성하여 여기에 행위불법으로 인한 형벌가중 구성요건으로 강간죄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간음행위와 신체삽입과 연관된 유사성교행위를 동시에 강간행위로 보고 있다. 프랑스 「형법」은 강간을 “사람에 대한 성적 삽입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성적 삽입행위’란 그 종류를 불문하기 때문에 남성성기의 여성성기에의 삽입뿐만 아니라 성기의 항문·구강에의 삽입 또는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분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또한 포함된다. 영국의 「성범죄법」은 간음행위를 강간죄로, 유사성교행위를 삽입을 통한 성폭력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법정형은 중신형으로 동일하다. 미국의 경우 간음행위에 남성성기의 여성성기에의 삽입 이외에 남성성기의 항문에의 삽입 또한 포함시키고 있으며, 주법도 대체로 ‘성교’를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필리핀도 1997년 「형법」을 개정하여 종전에 여성성기에의 남성성기의 삽입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성기나 도구 등을 이용한 삽입이나 구강성교·항문성교도 강간으로 확장한 바 있다.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할 때, 남성성기의 여성성기에의 삽입 이외의 성적행위나 동성애자 간 성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행해진다면 그 피해는 현행법상 강간의 피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성폭력특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유사성교행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유사성교행위를 강간죄로 포섭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성기의 여성성기에의 삽입 외에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등 유사성교행위를 아동·청소년 등 특정 대상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형법」에 포섭하여 성폭력범죄의 행위유형으로 규정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형법」의 강간죄 규정에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하는 방안, 강제추행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조항에 유사성교행위와 강간에 관한 죄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3. 강간죄 보호객체 규정에 대한 판단

「형법」은 제297조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로,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로 규정하여 강제추행죄의 대상을 ‘사람’으로 한 반면,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은 2011. 9. 종전의 “여자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그 보호객체를 성중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상의 염색체는 남성이지만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여성이 된 자가 강간죄의 보호객체가 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가지고 여성으로서 생활을 영위해 온 자는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6. 11, 96도791),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의 경우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9. 9. 10, 2009도3580) 판례 변경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변경 또한 여성으로 성전환한 자를 ‘부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뿐, 여전히 현행법상 강간죄 보호객체에서 남성은 제외되어 있다. 남성 또는 여성이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남성을 간음한 경우는 법정형이 훨씬 낮은 강제추행죄에 따라 의율되고 있다.

그런데 간음행위가 남성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남성동성애자 간 또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통한 성적침해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성적침해행위 역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성적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년 상담사례 자료에 의하면,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전체 사례의 4.6%(54건)이고 이 중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72.2%(3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특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은 유사성교행위를

인정하면서 그 보호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행위유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할 경우 간음행위 객체에도 남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그 보호객체에 남성도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성인으로 확대하여 「형법」에 포섭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입법례도 강간죄의 보호객체를 성증립적으로 규정하는 추세인데, 독일(「형법」 제177조), 프랑스(「형법」 제222-23조), 영국(「성범죄법」 제1조 및 제2조), 미국(「미연방법전」 제2241조 및 제2242조) 등은 강간죄의 보호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하여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강제적인 삽입행위를 간음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 필리핀도 1997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보호객체를 ‘여성’에서 ‘사람’으로 변경한 바 있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할 때 성폭력은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중대한 범죄로 취급해야 할 것인바, 따라서 강간죄 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범죄의 보호객체를 성증립적인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요건에 대한 판단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 판례와 통설은 이에 더하여 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대하여 이른바 가장 강한 정도를 요구하는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성교에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음에 불과하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가 반항을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므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9. 2. 13, 78도1792, 1991. 5. 28, 91도546, 2007. 1. 25, 2006도5979 등).

그리고 우리 판례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폭행·협박 자체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연령·건강·정신상태, 행위의 장소·시각, 범행수단이 된 도구,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이른바 '종합적 판단기준설'(대법원 1992. 4. 14, 92도259 등)을 취하고 있다. 이때 제반사정의 내용으로 주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피해자의 구조요청 유무, 강간 과정이나 강간 후의 피해자의 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이다.

최협의 폭행·협박설에 의할 때, 강간죄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저항은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데, 피해자가 저항하는 경우 강간을 할 수 없고 저항을 제압할 만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야 강간이 성립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진정성의 확인은 완강한 저항을 통해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저항은 완강한 저항일 것이 요구된다. 이는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강간행위에 저항할 것을 요건으로 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피해자에게 강간시도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항거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강간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고 자신을 지키려는 피해자는 죽을힘을 다해 저항하는 것이 도리'라는 왜곡된 강간통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강간행위에 대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두려움이나 공포, 당황감으로 인하여 그 상황을 포기하는 등 강간행위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태도나 경험의 차이를 간과하고 일률적으로 반항의 유무 및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종합적 판단기준설의 경우, 그 근본취지는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이 강간죄 인정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를 개선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좀

더 유연하게 강간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판례상으로는 오히려 강간죄의 성립 범위가 더욱 좁아지고 엄격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위하여 열거된 제반사항 각각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많은 판례에서 강간죄 성립여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온 구조요청 여부와 관련하여,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여러 복잡한 요인으로 침묵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처한 심리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 판례에서 침묵 또는 대화를 성교에 대한 승낙으로 해석하는 것은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를 선택할 수도 있는 등 피해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이 간과되었다는 문제,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소 아는 사이일 경우 강간죄를 부정하는 판례의 입장과 관련하여서는 상당수의 성폭력범죄가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연방법전」 제2241조(가중 성적강요죄)와 제2242조(단순 성적강요죄)에서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협의의 폭행 정도만을 요구하면서 폭행에 의한 강간죄의 경우에는 그 불법이 크다는 것을 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폭력에 의한 성적 강요죄의 경우에도 저항요건을 폐지하거나 저항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극도의 저항’에서 ‘진지한 저항’ 또는 ‘합리적 저항’으로 그 정도를 완화하는 판례들이 정립되어 있다. 영국의 「성범죄법」은 행위유형을 불문하고 폭행·협박이라는 행위수단을 요구하지 않으며, 성적인 삽입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모두 성범죄가 성립하고 그 법정형이 중신형이라는 단일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의 강제추행죄 같은 성적강요죄와 강간죄를 한 조문으로 구성하여 성적 강요죄를 기본 구성요건으로 하고 강간죄를 성적강요죄의 행위불법으로 인한 가중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성적강요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에도 그대로 적용하며, 성적강요죄의 폭행은 폭력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족하고 또한 현실적인 저항이 없었더라도 저항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면

족하기 때문에 협의의 폭행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의 1997년 개정 「형법」은 강간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어떠한 저항이라도 표현했다면 이는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격렬한 저항이나 몸부림을 하지 않아도 인정하고 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행법상으로도 폭행·협박에 대한 다른 수식어가 없어 이를 한정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미흡함에도 해석론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배치된다. 최협의의 해석에 의할 때에는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협박을 사용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침해가 발생했는데도 강간죄가 되지 않는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을 축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불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다. 강간죄에서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을 취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무고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을 기준으로 할 때 분별될 수 있다는 것인데, 무고의 가능성은 모든 범죄에 존재하는바, 강간범죄에 한해 무고 가능성을 더 경계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간죄의 성립요건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요건을 완화하여 이를 「형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 입법 방안으로서, 가령 독일 「형법」처럼 강제추행, 유사성교행위, 강간의 죄를 하나의 조문에 포함시키되, 강제추행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설정하고 강제추행죄의 가중 구성요건으로 강간죄나 유사성교행위를 규정하는 것과 같이, 폭행·협박의 정도를 나누고 강간죄 등의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강간죄에 있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방안, 강간죄와 강제추행의 강제력행사 수단을 단순한 폭행과 협박으로 상정하고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를 가중구성요건으로(가령, 중강간) 체계화하는 등 그동안 전문가들이 제시해온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장애인 성폭력 관련 규정에 대한 판단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구 「성폭력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경우 「형법」상 강간죄의 예에 의하도록 하는 준강간죄 규정을 두었는데, 준강간죄 또한 판례나 통설상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것이 요구되었다(대법원 2003. 10. 24, 2003도5322, 2000. 5. 26, 98도3257 등). 그런데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인 상태’에는 사리분별이 불가능하여 성적침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증 뇌성마비와 같이 신체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해당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성적침해에 현저히 저항하기 곤란한 경우는 해당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대법원은 완화된 해석론을 전개하여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도 ‘항거불능’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장애 정도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가해 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7. 27, 2005도2994). 하지만 우리 판례는 장애인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의 해석에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형법」상 준강간죄와 같이 심신상실에 준하는 정도의 장애를 요하는 판결(가령, 대법원 2003. 10. 24, 2003도5322)과 장애 이외의 정황요소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07. 7. 27, 2005도2994)이 공존하고 있고, 하급심에서는 항거불능 요건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가령, 수원지방법원 2009. 11. 27, 2009고합351).

이렇듯 그동안 ‘항거불능’이라는 개념지표에 대하여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이를 완화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판례의 태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이라는 문구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 2011. 11. 개정 「성폭력특례법」 제6조 제4항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2011. 11. 법률 개정으로 종전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라는 규정에서 ‘항거불능인 상태’를 삭제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형법」 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약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성폭력을 처벌함으로써 성폭력에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보호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특례법」 제6조 제4항이 종전 규정에서 ‘항거불능’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대신 「형법」 상 준강간죄를 직접 인용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형법상의 준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형법」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항거불능’은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태’로 해석된다는 기존 판례의 엄격한 태도에 의하게 되면 「형법」 상 준강간죄처럼 장애인인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중증장애’ 상태임을 요구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거나 외부에의 표현이 어렵거나 그 실행이 곤란·불가능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을 거절하는 방법을 모르고 가벼운 위력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는데, 이들에게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 등을 간과한 것이다.

미국 「연방법전」 제2242조 제2호는 피해자가 행위의 특성을 계산할 수 없는 무능력자나 그러한 성행위를 거절하거나 저항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신체적 무능력자와 고의적인 성행위를 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는데, 이 때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행위수단은 성립요건이 아니며 다만 정신적·신체적인 무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를 하면 충족되는 것이다. 독일 「형법」 제179조 제1항은 “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을 포함한 정신장애, 또는 심각한 의식장애로 인하여 또는 신체적

으로 저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을 그 저항무능력을 이용한 성적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행위에 있어 폭행·협박 등이 필요치 않고 단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한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구 「성폭력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죄는 ‘항거불능인 상태’가 인정되면 폭행·협박, 위계·위력이라는 행위수단을 요건으로 하지 않거나 완화한 해석으로도 강간죄가 성립되는 예외적 조항이었고 다만 ‘항거불능’ 성립의 해석이 문제가 되어온 것이다. 그런데 2011. 11. 개정된 「성폭력특례법」 제6조 제4항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 조항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장애인인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입증토록 요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그동안 장애인성폭력의 특수성을 간과하였다고 비판되어온 ‘항거불능’이라는 요건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된 것이다.

장애인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이 문제가 되어 온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형법」상 강간죄에 대한 최협의 폭행·협박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형법」을 개정하여 최협의 폭행·협박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법」개정 이전에라도 「성폭력특례법」 제6조 제4항에 대하여 「형법」상 준강간죄를 직접 인용하는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 규정을 도입한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6. 친족에 의한 성폭력 관련 규정에 대한 판단

「성폭력특례법」 제5조는 친족에 의한 강간죄를 「형법」상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친족에 의한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친족에 의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다(동조 제4항).

현실에서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데, 「성폭력특례법」 제5조의 규정상 포함되지는 않지만 동거하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의 피해경험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의한 것과 동일하거나, ‘동거’한다는 점에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의한 것보다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제5조를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과 권고를 하기로 결정한다.

2012. 10. 2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5

2012. 12. 6.자 결정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결정사항】

- [1]** 통일부장관에게, 하나원의 보건의료 인력을 총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초기에 안정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북한이탈주민의 보건의료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
-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초기 안정적 진료를 위하여, 관계부처에서 하나원의 정규 보건의료 인력 증원 요청 시 협력하도록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 [1]** 북한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탈북과정에서 건강상태가 피폐된 북한이탈주민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함.
- [2]**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의료시스템 차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혼란을 줄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접근권 강화가 필요함.
- [3]** 의료서비스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건강상태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원 퇴소 이후에도 정기 건강검진수진율을 높이기 위한 안내 및 상담을 강화하여야 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제17조·제21조·제31조 제4항·제37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조 제1항·제19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권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1. 통일부장관에게,

- 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 정규 보건의료 인력을 충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초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보건의료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원의 진료 프로그램과 하나센터,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등과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 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원 퇴소 이후 안내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입국 초기에 안정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련부처에서 하나원에 정규 보건의료 인력 증원 요청 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유】

I. 의견표명의 배경

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유지는 취업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의 최우선적 과제이며 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건강권은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와 건강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권리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국가의 이행의무를 수반하게 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북한인권 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진정이나 상담사례에도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건강문제를 호소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이들의 전반적인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바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에 위원회는 이들이 건강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강권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II. 판단기준

「헌법」 제10조·제34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료급여법」 제3조 제7항을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 등을 참고하였다.

III.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현황 및 실태

1. 북한이탈주민 신체건강 상태

가. 2011년도 인권위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이하 '실태조사'), 신체 건강에 대한 응답은 좋은 편이다 27.6%, 나쁘다 32.6%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시점에서 최근 한 달 간 신체 통증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았다는 응답이 65.3%에 달하고, 구강 건강에 대해서도 48.2%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비율도 32.1%에 달하고 있다.

나. 주로 위장병, 허리디스크, 고혈압, 관절염, 심장병, 신경통, 결핵, 당뇨, B형 간염 등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폭력피해 탈북여성 맞춤형 자립지원방안 연구(2012년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동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탈북여성 70.0%가 만성적인 질환이 있으며, 위장질환 32.9%, 관절염 28.6%, 신경통 22.1%, 심장질환 19.3%, 치과질환 21.4%, 정신과 질환 17.1% 등으로 나타났다.

다. 이는 북한 내에서 식량난,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과 탈북 후 제3국 체류 시 강제복송 위협으로 인한 은둔 생활 등으로 인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이탈주민 정신(심리)건강 상태

가. 실태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신 건강은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17.0%인 반면 나쁜 편이라는 응답이 34.8%로 나타났으며, 특히 조사 시점으로부터 최근 한 달 간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28.5%,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는 66.9%로 높게 나타났다.

나. 특히, 이들 중 다수가 지속적인 긴장감과 우울한 감정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정신적인 고통으로는 외로움, 우울, 불안, 불면증, 정신적 혼란 등을 호소하는 등 대부분 한국 입국 후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여성가족부 조사결과도 이와 유사한데, 응답자 중 26.4%는 우울장애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는 전국 성인의 우울장애 발생률 6.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라. 이러한 원인은 강제복송에 따른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들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 의료기관, 의료보호제도 이용

가.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 입국 이후 정부의 의료보호 지원제도를 통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진료과목은 내과 21.5%, 치과 17.6%, 산부인과 10.2%, 안과 9.2%, 정형외과 8.5%이며,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에 불편함은 의료비 부담 14.7%, 언어소통의 문제 6.9%, 병원 관계자의 불친절 3.4% 등으로 나타났다.

나.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지역정신보건센터와 민간의 정신건강지원 시설, 그리고 의료지원제도와 활용방법에 대한 인지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의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가 77.7%, '정신건강 지원시설에 대한 안내교육 경험이 없음'이 93.8%,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경우 78.6%로 조사되었다.

4. 북한이탈주민 보건의료 교육 및 건강권 보호정책

가.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과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보건의료 교육의 경험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부의 건강보호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은 만성질환이나 중증 질환, 특수 촬영 등 의료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보호 1종 혜택(진료비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기간연장 요청, 정기적 건강검진 등이었다.

다. 또한, 하나원 의료서비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섬세한 치료와 친절한 서비스, 의료관련 교육은 보다 생생한 현장체험 위주로 실시해 줄 것, 국내 의료지원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을 요구하였다.

IV.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보호 정책

1.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지원 체계

가. 북한이탈주민 적용기준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료급여법」 제3조 제7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용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되어 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북한이탈주민과 동일세대 구성원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 및 1촌의 직계비속도 의료급여 1종 급여자격을 부여 받으며, 급여자격 유지 요건으로는 하나원 퇴소 이후 6개월 동안은 의료급여 1종을 유지하는데,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을 한 경우는 ‘의료급여 취업특례’에 따라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 기준 월 53만2천원)의 4배 이하인 경우만 보호기간 동안 1종을 유지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1종 수급대상자가 아닌 가구로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2종으로 전환되어 그 혜택도 제한된다.

나.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취업특례 제도

북한이탈주민에게 부여되는 의료급여 취업특례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의료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례 대상은 2010. 7. 이후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1인 기준 월 53만2천원)의 4배 이하인 경우이며, 특례 기간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

다. 북한이탈주민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북한이탈주민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역 보건소가 기존에 일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사업을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게 간호사와 상담사 자격을 가진 북한이탈주민 출신 상담사가 2인 1조로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2010. 4. 전국 10개 지역 시범실시 이후, 2012년도 전국 확대 실시 제공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결핵, B형 간염, 정신질환 등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한 후, 약 복용지도, 영양·운동정보 제공, 의학용어 통역, 건강생활 개선 상담, 건강검진 연계,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의료 현황

가. 의료인력

인력은 2012년도 10월 현재, 의사 9명, 간호사 9명이나, 의사 중 공중보건의 7명(내과2, 한방과2, 정신과1, 치과1, 소아청소년과1)은 지원 의무복무 개념이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 소속의 유급의사는 2명(정신과1, 치과1)에 불과하다.

또한, 자체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지원재단 소속 의사가 이곳에 상주하여 진료하고 있으며, 산부인과는 금년 4월 공중보건의 퇴직 이후 충원이 되지 않아 국립중앙의료원 등 협력병원 외래의사를 초빙하여 진료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

나. 의료진료 현황

2010년도 총 진료 건수는 40,137건으로 연간 2,400여 명 입소를 기준으로 하면 1인 평균 연간 17회 정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도는 49,303건이었고(2,706명 입소, 1인당 평균 18회 이용), 2012년도 10월 현재 23,654건(1,202명 입소, 1인당 평균 20회 이용, 10월 현재)이다.

다. 의료체계 교육

건강권관련 교육과목은 스트레스 관리 2시간, 건강관리법 2시간, 의료지원제도의 이해 2시간, B형간염 예방접종 및 구강보건교육 2시간, 여성보건교육 2시간이고, 교육시간은 정규 교육시간 10시간, 결핵 등 개별적 질환 관리 교육 등 4시간이 선택 운영되고 있다.

라. 퇴소 이후 진료체계

하나원 퇴소 직후에 집중교육과 1년 간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하나센터에서 민간의료지원 안내 교육 2시간을 하고 있으며, 퇴소(수료) 후 거주지에서 연계진료가 필요한 대상은 하나원 부설, 하나의원의 진료 소견서 및 외부병원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진료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하나센터에 유소견자 명단을 통보,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등 의료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염병 관리 등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하나센터와 보건소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가. 일반 질환 의료비에 대한 지원보조

통일부에서 예산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일반 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해 2일 이상 의료기관 입원자로서 본인 부담금 10만원 이상(최대 40%내 지원, 한방 병·의원 30%내 지원)인 경우에는 1년에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연 1회 지원을 하고 있다.

나.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은 입원·외래진료 받은 자로서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최대 50%내 지원, 한방 병·의원 30%내 지원)일 경우 1년에 최대 500만원을 횡수와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다.

V. 판단

1. 하나원내 의료인력 충원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초기에 북한에서 받지 못한 의료서비스와 탈북 과정에서 피폐된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전문 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원내 의료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상주 유급의사 2명도 지원재단 소속이어서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가 요구된다. 산부인과의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후 충원이 되지 않아 공식인 상태에서 주 1회 협력병원의 외래의사를 초빙하여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원 의료진의 진료 건수를 보면 2012년의 경우 입소 인원이 줄어 진료건수도 자연히 줄었지만 지난해는 총 진료건수가 49,000여건에 달해 의사 1인당 1일 20여건을 진료하고 있다.

건강권은 보건의료 전문 인력 없이는 실현되기 힘든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원에 적절한 의료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정보접근권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의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질적 사회환경과 인터넷 등 정보접근 이용의 미숙, 관련 제도 및 남북한의 진료시스템 차이(내과, 외과 등)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원에서 보건의료체계 안내 및 시설활용 방법을 정규 교육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교육효과가 낮고, 지역정신보건센터나 의료지원체도의 존재와 활용방법에 대한 인지수준이 매우 낮다. 따라서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중 보건의료 강좌의 인지 강화를 위해 사례위주 체험교육형 및 의료관련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남북한 의료시스템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적절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하나원 퇴소 후 지역 사회에서 진행되는 하나센터 교육 및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역 정신보건센터와의 연계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강화

인권위의 실태조사결과 49.1%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은 가족이 없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도 아무도 찾아올 사람, 돌봐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처지에 있다. 또한,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영양결핍, 장기간에 걸친 의료서비스 부재 등으로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육체적·정신적으로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정기건강검진이 필수적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약 1/3은 ‘경제적인 어려움’, ‘시간이 없어서’, ‘건강하기 때문에’ 등을 이유로 최근 5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조기에 자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원 퇴소 이후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수진율을 높일 수 있는 안내 및 상담을 강화하여야 한다.

V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2012. 12. 6.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제 4 장

외국인·이주민 인권 관련 결정

-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 인권 개선방안 권고
-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정책 권고
- 인도적 체류자 및 결혼이주여성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권고

1 2012. 11. 29.자 결정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의 인권개선 방안 권고]

【결정사항】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외국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그 시설과 운영을 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보호외국인에 대한 ‘권리구제 및 생활안내서’는 보호실 내부에 상시 비치해야 함.
- 【2】 보호외국인에게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원해야 함.
-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문을 보호실 내부에 부착해야 함.
- 【4】 개인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보호실 내에 설치해야 함.
- 【5】 보호외국인의 화장실 차폐시설을 개선해야 함.
- 【6】 보호외국인의 운동시간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함.
- 【7】 개인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보호실 내에 설치해야 함.
- 【8】 도서목록표를 보호실 내부에 비치하여 다문화 도서의 실질적 접근권을 마련해야 함.
- 【9】 ○○외국인보호소에 간호사를 배치하여 보호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해야 함.

【참조조문】

- 【1】 「헌법」 제10조 · 제12조제1항 · 제37조제2항, 「외국인보호규칙」 제3조 · 제4조 · 제8조 · 제22조 · 제25조 · 제26조 · 제30조 · 제47조
- 【2】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reatment of Prisoners, 1957. 7. 31. UN 경제사회 이사회 승인) 제21조 · 제35조 제1항 · 제40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외국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그 시설과 운영을 아래와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가. 보호외국인 '권리구제 및 생활안내서'를 보호실 내부에 상시 비치할 것
- 나. 보호외국인에게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문을 보호실 내부에 부착할 것
- 라.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생활 보호공간을 보호실 내에 설치할 것
- 마. 용변 시 신체노출 방지 차원에서 화장실 차폐시설을 개선할 것
- 바. 보호외국인의 운동시간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 사. 도서목록표를 보호실 내부에 비치할 것
- 아. ○○외국인보호소에 간호사를 배치하여 보호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할 것

【이 유】

I.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에 근거하여 2007년 이후부터 매년 정기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방문조사는 외국인보호소의 시설 환경을 인권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고, 보호외국인의 권리와 처우를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2년도 방문조사는 2011년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실 환경, 개인위생, 보호외국인의 건강과 여가활동,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절차 등 보호외국인의 권리와 처우를 향상하기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외국인보호 관련 제도가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호시설이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운영되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1.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외국인보호규칙」 제3조, 제4조, 제8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47조를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2.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reatment of Prisoners, 1957. 7. 31. UN 경제사회이사회 승인) 제21조, 제35조 제1항, 제40조를 참고하였다.

III. 판단

가. 보호외국인에 대한 '권리구제 및 생활안내서'는 보호실 내부에 상시 비치해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에 의하면 외국인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는 동 규정에 근거하여 보호실 복도 벽에 안내게시문을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작성하여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구제절차에 있어 한국어, 영어 및 중국어를 모르는 보호외국인은 보호소 내 생활규칙과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위원회가 실시한 2012년 5월 방문조사를 기준으로 각 외국인보호소는 자체 제작(○○ 4개국 언어, △△ 7개국 언어, □□ 7개국 언어)한 안내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권리구제 절차 안내와 보호소 생활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권리구제 절차 안내에는 청원방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법, 법무부 인권국 진정 및 고충상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보호생활안내에는 입소, 현금·귀중품 보관 및 반환, 물품보관 및 반환, 안전과 질서, 생활일정, 보호장소 변경, 퇴소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각 보호소의 복도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제작한 안내서를 부착하고 진정함을 설치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2012년도 방문조사 설문지 분석결과, 보호외국인의 35.9%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권리와 의무사항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39.5%의 보호외국인들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4.5%의 보호외국인은 관련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의 실질적 접근권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 규칙, 규율을 위한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는 정당한 수단 및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 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소에 외국인이 보호되고 있는 동안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보호외국인의 접근권을 좀 더 향상하기 위해서는 보호소에서 제작한 안내 책자를 보호거실 내부에 상시 비치하여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보호외국인에게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30조에는 보호외국인의 고충상담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호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충상담관을 지정하고 있다.

2012. 5. 29.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방문조사 중 보호외국인이 “항소를 하지 못해 억울하다”며 조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동 외국인은 2012. 5. 9.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2. 5. 10. ○○외국인보호소로 이송 상태였고, 이미 항소 기간을 넘긴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동 외국인과 같이 구속된 외국 국적의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 등을 선고받게 될 경우 구치소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의 대상자로 분류되어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게 된다.

그러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외국인보호소에서 외국인이 직접 통역인을 구해 항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외국인보호소에는 항소와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비치되어 있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조력 없이는 항소장 자체를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헌법」 제27조를 구체화한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는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면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게 되어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인보호소에서 항소 또는 상소에 대한 외국인의 의사표시가 고충상담을 통하여 요청된 경우, 고충상담관은 외국인에게 법률서비스 및 정보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고충상담관의 이해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에 대한 안내문을 보호실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

대다수의 보호외국인은 임금체불과 관련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원회의 2012년도 방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부당한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조사 응답결과에서도 임금체불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보호소는 고충처리상담에서도 임금체불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의사소통의 한계로 보호외국인이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미등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 내국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호외국인이 고용노동부의 다국어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문을 추가적으로 보호소 내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개인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보호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

보호시설 내 모든 설치물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보호소는 안전상의 이유로 보호외국인의 신변 처리 등의 내밀한 개인의 일상생활도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47조에 의거하여 보호소 담당 공무원은 1일 1회 이상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보호실 내부를 점검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점검하여야 한다. 동 조항 제2항에는 “모든 보호외국인의 움직임을 담당 공무원이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보호소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보호외국인의 동태가 상시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보호소에 설치된 CCTV는 보호외국인의 예상치 못한 자살·자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나, 샤워실을 제외한 보호외국인의 모든 일상생활이 CCTV를 통하여 관찰되고 있다. 즉 보호외국인이 보호실 내부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의 사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CCTV에 노출되는 등 보호외국인의 개인활동 전반이 사각지대 없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CCTV를 통하여 보호외국인에 대한 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보호외국인의 일상생활 전체가 CCTV를 통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노출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외국인보호소가 공동생활 환경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개인 사생활의 보호 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보호외국인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정도 등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커튼막 등의 방식으로 일정한 공간을 보호실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보호외국인의 신체노출 방지 등을 위해 화장실 차폐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 화장실의 경우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소의 화장실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외국인에게 관찰되어지거나, 화장실내의 문이 개방되어 용변을 볼 때마다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되어 있다.

○○외국인보호소 및 △△외국인보호소 화장실의 위치는 용변을 볼 때 그 소리와 냄새가 샤워실 방향으로 직접 유출될 수 있는 구조이고, 옷을 벗거나 입는 과정에서 둔부이하가 다른 보호외국인에게 노출되어진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화장실은 세면실과 좌변기가 분리되어 있으나, 보호실 내부에서 화장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보호소 내의 질서유지와 외국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장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으나,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만 치중하여 보호받아야 할 보호외국인의 사생활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는 없다.

「외국인보호규칙」 제3조에서도 외국인 보호시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수용시설로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듯이, 교정시설 형태의 화장실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화장실의 개방 정도는 신체부위의 노출과 냄새의 직접적 유출을 막고 용변을 보는 자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보다 덜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보호외국인의 운동시간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26조는, 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장 등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운동장 시설이 없는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보호실 내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1항에서도 운동과 관련하여 실외 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보호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보호외국인들에게 외부에 나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와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외국인들에게 일주일에 2회 각 30분 간 운동시간을 허락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는 주당 3회(월, 수, 금) 1시간씩 운동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의 2012년도 방문조사 결과에서도 보호외국인의 2명 가운데 1명(53.0%) 운동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으며, 보호외국인의 67.3%가 매일 운동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26조(운동)에서도 외국인의 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에 지장이 있을 때, 기상 여건으로 인하여 운동장 등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및 격리 보호, 퇴소 준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되어 있다.

방문조사에 참여한 심리치료사의 전문적 의견에 따르면, ○○ 및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 중 2/3가 임상적인 개입이 필요할 정도의 우울증이 발견되었으며, 극심한 불안상태에 있는 보호외국인도 21%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호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히스테리성 신경증’ 및 ‘과호흡증후군’ 사례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보호외국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호외국인의 실질적 운동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 도서목록표를 보호실 내부에 비치하여 다문화 도서의 실질적 접근권을 마련해야 한다.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0조는 구금시설에서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보호규칙 제25조에서도 자유시간에 독서 등의 활동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외국인에게 독서는 불안한 심리상황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보호소에서도 도서를 비치하여 원하는 외국인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도서가 비치된 공간이 여성 보호동이거나 문화공간 등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보호외국인이 책을 보고 대출하기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이며, 보호소의 특성상 보호외국인이 자유롭게 도서가 비치된 장소로 이동하여 열람할 수는 없다.

이러한 도서이용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관련 도서의 목록을 보호실 내에 비치하여 보호외국인이 읽기를 원하는 도서를 출입국관리 공무원을 통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서이용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아. ○○외국인보호소에 간호사를 배치하여 보호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

보호외국인은 적절한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외국인의 보건의료 필요와 수요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호소 내의 의료인력은 보호외국인의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서 UN의 「피구금자처우기본규칙」 제62조에서도 시설의 의료기관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 또는 결함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여 치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임신부나 노약자 등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고 이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상담하기 위해서는 보호소 내의 의료 인력은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소는 현재 간호인력 배치가 없어 보호외국인의 건강권을 지원하는데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 ○○외국인보호소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 평균 30~40명 정도의 외국인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조제를 직접 의사가 하고 있다. 또한 보호외국인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진료를 해 주고 있으며, 야간 또는 휴일에도 긴급연락이 오면 의무실장이 출근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배치된 2명의 의사(의무실장, 공중보건외)와 의무실 일반직원 1명으로는 적정환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22조에서도 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등 공동생활이 유지되는 보호소의 위생환경을 적극 고려하고 있듯이, 의료장비, 물품 소독, 건강상담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배치된 2명의 의사로는 미흡한 실정이며, 다른 2곳의 외국인 보호소와 같이 간호사 인력을 지원 배치해야 한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한태식 위원 광란주

2 2012. 12. 6.자 결정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결정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송출과정부터 사업장 이탈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함. 이에 국토해양부장관과 수협중앙회회장에게,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

【결정요지】

- 【1】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의 송출비리 차단 및 비용 감소를 위해 영리 목적의 사적 업체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의한 도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2】 「선원법」에 내국인 선원과의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명문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의무화하며,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한 현행 고시를 개정하여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3】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선원재해보험 및 건강보험 의무 가입 등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4】 「해사노동협약」 등의 기준에 따르는 제반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함.
- 【5】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인권침해 행위의 철저한 시정을 위한 제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6】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 및 교육과정에 실제 업무수행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수협·선주·내국인 선원 등에 대한 정기 인권교육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함.
- 【7】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통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제11조·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4조제1항 및 제2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제1항·제7조, 제9조, 「선원법」 제43조·제54조·제57조·제68조·제109조·제115조·제116조·제118조,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43조·제45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에게,

- 가.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의 송출비리 차단 및 비용 감소를 위하여 영리 목적의 사적 업체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의한 도입 시스템을 구축할 것,
- 나.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선원법」에 내국인 선원과의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명문화하고, 정부에서 표준근로계약을 보급하고,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과 달리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한 현행 고시를 개정하여 임금차별을 개선할 것,
- 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재해보험 및 건강보험 의무 가입 등 적절한 수준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해사노동협약」 등의 비준에 따르는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근로 및 생활조건 개선을 추진할 것,
- 마.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로감독의 강화와 상시적인 점검이 어려운 선상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구하는 등의 제반 인권침해 예방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수협중앙회 회장에게,

- 가.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 및 교육과정에 업무수행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수협, 선주, 내국인 선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 할 것,
- 나.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거주 밀집지역에 지원센터 등을 설립하고 통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 배경

1980년대 후반 해운업계와 수산업계는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구인난 타개 방안으로 저개발국 근로자 고용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후 해운항만청은 1990년 11월 외항선 및 제3국 기지 어선을 시작으로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라 1991년 상선부분에 중국동포를 도입하기 시작해 1993년 원양어선, 1996년 연근해 어업까지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되었다. 1996년 연근해 어선에 1,000명의 이주노동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2007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이하 '산업연수제도')가 전면 폐지되기 전까지 어업 이주노동자 도입과 고용은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7년 1월 1일 산업연수제도의 전면 폐지 이후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운용 과정에서 기존 연수추천 단체들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연근해 어업의 선원 관리는 고용허가제와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의 틀을 유지한 '외국인 선원 제도'로 이원화되었다. 결국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의 선원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선원제도는 형식상 주무부처가 국토해양부일 뿐, 외부기관이 도입과 사후관리 전 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산업연수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전체 승선 어선원 대비 이주노동자의 고용 비율은 50%를 밀돌고 있으며, 선원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체류자 비율은 2011년 12월 말 현재 31.4%로 타 업종보다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내국인 어선원의 임금은 어획량이나 어획 금액의 일부를 배분받는 특유의 임금체계인 '보합제'가 적용된다. 이것은 업종에 따라 출어 횟수와 출어 일수가 상이하고, 업종이 같더라도 계절, 날씨, 해류에 따라 작업 내용과 노동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원법」 제57조는 이런 특성을 반영해 어선원의 임금을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 이주노동자에게는 보합제를 적용하지 않고 초과근로수당 등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또한, 「선원법」 제54조에 따라 선원의 최저임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고, 월 고정급이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장관의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적용 예외 조항을 두어 선원 이주노동자의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톤 이상 연근해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사용자 대표인 수협중앙회와 노동자 대표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돼 왔다. 그동안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내국인 선원의 최저임금과 비교해 약 75-80% 수준에서 결정되었고, 2012년 인상 전까지는 육상노동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보다도 낮게 책정되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선원 이주노동자는 최근 국제사회가 한국 이주민 인권문제를 지적할 때 주목하는 집단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조사는 전무한 상태였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2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선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 승선선원(E-10 비자)을 중심으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송출과정부터 사업장 이탈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련부처의 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제11조·제32조 제1항 및 제3항·제34조 제1항 및 제2항,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1항·제7조·제9조, 「선원법」 제43조·제54조·제57조·제68조·제109조·제115조·제116조·제118조,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43조·제45조를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해사노동협약, Maritime Labour Convention」, ILO 제188호 협약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56조, 국토해양부고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어선 외국인선원 운용요령 등을 참고하였다.

III. 판단

1.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의 송출비리 차단 및 비용 감소를 위해 영리 목적의 사적 업체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의한 도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협중앙회가 정한 송출비용 한도는 중국이 3,000달러(320여만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2,700달러(290여만원)인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송출비용은 평균적으로 중국 1,071만원, 인도네시아 462만원, 베트남이 1,266만원에 달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금액을 부풀렸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수협중앙회가 지정한 송출비용 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당사자의 상세한 증언에서 입증되고 있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재산 처분이나 지인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송출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산업연수제도 하에서 발생

했던 송출비리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실제로 일부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후 실제 소득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송출비용이 부담스러운 작업장을 이탈하기도 한다.

선원 이주노동자가 최초 근로를 시작한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송출비용을 낮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송출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선원으로 입국 가능하고, 입국 이후에도 과도한 송출비용 부담 때문에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결국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정과 도입을 직접 담당하는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입 절차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선원법」에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내국인 선원과의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명문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의무화하여 정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고시를 개정하여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보급하고, 표준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을 선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주의 고용신고서에 반드시 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선원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 선원의 경우 차별을 공식화하고 노동조합이 임금 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이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 수협중앙회와 해상노련 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그동안 한국인 선원의

75-80% 수준에서 책정돼 왔다. 또한 2012년 6월 1일, 104만 원으로 인상되기 전까지는 월 90만 원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책정하는 최저선의 임금으로 대다수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의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관행이다.

또한 선원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 선원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여,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만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국토해양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의 경우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어 「선원법」 제54조에 위반되고 행정규칙에 의한 권리 제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의 필요조건으로 국적과 업종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어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상의 실질적 차별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토해양부가 현행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선원법」에 선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3.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선원재해보험 및 건강보험 의무 가입 등 적절한 수준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같은 업종이더라도 날씨와 계절, 성어기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선원들의 평균적인 노동조건을 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노동강도, 식사, 휴식시간, 잠자리 등에 대해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지원과 관련 표준 근로계약서(외국인 선원 고용계약서) 제10조는 선주가 숙박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로 제공되는 주거시설의 기준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지침 등 어디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회권 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적절한(adequate)’ 주거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사용자의 배려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 선주들이 그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 종사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 지원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후 정부가 수립할 기본계획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동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선원법」상 선주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협중앙회의 「어선외국인운용요령」은 선주들이 외국인 선원들에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이행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 중 산재 경험자가 36.1%에 달했음에도 그 중 선원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 받은 비율은 21.1%에 불과했다. 또한 선원 이주노동자의 58.3%는 선원재해보상보험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국 전후 교육에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통번역 및 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권고(2010. 12)’내용을 토대로 이주노동자 입국 전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의 44.4%가 ‘가입

되어 있다'고 답했으나, 가입 여부를 모르는 응답자도 48.5%에 달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선원 고용 시 필수 가입으로 돼 있으나 건강보험은 형식적으로만 의무가입일 뿐 실제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이 없을 경우 병원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병도 큰 병으로 커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도 실질적 의무사항으로 제도 화할 필요가 있다.

4. 「해사노동협약」 등의 비준에 따르는 제반 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근해 어선 선원에 적용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대표적 협약으로는 「해사노동협약」과 「어선원노동협약」 등이 있다. 2006년의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은 1920년 이후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 개선을 위하여 68개 협약과 권고를 통합하여 단일 협약으로 제정한 것으로, 협약은 통상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된다. 협약은 세계 총 선박의 33% 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한 후 12개월 후 발효된다. 정부는 2012년 말까지 발효 요건인 “30개국 비준”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협약 강행규정(A코드)의 국내법 수용을 위해 「선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현재 협약의 비준 의의를 위한 외교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추진 중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제188호 협약인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의 통합논의과정(2001-2006)에서 어선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어선원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5개 협약과 2개 권고를 개정·보완하여 단일 협약을 제정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99호 「2007년 어선원노동권고(Work in Fishing Recommendation, 2007)」를 마련하여 협약 제정과 함께 권고했다.

「어선원노동협약」 중 선원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규정이다. 협약은 해상에서 3일 이상 머무르는 어선은 최소한 24시간 동안 10시간, 7일 동안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선박, 어선원 및 어획물의 즉각적인 안전조치, 조난 선박 및 인명의 구조 지원업무 수행 시 휴식시간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나, 일시 중지된 휴식시간은 위급 상황이 종료되면 실행 가능한 한 보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이에 정부는 「해사노동협약」 비준 이후에 본 협약의 가입 등을 준비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선원법」 등 관련 규정을 본 협약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5.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93.5%가 욕설이나 폭언 피해 경험이 있고, 42.6%가 폭행 경험이 있으며, 10.1%는 감금 경험이었다고 하였고, 특히 폭행 피해를 호소한 응답자의 59.7%는 2010년 이후 입국한 선원 이주노동자로 분석되었다.

욕설이나 폭언을 들었을 때 무조건 참는다는 선원 이주노동자가 85.4%에 달했는데, 이는 대처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반면 말로 항의하거나 욕설과 폭언으로 맞대응했다는 응답 31건 중 24건(77.4%)의 경우 아무런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선장·선주·관리업체·수협·경찰에 알리는 등 적극적 대처를 했다는 응답 17건도 그 중 8건(47.1%)의 경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이런 이유로 선원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는 '욕설이나 폭언에 대해 그냥 참았다'(85.4%)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선주와 수협 등 관계자들은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가 선상 노동의 특수성에서 오는 것으로 여기거나, 특히 폭행에

대해서는 과거 관행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욕설이나 폭언을 경험했다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상당수가 최근의 폭행 피해내용을 진술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나 폭언, 폭행 등을 건디다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선주나 관리업체가 허락하지 않아 업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경험한 이들에게 업체 변경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이탈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응답 및 주장만을 근거로 이들의 인권상황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업 노동이 노동강도가 높은 특성, 고립된 환경,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 응답자들의 세부적인 증언 등을 종합할 때 그 개연성 등이 높다고 보이며,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해 왔지만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선원 이주노동자의 고립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선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는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 및 교육과정에 실제 업무수행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수협, 선주, 내국인 선원 등에 대한 정기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수협중앙회의 「외국인선원운용요령」에 따라 입국 전 20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52명(68.4%)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선원운용요령」에서 입국 전 20일 이상의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선원법」에서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선원법」 제116조, 시행령 제43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입국 전 교육의 상당 부분이 한국어 교육(79.9%)이었으며, 선원 업무와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3%에 불과하다. 또한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45일간 교육을 받으면서 달리기와 같은 체력단련 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어, 선원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입국 전 교육의 취지에 충실한 교육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선원법」 제116조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지 ‘송출회사’가 실시하는 이러한 교육을 「선원법」 제116조에서 정한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하는 교육 또는 「선원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이와 “동등 이상의 수준의 교육”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선원운용요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입국 전 장시간 교육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고, 입국 후 국내에서 「선원법」 제116조에서 정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선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안전교육, 한국어 기본회화, 한국 출입국관계법령, 노동법 등의 사항과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 등 외국인 선원의 교육에 관한 내용과 교육 기간 및 교육 업무의 대행기관 등을 「선원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하여, 입국 후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선원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교육훈련 경비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것이나, 「선원법」 제118조의 정부 보조 등을 통하여 선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은 내·외국인 선원의 혼승 교육 실시, 교육용 교재 제작 배부, 선상 폭력 발생 방지를 위한 출항 전 교육 실시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내국인 선원 교육을 위한 교재는 제작되어 있지 않으며, 본 지침에서 규정한 ‘혼승 교육’도 그 시행 실태나 관리 감독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혼승 선박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외국인 선원의 문화적 특성 등을 수용하여 내국인 선원과 선원 이주노동자 사이의 초기 갈등을 줄이고, 내·외국인 선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선상에서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주와 간부뿐 아니라 내국인 선원 전체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선원법」 등의 법령에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선원 기초안전교육의 내용으로 외국인 선원과의 혼승에 필요한 사항, 즉 외국인 선원의 인권 관련 내용 및 의사소통 기술 등을 반영하여 교육하도록 교육과정과 내용을 제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교육 시스템의 제도화는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결국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따라서 선주는 물론이고, 선주협회, 한국인 선원, 관리업체 등 선원 이주노동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인권교육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7.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밀집지역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통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상 이주노동자들과 달리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는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조차 적시에 지원하기가 어렵다. 배는 수시로 입출항하고,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항구에 정박 중일 때도 후속작업으로 바쁜 경우가 많아서 만나기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지원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육상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같은 선원이주노동자지원기관이나 인력을 항구 인근의 선원복지고용센터 내에 설치 혹은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내에 어업 관련 특수한 용어나 선원의 근로관계법 및 권리구제절차 등을 숙지한 통번역 요원을 두거나 통역센터를 설립하여 NGO와의 3자 통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구 근처 등 선원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선원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지원하여 상담과 지원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수협중앙회 등이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리수첩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당사자들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해양항만청 등의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2. 12. 6.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3

2012. 12. 6.자 결정 [인도적 체류자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권고]

【결정사항】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인도적 체류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

- 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난민법」 제2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 시킬 것
- 나. 같은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제2호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개정할 것

【결정요지】

-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 모든 기본권이 무한정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권리 내에서 외국인도 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 【2】**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이 기왕의 지원대상자에 포함된 외국인과 달리 배제되어야 할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대한 사후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생계 곤란·주거상실·건강 악화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위 대상집단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긴급복지지원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난민법」 제2조 3항·제39조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인도적 체류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난민법」 제2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시킬 것
2. 같은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제2호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개정할 것

【이 유】

I. 권고의 배경

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내체류 이주민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도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18%가 가족생활비가 적어 가정생활에 고통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보조받는 여성은 3.2%에 불과하며, 6.4%의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의 경우도 29.2%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을 경험한 바 있고, 이들 중 연간 10회 이상의 결식 경험이 있는 난민은 7.5%로 나타나 외국인에 대한 공공복지지원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또한,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난 등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하여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국적을 넘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국인과 달리 대우받아야 할 이유는 없으며 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 이에 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체계에서 취약집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긴급지원 대상자의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난민법」 제2조 3항·제39조

III. 판단

1.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및 문제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이다.

이에,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마련하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와 같이 ‘위기상황’으로 인해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람을 ‘긴급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심의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였고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 중 외국인 신분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서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 포함하고 있고 있으나, 합법적 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들이 긴급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특성상 법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은 내·외국인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을 지원대상자에 포함하여야 하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요구된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방안

가.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긴급복지지원법」상 결혼이주여성이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생활상 직계존비속을 돌보지 않더라도 ‘응급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 지원대상에서 ‘직계존비속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고 있는 규정은 그 설득력이 부족하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피해자 외국인보호시설 운영현황(2010년)」 자료를 살펴보면, 입소자의 91.2%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해 볼 때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위기상황에 처하는 시기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비교적 높게 발생할 수 있고, 아이가 없거나, 돌보지 않은 이주여성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포함되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된다.

나.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원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서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그 절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로부터 합법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그러나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는 2013년 7월 새로 시행될 「난민법」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지 있지, 생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에서 인도적 체류자가 취업비자가 아닌 기타 비자(G-1) 소지자로서 취업이 용이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긴급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적용대상의 규모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더불어 호주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법」 제19조에 근거한 위기지원금(Crisis payment) 제도가 있어, 가정폭력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가정을 떠났거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경우, 위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대상에는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99헌마494, 2001. 11. 29. 결정) ‘외국인에게 모든 기본권이 무한정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 내에서 외국인도 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렇듯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배제되어 있는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 등이 기왕의 지원대상자에 포함된 외국인과 달리 배제되어야 할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대한 사후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생계곤란, 주거상실, 건강 악화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상기 대상집단을 긴급복지지원법에서 포함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특례 규정에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이주여성’을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로 흡수하여, 실질적인 위기극복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12. 12. 6.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제 5 장

인권교육 및 학교인권 관련 결정

- 교실 내 CCTV 설치의 인권침해 여부 의견표명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표명

1 2012. 2. 23.자 결정 [교실 내 CCTV 설치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사항】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교실 내 CCTV의 설치에 그것에 비록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및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큼.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제17조·제21조·제31조 제4항·제37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조 제1항·제19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주 문】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 설치행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I. 의견표명 배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인권침해 인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질의를 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실 내 CCTV가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II. 판단기준

「헌법」 제10조·제17조·제21조·제31조 제4항·제37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조 제1항, 제19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III. 판단

최근 주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 등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0.12. 자료) 조사에 의하면 조사 학생 30% 이상이 교실 내 범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설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CCTV가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으며, 설사 교실 내 CCTV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CCTV의 설치로 인하여 범죄 전이효과가 발생하여 교실이 아닌 곳에서의 범죄 발생 가능성도 있는 등 그 효과도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교실 내 범죄예방을 위해서 복도 측 창문의 시선 확보, 교사의 범죄예방 모니터링의 증대,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생과 교사의 자연 감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행동과 표현을 제약할 수 있는 강력한 기본권 제약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 불가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교실 내 CCTV에 대한 설치 행위는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를 촬영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과 「헌법」 제17조와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은 공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습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간을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만큼 교실 내 CCTV로 인하여 식사, 수면, 교우관계 등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활동전반이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동자유권(헌재 2003. 10. 30. 선고 2002 헌마518)을 제약받을 소지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탈의실이 없어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교실 내 CCTV를 설치할 경우 이러한 모습이 CCTV에 녹화되고 CCTV를 모니터링 하는 관리자는 학생들의 노출된 신체를 볼 수 있으며, 학교의 CCTV가 웹 또는 모바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등 네트워크화 된 CCTV의 정보 유출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가 확대 재생산될 개연성이 있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위반의 소지도 있다.

또한 교사들도 CCTV가 설치된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 자기 소신껏 수업을 하기 어려워지므로 표현의 자유 및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받을 소지도 있다.

따라서 교실 내 CCTV 설치 행위는 학교 폭력의 예방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설치된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촬영되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교사들의 교육의 자주성 확보 등 기본권 제한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2012. 2. 23.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2

2012. 7. 9.자 결정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사항】

학교폭력 예방 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권교육의 제도화, 학생인권 증진, 교원의 교권 존중, 차별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 등, 5개 영역 20개 분야의 52개 정책을 권고

【결정요지】

- [1]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인권교육제도 기반 마련, 학생 인권교육 강화,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인권교육의 촉진 및 내실화가 필요함.
- [2]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절차를 보장하며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함.
- [3] 교권 존중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폭력으로부터 안전 및 교육과 훈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여야 함.
- [4] 인권친화적 학생 지도를 위해, 처벌 위주에서 인권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 전환, 현행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차별대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개선 등을 추진하여야 함
- [5]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을 위해, 교육주체 간 소통 강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강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강화,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개선 등이 필요함.

【참조조문】

[붙임2] 참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 1. 국무총리에게 <붙임1> 의 모든 사항을 권고하고,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피권고기관의 기관장에게는 <붙임1>에 명시된 소관사항에 대하여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 배경

2011년 12월 ○○시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정상하게 높아졌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한 학교폭력 진정사건 접수도 늘어났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여 학교폭력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

위원회가 학교폭력 전반에 대해 살피면서, 학교폭력은 학교 내의 다른 갈등 요소는 물론이고 국민의 의식과 정부의 교육정책 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인권적 견지의 조망과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우리 사회는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교육주체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열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전담기구라는 성격에 맞게 교육문제의 대증적 해법을 찾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인권적 가치와 방향 제시에 주력하였다.

위원회는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였다.

II. 추진경과

2011. 12. 10. 위원회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방안을 심층적·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교육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연구기획단”을 구성하였다. 연구기획단은 교원단체,

학교교원, 각급 교육청 장학사와의 간담회,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의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여 사회 각 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3회의 내부 토론을 통해 종합정책권고안에 포함될 사항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2012. 4. 6.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NGO,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당사자, 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더불어,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한 종합정책권고시안을 작성하고 관계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등의 의견도 조회하였다.

나아가, 위원회는 종합정책권고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를 3회(2012. 5. 10./ 5. 17./ 6. 7.) 개최하여 논의하였으며, 전원위원회 2회(2012. 6. 11./ 7. 9.)를 거쳐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III. 판단 및 참고기준 (붙임2)

1. 판단기준

-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기본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등 관련 국내 법령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 함)」,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등 국제협약

2. 참고기준

- 「세계인권선언」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 「유엔 제1·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등

IV. 판단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기본법」,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근거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학생 인권 증진, 교원의 교권 존중, 차별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방안 개발, 학교폭력예방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항들을 중심으로 권고한다.

1. 인권교육의 제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과도한 체벌, 학생의 수업방해, 학교 친구에 대한 따돌림 및 학교폭력, 학부모의 폭언 및 폭행 등 교육주체들 간 인권 침해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종합적 대책도 마련되어 왔지만, 위의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 목표와 가치를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가치는 인간의 존중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인권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해야 할 필수적인 교육이며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의 인권상황과 인권교육상황을 점검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인권교육 경험 부족

인권교육이 가장 필요한 집단에 대해서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법집행관, 공무원 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응답하였다. 당사자인 초등학생의 71.8%, 중학생의 78.0%가 '자신들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원 대상의 인권교육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77.5%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은 초등학생이 46.0%, 중학생이 53.0%에 그쳤다(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2) 학생의 「세계인권선언」 인지도 8.7% 등 인권교육 미흡

인권교육의 대다수는 교과시간에 진행되나, 주로 사회과와 도덕과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권관련 단위 수업 시간에도 '진도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15.5%나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초등 9.3%, 중등 22.7%, 고등 22.2%)이며, 학교 인권교육 시행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교원들은 '입시로 인한 교육시간 부족'(44.7%)을 들고 있다(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2007년 교육과정에 따라 인권교육이 범교과 교육에 포함되었으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은 24.1%에 불과하며, 인권교육이 교과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외에 조회·종례시간(13.1%)에 진행되거나,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 중 51.3%가 교내 방송교육을 통해 교육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국 인권이라는 용어를 인지하는 학생이 97.7%로 수치적으로는 매우 높음에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학생이 23.5%, 인권 관련 문서인 「세계인권선언」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은 8.7%,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잘 알고 있다는 학생이 4.4%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3) 교원의 인권교육에 대한 지도역량 부족

초·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에서 인권 또는 인권교육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이 없는 현실에서, 교원은 인권교육 시행에서 또 다른 어려움으로 '교원의 관심과 역량 부족'(30.3%)을 들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도 '인권교육 강사 및 교원의 전문성 부족'을 다수 지적하였다.

'인권교육·연수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교원은 89.9%이나, 교원임용 후 인권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원은 41.1%에 불과하고, 교원의 인권과 관련된 문건 인지도를 보면 「세계인권선언」 17.3%, 「청소년헌장」 11.3%, 「유엔아동권리협약」 8.8% 등 매우 낮은 상태이다(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4) 학생 생활지도에 편중된 인권교육계획

교육과정으로 인권교육계획을 갖고 있는 학교는 73.0%이나, 인권교육계획의 내용은 '학급경험, 학생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71.6%에 달하는 반면, '인권교육에 관한 학년별 목표 및 계획'이 11.1%, '인권교육에 관한 각 교과별 목표 및 계획'은 17.3%에 불과하여, 인권교육계획이 주로 학생생활지도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5) 인권 친화적이지 않은 학교문화

소속 학교의 인권 친화성에 대해 교원의 80.4%는 '인권 친화적이지 않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반응은 초등교원의 73.2%, 중학교 교원의 83.5%, 고등학교 교원의 83.4%, 전문계고교 교원은 92.3%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의 인권침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73.0%가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인권침해유형으로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표현 제한'(60.7%), '욕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의 언어폭력'(40.6%), '성적공개 등의 개인정보 유출'(25.1%), '체벌 등의 신체적 학대'(25.3%),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22.7%),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기회 제한'(20.7%) 등을 언급하였다(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인권침해를 당한 후에도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참고 지나갔다'(38.8%), '별다른 생각 없이 넘어갔다'(36.5%), '친구들과 상의'(34.7%), '부모님과 상의'(24.7%), '선생님과 상의'(18.3%) 순으로 응답하여, 상당수 학생들이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거나 부각시키기보다는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교 인권교육이 자신의 인권보호와 타인의 인권존중이라는 인권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권교육 지원 미흡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검토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은 포함되지 않음) 중 2개의 교육청이 학교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침이나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으며, 교원 대상 인권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 14개 중 12개 교육청이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을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2월 25일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제9조 제6항 제9호 및 제10호)을 통해 학교문화과에 “학생 인권보호 및 권리신장에 관한 중장기 기본정책 수립·추진”을 소관업무로 규정하면서도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 역시 서울, 광주, 강원을 제외한 그 외 교육청은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으며, 인권교육담당자가 학생의 생활교육, 인성교육 등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판단

1) 인권교육제도 기반 마련

유엔은 교육의 목표를 ‘인격의 완전한 발현과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세계인권선언」 제26조)’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목표를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교육기본법」 제2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는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전인적 성장의 기반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기초 능력의 바탕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교육기본법」과 국가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이러한 교육목표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교육의 목적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며, 인권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이념과 달리 과도한 입시 위주의 경쟁심화로 인해 학생들의 심신이 약화되고, 일부 학생의 폭력, 자살 등이 증가하는 등 개인적·사회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이념이 현실에 잘 적용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여 '인권'을 명시하는 교육이념을 표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 「교육기본법」의 개정

인권교육이나 인권의 존중 등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제 인권교육은 통합교과형태로 교과교육이나 창의체험활동을 통해 실시되고 있어, 학교 재량에 따라 또는 학습진도 상황에 따라 선택적·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교육목표를 조정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제2조에 인권가치를 포함하고 인권교육 강화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서로 인권을 존중하며 인격을 도야하고..."라고 보완한다면 학생 인권교육 제도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9조 제3항에서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기본적 인권과 인성 함양 및 창의력 계발”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인권이 창의력에 우선하는 가치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인권교육의 편익적·선택적 실시를 방지하여 교육의 책임주체들이 인권교육을 책임 있게 실시하고, 교과 이외의 지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에서도 개별 교원이 교과 수업 중에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 예시 : 「교육기본법」 개정 제안안 >

현행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개정 제안(안)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u>홍인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u>홍인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서로 인권을 존중하며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9조 (학교교육) ③ 학교교육은 <u>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u>	제9조 (학교교육) ③ 학교교육은 <u>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인성 함양 및 창의력 계발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u>

나) 학령기 아동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편성

대다수 인권교육 학자들은 아동 인권교육을 만 5세부터 시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의 발육과 인지능력 발달 정도에 따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아동의 연령별로 진행되어야 하는 인권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여 권고하고 있으며, 「제1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005~2009)」을 통해 학교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2012. 2. 6. 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3~5세 누리과정(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형태)부터 질서, 나눔, 배려, 협력, 존중, 경도효친, 갈등해결 등 영역별로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제시하고 이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단계별, 체계적인 인권교육 시행을 위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에 유엔이 권고한 인권교육 내용과 요소가 단계적, 체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다)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평가시스템에 인권항목 반영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평가)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기관평가)과 그 관할하는 학교(학교평가)를 평가”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평가의 기준)는 “예산의 편성 및 운용,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운용, 학교 교육지원 및 성과, 학생 및 교원의 교육복지,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기관평가’ 기준으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교육활동 및 교육성과, 그 밖에 학교운영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학교평가’ 기준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평가시스템은 학생 간 또는 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고양시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상 양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바람직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양질의 교과 내용 마련, 적절한 교육과정 설계, 그리고 그 교과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교육이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초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학업성취도 중심으로 편성된 현행 기관평가 및 학교 평가 기준을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평가기준에 ‘인권 지표’가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고 : 인권교육제도 기반 마련

- 1-1-1.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인권가치를 포함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하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서로 인권을 존중하며, 인격을 도야하고...”로 수정
- 1-1-2. 학생의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부분을 “학교교육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인성 함양 및 창의력 개발을 포함한...”으로 수정
- 1-1-3.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 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 1-1-4.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평가기준에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 항목이 포함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2) 학생 인권교육 강화

교육의 본연의 목표는 ‘인격의 완전한 발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에 있으므로,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및 증진의 의식을 기르고 인권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구현해 갈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기르도록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및 증진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권실천 중심의 교육과정, 교과특성을 고려한 내용, 인권과목 확대 개설,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균형 잡힌 인권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 인권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정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별 교육과정에 의하면, 각 학교 급별 교육목표에 인권 함양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현장과 충분히 연계되어 있지 못해, 학생발달 단계별 인권교육 실천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된다.

특히, 또래문화를 본격적으로 형성하는 중학교의 인권교육 방향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능력,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교육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도 이와 같은 교육과정 상의 문제점을 인식해 이미 '2012. 2. 6. 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초·중·고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인성 핵심 역량' 요소를 강화하고, 교과의 학습 내용을 '지식' 중심에서 '사례·실천'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히고 있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서도 학생발달단계별 인권교육을 체계화하고, 교과서 개발단계에서도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인권상황을 연계시켜보도록 실천중심적 사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나) 각 교과마다 특성을 고려한 인권관련 내용의 반영 및 강화

2007년 개정 교육과정(현행 교과서)은 도덕과와 사회과를 제외하고는 인권관련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과(기술·가정과)의 경우 청소년기의 발달문제, 과학·기술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내용, 체육과의 경우 건강, 문화, 성(性) 관련 내용 등, 전문계교의 상업 및 경제 교과에서는 기업경영, 노동, 환경, 소비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서 충분히 인권 문제를 교육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 사회, 실과, 체육 등 각 교과마다 그 특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인권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을 적절히 반영,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중학교 선택교과와 고등학교 교양교과에서 인권과목 확대 개설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의 청소년기에 더 많은 인권적 상황에 직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고등학교 시기의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인권’ 과목을 포함하여 선택 교과를 5개로 확대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교양 교과를 9개 과목으로 확대하여 ‘인권’ 과목을 별도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

라) 자신의 권리옹호와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균형 잡힌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알게 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측면도 있으나, 자신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의 자세, 그리고 인류 공동체의 자각을 지향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며...”(제29조 제1항, 제2항)라고 하여, 인권이 자신의 권리 옹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인권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만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류공동체를 인식하는 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고 : 학생인권교육 강화

- 1-2-1. 교과서에 실천사례 중심의 학생발달단계에 맞는 인권교육 내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 1-2-2. 도덕, 사회, 실과, 체육 등 기존 교과목에 인권관련 내용의 반영을 확대하여야 한다.
- 1-2-3. 중학교 선택교과와 고등학교 교양교과에서 인권과목을 확대 개설하여야 한다.
- 1-2-4. 자신의 권리 옹호와 타인의 권리 존중이 동반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유엔은 교원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2차 세계인권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원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의 교직교양 등 교과목을 살펴보면, 인권 및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이 부족하고, 교원임용단계에서 인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 양성과정, 교원 임용 시 그리고 임용 후 교원으로서의 현직 수행에 이르기까지 인권교육과 관련된 역량 강화와 인권감수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가) 교원 양성과정에서 인권 의식 증진 및 인권교육 지도능력배양

교원 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교는 교직교양, 교직이론, 전공교과에서 인권 및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를 개설하고, 시·도 교육청 등 교원연수기관은 각종 자격연수 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개설하거나 별도 인권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2012. 2. 6. 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 신규로 교원을 채용할 경우, 학생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상황 문제 해결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교직 적성 심층면접 등을 2012년에 실시하는 시험부터 즉시 적용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 학생지도 역량을 임용시험의 심층면접에서 검증하겠다는 위 방침과 연계해 보면, 특히 학생지도 역량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인권의식과 기본지식이 핵심이기 때문에 교원 임용 단계에서 인권과목 수강 여부 등을 평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권고 :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 1-3-1.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인권존중 의식 증진 및 인권교육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대학교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대학교에서 교직 교양, 교직이론, 전공교과에서 인권 및 인권교육론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교과를 개설하여야 한다.
- 1-3-2.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 교육청 등의 교원연수기관은 각종 자격 연수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개설하거나 별도 독립적 인권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교원의 인권의식 및 인권 교육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1-3-3. 교원임용시험의 교원 평가 기준에 교원양성과정 중 인권과목 이수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4) 인권교육 촉진 및 내실화

가)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 의무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 관련 직업종사자 사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학교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키고,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고,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에 인권교육을 위한 전담부서의 명확화 등 학교인권교육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더불어,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에게도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파하는 등 인권교육이 내실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11년 학교폭력의 유형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5.2%가 학생간의 권력을 구분 짓는 귀족, 양민, 천민 등의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적과 경제적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억압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차별 문화가 학생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9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 분석 결과,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자살할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별, 나이, 외모, 신체조건, 성적에 따른 차별 경험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급증¹⁴⁾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학습결손 및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부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소외 계층 자녀들이 주류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채 집단따돌림, 학교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권의 이해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하며, 차별과 소외를 방지할 수 있는 지속적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빈곤·장애 및 다문화가정 자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다문화가정 학생 등 소수자 및 그 학부모를 위한 지원방안과 함께 인권적 관점에 기초한 다양성의 인정과 다문화 사회의 이해를 기초로 한 교육적 접근을 확대하여야 한다.

14) 전국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현황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합쳐 2006년도에 8,834명에서 2011년도에는 38,890명으로 증가하였다. (교육과학 기술부 2011. 4.기준)

권고 : 인권교육 촉진 및 내실화

- 1-4-1.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 교육청에 인권교육 전담부서를 명확히 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1-4-2. 교원과 학생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에게도 전파하여야 한다.
- 1-4-3. 사회적 약자 보호와 차별방지를 위한 교원 및 학생 대상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2. 학생 인권 증진

가. 현황 및 문제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2(아동인권보호와 증진에서 독립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서 “아동의 인권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아동의 발달상태가 인권침해행위에 특히 취약하며 아동의 견해는 여전히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은 투표권이 없고, 인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정치적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지도 못하며, 아동의 권리보호를 해 줄 단체에 대한 아동의 접근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동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그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찾기 위해 사법적 체제를 사용하는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라고 하여, 아동 인권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의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회원국에게 그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 권리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다양한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한 후 그 이행에 대하여 1994년 11월에 제1차, 2000년 5월 제2차, 2008년 제3·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최종견해(권고) 88개항을 발표하였다.

제3·4차 최종견해에서는 제1차와 제2차 최종견해에서 이미 지적한 내용들이 다시 언급되었는데, 유보사항의 철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과의 조화 및 재판 반영, 아동권리의 독립적 모니터링, 아동예산, 아동에 관한 자료수집, 홍보 및 교육, 차별금지, 아동견해 존중, 체벌의 전면 금지, 표현·결사 및 집회의 자유, 입양, 장애아동, 건강 및 보건서비스, 이주아동, 성적 착취, 소년사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면서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킬 목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성과 갈수록 심화되는 입시경쟁 문화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다.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제도는 성적 중심의 학생 및 학교 평가시스템 형성으로 과열 경쟁 문화를 조성하고, 사교육을 부추기고, 예·체능이나 도덕·사회·역사 등의 인성 관련 과목의 무시로 학생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종합적 발달을 기대할 수 없게 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 등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아래 <표1>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정책은 모든 관심을 성적에 집중시킨 결과,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도 학교성적, 자살 충동 이유도 학교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1> 청소년(15~19세)이 고민하는 문제

고민	성적 적성	외모 건강	가정 환경	용돈 부족	직업	친구	이성 교제	학교 폭력	흡연 음주	기타 없음
2002년	48.9	18.4	6.8	5.7	5.2	3.3	5.5	1.2	1.5	3.5
2010년	55.3	16.6	6.8	4.1	10.2	2.2	1.0	0.2	0.1	0.5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 백서 2011」, 통계청 「사회조사(2010년)」]

<표 2> 청소년(15~19세)의 자살에 대한 충동 이유(2010년)

구 분	성적, 진학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직장문제	기타
비율(%)	53.4	11.2	12.6	10.5	1.6	10.7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 백서 2011」, 통계청 「사회조사(2010년)」]

이와 같은 학생들의 성적 스트레스는 그들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자살로 이어진다는 통계에 접하게 된다. <표 3>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연보」에서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교통사고에서 2008년 이후 자살로 바뀐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3>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비교

(단위 : 인구 10만명당 명)

구 분	2000년		2008년		2009년		2010년	
	원인	사망자	원인	사망자	원인	사망자	원인	사망자
1위	교통사고	19.3	자살	6.4	자살	15.3	자살	13.0
2위	자살	8.7	교통사고	5.5	교통사고	8.3	교통사고	8.3
3위	암	4.9	암	3.1	암	3.8	암	3.6
4위	익사사고	3.5	익사사고	1.1	심장질환	1.0	심장질환	1.2
5위	심장질환	1.8	선천기형	0.7	익사사고	0.8	익사사고	1.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 연도, 「청소년 통계(2012년)」]

이와 같이 학교성적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에서 아동·청소년 자살과 더불어 따돌림, 집단괴롭힘, 학교폭력 등 발생 원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교육상황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제3·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래와 같이 우려하고 권고하였다.

“당사국 교육제도 내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과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염려한다. 협약 제29조(아동교육의 목표)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1(2001)을 고려하여, 현 교육 및 관련 시험제도를 평가하라.”

위와 같은 국제협약의 최종견해를 존중하여 학교폭력, 학교성적비관으로 인한 학생 자살, 사교육비의 증가, 우리 교육현실 등을 직시해 볼 때,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시각에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현행 교육제도를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극심한 경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현행 입시중심의 교육정책을 지양하고, 모든 학생 개개인의 인격의 완전한 발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교육목표로 하는 학생중심적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판단

1)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교육기본법」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방법·교재·시설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2조),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18조의4),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고려 받을 권리,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아동(학생)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정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한과 통제 위주의 접근을 중시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집회 자유, 두발·복장의 자유, 사생활 보장, 학생 자치 및 참여권 등에 대해 학생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세대간 갈등도 발견된다.

학생인권의 보장 수준과 방법은 사회구성원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현실을 고려한 처방이 찾아져야겠지만, 적어도 그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국제적 인권 보장기준에 맞게 학생을 권리의 주체이자 능동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설정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이 권리 주체임을 논란의 여지없이 사회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인권기본법」(가칭) 제정 또는 학생 인권에 관한 중점적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고 :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2-1-1.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점사항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학생인권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한다.

2) 학생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 시 민주적 학생의견수렴 절차 마련

학칙 제·개정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학칙의 기재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위임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제9조에 학칙의 기재사항과 제·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의 규정에는 학생인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 즉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제7호), 학생자치활동

의 조직 및 운영(제8호), 학칙개정절차(제9호) 등을 명시하면서, 학칙의 제·개정 절차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 규정을 살펴보면, 학생 인권과 관련한 사항을 학칙에 담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견상 민주적 절차로 보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학생 등 학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의견 수렴된 내용의 반영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만 거치면 그 반영 여부에 상관없이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현행 규정대로라면 학교장이 형식적 의견수렴만 한 채 학생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위 제7호부터 9호를 의미함)을 학칙에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의 임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방법으로 학생 등 당사자의 의견수렴은 물론 의견수렴의 방법,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최소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고 : 학생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 시 민주적 학생의견수렴 절차 마련

2-2-1. 학생 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과 같은 학생 당사자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의 학생 참여 기회 보장 : 의견수렴은 물론 의견수렴방법, 그 결과의 반영방법 등을 포함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마련하여야 한다.

3) 학생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학교에서는 성별, 장애, 성적, 빈곤층 자녀나 한부모·조부모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의 가족상황·형태, 피부색, 외모, 성적 지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양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화교학교의 학력 불인정 차별, 대학교의 수시 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남학생 우선의 출석번호 부여 차별,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차별, 성적에 의한 학급회장 자격 부여 차별, 성적 우수자반 운영이나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독실 이용·자율학습 전용실 이용 허용 등 학교시설 운영에서 차별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시정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차별 사례들의 다수는 이를 차별이라고 전혀 의식하지 못했거나, 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더라도 행정 편의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정서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히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인권 존중을 지향하는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며,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밝은 미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차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구별하거나 대우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야 하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발생하기 쉬운 차별이나 잠재하는 차별에 대한 예방과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이주아동·청소년, 중도복귀학생, 탈북아동·청소년, 장애학생, 여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차별받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는 등 종합적 차별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권고 : 학생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2-3-1. 이주아동·청소년, 중도복귀학생, 탈북아동·청소년, 장애학생, 여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차별받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차별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발생 시 구제 보장

인권침해·차별은 그 다양성과 새로운 형태의 지속적 출현으로 완전한 예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의 발생 시 적절한 구제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더라도 그것에 대해 호소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하고, 호소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진중하게 들어주는 대상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으며, 경찰이나 법원 등의 수사나 사법기관의 구제절차에 접근하는 것은 더 어렵다.

이처럼 학생들이 구제절차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강력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예방 지침 및 구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함으로써 학교 안팎의 구제기관·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권고 :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발생 시 구제 보장

2-4-1.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예방지침 및 구제제도에 관한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3. 교원의 교권 존중

가. 현황 및 문제점

일반적으로 교권침해는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교원, 학부모, 지역 주민, 학생 등이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교원의 전문적 지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¹⁵⁾.

민주화의 진전 등으로 교원의 절대적 권위가 인정되던 시대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교원과 학생, 교원과 학부모의 새로운 관계정립이 불가피해졌다. 교육 주체들 간의 관계는 신뢰와 협조를 기본으로 형성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원이 지니던 절대권위에 대한 갈등과 혼란이 적지 않다.

교원의 시대 역행적인 반인권적·비민주적인 행태는 당연히 비판되고 견제되어야 하지만 이른바 ‘교실붕괴’라는 용어가 상징하듯이 정상적인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지도 권한조차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도 학교현장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원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신체적·언어적 폭력, 수업 방해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를 피해 교원들이 교직을 떠나거나 학생에게 더 무관심하고 방관자적으로 행동하여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등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교원의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확히 하고, 교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판단

1)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초·중등교육법」 “교장은 학생에 대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제18조)”고 하여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5) ‘교권’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권침해는 ‘교권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노기호, 군산대학교 2011) 등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 교총은 2010년도에 교권침해 유형을 조사한 바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 제3항)”고 하여,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은 학생의 학습을 받을 권리, 즉 학습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교원의 교수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교원은 학교 생활에 대해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은 교원의 생활지도를 받을 의무가 있다.

생활지도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교육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며, 만일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학교 운영은 불가능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입시 위주 교육풍토에서 교과수업 중 교과 이외 지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교원의 생활지도권의 행사 과정이나 내용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학생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 소지품, 숙제, 수업태도 등에 대한 지도에서 초래되는 학생의 반발이나 반항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의 생활지도를 받는 학생들 일부는 그 지도의 정당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거나 일부 학생·학부모는 지식 전달 외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의 권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교원 스스로도 학생이 생활지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교원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 어디까지 하는 것이 정당한지 확신을 갖지 못하며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민원이나 폭력, 무분별한 사회적 비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는 지식과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으로 생활지도는 지식 습득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고 교원의 업무이자 권한이며, 학생은 학교생활을 하는 이상 생활지도를 받을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교원의 생활지도권에 대한 개념, 그 내용과 범위, 학부모와의 관계 등 생활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에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경시하려고 하는 경향을 예방하고,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지도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여 교육주체들 사이에 정당한 생활지도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이해와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효과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세세한 생활지도 사항과 그 한계에 대해서 학생·학부모의 의견 청취와 반영, 생활지도를 받는 경우 학생·학부모에게 그 이유 및 내용 설명, 생활지도를 받은 학생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변화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권고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 3-1-1.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법에 생활지도권의 개념과 내용, 범위, 학부모와 관계 등 생활지도 제반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3-1-2. 생활지도사항에 대한 학생·학부모와의 소통, 생활지도학생의 변화 점검 등에 관한 표준화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현재 교원은 학생·학부모로부터 폭력·폭언, 부당한 민원 등의 침해를 받고도 교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2010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에서 발표한 2010년 발생한 교권침해 상담사례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총 260건의 상담사례 중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협박·폭행 등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37.69%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교권침해 유형별 건수(2006.~2011. 4. 총 515건)를 살펴볼 때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30.1%, 수업 또는 학생지도 중 학생이 교원에게 폭언 및 욕설한 경우를 포함한 기타의 경우가 57.3%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학생지도, 학급 운영과정에서 교원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의 폭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현재로서는 학생의 징계나 사법기관에 의한 처리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외에도 학생, 학부모가 교원과 학교에 대한 불만을 폭력 외의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고 그 불만을 공정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해서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교원이 적용받는 교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한 구제 및 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가칭) 등의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권고 :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3-2-1. 모든 교원이 적용받는 교원의 인권침해 구제 및 지원제도를 규정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가칭)」 등의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3) 교육과 훈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제도·환경 보장

교원은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학교에서의 근무여건과 환경은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교원은 교육활동 및 근무관계에서도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징계,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학생의 욕구를 충족하고 학생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학생 중심적 교육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원의 접촉 기회를 증대하고 상호이해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교원 확충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입시위주의 지식전달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집중이수제 교육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원이 교과교육 및 학생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전담 교원제도나 대학과 같은 행정제도 도입 등 행정·잔무 경감제도의 추진이 필요하다.

권고 : 교육과 훈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제도·환경 보장

- 3-3-1. 교원 및 교실 확보를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여야 한다.
- 3-3-2. 행정전담교원제도 도입 등 행정업무 경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3-3-3. 집중이수제교육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4. 차별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가. 현황 및 문제점

체벌금지에 대한 우리사회 논의는 1997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 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1997년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징계) 등을 제정하여 원칙적 체벌금지의 인식이 확산되었지만, ‘기타의 방법’,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의 모호한 예외 조항이 존재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체벌금지 권고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생활규정에서 체벌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일을 추진하여 2003년 2,845개교(27.7%), 2004년 5,369개교(52.16%), 2005년 5,458개교(51.0%), 2006년 5,706개교(53.1%) 등으로 체벌금지 학교가 증가되었고, 체벌금지 대안으로서 2009년부터 그린마일리지

(상·별점) 제도를 도입 추진하는 등 차별금지 추세가 학교현장에 확산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진행과정에서 2010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차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서 서울시 소재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의견이 팽팽히 맞서게 되었는데, 즉 학생 차별은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므로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일체 금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차별은 용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후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교원 측은 전면적인 차별금지 조치가 공교육 불신과 교육권 약화를 가져와 교원의 학생지도 효율성을 크게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는 차별이 아동·청소년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점을 우려하여 차별금지를 권고한 바 있으나, 차별을 대체하는 교육적 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차별을 대체하는 교육적 대안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학생들의 인권과 함께 교원의 교육권도 바로 세울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즉 차별을 대체할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판단

1) 처벌 위주에서 인권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 강화(Reinforcement)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제거 또는 빈도수 감소를 위해서는 벌(Punishment)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은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행동은 반드시 강화와 벌의 원리에 의해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학교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⁶⁾.

이에, 우리사회도 지난 시대의 권위와 규율을 앞세운 교육방식의 한계에 부딪친 만큼 인권친화적인 긍정적 교육(Positive Education)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즉,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늘려 주인의식을 고양 하도록 하고, 학생훈육을 위한 체벌대체 방법 선택 등 중요사안에 대해 학생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전향적 사고가 요구된다.

학생체벌은 「유엔아동권리협약」뿐만 아니라 국내법의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학생의 훈육, 훈계 등을 위해 신체에 고통을 가한다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이며, 비인권적이라 볼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제37조)”고 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관련된 「일반논평 8」에서 “위원회는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이란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고,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되는 모든 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더욱이 비물리적인 형태의 처벌, 예를 들어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위협하는 것, 겁을 주는 것 혹은 아동을 비웃는 것 등은 동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고 하며, 학생에 대한 정신적 고통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과 관련하여 2011년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16) 학습이론을 창안한 스킨너(B. F. Skinner)는 유기체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강해 질수록, 유기체의 부적응 행동의 강도와 빈도수가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 돌봄 환경에서 차별이 여전히 성행한다는 과거 우려사항을 반복한다.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차별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라. 그리고 학교차별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 차별 피해자 아동이 차별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학생차별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고 있고, 학교교육의 패러다임도 긍정적 훈육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차별이 없이도 학교현장에서 학생 훈육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학생지도 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권고 : 차별 위주에서 인권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4-1-1.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별’ 허용방침이 차별 존속을 야기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4-1-2. 아동권리 인정·학습참여 확대 등의 ‘긍정적 훈육방법’의 선진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4-1-3. 교원이 교실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 훈육방안의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2) 현행 그린마일리지(상·별점) 제도의 개선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상·별점 제도로 학교생활 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차별이 아닌 상점과 별점으로 지도하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시책사업으로서, 별점 누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학생에게 순화교육 이수 및 교내 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상점을 주고 별점을 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배점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원이 자의적으로 상·별점을 매길 우려가 있고, 학생의 자율성이나 창의성 보장보다는 수동적 인간 형성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별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학생의 경우 그 내용을 학생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남기도록 하여 낙인효과 등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현행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별점의 기준을 매우 구체화 하여 교원의 자의성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상·별점을 주기 이전에 교육적 지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권고 : 현행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 4-2-1. 상·별점을 주기 이전에 교육적 지도를 우선시 하여야 한다.
- 4-2-2. 상·별점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교원의 자의성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고 권고하였다.

전국의 학교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체벌대체 프로그램들 중 비교적 만족스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체벌대체 모형에 입각한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Green Mileage), 그리고 학생 자치법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체벌대체 프로그램들은 아직 시험적인 단계에 있으나, 잠정적인 평가결과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하고 검증하여,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로 삼아야 하며, 특히 인권적인 측면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체벌대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상식적인 이해가 선결되는 것이 그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이를 위해서 체벌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그 밖에 체벌대체 프로그램 모색 과정에서 ‘체벌’을 담은 용어를 지양하고, 교원 학생 간의 인격적 상호작용과 존중, 교육적 지도 의미를 담고 있는 체벌대체 지도방법을 의미하는 인권친화적 용어를 개발하여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권고 :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

- 4-3-1. 현재 적용 중인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4-3-2. 교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체벌대체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4-3-3. 체벌대체 프로그램 모색 과정에서 ‘체벌’을 시사하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인권친화적 대체용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5.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 대응

가. 현황 및 문제점

2011년 12월 ○○중학교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 다시 부각시켰고 그 이후 연이어 발생한 학생들의 자살사건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지능화, 사이버화 추세 등은 2012년 2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이어졌다.

1995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05년 「학교 폭력예방 5개년 기본계획」, 그리고 2011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까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수는 증가¹⁷⁾

17) '2010년 학교폭력 실태발표 결과 학교폭력 피해율은 2008년도 10.5%에서 2010년도 11.8%로 조사되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 3,560명 대상)

하고 있으며, 외상이 증거로 남는 물리적 폭력 유형에서 정서적, 언어적 폭력 및 사이버 폭력 유형으로 학교폭력의 추이가 변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의 유형별 실태조사(2011년)에 따르면, '신체폭행'(25.8%), '괴롭힘'(21.7%), '집단따돌림'(21.2%), '금품갈취'(12.9%), '언어폭력 및 협박'(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적, 언어적 폭력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위에서 이를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 인권의식 실태조사(2011년)」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집단따돌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15.7% (남학생 3.9%, 여학생 11.8%)였으며, 또래들로부터 언어폭력 경험은 57.9%(남학생 34.3%, 여학생 23.6%), 성적 폭력은 16.3%(남학생 10.4%, 여학생 5.9%)로 나타났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응수준을 조사한 결과(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의 경우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수면장애, 등교거부, 자살충동 등 정신건강적 문제를 호소하였다. 피해학생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와 '많이 고통스러웠다'가 60.8%였으나, 피해학생의 57.5%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그 사유로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1위),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위), '보복당할 것 같아서'(3위)로 나타났다.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을 단순한 '장난'(1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가해를 한 후 가해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1위),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일이 좋게 해결되었다'(2위), '학교 담임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들었다'(3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은 1,059명 중에 과반수 이상(62.0%)이 '모른 척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이외에 '함께 말림(17.1%)', '선생님께 알람'(9.9%),

‘부모님께 알림’(3.1%), ‘경찰에 신고’(1.0%), ‘상담센터에 상담’(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보고 나서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27.5%), ‘관심이 없어서’(24.6%),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4.0%)의 순으로 방관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사회가 여전히 다양한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집단따돌림(Cyber Bullying)을 조장하는 사이버 폭력, 강제로 빵 심부름을 시키는 속칭 ‘빵셔틀’ 등 신종 학교폭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폭력에 둔감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방법에 있어서도 피해학생 과반수 이상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과반수 이상이 ‘보복이 두려워 방관한다’고 응답함으로써, 기존 보호체계에 대해 학생들의 신뢰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과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더 이상 학교폭력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이 존재하고 있고, 학교폭력에 시달린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주의 등에만 초점을 두고 가해학생이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폭력화되는 현상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더불어 가해학생의 사회복귀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정책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종합대책과 관련한 「학교폭력실태조사」의 공표로 인해 학생, 학교, 지역사회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논란도 제기되었다.

나. 판단

1) 교육주체간의 소통 강화

가)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확대

최근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 학부모교육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부모 책무 확대 관련 외국의 우수사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원·학부모연합회(Parents and Teachers' Association)가 있다. 교원·학부모연합회는 유치원 때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학교장 등 학교대표는 학년 초에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 학과과정 등을 설명하고, 학업에 대해 조언하며, 학부모의 질의에 답변한다. 각 과목별 교원은 학부모를 상담하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칭찬, 개선필요 사항, 공부방법 등에 대해 조언한다.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시로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원이 학부모에게 면담·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교원·학부모회의가 활성화되려면 학교 문제 참여에 있어서 부모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부모 교육이나 학부모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다수의 학부모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일하는 어머니 및 아버지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예컨대 학부모의 학교접근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인 학부모의 학교 방문이 유급휴가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족의 날(Family day)처럼 매월 1회 학부모 교육을 위한 돌봄의 날(Caring day)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학생의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강화

학교폭력의 문제는 청소년이 학교폭력정책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교내 생활규범 제·개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학생자치 활동 및 동아리 활성화가 이루어져 학생이 학교 내 자기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예로 학생자치회가 만든 인권규정이나 규칙 안에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거나,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을 앓겠다는 다짐을 담은 가치 ‘평화선언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학생이 자율적,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권고 : 교육주체간의 소통 강화

- 5-1-1. 교원·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5-1-2. 학부모의 학교접근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가 자녀의 상담 등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일정한도 내의 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5-1-3. 학생의 자율적 주체적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강화

가)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종합적 발달

학교폭력은 일종의 병리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예능과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학생 간 이해와 유대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문상담교원 인원 확충 및 실질적 권한 부여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적, 전문적, 지속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원의 일반적 상담지도와 함께 전문상담교원의 상담과 지도, 조인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원을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제19조의2), 동법 시행령은 하급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교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0조의2).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학교에 전문상담교원을 두도록 하고, 전문상담교원, 보건교원 및 책임교원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규정 등을 살펴보면, 학교에 전문상담교원을 두지 않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하급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원을 두어 운영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에, 예산 등의 문제를 이유로 전문상담순회교원을 채용하여 교원 1인이 여러 학교를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정 학급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교원이 학교내 상주하여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규직 전문상담교원이 확충되어야 하며, 특히 정규직 전문심리상담교원을 중학교부터 우선적으로 배치(중학교는 학교당 1인 이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상담교원이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자율적 판단 하에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도 바람직하다.

다) 학생참여형 방식의 학교폭력 사전예방 프로그램 도입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첫째 학교폭력이 일반적으로 학급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급단위의 모든 대상, 특히 방조자 집단이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강의식 방식보다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인식변화나 실천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해외 우수사례로 핀란드의 키바(일명 '왕따(집단따돌림)'에 맞서다-Kisusaamista Vastaan)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집단따돌림에 관한 단편영화 감상, 역할극 등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기 위한 훈련과 왕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담은 컴퓨터 게임 등을 제공하는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인데, 이는 집단따돌림이 가해 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문제가 아닌 교실 전체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한 이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핀란드의 키바 프로그램과 같은 공감중심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학교폭력예방법」 등 이행 모니터링 강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준수가 미흡하고, 일선에서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그 이행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이행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권고 :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강화

- 5-2-1.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5-2-2. 예능과 스포츠 과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5-2-3.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등 전체학생을 위한 참여형 예방 프로그램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 5-2-4. 정규직 전문상담교원을 학교 내 1인 이상 배치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 5-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3) 교원의 역할 강화

지금까지 교원들이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서 과중한 업무 부담, 교원 역할에 대한 모호성, 생활지도 교원에 대한 기피 풍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학력과 지식교육이 우선되는 상황에서 수업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인 점에서 학생의 생활지도는 교원의 부차적 업무 또는 선호하지 않는 업무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등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지도를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 교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양질의 생활지도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용교원 또는 생활지도부장 대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교육을 필수화하여 다양한 연수를 기획·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회복적 학생지도의 원칙과 방법,’ ‘또래 조정반 운영 및 훈련을 위한 연수,’ ‘학교 내 갈등조정,’ ‘평화로운 학급운영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비폭력대화에 기반한 조정 훈련’ 등의 연수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학교폭력 대응에서 전문상담교원을 비롯해 위(Wee) 센터¹⁸⁾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같은 전문기관과의 역할 분담도 바람직하다.

권고 : 교원의 역할 강화

- 5-3-1. 교원의 참여 촉진을 위해 생활지도활동을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5-3-2. 신규임용교원이나 생활지도교원 대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교육을 필수화하여야 한다.
- 5-3-3. 학교폭력 대응에서 전문상담교원, 위(Wee) 센터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18) Wee+education, Wee+emotion의 합성으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망으로 학교에는 Wee클래스, 지역교육청은 Wee센터, 시·도교육청은 Wee스쿨로 운영된다.

4)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 도입

인권적 학교폭력 예방 및 개입모델은 학교폭력의 직접적 대상인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방관자 등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포괄하여 화해와 용서를 이끌어내고 문제해결과정에서 모든 관련자가 성장하는 경험을 쌓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는다.

가) 학교폭력 초기대응 프로그램 도입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조용히 수습되기도 하고 사태가 커지기도 한다. 학교폭력의 시간 경과에 따라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폭력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둔 학교평화모델(PEACE-School Model)이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모델은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이 중심이 되어 개발한 것으로 폭력사건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각 대응주체가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지 제시하고, 일련의 과정에 따른 관련자의 대안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정확한 개입전략 및 기술을 제공하고 피해로 인한 사회적 및 개인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갈등사안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방법론이다.

학교폭력 초기대응을 위해 학교평화모델 도입 등 유사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학교폭력 중기대응 프로그램 도입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초기단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여기서도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어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사법기관에서 법적 분쟁의 단계를 밟게 된다. 학교폭력에 외부개입이 들어오기 직전 단계이므로 이때 어떻게 학생 신변보호와 적절한 문제해결의 시범을 보이느냐는 향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다.

폭력사건 이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강한 처벌과 높은 배상을 요구하고, 가해자 측은 가능한 약한 처벌과 낮은 배상의 책임을

말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갈등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있으며, 이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분쟁에 휘말린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해 원만한 화해와 중재로 이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시작한 모델인 ‘대화모임(Conferencing)’을 학교폭력 문제에 도입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화모임은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가해자의 가족과 친구 등 모두가 참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델로서, 집단따돌림이 범죄로 발전되기 전에 가해학생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의 가해자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중기대응을 위해 뉴질랜드의 ‘대화모임’ 모델 등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권고 :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 도입

- 5-4-1. 학교폭력의 시간 경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대처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초기 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 5-4-2.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의 학교 폭력 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5)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강화

가) 피해·가해 학생의 치유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와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가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결과 피해·가해 학생의 심리치료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부족, 치료시설 미비 등,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게다가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으나, 일부 가해 학생의 경우 저소득층에 해당되어 심리치료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동 프로그램 참여가 부진하다.

따라서,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안정적 학교 복귀 등을 위한 심리치료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가해 학생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나) '위 스쿨'(Wee School) 확대 및 대안학교 연계

전국 초·중·고 교원 367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일보의 설문조사(2007. 8. 8.)를 보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공권력 투입 강화를 통한 해결'(22%)보다 '상당·교정지도 강화를 통한 해결'(78%)이 압도적으로 많아, 일선 교원들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 교육중심의 지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처벌하는 것은 일시적 해결은 되지만 근본적 해결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실에서는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분리되기도 하고 피해학생이 다시 가해학생이 되기도 하는데, 이처럼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어 학교에서 벗어난 청소년이 저지르는 비행은 폭력의 재생산, 학교이탈청소년 문제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을 학교로부터 분리시키는 정책이 단기적이라면, 가해학생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둘 다 학교나 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복귀·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및 대안교육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7곳에 설치된 정부 주도의 위탁형 대안학교 '위(Wee) 스쿨'을 최소 교육청별로 한 개씩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 '치료형 기숙학교' 목적의 대안학교와 적극적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 피해·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치유적 지원

정부의 종합대책을 근거로 하여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제17조 제9항 및 제22조).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 치료도 필요하지만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한 치료적 교육도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피해학생의 경우도 가해학생과 같이 가정의 돌봄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며, 피해학생의 부모도 죄책감, 분노 등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이에 상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부모 모두에게 부모 역할지원, 부모상담, 가족치료 등 치유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권고 :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강화

- 5-5-1.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심리치료 등 인권침해 관련 학생의 치유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 5-5-2. 위 스쿨(Wee School)을 확대하고, 치료형 기숙학교 목적의 대안학교와 연계하여야 한다.
- 5-5-3. 피해·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상담체계 구축 등 치유적 접근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6)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개선

정부에서 2012. 2. 6.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해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각계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마련되었으나,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함)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학생의 경우 장애 당사자(또는 그 가족)의 상황과 원상회복이나 치유를 위한 절차를 깊이 이해해야만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현행법의 자치위원회 구성은 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의 취지와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특수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특히,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 중 1인이 자치위원회 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하는 주 내용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으로 학생의 문제를 다루는 기구인 점을 감안할 때 학생이 자치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존속기간 등 개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규정(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6조 제2항에 의해 담당교원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등·중등학교는 졸업 5년 뒤, 고등학교는 졸업 10년 뒤에만 삭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이와 같은 운영방식은 그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는 점으로 인해 입시 및 졸업 후 취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한 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뚜렷하고 모범적인 생활이 가능할 경우 졸업 전에 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삭제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제요청이 가능하도록 중간삭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 및 활용방식 개선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시행을 담보하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는 학생정보(요보호학생, 질병 등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가족사항(부모의 성명, 연령, 직업, 연락처), 특이사항(동거가족수, 형제자매 유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등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교육관계 특이사항(동급생, 선·후배 관계 등), 조치사항(학교선도위원회의 징계 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 그 외 폭력과 관련한 사항), 생활지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기록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료의 보관 방법에 있어서도 담임교원이 진급 시 이 기록을 새로운 담임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출 시에는 원적학교에서 전출학교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담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과 이 자료가 대외 비공개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긍정적인 면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인 학생의 과도한 정보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정보의 제공, 즉 다른 교원과 다른 학교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한 방침 등은 학생 개인의 사적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공유하는 정책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의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 활용에 대하여는 학생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 인권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공개 방식 개선

2012년 1~2월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9만 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한 ‘201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4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표 4> 학교별 학교폭력실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공개 서식

시도	학교급	학교명	지역 정보	학생 수	응답 수	회수율	피해 응답 수	일진 인식 건수	피해 유형 별	피해 장소 별
서울	초등학교	○○초등학교	○○구	○○	○○	18.7%	12	3	○○	○○
서울	초등학교	○○초등학교	○○구	○○	○○	12.4%	8	7	○○	○○
서울	초등학교	○○초등학교	○○구	○○	○○	9.4%	4	6	○○	○○
서울	초등학교	○○초등학교	○○구	○○	○○	41.1%	24	10	○○	○○
서울	초등학교	○○초등학교	○○구	○○	○○	37.3%	10	7	○○	○○

위 실태조사의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개취지와는 별개로 지역별, 학교별 폭력실태 등이 학교관계자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개됨으로써, 해당지역은 폭력 빈발지역으로, 해당학교는 폭력학교로, 해당 학교 학생은 폭력학교의 학생으로 낙인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개보다는 교육적 목적의 범위 안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권고 :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개선

5-6-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보장, 학생의 직·간접적 참여 보장

- 5-6-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 5-6-3. 사생활침해 예방, 개인정보 최소 수집, 민감정보처리 제한 고려 등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 5-6-4.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목적상 필요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VI. 소수의견

1. 보충의견(위원 장명숙)

권고 중 2.학생인권 증진에 관하여(II-1.1 관련), 다수 의견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실태조사의 내용 분석을 토대로 학교 내 학생인권 보호 현황에 대한 우려와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 의견의 분석과 개선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에 대한 분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수 의견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 악화의 원인 진단에 있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중앙정부가 학생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점을 충분히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교육자치단체들이 재정·권한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중앙정부가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의무를 해태하는 상황에서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는 등 노력을 경주한 것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

우리 「헌법」과 「청소년보호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하면 학생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에 더 중하게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 정부는 학생 등 아동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학생인권증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비록 만시지탄의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나, 이번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를 계기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보다 앞서 학생인권의 구체적 보장과 증진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등 규범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일부 시·도 교육청의 노력을 지지하고, 나아가 국회·중앙정부 등 국가적 차원의 입법적 개선(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거나 학생인권기본법을 제정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2. 반대의견(위원 장명숙)

권고 중 3.교원의 교권 존중에 관하여(III-1-1 관련), 다수 의견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의 교권 존중을 위한 입법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수 의견과 같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교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필요함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교원의 인권주체성에 따른 권리보장과 교원의 지위에서 발현되는 교권 보장이라는 개념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며, 양자의 보호와 보장 목적 또한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교원의 노동권, 휴식권, 인격권 등 학교 내 활동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과 교원의 수업권, 학생지도권, 학생평가권 등 교사의 지위에서 발현되는 직무권한에 관한 사항은 그 보호의 방향과 보장의 제도적 측면이 달리 평가되고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견은 교원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과 교권의 보호라는 서로 다른 면을 구별하지 않거나, 나아가 학생인권과 교권을 은연 중 대립시키는 접근을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다수 의견은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학생의 학습을 받을 권리, 즉 학습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교원의 교수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교원은 학교생활에 대해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은 교원의 생활지도를 받을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교수권(이하 ‘교사의 수업권’이라 한다)은 헌법상의 독립적인 기본권이라고 보기보다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권리 또는 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며(헌재 89헌마88), 이러한 의견에 기초하여 볼 때 교사의 수업권에서 학생지도권이 파생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교사에게 학생지도권이 인정된다고 보거나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지도권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수업방해 또는 수업권의 행사와 관련이 없는 학생의 생활지도권은 어디에서 파생하고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학생지도권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나 교사의 수업권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교육기본법」 제2조의 규정 취지와 같이 학생이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인권적 가치에 근거해 인격적 존엄과 가치를 완성해 가고, 이를 토대로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고 지도하기 위한 권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은 이러한 목적 아래 학생지도권을 학교장의 권한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학생지도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영역이기보다는 학교 내 모든 학생들의 인권적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헌법적 요청에 의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으로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학교장의 학생지도권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학교 내 학칙 등에 의해 교사들에게 재위임 된다고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다수 의견과 같이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인권적 차원의 권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처럼 교사의 생활지도권은 이미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교사의 생활지도에서 비롯되는 분쟁들은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의 불신이나 생활지도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생활지도의 제반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생활지도가 곤란하다는 주장은 생활지도를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의 생활지도방식의 변화, 즉 전통적인 권위적 생활지도 방식에서 대화와 소통에 기초한 생활지도 방식으로의 변화에 그 해결책이 있다고 보인다. 생활지도 제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새로운 학교환경에 걸맞은 생활지도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2. 7. 9.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위원 김태훈	위원 한태식	위원 윤남근	위원 양현아
	위원 김성영	위원 곽관주	

<붙임 1> 권고사항

구 분	권 고	피권고기관
I. 인권교육의 제도화		
1. 인권교육제도 기반 마련	I-1-1.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인권가치를 포함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부분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서로 인권을 존중하며, 인격을 도야하고...”로 수정	교육과학기술 술부장관
	I-1-2 학생의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부분을 “학교교육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인성 함양 및 창의력 계발을 포함한...” 으로 수정	
	I-1-3.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I-1-4.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평가기준에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항목이 포함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2. 학생 인권 교육 강화	I-2-1. 교과서에 실천사례 중심의 학생발달단계에 맞는 인권교육 내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 술부장관
	I-2-2. 도덕, 사회, 실과, 체육 등 기존 교과목에 인권 관련 내용의 반영을 확대하여야 한다.	
	I-2-3. 중학교 선택교과와 고등학교 교양교과에서 인권 과목을 확대 개설하여야 한다.	
	I-2-4. 자신의 권리 옹호와 타인의 권리 존중이 동반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원의 인권 교육 역량 강화	I-3-1.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인권존중 의식 증진 및 인권교육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대학교에서 교직교양, 교직이론, 전공 교과에서 인권 및 인권교육론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를 개설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 술부장관

구 분	권 고	피권고기관
	I-3-2.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 교육청 등의 교원연수 기관은 각종 자격연수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인권 과목을 개설하거나 별도 독립적 인권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교원의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I-3-3. 교원임용시험의 교원 평가 기준에 교원양성과정 중 인권과목 이수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시도교육감
4 인권교육 촉진 및 내실화	I-4-1.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에 인권교육 전담부서를 명확히 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I-4-2. 교원과 학생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에게도 전파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장관
	I-4-3. 사회적 약자 보호와 차별 방지를 위한 교원 및 학생 대상의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II. 학생 인권 증진		
1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II-1-1.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점사항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학생인권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장관
2 학생 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 시 민주적 학생의견수렴 절차 마련	II-2-1. 학생 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과 같은 학생 당사자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의 학생 참여 기회 보장 : 의견수렴은 물론 의견수렴 방법, 그 결과의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장관
3 학생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II-3-1. 이주아동·청소년, 중도복귀학생, 탈북아동·청소년, 장애학생, 여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차별받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차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4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발생 시 구제 보장	II-4-1.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예방지침 및 구제제도에 관한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장관

구 분	권 고	피권고기관
III. 교원의 교권 존중		
1.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III-1-1.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법에 생활지도권의 개념과 내용, 범위, 학부모와의 관계 등 생활지도 제반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술부장관
	III-1-2. 생활지도사항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생활지도학생의 변화 점검 등에 관한 표준화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술부장관/ 사도교육감
2.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III-2-1. 모든 교원이 적용받는 교원의 인권침해 구제 및 지원제도를 규정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가칭) 등의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술부장관
3. 교육과 혼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보장	III-3-1. 교원 및 교실 확보를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술부장관
	III-3-2. 행정전담교원제도 도입 등 행정업무 경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III-3-3. 집중이수제교육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IV. 차별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1. 처벌 위주에서 인권친화적 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IV-1-1.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벌' 허용방침이 차별 존속을 야기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술부장관/ 사도교육감
	IV-1-2. 아동권리 인정·학습 참여 확대 등의 '긍정적 혼유 방법'의 선진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IV-1-3. 교원이 교실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 혼유방안의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술부장관
2. 현행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IV-2-1. 상벌점을 주기 이전에 교육적 지도를 우선시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술부장관/ 사도교육감
	IV-2-2. 상벌점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교원의 자의성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	IV-3-1. 현재 적용 중인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술부장관/ 사도교육감
	IV-3-2. 교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체벌대체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 분	권 고	피권고기관
	IV-3-3. 체벌대체 프로그램 마련 과정에서 ‘체벌’을 시사하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인권친화적 대체 용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V.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		
1. 교육 주체간의 소통 강화	V-1-1. 교원·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V-1-2. 학부모의 학교접근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가 자녀의 상담 등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일정 한도내의 유급휴가제도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공무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근로자 대상)
	V-1-3. 학생의 자율적 주체적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교육감
2. 학교폭력 예방 예방프로그램의 강화	V-2-1.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교육감
	V-2-2. 예능과 스포츠 과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V-2-3.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등 전체학생을 위한 참여형 예방프로그램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V-2-4. 정규직 전문상담교원을 학교 내 1인 이상 배치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V-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3. 교원의 역할 강화	V-3-1. 교원의 참여 촉진을 위해 생활지도활동을 교육 활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V-3-2. 신규임용교원과 생활지도교원 대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교육을 필수화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V-3-3. 학교폭력 대응에서 전문상담교원, 위(Wee) 센터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구 분	권 고	피권고기관
4.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 도입	V-4-1. 학교폭력의 시간 경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대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초기 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기 술부장관/ 사·도교육감
	V-4-2.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의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5.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V-5-1.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심리치료 등 인권침해 관련 학생의 치유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기 술부장관
	V-5-2. 위 스쿨(Wee School)을 확대하고, 치료형 기숙 학교 목적의 대안학교와 연계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기 술부장관/ 사·도교육감
	V-5-3. 피해·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상담체계 구축 등 치유적 접근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기 술부장관
6.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개선	V-6-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보장, 학생의 직간접 참여 보장	교육과학기술기 술부장관
	V-6-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V-6-3. 사생활 침해 예방, 개인정보 최소 수집, 민감정보 처리 제한 고려 등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V-6-4.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목적상 필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 2> 판단 및 참고기준

1. 판단기준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 「교육기본법」 제2조, 제4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4, 제19조의2, 제20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제64조
-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제7조, 제8조의2, 제51조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4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 「학교보건법」 제1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제40조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1. 이 규약은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하다
 -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2. 참고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 : 교육의 목적(제29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 :

아동인권보호와 증진에서 독립국가인권기구의 역할

5. 성인과 아동은 유사하게 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독립 국가인권기구를 필요로 하지만, 아동의 인권이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점에 대한 부가적인 정당성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발달상태가 인권침해행위에 특히 취약하고, 아동의 견해는 여전히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아동은 투표권이 없고, 인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정치적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지도 못하며 아동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그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찾기 위해 사법적 체제를 사용하는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며, 아동의 권리보호를 해줄 단체에의 아동의 접근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사실들이 포함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맥락에서의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

7. 아동의 발달능력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적절한 지도와 훈육을 받는다면 완전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역량이 있는 적극적인 권리주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8.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와 이를 정당한 비중으로 고려 받을 권리(제12조)는 또한 청소년의 건강 및 발달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데 근본적이다.

○ 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3 : 교육에 대한 권리(제13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의 권리(특히 제19조, 제28조 제2항, 제37조)

11. 본 위원회는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을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고,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되는 모든 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대부분은 손이나 도구·채찍, 막대기, 벨트, 신발, 나무손가락 등으로 때리는 것(“찰싹찰싹 때리는 것,” 뺨을 때리는 것, 혹은 철썩하고 때리는 것”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예를 들면, 차는 것, 혼드는 것 혹은 아동을 던지는 것, 할퀴는 것, 꼬집는 것, 무는 것, 머리카락을 당기거나 뺨을 때리는 것,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화상을 입히는 것, 데게 하는 것 혹은 역지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것(그 예로 비누로 아동의 입을 세척하거나 매운 향신료를 삼키도록 강요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신체적인 처벌을 항상 굴욕적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잔혹하고 굴욕적이어서 동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기타의 비 물리적인 형태의 처벌 역시 존재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위협하는 것, 겁을 주는 것 혹은 아동을 비웃는 것이 포함된다.

18.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아동에 대한 여하한 수준의 폭력의 합법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형태의 처벌은 폭력의 형태이며 국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해야 한다.

47. 협약은 아동의 지위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단언한다. 아동은 부모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단순히 관심의 대상이지도 않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

2. 위원회는 교육 또는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체벌을 포함한 신체형에까지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의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3

2012. 8. 30.자 결정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 표명]

【결정사항】

- 【1】**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권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훈련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등을 정비하고, ‘연도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인권교육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 【2】**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출범이후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내실 있는 인권교육 실시를 독려하여 왔고, 이에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 및 특강을 통한 인권교육 횟수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음.
- 【2】** 그럼에도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다른 정책과제의 현안 교육에 밀려 제한적, 보충적으로만 실시되고 있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권 교육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3】** 공무원의 인권의식은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참조기준】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제2차 세계인권교육훈련프로그램 행동계획 (2010-2014)」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아 래 -

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권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 훈련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등을 정비하고, '연도별 공무원교육 훈련지침'에 인권교육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유】

I. 의견표명 배경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1년 출범이후 인권교육 확산을 위하여,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독려하였고 이에,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양적인 성장과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2. 위원회가 매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다른 정책과제의 현안 교육에 밀려 제한적, 보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권교육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공무원의 인권의식은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라 본 의견표명을 하게 되었다.

II. 검토기준

1.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2.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III. 판단(의견표명의 필요성)

1. 인권업무 담당자인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 필요

인권의 역사가 시사하는 것처럼, 인권개념은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 시작되어, 점차 국가의 적극적 보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공무원은 이러한 국가를 운영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가의 대국민 행위는 결국 공무원의 행위로 전달되고 표현되는 만큼,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기관의 행위자인 공무원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 수준은 공무원의 인권의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2. 유엔의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조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권고 (인권교육훈련선언과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채택)

가. 인권교육훈련선언

유엔은 2011. 12. 19.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상징성을 가진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s and Training)’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수성을 강조하고 있고,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국가의 조치사항 및 공적·사적영역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 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준거틀을 제시하고 있다.

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2010년에 채택된 유엔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The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2010-2014])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이 초·중등학교 과정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둔 반면,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공무원, 교원, 법집행관, 군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교원, 법집행관, 군인 등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취지는 이들이 한 국가의 인권을 선도하는 주요 주체임을 명시한 것으로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인권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국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으로 이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3. 공무원 인권교육

가. 공무원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과정운영 현황

인권교육과정은 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기관 중에는 운영 중인 교육원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래의 <표1>과 같이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1> 인권교육 과정

2010년도		2011년도	
교육기관	과정명	교육기관	과정명
2곳	2개	6곳	8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사회적 취약계층 이해향상과정
			인권감수성향상과정
			다문화사회 이해과정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인권감수성 강화과정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전라남도 지방 공무원교육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 진과정
제주도 인재개발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제주도 인재개발원	인권 및 국민권익신장 과정

		충남공무원 교육원	다문화사회이해과정
		충북자치 연수원	다문화사회와 이해

나. 공무원교육기관의 인권강의 및 인권특강 실시 현황

1) 중앙 부·처 공무원교육기관 중에는 중앙소방학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34시간, 1,181명)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 최다 인원을 교육(40시간, 849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인권강의 또는 특강은 대부분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주제별로는 인권일반(85시간, 3,121명), 여성분야(97시간, 2,282명) 및 기타(260시간, 13,685명) 순으로 나타났다.

3)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공무원교육기관의 인권강의 및 인권특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인권강의 및 인권특강 현황¹⁹⁾

연도	합계		인권일반		아동		장애		노인		여성		다문화		기타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합계	535	20,890	85	3,121	26	602	23	363	9	151	97	2,282	35	686	260	13,685
2011	293	10,672	57	1,896	18	328	19	309	7	133	36	711	21	346	135	6,949
2010	242	10,218	28	1,225	8	274	4	54	2	18	61	1,571	14	340	125	6,736

다. 공무원교육훈련 범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고 효과적 직무수행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연도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19)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 인권강의 개설기관은 중앙소방학교, 통일교육원, 수산인력 개발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정도이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원 인권강의 개설기관은 광주공무원교육원, 경남, 광주, 대전, 전남, 전북 소방학교 정도이다.

4. 소결

위원회는 보다 많은 공무원이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나 기관 직장교육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권강사 지원, 강의자료 제공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위 '3.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은 강의 및 특강이 전년과 대비하여 횟수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인권교육 과정의 운영은 중앙부·처·청 공무원교육기관 중에는 운영 중인 기관이 없으며, 강의 및 특강의 경우도 일부기관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인권의식 고양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5호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2. 8. 30.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별 지】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유엔 총회는

인종, 성별, 언어, 종교 등에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의 증진과 고취를 위하여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개인과 사회 조직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습과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나아가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은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의 완전한 발달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자유로운 사회 참여가 가능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민족, 종교 집단, 나아가 평화와 안보 유지 및 개발과 인권의 향상을 위한 유엔 활동에 대한 이해, 관용, 우애 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기타 인권 조약 등에서 규정한 바대로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강화의 목적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 및 효과적인 실현에 기여함에 있어 인권교육훈련의 기본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인권, 인도주의법,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과 모든 국가적 체도에 대하여 인권에 대한 보편적 약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통적 이해와 인식을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국제적, 지역적 인권문서 및 학습기관의 교육과정 등에 인권교육은 평화, 민주주의, 개발, 사회정의 등을 포함해야 함을 공표한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의 요청을 재확인하면서,

국가 및 정부의 수뇌들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및 학습의 증진을 지원하고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을 모든 국가들에게 권고한 바 있는 2005년 세계정상회의(2005 World Summit)의 성과를 상기하면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집결된 책임감을 통하여 세계 공동체는 인권교육훈련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강화해 줄 것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자 하는 열정으로부터 동기부여 받아서, 아래와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제1조

1.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알고 요구하고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인권교육훈련에 접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보편성, 개별성 및 상호의존성 등과 같은 인권의 원칙에 의하여 인권교육 훈련은 모든 이의 보편적 존중의 증진 및 모든 이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수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3.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효과적인 권리의 향유 및 인권교육 훈련의 권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제2조

1. 인권에 관한 교육과 훈련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교육, 훈련 정보, 인식개선 및 학습 활동 등을 포괄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보편적 인권문화의 구축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인권침해 및 학대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고 발전시킴에 있어 이바지해야 한다.
2. 인권교육훈련은 다음을 포괄해야 한다.
 - (a) 인권기준과 원칙, 인권의 토대가 되는 가치관과 인권 보호체계 등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 ;
 - (b) 교육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의 교육과 학습을 포함한 인권을 통한 교육 ;
 - (c)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향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포함하는 인권을 위한 교육

제3조

1. 인권교육훈련은 전체 연령층을 포괄하는 평생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사회분야에 걸쳐 학문의 자유가 허용되고 존중되는 학령기전, 초중고등 등의 모든 교육과정, 공교육 또는 사교육, 형식적 혹은 비형식적, 비정규적 과정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 훈련, 학습 등을 포괄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직업훈련 특히, 교육자, 교원, 국가공무원, 평생교육, 시민교육 및 공공정보, 감수성 훈련활동 등의 모든 영역의 교육 및 훈련 현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인권교육훈련은 대상집단의 개별적 욕구와 여건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언어와 교수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4조

인권교육훈련은 세계인권선언과 관련 국제인권조약 및 규범 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관점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 (a)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보장뿐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기준과 원칙 등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수용할 것 ;
- (b)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다원적이고, 화합할 수 있는 사회 성원으로서 개인의 발달을 진작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문화를 발전시킬 것 ;
- (c) 효과적인 인권 실현의 추구 및 관용, 반차별, 평등을 발전시킬 것 ;
- (d)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양질의 인권교육훈련의 접근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 ;
- (e) 인권침해 및 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 인종주의, 고정관념, 집단적 혐오증을 부추기는 유해한 태도, 편견과 싸워 이러한 악습을 근절 시킴에 기여할 것 ;

제5조

- 1.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이나 민간이나, 평등, 특히, 소녀와 소년, 여성과 남성 간, 존엄, 화합 및 반차별의 기반을 두어야 한다.
- 2.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이에게 접근과 활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역량 강화와 인간발달을 증진하고 모든 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제 또는 소외 등과 같은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장애인을 포함하여 취약하고 불리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이들과 이러한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고려하여 이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3.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의 보편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서로 다른 국가의 문명, 종교, 문화, 전통 등이 갖고 있는 다양성에서 영감을 얻을 뿐 아니라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고 풍부하게 해야 한다.
- 4.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이의 전 영역에 걸친 인권의 성취라는 공동목표에 대한 소유의식을 증진시키고자 지역사회내의 인권교육훈련 사업을 활성화 하고 이와 동시에 상이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

- 1. 인권교육훈련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을 위하여 대중매체 등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예술은 인권분야의 훈련과 감수성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권장될 수 있다.

제7조

1. 국가 및 관련 정부부처는 참여, 통합, 책임의 정신을 기반으로 인권교육훈련의 개발, 실행, 증진을 보장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2. 국가는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이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시민사회, 민간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위해 안전한 참여 혹은 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국가는 입법적, 행정적 수단 및 정책 등의 적용을 포함하여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인권교육훈련이 점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별적이거나 혹은 국제적인 지원 및 협력 등의 단계를 거쳐 가용자원을 최대한 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국가 및 관련 정부부처는 정부 내의 관료, 공무원, 판사, 법집행관, 군대 내의 간부 등에게 적절한 국제 인도주의법, 국제형사법 등에게 인권교육훈련을 적합하게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교사, 훈련담당자 및 기타 교육자와 국가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민간부문의 종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인권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제8조

1. 국가는 적절한 수준에서 인권교육훈련의 실행 전략 및 정책, 필요할 경우 행동계획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진작해야 하는데 이러한 예로는 학교 교육 과정에의 인권훈련과정을 통합시키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과 해당 당사국 및 지역적 욕구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이러한 전략, 행동계획, 정책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념 설정, 실행,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모든 이해당사자가 개입해야 하는데 민간 영역, 시민사회 단체, 국가인권기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적절하다면 다자 간 기구의 개입을 진작시켜야 한다.

제9조

정부는 국가인권기구가 인권감수성을 증진시키고 관련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행위자를 동원하도록 고려함으로써 인권교육훈련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 필요하다면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적 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의거하여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발전 및 강화를 증진해야 한다.

제10조

1. 사회의 다양한 활동가들 중 특히, 비정부기구, 인권옹호자, 민간 영역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 언론, 가족, 지역공동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인권교육 훈련을 증진하고 제공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 시민사회기구, 민간영역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소속 간부와 직원에게 적절한 인권교육훈련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제11조

유엔 등을 포함하여 국제 혹은 지역 기구들은 그들이 임명 하에 임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군인, 경찰 등에게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1. 국제협력은 모든 수준에서 국가적 또는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엔 지역적인 수준에서도 인권교육훈련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강화해야 한다.
2.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좁게는 일개의 지방의 수준에서 까지 상호보완적이고 조화로운 노력은 더 효과적인 인권교육훈련의 실행에 이바지할 수 있다.
3. 인권교육훈련 분야의 연구계획 및 사업 등을 위한 자발적인 자원 확보를 권장한다.

제13조

1. 국제적, 지역적 인권기구는 각자에게 위임된 범위 안에서 자체 업무로서 인권교육훈련을 고려해야 한다.
2. 국가는 관련 협약 기구와 그 외 인권 제도(mechanism)에 대한 보고에서 인권 교육 및 훈련의 이행을 위해 그들이 채택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다면 포함하도록 장려된다.

제14조

국가는 본 선언의 효과적인 이행 및 사후관리를 보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원을 가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제 2 편

침 해 구 제 분 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 1 장

경찰*, 검찰 및 국가정보원 관련 인권침해

[* 특별사법경찰(근로감독관) 포함]

- 직무수행상 가혹행위 및 부당한 처우 [9건]
- 적법절차 위반 [4건]
-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비밀 등 침해 [9건]
-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1건]
- 기타(전투경찰에 대한 의료조치 소홀) [1건]

직무수행상 가혹행위 및 부당한 처우 등

1 2012. 4. 13.자 11-진정-0531200 결정 [경찰관의 폭행 등]

【결정사항】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진정인이 비록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이기는 하나, 이미 뒷수갑으로 결속된 상태에서 폭력, 위해 등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피진정인 1이 자신의 오른쪽 발로 뒤 수갑을 찬 진정인의 왼쪽 발목 부분을 걸어서 진정인을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형사절차를 집행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참조조문】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31조 제3항·제8조 제1항, 「헌법」 제12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제 2 편
침 해 구 제 분 야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9. 9. 00:35경 ○○시 ○○동 소재 바(술집)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피진정인 1에게 연행된 후, ○○○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위 현장에서부터 지구대 입구 등 일련의 연행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로 심한 구타를 당하였고, ○○○경찰서로 인계되면서도 경찰서 입구 등에서 폭행당하였다.

나. ○○○경찰서 담당경찰관인 피진정인 2는 조사과정에서 “어떻게든 위어서 너를 교도소를 가게 해주겠다. 위어서 넣기 좋은 놈이구만!”이라며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011. 9. 9. 지구대 순찰 근무 중 같은 날 00:20경 ○○시 ○○동 소재 바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과 종업원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술에 취한 진정인이 욕설을 하면서 술값 지불을 거부하고, “××, 내가 지구대 가서 내면 되잖아”라고 하며 자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므로, 조수석에 술집 종업원을 태우고, 지구대로 동행하였으나, 진정인의 주장처럼 차량 안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진정인이 지구대 주차장에 하차하면서 욕설을 하여, 본인(피진정인 1) “욕은 하지 말라”라고 제지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본인의 멱살을

잡고 화단에 넘어뜨려, 경사 ○○○가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이 과정에서 본인은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진정인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욕설을 하고 저항하여, 이를 제압하면서 진정인의 발을 건드려 넘어뜨린 사실이 있고, 같은 날 03:10경 ○○○경찰서에 도착하여서도 본인에게 재차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허리춤과 목덜미를 잡아 제압하여 인계하였을 뿐이다. 진정인이 갈비뼈가 골절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체포과정에서 함께 화단으로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추정되나 진정인을 구타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

2011. 9. 9. 03:00경 형사팀 당직근무 중, 피진정인 1과 같은 지구대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어떻게든 엮어서 교도소를 가게 해 주겠다, 엮어서 넣기 좋은 놈이구만”이라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다. 참고인(○○○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의 진술요지

본인은 2011. 9. 9. 진정인을 진료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담당 의사인바, 진료 당시 진정인은 경찰관과 같이 와서, 오른쪽 가슴, 왼쪽 손목, 좌측 둔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진료결과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좌측둔부, 왼쪽 손목의 다발성 타박상으로 확인되어 42일간의 치료기간(진단 6주)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진정인의 좌측 둔부의 타박상만 놓고 보면 약 14일간의 치료기간(진단 2주)에 해당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권리고지 확인서, 체포통지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체포구속인 수진부, 지구대 근무일지, 상해진단서(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

자술서, 사건송치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피해자 진술조서, 지구대 및 경찰서 CCTV녹화 영상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11. 9. 9. 00:35경 ○○시 ○○동 소재 바에서 술값 시비로 피진정인 1에게 임의동행되어, ○○○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피진정인 1을 밀어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양 당사자가 지구대 앞 화단으로 함께 넘어지는 등 체포과정에서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진정인은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다발성 타박상(오른쪽 가슴, 왼쪽 손목, 좌측 둔부)으로 치료기간 42일의 상해 진단을, 피진정인 1은 흉곽부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좌측 제6번 늑골 골절로 치료기간 28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다. 진정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었던 ○○지구대 앞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체포 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라. ○○지구대 내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이 2011. 9. 9. 00:46' 45"경 뒤 수갑을 찬 진정인을 지구대 내로 데리고 들어오다가 00:46' 53"경 피진정인 1이 오른발로 진정인의 왼쪽 발목 부위를 강하게 차고, 이에 진정인이 뒤로 넘어지는 장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목 뒷덜미 쪽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확인된다.

마. ○○○경찰서 외부 현관, 내부 로비, 형사과 내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인수하거나,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에게 폭언·폭행하거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사실, 목격자 진술서, 관련 수사기록 등의 증거,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체포한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경찰서 입구, 현관 및 형사과 내에서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목격자가 없으며, CCTV상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체포한 이후인, 2011. 9. 9. 00:46' 45"경 지구대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뒤 수갑으로 결속된 진정인이 폭력, 위해 등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에도, 피진정인 1이 자신의 오른쪽 발을 이용하여, 뒤 수갑을 찬 진정인의 왼쪽 발목 부분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진정인을 넘어뜨리는 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

진정인은 비록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경찰관이 진정인을 즉시 체포하였다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나 체포 시에 수반되는 필요적 물리력의 행사가 아닌 한, 체포한 이후에 감정적으로 진정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진정인 1이 이미 체포되어 수갑으로 신체가 결속된 진정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발로 차서 넘어뜨린 행위는 체포 등의 형사절차가 아닌 사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 31조 제3항의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제1항의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2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데, 이 항 진정내용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2

2012. 5. 24.자 12-직권-0000200 결정 [경찰의 과도한 수갑사용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사항】

경찰청장에게, 과도한 수갑사용으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

- [1] 수갑의 사용과 관련하여, 장구사용보고서 및 체포·구속인 신체확인서 작성 등이 관련규정에 따라 준수되고 있는지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장구사용에 대한 사후통제절차를 강화할 것
- [2] 국가인권위원회가 수갑사용 관련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2011년 경찰청장에게 기 권고한 「수갑의 재질과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를 적극 이행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것

【결정요지】

- [1] 수갑사용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그 사용과정상 과도한 물리력이 수반된다면 이는 피체포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 문제로 직결되므로 별도로 과잉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함.
- [2]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규칙」 제10조에 따라 경찰장구 사용 시 경찰관은 지체 없이 경찰장구 사용보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내부적인 사후통제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위협의 존재’를 수갑사용의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음.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2조는 수용자 등의 호송 시 원칙적으로 앞수갑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3] 이 사건 경찰서의 경우 장구사용 보고서가 상당부분 누락되어 사후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명백한바 이에 대한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위원회가 2011. 11. 2. 권고한 ‘수갑의 재질과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이행되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경찰청이 위 권고를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함.

【참조결정】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마49결정

【참조조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규칙」 제1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2조

【주 문】

경찰청장에게, 과도한 수갑사용으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수갑의 사용과 관련하여, 장구사용보고서 및 체포·구속인 신체확인서 작성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하여 장구사용에 대한 사후통제절차를 강화할 것.
- 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갑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1. 11. 2. 경찰청장에게 기 권고한 「수갑의 재질과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²⁰⁾」를 적극 이행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것.

【이 유】

1. 직권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배경

20) 수갑의 재질과 관련하여, 손목 상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갑내부에 실리콘 처리 등 상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이 부착된 수갑을 사용할 것 및 수갑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6가지 제시내용을 포함한 ‘수갑사용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10-진정-0347400, 11-진정-0156600, 11-진정-0161900, 11-진정-0274500, 11-진정-0299300. 5건 병합)

가. 위원회는 2011. 11. 2. 경찰청장에게 수갑사용 제한, 시갑 상태 노출 예방, 앞수갑 사용 원칙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갑사용 규정’을 마련해 실시할 것과 상해 방지를 위한 수갑 재질 개선 대책 마련 등의 정책 권고를 한 바가 있으나 이행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태에서, 2012. 2. 6. ○○ ○○경찰서 ○○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관 6명이 수갑을 채우던 과정에서 피의자의 왼쪽 팔뚝이 골절되었고 관련된 CCTV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경찰의 과도한 수갑사용이 문제시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상당성 및 중대성에 따라 경찰의 수갑 사용과정의 과잉성에 대하여 직권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조사결과 일선 체포 현장에서 일정부분 수갑사용의 과잉성이 인정되고 관련하여 지켜져야 할 관련 절차 및 규정의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직권조사 결과 및 판단

가. 사건개요

- 1) 피 해 자 : 김○○
- 2) 피조사자 : 서○○(○○ ○○경찰서 ○○지구대, 경위)
박○○(○○ ○○경찰서 ○○지구대, 경장) 등

나.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주장요지

1) 피해자의 진술요지

2012. 2. 5. 새벽 택시 안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었고, 택시를 발로 찬 이유로 택시기사와 함께 인근 ○○지구대에 찾아가 승객과의 쌍방폭행, 택시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해자인 ○○지구대 경찰들이 달려들어 팔을 꺾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뒷수갑을

채웠는데 이때 팔이 골절되어 9주 진단(○○대학교병원 전문의 이○○ 진단)이 나왔는데 이는 과도한 수갑사용이며 인권침해다.

2) 피조사자들의 진술요지

가) 서○○(경위, ○○경찰서 ○○지구대 2팀 팀장)

피해자는 2012. 2. 5. 새벽 경 택시 안에서 택시 승객과 쌍방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 재물손괴를 하여 지구대에 신고 되었다. 초기 피해자는 폭행 피해자와 사건에 대하여 합의 하는 듯하였으나, 택시기사가 재물손괴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자 재물손괴를 부인하며 갑자기 성격이 돌변하였다. 이후 박○○ 경장 등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기에 동료 경찰관이 의자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계속 소란을 피우고 박○○ 경장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박○○ 경장이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죄 현행범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워 체포한 것이다. 위 과정은 경찰관이 정당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 다만 강하게 팔을 꺾다보니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 피해자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이유는 2011년도 ○○경찰서에서 수갑을 채울 때 뒤로 채우라고 지시공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자 바로 손목이 아프다고 하여 느슨하게 풀어준 바가 있으며, 이후 3~4분 있다가 재차 손목이 아프다고 하여 경장 박○○ 등이 수갑을 풀어주고 의자에 앉히니 그때서야 팔 부위가 아프다고 처음으로 이야기 하였다.

순찰차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119를 불러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도 싫다고 하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9를 불렀다. ○○대학교 병원에 가서도 피해자는 치료를 거부할 정도로 막무가내였으나 치료를 받도록 적극 설득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장구를 사용하면, 장구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바쁘거나 사건이 누적될 때는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의 무인이 누락된 것을 인정하며 이는 행정상 불찰이다.

나) 박○○(경장, ○○경찰서 ○○지구대 2팀 경장)

피해자는 처음에 조용하였으나 택시기사가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정식사건으로 접수하자 태도가 바뀌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본인에게 스마트폰을 들이대며 “×× 경찰관이 워드를 그렇게 쳐서 되겠냐? 내가 차 부순 거 봤냐? 왜 택시기사 편만 드느냐?”고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에 동료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의자에 앉혔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업무를 방해하며 계속 욕을 하는 것에 심한 모욕감을 느껴 모욕죄로 체포하겠다고 말하고 수갑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힘이 세서 수갑을 채울 수 없자 동료들이 도와줘서 피해자의 오른쪽 수갑을 먼저 채우고 다른 직원이 피해자의 왼손을 넘겨주어 나머지 수갑을 채웠다.

당시 피해자가 너무 힘이 세서 동료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었고 스마트폰을 들이대면서 노려보고 또 의자에서 일어나서 소란을 피우려고 했기 때문에 장구사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갑을 채웠다. 또한 수갑을 채운 후에도 피해자가 “씨발, 놈라”라는 욕만 하였기 때문에 골절 등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없었고 수갑을 채운 후 아프다고 하여 수갑이 너무 조여 있나 확인해보고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팔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 골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이후 피해자가 팔이 아프다고 하여 서○○ 팀장이 수갑을 풀어주고 병원에 가겠냐고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119를 불러주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거부하였다. 통상 지구대에서 수갑 등 장구사용을 하면 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의 결재를 받아 근무일지 및 장구사용보고서에 편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건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이 없어 결재를 받지 못한 것 같다.

다. 인정사실

제
2
편

침
해
구
제
분
야

1) 사건의 인지경위 및 처리에 대하여

○○지구대 직원들의 문답서, ○○○○경찰서 피의자 체포 중 부상 관련 경찰관 조사 결과보고(2012. 2.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당시 녹화된 CC-TV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12. 2. 5. 00:19경 택시 합승자와 쌍방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지구대로 연행되어 경찰들에게 업무를 방해하고 욕설을 하여 모욕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나) 위 체포하는 과정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은 반발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오른쪽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이 골절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로 ○○대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진료한바 9주 진단이 나왔다.

2) 장구사용(수갑사용) 관리에 대하여

2011년 ○○경찰서 체포·구속 피의자 확인서를 통한 수갑으로 인한 상처 등의 통계, 현장 매뉴얼, ○○경찰서의 지시공문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표1>의 2011년 ○○경찰서 체포·구속 피의자 확인서를 통한 수갑으로 인한 상처 등의 통계에 의하면, 체포·구속 피의자 전체 1,495명 중 수갑사용으로 인한 상처 등의 건수는 유치장 입감자 및 미입감자를 합하여 88건(5.9%)로 조사되었다.

<표1> 2011년 ○○경찰서 체포·구속 피의자 수갑으로 인한 상처 등의 통계(단위 : 명)

비 고	계	입감자수	미입감자수
계	1,495	1,448	47
상처발생	88(5.9%)	85	3

나) 경찰청의 수사 관련 ‘현장 매뉴얼’ 4. 범인 체포·연행 관련 행동요령에 의하면, 범인체포 시 ‘수갑은 범인의 팔을 뒤로하여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 ○○○경찰서장은 2011. 2. 10. ‘지역경찰 피의자 연행 조사 시 관리 철저 지시(알림)’ 공문을 ○○지구대 등 관내 지구대 및 파출소에 지시한바, 현행범 및 체포된 강·절도 피의자 지구대 대기 시 경찰장구사용에 단순 절도사건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 시 수갑을 사용하고, 피의자는 반드시 수색, 흉기 등 위해물품 및 수갑을 풀 수 있는 물품(클립 등)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갑은 ‘팔을 뒤로’ 하여 채우고 ‘이중 잠금장치’ 사용”하도록 하달한 바 있다.

라) ○○경찰서 ○○지구대의 현행범체포 현황을 보면, 2011년 291명, 2012년 3월 현재 43명을 체포연행하면서 수갑을 사용하고도 장구사용보고서는 5건 밖에 작성되어 있지 않고 ○○경찰서 형사·수사과도 수갑사용에 대한 장구사용 보고서가 규정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판단

1)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수갑사용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재량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등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나 그 사용과정에서의 제압행위에 과도한 물리력이 수반된다면 이는 별도로 그 과잉성을 판단해 보아야 하며 피 체포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 문제로 직결된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갑착용 과정에서 반항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물리력을 사용하여 바닥에 넘어트린 후 9주의 골절상이 발생한 상황은 일반적인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 1과 2 등이 자체조사 등에 따라 ‘불문경고’ 등을 받았는바, 우리 위원회 차원의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한다.

2) 수갑사용 관리에 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 경찰관의 사전적 수갑사용은 그 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하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10조(장구사용의 보고)에 따라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찰관은 지체 없이 경찰장구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내부적인 사후통제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도주·폭행·소요·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마49결정)함으로써 구체적 위험의 존재를 수갑사용의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고, 유사규정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2조(수갑의 사용방법)는 수용자 등을 호송 시 원칙적으로 앞수갑을 채워야 하고, 앞수갑만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뒷수갑을 채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참고하여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3) 소결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해당경찰서의 장구사용 보고서가 상당부분 누락되어 관련된 사후통제 장치가 적절히 작동되지 않은 점 등이 명백한바 내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위원회가 2011. 11. 2. 권고한 ‘수갑의 재질과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이행되었다면 예방가능한 사건으로 판단되는 만큼 경찰청은 위 권고를 적극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별 지】 관련규정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등을 말한다.

2.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2조 (수갑의 사용방법) 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방법으로 할 것
2.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7의 방법으로 할 것
3.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한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방법으로 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갑보호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7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별표 6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수갑은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회용수갑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른 보호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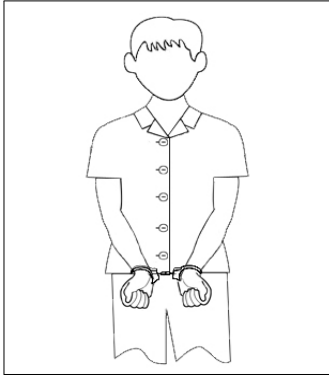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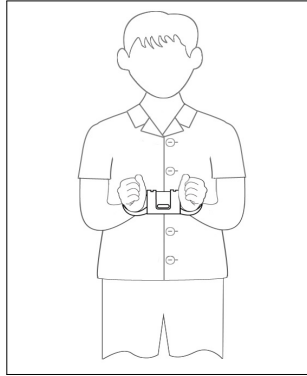
제 2 편
침 해 구 제 분 야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별표 6] 수감 사용방법1(제172조제1항제1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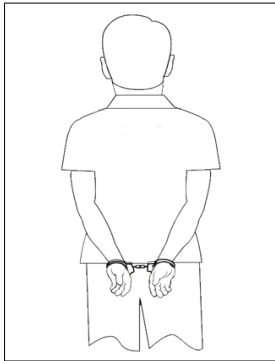


앞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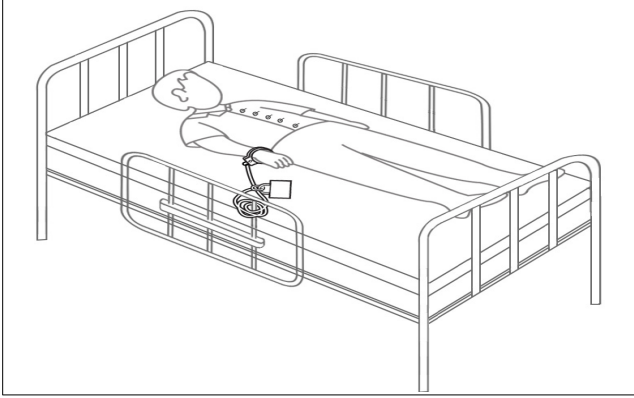
수감보호기 부가

[별표 7] 수감 사용방법2(제172조제1항제2호 관련)



뒤로 사용

[별표 8] 수갑 사용방법3(제172조제1항제3호 관련)



한손수갑

3 2012. 7. 10.자 11-진정-0547400 결정 [과도한 수갑 사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 ○ 지방고용노동청 ○ ○ 지청장에게,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피의자 호송 시 수갑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등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신병호송 차량까지 수갑을 채워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수갑이 착용된 부위를 가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음. 피진정인들은 야간이어서 수갑노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갑을 찬 채 이동한 장소는 야간 유동인구가 많아 외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곳임에 비추어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26조제2항,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46조제1항·제53조제1항 및 제2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제8항,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45조제1항

【진정인】 강○○

【피해자】 정○○

【피진정인】 1. 정○ 2. 삼○○ 3. 김○○

【주 문】

1.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피의자 호송 시 수갑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등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다항, 라항은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피진정인 1, 2, 3은 2011. 9. 15. 21:00경 진정인의 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피해자에 대하여 수갑을 채워 연행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도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하며, 이는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수갑이 채워진 채로 10여 분 간 견게 하여 호송차량까지 이동하였는데 이곳은 상가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이 모습이 행인들에게 노출되었는바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을 느꼈으며, 이는 인권침해이다.

다. 피해자는 다음 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이하 ‘○○지청’)에서 수갑을 찬 채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인권침해이다.

라.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 대한 임금체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보내주는 것도 다시 집어넣는 것도 내 마음이다”, “나한테 밍보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시 ○○동 소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진정의 장○○이 이곳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1. 4. 28. 피진정인들이 근무하는 ○○지청에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위 사건 수사를 위해 동년 5. 23.부터 8. 22.까지 10여 차례 공문과 유선 및 휴대폰 문자 등으로 피해자인 정○○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이 계속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동년 7. 12.과 8. 22. 2차례에 걸쳐 정○○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진출석을 권유하는 한편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 정○○이 수차례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진출석을 권유하는 피진정인 2에게 “짜가지가 없다, 체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모욕을 주면서 자진출석을 거부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동년 9. 15. 20:15경 정○○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 것이다.

라) 동 사업장은 호프집으로 업종의 특성상 심야에만 영업을 하므로 동년 9. 15. 20:15경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진정인들이 동 사업장을 방문하여 피해자 정○○에게 신분증과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은 “너희가 경찰이나, 너희가 뭔데 사람을 잡아가느냐, 체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며 자신의 휴대폰화로 여러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인 2를 몸으로 밀치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정○○은 그 틈을 타 여자화장실로 도주하여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여 「근로감독관 집행규정」 제53조(경찰장구의 사용)에 근거하여 정○○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호프집 지하주차장이 비어 있어 이곳에 주차했다면 예방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지하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없어 부득이 호프집에서 도보로 5분여 거리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에 신병호송차량을 주차하였다.

나) 한편,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신병호송차량까지 수갑을 채우고 갔으나 야간이어서 피의자에게 채운 수갑을 수건 등으로 가리지는 않았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해자 정○○은 동년 9. 16. 14:00부터 18:00까지 약 4시간 동안 고용노동부 ○○지청 조사실에서 체불임금 관련 조사를 받던 중 처음 30여 분 동안은 흥분하여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행동을 보여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53조(경찰장구의 사용)에 근거하여 수갑을 채운 채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안정을 되찾고 순순히 조사에 응하여 수갑을 해제한 채로 조사를 받았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진정인 1은 동년 9. 16. 오후 ○○지청 사무실에서 피해자 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보내주는 것도 다시 집어넣는 것도 내 마음이다”, “나한테 뺨보이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술서, 피해자 및 참고인 등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11. 4. 28. 진정 외 강○○이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 중 피해자 정○○이 출석하지 않자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영장번호: 2011-0000)을 발부받아 2011. 9. 15. 21:00 피해자가 운영하는 ○○시 ○○동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나. 위 체포과정에서 피해자인 정○○이 여자 화장실내로 도주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진정인들은 정○○에 대하여 수갑을 착용한 후 호송차량까지 약 10분(피진정인은 5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여 간 이동한 바 있다.

다. 이 이동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수갑이 착용된 손목 부위를 수건 등으로 가려준 사실은 없다.

라. 피진정인은 2011. 9. 16. 피해자에 대한 조사 중(14:00~18:00) 피해자가 욕설 등을 하자 피해자에 대항 수갑을 착용한 채로 약 30여 분 간 조사를 진행하였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협박(집에 보내주지 않고 다시 유치장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수갑을 채운 것이 과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정○○이 피진정인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사실이 있고, 피진정인들이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2011. 9. 15.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자화장실로 도주하자 피진정인들은 「근로감독관 집행규정」 제53조(경찰장구의 사용)에 따라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행위로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수갑이 착용된 피의자 등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이 느낄지 모르는 수치심 등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수갑이 착용된 손목 부위를 가려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규정상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 사항)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26조(영장의 집행) 제2항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호송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에는 호송 시에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에서 결의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45조에는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모욕, 호기심 및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등을 살펴볼 때, 당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정○○을 신병호송차량까지 수갑을 채워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수갑을 착용된 부위를 가려주지 않았는바 이는 외부에 노출되어, 피해자가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진정인들은 야간이어서 수갑 노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갑을 찬 채로 이동한 장소는 야간에 유동인구가 많아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결과적으로 피진정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의자에 대한 조사 시 수갑을 채운 채 조사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피의자 조사 시 방어진 보장차원에서

수갑을 해제한 상황에서 조사가 되어야 하겠지만, 정○○은 2011. 9. 16. 14:00부터 18:00까지 고용노동부 ○○지청 조사실에서 체불임금 관련 조사를 받으며 전날 체포되어 유치되었던 것에 대한 불만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진정인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진정인들은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약 30여 분 간 수갑을 착용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고 조사에 응하자 이후 수갑을 해제하고 조사를 진행한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53조(경찰장구의 사용)에 근거한 정당한 범집행으로써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 1 및 동료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다항, 라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태훈 위원 곽란주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형사소송법」

제198조(순수사항) ②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5.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26조(영장의 집행)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6.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46조(사건의 수사) ① 근로감독관은 제45조에 따라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53조(경찰장구의 사용) ① 근로감독관은 체포 및 구속영장을 집행하여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피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7.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 ⑧ 호송시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45조 ①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2012. 8. 16.자 12-진정-0325300 결정 [경찰의 부당한 가스분사기 사용 및 의료조치 소환]

【결정사항】

○ ○경찰서장에게, 경찰장비 사용 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과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병을 깨트려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파출소에 들어간 진정인의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지만, 당시 정황으로 보아 진정인에게 위험예방 차원의 경고를 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경고절차 없이 바로 가스분사기를 발사하였는바,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제10조,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133조의2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박○○

【주 문】

1. ○ ○경찰서장에게, 경찰장비 사용 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12. 5. 12. 오후 18시경 진정인은 진정의 사건처리에 대하여 문의할 것이 있어서 ○○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하였는데, 진정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처리 문제로 큰 소리로 다투니 파출소 경찰관들이 시끄럽다며 진정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지구대 문을 잠가 버려, 진정인이 파출소 밖의 쓰레기통에서 주운 ‘박카스’ 병을 깨고 병 윗부분만 남은 것을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가스분사기를 발사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하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진정인에게 아무 경고도 없이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가스분사기를 맞은 후 진정인이 얼굴과 목이 따가워 얼음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고, 즉시 119를 불러 달라고 하였음에도 119는 한참 후에야 도착하였으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주사를 맞은 후에야 겨우 안정을 되찾았는데, 피진정인이 가스분사기를 쏜 후 진정인에 대하여 응급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12. 5. 12. 18:00경 술에 취한 진정인이 파출소를 방문하여 “경찰청 감사실에 신고를 하였는데 젊은 순경 모가지를 때려 왔다. 그 순경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여, 피진정인이 근무일지를 확인해보니 진정인은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기록되어 있었고, 진정인에게는 해당 순경이 14일에 근무하니 그 때 오시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가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1시간에 걸쳐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옷을 벗고 파출소 뒤편으로 나갔다. 이어, 파출소 밖에서 병 깨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진정인이 병을 깨 후 병조각을 들고 파출소 정문으로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직원들에게 주취자가 병조각을 들고 들어가니 방어하라고 말을 한 뒤 무기고에서 가스분사기를 꺼내 진정인을 향하여 발사하였다. 진정인은 가스분사기에 맞은 후 자신이 들고 있던 병조각을 은폐할 목적으로 파출소 내 휴지통에 버리고, 다시 지구대 바닥에 드러누워 1시간 30여분에 걸쳐 소란과 행패를 부렸다. 나중에 진정인에게 왜 병조각을 들고 파출소에 들어왔느냐고 물었더니 자해를 하기 위해 병을 깨서 들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직원들의 위협과 진정인의 자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장구를 사용하였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 최○○ (○○파출소)

진정사건의 발생일 야간 순찰근무 중이었는데 ○○파출소로 들어 오라는 무전을 받고 들어가 보니 119구급대원과 가스분사기를 맞은 진정인이 있어 진정인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다.

2) 이○○ (○○파출소)

진정인이 옷을 벗고 파출소로 들어오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향하여 가스분사기를 발사 하였다. 피진정인은 “주취자가 병을 깨고 들어 온다”고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알렸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물어보자 진정인은 “자해를 하기 위하여 병을 깨고 들어왔다”고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과 CCTV 녹화자료, 경찰장구사용 보고서, ○○소방서의 구급이송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 5. 12. 18:17경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를 방문하여 자신이 신고한 폭행사건을 담당했던 순경을 만나러 왔다면서 파출소 내의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19:31경 파출소 밖에서 옷옷을 벗고 쓰레기통에서 찾은 ‘박카스’ 병을 깨고 남은 병의 윗부분 (‘박카스’ 병의 병뚜껑 정도의 크기만 남은 부분, 이하 유리조각)을 들고 19:32:25에 파출소로 들어왔다.

나. 당시 파출소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7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이었고, 진정인이 옷옷을 벗은 상태로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들어와 파출소 민원대 앞에 서자 피진정인이 가스분사기를 꺼내들고 다른 경찰관 1명과 함께 진정인 쪽으로 다가가자 진정인은 파출소를 나가 버렸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나간 것을 확인하고 파출소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순간 진정인이 밖에 벗어 두었던 옷옷을 들고 다시 파출소로 들어왔다.

다. 19:33:05경 다시 들어온 진정인은 경찰관들이 있는 민원대 쪽이 아닌 입구 쪽의 소파로 가서 옷옷을 입으려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뒤따라가 경고 없이 진정인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분사기를 발사하였고, 진정인이 가스분사기를 맞을 당시 손 안에는 유리조각이 있었으며, 가스분사기를 맞고 나서 잠시 괴로워 하다가 손 안의 유리조각을 파출소 내 휴지통에 버렸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의 음주소란행위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라. 가스분사기가 발사되고 나자 파출소 안의 모든 직원들은 진정인을 혼자 남겨두고 모두 밖으로 피하여 나갔고, 19:40경 불상의 경찰관이 들어와 소파에 누워 괴로워하는 진정인을 보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소파 앞의 탁자에 두었으며, 19:46경 소파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나뒹구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물을 적신 수건을 가져와 진정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마. 19:48경 이후부터는 피진정인이 종이컵에 물을 떠와 진정인의 얼굴에 물을 계속 부어주었고, 119구급대는 20:23경에 도착하여 20:39경 진정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의 가스분사기 사용 행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등)에서는 최루제 및 그 발사 장치를 경찰장비의 하나로 규정,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사용한 가스분사기는 경찰장비 중에서도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129조 제2호에 의한 “분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자극(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이고, 같은 규칙 제133조(최루장비의 안전관리) 제2호에 의하면 “분사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에 관하여 미리 경고한 후 분사하여야 한다. 다만, 범인의 체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안전수칙을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과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박카스’ 병을 깨트려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파출소에 들어갔는데, 진정인이 이와 같이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그 권한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찰 공무원이므로, 「경찰장비 관리규칙」 상의 안전수칙에 따라 진정인에게 유리조각을 내려놓고 위험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미리 경고를 하고, 피진정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위험한 행동을 중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위협예방을 위하여 경찰장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당시 정황으로 보아 진정인은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민원인 대기석의 소파 쪽으로 가서 옷을 입으려던 중이었으므로, 진정

인에게 위협예방 차원의 경고를 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경고절차 없이 소파 쪽에 있는 진정인에게 다가가서 가스분사기를 바로 발사하였는바, 이는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133조 제2호의 안전수칙과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이 장시간 소란을 피우며 유리병 조각까지 들고 있던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가스분사기를 사용하여 제압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은 인정하되, 사전 경고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차원의 직무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응급조치 여부

피진정인은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10분 뒤 물에 적신 수건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닦아주고, 종이컵에 물을 떠와 진정인의 얼굴에 부어주는 등 진정인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였고, 1시간 뒤에는 119 응급구조대를 요청하여 진정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2012. 8. 1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영혜 위원 윤남근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고,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구, 차량·선박·항공기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3.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129조(정의)

2.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자극(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제133조(최루장비의 안전관리)

2. 분사기

나. 분사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에 관하여 미리 경고한 후 분사하여야 한다. 다만, 범인의 체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012. 10. 22.자 10-진정-0546300 결정 [검찰의 장애인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결정사항】

해당 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지적장애 등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충분한 방어권·진술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들에게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형사·사법절차에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자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핵심적 내용임.
- 【2】**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조사에 있어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자리를 비워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장의 작성 경위,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 여부, 가해자의 성관계 요청을 거절 못한 이유’를 질문하였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21조,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진정인】 김○○

【피해자】 김○○

【피진정인】 이○○

【주 문】

1.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내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는 2009년에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진정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2010. 3. 고소를 하였다. 2010. 8. 25. 피해자는 사건담당 검사인 피진정인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와 동행한 성폭력상담센터 상담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때 좋죠?”라는 등의 질문을 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신뢰관계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는 등 조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10. 8. 25.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당시 동석하였던 상담원이 휴대전화 통화를 위해 한차례 정도 영상녹화실 밖으로 나갔는데, 상담원이 나갔다 온 시간은 15분 이하로 그렇게 길지 않았다. 또한 조사 당시 본인은 남자이고, 피해자와 상담원은 여자인 점을 감안하여 본인은

조사시간 내내 영상녹화실의 문을 열어 놓고 조사를 하는 등 괜한 오해를 피하려고 하였다.

조사당시 본인은 상담원에게 잠시 나가있으라고 하거나 상담원이 부재중인 시점을 노리고 특정 질문을 한 바 없다. 또한, 상담원이 영상녹화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상담원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여러 차례 본인에게 진술하였던 부분이어서 피해자의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하였던 것이다.

또한, 직접 사건을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을 형사사건의 특성상, 상담원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진술을 해 줄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그냥 동석만 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와 같은 사건의 성격상, 가령 상담원이 수사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수사가 계속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전혀 새로운 주장 사실에 대한 질문이 있지도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는 비장애인 조사 시와 비교하여 차별을 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인인 피해자의 조사에 상담원이 동석하도록 배려하였고, 진정인의 폭행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소로 대피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피해자를 보호해 주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내용, 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자 조사관련 녹취 CD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0. 3. 진정인이 고소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이며, 피진정인은 위 사건의 담당검사(당시 ○○지방검찰청 ○○지청 근무)로 현재 ○○지방검찰청 ○○지청에 근무하고 있다.

나. 같은 해 8. 25. 피해자는 성폭력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 영상녹화실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당시 성폭력상담센터 상담원이 동석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조사받을 당시 소형 녹음기를 작동 시켜주어 피진정인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녹음하였다.

라. 조사 당시, 피진정인은 조사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하면서 피해자와 동석한 성폭력상담센터 상담원이 자리를 비운 약 15분 동안 피해자에게 “그런데 막상 성관계를 하면 하고 싶으니까, 그게 좋아서”, “본인도 성관계 하는 거 자체는 싫은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 사람과 하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라는 질문과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 여부, 가해자의 성관계 요청을 거절 못한 이유, 고소장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성폭력상담센터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할 때 좋죠?” 등의 질문을 한 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고 진정인은 주장하나,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CD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한 질문은 “그런데 막상 성관계를 하면 하고 싶으니까, 그게 좋아서”, “본인도 성관계 하는 거 자체는 싫은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라는 내용으로, 이는 가해자의 위계·위력에 의한 강간 여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상 불가피한 질문으로 판단되는바, 성적 함의가 담겨져 있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지적장애 등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를 받는 그 자체만으로 심리적 불안감이나 위축감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고 더욱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방어권이나 진술권 등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제1항에서는 모든 법적 절차에 있어 장애인에게 동등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에서는 사법·행정절차 등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에서는 수사과정에 있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규정하는 등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형사·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력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하듯 정신적 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있어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형사·사법절차에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자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소장 작성 경위,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 여부, 가해자의 성관계 요청을 거절 못한 이유’ 등을 질문하는 등 피해자가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2.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윤남근	위원 김성영	위원 곽란주	위원 강명득

【별 지】 관련규정

1.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 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2012. 11. 2.자 11-진정-0696500 결정 [경찰의 미성년 자에 대한 부적절한 조사]

【결정사항】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과 소속 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년범죄 업무처리 시 보호자의 조력 보장 등과 관련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들이 소년피의자 조사 시 부모의 참여 등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자전거 절도혐의를 특정하고 진술서를 받는 등 실질적인 조사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였는 바,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소년범죄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제40조, 「범죄수사규칙」 제211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진 정 인】 김○○

【피 해 자】 1. 김○○ 2. 정○○ 3. 강○○ 4. 주○○

【피진정인】 1. 최○○ 2. 이○○ 3. 양○○

【주 문】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와 소속 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년범죄 업무처리 시 보호자 조력 보장 등,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요지 나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중학교 3년) 1과 그 친구들(피해자 2, 3, 4)은 2011. 12. 11. 02:00경 자전거를 절도한 혐의로 피진정인 1, 2에 의하여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하게 조사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 3은 같은 날 04:00 이후 피해자들의 신병을 인도 받고,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심야조사를 한 후 06:00경에 귀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의 주장

가) 피진정인 1, 2는 2011. 12. 11. 02:00경 112순찰 근무 중 피해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시 ○○구 ○○동 소재 오피스텔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인근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자전거를 확인하여 보니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겨 사우나가 가서 피해자들을 불러 자전거 소유 여부를 물어보자, 자전거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여 같은 날 02:20경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한 후 ○○파출소에 임의동행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는 파출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임의동행동의서를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파출소에 왔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하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연락처를 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부모님이

지방에 갔다, 몸이 불편하다,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 연락처를 말하지도 않았고 애써 확인한 번호도 다른 번호였다. 특히, 같은 사우나 안에 어머니가 있다고 한 피해자 1도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고 어디서 주무시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여 보호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후 피진정인 1, 2는 2011. 12. 11. 04:00경 피해자들의 신병을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인계하였는데, 여성청소년계 담당자가 피해자들에게 추후 부모님과 동행하여 조서를 받는다는 확인서를 받고 피해자들을 귀가 조치하므로 이들을 순찰차에 태워 사우나에 데려다 주었다.

2) 피진정인 3의 주장

피진정인 3은 2011. 12. 11. 당직근무 중인 04:00경 ○○파출소 근무자인 피진정인 1, 2로부터 자전거 절도 피의자인 피해자들의 신병을 인도받았다. 당시 심야시간대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설령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심야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즉시 파출소에서 작성한 각 피해자들의 자필 진술서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금은 심야시간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2011. 12. 13일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진정인 1, 2에게 순찰차에 다시 태워 직접 집까지 데려다 주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심야시간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체의 조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임의동행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피해자들의 자필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 2는 2011. 12. 11. 02:20경 피해자들을 자전거 절도 혐의로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는 2011. 12. 11. 02:20경부터 04:00경까지 피해자들이 부모 등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던 관계로, 이들의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 절도혐의를 시인하는 진술서를 받았다.

다. 피해자들의 자필진술서에 의하면, 자택전화 번호란에 허위 전화 번호, 본인 핸드폰 번호 등 보호자 등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집 주소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 3은 2011. 12. 11. 04:00경 피진정인 1, 2로부터 자전거 절도혐의로 연행된 피해자들의 신병을 인계받은 후, 바로 파출소에서 작성한 피해자들의 자필진술서 하단(추가 여백)에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지금은 심야시간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2012. 12. 13.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기재하게 한 후 바로 귀가시켰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소년(19세 미만인 자)의 경우 성년과 달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년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와 같이 소년이 부모를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소년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이 형사절차에 편입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에는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은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협약 제40조 제2항 (b) (ii)에 의하면,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보호자와의 연락)는 “경찰관은 소년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들을 절도혐의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부모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들을 자전거 절도혐의로 조사하면서 부모님의 연락처를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 연락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들이 전화번호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연락하기 어려웠던 점과 당시 심야시간이어서 직접적인 거주지 방문이 곤란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관련규정과 같이 소년피의자를 조사할 때 부모의 참여 등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채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들을 자전거 절도혐의로 특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술서를 받는 등의 실질적인 조사행위를 수행하여, 결국 피해자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 2가 우연히 피해자들의 범죄혐의를 인지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순순히 임의동행에 응했고 자신들의 신원을 밝혔던 관계로 심야시간에 보호자의 연락 및 참여 없이 조사를 강행했어야 할 불가피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소년범죄업무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되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이 피해자들을 심야조사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 3은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진정인 1, 2로부터 2011. 12. 11. 04:00경 피해자 등의 신병을 인수받은 후,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추후 조사를 받겠다’는 확인만 받고 피진정인 1, 2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귀가시키도록 한바, 피진정인 3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심야조사를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양현아 위원 한위수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은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 제2항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ii)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3.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211조(보호자와의 연락) 경찰관은 소년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7 2012. 11. 2.자 12-진정-0467600 결정 [경찰의 폭행]

【결정사항】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당시 경력(警力)들과 반대측 주민들이 엉켜 있기는 했지만 피진정인 주위에는 주로 경력들이 있었던바 피진정인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진정인이 주먹으로 진정인의 팔을 내려치고 계속하여 얼굴을 가격한 것은 방어적·반사적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과잉대응임.

【2】 피진정인의 행위는 직무수행에 있어 부당한 신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아야 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정한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같은 훈령 제8조 및 제11조

【진 정 인】 ○ ○ ○

【피진정인】 ○ ○ ○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마을 주민으로, ○○민군복합항 건설사업 반대 측 주민 등(이하 ‘반대 측 주민’ 등이라 한다)과 2011. 8. 9. 12:40경 ○○ ○○ 마을 ○○삼거리 앞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잠시 걷어 놓았던 그늘막을 다시 위 삼거리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지휘를 받은 다수의 경찰관과 전투경찰들(이하 ‘경력’이라 한다)이 몰려와 ○○입구 삼거리로의 진입을 막아 실랑이를 하던 중, 사복차림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어깨를 잡아당겨 “너 누구냐, 왜 잡아 당기냐”며 항의를 하였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1. 8. 9. 12:40경 ○○○시 ○○동에 있는 ○○입구 삼거리 노상에서 반대 측 주민 등이 1톤 차량에 차광막 등을 신고 해안가로 들어가려다 그 곳에서 근무하던 경력들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대비 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 측 주민인 진정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 잡는 것을 보았다. 이를 채증(採證)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어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은 상태에서 사진 촬영을 하려는데, 그 옆에서 이를 지켜 본 진정인이 카메라를 왼손으로 탈취하려고 하여 카메라를 빼가지 않으려고 몸 쪽으로 당겼으나 진정인은 계속해서 카메라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2) 당시 반대 측 주민 등으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신속히 카메라를 가지고 그 현장을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해서

카메라를 탈취하려고 손을 뻗고 있어 부득이 진정인의 왼쪽 팔 부위를 내려쳐서 카메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을 뿐, 폭행할 의도로 진정인의 얼굴을 가격한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8. 9. 12:40경 ○○○시 ○○동에 있는 ○○입구 삼거리 노상에서 진정인과 반대 측 주민 등이 1톤 차량에 차광막을 신고 ○○ 해안가로 들어가려다 사복차림의 피진정인을 비롯한 경력과 대치하였다.

나.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반대 측 주민 등과 경력이 대치하던 중 피진정인이 손으로 진정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려쳤고,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연속된 손동작에 얼굴을 맞았다.

4. 판단

가. 우리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에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훈령 제8조 및 제11조에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당시 반대 측 주민 등과 경력이 엉키어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카메라를 탈취당하지 않고 신속히

그 현장을 벗어 나오려고 방어적인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진정인의 왼쪽 팔 부위를 내려쳤을 뿐, 진정인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가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경력들이 반대 측 주민 등과 엉켜 있었지만, 피진정인 주위에는 주로 대비 경력들이 있었던바, 피진정인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피진정인이 주먹으로 진정인의 왼쪽 팔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진정인의 얼굴을 또다시 1회 가격한 것이 방어적 차원의 반사적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그 강도와 결국, 진정인의 안면을 가격하게 된 점을 볼 때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은 과잉대응으로 판단된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위협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 당시 혼란했던 집회시위 상황이었던 점과 피진정인의 행위에 따른 피해정도가 경미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조치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양현아 위원 한위수

8 2012. 11. 23.자 12-진정-0111600 결정 [경찰의 심야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헌법재판소는 심야조사가 「헌법」 제10조에 따른 수면권 및 휴식권과 관련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심야조사는 피조사자의 방어권 약화와 비인권적 행위 발생의 소지가 크므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은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도 소정 서식에 의한 동의 및 허가를 받도록 함.
- 【2】** 이 사건의 관련 상황에 비추어 급박하거나 중대한 범행으로서 특별히 심야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진정인의 동의를 구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수사현장의 애로 및 수사목적상 부득이함을 고려하더라도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참조결정】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2000헌마159결정

【참조조문】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내 수면권 및 휴식권),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심야조사 금지)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정○○

【주 문】

1.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2. 2. 16. 자정 경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얼굴을 꿰매야 하는 상해를 입은 바 있다. 이때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후 인근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어 피진정인에게 환자임을 감안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밤새도록 대기시키다가 새벽이 다 되어 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또한 대기하는 과정에 폭행사건의 상대방 3인은 간단하게 조사 후 귀가 시키면서도, 환자인 진정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 나이 보니까 나랑 동갑이다. 그렇게 × 같으면 이런 데서 조사받지 말지 왜 이런 데 와서 욕 먹냐?”, “너 같은 새끼는 조사 받을 자격이 없다”며 조사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 진정인을 밀쳐 끌어냈고, “너 그러면 48시간 동안 가둬 놓고 조사받게 할 거야”라며 욕설 등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2012. 2. 16. 00:55경에 ○○지구대에서 폭행, 상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2:55경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 인치된 피의자 신분이었던 자료, 통상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

를 하여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 인치를 하면 피해자를 먼저 조사를 하고 난 후 피의자 조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상대 피해자 3명에 대하여 04:40경 조사를 마치고, 진정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에 대하여 전화로 확인을 하고 난 후 05:21경 진정 외 폭행사건의 피의자인 진정인을 조사한바, 관련 절차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다.

2) 진정인은 주취상태에서 자신도 피해자라며 “몽둥이로 맞아 눈썹 부위가 찢어졌다”는 등 거짓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고함을 치고 반말을 하였고, 진정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대기실에서 “왜 나도 피해자인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겠다. 나를 가뉘 놓는 근거가 뭐냐”고 고함을 치면서 대기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이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는 「형사소송법」 상 48시간 안에 조사 후 사안에 따라 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 48시간 동안 가뉘 놓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현행범인 체포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정인은 2012. 2. 16. 00:55경 폭행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55경 ○○○○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인계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 외 폭행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날 03:00경 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조사한 후, 진정인에 대하여 같은 날 05:21경 부터 같은 날 07:21경까지 조사하였으나 진정인에 대하여 수사절차상의 심야조사 동의서를 작성한 바 없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조사함에 있어 밤을 지새워 하는 수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소위 심야조사가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수면권 및 휴식권과 관련되는 것으로,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2000헌마159결정) 또한, 심야조사는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킬 수 있고 심야조사를 하는 동안 조사자는 물론 피조사자의 신경 예민 등으로 비인권적 행위의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심야조사 금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찰청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 즉, 자정부터 06시까지 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사건의 성질상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정해진 서식에 의한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진정인이 당시 진정인을 심야조사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구대 경찰관이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가 병원에 후송하여 응급치료 한 후 신병을 인계한 점, 진정 외 폭행사건의 피해자 3명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급박하거나 중대한 범행으로서 특별히 심야조사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진정인은 같은 날 00:5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시한이 급박하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심야조사에 대한 긴급성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진정인이 야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으며, 진정인이 환자

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조사를 요구하였다는 등 심야조사의 필요성을 인정 하더라도 이 경우 위 같은 규칙 제64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심야 조사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런 절차가 없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수사담당자로서 현장에서의 애로 및 수사목적상 부득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진정인에게 사전 동의 및 소속 상황실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심야조사를 함으로써, 진정인에게 적절한 수면·휴식을 제공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중의 하나인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의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욕설 및 반말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부인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CCTV 동영상에 음성 녹음 기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및 자료 등을 찾을 수가 없는바, 이 항은 인격권을 침해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양현아 위원 한위수

9 2012. 11. 23.자 12-진정-0728600 결정 [경찰의 폭행 등]

【결정사항】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당시 진정인이 폭언과 업무방해적 소란 행위를 했는지는 별개로 피진정인이 경찰모자를 들어 진정인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한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설령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모자로 입을 가리려 한 것이라도 이 또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제8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 나. 라.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2. 9. 22. 22:00 경 이웃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부당하게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체포되어 ○○파출소에 연행된 후 4~5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놓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다. 대기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갑자기 경찰모자로 진정인의 얼굴을 폭행한 것은 부당하다.

라. 이후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고 새벽 4시 경 다시 ○○파출소에 찾아와 피진정인에게 왜 때렸냐고 항의하니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얼굴, 팔, 손가락을 심하게 구타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2. 9. 22. 22:47경 폭행사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보니 진정인이 흥분된 상태로 진정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진정의 피해자 부부가 진정인을 폭행으로 처벌해달라고 하여 진정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었는데 진정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진정인이 진정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입증되어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한 바 있다.

2) 진정인을 파출소로 연행한 뒤 인적사항을 조사하려 했으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노려만 보고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아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진정인은 파출소에서 진정의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며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다가가 싸우려 하고 경찰관들에게도 부당하게 체포했다며 욕설과 발길질을 하는 등 난폭 행위를 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수차례 자제를 요청하였지만 그러한 행위가 지속되어 부득이 하게 수갑을 채운 바 있다.

3) 진정인이 수갑을 차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진정인에게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계속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다가가서 말 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근무모자로 피의자의 입을 가리려고 했을 뿐 진정인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

4)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았던 진정인이 다시 새벽에 파출소에 찾아와 피진정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2012. 9. 22. 22:47경 폭행사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나. 진정인은 당일 23:03경 ○○파출소로 연행되었다가 익일 00:43경 ○○○경찰서로 출발한바 진정인은 약 1시간 40여 분 간 파출소에 인치된 바 있다.

다. 당시 촬영된 CCTV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2012. 9. 23. 00:11경 수갑에 채워져 의자에 앉아 있는 진정인에 대하여 오른손으로 경찰모자를 이용하여 진정인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친 사실이 있다.

라. 진정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2. 9. 23. 03:57경 다시 파출소에 찾아와 피진정인에게 항의하면서 재차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피진정인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부당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었지만 진정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진정의 피해자 집 거실에서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진정의 피해자들이 진정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처벌을 위한 점에 기초하여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처럼 진정인이 당시 현장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체포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진정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자신을 파출소로 연행하여 수갑을 채운 뒤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파출소로 연행해 온 뒤 진정인을 대상으로 인적사항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진정인이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아서 조사가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가운데, 진정인이 당시 파출소에서 수갑을 찬 채 1시간 40분 정도 있었다는 점과 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확인되지만,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진정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경찰모자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자신에게 수차례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하여 말 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근무모자로 진정인의 입을 가리려고 한 적은 있지만 진정인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촬영된 CCTV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얼굴을 향해 경찰모자를 내리친 사실이 있다. 당시 진정인이 폭언과 업무방해적인 소란을 피웠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처럼 피진정인이 경찰모자를 들어 진정인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한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행위이며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모자로 입을 가리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 또한 신체에 대한 침해이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결국,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한 조치의견으로는 당시 진정인이 파출소에서 한 과도한 욕설 등이 피진정인의 행위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진정인의 행위가 엄중 문책할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유사행위의 재발 방지 차원의 직무교육의 권고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시 파출소에 찾아와 피진정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유사행위의 재발방지차원의 직무교육의 권고를 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 나 및 라.항에 대하여는 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양현아 위원 한위수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법절차 위반

10

2012. 1. 17.자 11-진정-0402500 결정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 및 개인정보 유출]

【결정사항】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징계하고, 수사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인들은 집주인에게 진정인이 탈북자임을 밝히면서 그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 【2】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임의동행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에게는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하였다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였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점, 진정인이 야간에 어린 자녀들만 집에 남겨놓아야 하였던 사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범죄수사규칙」 제120조·제123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

【진정인】 ○○○

【피진정인】 ○○○, ○○○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정계하고, 수사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탈북자로서 △△시에 거주하다가 ○○시로 이사를 왔는데 2011. 3. 10. 19:00경 피진정인들이 ○○시 ○○동 소재 진정인의 전셋집에 찾아와 집 주인에게 “진정인은 탈북자이다. ○○에 있을 때 나쁜 일만 했으므로 무슨 이야기를 해도 30%만 믿어라. 간첩일수 있다”라고 이야기 한 것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이다.

나. 당시 피진정인들은 자신들의 소속과 이름도 밝히지 않고 영장 제시나 사유 설명 없이 진정인의 거주지 내의 이불장, 침대, 유리창 등을 불법적으로 수색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진정인들이 집안 수색을 마치고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 하지도 않은 채 인근 파출소로 강제적으로 연행한 것도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1) 탈북자 신변보호담당 경찰관으로 2011. 3. 2.경 진정의 탈북자인 ○모씨가 ‘진정인이 위장결혼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0. 위장결혼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당시 집 주인 부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위장결혼

사건 등을 수사 중인데, 북한공작원이 국적세탁 등을 통해 위장결혼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한 것일 뿐 “진정인이 간첩일 수 있다”거나 “○○에서 나쁜 일만 했으므로 무슨 이야기를 해도 30%만 믿으라”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당시 건물주로부터 진정인의 전남편이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고 진정인의 주거지에 가서 출입문을 노크하자 진정인이 출입문을 열었으며, 이에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소속과 성명을 말하고 사건개요를 설명하며 “위장결혼 여부를 확인하러 왔는데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진정인이 승낙하여 집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집안에 들어가서 “방을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진정인이 “나는 떳떳하니깐 살펴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직접 안방, 작은방, 장롱 등을 개방시켜 확인시켜 준 것으로, 당시 어떠한 외압이나 강요 회유 등은 없었고 모두 진정인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임의수사였다.

3) 본 건은 영장이나 현행범체포 등에 의한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과정이어서 진정인에게 “인근 파출소에 가서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동행해 줄 수 있느냐?”고 승낙을 구하였고 진정인이 “갑시다. 내가 지은 죄가 있어야지, 나는 떳떳한데”라고 말하며, 먼저 신발을 신고 순순히 동행한 것이다. 또한 진정인은 조사 중에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조사 중이고 잠시 후 귀가한다”라고 통화하는 등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

다. 참고인의 진술 요지

경찰관들이 “○○○씨가 돈 받고 위장결혼을 했다”, “위장결혼해서 아무나 들어오게 되면 간첩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속수무책이다”, “○○○씨 말은 30%만 믿어라” 등 말을 하였다. 경찰관들이 진정인이 탈북자라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고 경찰관들이 찾아오기 전부터 진정인이 조선족 아니면 탈북자라는 느낌이 있었다. 진정인이 언젠가 “아이들이 ○○○ ○○학교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탈북자인줄

알게 되었다. 경찰관들이 와서 “○○○씨가 △△에서 살 때도 주민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했다”는 말을 하여 진정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 오해가 풀려 현재는 잘 지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과 참고인에 대한 각 전화보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진정인과 진정의 소○○에 대한 사건송치기록목록, 피진정인지○○이 작성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지방법원 ○○지원 0000000사건 판결문의 각 기재내용, 피진정인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출석발언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경찰서 소속인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위장결혼 혐의로 조사하면서 2011. 3. 10. 17:00경 ○○시 ○○동 소재 진정인 주거지에 찾아가 진정인 조사 전에 집주인 ○○○, ○○○에게 사건을 설명하면서 “진정인이 위장결혼을 하였다. 간첩일 수도 있다. ○○에서 주민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으니 진정인의 말은 30%만 믿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진정인 주거지에서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의 전 남편이 집안에 있는지 확인한다는 명목 등으로, 영장 없이 진정인의 딸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진정인의 방을 수색하였으나 ‘수색조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

다.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이 진정인 주거지를 수색한 후 영장 없이 진정인을 ○○○○경찰서 ○○파출소에 동행하였으나 임의동행 동의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이후 피진정인 ○○○은 피진정인 ○○○를 참여하게 하고 같은 날 19:30경부터 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라. 집주인 ○○○는 피진정인들이 다녀가고 난 후, 진정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강제하지는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의 발언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피진정인들은 집주인에게 조사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설명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집주인이 피진정인이 다녀간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진정인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한 사실 등을 검토해 보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발언은 또한 수사행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발언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의 수색행위가 불법적 강제 수색인지에 대하여는 물론 피진정인이 범죄수사규칙상의 ‘수색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 사안의 경우 피진정인들이 수색을 하였던 2011. 3. 10. ○○ 지역의 일몰시간이 18:33 인데 피진정인들이 19:00경 진정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으므로 수색 시점이 야간에 해당하고 당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 온 어린 자녀(00살, 0살)들이 주거지 안에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주거지 수색을 진정인이 자의에 의해 허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과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강제로 진정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본 건 진정내용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임의동행에 임했다고 주장하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 제1항을 보면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 관련하여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당시 야간의 상황에서 진정인이 집안에 어린 자녀들만 남겨놓고 동행해야 하는 사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징계 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에게 수사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범죄수사규칙」

제120조(수색조서) ① 경찰관은 수색을 한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94호 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참여인을 참여시킬 수 없었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123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①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주거주 또는 간수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③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임의동행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11 2012. 2. 16.자 11-진정-0161300 결정 [경찰의 부당한 신체수색]

【결정사항】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각각 주의조치하고 신체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제압한 후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꺼내고 신분을 확인한 행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경찰관의 주의의무 및 인권존중·보호 의무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 및 신체의 자유 관련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제215조 제2항·제216조 제1항 제1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제11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진 정 인】 ○○○

【피진정인】 1. 박○○ 2. 이○○ 3. 성○○ 4. 김○○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각각 주의조치하고 신체수색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4에 대하여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3. 25. 20:30경 동네 식당에서 도박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었는데, 익일 새벽 5~7시경 진정인이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자,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2, 3, 4와 함께 진정인을 제압하고 강제로 수색하여 주머니 속의 지갑을 꺼낸 것은 부당하다.

나.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온갖 욕설로 모욕을 주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011. 3. 25. ○○경찰서 형사과 당직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관할 ○○지구대에서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진정인을 22:50경 인계받아 피진정인 2에게 사건을 배당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때 진정인은 같이 체포된 진정 외 도박피의자 2명이 조사를 끝내고 귀가한 2011. 3. 26. 07:00까지 자신의 신분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진정인 2가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진정인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마음대로 해라”라고 거부하고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의 유심칩을 빼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중요범죄를 범하고 도피중이거나 수배중인 자로 의심이 되고 또한 자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직접 진정인에게 “소지품을 다 꺼내보라”라고 하였으나 “꺼내 갈려면 꺼내가 봐”라며 계속 거부하여 진정인의 상의주머니를 만져보니, 지갑이 있어 이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반항하여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피진정인 2, 3, 4를 불러 진정인을 붙잡으라고 지시한 뒤,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신용카드에 적혀있는 이름을 확인하고 전산 조회하여 진정인의 신분을 특정한 후 소지품을 돌려주었다.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에 따라 가능한 행위라고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혼잣말로 “아이 씨, 진짜 애 먹이네”라고 투덜대자, 이를 들은 진정인이 “×× 왜 욕하고 그래, 경찰관이 손가락을 자른다고 하였다, 욕설을 하였다”라고 하며 약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에게 모욕될 만한 말을 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 3, 4의 주장요지

2011. 3. 25. ○○경찰서 형사과 소속으로 진정인을 인계받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이 일체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여,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 강제로 손가락을 잡고 지문을 채취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수차례 설득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 이를 거부하면서, 무언가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팀장인 피진정인 1의 지시로 진정인의 팔 등을 잡아 제압한 후, 진정인의 지갑을 꺼내어 신용카드 등에 기재된 이름을 확인한 후, 신분을 조회, 특정하게 된 것이다. 신분증을 확인한 후 2011. 3. 26. 07:30경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현행범인체포통지서, 피의자 권리고지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진정 외 2명과 함께 2011. 3. 25. 21:00경 ○○구 소재 식당에서 고스톱을 친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체포 현장에서 진정인은 600원, 진정 외 피의자 1은 12,300원, 진정 외 피의자 2는 5,600원, 도합 18,500원을 도박에 사용한 판돈으로 압수당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1. 3. 25. 22:50경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된 후, 피진정인 2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지문 날인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자신의 성명 등 일체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익일 07:00경 피진정인 2, 3, 4에게 진정인의 팔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진정인의 상의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를 통해 이에 기입된 이름을 확인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지갑과 신용카드를 일시 압수하여 기재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돌려주었으나, 이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아니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욕설 등을 하였는지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피진정인 4는 현재 △△경찰서에 근무 중이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강제신체수색 행위에 대하여

1)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제12조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된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볼 수 있다.

2) 신체수색 및 소지품 확인 행위의 성격을 살펴보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형사피의자에 대하여는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이 상당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어 그 보호법익이 축소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신체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는 체포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적 물리력의 행사가 아닌 이상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고, 피의자의 신체를 제압하여 신분증을 꺼내고, 이를 확인하는 것은 체포행위와는 다른 별개의 강제처분 행위로서, 체포에 수반된 단순한 소지품 검사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압수 또는 수색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적으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흉기 또는 약물 등으로 자해를 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의하여 진정인의 신체를 수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자해를 하거나 흉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나 전력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피의자의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하는 규정으로써 이는 헌법이 보장한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사안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서로 이동하여 약 10여 시간이 경과한 경우, 그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볼 때, 체포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이 사건의 경우 법관의 영장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꺼내고, 신분을 확인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규정을 위반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여 남용하지 말아야할 주의의무, 「형사소송법」 제1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존중의 주의의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등에서 정한 인권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 및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강제로 손가락을 잘라서 지문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바, 이 항 진정요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현 소속기관장에게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④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6.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②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7.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42. (지문채취불응)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12 2012. 4. 13.자 10-진정-0785200, 11-진정-0329300
(병합) 결정 [지명수배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결정사항】

경찰청장에게, 지명수배자 체포 시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영장제시 없이 체포하는 수사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를 교육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는 국가 공권력의 모든 행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보장되어야 하는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다만 급속(急速)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신속히 제시하도록 규정함.
- 【2】** 피진정인들은 지명수배자 체포를 위하여 사전계획 하에 수사하였고, 영장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후 영장을 제시해야 할 만큼 급속을 요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3】**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적법절차 원칙에 벗어나 체포영장의 집행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특히 일선 현장에서 규정에 따른 영장발부와 제시가 관행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및 제4항,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 「범죄수사규칙」 제174조 제1항

【진 정 인】 정○○, 김○○

【피진정인】 김□□, 박○○, 김△△, 박□□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지명수배자 체포 시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영장제시 없이 체포하는 수사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를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사건 1, 2의 각 진정요지 나.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사건 개요

가. 진정사건 1 : 10-진정-0785200

- 1) 진 정 인 : 정○○
- 2) 피진정인 : 김□□, 박○○
- 3)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0. 12. 15. 23:05 ○○도 ○○구 ○○동에서 피진정인인 ○○○○경찰서 형사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이때 피진정인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당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나. 진정사건 2 : 11-진정-0329300

- 1) 진 정 인 : 김○○
- 2) 피진정인 : 김△△, 박□□
- 3)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5. 16. 08:35경 주거지에서 피진정인들인 ○○○○경찰서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는데, 진정인이 체포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 이에 진정인이 강하게 항의하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웠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팔에 상처 및 타박상을 입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들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진정사건 1

가) 피진정인들은 2010. 12. 15. 23:10경 진정인의 거주지에 피진정인들의 신분을 밝히고 영장발급사실과 지명수배 된 내용을 설명하고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순순히 응하며 집밖으로 나왔고 이후 경찰차량에 태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연행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0. 12. 15. 23:40경 관할 ○○지구대에 도착한 후 20분 정도 서류작업을 하고 5분 거리에 있는 ○○경찰서 형사계에 인계한 후 체포영장을 제시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지명수배자를 체포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급받은 관할 경찰서가 아닌 경우에는 피체포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영장발급 사실만 알려준 후 체포하고 사후 제시하는 것이 관행이다.

2) 진정사건 2

가) 진정인은 지명수배자로 2011. 5. 16. 20:15경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정인에게 2011. 3. 29.자 ○○지방검찰청에서 무고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변호인선임권, 체포, 구속적부심청구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체포하려 하자 순순히 응하지 않아 부득이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하였다.

나) 진정인을 ○○○경찰서 ○○파출소로 동행한 뒤 피진정인이 수배관서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을 팩스로 송부받아 진정인에게 제시하였다. 이는 일선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정인은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후 안정을 찾고 영장을 자세히 읽어 보았으며 이후 ○○○경찰서 형사 당직팀으로 인계처리 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사건 1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에 대한 전화 조사보고서, 체포영장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2010. 4. 8. 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2010. 4. 8. 등 5회 지명수배되었고, 2010. 10. 22.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2) 피진정인들은 2010. 12. 15. 21:30경 진정인의 거주지에 도착하여 23:10까지 1시간 30여분 잠복하였다가 진정인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으나 체포현장에서 영장을 제시한바 없다.

3) 2010. 12. 15. 23:40경 ○○지구대에 도착하여 조서 작성 후 2010. 12. 16 00:05경 ○○경찰서 형사계 당직자에게 인계하였다.

나. 진정사건 2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구속영장,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 등 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지방법원 ○○지원은 2011. 3. 23.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이에 피진정인들은 2011. 5. 16.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을 맞아 검문·검색을 하던 중 휴대폰 조회기로 조회하여,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어 검거하였다.

2) 피진정인들은 체포현장에서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관할 ○○파출소에 도착하여 영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제시하였다.

3) 체포 당일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의 손목 부위의 외상 등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지명수배자 영장제시 없이 체포하는 관행 관련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는 국가공권력의 모든 행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헌법 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특히 강제력을 동반하는 인신의 구속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4항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신속히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규칙」 제174조(지명수배된 자 소재 발견시 조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지명 수배된 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 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 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사건 1의 경우 피진정인들은 체포영장 발부 관할관서가 아니고 수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히고 있고, 진정사건 2의 경우에는 피진정인들은 구속영장을 팩스로 송부 받아 진정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사건 1의 경우 피진정인들은 소재가 파악된 3~4명의 지명 수배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사전 계획 하에 수사하였고, 체포영장 발부 관할 관서에 요청하여 체포영장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특히 진정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1시간 30분 가량 장시간 잠복하였던 만큼 급속을 요할 만큼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사건 2의 경우 지명수배자의 주소지를 방문, 체포하여 ○○파출소로 동행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사후영장을 제시할 만큼의 급속을 요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특별히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집행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벗어나고, 특히 「범죄수사규칙」에서 기소증지자를 영장 없이 체포 할 시 인권침해 발생 우려 등으로, 영장발부와 제시를 명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관행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지명수배자 체포 시 구속영장집행 절차를 준수하고 수사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과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사건 1, 2의 각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사건 1. 나.항의 미란다원칙 미고지 부분은 2010. 12. 16. 확인서에 진정인이 날인 거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진정사건 2 나.항의 강제로 수갑을 채워 팔에 상처 및 타박상을 입혔다는 부분은 2011. 5. 16.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손목 등 상해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각각의 진정사항은 모두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수배관서에서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명 수배자를 영장제시 없이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사건 1, 2의 각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13 2012. 7. 30.자 10-진정-0767600 결정 [불법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각각 피진정인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한 것은,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되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고, 임의동행에 앞서 진정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행에 동의하였다더라도 퇴거할 수 있음을 말해주지는 않았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진정한 임의동행으로 보기 어려워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2】 또한 피진정인 2, 5는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를 하고도 이에 관한 동의나 허가를 구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제12조

【진정인】 최○○

【피해자】 1. 유○○ 2. 신○○

【피진정인】 1. 전○○ 2. 이○○ 3. 조○○ 4. 홍○○
5. 손○○ 6. 고○○

【주 문】

1.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3, 4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5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관련된 직무교육을 각각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다'항 중 피진정인 3, 4, 6에 대한 진정 부분 및 '라'항은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이 사건 관련 연행 및 조사 등이 있었던 2010. 12. 당시, 진정인은 국세청 ○○세무서장이었고, 피해자 1, 2는 진정인의 처 및 장모이다.

나. 피진정인 1은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형사과장, 피진정인 2는 같은 형사과 강력 2팀장, 피진정인 3, 4, 5, 6은 같은 팀 소속 경찰관들이었다.

2.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 1, 2는 2010. 12. 8. 피진정인들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 및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받았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2, 3, 4, 5는 2010. 12. 8. 진정인을 ○○세무서장실에서 ○○경찰서까지 강압적으로 연행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10. 12. 8.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 4, 5, 6은 2010. 12. 8. 진정인과 피해자들에 대하여 02:00경까지 부당하게 심야조사를 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이 2010. 12. 9.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YTN 등 언론에 공표하여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들

1) 피진정인 2, 3, 4, 5는 2010. 12. 8. 10:00경 진정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진정인에게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함께 가지 않으면 긴급체포할 것처럼 강압적으로 말하고, 진정인을 둘러싸 경찰 승합차에 태웠으며, 이동과정에서도 화장실을 갈 때마다 따라와 감시하고, 임의동행확인서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친 익일 02:00경이 되어서야 진정인에게 서명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진정인을 강제연행하였다.

2) 피진정인 1은 2010. 12. 8. 18:00경 조사를 받고 있던 진정인에게 “이 새끼 비겁하게 마누라에게 미뤄, 그런다고 빠져나갈 줄 알아, 반드시 잡아넣을 거야.”라고 폭언 및 협박을 하여 인격적 모욕을 주었다.

3) 피진정인 2, 3, 4, 5, 6은 진정인을 2010. 12. 8. 16:30경부터 익일 02:00경까지 조사하고 03:00경 귀가시킬 때까지 심야조사를 하고도 사전안내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 1, 2에 대해서도 사전안내나 동의 없이 2010. 12. 8. 15: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심야조사를 하였다.

4) 피진정인들은 2010. 12. 9. △△△, ○○○ 등에 진정인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여 같은 날 11:00경 위 언론사 기자들이 진정인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취재를 하도록 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진정인들

1) 피진정인 2, 3, 4, 5는 2010. 12. 8. 10:15경 사건의 성격으로 볼 때 긴급체포하여 강제수사할 수도 있었지만 진정인의 지위나 지병을 감안하여 임의동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진정인의 동의를 얻었으며 진정인이 스스로 부하직원을 시켜 사전에 예약된 기차표를 취소한 후 동행에 응하였고, 이에 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경찰차량에 승차시켜 고속

도로로 이동하면서도 진정인이 요구할 때마다 총 6회에 걸쳐 휴게소를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당시 진정인을 강제연행하지 않았다.

2) 진정인이 2010. 12. 8. 16:41경부터 ○○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 1이 조사실에 들어오자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저희 과장님이십니다”라고 소개를 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이 서로 악수와 목례로 인사를 하였고, 이 때 피진정인 1이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부인도 오시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거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부인한테 전부다 했다고 그렇게 하셨지만. 하여튼 잘 판단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조사실을 나간 사실은 있지만 진정인의 주장처럼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3)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5의 참여하에 진정인을 조사하던 중 진정인이 2010. 12. 9. 00:58경 지병인 당뇨 등으로 피곤함을 호소하면서 다시 일정을 잡아주면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여 즉시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하여 진정인에게 열람시킨 후 같은 날 02:28경까지 1시간 30분에 걸쳐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 미리 출력해 놓은 임의동행확인서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24:00를 넘은 것일 뿐 당초 심야조사를 하려던 것이 아니어서 사전에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이다.

피진정인 3, 4, 6은 2010. 12. 8. 19:10경부터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함에 있어 심야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4) 당시 위 사건에 대한 ○○○○와 ○○○ 등 언론 보도는 피진정인들이 소속된 ○○경찰서와 무관하고 이 보도 이후 각 언론사에서 취재요청이 있을 때에도 피진정인들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없고 조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 줄 수 없다. 최초 기사를 작성한 언론을 상대로 확인하라”라고 단호하게 대처하였으며, 다만 위 보도내용이 일부 조사내용과 전혀 다른 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내부적으로 진상 보고를 하였을 뿐 진정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명예훼손한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들

1) 정○○(○○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진정인은 2010. 12. 8. 10:00경 ○○세무서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마친 피진정인 2 등 경찰관 4명에 둘러싸여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후 본인을 부르더니 “오후 3시발 상경 KTX예매표를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 05:20분 ○○발 출근 차표를 구해 달라”라고 하고는 경찰관들에 둘러싸여 승합차에 탑승해서 세무서를 출발하였다.

2010. 12. 9. 11:00경 ○○세무서장실에서 진정인이 ○○○○ 기자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시 진정인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으니 취재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점심식사 후 ○○○○에 진정인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본 사실이 있다.

2) 김○○(○○○○ 기자)

당시 기사는 경찰 측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최초 관련내용을 취재한 후 쓴 것이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서면진술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2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참고인 정○○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관련 피의사건 의견서 및 기록 목록, 압수수색영장, 임의동행확인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조사과정확인서, 피해자 1, 2에 대한 진술조서 및 조사과정확인서,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동영상 CD 2매 등의 수사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임의동행 부분

1) 피진정인 2, 3, 4, 5는 국세청 ○○세무서장으로 근무 중인 진정인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2010. 12. 8. 07:45경 진정인의 집무실인 ○○세무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한 후 10:15경 진정인을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하여 조사하기로 하고는, 진정인에게 사안으로 볼 때 긴급체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진정인의 지위와 지병(당뇨)을 감안하여 임의동행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면서 협조를 요구하였다. 진정인은 이에 응하여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인 정○○에게 예매되었던 당일 상경 KTX 차표를 취소하고 다음 날 아침 ○○발 출근 차표를 구매 달라고 한 후 위 피진정인들에 둘러싸여 경찰 승합차에 탑승하였다.

2) 그러나 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위와 같이 임의동행을 요구함에 있어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도 퇴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나. 심야조사 부분

1) 진정인 및 위 피진정인들이 같은 날 15:10경 ○○경찰서에 도착한 후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5를 입회시켜 16:41경부터 진정인을 조사하다가 2010. 12. 9. 00:58경에 이르러 진정인으로부터 피로를 호소하며 조사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사를 중단하였으며, 그 때부터 02:30경까지 진정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수정을 하게 하고 끝이어 미리 출력해 둔 ‘임의동행동의서’도 제시하여 각 진정인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03:00경 진정인을 귀가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2, 5는 이에 관하여 진정인으로부터 사전에 심야조사 동의를 받지 않았고, 소속 기관장 등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

2) 한편, 피해자 1, 2가 2010. 12. 8. 19:10경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하여 출석하자, 피해자 1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3이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 2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4와 6이 같은 날 23:20경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귀가하도록 하였다.

다. 피의사실 공표 부분

진정인은 2010. 12. 9. 11:00경 △△△ 등의 기자로부터 위 피의사실에 관한 취재를 받았으며, 같은 날 12:07경 ○○뉴스에 “경찰, 지방세무서장 수뢰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 되었다. 피진정인들은 위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었는데 ○○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부터 위 보도내용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는 국세청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내부보고문서를 작성하여 위 홍보담당관실에 제출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진정요지 나.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2011. 10. 25.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2011형제00000호)을 받았다. 피진정인 2는 현재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 중이고, 피진정인 5는 ○○지방경찰청 ○○과 ○○○○수사대에 근무 중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임의동행의 적법성 여부

1)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2006. 7. 6. 선고 2005도6810)에 의하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법리를 구체화한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제1항에는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2, 3, 4, 5가 진정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하여 강제수사를 할 수 있지만 진정인의 여건을 감안하여 수사에 협조한다면 임의동행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하고, 임의동행에 앞서 진정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거나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도 퇴거할 수 있음을 말해주지는 않았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이 위 피진정인들의 동행요구에 응한 것은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추인할 수 있고 위 직무규칙 규정을 준수한 진정한 임의동행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이 피진정인 2, 5가 2010. 12. 9. 00:58 경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야 진정인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읽게 하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하여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 폭언여부

피진정인 1이 조사 중 폭언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피진정인 1이 이를 부인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진정내용이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심야조사의 적법성 여부

1) 국가인권위원회는 심야조사에 관한 기존의 결정에서 “ 「헌법」 제10조는 수면권과 휴식권을 소위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고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하는 인격권을 그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본권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적정한 수면 및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심야조사는 그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 생활 및

생존방식을 거스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밤을 새워 조사를 하는 동안 조사자는 물론 피조사자의 심신에 고통과 피로감을 줄 가능성이 높아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금하고 다만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2008. 2. 13. 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2974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정).

2) 또한,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심야조사금지)에는 심야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의 석방지연, 증거인멸 및 급박한 위해우려, 야간시간 현행범 체포 및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시간 제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심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심야 조사 동의 및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피진정인 2, 5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를 하고도 이에 관한 동의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초부터 심야 조사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서열람 등의 사후처리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이어서 부득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것도 진정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그에 따라 조사를 중단했을 당시 이미 심야조사의 기준시각을 넘었던 것으로 위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진정인 2, 5의 위와 같은 동의나 허가 없는 심야조사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피해자 1, 2에 대한 피진정인 3, 4, 6의 조사는 2010. 12. 8. 23:00~23:20경 무렵 종료되어 심야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 1, 2의 심야조사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피의사실 공표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당시 진정인에 관한 수사 상황에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내거나 달리 외부에 이를 알린 사실이 없고 관련 기사를 최초 보도한 기자도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취재자료를 입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권고 내용

위 피진정인 2, 3, 4, 5의 임의동행 실시과정에서의 미흡한 조치로 인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침해와 피진정인 2, 5의 부적법한 심야조사로 인한 수면권 및 휴식권 침해에 대하여, 그 사안의 정도와 그 전후사정에 따른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앞으로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각 소속기관장에게 임의동행과 심야조사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2, 3, 4, 5의 각 현 소속기관장에게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 중 피진정인 3, 4, 6에 대한 진정 부분 및 라.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영혜 위원 윤남근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비밀 등 침해

14

2012. 3. 6.자 10-진정-0489900 결정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 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경찰서장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에 공개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게 하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은 범죄와 직접 관련 없는 개인의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진정인의 피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김○○의 주장에 의한 과거 진료기록을 방송기자에게 노출시켰고 이를 근거로 진정인이 김○○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방송되기에 이르렀음.
- 【2】 진정인은 방송내용으로 인하여 본인이 승낙한 범위를 벗어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미지 및 인격에 대한 평가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였는바,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98조(주의사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제1항 및 제3항·제84조(수사사건 언론 공개의 한계)

【진 정 인】 ○ ○ ○

【피진정인】 ○ ○ ○ ○ ○ ○ ○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에 공개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0. 2. ○○○○경찰서 근무 시 진정인의 피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진정의 피해자 김○○의 진료기록지를 TV 방송국 기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TV 방송에서는 진정인이 김○○을 마치 폭행한 것처럼 방송되었는데 이는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 2가 2010. 1. ○○○○경찰서에서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야 이 나쁜 놈아! 골프를 한다면서 고작 여자나 꼬시고 더러운 짓을 해, 너 이 새끼, 그 여자 얼굴 찢어 놓은 건 불쌍해서 내가 안 넣었다” 등 굴욕적인 욕설을 공개적으로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가) 현재 ○○○○경찰서 근무 중이며 2010. 1. 당시 ○○○○경찰서에 근무할 때 ‘진정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수천만 원의 현금을 빼앗겼다’는 범죄 첩보를 배당받아 사건을 처리하였다. 진정 외 피해자 김○○

을 조사한 바, 2002년부터 진정인과 1년 가량 이성교제를 하다가 수 회에 걸쳐 헤어지자고 하여도 진정인이 거주지 옮긴 곳까지 따라와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며 가재도구까지 손괴하며 계속된 만남을 요구하였으며 “돈을 입금시키면 괴롭히지 않고 멀리 떠나주겠다”라고 협박하여 약 3,400만원 상당을 갈취 당하였고, 2010. 1에는 아파트로 찾아와 출입문 등에 방화하고 ‘불태워 죽이겠다, 화형이 최선’이라는 협박 문자를 보내 왔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송금한 내역과 휴대폰 메일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0. 1. 27. 진정인을 체포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나) 당시 김○○의 피해 진술시 “피진정인 1이 취급했던 폭력 행위 등 사건 외에, 수년전에도 진정인에게 수시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그 외에도 진정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려 눈 밑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치료 받았던 병원에서 발부받은 진단서와 진료차트를 제출하며 그 사건도 함께 입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일이 오래된 관계로 진정인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상처인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 본 사건에는 추가하지 않았다. 이에 김○○이 “정말로 진정인이 폭행해서 난 상처다”라며 참고라도 해달라고 제출하여 당시 취급했던 수사기록에 첨부하였다.

다)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청 형사과에 업무보고를 하자, 인터넷에 진정인에 대한 사건 내용이 올라왔고, 다음 날인 2010. 2. 1. TV방송 프로그램에서 진정인과 김○○에 대한 인터뷰와 사건내용에 대한 촬영을 문의해와, 진정인과 김○○에게 의사를 문의한 바, 진정인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겠다”며 인터뷰에 응하였다. 그 후 방송 기자가 당시 취급했던 사건 내용 외 진정인이 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는지를 질문해와, “김○○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외 수년 전 서울에서 진정인이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며 김○○가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기록이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일 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번 사건에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주었다. 이에 이○○ 기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하여 진료차트를 열람하게 한 것이다. 또한 이때 TV방송국의 사건 취재 연락을 받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의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거 방송 인터뷰를 한 것이다.

2) 피진정인 2

현재 ○○경찰서 근무 중이며 당시 ○○○○경찰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주장 같은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고, “골프는 신사운동이고 예의바른 운동인 것을 잘 알듯이 프로골퍼답게 멋지게 살아가야 된다. 진정인은 나이도 젊고 김○○은 이제 50대로 나이도 먹었으니 포기하고 젊은 여자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 좋지 않겠느냐, 절대 보복할 생각은 버리고 이번 사건이 끝나면 프로골퍼로 멋지게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이 전부이다.

다. 참고인(이○○, TV방송 기자) 진술 요지

당시 피진정인을 통해 진정인의 취재동의 의사를 확인 후 진정인을 만났다 이때 진정인은 김○○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담당형사가 피해자의 진단서 등을 근거로 진정인의 범행이 틀림없음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진정인이 김○○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게 된 것이다.

진정인 관련 내용을 방송함에 있어 사실에 입각하였고 김○○ 전화 인터뷰 및 진정인 인터뷰를 왜곡 없이 담았으며, 제3자인 진정인의 주변 지인으로부터 진정인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도 인터뷰 후 방송하였다. 피해자인 김○○ 보다 진정인의 입장을 말해주는 인터뷰 내용이 주로 방송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내용, ○○○○경찰서에서 제출한 사건 송치 관련 서류 및 언론보도 예상보고서, ○○방송에서 제출한 방송영상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0. 1. 21. 진정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건외 피해자 김○○으로부터 진정인이 보낸 협박문자 사진, 피해금액 입금 내역서, 치료 내역서를 입수하여 2010. 1. 27. 진정인을 공갈 및 방화예비 관련 혐의로 체포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10. 2. 1. TV방송의 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이 과정에서 김○○가 제출한 진료기록 차트를 방송 촬영 자료로 공개하였다.

다. TV방송에서는 ‘50대 이혼녀의 잘못된 만남’의 소주제로 방영하면서 건 외 피해자인 김○○의 진료기록 차트(얼굴 그림에 얼굴에 발생한 상처를 께맨 표시 2군데 : 卍卍)의 촬영화면과 동시에 내레이션으로 “경찰조사에서 피해 여성은 6년 간 ○씨로부터 수많은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는데요”라는 내용을 송출하고 계속하여 남성이 서있는 여자를 폭행하는 듯한 장면과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세면대에 찢는 장면 등이 방송되었다.

라.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습 공갈)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방화예비 음모 혐의 사건을 2010. 2. 3. ○○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본 송치 의견서의 피의사실에는 진정인이 김○○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마.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의 주장처럼 폭언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는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TV방송 기자인 참고인에게 김○○의 진료 차트 등을 열람시켜주며,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뷰에 응하였을 뿐, ‘진정인이 김○○을 폭행했다. 그래서 생긴 상처다’라고 단정하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방송 인터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인 피진정인 1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제84조 규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의 자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진정인의 피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김○○의 주장에 의한 과거 진료기록을 방송 기자에게 노출시켰고 TV 방송에서는 이를 근거로 진료기록 차트와 함께 진정인이 김○○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방송되었다.

진정인은 본 방송내용으로 인하여 본인이 승낙한 범위를 벗어나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 및 인격에 대한 평가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같은 법 제17조에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사무실로 불러서 모욕적인 얘기와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2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바, 본건 진정내용은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현 소속기관장에게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책임자는 언론공개를 할 수 있다.

1. 중요범인 검거 및 참고인·증거 발견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및 부책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

제84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 제83조제2항의 언론공개를 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3.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15 2012. 3. 26.자 10-진정-0694700 결정 [경찰의 전과 사실 누설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전과’는 개인에게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생활 정보인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의 취득자는 법령에 규정한 용도 외로 이를 사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도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에서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본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있음.
- [2] 본인 아닌 자에 대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의 공개 금지 대상에는 가족도 포함되는 것이며, 가족 등에 대한 구속사실의 통지는 피의자가 그 가족 등과 신속히 접견·교통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조력하기 위한 것인 만큼, 피진정인이 가족에게 발송하는 구속통지서에 진정인의 세부적인 전과를 기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87조 및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23의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진 정 인】 김○○, 김□□

【피진정인】 성○○

【주 문】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2010. 7. 24.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는데, 피진정인의 진정인들의 가족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서 전과를 기재하여 전과가 가족들에게 누설되었고, 이를 모르고 지내왔던 가족들에게 심한 충격을 주었으며 결국 가장으로서 권위가 실추되고 사생활을 침해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일반적으로 중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 작성 시 같은 범행으로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지, 범죄 사실과 유사한 범죄 경력이 있는지, 처분 종결이 되지 않은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2010. 7. 24. 진정인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작성 시 이들의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에 해당되어 이들의 전과를 사실대로 입력한 것이다.

2) 진정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서 상의 범죄사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그 가족들에게 구속통지를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범죄수사규칙」 제97조(체포·구속의 통지) 관련 규정에 의거 구속영장 신청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키스’)상 작성한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자동 출력되어 수정 없이 통보한 사실이 있다.

3) 당시 중요 범죄사실 기재 시 관행적으로 이를 입력하여 구속통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현재는 내부지시에 따라 범죄사실 작성 시 범죄경력 등은 입력하지 않아 구속사실 통지서에 전과가 기록되지 않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범죄인지보고, 구속영장신청서, 구속통지서 등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0. 7. 24. 진정인들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 범죄 사실에 대한 범죄인지 보고 하고 ○○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0. 7. 26. 진정인들의 가족에게 발송한 구속통지서에 '피의자 김○○은 폭력행위 등 전과 8범인 자이고', '피의자 김□□는 2009. 1. 22.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징역형 및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총 16범인 자이다'라고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다. 피진정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 전과사실은 범죄인지서 작성시에만 기재하도록 하여 구속통지서 발송 시에는 본 진정사건과 같은 전과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판단

가. 피의자 가족에 대한 구속사실 통지는 「헌법」 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87조 및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23의 2의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소재 등을 알려 수사·재판과정에서 신속한 접견·교통을 도모하고, 변호인 선임이나 방어 준비를 위한 것으로 피의자의 소재 및 구속 이유에 대한 통지가 주목적이라 할 것이다.

나. ‘전과’는 개인에게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며 사생활 정보인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전과 기록의 취득자 등에게는 법령에 규정한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에서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과 본인 외의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본인 아닌 자에 대하여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의 공개는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그 공개금지대상에는 가족도 포함되는 것이며 가족 등에 대한 구속통지가 피의자 등의 소재를 알려 가족 등과의 신속한 접견·교통을 통하여 피의자 등의 방어권 행사에 조력하기 위한 것인 만큼, 피진정인이 가족에게 발송하는 구속통지서에 진정인의 세부적인 전과를 기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본 진정사건과 관련한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관행적으로 구속 사실 통지 시에 전과기록을 기재하여 발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는 이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향후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16 2012. 4. 13.자 10-진정-0537100 결정 [경찰의 부당한 이동권 침해]

【결정사항】

피진정인들이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진정인 등이 타고 있던 임차버스의 운행을 정지시키고 소속 경찰 대원들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진정인 등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참고할 때, 이미 불법시위 예방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과거 전력을 이유로 진정인 등의 차량 이동을 2시간 동안 제지하고 그 과정에서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9헌마406 결정

【참조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5조

【진 정 인】 정○○

【피 해 자】 진정인 외 조합원 35명

【피진정인】 1. 김○○ 2. 왕○○

【주 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들(이하 ‘진정인 등’이라 함)은 ○○○○노조원들로, 2010. 8. 19.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사업 반대집회에 상경하여 시위하다 조합원 5명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한편, 같은 날 19:00시경 서울시 ○구 ○동에서 개최된 ‘○○○○○ 중단축구 결의대회’에 참석 한 뒤 22:30분경 관광버스로 위 노조원들이 연행되어 있는 △△경찰서 근처로 이동한 후 숙박을 하려고 ○○○ 앞에서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경비과 소속인 피진정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2010. 8. 19. 22:15경 ○○○ 앞에서 ○○경찰서 경비과장인 피진정인 1의 지휘를 받은 순찰차량 4대가 진정인등이 타고 있던 임차버스의 운행을 정지시키고 ○○○회관 앞으로 이동케 한 다음, 소속 경찰 대원들로 하여금 22:30경부터 24: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진정인등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불법으로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 및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2는 노조위원장인 진정인이 △△경찰서 인근 지역으로 간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진정인 등 일행의 이동을 막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등이 수차례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 달라, 용무가 급한 사람들이 있으니 2명씩이라도 다녀오게 해 달라”라고 요구

하였으나 같은 날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일절 화장실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버스 출입문에 전투경찰 순경을 세워 막았으며 23:30경이 지나서야 1인씩 교대로 허용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가) 진정인 등이 2010. 8. 19. '○○○○○ 중단 촉구 결의대회' 야간 집회에 참가한 후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서울시 ○○구 ○○로터리로 이동한다는 보고를 받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고 진정인들이 수회 걸쳐 청와대 방면 집단 진출을 시도하며 불법행위를 하여 왔던 관계로, 담당 교통 경찰관으로 하여금 ○○로터리에서 버스이동을 차단·제지하게 하였다. ○○○○회관 앞 차로에 관광버스를 유도한 후 경찰병력이 주변을 차단하는데, 진정인들이 행선지를 밝히지 않았으며 그간 수회 걸쳐 청와대 방면 집단진출을 기도한 사례가 있어 당일에도 과천으로 간다고 거짓으로 말한 후 청와대 기습진출을 시도하는 등 계속 야간에 기습시위를 시도할 우려가 있어 진정인에게 행선지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소 시간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다.

나) 진정인 등은 2010. 3. 4. ~ 8. 20. 간 12회에 걸쳐 상경, 서울시내 찜질방 등에 유숙하면서 정부종합청사, ○○○당사 등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귀향하였으며, 신나, 휘발유, 맥주병 등 불법시위용품을 준비,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경찰서에서 압수한 바 있고, 방송차와 관광버스 등 여러 대 차량에 분승, 청와대로 진출하려는 것을 ○○경찰서

에서 차단하고 차량에 신고 있었던 휘발유를 회수 보관하였다가 집회 후 돌려보낸 적도 있었다. 또한 5. 17. - 5. 20 집회 시에도 청와대로 진출하려고 시도한 바 있고 상경시마다 청와대에 서한문 전달을 방해하여 관광버스를 타고 집단 이동하는 것을 경찰이 차단한 적이 있다. 이 사건 당일 2010. 8. 19.의 경우에도 심야에 청와대로 집단진출을 기도하여 경찰이 차단, 제지한 것으로 화장실에 간다거나 담배를 피우려고 버스에서 하차하는 노조원들을 2~3명씩 하차케 하여 버스주변에서 대기하게 하였고, 8. 20. 00:30경 진정인 등은 △△경찰서에 검거되었던 노조원 5명이 모두 석방되었다며 숙소를 정해 자러가겠다고 주장하여 ○○구 ○○동으로 이동토록 한 것으로 불법감금 하였다는 진정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

진정인들은 의도적으로 청와대로 진입하려다 교통순찰차에 의해 차단되어 ○○○○회관 앞으로 이동조치 된 후 대비한 경찰병력이 관리하고 있던 상황에서 ○○에서 올라온 ○○경찰서 정보관에게 “○○ ○○ 지역 노조원들은 신뢰할 수 없다. 항상 자신들의 목적지를 숨기고 돌아다니며 기습시위를 획책하고 있으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방지 차원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대답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골재 채취 노조원들에게 갈 곳이 어디인지 장소를 각서로 써 달라”라고 이야기 한 바 있으나, 진정인이 “그럴 수 없다”고 하여 더 이상 각서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참고인(관광버스운전자, ○○경찰서 정보관)조사보고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제출한 ○○○ 광장 화장실 앞 CCTV 녹화사본, 교통과 직원 진술서, 의경진술서, ○○○○노조 상경투쟁 현황, 차량이동 경로, 경력배치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 등은 2010. 8. 19. 19:00경 서울 ○구 ○동에서 ‘○○○○○ 중단 축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21:40경 관광버스에 탑승하여 ○○○ 로터리로 이동하던 중 서울시 ○○구 ○○로터리 차로에서 22:20경 ○○경찰서 교통순찰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0. 8. 19. 22:30경 진정인 등이 탑승한 관광버스를 ○○○○회관 앞으로 이동시킨 다음, 익일인 8. 20. 00:30경까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등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요구하자 최초 22:30부터 23:30까지 약 1시간 동안은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였고, 23:30 이후에는 1~2명씩 화장실을 교대로 허용하였다.

라. 피진정인2는 진정인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 행선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진정인이 ○○으로 가겠다고 하자, 약속한 행선지로 꼭 가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고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여 일단락되었고 이후, 추가적인 진행사항은 없다.

마. ‘○○○○노조’는 2010. 3. 4.부터 8. 19.까지 17회에 걸쳐 서울로 상경하여 ‘생존권 보장 축구 집회’와 1인 시위, 청와대 서한문 전달, 청와대 진출 시도 등을 한 바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관련 기본권에 대하여

이 사건 진정인 등이 차량을 이용하여 어디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진정인들에게 버스 안에서 대기하면서 결과적으로 화장실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인격권’을 관련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나. 차량이동 제지의 과잉성 여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등이 여러 차례 청와대 근처에서 집회를 하거나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 청와대 진입 시도 등을 한 적이 있고, 당시 진정인 등이 촛불문화제 참석 후 차량을 ○○○로터리로 이동시키는 것을 보면 진정인 등이 청와대로 진출하려고 한다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심야시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등의 미신고집회 등이 개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로터리에서 진정인 등의 차량을 제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비교적 가까운 ○○○○회관 쪽으로 차량을 유도한 것도 불법·폭력적인 집회의 예방과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 6. 30. 2009헌마406) 등을 참고할 때, 진정인 등은 ○○○로터리에서 ○○○○회관으로 유도되어 차량을 정지하였다면 진정인 등의 불법시위 시도 예방을 위한 목적을 달성 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진정인 등이 과천으로 간다고 행선지를 밝혔으며, 진정인 등이 당시 현장에서 달리 폭력행위나 불법시위 등을 시도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등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2시간 동안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예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인다. 불법시위 예방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진정인 등의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과거 전력을 이유로 진정인 등의 차량이동을 2시간 동안 제지하고 그 과정에서 화장실에 가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각서작성 요구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향후 이동경로에 대해서 각서를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행위이나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이 여러 차례 시위를 한 경력이 있어 진정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로 요구한 것이고, 거부 의사에 반하여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요에 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항 진정요지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다.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1의 현 소속 기관장에게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17 2012. 6. 20.자 11-진정-0517300 결정 [국가정보원 직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폭언]

【결정사항】

국가정보원장에게, 피진정인들 및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직원들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상대하는 업무 수행 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 1, 2, 3은 북한이탈주민인 진정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가 폭언을 하였는지는 특정하기 어려우나,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대화하거나 진정인을 제지하는 과정 또는 그 직후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언을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폭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을 훼손할 만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상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진 정 인】 강○○

【피진정인】 1. 한○○ 2. 하○○ 3. 정○○ 4. 윤○○

【주 문】

1. 국가정보원장에게, 피진정인 1, 2, 3 및 중앙합동신문센터 직원들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상대의 업무수행 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다.항 및 라.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중국에서 체류 중이던 2005. 4. 18.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입국하여 살다가 2009. 8. 10. 북한사람이라는 소문이 남에 따라 자수하고 2009. 8. 11. 04:00경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이하 '합신센터'라고 한다)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합신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진정인은 합신센터에 입소하기 전부터 감기 증세로 몸이 아파 입소 당일인 2009. 8. 11. 13:00경 공동숙소에서 지도관인 피진정인 1에게 병원 진료와 약 복용을 요청하였더니 피진정인 1이 “뭐 이런 게 있냐? 나와 봐” 라고 하여 따라 나가 복도에서 다투었는데, 피진정인 1이 “병원에 가 볼 테면 가봐라”라는 말에 정문 쪽으로 20m 정도 걸어가다가 피진정인 1에게 체지를 당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팔을 비트는 바람에 너무 아파서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팔을 입으로 물었더니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숙소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 피진정인 2, 3과 함께 팔과 다리 등 온 몸을 2시간 정도 폭행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 3은 위와 같은 실랑이 및 폭행과정에서 “이런 ×년이 다 있냐.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와서 말썽이냐. 너 같은 거 죽어나가도 갖다 버리면 그만이야”라며 수차례 폭언을 하였다.

다. 관리자인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을 5일 동안 독방생활을 하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의약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위 진정요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장

1) 독방생활 중 3일 간 항의의 표시로 단식을 하였는데, 피진정인 4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8. 12. 16:00경 상담실에서 진정인에게 직원관리를 잘못 했다고 사과하면서 “밖에 있는 강○○씨의 아이를 데려오면 잘해주겠다”, “하나원에 특별히 보내주겠다”, “가해자들에게 조치가 있을 것이다. 북에 있는 가족들도 원하면 데려 올 수 있다”라고 회유한 적이 있고, 또한 하나원 퇴소 이후, 진정인이 2011. 4월경 폭행 피해 후유증으로 팔과 다리가 아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소송을 하지 말라고 회유하기도 하였다.

2) 진정인은 2009. 8. 25.부터 8. 30. 사이 21:00경 폭행 후유증으로 인해 호흡이 안 되어 119 구급차가 와서 불상의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음 날 새벽에 들어온 적이 있었고, 같은 해 9월경 스트레스성 피부 발진으로 ○○ ○○대 병원에서 3회 정도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진정인이 합신센터에 입소한 다음 날인 2009. 8. 11. 오전 감기 증세를 호소함에 따라 기관내 공중보건과의 진료를 받도록 하였으나 의사의 진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진찰이 끝나고 공동숙소에 돌아온 직후부터 공중보건과의에 대해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해대면서 빨리 약을 달라고 재촉함에 따라 약을 조제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더니 “빨리 그 돌팔이 의사 새끼에게 안내하라”며 숙소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진정인이 숙소를 나와 정문방향으로 약 40m를 뛰어가므로, 뒤따라가 제지하고 진정인의 팔꿈치 부위를 잡고 숙소 앞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팔을 물어뜯어 심한 상처를 입었다.

진정인은 이 과정에서 주차장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으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주차장은 숙소와 바로 연결되는 공개된 장소로서 직원들과 탈북자들이 수시로 왕래하고 있어 이곳에서 폭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피진정인 2

본인은 당시 다른 숙소에서 지도관으로 근무하던 중, 숙소 주출입구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 우연히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당시 숙소 주출입구 앞에서 진정인이 공중보건 의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왜 약을 안 주느냐, 병원에 가겠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공중보건 의사에 대해 “의사 개새끼, ××놈, 그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너(피진정인 1) 지금 당장 돌팔이 개새끼에게 안내 해”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담당지도관인 피진정인 1이 “오후에 약이 나올 것이니 기다려 보자. 내일 진료를 더 가보자”라고 타이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진정인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민증도 있기 때문에 여길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정문 쪽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피진정인 1이 뒤따라가 제지하고 주출입구 쪽으로 데리고 오자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손을 입으로 물고 흔들며 피진정인 1이 비명을 지르며 진정인을 밀쳐 팔을 빼어 내는 것을 보았고, 이에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을 숙소 출입구 안쪽으로 들여보냈을 뿐 진정인의 팔을 꺾는 등의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

3) 피진정인 3

당시 숙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출입구 쪽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 나가 보았을 뿐 직원이 진정인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진정인이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4) 피진정인 4

피진정인 1에 의해 숙소 입구로 돌아온 진정인은 숙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30여 분 간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숙소 건물 복도로 들여보냈으나 거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복도에서 계속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려 여타 수용자 보호 및 진정인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1인실에서 지내도록 조치하였다.

합신센터의 1인실은 징벌적 의미의 장소가 아니며 다인실에 비하여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인침대, 화장실 등이 비치되어 있다.

진정인은 1인실에서 생활하는 동안 식사와 약을 먹지 않고 직원에게 욕을 하며 팩 우유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으나 직원들이 일절 대응하지 않자 며칠 후 스스로 마음이 진정되었는지 “나이도 많은 분들에게 막말과 거친 행동을 해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이에 직원이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문을 마친 뒤 ‘하나원’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고, 진정인이 직원의 조언을 수용함에 따라 원래 숙소로 복귀시켰다.

직원들의 폭행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진정인들이 사과한 일이 없으며 진정인은 폭행 후유증으로 병원에 간 사실도 없다. 다만, 진정인이 피부발진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희망하여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적이 있을 뿐이다. 또한, 2011. 4월 경 진정인을 만났을 때, 진정인이 팔이 아프다며 피해소송을 하겠다고 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소송을 하라고 조언을 하였을 뿐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적은 없다.

다. 참고인의 진술

1) 이○○(당시 합신센터 동료수용자)

진정인 및 동료 여성탈북자와 함께 합신센터의 같은 숙소에 수용되었는데, 수용된 첫날 밤 진정인이 심한 감기증세로 호흡을 거칠게 하고 기침을 하여 옆 사람의 취침에 방해가 될 정도였고, 2009. 8. 11. 13:00경 병원에 보내달라고 호소하다 지도관에 의해 방 밖으로 불려나갔고 다투는 소리가 들려 동료 탈북자들이 나가보려 하였으나 지도관이 거실 문을 닫아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보거나 듣지 못하였으나, 진정인이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독방에 감금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2009. 8. 12. 오전 진정인을 불러냈던 지도관이 “저런 년은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욕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을 때, 같은 탈북자로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이후 같은 해 9. 27. 신문과정을 마치고 하나원에 입소하여 다시 진정인을 만났는데, 이때 진정인으로부터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하나원 생활 시 진정인의 몸에 난 상처를 본 적은 없으나 진정인이 허리를 아파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2) 이○○(당시 합신센터 동료수용자)

사건당일 진정인이 감기로 아파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자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실랑이 벌이는 것을 봤다. 직원들이 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그 이후 상황은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진정인이 직원들과 다툼 때에 직원들이 “저런 년은 돌려보내야한다”라고 폭언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다.

이후 신문과정을 끝내고 하나원에 수용되어 생활할 때 진정인이 “아픈 게 뭐 죄가 돼서, 병원에 가겠다는데 폭행까지 하고 독방으로 보내느냐”면서 울분을 토하는 것을 들었고, 오른쪽 종아리의 멍을 본 적이 있으며 후유증으로 진통제를 많이 먹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3) 전○○(당시 합신센터 동료수용자)

당시 진정인이 직원들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직원들이 진정인과 말을 할 때 ‘짜가지 없는 년’이라며 욕을 한 것을 들었다. 독방에서 나온 진정인에게 직원들이 특별히 잘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진정인은 독방에 갔다 온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에 걸린 듯하여 “참고 잘 지내라”라고 격려해준 바 있다.

4) 전○○(당시 합신센터 동료수용자)

본인은 진정인이 독방에서 나온 지 3~4일 후에 입소하여 자세한 상황은 모르나 진정인이 아파서 약을 달라고 하다가 다툼이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고, 진정인은 하나원에 가서도 허리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5) 김○○(당시 합신센터 의무실, 공중보건과)

본인은 2009. 8월 당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의무실에서 공중보건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종합병원의 외과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당시 하루에 평균 환자수가 100명, 많은 때는 200여 명에 달하여, 진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억은 없으나, 2009. 8월 감기증상을 호소하여 입을 벌려보라고 하는데도 입을 다물고 진료를 거부하면서 무조건 약을 달라고 소란을 피운 여성 진료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정인인 것 같고 진료 후, 진료실 밖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또한 이와 같은 진료 이후, 진정인의 타박상 등 외상을 진료한 기억은 전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에 대한 대면조사보고서, 국가정보원의 답변서, 사건현장 약도, 진정인 진료기록, 피진정인들에 대한 대면조사보고서 및 진술서, 전화조사보고서, 합신센터 동료수용자인 참고인 이○○, 이○○ 등에 대한 진술서 및 전화조사보고서, 합신센터 공중보건과의 참고인 김○○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대학교○○병원이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진단서, ○○소방서의 회신자료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2005. 4. 18. 한국에 입국하여 살던 중, 2009. 8. 10. ○○경찰서에 자수하였고, 동 경찰서를 경유하여 2009. 8. 11. 04:00경 국가정보원 합신센터에 입소하였다가 2009. 9. 27. 심사과정을 마치고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다.

나. 진정인은 위 합신센터 입소 첫날인 2009. 8. 11. 새벽 감기 증세로 앓다가 당일 10:00경 합신센터 내 의무실에서 공중보건의 김○○의 진료를 받았으나 신속한 의약품 지급이 안 되었다는 등의 진료에 대한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3:00경 숙소의 담당 지도관인 피진정인 1에게 항의를 하며 위 센터 정문으로 이동하다 피진정인 1의 제지를 받았다.

다. 당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팔꿈치 부위를 붙잡아 숙소의 주출입구로 데리고 오던 중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팔을 입으로 물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밀쳐내고, 피진정인 2, 3 등의 도움을 받아 진정인을 숙소 주출입구 안쪽으로 들여보냈다.

라. 이에 진정인이 거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항의하자, 피진정인 4가 진정인과 면담을 한 후 진정인을 1인실(집중신문 등에 사용하며 침대,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다)로 입실 조치하여 5일 동안 혼자 생활하도록 하고 이후 다인거실로 배치하였다.

마. 위와 같은 진정인의 항의와 피진정인 1, 2, 3 등의 제지과정에서, 당시 합신센터 동료수용자인 참고인 ○○○ 등은 진정인에 대한 폭행을 직접 목격한 바가 전혀 없고, 합신센터를 퇴소하여 하나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진정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폭언 부분에 대해서는 위 피진정인들이 “싸가지 없는 년”, 또는 “저런 년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폭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바. 진정인에 대한 합신센터내 의무실 및 ○○대학교○○병원의 진료 기록에 의하면, 기침 등 감기증세, 여드름, 불면증, 흥분 및 발진 등 피부과적 질환에 대한 진료기록은 있으나 상해 등 외상에 대한 진료기록은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소방서의 사실조회 회신자료에 의하면, 2009. 8월경 진정인과 관련하여 긴급출동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피진정인 1, 2, 3의 진정인에 대한 폭행여부에 대하여

진정인은 2009. 8. 11. 당시 적절한 진료와 의약품 지급을 요구하던 자신을 피진정인 1, 2, 3이 제지하면서 팔을 쥐는 등 온몸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따라 폭행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피진정인 1, 2, 3은 진정인에 대한 폭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둘째,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당시 합신센터 동료수용자인 참고인들은 모두 진정인의 폭행피해 사실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고, 합신센터를 퇴소하여 하나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이를 진정인에게 들어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셋째, 위 참고인 중 ○○○의 경우, 진정인의 종아리 부위에 멍 자국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이를 본 것이 사건발생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관련 폭행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넷째,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진정인에 대한 합신센터 의무실 및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감기 및 피부과적 질환에 대한 진료기록 외에 상해 등 외상에 대한 진료기록을 발견 할 수 없는 점, 다섯째, 진정인은 2009. 8월 경 폭행후유증으로 치료 차 ○○소방서로 긴급후송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진정인은 진정제기 당시까지 폭행후유증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여섯째, 진정인은 피진정인 4가 사건 직후인 2009. 8. 12. 및 2011. 4월경 폭행사실을 무마하려고 자신을 회유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4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 폭행사실을 신빙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진정내용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1, 2, 3의 진정인에 대한 폭언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 1, 2, 3 등이 “이런 쌍년이 다 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와서 말썽이냐? 너 같은 거 죽어나가도 갖다버리면 그만이야”라며 수차례 폭언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위 피진정인들은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2009. 8. 11. 당시에 첫째, 당시 동료수용자인 참고인 이○○은 진정인이 직원들과 다룰 때에 직원들이 “저런 년은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폭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둘째, 같은 참고인 전○○은 직원들이 진정인과 말을 할 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셋째, 또한 같은 참고인 이○○은 2009. 8. 12. 오전 조회시간에 진정인을 불러냈던 지도관(피진정인 1)이 “저런 년은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탈북자로서 수치심과 모멸감이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참고인들의 증언을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1, 2, 3 중 구체적으로 누가 폭언을 하였는지는 특정하기 어려우나, 당시 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대화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또한 이 사건 발생 직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그 폭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을 훼손할 만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1, 2, 3 등이 진정인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인에 대한 1인실 수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4가 자신을 독방(1인실)에 5일 간 수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피진정인 4는 당시 합신센터 진료에 불만을 품고 폭언을 하고 임의적으로 퇴소하려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숙소(다인거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여타 탈북자 보호 및 진정인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1인실에서 지내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점, 둘째,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1인실은 집중신문과정 중 보안 유지 등을 위한 필수적인 수용시설로써, 침대, 화장실, 책상 등이 비치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징벌적 의미의 수용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셋째, 당시 진정인이 감기증세로 기침이 심하여 타인의 숙면 등 생활상의 지장을 주었던 관계로 다인거실의 합동생활보다는 일시적인 1인실의 수용이 진정인이나 다른 수용자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진정내용은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인에 대한 의약품 미지급 여부

진정인은 1인실 수용 중 피진정인 4가 의약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을 1인실에 수용하였을 당시 음식물과 의약품을 지급하였으나, 진정인이 단식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바, 본 건 진정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피진정인 1, 2, 3을 비롯한 합선센터 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라.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18 2012. 8. 16.자 11-진정-0315700 결정 [교통참여교육 대상자에 대한 모자 등 착용 제한]

【결정사항】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각 경찰서의 교통참여교육 시 참여자의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교통참여교육 대상자에게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용모 및 복장을 제한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비례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관련된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제1항~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제1항~제7항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각 경찰서의 교통참여교육 시 참여자의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5. 29. 08:00 ~ 12:00까지 ○○경찰서 앞 교차로 사거리에서 진행되는 ‘음주운전자 교통참여교육’에 모자를 착용하고 참석하였는데, 교육을 담당한 피진정인이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착용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모자를 벗으라고 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행위이다.

나.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복장제한에 대하여 이유를 묻는 진정인에게 “규칙이 그렇다, 기분 나쁘면 받지 말라, 팻말 똑바로 들어라, 줄 제대로 서라”라고 말하면서 군대에서 기합을 주듯이 모욕적인 언동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교통참여교육 대상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며 잡담하는 등 불성실하게 임하는 사례가 많고, ○○○지방경찰청 교통과에서 시달한 「교통참여교육(현장참여교육) 강화 지시」 공문에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교육에 참여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는 본래 교육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어, 선글라스, 모자, 마스크 등의 착용을 제한한 것이다. 진정인에게 교통참여교육의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하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시위대를 연상할 수 있는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 착용은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은 “그냥 벗기 싫다, 법적 근거가 무엇이나”라고 하며 교통참여교육을 시작하자마자 아무런 말도 없이 귀가해버려 불참 처리하였고, 교통참여교육은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정지 처분 일수를 감경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참여자들에게 강제한 사실은 없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교육 장소를 이동할 때, 어깨띠 및 피켓 등을 바닥에 끌거나 지팡이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교양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반말을 하거나 “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 ○○○(○○○지방경찰청 교통과)

○○○지방경찰청 교통과에서 2009년경 각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교통참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교통참여교육(현장참여교육) 강화 지시」 공문을 시행한 사실이 있는데,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제한의 법적 근거로 법률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으며, 경찰청에서 이에 대한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다.

2)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운전면허계)

경찰청에서 교통참여교육에 대하여 운영 매뉴얼을 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소속 관서에 선글라스, 모자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이나 지시를 시행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 규정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경찰청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영 지침, 경찰청·도로교통공단 현장참여교육 시범운영(매뉴얼), ○○○지방경찰청 교통참여교육(현장참여교육) 강화 지시, 참고인 진술서, 현장 체험교육 신청서 접수대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교통참여교육이란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 중 희망자에 대해 경찰서 4시간(현장참여교육), 도로교통공단 4시간(이론교육) 등 총 8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 30일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며, 참여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나. 진정인 등 18명은 2011. 5. 29.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통참여교육(현장체험교육)에 참여하여, 당일 08:00경 교양을 받은 후,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피켓과 어깨띠를 지급받아 경찰서 앞 사거리 대로변으로 이동하였다.

다. 교통참여교육 현장 교육 담당자인 피진정인은 교육 시작 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했던 일부 참여자들은 이에 따랐으나 모자를 착용하고 있던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모자를 벗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교통참여 교육이므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시위대를 연상시킬 수 있어 착용을 금지한다”라고 답하였으며, 진정인은 모자 벗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귀가하여 결국 ‘불참’ 처리되었다.

마. 「도로교통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경찰청 시행 ‘현장참여교육 시범운영 매뉴얼’,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영지침’ 등에 교육참여자의 복장 등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

바. ○○○지방경찰청이 소속 관내 38개 경찰서에 시달한 공문 ‘「교통참여교육(현장체험교육) 강화 지시」’에 의하면, “특히,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참여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는 본래 교육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임”이라는 내용과, 지시사항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지방경찰청 이외 다른 지방청에서 위 같은 내용의 제한을 지시하거나 실시한 사실이 없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관련 기본권에 대하여

개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 또는 사회적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일반적 자기행동결정권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자기행동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교통참여교육의 목적 및 성격

「도로교통법」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제1항 제3호는 ‘교통참여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질서, 교통사고와 그 예방,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법규와 안전,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각호)에 대하여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다.항은 ‘교통참여교육은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출퇴근시간대의 교통안전 참여활동, 교통단속 현장체험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교통참여교육은 과거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의 일종이 아니라,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그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의 일정 일수를 감경 받도록 하는 임의적·수혜적 제도의 일종으로, 교육을 통하여 장래의 교통법규위반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교통참여교육 시 복장제한의 법적근거

모자나 선글라스, 마스크에 대한 착용금지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제한 행위이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경찰청 교통

과가 2009. 4. 17. 관할 38개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교통참여교육 시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피진정인이 이를 근거로 교통참여교육 대상자에게 복장을 제한하였을 뿐, 교통참여교육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또는 관련 법령 어디에도 교육 중 복장 등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의 이러한 용모 및 복장 제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 없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4) 복장 제한의 목적 및 방법의 적절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형벌이나 처분이 아닌 임의적인 교육의 경우,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본권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그 교육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이어야 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진정인은 피교육자들이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참여하게 되면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본래 교육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4.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참여교육의 목적이 이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대하여 다시 반성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얼굴을 노출하고 일반인의 통행이 많은 도로에 서있게 함으로써 대상으로 하여금 반성케 한다는 방법 또한 「도로교통법」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목적을 '교통질서, 교통사고와 그 예방,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법규와 안전,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라고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비록 교통참여교육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은 아니고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교육이지만, 참여자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복장을 갖추도록 유도할 최소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모자 착용의 경우, 교통안전 캠페인을 희화화시킬 우려는 상상하기 어렵고 시민들로부터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줄 이유도 없다. 나아가 선글라스의 경우에도 거리 캠페인이라는 사정상 장시간의 자외선 노출을 차단하려는 건강상 요구가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눈의 상태에 따라 그 착용이 절실한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셋째, 피진정인은 교통참여교육이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불이익 조치의 감경에 해당하므로 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복장제한에 응하고 싶지 않은 교육대상자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을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청 등이 대상자에게 수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 없이 필요한 한도를 넘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소결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비롯한 교통참여교육 대상자들에게 모자 착용 등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 없이 과도하게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반말을 하고, 기합 주듯이 모욕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 항 진정요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012. 8. 1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영혜 위원 윤남근

【별 지】 관련규정

1.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3. 안전운전 능력
4.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2. 공동 위험행위,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5.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교통법규교육

교통법규와 안전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교통법규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 다만, 과거 1년 이내에 동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

2. 교통소양교육

교통사고의 예방,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위험 및 안전운전 요령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 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공동위험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 나. 교통법규의 위반 등 가목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 다.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 라.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

3. 교통참여교육

교통단속현장 등에 실제로 참여하는 등의 교육으로서 제2호에 따른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 다만, 과거 1년 이내에 동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

②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내지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 1. 교통질서
-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 3. 안전운전의 기초
- 4. 교통법규와 안전
-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현장체험교육은 경찰서장이 실시한다.

④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73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법 제73조, 영 제37조·제3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 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법 제11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 또는 발급할 때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확인증을 확인한 후에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은 영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현장체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경찰서장이 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 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 16 제2호

다. 교통참여교육				
교육 대상자	교육 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나 목 의 교 통 소 양 교 육 을 받 은 사 람 (운 전 면 허 취 소 후 다 시 운 전 면 허 를 받 고 자 하 는 사 람 제 외) 중 교 육 받 기 를 원 하 는 사 람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4시간	(1) 음주운전 사례분석 (2) 음주와 자기통제 등	강의·시청각·토의·영화상영 등
	2) 교통사고 또는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4시간	교통안전 참여활동 등	출퇴근시간대의 교통안전 참여활동, 교통단속 현장체험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
		4시간	(1) 교통사고 사례분석 (2) 운전성향 진단 (3) 상황별 위험예측 등	강의·시청각·토의·검사·영화상영 등
	3) 1), 2)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초보운전자 포함)	4시간	(1) 교통법규 위반심리 사례분석 (2) 안전운전요령	강의·시청각·토의·영화상영 등
		4시간	교통안전 참여활동 등	출퇴근시간대의 교통안전 참여활동, 교통단속 현장체험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

19 2012. 8. 16.자 12-진정-0102900 결정 [경찰의 피의 사실 유포 등]

【결정사항】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사건의 언론 공개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진정인 및 사건 관계자들의 실명 및 주요 혐의가 기재된 내부 보고문서인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이버 기자 검거 보고’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실수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진정인의 인격에 대한 평가를 훼손하게 하여 「헌법」상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제17조, 「형사소송법」 제198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제84조,

【진 정 인】 노○○

【피진정인】 1. 이○○ 2. 최○○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사건의 언론 공개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는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11. 12월경 기자 신분인 지인이 취재과정에 문제가 있어 피진정인들에게 조사를 받았다. 이때, 진정인도 위 지인의 취재를 도와주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 같이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 1은 조사과정에서 특정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편파적으로 조사한 것이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과 관련된 혐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실명, 직업, 나이 등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경찰서 수사과 직원인 피진정인 1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지인인 장○○가 2011. 11. 20. 전후로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공갈, 협박으로 금품을 편취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하였다. 수사는 피해자 및 참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진정인 등을 조사하였는바 조사과정에 편파수사를 한 바 없다.

2)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 관련 사건을 기사실에 보도자료로 진정인의 실명, 직업, 나이 등이 기재된 내부 보고서용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이버 기자 검거 보고’를 배부하였는데 이는 실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사건 송치목록, 의견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1. 12. 23. 진정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조사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는 2012. 2. 2. 진정인 및 건외 사건 관계자들의 실명 및 주요 혐의가 기재된 내부 보고문서인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이버 기자 검거 보고’를 기자실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특정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부당한 수사를 하였다는 사안은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진정인 및 건외 사건 관계자들의 실명 및 주요 혐의가 기재된 내부 보고문서인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이버 기자 검거 보고’를 기자실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주의 의무와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및 제84조의 수사사건의 언론 공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사건 관련 보도자료는 피의자 등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익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진정사건에서는 실명이 기록된 내부보고서가 기자실에 배포되어 진정인의 정보가 제한 없이 노출되었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비록,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겨주고 인격에 대한 평가가 훼손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에게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수사 사건 언론공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영혜 위원 윤남근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및 부책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

제84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 제83조제2항의 언론공개를 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20 2012. 11. 2.자 12-진정-0529400 결정 [경찰의 부당한 야간 자택 방문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 ○ 경찰서장에게, 경찰의 야간주택 방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공유하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이 야간 음주단속 수행에 있어 서명과 스티커 발부 누락을 보정할 목적으로 새벽에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함으로써 가족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심야에 서명과 스티커 발부를 해야 할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취침 중 경찰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입었을 진정인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불편을 고려할 때,
- 【2】** 피진정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수행 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면서 필요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준칙)·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제49조(사실확인할 때 유의사항)

【진정인】 ○ ○ ○

【피해자】 정 ○ ○

【피진정인】 ○ ○ ○

【주 문】

○○○○경찰서장에게, 경찰의 야간주택 방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공유하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2. 7. 19. 00:30분경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054%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단속 경찰관의 귀가조치에 따라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같은 날 01:00경 집에 도착하여 취침하였다. 이후 같은 날 02:30경 피진정인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며 수차례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결국에는 새벽에 집에까지 찾아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나. 당시 진정인이 음주단속에 붙음하여 도주하거나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인적사항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에 집에까지 찾아와 자고 있던 아내와 장모, 50일 된 아기를 깨우는 등 가족들을 놀라게 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2. 7. 19. 단속업무가 끝난 02:00경 진정인의 음주단속 처리에 필요한 정황진술서에 지장이 누락되어 있었고, 휴대용 전자조회기(이하 'PDA'라 함)에 관련 내용 입력을 하지 않아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진정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다.

2) 정황진술서의 경우는 담당형사에게 넘기는 것이라 본인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였으므로 다음 날 지장을 찍는 것이 가능하나, PDA의 경우는 형사사건이라 입건 시간이 중요하고, PDA에 입력을 하지 않으면 형사 사법 통합시스템(이하 'KICS'라 함)으로 넘어가지 못해 추후 검찰조사 시에 음주 측정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스티커를 발행하여 당사자가 당시 처리 결과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므로 담당자로서는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3) 같은 날 02:30경, 진정인의 주소지로 가서 벨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었고, 경비실에 확인한바 다른 전화번호가 없어 문자를 보냈으나 답이 없다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다. 진정인이 옆 동 앞으로 오라고 해서 그 곳으로 가서 서명을 받고 스티커를 발부하였다.

4) 야간에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한 것은 본인의 업무 처리에 실수가 있어 부적절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사과하였다. 가족들에게 알린 것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이 안내한 대로 찾아갔더니 가족들이 있었던 것이고 진정인의 장모 택인지 알지 못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전화조사 보고서, 교통안전계 교통외근 근무 자료, ○○경찰서의 민원회신 내용, ○○경찰서 음주단속 실적 및 현황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의 음주단속 처리 절차는 1) 음주측정, 2) 음주자 정황진술서 작성(인적사항, 당시 취한 상태, 음주측정 수치 등) 및 음주자 지장 날인 후 담당형사에게 송부, 3) 정황진술서 내용을 PDA에 입력한 후 음주자

서명, 4) 본인에게 확인스티커 배부 및 관련 자료를 KICS에 자동 전송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피진정인은 2012. 7. 19. 02:00경, 음주운전 하던 진정인을 적발하고 정황진술서에 진정인의 인적사항과 음주측정 수치 등을 기록은 했으나 지장을 받지 않았고, PDA 입력 및 서명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같은 날 02:30경 진정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핸드폰으로 통화를 시도하다 '○○씨, 경찰입니다. 음주하신 것 종이를 작성할 겁니다. 옆집 시끄러우니 문 열어주시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진정인은 당시 자택이 아닌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장모 집에서 취침 중이었으나 부인이 피진정인의 문자메시지 등을 듣고 깨움에 따라, 02:45경 피진정인을 장모 집으로 오게 하여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다.

다. 피진정인은 아파트 입구에서 진정인으로부터 정황진술서 및 PDA 서명을 받고 스티커를 발부하였고, 새벽시간에 가정집을 방문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진정인에게 사과하였다.

라. 진정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 ○○경찰서 주무부서인 교통민원계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고, 또한 피진정인 소속 교통민원계팀장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

5. 판단

가.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법경찰관리의 경우 자체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권존중 및 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함은 물론, 위 같은 규칙 제9조 및 제49조에는 업무수행 중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과 수사 내용이 외부인에게 알려져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 위 진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야간 음주 단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진정인의 실수로 서명과 스티커 발부가 누락되어 이를 보정하기 위해 새벽시간에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족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당시 정황진술서 상에 진정인에 대한 음주측정 수치와 신원 및 소재지 파악 등이 완료되어 경찰의 안내로 귀가조치 되었으므로 관련 서명 및 스티커 발부는 익일 조치 및 우편 발송으로도 가능하여 심야 시간에 서명을 받고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는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비록 당시 피진정인이 음주단속 행정처리 상의 흠결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심야 시간에 취침 중인 상황에서 경찰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입게 될 진정인과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불편을 고려해 볼 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주거의 평온을 보장받을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도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조치의견을 살펴보면, 이 사건 이후 진정인의 민원제기로 ○○ ○○ 경찰서 관련부서에서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런 점에서 피진정인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나, 피진정기관에서 실시한 직무교육이 음주단속 업무 시 기록누락의 업무상 과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이 사건 진정내용과 같은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은 재발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바, 유사사건 발생 시 사후적인 야간 주택 방문 시에 주의해야

하는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의 야간 주택방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널리 공유하고 피진정인에 대하여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양현아 위원 한위수

21 2012. 11. 2.자 11-진정-0675800 결정 [경찰의 욕설 등]

【결정사항】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야,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한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제2항의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진 정 인】 이○○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1. 한○○ 2. 심○○ 3. 김○○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11. 11. 19:30경 ○○도 ○○시 ○○읍 소재 식당 내에서 친척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경찰서 ○○파출소 소속 피진정인 1이 출동하였는데 언행을 보니 술에 취한 것 같아 진정인이 “왜 술 마시고 출동하였느냐?”라고 하자 피진정인 1이 “야 ××놈아, 니가 술 먹는 것을 보았냐? 사켰냐?”라고 욕을 하였고, 잠시 철수하였다가 재차 출동하여서도 “야 ××놈아 파란불 봤지 않냐? 안 나왔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진정인이 ○○경찰서 상황실에 피진정인 1의 음주 근무 신고를 하자, 근무자인 피진정인 2 및 3이 “이곳에 전화하지 말고 ○○파출소에 신고하라”면서 전화를 끊고 진정인의 신고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

가) 피진정인 1은 2011. 11. 11. 19:10경 ○○시 ○○읍 소재 ○○식당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바, 진정인이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팬티만 입은 채 다른 남자 1명과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피진정인 1이 이를 제지하고 인적사항과 싸움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분리조사를 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술을 전혀 먹지 않은 피진정인 1의 얼굴이 벌겋다는 이유로 술을 먹었다고 시비를 걸고, “짹새 새끼 옷을 벗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당시 진정인과 싸움을 한 상대방은 친척인 관계로 인해 진술을 거부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 상대방 처벌을 원하면 치료 후 재신고하면 된다고 고지한 후 귀소하였다.

나) 이후 112 지령실 근무자로부터 ‘○○식당’ 내에서 경찰관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렸다는 민원인(진정인)의 전화를 여러 번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출동하라고 하여 재차 ‘○○식당’에 갔더니, 진정인이 “저 얼굴 봐라, 짹새 새끼가 술을 먹고 근무를 해도 되냐, 저런 짹새는 옷을 벗겨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이 순찰차에서 음주감지기를 가지고 와 음주여부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새끼, 저 새끼 그런 욕을 경찰관을 자식으로 둔 저희 부모님이 듣는다면 당신 같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욕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당시 진정인에게 어떠한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 및 3의 주장

2011. 11. 11. 야간근무 중 진정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12신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같은 날 19:45경 진정인으로부터 일반인의 싸움에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술을 마신 것 같으니, 처리를 좀 해달라는 신고를 받던 중 전화가 끊어졌으며, 20:03경에는 “출동한 경찰관이 술을 마신 것 같다. 음주측정을 해 달라”라는 신고를 재차 하여, “그러면 경찰관을 현장에 보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통화하였으며, 20:10경 다시 진정인이 신고를 하면서 어떻게 됐냐고 하여, 경찰관을 현장으로 보내겠다고 답했고, 당시 ○○파출소 근무자에게 구두로 신고 사실을 고지하고 음주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 주어 신고자한테 오해가 없도록 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박○○) 진술 요지

참고인은 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참고인은 ○○시 ○○동 거주자로 진정인이 ‘△△도에서 사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다.

당시 진정인이 출동한 피진정인 1에게 술을 먹었다면서 욕설을 하자 피진정인이 “야 ××놈아, 니가 술 먹는 것을 보았냐? 사켰냐, 야 ××놈아, 음주측정기에 파란불 봤지 않냐, 안 나왔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경찰서에서도 진정내용과 같은 건으로 문의해와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한 적이 있다”는 간단한 내용의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 준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민원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보고서(민원인, 손님, 식당업주 주장), 참고인(박○○)이 팩스로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1. 11. 11. 19:10경부터 20:10경 사이에 ○○시 ○○읍 소재 ○○식당에 2회 출동하며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의 음주 여부 관련으로 언쟁을 하였다.

나. ○○경찰서는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욕먹는 걸 부모님이 보면 좋아하겠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피진정인 1이 경찰업무를 수행한 이후 민원 야기 및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진정인 1에게 불문조치 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은 2011. 11. 11.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음주근무 여부 등에 대한 전화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접수처리 하였고 피진정인 1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여 민원인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조치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2011. 11. 11. 19:10경부터 ○○시 ○○읍 소재 ○○식당에 2회 출동했을 당시, “경찰이 음주를 하고 근무한다”라는 지적을 하자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계속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새끼 저 새끼 그런 욕을 경찰관을 자식으로 둔 저희 부모님이 듣는다면 당신 같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욕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진정 관련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식당 업주는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몇 마디 욕설을 하자 피진정인 1이 “야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욕먹는 걸 부모님이 보면 좋아하겠냐”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고,

당시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참고인도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준 사실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조사 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진정인 1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한 참고인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1의 언행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제2항의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해야 할 구제조치를 보면, 피진정인 1이 경찰업무를 수행한 이후 민원 야기 및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불문조치를 하였으나, 경찰의 업무수행 시 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 3이 진정인의 ‘피진정인 1 음주근무 신고’ 전화를 받아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2, 3은 진정인의 112신고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였으며, 피진정인 1을 현장에 보내 음주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 주어 진정인에게 오해가 없도록 한 사실이 있는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양현아 위원 한위수

22 2012. 12. 18.자 11-진정-0341500 결정 [속옷탈의 및 실명공개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 [1]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조사 시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업무편람」의 ‘자살·자해 위험 도구’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할 것을 권고
- [2] ○○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브래지어 탈의는 여성 유치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가능성이 높은 반면, 브래지어가 자해·자살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은 경험적으로 낮은 점,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는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데 유독 유치장 내 여성 수용자만 달리 처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1의 행위는 지나친 조치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 [2] 피진정인 2가 해명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진정인의 실명을 게재하여 신상이 노출된바 그 행위에 고의성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인격권의 침해,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 신체등의 검사, 제9조 위험물 등의 취급, 「경찰업무편람」 4-5 유치장사고 및 피의자 도주사고 방지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 최○○ 2. 하○○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조사 시 속옷탈의 등으로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경찰업무편람」의 ‘자살·자해 위험 도구’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6. 10. 23:00경 ‘○○○○ ○○○○연합’(이하 ‘○○○’이라 함)이 주최한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 △△경찰서로 연행되었는데 연행된 후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1이 유치장 입감 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여 탈의 상태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들을 연행하면서 발생했던 언론보도에 대한 ○○지방경찰청 차원의 ‘해명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진정인의 실명을 노출시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경사 최○○, ○○ △△경찰서 수사과)

2011. 6. 10. 23:00경 반값등록금 시위 상황과 관련하여 ○○ △△경찰서에 대기 근무 중 위 진정인을 포함한 시위자들이 호송되어와 유치

장에 입감시켰다. 당시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거 브래지어가 위험물로 사용될 가능성을 진정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본인 스스로 브래지어를 탈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진정인에게 “속옷을 벗었으니 학생이 입고 왔던 가디건을 티셔츠 위에 입겠느냐”라고 물어보았으나 진정인이 “입지 않겠다”라고 한 바 있다.

2011. 6. 11. 11:28 경 진정인이 청문감사관실에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속옷을 착용하지 않아서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진술하여 보조의류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2) 피진정인 2(경감 하○○, △△지방경찰청, 당시 ○○지방경찰청)

2011. 6. 14. 18:00경 ○○신문 가판(인터넷판)에 “경찰, 등록금 시위 여대생 ‘브래지어 탈의’ 논란”의 제목으로 ○○○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경찰의 연행 대학생에 대한 강압수사·인권침해 사례 모음’이라는 게시글이 인용 보도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일 20:40경, ○○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에서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여 “○○○ 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홍보담당관실에 통보하였다. 당시 사실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진정 외 수사 담당자(경감 조○○)가 진정인의 실명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에 본인은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실명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별도 파일을 작성하였으나 2011. 6. 15. 08:06경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실명으로 작성된 원본파일을 게재하였다가 같은 날 23:00경 이를 인지하여 파일을 삭제하고 각 언론사에도 실수임을 인정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 입출감지휘서, 유치인명단, 유치장CCTV 녹화사본,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체포구속인명부, 보도자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11. 6. 10. 20:45경부터 22:45까지 ○○시 ○○구 ○○동 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1. 6. 10. 23:30 ○○ ○○경찰서에 인치되었다.

나. 피진정인 1은 2011. 6. 11. 진정인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탈의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 2는 2011. 6. 15. 08:06 - 23:00까지 경찰청 홈페이지에 “○○○ 홈페이지 게시물 관련 해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진정인의 이름을 실명으로 게재한 바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피진정인 1은 유치인에 대한 자해·자살방지 목적과 ‘경찰업무 편람’의 근거 등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속옷탈의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브래지어 탈의는 여성유치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브래지어가 직접적으로 자해 및 자살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은 경험적으로 낮다는 점 등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고, 현재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들은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데 유독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 수용자들을 달리 처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과도한 조치로 보이며, 결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찰업무편람」에 브래지어가 자살·자해 위험도구로 지정되어 있어 일선 경찰관들은 이를 근거로 여성유치인의 수치심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경찰청 차원의 지침으로 이해하고 이를 행하고 있는 실정인 점, 「경찰업무편람」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하더라도 현저한 자살위험이 확인될 경우에는 상위규정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을 근거로도 긴급히 브래지어 탈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경찰업무편람」의 ‘자살·자해 위험 도구’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은 본 편람에 근거하여 진정인에게 속옷탈의를 요구한 점, 진정인이 브래지어 탈의당시 피진정인의 자해자살방지 차원임을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권고는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가 경찰청 차원의 해명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진정인의 이름을 실명으로 게재하여 개인 신상이 노출된바 그 행위의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의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한 직무교육의 실시 권고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양현아 위원 한위수

【별 지】 관련규정

1.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신체등의 검사) ① 피의자를 유치함에 있어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복, 소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하고 유치인의 소지품을 출감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②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스스로 제9조의 위험물 등(이하 '위험물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 제1항의 피의자 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표검사: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2. 간이검사: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를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 제1호와 제2호의 신체 등의 검사를 통하여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고 제4항 제3호의 정밀검사를 하여야한다. 다만, 위험물 등의 제거가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 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4항과 제5항에 의해 신체 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조의 위험물 등이 발견되면 제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물 등의 취급) ① 피의자를 유치하려 할 때에는 그 피의자가 수사상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는 다음 각호의 물건(이하 "위험물"이라한다)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을 제출시켜 유치기간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핵대, 벡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2. 「경찰업무편람」 (45 유치장사고 및 피의자 도주사고 방지)

-03 각종 사고의 사례

1. 도주사고의 실태
2. 자살·자해사고의 유형

가. 자신의 구두끈, 양말, 런닝, 브래지어 등을 이용, 목을 매어 자살
- 위 규정 등에 근거하여 피의자 입감시 자해·자살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임을 설명하고 위험물을 제출받고 있음.
- 브래지어도 끈이나 철제와이어, 매듭쇠 등이 자살 또는 자해 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을 설명하고 제출받아 보관함.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23

2012. 9. 18.자 12-직권-0000400 결정 [수원 여성살해 사건 직권조사]

【결정사항】

경찰청장에게, ‘112신고 접수처리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도록 권고

- 【1】 112종합상황실 근무자의 직무교육 강화 및 교육내용에 ‘성인지 교육’ 포함
- 【2】 범죄 피해자의 위급하고 중대한 신고 접수 시 접수 및 지령내용에 대한 교차확인파와 지령파일에 대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3】 지구대 및 경찰서 상황실에서도 필요한 경우 신고자의 녹취파일을 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 【4】 112종합상황실의 근무환경과 시스템 개선 및 상시적 점검체계 마련

【결정요지】

- 【1】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던 피해자의 신고에 대하여, 112신고센터 접수자는 피해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키고 긴박한 상황에 부적절한 질문으로 시간을 경과시켰으며, 상황 지휘자는 사건의 긴급성·심각성을 제대로 전파·확인·보고하지 않았고, 부지령자는 상황을 심각하게 오판하여 안이하게 대처함.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 【2】 현장 출동 및 초동조치 또한, 비록 112지령이 장소특정을 제대로 못하여 수색에 한계가 있었다더라도,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에 경찰력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
- 【3】 이 사건은, 112신고센터 근무자들이 제대로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점, 사후적으로도 신고 및 지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불안정하여 초동조치가 늦어진 점, 성폭행 사건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 결여로 안이하게 판단한 점, 112신고센터와 종합상황실이 분리

운영되어 중요범죄사건 발생 시 보고 및 지휘감독 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및 제2조, 제6조

【주 문】

경찰청장에게, 전 국민이 경찰의 치안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112신고 접수처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아래 등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가. 112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내용에 '성인지 교육'을 포함할 것.

나. 범죄피해자의 위급하고 중대한 신고 접수 시 접수자, 지령자 및 현장 지휘자 모두가 접수 및 지령내용에 대한 교차확인과 지령파일에 대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

다. 신고사항이 접수근무자의 착오·장애 등으로 일선에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구대 및 경찰서 상황실에서도 필요한 경우 신고자의 녹취파일을 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것

라. 112종합상황실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할 것.

【이 유】

I. 직권조사의 배경

2012. 4. 1. 경기도 수원시에서 아래 피해자가 피의자 오 모씨에 의하여 납치되어 살해당한 후 다음 날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의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납치 직후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112에 신고하여 납치 장소를 말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접수한 경찰이 ‘집안’이라는 중요한 위치를 빠뜨린 채 지령을 내리고, 지령을 받은 근무자들도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결과보고도 소홀히 하는 등 신변보호 요청을 한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생명권 침해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의 근거가 있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II. 직권조사 결과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피해자 : ○○○ (26세, 사망)

나. 피조사자

1) ○○○○경찰청 112신고센터

가) 김○○ (당시,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총경)

나) 박○○ (당시, ○○○○경찰청 112신고센터장, 경정)

다) 최○○ (당시, ○○○○경찰청 112신고센터 4팀장, 경위)

라) 이○○ (당시 ○○○○경찰청 112신고센터 지령요원, 경위)

마) 방○○ (당시 ○○○○경찰청 112신고센터 근무, 경사)

바) 방△△ (당시 ○○○○경찰청 112신고센터, 신고접수자, 경사)

2) ○○○○경찰서

가) 형사과

(1) 조○○ (당시 ○○○○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2) 조△△ (당시 ○○○○경찰서 형사계장, 경위)

(3) 조□□ (당시 ○○○○경찰서 강력7팀장, 경위)

나) 상황실

(1) 박△△ (당시 ○○○○경찰서 정보과장, 상황실장, 경정)

(2) 형○○ (당시 ○○○○경찰서 생활안전과 112지령실, 경위)

다) ○○파출소

- (1) 명○○ (당시 ○○○○경찰서 ○○파출소장, 경감)
- (2) 이△△ (당시 ○○○○경찰서 ○○파출소 1팀장, 경위)

2. 당사자 및 관련자 등의 주장요지

가. ○○○○경찰청 112신고센터(이하 '112신고센터')

1) 방△△(112신고센터 신고접수자, 경사)

사건 발생 약 1달 전인 2012. 2. 29.부터 112신고센터에 배치되어 복무해왔고, 사건 당일 야간 탄력근무(19:00~02:00)로 지정받아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받았다. 피해자는 집안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집인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내용상 상황이 급박한 코드-1사건이라고 판단하여 긴급버튼을 누르고 4공청(다자간 통화: 신고자, 지령대 근무자, 팀장 등 지령실 근무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장치)을 실시하였으나 신고 접수처리표에 장소가 '집안'이라는 것은 입력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한 바 '○○새마을금고 158미터'로 확인되어 112접수신고처리표에 입력했으며 피해자에게 주소를 물어보았으나 비명과 테이프 찢는 소리가 들려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었다.

전화가 끊긴 후 녹취파일을 들으려 했으나 재생이 불가했으며 23:45경 ○○○○경찰서 형사과 강력7팀장과 통화로 급박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것은 공청이 진행되었으므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전달하지 못하였다.

2) 이○○(112신고센터 지령요원, 경위)

2010. 12. 24.부터 112신고센터에서 지령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4. 1. 사건당시 접수자인 방△△ 경사가 코드1의 긴급사건으로 분류함에 따라 본인의 컴퓨터 모니터에 '성폭', '○○구 ○○ ○○ 놀이터 가기 전 ○○초등학교 부근'이라고 나타났다. 이에 무전망으로 지령을 내렸고, 순찰차는 순61, 62, 형기(형사기동대) 출발하라고 지령을 내렸으며 순82,

62,13호를 추가 배치하도록 지령하였다. 신고자의 전화가 끊긴 후 ○○
○○경찰서 지령실 근무자에게 사건이 중요하니 상황실장에게 보고할
것과, 강력반장에게 통신수사 진행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그 이후에는
수원○○○에서 수색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별도의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지령 내용 중 공청의 감도가 좋지 않아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고 최○○ 팀장이나 방△△ 경사가 ‘집안’이라는 부분
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지령은 내리지 않았다

3) 최○○(112신고센터 4팀장, 경위)

2012. 1. 27.부터 112신고센터에서 4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사건 당일은
야간근무(19:00~다음 날 7:00)로 근무자들의 근무감독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상황별 관련조치 지시를 맡았다. 경사 방△△이 공청을 울려 종합지령
대에서 피해자 신고 내용을 듣고 긴급상황으로 판단, 주지령자 경위 이○○
이 수원○○서 형기차량에 출동지령을 내렸는데 추가로 순찰차량을 더
지원하고 긴급배치 하라고 하였다. 통상 접수대에 코드-1사건이 접수되면
112신고접수처리표를 인쇄하여 지방청 상황실에 통보하는데 이번 건은
경황이 없어 통보하도록 지시하지 못하였다. 신고전화가 끊긴 후 녹취파일
로 위치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불가하여 정보통신 당직자에게 연락하였고
4. 2. 01:00경 녹취파일을 다시 찾아 강력7팀장에게 메신저로 보냈다. 당시
지령대에서 공청을 들으면서 112신고접수처리표를 보았으나 ‘집안’이라
는 내용이 빠진 것을 파악하지 못해 출동 경찰관들에게 추가지령은 하지
못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2012. 4. 2. 07:00경 생활안전과장에게 중요사건
으로 서류와 구두로 보고하였고 센터장에게는 업무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출근 시 볼 수 있도록 책상 위에 두고 구두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4) 방○○(112신고센터 근무, 경사)

2012. 2. 13.부터 112신고센터에서 4팀 서무업무를 맡고 있다. 사건
당일 야간근무 중 긴급공청이 들어와 최○○ 팀장, 이○○ 경위와 함께
공청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듣게 되었다. 피해자가 ‘잘못했어요, 잘못했

어요'라는 부분부터 들었고 코드-1 사건으로 긴급한 상황이므로 주지령자 이○○ 경위가 곧바로 순찰차와 형사기동대에 출동하라는 무선 지령을 내리고 최○○팀장과 본인은 계속 공청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 위치추적 결과가 본인이 사는 동네로 지리를 잘 알고 있었고 “○○아파트 부근 주택 쪽 같다”라고 생각되어 무전기로 전파지령을 내렸다. 공청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잘못했어요’라고 하고 남자 목소리가 들려 본인이 “부부 싸움 같다”라는 말을 했으나 혼잣말로 말한 것으로 현장출동 경찰관들에게 전파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당시 공청에 집중하고 있어서 지령담당인 이○○ 경위가 어떻게 지령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어 추가지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5) 박○○(112신고센터장, 경정)

2012. 1. 26.부터 112신고센터장을 맡고 있다. 2012. 4. 2. 07:00 경 출근하여 4팀장 최○○으로부터 특이사항 보고로 수원에서 여성의 성폭행 신고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2012. 4. 3. 생활안전과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물어보아 범인은 검거되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언론에 112신고센터의 업무가 미숙했다는 보도가 나면서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되었다. 자체 진상조사를 한바, 4. 1. 01:00경 프로그램이 다운되어 전문업체에서 응급조치를 하였는데 완벽히 복구가 되지 않아 녹취파일을 곧바로 찾지 못하고 늦어진 부분과 접수자가 장소를 누락시킨 부분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6) 김○○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총경)

생활안전과장으로 지역경찰, 112신고센터, 풍속업소단속,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학교폭력예방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4. 2. 07:00경 112신고센터 4팀장 최○○으로부터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고 현재 수사 중입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4. 3. 당직 근무 중 이번 사건 녹취록을 들었고 접수자가 “주소가 어디입니까? 성폭행 당하셨다고요?” 등 불필요한 질문을 한 것을 듣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112신고센터 근무자를 상대로 교양하였다.

나. ○○○○경찰서 형사과

1) 조□□ (○○○○경찰서 강력7팀장, 경위)

2011. 9.부터 강력7팀장으로 근무했으며 2012. 4. 1. 당직근무 중 지방청으로부터 ‘○○초등학교 지나서 ○○놀이터 가기 전 성폭행이 있으니 즉시 출동하라’는 지령을 받아 팀원인 이□□ 형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고 이후, 김△△, 현○○, 허○○ 형사가 합류하였다. 현장에 도착하여 학생 등을 조사한 결과 관계가 없어 귀가시키고 형사들에게 계속 탐문하도록 하였다. 이후 23:40경 김△△ 형사에게 통신수사(통신 회사에 휴대폰 가입자 주소지를 요청)를 하라고 한 뒤 형사과장 및 형사계장에게 보고하였다. 01:36경 피해자의 언니 연락처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 귀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경기청에 피해자 녹취파일을 요청하였으나 바로 받지 못하고 4. 2. 01:11경 공조메신저를 통해 받아 보니 피해자가 ‘집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불 켜진 집을 탐문하도록 한 후 형사계장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사진을 형사들에게 나눠주고 ○○아파트 CCTV 관제센터에서 ○○에 있는 모든 CCTV를 수거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형사계장에게 비명소리 등 심각성을 말하고 형사 전원 동원을 요청하여 형사계장이 도착하였으며, 강력팀 2개 팀을 추가 동원하여 탐문수사를 계속하였다.

2) 조△△ (○○○○경찰서 형사계장, 경위)

2012. 2. 28. ○○○○경찰서 형사계장으로 임명되어 근무 중이다. 2012. 4. 1. 23:50경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강력7팀장으로부터 성폭행 사건이 신고 되었으나 피해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통신수사 차원에서 과장과 서장의 결재가 필요하여 형사과장에게 전화통화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사건을 인지하였다. 이후 01:50경 7팀장의 재차 전화로 02:19경 현장에 입장하였다. 현장으로 나가면서 형사과장에게 강력팀 2개 팀을 동원하여 수사하겠다고 문자로 보고하였다.

통상 중요사건의 경우, 현장팀장들이 먼저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한 후 형사과장에게 직접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왔던 관계로, 7팀장

이 과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았고, 현장수사에 전념하느라 재차 형사과장의 현장임장을 요청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였다. 당시 3개 팀 15명이 현장조사에 투입되어 공가(폐가)는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하고 불 켜진 집은 소리를 확인해 보고, 유흥가는 면담수사를 하라고 지시하고 02:30경부터 06:00경까지 실시하였다. 05:40경 피해자 신고내용을 청취해보니 성폭행사건이 명백하고 심각하여 06:00경 형사과장에게 전화로 4개 팀을 더 동원하여 수색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형사과장이 형사과 전직원을 소집하여 회의 후 탐문수사를 하던 중 제보에 의해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3) 조○○ (○○○○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2011. 7. 9.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이번 사건을 수사지휘 하였다. 2012. 4. 1. 23:41경 자택에서 취침하기 직전 당직 7팀장인 경위 조□□로부터 성폭행 의심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전화보고를 받았다. 당시 형사계장 또는 7팀장으로부터 단순히 성폭행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통신수사를 위한 결재 관계를 보고하는 것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이후 별다른 보고가 없어 취침하였다가 06:00경 형사계장의 전화를 받고 06:50경 출근하여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이에 즉시 형사 전원을 소집하여 피해자 직장관계, 최종 이동동선, 버스 이용관계, 주변 CCTV,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수색에 필요한 지도 등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또한 가가호호를 방문할 때 옥상, 창고, 독거남이 거주하는 집을 최우선으로 탐문하도록 하고, 탐문하지 못한 집은 지도에 표시하여 다시 탐문을 할 수 있도록 교양을 실시하고, 09:10경 현장에 입장(臨場)하여 수사지휘 하였다.

다. ○○○○경찰서 상황실

1) 박△△ (○○○○경찰서 정보과장, 상황실장, 경정)

2012. 4. 1.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상황실장 근무를 하던 중 22:50경 112신고센터로부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수원○○○ ○○파출소 순찰차 2대와 형사기동대를 현장에 출동시키라는 무전지령을 듣고 수원○○○

지령실 근무자인 경위 형○○에게 순찰차를 최대한 동원하라고 지시하고, 순찰차 45대를 추가로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경사 김◇◇은 형사당직팀에 동 사건을 통보하였다. 통상 코드-1사건은 1일 4~5건 정도 발생하며 당시 해당 성폭행 사건은 하달된 지령만으로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할 만한 정도의 심각성을 느끼기에는 부족하여 보고하지 않았고 형사당직팀에서 형사 과장과 계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중요사건이 발생하면 서장을 대신하여 상황실장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가 없어 형사과에서 수사하도록 조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현장에 입장하지는 않았다.

2) 형○○(○○○○경찰서 생활안전과 112지령실, 경위)

2008. 3.부터 ○○○○경찰서 생활안전과 112지령실에서 근무 중이며 2012. 4. 1. 22:50경 ○○ ○○놀이터 부근에서 성폭행이 발생했다는 지령을 112신고센터의 이○○ 경위로부터 받고 안○○ 경사가 가까운 인접 지구대, 파출소 순찰차들에 대해 ○○놀이터 부근으로 출동지령을 내렸다. 112센터 이○○ 경위로부터 안○○ 경사가 전화로 추가출동과 긴급배치하라는 지령을 받아 조치하고 상황실장으로부터 통신수사 의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강력 7팀원에게 통신수사 의뢰를 촉구하였으며 형사계에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어 추가지령은 하지 않았다.

라. ○○○○경찰서 ○○파출소

1) 이△△(○○○○경찰서 ○○파출소 1팀장, 경위)

2011. 5. 18.부터 순찰 1팀장으로 근무해왔고, 사건 당일에는 야간 근무로 총 6명이 근무하였다. 4. 1. 22:51경 지방청 지령실에서 순61호에게 성폭행사건 발생장소에 출동하라는 지령을 들었고 24:00부터 직접 순경 박○○과 함께 순62호를 타고 ○○놀이터, 주택가, ○○시장 부근을 차량 순찰하면서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것이 없었고 01:40경 귀소하여 파출소에서 상황근무 하였다. 당시 발생장소가 ○○ ○○놀이터 부근으로만 특정되어 사무실에서 무전으로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사무

실에서 상황근무 하였다. 당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었으나 피해 사실이 확인이 안 되어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고 익일 06:40경 소장 및 생활안전과장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2) 명○○(○○○○경찰서 ○○파출소장, 경감)

2012. 1. 27부터 ○○파출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2012. 4. 2. 06:40경 순찰1팀장 경위 이△△에게 보고를 받고 06:55경 즉시 출근하여 현장에 나가 주변을 탐문, 확인하고 07:25경 파출소로 돌아와 1팀(비번)은 사복으로, 3팀(주간근무)는 근무복으로 현장 주변에 대해 탐문수사를 하도록 하였다. 전날 출동했던 1팀 직원들이 피해자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여 면허 조회로 피해자 사진을 프린트 해 근무토록 하였다. 중요사건의 경우 팀장, 소장은 현장에 즉시 임장하여 사건을 지휘 하도록 되어 있고 본건은 4. 2. 06:40경 보고받은 즉시 사건지휘를 하였다.

3. 인정사실

관련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경찰청 감찰기록, 112신고 처리접수표, 피해자 112녹음파일, 지령파일 녹취록, 경기청 112센터 서버 로그기록, 치안상황처리매뉴얼, 지구대 근무일지, 상황실 근무일지, 위원회 현장조사보고서, 사건 당시 순찰차 근무상황, 112신고센터업무매뉴얼, 112신고센터근무자 교육현황, 112신고 통계, 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개편 계획, 소리공학연구소 112녹음파일 성문분석 보고서, 피해자 휴대폰 통화 조회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12녹음파일 분석 보고서, KT 사실조회 요청 회신, 관련규정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112신고센터 신고접수 및 지령에 대하여

1) 112신고센터의 2012. 4. 1. 사건 당시 센터장은 경정 박○○, 직속 상관은 생활안전과장 총경 김○○, 2부장 경무관 정○○이고, 밑으로는 경감급 4개 팀장의 지휘 하에 1개 팀 당 약 25명의 팀원이 배치되어 총 100명(현원 99명)이 근무하였다. 이 곳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사건이 신고되는 경우 접수자가 코드-1으로 분류할 경우, 종합지령대는 공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지령전파하고 필요시 긴급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2012. 4. 1. 22:50경 사건 당시 일근자인 센터장은 18:00경 퇴근하여 자택에 있었고, 4팀장인 경위 최○○의 현장지휘 하에 경사 방△△이 접수대에서 근무하고, 종합지령대에 주지령자로 경위 이○○, 부지령자로 경사 방○○이 근무하였다.

3) 피해자의 신고를 최초 접수한 112신고센터 경사 방△△은 2012. 4. 1. 22:00경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초등학교 주변 도로변에서 피의자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있고 ○○초등학교 지나서 ○○놀이터 가기 전 집”이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하였으나 112신고접수처리표에 발생장소를 ‘○○놀이터 가기 전’이라고 기재하면서 ‘집안’에 있다는 내용을 누락하였다.

경사 방△△은 접수사건을 코드-1사건으로 분류하고 긴급공청을 실시하여 LBS(위치추적시스템)로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고 ‘경기 수원시 ○○구 ○○××-○○○○새마을금고, 158M’라고 112신고접수처리표에 기입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신속한 조치를 호소하는 가운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살려 달라, 잘못했어요”라고 비명을 지름에도 “여보세요?”라는 말을 반복하고 주소를 말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와 대화가 끊겼다(7분 34초 통화).

4) 당시 112신고센터 4팀장 경위 최○○, 경사 방○○, 경위 이○○은 긴급공청 벨이 울려 22:50:58부터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공청하고 지령 담당인 경위 이○○은 22:51:05 순61, 62, 형사기동대차에 대하여 출동 지령을 하고 수원○○○에 순찰차 긴급배치 지시 및 추가 지령을 하였다.

5) 4팀장 경위 최○○과 경사 방○○은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경위 이○○에게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내용을 지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6) 4팀장 경위 최○○은 피해자의 신고전화가 끊긴 후 피해자의 녹취

파일을 재생시켰으나 재생이 되지 않아 정보통신 당직자를 통해 피해자의 녹취파일을 찾아 강력7팀장에게 메신저로 송부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 접수가 코드-1이었으나 112신고접수처리표를 ○○○○경찰청 상황실에 통보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112신고센터장과 생활안전과장에게는 다음 날 07:00경 특이사건으로 보고하였다.

7) 112신고센터 경사 방○○은 공청을 청취하면서 “잘못했어요”라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아는 사람 같은데, 부부싸움 같은데”라고 하고 피해자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공청수화기를 끊었다.

8) 수원○○○ 상황실은 위 최초 지령 후 23:23:05까지 순찰차, 경기청 112신고센터와 무전하면서 순찰차의 도착확인, ○○아파트 확인지시, 위치추적 결과인 ‘○○××-○○’ 주변을 순찰할 것, 피해자가 울면서 다급하게 신고하였는데 전화가 끊긴 상황에 대해 전파하였다.

나. 현장출동 후 초동조치에 대하여

1) 강력7팀장 경위 조□□는 2012. 4. 1. 당직근무 중 112신고센터로부터 지령을 받고 팀원들과 함께 ○○초등학교 인근으로 출동하여 탐문수사를 하였다. 또한 2012. 4. 1. 23:40경 팀원 김△△, 이□□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통신수사를 지시한 뒤 형사계장과 형사과장에게 성폭행의 의심되는 사건이 접수되어 긴급통신수사를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2) 계속하여 2012. 4. 2. 01:29경 ○○○○경찰서에 협조하여 피해자가족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01:35경 팀원 4명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미귀가를 확인하였고 팀원에게 2인1조로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방향으로 주택 등에 대해 탐문 수색토록 하였다. 2012. 4. 2. 02:18경 형사계장 조△△에게 상황을 보고한 뒤 형사 김△△에게 CCTV를 수거하여 수사토록 지시하였으며 03:08경 피해자의 언니를 만나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여 탐문 중인 형사들에게 전파하고, 피해자의 회사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퇴근 후 동선 등에 대해서 수사하였다.

3) 형사계장 조△△은 02:19경 형사과장 조○○에게 전화하였으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강력2팀과 6팀을 추가배치한 후 불 켜진 집, 영업 중인 유흥가, 공가, 폐가를 집중적으로 수색 및 귀대기 방식(전 가구에 대한 방문수사가 아닌 소리 청취 후 필요시 수사하는 방식)으로 탐문수사 하였다. 이어 05:40경 피해자의 신고녹취록을 청취하고 06:00경 형사과장 조○○에게 보고하고 강력팀 4개 팀을 추가 동원토록 요청하였다.

4) 형사과장 조○○은 06:50경 ○○○○경찰서에 출근하여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형사 전원을 소집하여 2인1조로 지도와 무전기를 지참하고 가가호호 탐문수사 하도록 지시하고 함께 현장에 임장하였고 11:50경 제보를 통한 주변 수색으로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검거하였다.

5) 2012. 4. 1. 사건 당일 순찰차는 총 5대가 순차적으로 현장으로 출동하였는데 순61호는 112신고센터에서 지령을 받고 22:53경 도착하여 ○○초등학교에서 ○○새마을금고를 차량 순찰하였고 순경 김□□은 ○○새마을금고에서 ○○사거리까지 도로 옆 골목길을 도보순찰 하였고 그 외 순찰차들은 00:00~02:00까지 ○○놀이터 주변을 순찰하였다.

4. 판단 및 조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고발동 및 제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112신고는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선과 같은 것으로 경찰은 국민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적절한 경찰권을 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112신고센터 신고접수 및 지령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납치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초등학교를 지나 ○○놀이터 방향이라고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심각한 범죄피해를 당하는 중이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경찰관들의 대응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112신고센터의 접수자 경사 방△△은 피해자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7분 34초 간 짧지 않은 통화를 계속하면서 장소도 ‘(○○초등학교) 조금 지나서, 집안’ 등 구체적으로 제보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보고 및 지령 시 누락시키고 “성폭행을 당했다구요?”라는 반문과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 등 긴박한 상황에 적절치 않은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경과시킨 점,

둘째, 112신고센터 4팀장 최○○은 당시 상황 지휘자로서, 신고접수 및 지령 업무담당자들이 외부공청으로 출동한 경찰들에 대하여 사건의 긴급성을 전파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피해장소가 ‘집안’이라는 중요한 신고정보가 누락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신고내용이 정확하게 지령이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녹취파일을 재취취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재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지령을 지시하지 않았고 ○○○경찰청 상황실에 긴급사건으로 보고를 하지 않은 점,

셋째, 112신고센터 경사 방○○은 피해자가 성폭행의 위급한 상황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범인의 폭행에 대하여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황에 대해 “부부싸움 같은데”라고 말하여 112신고센터 관련 직무수행자로서 피해상황을 심각하게 오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었더라도 마치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닌 것처럼 안이하게 판단하였고, 또한 부지령자로서 접수 및 지령내용에 대해 확인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나,

위 관련자들이 위와 같이 직무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초등학교와 ○○놀이터 근처의 주변 골목길을 장시간 수색하게 하는 혼선을 가져오게 하였고, 이후 신고내용의 재확인 또한

늦어지고, 지령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 없이 방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국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현장출동 후 초동조치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현장 출동 및 초동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록 112지령이 장소 특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수색에 한계가 있었다고,

첫째, 최초지령을 받고 순찰차 5대와 형사기동대 1팀 5명이 출동하였으나 피해 장소가 ‘집안’이라는 정보가 없어 골목길, ○○초등학교, ○○ 놀이터 근처 등 건물외부 상황에 대해서만 차량과 도보로 수색했던 점,

둘째,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녹취한 파일입수가 늦어져 출동 형사들의 판단과 대처가 늦어진 점,

셋째, 112신고센터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긴급상황임을 전파하였음에도 순찰팀장 등이 현장에 입장하지 않으면서 파출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소(所)내에서 상황근무를 하면서 순찰차량에게 적극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점,

넷째, 형사계장과 형사과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현장에 늦게 입장하여 형사 전원출동, 기동대 출동 등 추가경력 배치가 늦어졌거나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한 점,

다섯째, 적절한 경찰관들이 배치되지 못해 긴급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 사건발생 주변 CCTV 자료 확보 및 분석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신변보호요청에 대해 경찰력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이 사건의 발생원인을 검토해 보면,

첫째, 당시 112신고센터 접수자 방△△은 피해자의 긴급한 성폭행 범죄신고를 받고도 피해장소와 피해상태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대처하였고, 4팀장 최○○은 112센터의 현장지휘자로서 긴급공청을 하고도 신고내용과 지령내용을 확인하거나 점검하지 않는 등 현장지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제대로 된 전문교육을 받지 않고 112신고센터에 배치되어 초동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

둘째, 사후적이라도 신고 및 지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관련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112신고센터 근무자들이 즉시 피해자 녹취파일을 찾지 못하고 2시간 이상 지연되어 초동조치가 늦어진 점,

셋째, 성폭행 사건의 경우 절도, 강도 등 강력사건과 다른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 같은데”라는 말을 하면서 성폭행 사건은 물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되어 안이하게 판단한 점,

넷째, 당시 112신고센터와 종합상황실이 분리 운영되어, 중요범죄 사건 발생 시 초동조치에 관한 지령내용에 대하여 이행결과 보고 및 지휘 감독 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112신고센터에 배치되는 접수요원과 지령요원들이 배치 전, 성폭력, 납치, 살인 등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위치특정 방법,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질문하고 유형에 따라 그 대응하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전문교육을 의무화하고, 배치 후에도 업무공백 없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확충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직원을 일정비율 배치하여 정확한 접수와 효과적인 지령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중요범죄 사건에 대해 접수내용이 제대로 지령되었는지 접수자와 지령자가 교차 확인하고, 추가지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 지휘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며, 접수녹취파일 뿐만 아니라 지령파일 또한 즉시 확인하고, 현장출동 경찰들이 필요시 파출소와 경찰서상황실에서 즉시

신고자 녹취파일을 들을 수 있도록 112접수 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112 접수 전산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112신고 접수 및 지령에 지장이 없도록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셋째, 성폭행과 가정폭력 사건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 하도록 하기 위해 성인지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넷째, 경찰청에서 이번 사건 이후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을 통합, 종합상황실로 개편하여 종합적인 지휘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효과적으로 접수와 지령이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나누어 지령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사건 발생 시 외부공청을 실시하고, 코드-0단계를 신설하여 긴급한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112신고센터 요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개선된 제도가 정착 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킨 상시적인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자들의 직무소홀 부분은 경찰청에서 관련자 14명에 대해 징계 및 경고를 요구하여 행정안전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도의 책임은 묻지 않도록 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별도의 법률구조요청은 하지 않기로 한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한다.

2012. 9. 1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양현아 위원 한위수

기타

24

2012. 11. 23.자 12-진정-0837000 결정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의료조치 소홀]

【결정사항】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격오지(隔奧地) 근무 전투경찰순경의 의료접근권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환자대원의 진료를 위하여 협진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해안경비단과 당시 격오지 부대 전투경찰순경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대학병원은 환자대원에 대한 진료와 관리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진료비 지급 외에 진료상황 및 일정, 대원 신병관리상 정보교환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는바,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피해자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미흡함이 있었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진정인】 임○○

【피해자】 故박○○

【피진정인】 1. 김○○ 2. 최○○ 3. 안○○

【주 문】

경찰청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격오지에 근무하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의료접근권의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협진 의료기관과 환자대원의 진료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08. 9. 16. 입대하여 전투경찰순경으로 군복무 중, 2010. 6. 24. 추정적으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료를 받았으나 소속 부대의 의료조치 소환로 추가진단 등을 받지 못한 채, 2010. 7. 29. 만기 전역하였다가 같은 해 9. 13.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는 바, 피해자와 같은 불행한 의무복무군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의료접근권 보장 및 의료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김○○경위, ○○해안경비단 제000전투경찰대 부대장)

피해자는 2008. 12. 5. 전입 후 면담을 통해 허리디스크가 있음을 알고 병가 2개월을 보냈으며, 관할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와 투약을 받도록 하고, 일과시간 이후 관광산책로를 따라 운동을 하도록 해준 바 있다. 또한, 피해자의 허리디스크로 인해 의사가 전역을 신청하였으나 신체검사 재검 결과 현역등급판정을 받아 2009. 1. 다시 기지근무를 하게 된 것이다.

이후 2010. 6월경 재차 통증을 호소하여 즉각적으로 ○○보건지소의 진료 후, 그 다음 날 ○○대학병원에서 X-ray 및 CT촬영을 받았으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약을 처방받았고, 2010. 7. 29. 만기전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사상심사를 ○○지방경찰청에 요청하여 2010. 공상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2011. 1. 14. 국가유공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나, 나름 피해자의 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2) 피진정인 2(최○○경사, 위 같은 소속 ○○기지 기지장), 피진정인3(안○○경사, 같은 기지 소속 부기지장)

피해자가 근무한 ○○○레이더기지(○○기지)에는 전·의경 20여 명이 경찰근무자 2명(기지장, 부기지장)과 함께 근무하였고, 경찰관은 24시간 맞교대를 하였던 관계로, 대원이 외출하여 병원진료를 하는 경우, 근무자가 1명이어서 인솔할 수 없었는데, 이는 ○○지역 소재 7개의 레이더기지가 모두 같은 형편이었다.

당시 000레이더기지는 ○○(섬)에 위치해 있어 배를 타고 육지병원으로 가야 했으며, 피해자가 병원진료를 갖다 온 후 기지장인 피진정인 2에게 CT촬영 등을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말을 하여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별도 진료소견서나 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아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한지 알지 못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0. 7. 말 전역 후에 8. 중순경 부대에 전화하여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왔고, 9. 중순에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여 들었으며, 이 일로 상급부대에서 진상조사를 나와 구타 등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했으나, 당시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다. 참고인(현○○, 당시 ○○대학병원 담당의사)의 주장

2010. 6. 25. 피해자가 흉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내과 진료를 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해 당일 심전도 및 방사선 검사를 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어, 정밀진단을 위해 CT촬영을 하였다. 당일 CT촬영 판독 등 검사 결과가 오후에 나오므로, 결과를 설명하려고 2010. 7. 2. 제2차 진료예약을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병원을 내원하지 않아 CT촬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지 못하였다.

사후에 안 것이지만 CT검사 담당 정○○의 판독결과에 의하면, 간과 비장의 증대가 확인되어 혈액학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는데, 당시 담당의사로서 진료예약된 환자가 오지 않으면 위 자료를 일부러 넘겨받아 확인하여 이를 문서 또는 유선으로 환자에게 통보해 줄 업무시스템이 갖추어 있지 않는 등 통보의무가 없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적극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전화조사보고서, 참고인 현○○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해안경비단 제000전투경찰대가 제출한 피해자의 신상 및 면담기록카드, 사고경위조사서, ○○보건지소 소견서, ○○○대학교 ○○○○병원 소견서, ○○대학교병원 진단서, ○내과 진단서, ○○대학교병원 진단서, 피해자의 진술서(2010. 8. 20.), 목격대원 진술서 3부, ○○○레이더기지 근무일지, 피해자에 대한 전투경찰순경 공사상심사상신자료, ○○대학병원 제출 피해자관련 의무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08. 9. 16.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5주간 군사기본교육을 마치고, 전투경찰순경으로 분류되어, 2008. 11. 25. 중앙경찰학교 전경기본교육을 수료한 후, 2008. 12. 5. ○○해안경비단 제000전투경찰대 ○○○레이더기지에 전입하였다.

2) 피해자는 위 ○○○레이더기지 근무 중인, 2010. 6월 중순경부터 좌측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호흡곤란과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여 2010. 6. 24.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권유 받고, 소속 기지장인 피진정인 1의 지시로 2010. 6. 25. 병원 진료를 위한 외출명령을 받아 혼자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3) ○○대학병원 내과 담당의사 현○○은 위 피해자의 증상에 대해, 심전도 및 X-ray 방사선 검사를 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어, 정밀진단을 위해 CT촬영을 하도록 하고, 위 검사의 판독 및 결과를 설명하려고 2010. 7. 2. 제2차 진료예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을 내원하지 않아 CT촬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지 못하였으며, 사후에 CT(영상검사) 담당 정○○은 판독결과, 피해자의 간과 비장의 증대가 확인되어 혈액학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4)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0. 6. 25. 자비로 CT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명확히 통보받지 못한 채 부대로 복귀했으나, 당시까지의 담당의사 현○○의 1차 소견결과에 근거하여, 피진정인 1에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못하여 조제약 처방을 받고 복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이후 왼쪽 아랫배가 아팠으나 근무를 못하고 또 다시 진료를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어 약을 먹으면서 지내다가 2010. 6. 30. 오심 및 오한 등이 동반된 수양성 설사 증세로 ○○보건지소에 진료를 받은 결과, 이학적 검사상 심와부 및 우상복부에 압통 소견을 보이고 이어 감염에 의한 장염, 당남염 등을 의심하여 투약과 함께 추가적인 검사와 진료를 위해 상급의료 기관에서의 진료를 권유받았으나 소속부대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다가 2010. 7. 15. 정기휴가를 마치고 2010. 7. 29. 만기 전역하였다.

5) 피해자는 전역 직후 피부가 희어지고 혈색이 없으며 두통 및 피로감이 가중되어, 2010. 8. 6. 거주지 인근의 ○내과의원에서 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백혈구, 혈소판, 혈색소 등이 감소되어 있고, 비장의 크기가 15cm정도로 비대해 진 상태라는 소견을 받고, 2010. 8. 9. 정밀검사를 위하여 ○○대병원에 입원하여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 등을 받은 결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2010. 8. 11. 골수이식 전문병원인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재정밀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발병시점이 진단시점으로부터 3~4개월 전쯤이라는 진단 및 소견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10. 9. 13. 폐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6) ○○해안경비단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질병사망에 대하여, 소속 기지장 및 동료대원의 진술, ○○○대학교 ○○병원의 의사소견서 등을 근거하여 피해자의 발병시기가 6월 중순경 이상증세가 나타난 시기와 같은 것으로 추정되고, 발병원인이 군 복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였을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136조 공사상분류표 제2-13호(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로 보인다는 의견으로 지방청에 공사상심사를 요청하여 2010. 11. 22. 피해자가 공상판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유가족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던 것은 인정받지 못하였다.

7) 피진정인들은 전투경찰순경의 병원진료 등 보호인술과 관련하여, 당시 000레이더기지는 전·의경대원 20여 명과 경찰근무자 2명(기지장, 부기지장)만이 근무하고, 경찰관은 24시간 맞교대를 하였던 관계로, 대원이 외출하여 병원진료를 하는 경우, 근무자가 1명이어서 인술할 수 없었고, 이는 ○○지역에 7개의 레이더기지와 모두 같은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참고인 현○○은 담당의사로서 당시 ○○대학병원에서는 CT 등의 검사를 받은 후, 진료예약 된 환자가 오지 않으면 관련 결과를 확인하여 이를 문서 또는 유선으로 환자에게 통보해 줄 업무시스템이 갖추어 있지 않았고, 또한 현행 ○○대학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및 조치

진정인은 피해자가 전경 복무 중, 만기전역 3개월 전인 2010. 6. 24. 전·후 원인불상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의증 증상이 발병되었으나, 관할 지역 ○○보건지소 및 ○○대학병원에서 기본적인 진단만 받은 채, 적절한 진단 및 진료를 받지 못하고 전역하였다가 한 달 후, 위 증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소속 부대인 ○○지방경찰청 제000 전투경찰대 소속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 등 보호의무를 소홀한 것에 기인하다는 주장이고, 피진정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진료결과를 명확히 전달받지 못했고,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불가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비록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관련 증세를 호소한 직후, ○○보건지소 및 ○○대학병원 등에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고, 진료 후 피해자로부터 특이소견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피해자 또한 진단결과를 확인하는데 소홀하였던 관계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가 2010. 6. 25. ○○대학교 병원 진료 5일 후인, 6. 30. 또다시 오심(惡心, 메스꺼움) 및 오한 등이 동반된 수양성 설사 증세를 보여, ○○보건지소에 진료를 받은 결과, 추가적인 검사와 진료를 위해 상급의료 기관에서의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아무런 추가적인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둘째, 당시 ○○해안경비단 ○○○레이더기지의 경찰관 인력운영상, 환자대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인솔 등 관리에 어려움은 있었다고 보이나, 환자의 상태가 단순한 감기 등의 증상이 아닌 종합병원에서의 진료를 요하고, 또한 CT검사 등 정밀진단이 필요했고, 일반근무지 전투경찰순경 및 군 장병에 비하여 의료접근이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환자대원에 대한 인솔 등에 따른 밀착관리를 통해 적절한 진단 및 추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부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셋째, 당시 ○○해안경비단과 ○○대학병원은 격오지 부대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환자대원

에 대한 진료를 의뢰하고, 그 의뢰에 따라 진료를 하는 경우, 보다 유기적으로 환자대원에 대한 관리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에도, 관련 진료비의 지급 등에 국한될 뿐 관련 진료상황 및 일정, 대원 신병관리 상의 정보교환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조치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연유하는 피해자의 의료접근권 보장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조치의견으로는, 당시 피해자의 증세가 의학적인 영역에 속하고, 피해자 또한 그 진료결과를 적극적으로 피진정인들에게 소명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당시 000레이더 기지를 비롯한 ○○해안경비단의 경찰관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나, 경찰청장에게, 격오지 전경부대 환자대원에 대한 적절한 의료접근권의 보장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통상의 일반 전경부대 및 군 장병에 준하여 간부가 환자대원을 인솔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관련 진료기관과의 환자대원에 대한 진료상황 및 일정, 대원 신병관리상의 정보교환 등을 위한 유기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2. 11. 2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양현아 위원 한위수



제 2 장

군(軍) 관련 인권침해

- 부당한 기본권 제한 및 보호조치 미흡 [3건]
- 병영 내 가혹행위 및 부조리 [5건]
- 기타(외부인에 대한 폭언 및 적법절차 위반) [1건]

부당한 기본권 제한 및 보호조치 미흡 등

1

2012. 3. 6.자 12-진정-0032900 결정 [군대내 과도한 금연 강요]

【결정사항】

- 【1】 국방부장관에게, ‘금연부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지휘관들이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 【2】 ○○○사령관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
- 【3】 ○○부대장에게, 장병들에 대한 강제 금연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금연부대 운영은 인센티브 부여 등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피진정인이 소속부대 장병들에게 일률적으로 금연서약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부대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등 조치를 취하여 장기간 흡연을 금지한 행위는, 비록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운영과정 상 정도를 지나쳐 결국 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며 소속부대 장병들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 「군인복무규율」 제19조·제22조 제1항

【진 정 인】 ○ ○ ○

【피진정인】 ○ ○ ○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금연부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휘관들이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 ○○○사령관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3. ○○부대장에게, 장병들에 대한 강제 금연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처분 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부대장인 피진정인은 부대원들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금연부대를 운영함에 있어 장병들에게 권장의 수준을 넘어 강제적으로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에는 휴가 및 외출을 금지하는 등의 징계처분으로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국방부의 ‘2011년도 군 건강증진 추진 계획’과 ‘2011 금연 희망부대 파악’공문에 따라 이에 신청하여 금연집중관리부대로 지정되었다. 이후 금연교육, 진료, 홍보 및 토론회 등 자율적 금연운동을 추진하였고, 2011. 10. 13. 육군 ‘전체금연부대’로 재지정되어 추가적인 성과평가 및 기량대회 등을 거치는 등 금연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과 소통을 하였다.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흡연을 2012. 1. 1. 종료하고 전 부대원에 대한 금연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전 부대 금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과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고, 금연지시를 위반한 장병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군인복무규율」 제23조(복종 및 실행) 규정에 따라 복종위반(지시불이행)으로 징계한 것이다.

개인의 기호품을 강제로 억압할 필요는 없으나, 흡연이 개인에게 해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금연을 정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구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평화와 인권문제까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연은 필수라고 판단하고, 지휘관으로서 관련규정 내에서 정당한 명령으로 금연 운동을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부대 중 희망부대를 '전체금연부대'로 선정하여 지휘관을 중심으로 흡연과 전쟁을 별이고 있으며, 육군훈련소 훈련병은 오래전부터 사실상 금연을 해오고 있으므로, 퇴소 후 야전부대에서도 금연을 시행하면 장병 흡연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지휘관 의견서, 금연부대 지정 관련 공문, 금연부대 관련 추진계획 보고서, 금연운동 활성화 추진방안, 금연교육 관련 계획서, 금연 및 우수부대 선발결과서, 금연서약서, 금연관련 징계의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협회(민간단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1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 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아 금연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방부에 희망부대를 파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국방부 ○○○과는 2011. 4. '2011년 금연희망(전체금연, 집중관리)부대 파악(지시)'라는 문서를 육군본부 등에 하달하였고, 육군본부 ○○○과는 같은 문서를 예하 각 군사령부 및 각 사단 등에 하달하였다. 위 문서

에 의하면 육군의 경우 '집중관리부대(53개)'는 현재 흡연율의 50% 감소, '전체금연부대(22개)'는 전체흡연율 5%이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진정한이 부대장으로 있는 ○○부대는 연대급 규모의 부대로 2011. 4. 금연부대 지정을 요청하여 선정된 후 2011. 7. ○○처에서는 흡연자에 대하여 흡연 적발 시 벌금(간부 5,000원, 병 500원) 집행 및 금연침시술 등의 계획서를 지휘관인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고, ○○처는 자진신고 및 손 검사(냄새) 등의 계획서를, ○○대는 금연포기나 불희망 시 가족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계획서를, ○○대는 병사들의 담배와 라이터 회수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예하부서(대)가 각 '전원금연 개시계획서'를 보고 및 제출하였다.

라. ○○부대 인사처는 2011. 7. '단 금연운동 지침'을 시행하면서 2011. 8. 1.부로 부대 내 전지역(올타리 내)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각 흡연장소 폐쇄, 재떨이 철거 및 PX내 담배판매 금지를 실시하였다.

마. ○○부대 지원과는 2011. 12. 30. '흡연자 처벌기준 확립'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기안하여, 병사에 대하여 흡연 1회 적발 시 '포상휴가증 회수, 3개월간 포상휴가권 박탈, 1개월간 출타금지', 흡연 2회 이상 적발 시 '3개월간 출타금지, 정기휴가를 제외한 모든 출타금지' 등의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바. ○○부대 △△대대 장병 약 450명은 2011. 8. 1. 금연서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후 소속 병사 7명에게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 근신 7일, 휴가제한 3일 등의 징계처분한 사실이 있고, △△대 등 지휘부의 장병 약 58명은 2012. 1. 1. 금연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사. 2011. 12. 22. 작성된 ○○부대의 '금연 및 종교활동 우수부대 선발 결과' 문서에 따르면 병들의 경우 9개 부대 중 6개 부대가 금연성공 100%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관련 기본권에 대하여

개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 또는 사회적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일반적 자기행동결정권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자기행동결정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이며, 또한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가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 영역에 해당하여,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형성할 권리라고 본다면,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에 관련된 기본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장병들이 흡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 결정, 즉 흡연권은 헌법상 자기행동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다.

나. 금연이 장병들의 자발적 의사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소속부대 장병들의 금연이 금연 교육과 홍보, 인식전환 노력과 소통을 통하여 진정인 등 장병들이 스스로 적극 동참한 결과라고 해명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을 비롯한 간부 및 병사 약 490여 명이 거의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금연서약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부대 울타리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점, 금연율이 100%라고 보고한 예하부대가 총 9개 중 6개에 이르는 점, 금연서약을 어길 경우 벌금을 걷거나 냄새 검사를 하고, 가족에게 통지하는 등의 일정한 제재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점, 실제 흡연을 이유로 9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자에게 근신, 휴가제한 등의 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장병들의 금연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국방부와 ○○○협회의 금연 관련 계획에 의하면, 군 장병에 대한 금연 사업은 금연클리닉운영, 보조제, 교육지원, 성공자 포상 등 장병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 형식으로 계획된 것이나, 피진정인은 이를 포상이 아닌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 강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금연 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 등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금연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호에 위 법에서 위임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대 내 시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한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연시설을 지정할 정당한 권한을 법률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 흡연으로 인하여 타인의 혐연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흡연 장소를 분리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혐연권을 이유로 흡연권 일체를 부인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흡연자는 금연시설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흡연을 하거나, 금연구역에 머무는 시간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과도한 흡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지만, 피진정인이 영내 생활관, 무기고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아니라, 24시간동안 부대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행위는 법적인 근거 없이 흡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라. 금연 명령의 적성성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흡연으로 적발된 장병을 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인복무규율」 제19조의 ‘명령’은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를 말하고, 제22조 제1항에선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자기 권한 밖의 사항 등은 명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명령의 범위를 직무상의, 법규 및 상관의 정당한 명령 이내에서, 자기 권한 내의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비취볼 때 군 본연의 임무 특성에 따른 전시, 훈련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평시 장병들의 흡연과 그 직무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행동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일반인은 물론 군 장병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하고 있으므로, 장병들의 적정한 흡연행위에 대한 제한은 군 지휘관의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금연부대 운영은 본래의 취지대로 성공한 장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소속 부대 장병들에게 일률적으로 금연서약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부대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장기간 흡연을 금지한 행위는, 그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운영과정에서 정도를 지나쳐 결국 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소속부대 장병들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별 지】 관련규정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교사)
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8.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1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16.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 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회의장·강당 및 로비
 2.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4.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공항·여객선 터미널·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 제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군인복무규율」

제19조(명령) “명령”이라 함은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를 말하며, 발령자의 의도와 수명자의 임무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제22조(발령자의 책임) ① 발령자는 건전한 판단과 결심하에 적시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하며,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기 권한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된다.

2 2012. 4. 13.자 11-진정-0270700 결정 [의료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

【결정요지】

- 【1】** 피해자의 지휘간부들은 훈련병 관리 및 관련 지휘보고체계의 부실, 잘못된 판단과 부주의로 응급환자 후송 및 진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의료접근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 【2】** 또한 군의관 등의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적기에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
- 【3】** 피해자는 훈련 중 병사에 의한 순직으로 처리되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으나, 피해자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는 조치된 바 없으므로, 피진정인들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진 정 인】 임○○

【피 해 자】 1. 故노○○ 2. 노○○

【피진정인】 1. 박○○ 2. 남○○ 3. 양○○ 4. 박○○
5. 정○○ 6. 김○○ 7. 권○○

【주 문】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원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 1. 노○○은 ○○훈련소 훈련병으로 기초군사훈련(2011. 3. 24. ~4. 29.)중이던 2011. 4. 22. 19:00경부터 4. 23. 02:10경까지 20km 야간행군 직후 37.9도의 고열로 뇌수막염 증세를 보였으나, 의무실에는 당직 군의관이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의무병이 군의관의 진료 및 처방 없이 임의로 해열진통제만을 처방한 후 소속대로 복귀시키고, 이후 피해자 1.이 2011. 4. 23. 11:00경 기상 후 재차 고열을 호소하였음에도 사전예약 진료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군의관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뒤늦게 상급 의료기관인 지구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병원에 후송치료를 받다가 2011. 4. 24. 06:57경 패혈증(의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응급환자인 피해자 1.에 대하여 ○○훈련소의 의료시스템 및 환자관리의 부실을 조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박○○(소령, 00연대 0교육대 교육대장)

본인은 ○○훈련소 0교육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1. 4. 23. 야간 행군을 갔다 온 후, 연대 당직사령으로부터 고열로 인해 ○○ ○○병원으로 후송되는 훈련병이 있다는 보고를 받아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이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훈련 중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중대장이나 소대장으로부터 받은바 없다. 피해자가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 후송되는 과정 및 사망사실을 전화로 보고 받았고 이를 상급자인 연대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2) 남○○(대위, 00연대 0교육대 0중대장)

피해자 1.은 2011. 3. 21. ○○훈련소 0교육대에 입소하여 신체검사를 한 다음 3. 24. 0중대로 배속되었고, 평소 0교육대 입소 인원은 700여 명인데 이와 달리 피해자의 기수는 940여명으로 많아, 중대인원이 236명이나 되어 생활관도 17명(통상 14명)이 같이 생활하게 되었는데, 중대 배속 당시 환자 또는 관심 훈련병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사후에 당직일지를 보고 피해자 1이 감기증세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 1.이 소속한 0중대는 훈련일정에 따라 2011. 4. 22. 일과시간에 종합각개전투를 하고, 19:00경부터 4. 23. 02:00경까지 20km 야간행군을 실시하였는데, 행군 전 환자 파악을 할 때, 피해자가 환자라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고, 완주 후에도 환자파악을 하였으나 환자로 보고된 훈련병은 없었으며 특별하게 소대장이나 분대장 등으로부터 피해자 1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보고 받은 적이 없었다.

당일 훈련병들이 샤워 후 취침하는 것을 확인한 후 04:20경 취침하였고 4. 24. 10:50경 기상하여 당직계통에서 환자를 파악하여 중대원 9명이 연대 의무실을 이용한 것을, 생활관을 돌아보며 정비 상태 등을 확인하고 13:00경 퇴근을 하였는데, 15:04경 중대 당직병으로부터 처음으로 고열로 지구병원에 입실한 훈련병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연대 당직사령으로부터 고열로 지구병원에 입실한 훈련병이 ○○병원으로 후송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16:00경 ○○병원에 찾아

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을 뒤따라가면서 17:02경 피해자의 부모인 진정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0교육대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대학교 병원관계자가 응급진료를 하였으나 피해자 1이 2011. 4. 24. 06:57경 사망하였다.

피해자 1은 중대 배속 시 매우 건강하고 밝은 훈련병이었으며 ○○대학교병원에서 소대장의 보고에 의해 피해자가 군의관이 없어 해열제 2알만을 먹고 복귀한 것을 알게 되었다.

3) 양○○(중사, 00연대 0교육대 0중대 0소대장)

피해자 1은 체력이 좋았고 항상 웃는 모습에 부지런하고 긍정적이었으며 아픈 곳이 없었다. 2011. 4. 11. 감기증세로 연대 의무실 진료 후 투약 3일 조치를 받은 것을 4. 12. 중대 당직분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았으나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에 중대장에게는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

2011. 4. 22. 실시된 20km 야간행군 중 피해자 1.이 아프다는 호소를 한 적 없으며, 별다른 징후를 보고받지 못하였고, 2011. 4. 23. 행군을 마친 후 02:30경 오○○ 분대장이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노○○ 훈련병이 몸살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여 감기몸살이면 온수로 샤워하면 나아질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샤워할 수 있겠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가능하다고 하여 샤워를 시키고 곧바로 의무대에 보냈으나, 의무대에 다녀온 오○○ 분대장이 군의관이 없어서 내일 아침에 다시 가기로 했고, 해열제 2알을 피해자에게 먹였다고 보고를 하여, 당시 피해자가 몸살기운이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따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지는 않았다.

평상시 군의관이 없으면 당직군의관에게 보고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어 당시에 의무대에서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은 줄 알고 피진정인 2. 중대장 대위 남○○에게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았고, 4. 23. 토요일은 행군 다음 날로 원래는 출근을 안 하는 날인데 중대장이 출근하여 훈련병들을 관리하라고 지시하여 11:00경 출근하여 업무를 보다가 12:30경 퇴근하였다.

2011. 4. 23. 14:40경 당직 분대장이 피해자 1.이 아파서 지구병원에 보냈는데 쇼크증세가 있다는 전화를 받고 지구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5:00경 병원으로 가는 중, ○○병원으로 후송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따라다니며 경과를 지켜보는 등 간호하였다.

당시 육군본부의 ‘신병 교육강화 방안’에 따라 5주 교육 중 전문 과목은 자대에서 교육시키는 쪽으로 변경하고 2~3주 교육과정을 체력 검증으로 구성하여 체력단련시간과 야간훈련시간이 늘어났고, 훈련프로그램 일정이 빡빡하여 제대로 교육을 준비시킬 시간이 없으며, 휴식시간이 부족해 훈련병들이 불침번, 경계근무 등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상황인바, 훈련병 입소인원 증가에 따른 지휘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박○○(중위, 00연대 연대군의관)

본인은 2011. 4. 22. 20km 야간행군에 의무지원을 위해 20:00경 행군 대열에 참여하여, 4. 23. 02:00까지 행군 중에 탈진하거나 발목 등의 이상이 있는 훈련병들에 대해 조치를 하는 등 진료를 하였고, 행군을 마친 후 연대 의무대로 돌아와 훈련병 3~4명 정도 진료를 하고, 03:00경 퇴근 하였다. 당시 뒤늦게 의무실에 도착한 피해자 1.에 대해서는 의무병이 증세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임의로 약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평상시 토요일은 08:30부터 12:30까지 근무하나 4. 23.은 행군 다음 날 비번이어서 오전에 근무하지 않았고, 통상 연대 군의관의 부재 시나 지원요청 시 훈련소 지구병원 군의관으로 순회진료를 편성하고, 일요일에는 연대군의관(총 7명) 중 1명과 지구병원 2명 중 1명이 당직근무를 한다.

연대군의관 1명이 1일 평균 120~150명 정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훈련병들은 급한 상태가 아니면 교육을 마치고 저녁식사 이후인 18:00경 연대 의무대를 찾아와 진료를 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 환자진료가 집중되어 환자 1인당 1분 내외의 진료시간을 투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훈련병도 불침번 근무를 하고 토요일 오전에도 체력검증 등 훈련을 하여 피곤이 가중되는 등 훈련병들의 훈련강도는 높아지고, 훈련소 내로 지구병원이 들어옴에 따라 의료인력이 축소되어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5) 정○○(상병, 00연대 본부 중대 소속 의무병)

피해자 1.은 2011. 4. 11. 목이 붓는 등의 감기증상으로 연대 의무실에 진료를 받으러 온 적이 있고, 2011. 4. 23. 03:30경 20km 행군 후 고열 증상으로 인솔병 일병 오○○의 인솔 하에 의무실에 두 번째 방문하였다.

당시 피해자 1의 체온은 37.9도로 같은 증상으로 내원한 훈련병 임○○ 및 강○○의 체온에 비해 높은 온도는 아니어서 응급을 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타이레놀 2알만 처방하여 복용하도록 하고, 아침에 실시하는 순회진료 때 다시 오라고 하고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당시 군의관은 02:00경까지 훈련병들의 20km 행군에 동행하여 의무 지원을 하고 03:00경 퇴근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증상도 긴급한 증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군의관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00연대 순회진료는 당초 2011. 4. 23. 09:00부터였으나 피해자 1.이 포함된 0교육대가 20km 야간행군 후 11:00까지 취침을 함에 따라 같은 날 11:30으로 변경되었는데, 같은 날 09:00부터 군의관 박○○, 김○○, 권○○은 순회진료를 실시하였고 11:45경 순회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피해자를 포함한 0교육대 진료인원이 늦게 도착하자, 위 군의관들은 진료 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진료하지 않고 순회진료를 종료하였다.

당시 피해자 1.이 진료를 받지 못하자 인솔병 정○○ 일병이 피해자의 증상이 고열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체온을 측정된 결과 39.7도로, 연대 의무관 중사 안동현의 지시에 따라 앰블런스를 불러 지구병원 응급실로 긴급 호송하였다.

6) 김○○, 권○○(중위, ○○훈련소 지구병원 일반군의관)

당시 ○○훈련소 지구병원의 토요일 순회진료 계획에 의거, 2011.

4. 23. 순회진료 군의관으로 편성되어, 편성계획에 의거 00연대 발생 환자들에 대해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진료하려고, 의무병 일병 정○○와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피해자 1.이 소속한 0교육대가 야간 행군 후 11:00경까지 취침함에 따라 순회진료 시간을 11:30경으로 조정 변경하고, 훈련소 23, 25, 26, 29교육연대 순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한 후, 11:30경 00연대에 도착하여 순회 진료를 시작하였다.

당일 진료예약 인원은 0·0교육대 33명으로 0중대 9명, 0중대 11명, 0중대 9명, 0중대 4명이었으며, 피해자 1. 소속 0중대는 진료예약 인원이 없었다. 이에 진료가 준비된 훈련병 27명에 대해 1차 진료를 마치고 11:45경 돌아가려 할 때, 피해자를 포함한 0교육대 진료인원이 진료시간 경과 후 도착하여, 진료시간 미준수 및 진료시간 경과를 이유로 추가 진료가 필요한 인원은 병원 응급실로 오라고 하고 순회진료를 종료하였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양○○, 서○○(훈련병, 00연대 0교육대 0중대 0소대 동료)

피해자 1과 같은 동료로 훈련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매우 튼튼하고 밝고 쾌활하며 책임감이 강했으며, 2주차 훈련 중인 2011. 4. 8. 영점사격을 할 때 비가 오고 날씨가 좀 추웠는데, 입고 있던 판초 우의를 벗고 하다 보니 전투복이 젖어 감기가 들었는지 4. 10.경부터 목이 부어 췌소리를 내며 기침을 많이 하였고 3일분 약을 먹고 목소리는 좋아졌으나 잠을 잘 때면 기침을 심하게 하였다.

중대 훈련병들과 2011. 4. 22. 19:00경부터 4.23. 03:00경까지 20Km 행군을 하였는데, 행군당시 피해자가 부대 복귀 1~2Km 남았을 때, 뒤쳐져서 다른 훈련병 2명이 뒤에서 밀듯이 같이 데리고 왔고, 생활실로 복귀한 뒤에는 피해자가 군장도 풀지 못하고 침상에 걸터앉아 숨을 헐떡여 분대장에게 보고하여 03:30경 연대 의무대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2) 오○○(일병, 00연대 0교육대 0중대 0소대 0분대장)

피해자 1은 1분대 소속으로 1분대장인 병장 이○○이 관리해야 하나 말년휴가로 공석임에 따라 2분대장인 상병 이○○와 함께 관리하였는데, 평균 이상의 건강한 체력이었으며 단 한 번도 훈련에서 아프다고 열의를 하거나 차등훈련(질환이 있는 훈련병의 훈련을 좀 더 약하게 실시하는 제도)을 한 적도 없었다.

2011. 4. 23. 02:00 야간행군을 마치고 복귀 후 동료 훈련병으로부터 피해자의 몸 상태가 안 좋다는 보고를 받고 소대장 중사 양○○에게 보고하자, 중사 양○○이 피해자 1.에게 “서서 할 수 있겠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여 다른 훈련병보다 먼저 샤워를 시키고, 같은 날 03:35경 의무대에 인솔해 갔더니 군의관은 퇴근하고 의무병 정○○가 혼자 있었다. 의무병 정○○는 피해자 1의 체온이 37.9도라며 타이레놀 2알을 피해자에게 복용하도록 하였고, 이때까지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아 피해자를 나무반에 데리고 와서 모포를 덮어주며 취침하도록 하고, 행정반에 가서 소대장에게 “군의관이 없어서 해열제 2알을 먹였고, 37.9도가 나왔으며 오전에 의무실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현재 419기 훈련병들은 체온이 37.3°가 넘거나 의무대진료를 희망하면 무조건 의무대에 보내고 있고, 오전, 오후, 저녁 하루 3회 체온을 측정하고 연대군의관이 없으면, 훈련소 지구병원으로 보내고 있다.

3) 정○○(일병, 00연대 0교육대 0중대 중대행정병)

본인은 중대 행정담당으로 2011. 4. 23. 11:30경 피해자 1 등을 포함하여 중대 훈련병인 환자 9명을 연대 의무실로 인솔하였는데, 같은 날 11:50경 연대 의무실에서 문진서를 작성하던 중 순회 군의관 2명이 진료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철수를 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고 같은 날 12:00경 직접 피해자의 체온을 재어보니 39.2도로 확인되어 의무대 행정실 안○○ 중사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나머지 환자를 인솔하여 중대 복귀하였다.

4) 안○○(대위, ○○훈련소 지구병원 응급실 군의관)

피해자 1.이 2011. 4. 23. 12:23경 지구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간호장교 변○○ 대위가 응급실 접수를 받아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피해자의 체온은 40도이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응급실에서 같은 날 12:55경 미온수 마사지를 실시하고 13:11 흉부방사선을 촬영한 뒤 13:41경 다시 체온측정을 해 보니 체온이 40.5도로 고온이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로 결정하여 14:10 병동으로 입실 조치하고, 병실 간호장교에게 고 체온이므로 주의 관찰하도록 하였는데, 14:23 의무병 이 다급하게 불러 병실로 가 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경과관찰 중인 같은 날 15:05 피해자가 반응하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행동 통제가 되지 않아 당직군의관 정○○의 지시에 따라 응급실로 다시 이동조치 하였다가 같은 날 15:40경 ○○병원으로 긴급 호송하도록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내용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 유가족이 제출한 사건기록일지 및 피해자 1. 사망진단서,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의 진술서 및 이들에 대한 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 ○○훈련소가 제출한 동 훈련소 헌병대 작성의 각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서 및 진술조서, 훈련소 사망사고 관련 의료지원/ 관리체계 조사결과, 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부검기록, 사건 당시 00연대 0교육대 0중대 근무일지, 피해자에 대한 외래(응급)환자 진료기록 및 임상병리 결과자료, 뇌수막염 관련 예방약 투여 및 역학조사 보고서, 2011년 훈련병 관리 및 의료체계 개선 현황,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자 징계처리 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1.은 2011. 3. 21. ○○훈련소 입소하여 00연대 0교육대 0중대 0소대로 배속된 훈련병으로, 중대 전입 시 키 173cm, 몸무게 70kg의 체구에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하였으나, 기초군사훈련 2주차인 2011. 4. 8. 우천 시 영점사격을 할 때, 판초 우의를 벗고 훈련을 하여 전투복이 젖은 관계로 4. 4.부터 4. 9.까지 기침이 심한 감기증세를 보여 같은 달 11. 연대 의무실에 진료를 받았으나, 소속 간부인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일병력결산 시 관련 보고 및 환자관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1.이 2011. 4. 22. 19:00경부터 4. 23. 02:10경까지 실시된 20km 완전군장 야간행군 훈련 중인 4. 23. 00:48~01:00경 행군 중 뒤처져 동료 훈련병 2명이 뒤에서 밀어주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동료 훈련병들의 미비고로 소속 지휘간부들인 피진정인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 1.이 2011. 4. 23. 02:10경 행군복귀 후, 개인정비 중 고열(37.9도)의 증세로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란 상태로 군장도 스스로 벗지 못하고 침상에 기대어 호흡곤란 상태를 보였으나, 피진정인들은 행군복귀 후, 먼저 환자발생 등 의무실 진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훈련병 위○○이 이를 분대장에게, 분대장 일병 오○○은 0소대장 중사 양○○에게 이를 보고하자, 인솔분대장 일병 오○○으로 하여금 온수 샤워시키고 뒤늦게 연대 의무실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라. 피해자 1.이 2011. 4. 23. 03:30경 의무실에 도착했으나 연대 군의관 중위 박○○이 03:00경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의무병 상병 정○○가 소속 군의관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피해자의 체온을 측정한 결과 37.9도로 측정되자 임의로 해열제(타이레놀) 2알을 처방하여 이를 복용시킨 뒤 소속대로 복귀시켰고, 인솔분대장 일병 오○○이 복귀 후, 이를 0소대장 중사 양○○과 당직분대장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중사 양○○은 0중대장 대위 남○○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당직사관은 의무대 진료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당직계통(교육대→연대→소)으로 행군환자 보고 시 고열환자 0명, 물질환자 239명으로 사실과 달리 보고하였다.

마. 피해자 1.은 2011. 4. 23. 04:00경 복귀하여 취침하고 11:00경 기상하여 고열 증세를 보이자 피진정인 지휘간부들은 병분대장 일병 정○○의 인솔 하에 같은 날 11:45경 연대 의무대로 보냈으나, 이에 피진정인 군의관은 지정된 진료시간 내에 지연도착을 하였다는 이유로 진료를 하지 않았고, 환자입원실에서 12:00경 훈련병 이병 김○○이 얼음주머니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분간 마사지를 하고, 의무병 상병 정○○가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체온(39도~40도), 혈압(90/50), 맥박 120이 측정되자, 같은 날 12:17경 앰블런스를 이용하여 ○○훈련소 지구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바. ○○훈련소 지구병원 간호장교 변○○은 2011. 4. 23. 12:23경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자, 응급실 내의 바이탈 사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체온 40도, 혈압 90/50으로 측정되어 채혈 후 수액투여를 하였고, 같은 날 12:55경 재차 바이탈 사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검사한 결과 체온 39~40도, 혈압 100/50으로 측정되어 피해자에게 미온수 마사지를 실시하였다.

사. ○○훈련소 지구병원 군의관 대위 정○○은 2011. 4. 23. 13:11경 피해자에 대해 X-ray 흉부촬영을 하고, 같은 날 13:41경 체온 40.5도, 혈압 100/50인 상태를 확인하고 같은 날 14:00경 병동으로 이동시켜 관찰실 내에서 수액(생리식염수)을 투여하며 안정을 도모하던 중, 같은 날 14:23경 피해자가 병실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의무병 일병 배○○가 발견하고 간호장교와 함께 부축을 하여 침상에 옮겼다.

아. 피해자는 같은 날 14:30경 C/T(두부) 촬영을 실시한 후, 병실로 이동하여 병실 내 관찰실에 있던 중, 15:05경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수액 공급하는 선을 뽑는 등 정상적인 자기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 15:14경 응급실로 전실되었고, 15:25경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WBC, 정상 4,000~11,000개)가 최초 8,900개에서 3,600개로, 혈소판 수치(정상 150,000~400,000개)가 최초 182,000개에서 123,000개로 떨어지는 등 패혈증이 의심되어 15:28경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자. 피해자는 같은 날 15:42경 ○○도 ○○시 소재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사 박○○이 진단한 결과, 의식은 있는 상태에서 심한 경련과 고열(39.8도), 그리고 심장박동과 호흡이 빨라 X-ray촬영 및 진정제·해열제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6:10경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차. 피해자는 같은 날 16:51경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패혈증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뇌척수액을 검사한 결과 염증세포가 42개로 정상수치(5개 이하)보다 높아 위 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가 뇌수막염으로 판단하고, 스테로이드를 긴급 처방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않고 4. 24. 06:57경 범발성(汎發性) 응고장애와 다발성 장기부전 등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카. ○○훈련소 검찰관, 헌병대수사관, 유가족이 함께 2011. 4. 25. 수도병원 영안실에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군의관 대위 강○○의 집도로 부검을 실시한 결과, 혈액과 뇌척수액에서 시행한 세균검사에서 수막구균이 검출된 점, 전신의 피부와 근육 및 몸 안의 모든 장기들에서 반상출혈과 점상출혈을 포함한 출혈 소견이 있는 점, 신장의 모든 사구체 내에서 피브린혈전의 침착이 관찰되는 점, 위 소견들이 패혈증에서 흔히 동반되는 파종성혈 관내응고병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혈액 및 위 내용물의 약물독화학적 검사에서 특기할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기타 사망자 시신의 외표 및 내부 검사에서 사인과 연관지을 특기할 기계적 손상 및 외력에 의한 방어 및 억압흔적 등이 관찰되는 않는 점, 사망자가 완전군장 행군(20km)후 생활관에서 고열로 훈련소 지구병원을 경유하여 민간병원 후송치료 중 패혈

증(의증)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는 사건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사인을 수막구균 패혈증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망이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1. 6. 24. 병사(病死)로 내사 종결하였다.

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후, 피해자의 유가족은 헌병대로부터 시체인 수증 및 화장동의서를 받고 사체를 인계받아 2011. 4. 26.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같은 날 10:00경 ○○시립화장장에서 화장한 뒤, 유골은 15:00경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여 순직 처리하였다.

파. 이 사건 직후, ○○교육사령관 및 ○○훈련소장은 피해자에 대한 행군 후 환자진료 체계, 지구병원 군의관 순회진료 실태, 훈련병 관리실태 등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2011. 6. 11. 및 6. 24. 지휘감독소홀 및 보고의무위반 책임을 물어 연대장 대령 김○○에게 경고, 0교육대장 소령 박○○에게 견책, 0중대장 대위 남○○에게 근신 3일, 소대장 중사 양○○에게 감봉 2월의 징계 조치를 하고, 근무태만의 책임을 물어 지구병원 군의관 중위 김○○, 중위 권○○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또한 당일 당직근무병인 병장 유○○에게 보고의무위반 책임을 물어 휴가제한 3일, 연대 의무병 상병 정○○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근신 5일의 징계조치를 하였다.

하. ○○훈련소장은 ○○대학교병원으로부터 수막염 발병 경위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예방약 투약권고를 받고, 예방 의약품인 항생제를 4. 27. 00연대 훈련병 등 2,184명에 대해 우선복용 조치 하고, 2011. 6. 30. 훈련병 관리 및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병력결산 주기를 교육대와 중대 간에는 일일단위로 결산, 보호관심병사에 대한 등급 분류를 상향조정, 응급 환자식별 및 대처방법 강화, 개인별 진료여건 보장 및 관리일지 기록 철저, 훈련 복귀 후 훈련병 관리대책 강화, 응급 환자 상급병원 후송 등 의료지원 강화대책 등의 관련 의료시스템을 개선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4. 판단

이 사건 피해자의 소속 지휘간부들이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보호 조치를 적절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훈련병 신상 관리 체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속 지휘간부들인 00연대장, 0교육계장, 0중대장, 소대장 등은 피해자가 ○○훈련소 입소 및 중대 전입 당시 건강한 상태여서 특별한 보호관심병사가 아니었고, 훈련 중에도 별도의 건강 상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병 분대장 및 전우조 병사들로부터도 관련 사항을 보고 받지 아니하여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못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가.항~라.항에 의하면,

첫째, 피해자가 2011. 4. 8. 우천상황에서 영점사격을 할 때 전투복이 젖어, 감기증세를 앓았고, 그 당시 많은 훈련병들이 기침 등 관련 증세를 가져 4. 11. 연대 의무실에 진료를 받는 등 건강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으나 일일병력결산 시 이를 파악해 별도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점,

둘째, 피해자가 2011. 4. 22. 19:00경부터 4. 23. 02:10경까지 실시된 20km 완전군장 야간행군 훈련 중인 4. 23. 00:48~01:00경 행군 중 뒤처져 전우조 등 동료 훈련병 2명이 뒤에서 밀어주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동료 훈련병들의 미보고로 위 피진정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

셋째, 피해자가 2011. 4. 23. 02:10경 행군 복귀 후, 기력상실 등 고열의 증세를 보였으나, 먼저 환자발생 등 의무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한 분대장의 보고를 받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온수샤워를 시키고, 연대 군의관이 퇴근 후인 03:30경 뒤늦게 연대의무실 진료조치를 취하여 적절한 의료조치의 기회를 받지 못하도록 한 점,

넷째, 피해자가 2011. 4. 23. 04:00경 소속대 복귀 후, 소대장은 분대장으로부터 의무병으로부터 해열제만을 복용하고 군의관의 진료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중대장에게 지휘보고 및 지구병원 응급실로 긴급후송하거나, 취침 중 환자상태의 경과를 관찰하는 등 별도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취침하게 하고, 당직계통으로는 행군환자 보고 시 고열환자 0명이라고 사실과 달리 보고하여 소속 중대장 등 지휘관들이 관련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훈련병 관리 및 관련 지휘보고체계의 부실, 잘못된 판단과 부주의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와 ○○훈련소 예규 150호 제4조에 따라 응급환자 후송 및 진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의료접근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연대 의무대 및 훈련소 지구병원 군의관 진료행위의 적절성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바.항~차.항과 같이 피해자가 2011. 4. 23. 12:23경 ○○훈련소 지구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응급치료 중 사망하기까지 위 지구병원 간호장교 변○○, 군의관 대위 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찰 및 경과 관찰 등의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그 진료의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나, 위 인정사실 라.항 및 마.항과 같이 피해자가 행군 복귀 후 고열의 증세를 보이다가 훈련소 지구병원 응급실에 긴급후송 되기까지의 진료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연대 군의관 중위 박○○은 2011. 4. 22. 19:00~4. 23. 02:10경까지 야간 행군에 의무지원을 하고, 연대 의무대에 복귀하여 행군 중 발생한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고, 4. 23. 03:00경 퇴근을 하면서, 의무병인 상병 정○○에게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연락망 등의 조치를 지휘감독을 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둘째, 연대 의무병 정○○는 고열의 상태를 보인 피해자에 대하여 군의관 박○○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임의로 체온을 측정하고 처방약으로 해열제만을 복용시키고 복귀시켜 피해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점,

셋째, 휴일 중 훈련소 지구병원 순회 진료와 관련하여, 군의관 중위 김○○, 권○○은 2011. 4. 23. 당시 일과시간이 12:20경까지로, 그 시간 내에는 순회진료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의무대로 피해자를 비롯한 진료인원이 예정된 진료시간이 15분 지연된 11:45경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진료를 하지 않고 지구병원으로 복귀함에 따라 피해자가 같은 날 12:17경 앰블런스를 이용하여 지구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의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적기에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 조치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계기관인 ○○교육사령부와 피진정기관인 ○○훈련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파.항과 같이 감찰조사를 통하여 지휘감독소홀, 보고 의무위반, 근무태만,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 및 행정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고, 또한 수막염 발병경위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 훈련병 관리 및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고, 이미 기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훈련소 예규 000 제4조(응급진료 대기 및 응급환자 진료)의 준수에 대해 전 직원에게 교육할 것과 관련 제반사항들을 정비할 것을 권고(군대 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사건, 11진정0115100)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별도의 권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위 인정사실 타.항과 같이 피해자는 변사사건 조사 후, 훈련 중 병사에 의한 순직으로 처리되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으나, 피해자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조치가 된 바 없으므로, 관련 피진정인들을 상대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지원을 위한 법률구조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3

**2012. 12. 18자 12-진정-0072100, 12-진정-0111100 (병합)
결정 [군대내 스마트폰 앱 점검·삭제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 【1】 국방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전군에 전파할 것과, 스마트폰 앱 사용 관련 군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알권리가 자의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권고
- 【2】 육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 3, 4, 5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앱의 내용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붙은 표현물로 볼 타당한 근거가 없고, 군인이라 하더라도 내면의 양심이나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접근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님.
- 【2】 피진정인들이 앱 접근을 금지한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고, 정보의 접근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대통령을 비방하는 앱을 듣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3】 정부비방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앱을 다운로드 또는 검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군인의 법적 의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향후 특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
- 【4】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검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직 내 질서 유지라는 공익보다 피해자들이 침해된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

【참조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08헌마638 결정

【참조조문】

「헌법」 제17조·제19조·제21조·제37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2조·제9조·제13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

【진 정 인】 ○○○○○

【피 해 자】 ○○군단 및 ○○○부대 소속 군 간부 등

- 【피진정인】**
1. 국방부장관
 2. 육군참모총장
 3. 육군 ○○군단장
 4. 육군 ○○○부대장
 5. 육군 ○○여단장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군인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본 진정사건의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국방부장관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전군에 전파할 것과,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사용과 관련하여 군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알권리 등의 기본권이 법적인 근거 없이 지휘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한 및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육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 3, 4, 5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육군 ○○군단장인 피진정인 3이 2012. 1. 17. 예하부대에 “중복 사이트 및 정부비방 앱(APP) 삭제 조치(지시)”를 공문으로 시행하고, 해당 앱을 선정한 다음 스마트폰(이하 ‘폰’) 소지자에 대하여 일일이 폰을 열게 한

후 해당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불어 이 앱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서 형식으로 집행 한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나. 육군 ○○○부대장인 피진정인 4가 2012. 1. 30. ‘스마트 폰의 중복 애플리케이션 삭제 강조지시’ 공문을 예하부대에 시행하고 해당 앱을 선정하여 삭제교육 등을 실시한 것은 군인의 알권리와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

다. 육군 ○○여단장인 피진정인 5가 국방 인트라넷에 올려져 있던 “중복 사이트 및 정부비방 앱(APP) 삭제 조치(지시)” 공문의 외부 유출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2012. 2. 16.경 예하부대 모든 간부들로 하여금 스마트폰 통화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삭제복구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스마트폰을 점검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국방부장관(피진정인 1)과 육군참모총장(피진정인 2)은 본 진정요지 가, 나, 다. 행위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3(○○군단장)의 행위 관련

(가) 이○○외 11명

각 대대의 정보장교가 피진정인 3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나서 개인별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점검하였다. 보안서약서와 스마트폰 점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동의서가 아닌 간부 연명부에서 명하는 경우도 있는 등 구체적인 점검 방법은 대대별로 달랐으나 대체적으로 스마트폰 점검에 협조를 하였고, 특별히 강요는 없었다.

(나) 박○○외 1명

대대 정보장교로부터 피진정인 3의 지시사항을 전해 듣고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던 ‘나꼼수’ 앱을 자진 삭제한 당사자이다. 앱의 삭제를 강요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진정요지 나, 피진정인 4(육군 ○○○부대장)의 행위 관련

(가) 김○○외 5명

친북 성향의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점검은 없었다.

(3) 진정요지 다, 피진정인 5(육군 ○○여단장)의 행위 관련

(가) 김○○

군에서 스마트폰을 점검한다는 사실을 친구와 전화통화 중 친구가 앱 삭제지시 공문을 보여달라고 하여 앱 삭제지시 공문을 2012. 1. 28. 친구가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전해 준 바 있다.

앱 삭제 지시 공문이 언론에 보도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하였고, 2. 25. ○○여단 작전과에 찾아가 공문유출 사실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이○○

2012년 2월 중순경 대대 정보과장으로부터 공문유출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삭제 복구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니 부대로 복귀하라는 연락을 전화로 받았다. 그러나 당시 개인사정으로 복귀가 곤란하다고 하니 스마트폰 삭제 복구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음 날 부대에 출근하여 피진정인 5의 지시사항이라는 말을 듣고 ○○○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통화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다) 박○○외 7명

각 대대장이 스마트폰 삭제복구 점검과 통화내역 제출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문 유출자가 아니라면 떳떳하게 결백을 입증하자고 설득하여 스마트폰 점검과 통화내역 제출에 동의를 하였고 강요는 없었다.

통화내역 제출은 부대에서 마련한 차량을 타고 인근 통신사

대리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스마트폰은 영외관사에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서 PC에 연결하여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여 점검을 받았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국방부장관)

중복 앱과 정부비방 앱의 자진삭제 지시는 피진정인 3과 4의 부대에서만 있었으며, 국방부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부대에 사전지시를 하거나 사후 결과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앱 삭제지시의 공문 유출자를 색출하도록 피진정인 3과 5.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

그러나, 전투 시뿐만 아니라 전투준비 단계인 평시에도 지휘관에게 포괄적 지휘재량이 주어져야 하고, 피진정인 3과 4가 중복 앱과 정부 비방 앱을 자진 삭제토록 하였던 조치는 군의 정신전력 보존과 국가안전 보장 및 국토방위 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 2(육군참모총장)

2011. 11. 15. “인터넷 방송의 ‘나꼼수’ 시청 및 댓글, 핸드폰 벨소리 다운, SNS 등을 통해 군 통수권자 비방에 동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부 장병들이 호기심 때문에 접촉하는 것도 예방해야 하는 등, 중복세력에 대한 우리 장병들의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훈시를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훈시의 취지는 최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군 통수권자에 대한 비방’에 군 장병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됨을 우려하여 장병들의 정신전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훈시’는 지휘관이 강조하는 사항으로 업무에 참고하는 개념이고, 이행을 강제하는 ‘지시’와 다르다.

피진정인 3과 4는 군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심 및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휘관의 책무로서 위 훈시사항을 일부 참고하여 2012년 1월 중순경 자체적으로 중복 앱 등의 설치여부 점검 및 삭제

등에 대한 조치와 교육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진정인 3과 4를 비롯한 육군의 전 부대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결과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진정인 3과 4의 자체적인 스마트폰 앱 삭제 지시는 「군인사법」 제47조의2 및 동 법률 조항의 위임 입법인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등에 근거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하거나, 북한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용의 스마트폰 앱 설치 금지 및 삭제 조치는 정당한 지휘권의 행사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인 군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피진정인 3의 지시 이후 ○○군단 참모에 의해서 집행된 보안서약서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확인하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의 공문서 유출은 「육군규정 000 징계규정」의 ‘부당한 공문서 유출’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지휘관은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3과 5가 피해자들에게 통화내역서 제출을 요구하고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여 점검한 조치는 군내부의 징계혐의자를 발견하고 군사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며, 피해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에 따른 자발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진정인 3(육군 ○○군단장)

2012. 1. 17. 군단 예하 전 부대에 ‘장병들의 스마트폰 앱을 점검하여 북한을 찬양하거나 정부 및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스마트폰 앱을 자진 삭제토록 교육하라’는 지시 공문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각 부대는 1. 20. 또는 같은 달 27.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시 피해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어 관련 스마트폰 앱의 설치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는 우리 군단이 최전방 접적부대임을 감안하여 장병들의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들에게 건전한 군인 정신을 갖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 사건 지시와 관련하여 상급부대나 기관의 지침은 없었다.

공문 유출자 색출은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후,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과 피진정인 1의 국회 답변의 맥락을 참고하여 본인이 지시한 사항이었고, 공문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피진정인 1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

4) 피진정인 4(육군 ○○○부대장)

2011. 12. 6. 육군 ○○○부대장으로 부임 이후 부대를 진단한 결과 대부분 2,000명이 넘는 군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군인정신이나 군 기강 확립, 보안의식이 취약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 대적관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적필승의 정신교육 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1. 7. ○○○ 남측본부와 관련된 ○○닷컴의 기사를 보고 우리 부대원에게도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012. 1. 27. 부대원들의 보안의식 함양 및 대적관 확립 등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거나 북한 찬양 성향의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지 말고, 이미 받은 인원은 자진 삭제해 유도하는 교육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정치적 성향의 앱 및 사이트에 가입하지 말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도 함께 강조하였다.

공문 제목에 '중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닷컴 보도 자료를 첨부하면서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지 관련 앱 전체를 중복으로 간주하여 하달한 것은 아니며, 공문 제목에 '강조 지시'라는 표현은 지휘관 강조사항을 하달할 때 군 내에서 일반적으로 제목에 포함시켜 사용하는 표현으로, 전체 공문의 취지는 보안교육 및 정신교육의 실시가 주된 것이지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위반 시 징계 내지 처벌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표현은 아니다.

5) 피진정인 5(○○여단장)

공문 유출자 색출 지시의 취지를 사전에 개개인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자발적인 동의하에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제보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용의 대상자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만 참여해도 의미가 있으니 개인의 동의하에 원하는 인원만 실시하면 된다고 누차 강조하여 동의한 인원만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피진정인과 관계인들이 제출한 진술서와 참고자료, ○○군단과 육군 ○○○부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3(○○군단장)의 행위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인 국방부장관이 ○○군단의 스마트폰 앱 설치 금지 및 삭제 조치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3.에게 사전 지시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진정인 1.은 「국군조직법」 제8조에 의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나) 피진정인 2인 육군참모총장은 2011. 11. 15. 소속 지휘관들에게 “인터넷 방송의 ‘나꼼수’ 시청 및 댓글, 핸드폰 벨소리 다운, SNS 등을 통해 군 통수권자자 비방에 동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장병들이 호기심 때문에 접촉하는 것도 예방해야 하는 등 중복세력에 대한 우리 장병들의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훈시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인 ○○군단장은 2012. 1. 17. 보안부서, 각 참모 및 예하 지휘관들에게 개인의 동의를 얻어 스마트폰에 중복 사이트 및 정부비방 앱을 설치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와 교육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라) 피진정인 3의 지시에 따라 ○○군단 정보처는 ○○○ 남측 본부, North Korea World, North Korea flag, 김정일 퍼즐의 4종을 중복 앱으로 선정하고, 나꼼수, 애국전선, 스마트 촛불, 시국선언·반FTA, 스마트 통일카드, 가카 퇴임일 카운터의 6종을 정부비방 앱으로 선정하여, 2012. 1. 17. 「중복 사이트 및 정부비방 스마트폰 앱(APP) 삭제조치 (지시)」 공문을 예하부대에 시행하였다.

○○군단 정보처의 통신보안 업무담당자는 2012. 1. 20. “정부비방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관련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 “정부비방 앱(APP)을 다운로드 하거나 검색,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7개 항목의 서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예하부대 정보과에 메일로 전송하여 서약서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3의 지시공문을 접수한 ○○군단 예하의 5개 사단은 점검 및 이상없음을 보고하였으며, ○○군단 본부, 직할부대 및 3개 여단은 스마트폰을 보유한 부대 간부 2,125명 중 휴가, 파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받지 못한 60명을 제외한 2,065명에게 보안서약서를 집행하였고, 스마트폰을 점검한 결과 ○○연대와 ○○여단에서 ‘나꼼수’ 앱의 자진 삭제가 각 1건씩 있었음을 자체적으로 확인하였다.

2) 판단

가) 스마트폰 앱 삭제 조치

(1)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알권리’란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모든 정보원(情報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위와 같은 ‘알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제19조),

학문의 자유(제22조) 등 정신적 자유의 핵심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알권리’에 대한 제한은 정신적 자유의 핵심에 대한 제한이 되는 것이므로, 자유 및 권리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 하에서 불가피하게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2) 피진정인 1, 2, 3의 행위의 기본권 침해 관련성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3의 지시는 그 이행의 대상자가 형식적으로는 각 참모 및 예하부대 지휘관들이고 피해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참모 및 예하부대 지휘관들의 후속 점검 행위와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어떠한 앱을 설치하고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기본권 제한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2의 훈시는 피진정인 3의 지시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훈시 내용의 이행을 직접 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군의 복무와 관련한 포괄적인 관리·책임 외에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진정인 1. 또한 피진정인 2와 같이 포괄적인 관리·책임 이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피진정인 3인 ○○군단장의 본 진정사건에서의 지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소위 ‘불온서적’관련 결정(2010. 10. 28. 2008헌마638)에서 ‘불온도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용으로서 군인의 정신전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도서’로 정의한바 위 취지에 따라 보면, ○○○ 남측본부가 제작한 경우와 북한에서 직접 제작하였거나, 북한을 찬양한다고 상당한 정도로 판단되는 4종의 앱은 군인의 정신전력을 저해하는 표현물로서 군인인 피해자들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중복 앱 외에 정부비방 앱으로 선정된 그 이외의 앱은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 2에 의한 불온 표현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고, ○○군단 정보처가 6개의 정부비방 앱을 선정된 사유가 대통령과 정부를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여 비방한다거나 집회·시위 현장의 소식을 알려주거나,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인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을 군인인 피해자들이 듣거나 보기만 하여도 군의 정신전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주관적인 우려 외에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군인복무규율」에서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제18조 등)은 군인이라 하더라도 내면에 머무르는 양심이나 가치관의 형성, 투표나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까지 금지하는 규율은 아니므로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앱에 대한 군인인 피해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사건에서의 정부비방 앱의 선정절차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검토 또는 심의과정 없이 피진정인 3의 지시와 ○○군단 정보처 참모 1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선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규제는 기본권 제한 측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공익의 달성을 추구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외면한 것으로서 헌법상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복 앱 선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자의적이며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그 기준이 모호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살펴보아도 정보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앱을 설치하여 정보를 얻는 것과 정치적 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원수로서 군 통수권자가 되는 외에 특정정파의 지도자라는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바 대통령을 비방하는 앱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 이를 문제시 삼는 것은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앱은 영외에서 출퇴근

하는 군 간부들의 경우 부대 밖에서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므로 군 내부에서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

결국, 피진정인 3의 지시와 이에 따른 정부비방 앱의 설치 금지 및 삭제 조치는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적용하여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하였고 「헌법」 제21조에서 유래하는 군인인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스마트폰 보안 서약 행위

(1) 우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명문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한편, 자유민주적 법치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와 법질서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반면, 그에 상응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헌법질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내용상 단순히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어떠한 가정적 혹은 실제적 상황 하에서 특정의 사유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서약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보안서약서의 내용은 정부비방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정부비방 앱을 다운로드 하거나 검색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금지행위는 피해자인 군인들에게 법률상 주어진 의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일반적 의무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서약서의 집행 방법은 피진정인 3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12년 1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행사시 일률적으로 작성토록 하였는바, 이는 군의 특성상 상관의 지시라는 일방적 조치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여 서약여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안서약서의 작성요구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피진정인 4(육군 ○○○부대장)의 행위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4인 육군 ○○○부대장은 2012. 1. 27. “보안의식 함양 및 대적관 확립 등 부대원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거나 북한 찬양 또는 중북 성향의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이미 받은 인원은 삭제토록 교육할 것”과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정치적 성향의 앱 및 사이트에 가입하지 말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전산보안 담당자와 정훈장교는 ○○○ 남측본부, 스마트 촛불, 스마트 통일카드, 나꼼수, 애국전선, 가카 퇴임일 카운터, North Korea flag, 김정일 퍼즐의 8종을 중북 앱으로 선정하고 2012. 1. 30. 피진정인 4의 결재를 받아 「스마트폰의 중북 애플리케이션 삭제 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2012. 1. 30. 각 부서장들에게 시행하였고, 각 부서장은 피해자들에게 피진정인 4의 지시사항을 전파·교육하였다.

2) 판단

피진정인 4는 지시의 대상자가 각 부서장이고 지시의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앱을 자진 삭제하도록 유도하라는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2. 1.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행사의 결과’보고 문건에 의하면 향후 보완 발전사항으로 중복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건데, 피진정인 4. 역시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스마트폰 점검을 계획하였다가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자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피진정인 4는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스마트폰의 직접 점검 행위만 없었을 뿐, 피진정인 4의 지시 역시 이행의 실질적 내용은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서 특정 앱의 설치 금지와 삭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앱을 중복 앱에 포함시켜 삭제하도록 조치한 것은 진정요지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최소침해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21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 피진정인 5(육군 〇〇여단장)의 행위 관련

1) 인정사실

가) 〇〇여단 〇〇대대 김〇〇은 “중복 사이트 및 정부비방 스마트폰 앱(APP) 삭제 조치” 문건을 2012. 1. 28. 21:00경 친구가 보낸 불상의 민간인에게 전해 주었다.

나) 위 공문이 언론에 보도된 후, 피진정인 3의 지시를 받은 피진정인 5는 공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되어 유출되었다고 판단하고, 2012. 2. 14. 예하 단장과 대대장이 참석한 지휘관 회의에서 공문유출자의 자진 신고기간을 주었고, 다음 날 오전 경까지 자진 신고자가 없자, 2. 15. 지휘관 회의 시 스마트폰 삭제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점검하고 통화내역을 제출하도록 각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 5의 지시에 따라 2. 15. 13:00경부터 각 대대별로 스마트폰 삭제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2. 16.부터는 피해자들에게 통화내역을 제출토록 하였다.

○ ○ 여단에서 2012. 2. 21. 작성한 ‘스마트폰 검색결과’에 의하면 일반 폰을 제외한 스마트폰 보유자는 725명 중 삭제복구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 아이폰 보유자이거나 기능고장, 업무출타, 파견, 후송자 등으로 사실상 스마트폰 점검이 불가능한 177명을 제외한 547명이 점검을 받았으며, 개인 사정으로 스마트폰 점검에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1명이다.

그리고, ○ ○ 여단에서 같은 날 작성한 ‘스마트폰 통화내역 출력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폰 보유자 781명 중 타인명의 가입자, 휴가, 파견자, 기타 통화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거나 제출할 수 없는 간부 126명을 제외한 655명이 스마트폰 통화내역 제출에 동의하고 통화내역을 제출하였고, 통화내역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간부는 없다.

2) 판단

가)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이고,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과 관련된 내밀한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보장받는 권리로서, 국가가 개인의 사적 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일정관리, 메모, 인터넷 뱅킹, 이메일뿐만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의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은 개인의 내밀한 일상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따라 보호되는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스마트폰은 점차 그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군사기밀의 보호와 관련하여 그 사용에 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인 스마트폰에 포함된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하여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스마트폰 삭제점검 및 통화내역 제출의 적법성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 5는 「군인사법」 제58조에 의한 징계권자로서 임의조사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의 동의와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조직의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의 특성상 군인의 행동은 협조와 동의 관계가 아닌 지시와 이행의 강제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고, 피진정인 5의 협조요구를 피해자들이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들의 동의의 임의성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단의 스마트폰 삭제점검 대상자 548명 중 개인사정이 있었던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동의를 하였고, 통화내역 제출 대상자 중에서는 655명 전원이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5가 피해자들로부터 형식적인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는 피진정인 5의 행위에 임의성과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유출된 공문은 육군의 내부지침인 「육규 000 군사보안규정」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기 위하여는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문서에 해당하고, 피진정인 5가 징계권의 행사로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조직 내부의 질서와 규율의 회복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고, 피해자들의 명시된 의사에 반한 강제조사가 없었던 점은 임의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어서 조사방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 5가 피해자들에게 통화내역서를 제출받은 행위의 경우에는 각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피해자들 본인이 발급 받은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통화시간에 대한 기록이고, 이와 같은 기록은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다른 개인 정보와 결합되어야 비로소 통신의 상대방과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진정인 5의 지시를 받은 각 대대장들이 피해자들에게 의심되는 통화 상대방과 이유를 질문 하는 데에만 제한적으로 참고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통화내역 제출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 5가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을 제출받아 삭제 여부를 점검한 행위의 경우에는 단순히 파일의 저장과 삭제기록을 확인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검색하여 그 내용을 PC의 모니터 화면으로 확인한 것으로서, 이는 개인의 내밀한 사진자료 등이 타인에게 직접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군사기밀 보호가 아닌 조직 내부의 규율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 5의 스마트폰 삭제 복구 점검행위 부분은 이른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한다.

2012. 12. 1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양현아 위원 한위수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국군조직법」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3.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군인복무규율」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이상의 단위부대의 장과 함정 또는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4.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써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①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군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인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군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순수한 친목단체에의 가입이나 친목활동은 예외로 한다.

제16조의2(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유인물·도서·도화·기타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외발표 및 활동) ①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일과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정치적 행위의 제한)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
4. 각종 투표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5. 기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

병영 내 가혹행위 및 부조리

4

2012. 4. 13.자 11-진정-0317500 결정 [해군 훈련병 사망사건]

【결정사항】

해군참모총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가. 해군기초군사교육단의 교육훈련 실태에 대한 특별 진단을 실시하고 인권친화적인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나. 훈련병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원수리 제도 및 병영생활상담관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
- 다. 훈육요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결정요지】

- 【1】 피진정인들은 관련 교육훈련계획표에 정한 일과시간 기준을 위반하고, 합리적인 훈련방법의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부대관리를 함으로써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보장되는 피해자 및 동료 훈련병들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 【2】 신병교육대의 훈육요원들은 교육훈련 목적의 열차려 기준을 위반하여, 하루 총 2~3시간씩 열차려를 부과하고, 교육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고성과 욕설, 신체적 유형력 행사 등을 가하여 훈련병들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훈련병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제12조, 「군인복무규율」 제15조·제25조

【진 정 인】 이○○

【피 해 자】 故 이○○

【피진정인】 1. 이○○ 2. 최○○ 3. 김○○ 4. 김○○
5. 강○○ 6. 김○○ 7. 고○○ 8. 김○○

【주 문】

해군참모총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가. ○○교육단 훈련프로그램에서 교육일과의 자의적 운영, 식사 및 샤워 시간의 과도한 통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 부과, 폭언·폭행·가혹 행위에 의한 훈육방법 등 교육훈련 실태에 대하여 특별 진단을 실시 하고 인권친화적인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나. 훈련병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원수리 제도 및 병영생활상담관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

다. 훈육요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2011. 4. 24. 입대하였는데, 기초군사교육단에 배속되어 훈련을 받은 4일 만인 동년 4. 29. 09:00경 부대 근처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바, 훈련과정 중 폭언,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 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바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해자는 TV방송 프로그램의 라면 끓이기 대회에 출연하여 상을 받은 적이 있고, 평소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도와주어 주변에 친구가 많을 정도로 정서적인 어려움이 없이 자라왔으며, 대학교 조리학과 1학년을 마치고 해군에 자원입대하였다.

2) 사망통보를 받고 2011. 4. 30. 해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하여 대원들과 대화중 한 훈련병이 울면서 “2011. 4. 29. 새벽 피해자가 (조교에게) 많이 맞았다”라고 했으며, 또 다른 훈련병은 “조교들이 엎드려뺨쳐를 시키고, 허리를 군화발로 차고 밟는 등 구타를 한다”는 진술을 들었다. 또한 피해자가 입대하던 날 색이 섞인 신발을 신고 왔다는 이유로 조교가 피해자에게 심하게 기합을 주었고, 4. 28. 24:00경에는 이발을 하던 조교가 피해자를 때렸다는 소문이 있다고 들었다.

3) 피해자에 대한 사체검안 시 피해자의 팔, 다리에 골절상이 있고 얼굴 등 앞 면부는 깨끗하나 뒷부분 좌측 허리부분에 타원형의 파란 멍자국이 있었고 훈련 중 하루 취침시간이 2~4시간 밖에 안 되는 점, 열차려 받은 문제점 등이 있었으나 헌병대 수사과장 및 수사관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군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 같으니, 위원회에서 진상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 3)

본인들은 피해자의 훈련을 지휘 감독하는 소속부대 지휘간부들이는데, 진정인은 피해자가 가입소 훈련 중 조교들로부터 구타 및 기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병대에서 수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해자 외 다른 훈련병을 대상으로 일부 군화발로

미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해 징계조치가 취해졌다. 피해자의 등 부위에 멍 자국이 있었다는 것은 추락 사망 시 발생한 것으로 보이거나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한다.

2) 피진정인 4)

본인은 2011. 4. 28.부터 4. 29.까지 당직소대장으로서 당직자 7명이 순찰근무를 하었는데, 순찰 중 훈련병을 구타한 사실은 없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동료 훈련병들로부터 2011. 4. 28. 24:00경 이발을 하던 성명불상 조교가 심하게 때렸다고 하지만, 헌병대 수사결과 그 당시 조교가 아닌 교관 2명이 위치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아닌 다른 훈련병에 대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바 진정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피진정인 5), 6), 7), 8)

본인들은 이발특기병으로 근무하는 병사들로, 2011. 4. 28.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신병교육대 목욕탕에서 신병 00기 800여 명에 대해 입교이발을 실시하였다. 당시 이발특기병 4명이 작업보조원 6~7명을 지원받아 많은 신병을 대상으로 이발준비교육(모발 채취, 커튼보 착용, 세면장소 이동방법)을 시키는 과정에서 큰 목소리를 내도록 한 적은 있으나 훈련병들을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해군 0함대 소속 김○○(○○기지), 박○○, 윤○○, 황○○(○기지 전대), ○○방어사령부 소속 서○○(헌병사), 장○○(○○경비정편대), ○○○○작전사령부 소속 권○○(○○함), 최○○(○○함), 최○○, 오○○(○○함) 등 이상 피해자의 동료 훈련병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가입소 기간 중 훈련 상황에 대하여

동료 훈련병들은 가입소 기간 중 이름 대신 번호로 불러 이를 알기 어려웠고, 동료들과 대화할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없었으며, 하루 일과를 신상기록 작성, 신체검사, 물품지급, 생활교육을 받고, 나머지 대부분

은 항상 대기시간으로 보냈다. 취침시간은 통상 24:00~익일 01:00경에 잠자리에 들어 04:45경 기상하여 수면시간이 부족하였고, 특히 불침번을 서는 날에는 취침시간이 2시간 밖에 되지 않아 힘들었다. 또한 많은 훈련병이 식당을 사용하다 보니 늦게 식사하는 경우에는 식사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샤워시간 또한 부족하여 비누칠을 하기도 힘들었다.

당시 소대장 등 조교들이 군기유지 및 정신교육을 이유로 훈련병들에 대해 잦은 일차려(엎드려뺨쳐, 팔 굽혀펴기, 무릎앉아, 쪼그려 뛰기,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등)를 하루 통상 2~3시간 정도 받아 피로가 누적되었고, 소대장 등 조교들은 훈련기간 동안 매일 훈련병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새끼, ×새끼, ××새끼, 죽고 싶냐, 꺼져버려라. 쓰레기 같은 새끼들” 등 심한 욕설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 사망사건 발생 이후, 소대장, 교관, 조교들은 ‘피해자의 기수(00기)는 쓰레기야’라는 등 감정적으로 일차려를 주고 침상 등에 발을 올려놓고 하기 등 규정에 위반된 일차려를 하였다. 일부 훈련병은 일차려 시 태도 불량으로, 또는 대기시간 중 잡담을 하다 발각되면 교관, 조교들로부터 손과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구타당하고, 발로 차고, 심지어는 엎드려뺨쳐 상태에서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목격 등 인지여부에 대하여

사망사건 발생 전 날인 28. 24:00경 이발 대기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소대원 전원 어깨동무하고 쪼그려 앉은 뒤 일차려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해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을 적은 없다. 당시 훈련병들 사이에 “어떤 애가 혼나서 울었다”라는 식의 입소문은 있었으나 그 당사자가 피해자라거나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

3) 사건 발생 후 부모님 면담 시 대화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부친이 “어떻게 훈련 중 아들(피해자)이 탈영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고, 피해자의 구타 등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대로 말해 달라”고 하여, 장○○와 최○○이 “어제 이발 중 교관에게 혼나 울고 있던 아이가 ○○(피해자)인 것 같다”라는 추측성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피해자의 부친이 면담 당시 조금이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것이나 소문이라도 들은 것이 없냐고 하여, 조금이라도 돕고자 교관이 누군가를 때렸는데 그게 이○○(피해자)가 아닌가 하여 말씀을 드렸고, 부친이 “그럼 그게 이○○일 수도 있겠네?”라고 하여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이러한 대화내용이 “이○○가 이발 당시 맞았다는 소문을 들은 동기가 있다”라고 전언된 것이라 생각되고, 피해자가 직접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은 목격한 사실은 없었다.

사건 발생 직후, 동료와 대화과정에서 “이○○가 이발 당시 맞았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부모님 면담과정에서 소문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가 이발 당시 맞았다는 소문을 들은 동기가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4) 헌병대 및 군 검찰 조사과정에 대하여

사건 발생 후, 헌병대와 군 검찰에서 3~4회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 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를 알고 있는지, 부모님에게 대화하였을 때에 사실대로 말한 것인지를 조사 받았고, 모두 직접 목격한 바는 없고 소문을 듣고 추측성 발언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내용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교육사령부가 제출한 변사사건 발생보고, 피해자에 대한 검시조서, 사망진단(시체검안)서, 현장감식

보고서, 사망현장 아파트 CC-TV녹화기록, 변사(투신 자살추정)사건 조사결과보고 등 수사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변사사건의 개요 및 진정의 경위

1) 피해자는 2011. 4. 25. ○○ 00기로 ○○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신병교육 0대대 0중대로 가입영한 첫날 부대편성, 인성검사, 행정서류 작성 등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음 날인 4. 26. 00:15경 취침하고, 같은 날 03:30경 기상하여 03:45경부터 04:40경까지 불침번 근무 후, 05:10경 기상하였다, 4. 27.에는 00:30경 취침하고, 같은 날 05:00경 기상하여 체력검사, 입단식 행사 준비 등 교육훈련을 마치고 24:00경 취침하였다.

2) 피해자는 다음 날인 4. 28. 05:00경 기상하여 의류대 작업, 체력검정, 이발, 입단식 준비 등 교육훈련을 마치고 4.29. 01:00경 취침하였다가 03:45경부터 같은 소대원과 불침번 근무를 한 후, 같은 날 04:40경 전체 기상하여 부대편성 시 필요한 개인생활 기록부를 배부 받은 후, ○○ 0관 앞에 집합하라는 담당 소대장 중사 김○○의 지시가 있었으나 이후 집합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05:17경 시설전대 위병소를 통해 부대를 이탈하였다.

3) 피해자는 같은 날 08:32경 ○○아파트 6-7라인 현관 앞 노상에 쓰러진 채 최초 발견자 관리소장 김○○에게 발견되어 119구급자가 ○○병원 경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2:17경 ‘개방성골반 골절, 혈복강 기흉 등’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4) 피해자의 변사사건에 대한 ○○교육사령부 헌병대는 현장 감식, 사체 검사, 이탈경로(아파트CC-TV녹화기록 확인), 최초 발견자 및 동료 훈련병 등 주요 참고인, 입영 후 병영부조리,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거짓 말탐지조사, 최면수사, 현장재현, 신병양성훈련 실태, 피해자의 입대 전 병력 등 신상을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4. 25. 15:00경 ○○ 기초군사교육단에 입영하여 4. 29. 08:32경 사망하기까지 간부 및 교관 등의 직접적인

구타가혹행위는 없었으나,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신병대대의 일과 진행과 교육요원들의 위압적인 교육방법에 따른 심리적 위축 등 부적응이 피해자로 하여금 부대를 이탈하게 한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되었을 개연성은 있다고 보이나 사망의 원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불가'로 보고 투신자살로 내사 종결하고 이후 장례를 치렀다.

5) 피해자의 부친인 진정인은 사건발생 당일인 2011. 4. 29. 교육대대장의 연락을 받고, 부대를 방문하여, 당시 피해자와 같은 생활실을 이용하던 훈련병 13명을 생활실에서 대면하여,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대해 물어 볼 때는 동료 훈련병 최○○ 등이 “피해자가 교관에게 구타를 당하여 슬피 울었다”, “사건 전일 밤 이발을 하였는데, 그 때 맞은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하였는데, 군 헌병대 조사결과에서는 이들이 피해자가 맞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가혹행위는 없다고 수사결과를 밝히자,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2011. 6. 7. 국가인권위원회에 동료 훈련병들에 대한 확인조사 등 진상규명을 원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해자와 동료 훈련병들의 일과진행 및 교육실태에 대하여

1) 일과진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동료 훈련병들은 2011. 4. 25.(월) ○○신병 00기로 ○○교육단에 가입영하여, 소대편성을 받고, 개인별 예치금거출, 인성검사, 개인신상기록부 등 행정서류를 작성한 후, 소대별 생활관으로 이동하여 개인침대 및 관물함을 지정받고, 중앙통로에 집합하여 개인 일용품 및 피복을 받은 후 복장착용법, 차렷자세, 경례 및 호명법 등 기본교육을 받고, 개인세면 및 점호를 취한 뒤 4. 26. 00:15경 취침하였다. 2011. 4. 26.부터 4. 29. 피해자가 부대를 이탈한 4일 동안 매일 05:00 전에 기상하여 침구류 정리 및 아침인원 점검을 시작으로 경례법, 신체검사, 신상기록 작성, 면담, 모포 및 관물함 정돈법 교육, 소지품 거출, 입단식 준비, 생활반 청소,

샤워 등 개인세면 후 00:30경 점호 후 취침하였다. 이와 같은 일과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1일 취침시간은 길게는 4시간 40분, 짧게는 2시간 30분 정도이다.

이는 신병대대 교육지침서 및 교육훈련계획표에 최소 7시간 30분에서 8시간은 취침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교육단에서는 소속 지휘관 등 교육담당간부들이 자의적으로 기상시간을 앞당기고 취침시간을 늦추어 불침번이 없는 통상의 훈련기간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훈련병들이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도록 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다. 또한 훈련병들은 교육훈련과 잦은 얼차려가 있었으나 샤워시간(세면시간) 10분으로 제한하여 하도록 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샤워를 중지시키고 15분~20정도 가슴 높이의 벽에 발을 올리고 엎드려뺨쳐를 받아 땀범벅이 된 채 취침하여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하고 있고, 많은 훈련병이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 식사시간이 부족하여, 식사를 마치지도 못하고 잔반처리를 하고 집합하고, 훈련 중 마실 물이 없어 화장실 물을 먹은 것이 허다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경우,

이 사건 ○○교육단의 피진정인들은 관련 교육훈련계획표에 정한 기상 및 취침시간, 식사 및 세면기간 등 일과시간 기준을 위반하고, 합리적인 훈련방법을 넘어서 자의적으로 부대관리를 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보장되는 피해자 및 동료 훈련병들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육집행 실태에 대하여

○○교육단의 신병교육 훈련지침서에 의하면, 교육훈련 및 내무생활에 대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 및 군기 확립을 위해 교육목적 달성 및 교정을 위하여 일체의 육체적 접촉 및 감정표현을 금지하고 체력단련 차원에서, 훈련 1주차의 경우 팔굽혀 펴기(30회), 쫓그려 뛰기(20회), 민첩성 기르기(20분), 팔 벌려 높이뛰기(50회), 단독군장 보행 및 구보(1.5km), 과목관련 얼차려(30회) 등 6개 얼차려

종목 및 횡수를 입소시점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감시켜 시행하도록 하고,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연속 부과를 금지하고, 환자는 얼차려 대신 다른 교정 가능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훈육요원(훈련소대장, 교관, 조교)들이 이러한 지침을 위반하여 얼차려(기합)를 주고,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소대장 중사 김○○이 4. 27.(수) 19:00경 0대대 0중대 0소대 훈련병들이 세면장에서 늦게 샤워를 했다는 이유로 다리를 벽에 올리게 한 뒤 엎드려뺨쳐를 시키고, 0소대 훈련병 김○○이 자신은 0소대원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정신 나간 새끼 아니냐”면서 발로 얼굴을 찰 듯이 시늉을 하다가 어깨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린 사실

(2) 훈련교관 하사 권○○은 4. 28. 20:00경 세관 1층 목욕탕에서 훈련병 이발통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웃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금○○, 우○○에게 엎드려뺨쳐 상태에서 두 다리를 탈의실 옷보관함에 올리고, 드러누워 양발 및 머리 들기,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등 약 10~15분간 기합을 주고, 훈련병 금○○이 올린 다리가 내려왔다는 이유로 우측 군홧발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건어차 폭행한 사실

(3) 훈련교관 하사 천○○은 4. 28. 22:00경 세관 1관 1층 목욕탕 밖 생활관 대기실에서 소대별 이발대기 인원 통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잡담 하거나 웃는 등 대기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0중대 0소대원 총원(피해자 포함 62명)을 대상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어깨동무하게 한 후 앉은 상태에서 오와 열 맞추기, 무릎얹아 대기 기합을 20~30분간 주고, 같은 날 23:20~23: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6중대 6소대와 7소대 훈련병들에게 쪼그려 뛰기 기합을 주고, 훈련병 조○○에게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라며 군홧발로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같은 김○○에게 무릎이 아프다며 잠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넌 뭐 하나, 개새끼가 정신 못 차리네, 그 지랄 할 거면 당장 집으로 꺼져라”라며 군홧발로 어깨를 1회 건어차고, 같은 이○○이 평소 지병으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새끼도 미쳤네”라고 욕설하고 군홧발로 어깨를 1회 차 넘어뜨리고 “이 개새끼, 너도 집으로 꺼져라, 여기가 니네 집이나, 정신 머리가 썩었다”며 재차 군홧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찬 사실

(4) 훈련조교인 상병 양○○은 4. 28. 23:30경 세병관 목욕탕에서 0중대 0소대원 총원에게 엎드려뺨쳐 기합을 시키고, 훈련병 김○○이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찬 사실

(5) 훈련교관 중사 김○○은 4. 29. 06:30경 신병대대 내 광장에서 0중대 0소대 훈련병 장○○이 군화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자 “장난하나”며 우측 주먹으로 턱 부위를 2회 구타한 사실

(6) 가입영 기간 중 훈련소대장, 교관, 조교 등 대부분의 훈육요원들이 훈련병들이 집합이 늦거나 잡담을 하거나 예의 및 차렷 자세 등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할 때마다 과도하게 일차려를 부여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거나 “야 이 ××놈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빙신 같은 개새끼, 멍청아, 이 새끼, 생각이 없냐, 개념이 없다, 개쓰레기들, 돼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압적인 자세로 교육을 시켜 온 사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교육단의 신병교육대의 소대장, 교관, 조교 등 훈육요원들은 교육훈련 목적을 위하여 규정한 일차려 기준을 위반하여, 하루 통상 총 2~3시간 가량의 일차려를 부과하고, 다리를 올려 엎드려뺨쳐를 시키거나 변형된 형태의 일차려를 시키고 교육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고성과 욕설, 신체적 유형력 행사 등의 폭행을 가하여 훈련병들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훈련병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에 대한 폭언 및 구타·가혹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 과 판단 및 ○○교육사령부 헌병대 및 검찰단의 수사 기록, 위원회의 동료 훈련병들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1) 피해자는 2011. 4. 28(목) 야간에 세병 1층 대기실에서 인원과악시 0중대 5소대 훈련병들과 함께 있었으며, 위 대기과정에서 교관 하사 천○○가 소대 총원에 대하여 어깨동무 후 발 바퀴 쪼그려 뛰기를 약 10분~15분간 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불려나가 훈육요원에게 맞는 것을 목격한 진술이 없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교관 하사 권○○가 사물함 뒤편으로 불려 얼차려를 주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검시결과, 우측 팔 및 양측 대퇴부, 양 다리는 모두 골절되어 있는 상태로 우측가슴과 팔, 등 부위에 수개 부위의 명과 찰과상이 관찰되었으나 이는 외부의 심한 충격과 골절로 인해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 생긴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군의관 대위 강○○과 ○○○○병원 담당의사 성○○의 소견이나 진정한 등 유가족이 부검을 원하지 아니하여 부검을 하지 않으므로 명자국의 명확한 발생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위 동료 훈련병인 최○○, 장○○, 장○○이 진정한 등 유가족 면담 시 발언한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명확한 목격사실 없이 피해자가 아닌, 훈련기간 중 울고 있던 훈련병이나 이발 과정에서 얼차려 및 폭행을 당한 훈련병이 있었다는 사실만 유가족 면담 시 말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최○○ 등 동료 훈련병들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감추려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5. 조치의견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단은 훈육요원들 훈련병들에 대해 과도하게 수면시간을 통제하는 부분, 폭언 및 폭행 사실에 대하여,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단장은 2011. 7.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피진정인 1. 대대장 소령 이○○에 대해서는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으로 ‘엄중훈계’하고 피진정인 2. 중대장 대위 최○○, 피진정인 3. 중사 김○○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견책’을, 피진정인 4. 당직사관 상사 김○○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발병인 피진정인 5, 6, 7, 8,에 대하여는 각각 품위유지 위반으로 ‘엄중훈계’한 사실이 있다. 위 피진정인들은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들의 잘못된 부당행위는 다분히 ○○교육단의 잘못된 교육훈련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피진정인들 및 관계 훈육요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군 참모총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5 2012. 4. 30.자 11-진정-0321900 결정 [군대 내 가혹
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결정사항】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

【결정요지】

- 【1】** 피진정인 4, 5, 6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규정외 얼차려, 폭행 및 폭언을 했음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는데,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私的) 제재를 금지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함.
- 【2】** 피진정인 1, 2, 3은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의 신상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구타·가혹행위 등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자유를 침해함.
- 【3】** 현행 군 법령상 자살의 경우 공상 인정과 보상체계가 매우 열악하나, 이 사건에서 소속 부대의 관리부실 및 부대원들의 가혹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므로,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 등 소송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참조조문】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진 정 인】 임○○

【피 해 자】 1. 故 최○○ 2. 최○○

【피진정인】 1. 김○○ 2. 김○○ 3. 반○○ 4. 김○○
5. 신○○ 6. 이○○ 7. 권○○

【주 문】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2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지원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 1은 2011. 2. 7. 군 입대 후 2011. 4. 8. 제0사단 0연대 0대대 0소초 (GOP)에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2011. 5. 30. 05:20분경 위 소초 00번 날개 진지에서 자신의 K-2 소총을 발사하여 두부관통총창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 1은 사망 직전인 2011. 5. 28. 피해자 1의 부친인 피해자 2와 전화통화를 할 때, 선임병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과 열차려를 받았고, 심지어는 조인트를 맞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견디기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 1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김○○(대위, 제0사단 0연대 0대대 0중대장)

사고 2달 전쯤인 2011. 3. 24. 0중대장으로 배치되었고 실질적인 지휘책임자이나, 통상 작전지휘는 2중대장이 담당하는 이중체제로 중대 관리를 하고 있어, 밀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신병이 전입 오면, 의무중대장, 대대주임원사가 최초 면담을 담당하고, 소속 중대장과 행정관이 다시 면담하여 소대를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소초장과 부소초장이 면담을 하여 관심사병 여부를 식별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 1은 언행, 가정 및 학업 생활, 신병교육대 교육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살기도 경험이 없는 등 특이사항이 없어 'C급 관심사병'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였다.

피해자 1은 김○○ 이병과 동반입대를 하였고, 전입 후 실시한 '신인성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와 우울증 및 스트레스 검사를 하지 않았다.

평소 부대관리를 위해, 상향식 일일결산을 하여 왔는데, 구타 가혹행위 및 성군기위반 등 병영생활강령 위반사항을 체크하고, 애로 건의사항, 과업평가 및 과업준비 등을 점검하고 있고, 각 초소장의 지휘 하에 분대장은 분대장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검 및 관찰 시 피해자 1에 대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신체검사는 병사들에게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어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1에 대해서는 2011. 4. 9. 전입 시, 그리고 5. 20. 면담을 중대장실에서 각 30분 정도 한 사실이 있고, 마음의 편지 및 소원수리는 피해자 1이 전입하기 직전 실시되어 피해자 1이 근무하던 중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중대 지휘관으로서 열심히 병사관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망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2) 김○○(중위, 제0사단 0연대 0대대 0중대 0소초장)

피해자 1은 2011. 4. 8. 자대배치 후 전령(통신병)으로 임무수행 하였고, 이후 4분대로 보직하여 GOP 경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같은 해 5. 7. 2분대로 보직을 조정하여 동반입대병인 김○○ 이병과 같은 생활관으로 편성하여 서로 의지가 되도록 배려하였다. 피해자 1은 행동이 느리고 말투가 어눌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소속 분대장은 근무지에서 많이 조는 모습이 있다고 하였으나 적발된 적은 없었다.

피해자 1과는 대기근무지와 소초장실에서 면담을 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오며가며 마주치면 이야기도 많이 하였고, 면담 간 구두를 통한 교우도식(sociogram, 인간관계 상황도)을 실시하였으나 싫어하는 선임병이나 후임은 없다고 하는 등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았다.

피해자 1이 군장검사 시 슬리퍼를 신고 나와 선임병의 지적을 받고 군화로 갈아 신고 나온 것으로 들었으나 이는 사망사고 발생 후에 알게 된 사실이고, 당시 각 분대장들이 하루에 한번 씩 소초장에게 보고하는 상향식 일일결산에서도 별다른 보고내용이 없었으며, 특히 신○○ 상병에 의한 피해자 1에 대한 구타행위에 대해선 아는 바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었다.

피해자 1은 사망당일 김○○ 병장과 함께 근무하였으며, 주간근무로 전환 시 김○○ 병장이 00번 진지진입을 피해자 1에게 지시하였고, 근무교대 중에 진지에서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반○○(병장, 제0사단 0연대 0대대 0중대 0소대 0소초 분대장)

본인은 0소초 분대장으로 일일결산을 소속 분대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하여 수행하였고, 특이사항이나 환자발생시 기록을 하고 소초장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평소 피해자 1은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등 사소한 실수가 잦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선임병들에 의한 피해자 1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등은 알지 못했다.

2011. 5. 28. 23:00경 피해자 1과 후반야(통상 야간 12시 이후) 근무를 서는 중 피해자 1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없다고 했고, 5. 29. 05:00경 피해자 1과 함께 진지에서 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 1이 졸고 있어, 이를 지적하였더니 피해자 1이 “긴장이 풀려서 잠시 졸았는데 다시 실수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을 뿐 폭언 등 구타·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다.

4) 김○○(병장, 0중대 0소대 0소초)

2009. 10. 20. 군 입대하여 사고당시 병장으로 피해자와 분대는 다르지만 2생활관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2011. 5. 29. 22:25경 GOP 초소 근무를 위해 피해자 1과 함께 간인 탄약고에서 실탄을 지급받고, 안전점검을 한 후, 22:40경 0소초 00초소 대기초소에 도착하여 가지고 간 음료수 등을 같이 먹었고, 00:05경 00번 교차초소에서 순찰일지에 사인하고 상황실에 전화하고, 이어 00번 초소에서 순찰일지에 사인을 하고, 01:29경 00번 초소에 도착하여 근무를 하다 02:00경 교대근무자인 상병 신○○과 이병 최○○에게 인수인

계를 하고, 02:10경 42번초소로 이동하는 등 위와 같은 형태로 03:35경 출발, 04:00경 00번 고정초소에서 상병 신○○과 이병 최○○에게 인수 인계를 받고 초소내부에서 피해자 1과 함께 경계근무를 하다, 해가 떠 오르는 시간이 되어 05:10 ~ 05:15경 근무를 위해 “○○야, 날 밝았으니 날개진지 잡아라(근무해라)”라고 하였더니 피해자 1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날개진지 외초근무를 썼는데, 약 5분 후에 총소리가 “퐁”하고 1발 났다.

총소리를 듣고 밖을 나가 보니 피해자 1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고, 머리, 코, 입,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땅바닥에도 피가 많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겁이나 어떻게든 일어서게 하려고 하였는데, 너무 무겁고 미동이 없어 인터컴을 통해 상황실에 “(피해자 1이)이상하다. 피가 난다”고 정신없이 소리를 쳤다. 이에 곧바로 상병 신○○이 옆 초소에서 뛰어오고, 이어 철책점검자 하사 안○○, 소초장 및 군의관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위 경계근무 중, 00번 초소에서 22:50경 피해자 1이 암구호를 몰라 방탄헬멧을 1회 밀친 적이 있고, 03:35경에는 피해자 1에게 다른 초소로 출발해야 하니 이동 준비를 하라고 하였으나 시간이 되었는데도 준비를 하지 않고, 꾸물거려 “야 ×× 빨리 하라고 이야기 안 했냐”라고 신경질적으로 질책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구타 등 괴롭힌 사실은 없었다.

평소 피해자 1은 이병인데도 불구하고 집합 시에 옷을 늦게 입고, 점호 시 체육복으로 환복을 느리게 하고, 청소할 때도 멍하게 있는 등 부대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편이었다.

2011. 5월 초순경 생활관에서 주특기인 81밀리 박격포 제원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물어보았는데,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 “야 ×× 너는 공부 안하고 뭐 하나”라고 질책을 한 적이 있고, 또한 5월 중순경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은 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침대에 앉아 쉬고 있어 “야 ×× 너 뭐하나. 다들 청소하는 것 안 보이나. 청소해라”라고 질책을 한 한 사실이 있고, 또한 5월 말경 생활관에서 피해자 1에게서 땀 냄새가 많이 나서

“야 너 몸에서 ×같은 냄새가 난다. 좀 씻어라 ××아”라고 질책을 한 적이 있었고, 이외 부대근무 중 피해자 1에게 약 6회 정도 통상적인 지적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이외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한 사실은 없다.

2011. 4월경 후임관리를 잘하라고 일병 이○○에게 생활관에서 3분 정도 쪼그려 앉기를 시킨 적이 있고, 같은 해 5월경 생활관에서 조○○ 일병과 최○○ 이병, 김○○ 이병이 군기가 빠지고 행동이 느려서 1분대 후임병 관리를 잘하라고 쪼그려 앉기를 시킨 적이 있고, 이후에도 한 번 더 일병 조○○과 이병 최○○, 이병 김○○에게 쪼그려 앉기를 시켰으며, 같은 해 5월 중순경 일병 조○○을 화장실 앞에서 후임병 관리를 잘 하라면서 장난식으로 가슴을 2대 때린 적이 있다.

본인은 평상시 후임병에게 지적할 때 화가 나면 “××,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한 적이 많았고, 일병 이○○ 등에게 피해자 1이 실수를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을 보고 후임병 관리 좀 잘하라고 한 것이 내리갈굼(괴롭힘)이 된 것 같아 반성하고 있다.

5) 신○○(상병, 제0사단 0연대 0대대 0중대 0소초)

본인은 2009. 12. 7. 입대하여 2011. 3. 24. 0소초에 전입하여 근무하였는데, 피해자 1이 GOP근무 시 야간 감시 장비를 자주 놓고 오고, 소지하는 가방을 챙기지 않고, 일지기록 하는 펜을 잃어버리고, 개인 총기를 놓고 오고, 근무시간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멍하게 있었던 관계로 선임병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나 선임들이 실수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얼차려를 주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2011. 5. 20. 피해자 1과 후반야 근무를 서고 있는데 피해자 1이 근무 중 졸고 있어서 “근무 중 자면 안 되지”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고, 또한 같은 해 5. 21. 피해자 1과 후반야 근무를 서는 도중 또 다시 피해자 1이 졸고 있어서 주의를 준 후, 많이 피곤하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피해자 1을 대기초소에서 좀(1시간)을 쉬게 하였다. 이후 근무지에서 복귀를 하여 5. 22. 06:30경 분대장인 병장 반○○에게 피해자 1이 초소에서 많이 졸고 있어서 대기포로 빼서 쉬게 해 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다.

같은 해 5. 22. 피해자 1과 후반야 근무에 투입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익일인 5. 23. 02:00경 피해자 1이 졸고 있어서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0분 간격으로 계속 졸고, 04:00경 대기초소에서 또 다시 졸고 있어 발로 피해자 1의 우측정강이를 1회 차며 일어나라고 했는데도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 1의 방탄헬멧을 2회 손바닥으로 때리고 우측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어 05:00경 초소에서 피해자 1이 또 졸고 있어서 짜증이 나서 발로 2대 정도 정강이를 차고 주의를 주었는데도 5분 정도 후에 또 졸아서 잠을 깨우려고 쪼그려 앉기를 3~4분가량 시켰으나 재차 코를 골며 졸아 팔굽혀펴기 25회 정도 시켰다. 그런데도 또 졸고 있어서 머리 박기를 5분가량 시켰다. 이에 피해자 1이 죄송하다고 하여 힘든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며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말하여 고치라고 한 적이 있다.

2011. 4월 중순 16:00경 생활관에서 피해자 1이 의자 정리를 하는 시간에 다른 소대의 의자 정리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에 침낭을 끼우고 피해자 1의 팔 상박부위를 약 3회 때린 적이 있고, 같은 해 5월 중순 15:00경 피해자 1에게 장난권투를 하자고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1의 옆구리, 팔 부위를 약 15회 때린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 1을 구타하고 얼차려 준 것을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보고해도 서로에게 좋을 게 없고 피해자 1을 보는 이미지도 안 좋게 될까봐 보고 안했던 것이다.

6) 이○○(상병, 0중대 0소대 0소초)

본인은 2010. 10. 12. 입대하여 상병이며 피해자 1이 2011. 4. 6. 전 입하여 처음에는 2생활관에 배치를 받아 잘 몰랐으나 2~3주 후 1생활관으로 배치를 받아 처음 근무 첫 사수(선임병)로 근무하였다. 선임들이 야기가 근무지에서 자꾸 존다는 말을 들었으나, 본인과 근무할 때는 즐지 않았다. 그러나 00번 진지에서 근무할 때, 피해자 1이 총을 놓고 나가 “×× 니 총이 제2의 생명인데, 저딴 식으로 버리고 다니냐. 개새끼야 정신 좀 차려라”라고 한 사실이 있다.

2011. 5월 중순 야간근무가 있어 피해자 1이 대기포 근무 중이어서 속옷(하의 5개, 상의 5개) 세트와 수건 2개를 세탁하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5월 중순 11:00경 화장실에서 피해자 1과 소변 오래보기 시험을 하다가 피해자 1이 웃어 무릎으로 피해자 1의 허벅지를 2~3회 때린 적이 있었다.

2011. 5월 중순 취사장 청소를 하는 날인데 피해자 1이 멍하게 있어 화를 내면서 “니 선임들은 취사장 청소하는데 너는 옆에서 쳐보냐”고 질책을 한 적이 있고, 2011. 5월 중순 생활관에서 피해자 1이 근무 나갈 때 옷을 침상위에 올려놓고 옷걸이에 안 걸고 나가 “야 이 새끼야, 정신 줄 팔고 다니지”라고 하고, 또한 옷 정리가 안 되어 있어 발목을 툭 친 적이 있고, 2011. 5월 중순 상병 신○○이 피해자 1과 근무 갔다 와서 피해자 1이 가방을 놓고 왔다면서 나에게 질책을 해서 피해자 1을 불러 담배를 피우면서 “야 ×× 나에게 피해주지 말라”라고 한 적이 있고, 또한 평소 생활관에서 피해자 1이 2살 많았지만 “이 시키야”라고 약 10회 정도 말한 사실이 있다.

평소 병장 김○○가 피해자 1이나 후임들이 실수하면 수시로 후임 병 교육을 잘하라고 욕을 하여, 처음에는 참고 넘겼으나, 2011. 5월 중순경 병장 김○○가 ‘애들 교육을 안 시킨다’고 생활관에서 일병 조○○과 함께 “야 ××새끼들, 후임관리 잘하라. 개새끼들 교육 안 시키느냐”라고 욕을 하며 쪼그려 앉아 있기를 5~10분 정도 시키고, 식사시간 중에도 욕을 들어, 차츰 후임들이 잘 못하면 본인도 후임병들을 심하게 대한 것 같다.

병장 김○○는 2011. 5. 1.경 다리를 다친 본인 대신 근무를 서게 되자 “아 ×× ×같다. 내가 왜 너 근무 들어가야 되느냐. 이 병신새끼야 너 근무 안 들어가서 좋겠다”라고 폭언을 하고, 후방근무지에서 근무를 설 때에는 작은 실수를 하면 뒤통수를 때리곤 하였으며, 또한 2011. 5월 피해자 1이 전입 왔을 때, 잦은 실수를 하자 잠을 자는 본인을 깨워서 “××새끼야 애들 저딴 식인데, 교육 안 시키느냐”라고 강요하고, 일병 조○○의 경우에는 화장실 앞에서 가슴을 2대 때리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다. 참고인들

1) 김○○(이병, 위 같은 소초, 피해자 1 동반 입대병)

2011. 5. 27. 생활관에서 피해자 1을 봤는데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고 대기포 작업을 하다 다쳤다고 했다. 2011. 5. 28. 흡연장에서 피해자 1이 와서 힘들다고 하여, 뭐가 힘드냐고 물으니 “그냥 힘들다”라고 하여 자꾸 물어봐도 “그냥 힘들다”라고 대답하였고, 또한 5. 29. 17:30 군장 검사시 피해자 1이 슬리퍼 신고 군장검사 받으러 나와 선임병들이 농구장 쪽에서 피해자 1을 불러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

평소 병장 김○○는 후임병들에게 귀찮게 하며 까다롭게 굴었고, 부를 때도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였으며, 본인도 김○○ 병장 때문에 내리갈굼을 당한 적 있다.

2) 조○○(일병, 0중대 0소대 0소초, 군종병)

2011. 5. 29. 17:00-17:15경 피해자 1이 군장검사 때 슬리퍼를 신고 왔길래 “슬리퍼를 신고 온 행위는 싸가지가 없어 보인다.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라”라고 지적을 한 사실이 있고, 근무 중 상병 신○○이 야간 감시장비를 두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1에게 2~3회 지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2011. 5월 중순경 오후 생활관에서 병장 김○○가 후임들 관리를 잘못 했다는 이유로 본인과 일병 이○○에게 욕을 하면서 쪼그려 앉기를 2~3분 정도 시키고, 2011. 5월 중순경 화장실 앞에서 위 같은 이유로 본인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2~3회 때린 사실이 있고, 병장 김○○는 평상시에도 인상을 쓰면서 후임들을 똑바로 관리하라고 강요하였다.

근무 중, 병장 김○○가 피해자 1에게 근무를 똑바로 서라고 인상을 쓰면서 지적하는 것을 5~6회 목격했고, 또한 욕설을 하면서 근무지에서 줄지 말라고 5~6회 지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3) 최○○(이병, 위 같은 소초)

피해자 1이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 풀어 주려고 노력했는데, 상병

신○○과 일병 이○○이 2011. 5월 중순경 생활관 및 담배 피는 곳에서 피해자 1가가 선임에게 경례를 하지 않은 것과 군장검사 시간에 복장불량 등이유로 “똑바로 해라 새끼야. 깜빡깜빡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긴장을 해. 니가 못하면 맞선임이 힘들어 하니깐 잘해”라고 질책을 하곤 하였다.

4) 문○○, 박○○(이병, 위 같은 소초 피해자 1의 후임병)

2011. 5월 말 일자불상 경 피해자 1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자신에게 화가 난다, 건강증이 심해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사망 전에 피해자 1이 손목에 붕대 또는 파스 같은 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작업하다가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

2011. 5. 29. 17:00경 군장검사 시 20명 가량의 부대원이 모인 장소에 피해자 1이 슬리퍼를 신고 나온 것에 대하여 선임병들이 생활관에서 질타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욕설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평소 일병 이○○이 피해자 1에 대해 자주 질타하는 편이었으며, 5월 일자불상 경 피해자 1에게 “근무가야 되니까 대신 세탁기 좀 돌려 달라”라고 하여 속옷 등을 대신 세탁하도록 한 적이 있었고, 이때, 피해자 1이 “이○○ 성격이 제일 더럽다”고 말했던 적이 있으며, 병장 김○○은 평소 자주 욕설을 하고, 후임병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질타하곤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내용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의 부친이 제출한 동료대원들의 서신,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서 및 이들에 대한 대면조사보고서, 제0사단장이 제출한 피해자의 군복무기록 및 면담관찰기록부, 0소초 경계작전 명령서 및 상황일지(2011. 5. 24.~5. 30.), 0소초 총기사고 상황보고, 피해

자 외래진료기록지, 新인성검사결과자료, GOP대대 안전진단결과(2011. 5. 6.~8.), 0중대원들에 대한 설문지, 제0사단 헌병대가 제출한 변사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1) 피해자 1은 2011. 2. 14. 군 입대하여 2011. 4. 8. 제0사단 0연대 0대대 0중대로 전입하여 소속대 GOP 0소초 81mm 탄약수로 복무하던 중, 2011. 5. 29. 21:50경 후반야 야간경계근무를 위해 생활관에서 기상하여 병장 김○○ 등 9명과 함께 같은 날 22:50경 42초소에 도착하였다.

2) 피해자 1은 익일 2011. 5. 30. 00:25경 병장 김○○와 ○○초소로 함께 이동하여 합동근무 후, 밀어내기식 근무방식에 따라 같은 날 02:00경 ○○초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 같은 날 04:02경 다시 ○○초소에 도착하여 소초 내 합동근무를 하였고, 같은 날 05:07경 병장 김○○가 피해자 1에게 외초 근무지로 가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 1은 외초 근무 중인 같은 날 05:20경 입 부위에 총상을 입은 채 병장 김○○에 의해 최초 발견되었다.

3) 당시 병장 김○○는 00초소 내부에서 근무서고 있던 중, 초소 밖에서 1회 총성을 듣고 밖으로 나가보니 외초근무지에 있던 피해자 1이 상체를 모래주머니에 기대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머리와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 초소 내 인터콤(음향 신호/통신기)으로 상황을 전파하였고, 이후 오전 전반야 근무 인솔자인 하사 안○○ 등 6명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2011. 5. 30. 05:22경 0중대장 대위 김○○가 연대본부에 사고상황을 보고하고 구급차와 응급헬기 요청하였고, 같은 날 05:38경 소초장인 중위 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상태를 확인하던 중, 같은 날 05:40경 연대 구급차가 도착하여 군의관인 중위 문○○가 진찰한 바, 피해자 1은 이미 호흡, 맥박이 없었으나 심폐회생을 위하여 응급조치(가슴마사지, 기도삽관, 수액투여, 애프레프린 주사 4회)를 실시하였다.

4) 곧이어 같은 날 06:20경 도착한 헬기에 탑승시켜 피해자 1을 국군 ○○병원으로 긴급후송을 하였고, 위 병원 대위 조○○이 40분 가량 심폐 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피해자 1은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07:22경 두부관통총창에 의한 중중 뇌손상으로 사망판정을 받았다.

5) 사건발생 직후 제0사단 헌병대와 검찰은 2011. 5. 30. 오전 ○○병원 응급실에서 육군수사단 제0지구 수사대장 등 7명의 주관으로 육군 ○○병원 대위 조○○, 유가족 등 총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1의 사체에 대한 검시 및 검안을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사고현장인 00초소 부근 외초근무지에서 현장감식을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유족의 동의를 얻어 2011. 5. 31. 국군○○병원 부검실에서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법의감식관 대위 강○○의 집도로 부검을 실시하고, 사체를 피해자 1의 부친인 피해자 2 등 가족에게 인계하였다.

6) 제0사단 헌병대와 검찰은 사망현장에 대한 현장감식 및 총기, 혈흔 등 유류품에 대한 감정, 피해자 1의 사체에 대한 검안 및 부검결과 등에 근거하여, 입안의 입천장에 사입구와 머리부위를 관통하는 한 군데의 사창관이 관찰되며, 사입구 주변의 매흔 및 소염기흔이 발견됨에 따라 접사로 보이고, 왼쪽 이마부위 경계부에 불규칙한 과열상인 5×10cm의 사출구가 관찰되고, 양쪽 눈거풀결막과 가슴안과 배안의 주요 장기가 빈혈상으로 관찰되는 등의 생활반응이 관찰되는 점, 심장혈 및 위 내용물의 약독물화학적 검사에서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기타 사인과 연관될 만한 특별한 기계적 손상 및 외상 방어흔적, 억압흔적이 관찰되지 않은 점, 피해자 1의 피복에서만 추진제 화약성분과 방탄헬멧에서 예광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1의 사인은 피해자 1 자신의 K-2 소총을 이용하여 자살한 두부관통총창사인 것으로 판단하고, 2011. 10. 25. 내사 종결하였다.

7) 또한 제0사단 헌병대와 검찰은 피해자의 소속부대 간부 및 병사 등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수리 및 면담결과 폭행·가혹행위 등 내무부조리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제0사단은 상병 신○○에 대해서 초병상해 및 폭행혐의로 2011. 7. 18. 구속기소하여 2011. 10. 19.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중대장 대위 김○○, 소초장 중위 김○○, 분대장 병장 반○○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각 견책, 근실 5일,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병장 김○○, 일병 이○○ 등 8명의 선임병들에 대해서는 폭행가혹행위의 책임을 물어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영창, 근신, 휴가제한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였다.

나.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1에 대한 피진정인들의 구타·가혹행위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진정인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증거
병장 김○○	'11. 5월 초순경 생활관	주특기 제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는 공부 안하고 뭐 하나”라고 폭언 및 질책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11. 5월 중순경 생활관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고 쉬고 있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은 청소하는데 넌 쉬고 있냐, 야 ×× × 같네”라고 폭언 및 질책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11. 5월 하순경 생활관	피해자에게 몸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야 너 몸에서 ×같은 냄새가 난다. 좀 씻어라 ××아”라고 폭언 및 질책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11. 5. 29. 22:50경/ 5.30. 03:30경 00초소	피해자가 압구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방탄헬멧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초소 간 이동준비가 느리다는 이유로 “야 ×× 빨리 하라고 이야기 안 했냐”라고 질책	피진정인 진술
상병 신○○	'11. 5, 23, 02:00-05:00경 00초소	피해자가 근무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전투화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방탄헬멧을 2회 때렸으며, 다시 졸아 전투화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2회 때렸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졸다는 이유로 쪼그려 앉기 34분, 팔굽혀펴기 25회, 머리박기를 5분 가량 시키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	피진정인 진술 피해자의 검안기록

	‘11. 4월 중순 16:00경 생활관	피해자가 의자 정리를 하는 기간에 다른 소대의 의자 정리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에 침낭을 끼우고 피해자의 팔 상박부위를 약 3회 폭행	피진정인 진술
	‘11. 5월 중순 15:00경 생활관	피해자에게 장난권투를 하자고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팔 부위를 약 15회 때려 폭행	피진정인 진술
	‘11. 5월 중순 11:00경 화장실	피해자와 화장실에서 소변 오래보기 시합을 하다가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때려 폭행	피진정인 진술
일병 이○○	‘11. 5월 중순 생활실	야간근무가 있어 피해자가 대기포 근무 중이어서 속옷(하의 5개, 상의 5개) 세트와 수건 2개를 세탁 하라고 사적 심부름 강요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11. 5월 중순경 취사장 / 생활관 등	피해자가 취사장 청소 시 멍하게 있다는 이유로 “니 선임들은 취사장 청소하는데 너는 옆에서 쳐보냐”고 질책하고,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옷 정리를 잘 안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정신 줄 팔고 다니지”라면서 피해자의 발목을 쳐 때리고, 피해자로 인해 신○○ 상병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야 ×× 나에게 피해주지 말라”라고 한 적이 있고, 평소 생활관에서 장난치듯이 피해자가 나이가 2살 많은데도 가끔 “이 시키야”라고 약 10회 폭언과 질책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2) 피해자 1외의 기타 구타·가혹행위 등 피해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	피해자	일시 및 장소	내용	관련 증거
병장 김○○	일병 이○○	‘11. 5. 1. 근무지	다리를 다친 이병 이○○ 대신 근무를 서게 되자 “아 ×× ×같다. 내가 왜 너 근무 들어가야 되느냐. 셋터 조심해서 타야지 이 병신새끼야 너 근무 안 들어가서 쳐 줄겠다”라고 폭언을 하고, 패바(후방)에서 근무를 나가서 작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구타	피해자 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11. 5월 취침시간 생활관	전입 온 후임병들이 실수하자 강제로 깨워 “××새끼야 애들 저딴 식인데, 교육 안 시키느냐”면서 폭언 및 강요	피해자 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p>일병 이○○, 일병 조○○</p>	<p>'11. 5월 중순경 생활관 등</p>	<p>후임병들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킨다고 생활관에서 일병 이○○과 일병 조○○에게 "아 xx새끼들 계급 먹고 후임관리 잘 해라. 개새끼들 교육 안 시키냐"라고 폭언을 하고, 쪼그려 앉아 있기를 5~10분 정도 시키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과정에서 폭언</p>	<p>피해자 진술 가해자 일부시인</p>
<p>일병 조○○</p>	<p>'11. 5월 화장실 앞</p>	<p>후임병 관리를 잘 안한다는 이유로 가슴을 2~3대 때려 폭행</p>	<p>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피해자 진술</p>

다. 지휘 감독 등 부대관리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1이 2011. 4. 8. 소속부대에 전입하여 2011. 5. 30. 사망하기까지 이 사건 지휘·감독 책임자들인 피진정인 1, 2 등은 총 7회 걸쳐 피해자에 대한 개인면담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 1이 약간 행동이 느리고 말투가 어눌하며,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내성적인 병사로 관심사병 'C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으나 특별한 애로사항을 발견치 못하였고, 부대순찰 및 일일결산 등을 통해서도 피진정인 3에게 피해자에 대한 특이한 사항을 보고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분대장인 피진정인 3은 평소 피해자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등 사소한 실수가 잦았고, 근무지에서 조는 등의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동료 선임병들이 피해자에 의한 대한 구타·가혹행위 및 폭언 등의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당시 피해자 1의 소속부대는 일일결산의 경우, 피진정인 3이 분대원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피해자 1의 근무기간 중에는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를 실시한 적은 없었다.

3) 제0사단 0연대 0대대가 2011. 5. 6.~8.까지 3일간 소속 중대 소초에 대하여 실시한 'GOP 대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0소초의 경우, 일상적인 작업, 복무여건 등에 관한 애로사항이 있을 뿐, 구타·가혹행위 등 부대부조리와 관련된 사항이 식별된 사항은 없었다.

5. 판단 및 조치

가.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 4, 5, 6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규정 외 열차려, 폭행 및 폭언 등을 한 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지휘감독 등 부대관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나.항 및 다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4. 8. 소속부대에 전입하여 2011. 5. 30. 사망하기까지, 피진정인 4, 5, 6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생활관 및 근무지 등에서 구타·가혹행위 및 폭언 등 질책을 받아 왔고, 특히, 선임병들에 의한 ‘내리갈굼(후임병 괴롭히기)’이라는 사적 제재에 따른 병영악습이 있었으나, 피진정인 1, 2, 3이 면담관찰, 부대순찰, 그리고 일일결산 등 부대관리를 함에 있어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상급부대의 안전진단에서도 특이사항을 발견되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진정인 1, 2, 3 등 지휘관(자)들이 부대관리에 있어 지휘감독 소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부실한 신상관리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가혹행위 등의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같은 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1)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가.항의 7)과 같이 제0사 단장이 이미 형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에 대하여

현행 군의 각 법령은 비전공사망으로 분류되는 자살자의 경우 공상 인정과 보상체계가 대단히 열악한 현실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속 부대장 등의 관리부실 및 소속 부대원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 등 관련 소송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6

**2012. 6. 20.자 11-직권-0002400, 11-진정-0653000
(병합) 결정 [군대 내 성추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제00사단 000레이더기지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과 육군 제00사단내 격오지 부대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의 예방적 차원의 부대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가해자들은 구타 및 가혹행위 외에도 자신의 신분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내밀한 신체 부위를 자극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는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입장에서 받아들기 힘든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 강제추행에 해당되며, 「군인복무규율」과 「군형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 【2】** 지휘책임자들은 병영 내에서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관련된 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서는 성(性)군기 위반에 대하여 심의하지 않았고, 가해자 및 지휘감독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의 자료를 보존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휘·감독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헌법」 제12조에서 보호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형법」 제92조의2(강제추행), 「성추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36조(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제248조(정의)

【주 문】

육군참모총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1. 육군 제00사단 000레이더기지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육군 제00사단내 격오지 부대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의 예방적 차원의 부대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 문】

I. 직권조사의 배경

가. 육군 00사단 00연대 0대대 000레이더기지(이하 ‘000레이더기지’라고 한다)에 근무하였던 병사(진정인)가 제대 후, 2010. 3~4월경 위 부대 부기지장 및 선임병사들이 자신을 비롯한 동료병사 6명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성추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접수 후, 진정인 대면조사, 진정인의 동료 피해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성추행 등 피해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그 내용이 중하며, 부대 자체조사에서 단순한 가혹행위로 축소·은폐 가능성이 있고, 부대 내 예선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따라서, 본 진정사건은 상급부대의 지휘감독이 잘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격오지 부대에서 발생하였고, 성군기 위반 및 가혹행위 등 병영악습이 있을 개연성이 발견되고, 지휘관들의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어, 2011. 12. 21.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에 제4호 규정에 의거 조사계속 결정을 하고, 진정이 제기된 부분 이외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영역은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II. 직권조사 결과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피해자

- 1) 피해자 1 : 유○○(당시 이병, 00사단 00연대 000레이더기지)
- 2) 피해자 2 : 박○○(당시 이병, 위 같은 소속)
- 3) 피해자 3 : 안○○(당시 이병, 위 같은 소속)
- 4) 피해자 4 : 이○○(당시 이병, 위 같은 소속)
- 5) 피해자 5 : 구○○(당시 이병, 위 같은 소속)
- 6) 피해자 6 : 전○○(당시 이병, 위 같은 소속)

나. 가해자

- 1) 가해자 1 : 김○○(당시 하사, 제00사단 00연대 000기지 부기지장)
- 2) 가해자 2 : 이○○(당시 병장, 위 같은 소속, 2010. 8. 12.부 전역)
- 3) 가해자 3 : 김○○(당시 병장, 위 같은 소속, 2010. 8. 12.부 전역)

다.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진정 당시 2010. 3~ 4월경 현재)

- 1) 관련자 1 : 중사 최○○(00사단 00연대 0대대 000레이더기지장)
- 2) 관련자 2 : 중령 고○○(00사단 00연대 0대대 대대장)
- 3) 관련자 3 : 대령 정○○(00사단 00연대 연대장)
- 4) 관련자 4 : 소령 김○○(00사단 00연대 인사과장)
- 5) 관련자 5 : 원사 정○○(00사단 헌병파견대장, 2011.8.31부 전역)
- 6) 관련자 6 : 중위 최○○(00사단 00연대 인사장교)
- 7) 관련자 7 : 중사 황○○(00사단 00연대 인사과 인사담당)
- 8) 관련자 8 : 소령 김○○(00사단 법무참모)

2. 당사자 및 관련자 등의 주장요지

가. 피해자들의 진술요지

- 1) 피해자 1(진정인, 이병 유○○)

피해자는 2010. 2~4월까지 000레이더기지에서 근무 중 상황실에서 가해자들이 상황실의 청소기(대형) 흡입구 앞 장치를 빼고 호스만 가지고 누우라고 하여 1명은 피해자 1의 배위에 올라가 몸을 제압하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청소기 전원을 올려서 호스 안으로 성기를 집어넣었다. 짧게는 1분 정도 길게는 5분 정도 하였는데 미친 듯이 저항을 하면 30초 정도 하다가 “참을성이 그것 밖에 없느냐, 군생활 그렇게 할 거냐”면서 구타를 하였다. 구타는 일상화되었고 뺨 때리는 것은 하루에 100여대를 맞은 적도 있다. 어떤 때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병 배위로 올라가라고 하고, 후임이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간 적도 있었다.

가해자들이 취침하기 전 피해자들에게 속칭 ‘알라자세’(엎드려 상태에서 무릎과 팔꿈치를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벌리게 한 후)를 취하게 한 후 뒤를 지나가면서 낭심을 강하게 손으로 가격하는 행위를 10여회 한 적도 있다. 가해자들은 수시로 피해자와 피해자 2와 강제로 싸우게 하고, 콧구멍 사이에 출입증 쇠집계를 꽂아 눈물을 흘리게 하고, 뺨을 수백여회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2010. 3월 중순경 가해자 1, 2가 기지 안에서 기르던 개집 근처로 끌고 가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벌리게 하여 큰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하여 과자(○○샌드)를 사타구니 근처에 붙이고, 개가 하의 속옷 위를 10여 분간 핥아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당시 가해자들이 모두 있었으며, 가해자 1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항의하자 가해자 2가 뺨을 수십 차례 때렸다.

가해자 2와 견시초소 근무를 한 적이 많았는데, 가해자 2가 인체의 신비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아 받기를 하게하고 사정하기 직전까지 손으로 애무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성추행을 2010. 3~4월 사이에 가해자2로부터 3회 정도 당하였다.

부대 생활이 치욕스럽고 견디기 어려워서 나쁜 생각을 많이 하였다.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자해라도 해서 다른 부대로 가고 싶은 상황에서, 해외파병(아프가니스탄) 지원자 모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당시 부대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원신청을 하였다. 이후 2010. 4월말에 해외파병을 위한 준비부대인 ○○ 국제평화지원단에서 파견 근무 중, 파병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2010. 8월 초에 복귀하여 2010. 11월까지 근무하다 다시 해외파병이 결정되어, 2011. 1. 1. ~2011. 6월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해외파병근무를 하였고, 해외 파병을 마친 2011. 7월부터 소속부대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다가 2011. 9. 21.에 병장으로 전역을 하였다.

2010. 8월초 해외파병 취소로 원부대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중, 피해자 2가 2010. 8. 17. 대대장에게 ‘마음의 편지’를 써서 가해자들의 행위를 신고하게 되었고, 대대장이 연대에 보고하여 다음 날 연대에서 사단헌병 파견대장이 조사를 하였으며, 이후 8. 23. 연대 인사과장이 나와서 재조사를 하였다. 당시 조사한 사단헌병 파견대장 및 연대 인사과장은 가해자 1이 더 이상 군대생활을 못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될 거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그 이후에 가해자 1이 연대본부로 가서 군 생활을 계속하였다. 조사를 받을 때도 피해자가 하나하나 재연을 해가면서 조사에 응했는데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대에 있을 때 더 이상 문제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여 전역 후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가해자들에게 당한 당시 기억을 잊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으며, 그때의 후유증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성기를 보호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고, 악몽에 시달리며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2) 피해자 2(이병 박○○)

2010. 3~4월경 가해자(1, 2, 3)들이 피해자와 피해자 1(진정인)을 상황실로 불러서 1명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나머지 1명은 잡고 있다고 시키며 교대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가해자들이 청소기를 작동시켜 성기가 흡입되도록 하였으며 코, 입, 항문도 흡입되도록 하였다. 한 번 하면 10~20분 정도였으며 고통스럽기도 하였지만 수치심이 컸다. 당시 모두 10회 정도 당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팬티를 벗긴 적도 있었다. 이는 이등병이 다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부대원이 다 아는 내용이다.

2010. 3~4월경에 가해자 1, 2가 피해자 1과 본인을 상황실로 불러서 사무용 의자에 앉혀 청테이프로 팔, 다리, 허리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야한 생각을 하라, 고추를 흥분시켜 발기시켜라”라고 교대로 성추행을 한 적이 있었다. 사정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 됐다”고 하여 그만 하였으며 1~2회 정도 한 것 같다.

가해자(1, 2, 3)들이 2010. 3월경 피해자 1의 바지를 벗겨서 성기 쪽 및 엉덩이 쪽에 ○○샌드 과자를 테이프로 하나씩 붙여서 개 앞에서 춤추게 하고 옆드리게 하여, 당시 부대에 있던 개에게 훔아 먹도록 유도하였으며, 그 장면을 가해자 1이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는 것을 목격하였다.

가해자 2와 같이 근무를 할 때 심심하면 “인체의 신비”를 보여주겠다면서 성기를 잡고 발기시켜 사정시키려고 한 적이 자주 있었으며, 2010. 3~5월경 생활관에서 가해자(1, 2, 3)들이 후임병들에게 일명 ‘알라자세’인 무릎을 대고 옆드리게 하고 시선은 하늘을 보게 하여 뒤의 엉덩이 쪽에서 성기를 손등으로 치는 행위를 하였다. 점호시간대에도 하고 낮에도 하였으며 1주일에 2~3회 정도 하였으며, 피해자 1과 서로 어색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억지로 레슬링, 프라이드 등의 싸움을 시키기도 하였다.

주로 가해자 2가 방문출입증 쇠집계를 콧속에 넣어 집고 쇠집계를 흔들고 비비는 행위를 많이 하였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2달 정도 이어졌다. 나중에 본인의 코가 혈고 상처가 생겨 고름과 진물이 나왔으며, 진공청소기로 본인의 코를 빨았을 때 쌍코피가 나온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

2010. 8. 17.경 대대장에게 ‘마음의 편지’를 보냈다. 다음 날 사단 헌병 파견대장이 부대에 와서 진술서를 받았다. 당시 인터넷이나 부모에게 말하면 걱정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 당시 연대급 처벌을 원하는지 사단급 처벌을 원하는지 문의하여 사단급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나 연대급 처벌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 당시 가해자 1은 잘못을 했는데도 더 좋은 연대로 전출 가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당시 가해자 2, 3은 전역을 하여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3) 피해자 3(이병 안○○)

2010. 2~5월경 가해자들(1, 2, 3)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 1의 바지를 벗기고 과자를 붙여 개에게 먹이려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당시 박○○ 상병에게 들은 적이 있다.

가해자들이 상황실에서 청소기 전원을 켜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 귀, 코, 성기를 흡입시켰다. 피해자는 총 5차례 정도 당했는데 한번 하면 한 10여분 정도였다. 또한 가해자 2는 인체의 신비를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받기시켰다.

가해자 3은 자신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 뒤통수를 수십 대 때렸으며, 평소 가해자들이 욕을 하거나 때리는 것은 기본이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였다. 또한 속칭 ‘알라자세’를 취하게 하고 주먹 스냅으로 성기를 때렸고, 피해자 1과 2에게 격투기 같은 억지싸움을 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성추행 및 가혹행위가 과거부터 있었다기보다 가해자 1이 2009. 12. 16. 온 후 2010. 3~4 월경에 주로 일어났고, 헌병 파견대장이 성추행 관련 사실을 조사할 때 피해자 1이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으나, 가해자 1만 연대로 전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4) 피해자 4(이병 이○○)

2010. 2~5월경 가해자 1 또는 가해자 3이 근무시간만 되면 상황실에서 무릎을 꿇으라 하고 안경을 벗긴 후 귀와 코, 뺨을 자주 때렸다. 1주일에 10회 정도 생활관에서 이등병들에게 알라신을 숭배하라면서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댄 후에 고개를 숙이면 뒤에서 주먹으로 성기를 때렸다.

○○○○ 수여식이라는 가혹행위가 있는데 보급품 ○○○○(초코바)가 오면 1상자씩 받아서 벽을 보고 있으면 뒤에서 가해자 1과 가해자 3이 양쪽 허벅지를 세계 강타하고, 가해자 2는 표정이 좋지 않은 동료에게 출입증 짐게로 코를 집었으며, 마지막엔 ○○○○를 받은 상태에서 활짝 웃으라고 하고 사진을 찍었다.

가해자 1, 2는 2010. 2~5월경 별다른 이유 없이 상황실에서 청소기로 진술인의 입과 코를 2~3회 정도 빨아들였으나, 피해자 1의 경우에는 2010. 2~3월경 가해자 2가 상황실에서 피해자 1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청소기로 눈, 코, 귀, 머리, 성기를 빨아들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 1의 바지를 벗긴 상태에서 엉덩이에 과자를 붙여서 기지 후문에 있는 개한테 다가가 먹을 수 있게 보낸 적이 있고, 빨래집게로 코를 잡고, 생활관에서 레슬링을 하자고 자주 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해자 2가 2010. 3월경 상황실에서 청소기로 피해자 2의 코를 빨아들이다가 쌍코피가 났으며, 피가 멈추자 피해자 2의 팬티를 벗겨 성기를 빨아들인 것을 목격하였다. 피해자 3, 5, 6의 경우에는 청소기로 피해를 당한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지만 당시 이등병들이 모여 있을 때 “청소기로 당했다”고 서로 말한 적이 있다.

피해자 2의 마음의 편지 제출 이후, 사단헌병 파견대장 및 연대 인사과장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제출하였다. 당시 사단 헌병파견대장이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하고 “처벌강도는 어느 정도로 해주었으면 하는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사단 헌병파견대장이 “사단급을 원한다에 손, 연대급을 원한다에 손” 이런 식으로 물어 본 것 같다. 피해자는 연대급 처벌에 손을 들었지만, 당시 피해자 1은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가해자 2, 3이 군대를 전역하였지만 처벌하고 싶다고 말한 것 같으며, 당시 6명 모두가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5) 피해자 5(이병 구○○)

진정내용이 아시다시피 성추행 관련 내용이다. 당시 부대 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너무 힘들며 기억조차 하기 싫어 관련 내용으로 답변하고 싶지 않다.

나. 가해자들의 진술요지

1) 가해자 1(하사 김○○, 000레이더기지 부기지장)

2009. 12. 16.~ 2010. 8. 17.까지 000레이더 부기지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근무 당시 2010. 2월경 피해자 3에게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로우킥, 옆구리 때리기, 뺨때리기 등 장난식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 2010. 2~4월경 피해자 3등 5명을 대상으로 ○○○○(쵸코바) 수여식을 하면서 허벅지를 발로 차고, 빨래집계를 이용 코를 잡은 후 억지로 웃게 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같은 해 3~4월경 피해자 3 등 3명을 대상으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몸을 훑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위 같은 시기 심심하다며 피해자 1, 2에게 상호간에 강제로 몸싸움을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 같은 해 3~5월경에는 피해자 6 등 3명을 엎드리게 한 채 손으로 낭심을 친 적이 있으며, 위 같은 시기 피해자 4등 3명을 대상으로 손등 때리기, 귀와 뒤통수 때리기, 무릎을 꿇게 하고 귀·코·입·얼굴 등을 때리기 등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었다.

진공청소기로 피해자 1, 2, 3, 4에게 몸을 훑는 가혹행위를 평균 2회 정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의 바지나 속옷을 벗긴 적이 없었고, 가해자 2, 3의 경우에는 바지를 벗기고 한 적은 있지만 팬티를 벗기고 한 적은 없다. 당시 피해자들이 저항을 하였지만 가해자 2, 3에게 잡으라고 한 적도 있고 피해자들이 청소기를 던지면 주워오라고 하였다. 가해자 2가 피해자 1에게 청소기로 몸을 훑은 행위를 본 적이 있는 데, 당시 가해자 2의 지시로 견시초소 근무자였던 피해자 2가 내려와서 피해자 1의 손을 붙잡기도 하고 뒤에서 안기도 하여 피해자 1이 피해자 2에게 “너 미친 것 아니냐”고 하니가 피해자 2가 행동을 멈추자, 가해자 2가 피해자 1을 잡고 바지를 벗겨 진공청소기로 팬티 위를 흡입하였다.

2010. 3월경 상황실에서 가해자 3, 피해자 1이 근무를 하다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진술인이 가해자 3을 상황실에 대기하게 하고 피해자 1을 개집

앞으로 데려 갔다. 피해자 1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순순히 벗지 않아 직접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허벅지 뒷부분, 팬티 아래에 ○○샌드 과자를 놓고 그 위에 넓은 스카치테이프를 붙여서 개에게 접근을 해서 개에게 먹으라고 한 적이 있다. 당시 성 군기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받았지만 당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군기 위반행위인지 몰랐다.

진술인은 부기지장으로서 피해자 1과 3번 정도 상담을 했는데, 피해자 1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가기 전인 2010. 4월말에 진공청소기로 괴롭혀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여,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며 그 이후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 2, 3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

당시 위와 같은 사항은 기지장이 부대원 면담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을지 모르나 깊이 알지는 못했던 것 같다. 기지장이 청소기로 몸 훑은 얘기를 진술인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폭행이나 구타를 한 적이 있었다고 물어 그런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후 2010. 5월 중순경에 부대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였다.

피해자 2가 ‘마음의 편지’를 보낸 후 2010. 8. 18. 대대장실에서 헌병 파견대장에게 1시간 40분 정도 조사를 받았으며 진술조서도 작성한 바 있다.

다. 지휘·감독 관련자들의 진술요지

1) 관련자 1(중사 최○○, 000레이더 기지장)

1999. 2. ~ 2010. 6월 초까지 000기지장으로 근무하였다. 2010. 3 ~5월중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인 후임병 6명에게 성추행,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보직변경되어 2010. 8월경 대대근무 중, 000레이더기지장에서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정도로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다.

기지장 근무 중, 2010. 3월경 가해자 1이 병사들을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끼안는 등 과격하게 느껴져서 구두로 병사들과 장난하지 말라고 경고를 1회 준 적이 있고, 5월경에는 현 대대장 부임이후 사고예방척결대회, 보고

의무서약서 작성 행사를 하고, 병력들에게 면담과정에서 구타 가혹행위 및 애로사항을 물어보았으나 별다른 애로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2010. 3~5월경까지 사건발생 당시 대대 단위 주간단위로 병력결산을 하고, 일일결산 시 병 분대장인 가해자 2로부터 아무런 보고가 없었고, 또한 부지기장인 가해자 1, TOD반장 박○○ 중사와 일일결산시에도 아무런 관련 보고가 없었다. 당시 기지장 주관으로 월 1회 마음의 편지와 설문지를 받았고, 대대장, 주임원사, 인사과장 등이 수시로 통상 한 달에 2~4회 순찰하면서 설문을 받기도 하였고, 보호관심병사의 경우에는 기지장이 주 1회 개별적으로 정밀면담을 하고, 일반병사의 경우에는 2주 1회 면담을 하였다.

2010. 8월경 사건발생 이후, 대대장이 기지장 근무 중에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왜 인지를 못하였는지를 물어보아 근무 중, 일일 및 주간결산, 그리고 개별면담을 하였으나 애로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고, 이로 인하여 별다른 징계나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다.

기지장으로 근무 중, 병사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안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데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2) 관련자 2(중령 고○○, 00사단 00연대 0대대장)

2010. 3. 24.부터 현재까지 0대대장으로 근무 중이다. 2010. 8. 17. 야간순찰근무 중, 익일 02:00경 000레이더기지 ‘마음의 편지함’에 노트 1 쪽(B4크기)을 찢어 연필로 기재된 마음의 편지의 서두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대장님,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대대장님을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본문에는 가해자 1의 가혹행위가 심해서 글을 쓴다, 힘들어 동료 병사가 해외파병 지원을 하여 기지를 벗어나려 한다, 청소기로 몸을 훑어 수치심을 느꼈다, 빨래집게로 코를 집어 고통을 준다, 장난을 빙자하여 고통을 주어 힘들고 괴로워하는 전우들이 있다, 그런데 계속 장난을 한다, 문신을 가지고 놀린다, 이런 간부와 같이 근무하기 싫다고 하고, 말미에는 “조치를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기재된 피해내용으로 볼 때, 간부가 포함되어 있고, 기지전체 인원이 해당되어 대대 자체적으로 진단하기에는 신뢰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간부에 대한 징계권한은 제한되어 연대에서 조사 및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핸드폰으로 연대장에게 보고하여, 연대 조치를 건의하여 연대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위 마음의 편지는 사단헌병 파견대장 원사 정○○에게 열람시켜 주고, 관련사건 조사가 끝난 뒤 존안 문서가 아니어서 2010년 말 또는 2011년 초경 세절 처리한 것 같고, 현재 원본은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대에서는 000기지 대원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하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고, 주기적인 진단활동을 하였을 뿐이고, 주기적인 진단활동에서도 더 이상 언급이 없었고, 병사들의 불만사항도 없었다. 당시 가해자 1의 보직이 변경되었고, 가해병사 2명도 전역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당시 징계처리 결과에 가혹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말이 있어 성군기 위반 사건으로 인지하였는데, 심각한 사항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연대에서 조사하고 징계 처리 결과를 통보 받았고, 징계서류에 첨부된 가해자 1의 진술서만을 보았고, 피해 병사들의 진술서 및 헌병대 조사기록은 보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이후, 인근 000기지에서 선후임병 간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였다는 것이 부대진단 시에 인지되어 가해자를 징계한 바 있고, 이외 병사들 간에 사소한 구타 가혹행위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모두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본 사건이 안타깝고 이후, 병사들의 고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휘관심을 더욱 기울이겠다.

3) 관련자 3(대령 정○○, 00사단 00연대장)

2009. 11. 17. ~ 2011. 6. 13.까지 00연대 연대장으로 근무하고, 현재 00사단 참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0. 8. 17. 야간순찰근무 중, 익일 02:00경 0대대장으로부터 핸드폰으로 000레이더 기지에서 구타가혹행위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연대에서 조사하여 조치하겠다고 지시하였다.

연대처리 방침을 정한 이유는 보고내용이 청소기로 몸을 훑고, 엉덩이에 과자를 붙이고 개가 먹도록 하고, 장난으로 짐게로 몸을 집었다는 것으로, 단순 구타·가혹행위로 보기 어려워 연대 인사 및 헌병수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위 보고를 받고 2011. 8. 18. 오전 가해자 1을 호출하고, 인사과장 대리근무자인 소령 김○○에게 가해자 1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000 레이더기지에 가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관련자 5에게 전화하였더니 이미 0대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를 하고 있었다. 인사과장과 사단 헌병과견대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가해자는 하사 김○○과 전역한 병장 2명이며, 피해자는 6명이었고, 피해내용은 청소기로 몸을 훑고, 과자를 엉덩이에 붙여 개가 먹도록 하고, 빨래짐게로 몸을 집고, 앞드리게 한 후 낭심을 ‘톡톡’ 쳤다는 내용이었으며,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고 가해자 1을 타 부대로 전출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위 조사내용으로 볼 때, 형사처벌 사항이 될 것도 같아 사단 법무부에 인사과장이 구두질의 한 결과, 형사처벌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답변이 있어, 인사과장에게 조사내용을 기초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조사보고서는 간사인 인사장교 중위 최○○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인사과장과 헌병과견대장의 보고내용에 의해 중징계하기로 판단한 것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헌병과견대장의 조사보고서 1쪽이 있었으나 가해자 1의 진술서 외에 다른 자료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 사항에 대해 2010. 8. 20.경 당시 사단장에게 유선으로 지휘보고 하였고, 2010. 8. 24. 징계사실조사결과보고를 확인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 가해자 1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하고 보직을 변경하였다.

전군에서 가장 넓은 책임지역과 격오지 부대를 관리하는 연대장으로서 의혹 없이 조치한다고 하였으나, 세밀한 부분까지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4) 관련자 4(소령 김○○, 당시 인사과장 대리근무자)

2010. 8월 ~ 10월 중순까지 연대 동원과장을 하면서 인사과장을 겸임하였다. 연대장이 2010. 8. 18. 전화로 000기지에서 가해자 1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가 있어서 연대로 호출하였으니 사실확인을 해 보라고 하여,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

2010. 8. 18. 주간시간에 연대 인사과장실에서 가해자 1에게 확인하니, 청소기를 이용하여 병사들의 낭심 부위를 훑고, 엉덩이와 낭심 주변에 과자를 붙여 개가 먹도록 하고, 엎드린 자세에서 낭심 부위를 '톡톡' 치고, 초코바를 선물증정의 방법으로 주면서 뒤에서 허벅지를 발로 차고 구타하는 행위(일명 ○○○○ 수여식)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일 저녁 000레이더기지에 가서 기지인원 전원(약 10여 명)을 생활실에 집합시켜 가해자 1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추가로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나 피해내용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마음의 편지 형식으로 익명의 설문형태의 진술서를 받았는데, 가해자 1에게서 확인한 내용 외에 다른 추가 피해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위 익명설문지를 토대로 가해자 1에게 추가 확인하여, 2010. 8. 24. 작성한 사실조사보고서와 같은 내용으로 가해사실을 특정하였으나, 설문지 및 가해자 1의 진술에는 청소기에 의한 성기흡입, 성기발기 등 성추행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의 익명 설문진술서에는 가해자 1에 대한 분리근무를 원하고 처벌에 대한 언급은 없어 처벌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연대장에게 처벌 의사가 없다고 보고한 것이고, 피해자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줄 몰라 미숙하게 처리되었다. 당시 피해병사들에 대한 설문형식의 진술서는 가해자 1에 대한 징계조치 후, 업무종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파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2010. 8월말경 법무참모실에 유선으로 전화하여, 000레이더기지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식별되었는데, 사안이 애매하여 문의한다고 하고, 청소기를 이용하여 낭심 주변을 훑고, 엉덩이와 사타구니 쪽에 과자를 붙여놓고 개가 먹도록 하고, 엎드려 상태에서 낭심을 톡톡치는 행위가 있었고, 이외에

도 구타 가혹행위가 다수 있었는데, 이 사안을 어느 선으로 처벌을 해야 되느냐고 문의하니 자대징계하면 될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당시 대화 중 범무참모가 먼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느냐고 물어 처벌은 원치 않고 가해자와 근무를 분리해 달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당시 인사장교 중위 최○○이 가해자 1의 진술서, 헌병파견대장으로부터 받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사실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징계기록 및 사실조사결과보고서에는 가해자 1의 진술서 외에는 보존된 관련 자료가 없는데, 이는 징계의결 후 업무가 종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관심을 두지 않아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당시 본 사건을 성추행 등 성군기위반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고 악질 성 구타 및 신종 가혹행위, 병영부조리로 분류하여 징계조치하고, 징계 결과만 사단에 보고하였다. 지휘계통으로 사고보고(참모보고)는 하지 않았다. 연대장은 참모인 인사과장 및 헌병보고가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으로 일치함에 따라 성군기 위반 사건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를 축소 처리하라는 식의 지시는 없었다. 피해자들의 성추행 피해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때 당시 너무 안일하게 참모조사를 한 것이 안타깝고, 올바른 참모조사를 통하여 건전한 결심을 하도록 보좌하지 못하여 병사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

5) 관련자 5(원사 정○○, 당시 사단헌병파견대장)

당시 00사단 헌병파견대장으로서 2010. 8. 18. 00연대 0대대 사고예방교육을 마치고 설문을 수리하고 있었다. 설문지 내용에는 없으나 자기들 끼리 하는 말 중에서(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단순하게 000레이더 기지가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어 000레이더기지의 병사 전 병력을 모아놓고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A4 용지를 나누어 주고, 말하고 싶은 것을 글로 쓰라고 하였으나 아무 내용도 없었다. 이후 2차로 폭행, 가혹행위에 대해 쓰라고 하니 1~2명이 썼다. 가해자 1이 청소기로 성추행 비슷하게 하고, 팬티 위에 과자를 붙이고 개한테 훔아먹게 하려고 하였고 장난식으로 하였다는 내용이였다.

당시 피해자들에게 가해자 1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 마지막 단계에 작성하라고 하자 가해자 1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고 연대징계하여 타 부대로 전출 조치를 해달라는 건의였으며, 당시 전역한 가해자 2, 3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시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재현하라고 하자, 당시 구경하던 병사들과 함께 엉덩이에 과자를 붙이는 모습과 기지상황실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모습을 재현하였는데 당시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과 관련한 구두·서면 진술은 없었다. 이후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 1쪽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당시 가해자 1이 제출한 핸드폰 칩의 동영상 자료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칩에 오류가 났는지 아무 것도 없었다.

2011. 8. 31.부 퇴역하기 전 수사철에 보관하였는데 당시 가해자 1에 대한 형사사건 입건기록이 아니라 단순히 연대장이 지휘권 행사한 징계사유 서류였으며 퇴역 이후 2012년 전·후에 서류철을 폐기하였던 걸로 알고 있다. 진술인과 대대장 등 간부들이 수시로 각 기지 병사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내무부조리 등에 대해 설문 수리를 하여도 은닉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대대장등 대대간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은닉하거나 감추지 않고 연대장에게 지휘보고하고 연대징계하여 중징계처분 및 부사관 부적격자심사 신청하여 장기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6) 관련자 6(중위 최○○, 現 대위 00연대 0대대 00중대장)

2010. 5. ~ 2011. 4월까지 00연대 인사장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징계심의를 준비하는 담당자인 간사의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2010. 8월 경 당시 연대장과 인사과장(대행)이었던 소령 김○○의 지시에 의하여 가해자 1의 징계문서를 작성하고 징계심의를 준비하였다.

당시 헌병대 파견대장인 원사 정○○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사한 내용을 2장 정도의 문서로 요약한 것을 넘겨받은 사실이 있다. 며칠 뒤에 인사과장 소령 김○○이 직접 사고 부대를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온 것으로 기억하나 당시 어떠한 진술서나 문서를 작성해서 오지는 않았고, 진술인이 그러한 문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다만 인사과장이 사고부대를 다녀온 뒤로 ‘헌병대 내용과 조사 결과가 동일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 2가지(헌병대에서 넘겨받은 요약문서, 인사과장의 구두확인)에 의하여 가해자의 행위사실을 확정된 후, 가해자 1을 불러 약 1시간 가량 면담을 하면서 가해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하였으나, 행위별로 구체적인 일시, 장소, 피해 내용 등을 확인하거나 특정하는 등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

징계심의를 준비하던 중 인사과장 또는 헌병파견대장에게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말을 전해들은 것으로 기억하나 문서로 작성하거나, 작성된 문서를 본 사실은 없다. 헌병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각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나 그 진술내용이 인사과로 넘어왔는지 여부는 전혀 모르고, 그 진술서를 연대장이나 인사과장이 보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며, 진술인도 본 사실이 없다. 진술인은 헌병대의 조사요약본을 토대로 징계심의를 준비한 담당자일 뿐, 조사를 하거나 내용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어, 피해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징계심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7) 관련자 7(중사 황○○, 00연대 0대대 인사담당)

2009. 6. 27.~ 2011. 12. 31.까지 0대대 인사담당으로 근무하였다. 2010. 8월경 대대장이 마음의 편지를 통해, 000레이더기지에서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확인을 위해 기지로 갔다가 헌병파견대장 원사 정○○이 조사하러 기지로 와서 그냥 돌아온 바 있고, 퇴근 시 가해자 1이 대대에 들어와 있었다. 통상 구타 가혹행위 사건 발생 시 중대, 대대, 연대, 사단으로 사고보고를 하고, 사단에서는 지도 및 상급기관에 사고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대대에서 사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상급부대인 연대 헌병과견대에서 곧 바로 조사를 하였던 관계로 별도 보고서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대장이 구두로 연대장과 헌병과견대장에게 사고보고를 하여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문서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가해자 1에 대해 연대에서 징계처리 후,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가 있었으나 진급과 장기복무를 불허하되 단기근무 만료 시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격오지 부대에서는 부기지장과 TOD반장은 상주근무를 하기 때문에 병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데, 기지장이 없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겨도 보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부대진단활동을 월 1~2회하고, 기지에 월 4~5번 순찰을 가지만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식별이 어렵다.

8) 관련자 8(소령 김○○ 제00사단 법무참모)

2010. 8월 중순 경 00연대 인사과장 소령 김○○으로부터 000레이더기지 가해자 1의 징계 건에 관하여 전화로 질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연대 인사과장이 문의한 가혹행위 사실은 징계기록에 나와 있는 사실이 전부였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징계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가해자 1의 진술서 및 문답서, 지휘감독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위원회의 직권사건 실지조사 보고서, 제00사단(제00연대 및 0대대 포함)에서 제출한 가해자 1의 징계 기록, 피해자들의 병영생활 지도기록부, 2010년도 000레이더기지 주간 병력결산자료, 2010년도 부대안전평가 결과보고, 군인복무규율 계획 보고, 2010~2011년도 0대대 징계서류, 2010년도 000레이더기지 순찰 및 정신교육 현황, 000레이더기지 및 제000레이더기지 병사 설문조사지,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가해자들의 성추행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1) 2010. 3월부터 5월까지 000레이더기지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성추행 및 가혹행위 사실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가해자	피해자	일시 및 장소	피해내용	관련 증거
가해자들	피해자 1	‘10. 3~4월 상황실	가해자들이 상황실에서 수시로 피해자 1의 배 위에 올라가 몸을 제압하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청소기 흡입호스 안으로 성기를 집어넣어 1~5분 정도 흡입하고, 거부하면 손바닥으로 뺨을 수십 차례 폭행한 행위	피해자진술 참고인목격진술 가해자일부시인
가해자 1, 2		‘10. 3월 중순 기지 내 개집근처	가해자1이 피해자 1을 기지 안에 있는 개집 근처로 끌고 가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벌리게 하여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하여 ○○샌드를 사타구니 근처에 붙이고, 개가 속옷 위를 10여 분간 핥아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해자1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1이 항의하자 가해자 2가 뺨을 수십 차례 폭행한 행위	피해자진술 참고인목격진술 가해자일부시인
가해자 2		‘10. 3~4월 견시초소	가해자2가 신체의 신비를 보여주겠다며 피해자1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발기하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성추행	피해자진술
가해자 2	피해자 2	‘10. 3~4월 견시초소	가해자 2가 수차례에 걸쳐 인체의 신비를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 2의 성기를 잡고 발기시켜 사정하기 직전까지 애무하는 등 성추행	피해자진술
가해자들	피해자 1, 2	‘10. 3~4월 상황실	가해자들이 피해자 1, 2를 상황실로 불러서 1명에게 바지를 벗기기도 하고, 때로는 팬티를 벗기고 나머지 1명은 잡고 있게 한 후, 청소기 흡입 호스에 성기 코, 입, 항문을 10~20분 정도 10여 차례에 걸쳐 교대로 흡입한 행위	피해자진술 참고인목격진술 가해자일부시인
가해자 1, 2			가해자 1, 2가 피해자 1, 2를 상황실로 불러서 의자에 앉혀놓고 정테이프로 팔, 다리, 허리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야한 생각을 하라, 고추를 흥분시켜 발기시켜라”라고 1~2회 성추행	피해자진술

제2장 군(軍) 관련 인권침해

가해자들	피해자 1, 2	'10. 3~5월 생활실	가해자들은 피해자 1과 2가 서로 어색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억지로 레슬링, 프라이드 등의 싸움을 하도록 강요	피해자진술 가해자일부 시인
가해자 2			가해자 2는 방문출입증 쇠집계를 피해자 1, 2의 콧속에 넣어 집고 흔들고 비벼 폭행하고, 피해자 2의 코가 헐고 상처가 생겨 진물이 나오도록 가혹행위	피해자진술 참고인목격 진술 가해자1일 부시인
가해자들	피해자 3	'10. 3~5월 생활실 등	가해자들이 청소기 전원을 켜고 피해자 3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 귀, 코, 성기를 총 5차례에 걸쳐 10여분 흡입시키는 등 성추행	피해자진술
가해자 2			가해자 2는 인체의 신비를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3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빨기시켜 성추행	피해자진술
가해자 3			가해자 3은 피해자 3이 답변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뒤통수를 수십 회 때렸으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가혹행위	피해자진술
가해자 1, 3	피해자 4	'10. 3~5월 상황실	가해자 1, 3은 근무시간만 되면 수시로 피해자 4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안경을 벗긴 후 귀와 코, 그리고 뺨을 폭행	피해자진술
가해자 1, 2			가해자 1, 2는 별다른 이유 없이 청소기로 피해자 4의 입과 코를 2~3회 정도 빨아들여 폭행	피해자진술 가해자일부 시인
가해자들	피해자들	'10. 3~5월 취침시간 생활관	가해자들이 1주일에 2-3회에 걸쳐 취침하기 전 피해자들에게 무릎과 팔꿈치를 바닥에 닿은 엎드려 상태(일명 '알라자세')에서 두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들의 뒤를 지나면서 낭심을 차례로 강하게 손등으로 수시로 폭행	피해자진술 가해자일부 시인
			가해자들은 '○○○○ 수여식'을 하면서 1상자씩 받아서 벽을 보고 있으면 뒤에서 가해자 1, 3이 양쪽 허벅지를 세계 강타하고, 가해자 2는 표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출입증 집게로 코를 집는 등 가혹행위	피해자진술 가해자일부 시인

2) 위 인정사실 1)과는 달리, 제00사단 00연대 징계위원회 개최 시 가해자 1의 '사실조사 결과보고서'상 징계혐의는 아래와 같다.

① 기지원 병사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로우키, 옆구리 때리기, 뺨 때리기 등 장난식 폭행, ② ○○○○(쵸코바) 수여식 명목 하에 허벅지를 발로 차고, 빨래집게를 이용 코를 집는 등의 장난식 폭행 및 가혹행위, ③ 업무가 미숙하고 심심하다는 이유로 기지원 5명을 대상으로 진공청소기를 이용 몸을 훑는 등의 가혹행위, ④ 병사 상호간에 강제로 몸싸움을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 ⑤ 기지원 3명을 대상으로 옆드리게 한 채 손으로 낭심을 치는 행위, ⑥ 기지원 3명 대상 손등 때리기 등 장난식 폭행 등이 있다.

3) 피해자 6 및 가해자 중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사 불원(不願) 및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특별한 진술을 받지는 못하였다.

나. 지휘 감독책임 관련자들의 축소·은폐에 대하여

1) 피해자 2가 2010. 8. 17. 피해내용을 기재한 '마음의 편지'를 작성하였고, 이에 관련자 2가 야간순찰근무 중, 익일 02:00경 000레이더기지 '마음의 편지함'에서 이를 발견하고, 연대장인 관련자 3에게 보고하고 연대차원에서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자, 관련자 3은 연대 인사담당자인 관련자 4와 사단 헌병대 파견대장인 관련자 5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2) 관련자 4가 2010. 8. 18. 가해자 1을 호출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 4, 5가 000레이더 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은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성추행 사실,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으나, 이들은 관련자 3에게 "가해자는 부기지장 1명과 전역한 병장 2명이요, 피해자들은 소속 부대원 6명이며, 피해내용은 청소기로 몸을 훑고 과자를 엉덩이에 붙여 개가 먹도록 하고, 빨래집게로 몸을 집고, 옆드리게 한 후 낭심을 '툭툭' 쳤다는 것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보고하였다.

3) 관련자 3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에 정확한 확인 없이 관련자 4로 하여금 당시 사단 법무참모인 관련자 8에게 형사처벌 여부를 문의하도록 하였고, 관련자 4가 관련자 8로부터 피해자들의 불처벌 의사에 근거하여 형사처벌 사항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이를 관련자 3에게 보고하자, 관련자 3이 2010. 8. 20. 사단장에게 이를 유선으로 단순 구타·가혹행위 사건으로 구두보고 하고, 연대인사 장교인 관련자 6으로 하여금 징계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4) 관련자 6은 당시 관련자 5에게 받은 2장 정도의 요약자료, 관련자 4의 구두 확인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 1을 면담하고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5) 관련자 3은 연대징계위원회를 구체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자료 및 형사처벌 불원 의사를 적시한 관련 자료의 증빙 없이 가해자 1의 진술에 기초하여, 단순 구타·가혹행위 사건으로 판단하고 가해자 1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를 취하였다.

6) 피해자 1, 2, 3, 4는 2010. 8. 18. 사단헌병대 파견대장 및 연대 인사과장 조사 당시 성추행 피해사실을 밝히고 가해자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바 없음에도, 연대장 등 관련 간부들은 관련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해자 1에게 단순 폭행 및 가혹행위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만을 취하고, 가해자 2, 3에 대해서는 2010. 8. 12. 전역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대관리훈령」에 의거 성추행·가혹행위의 발생 및 인지경위, 대처 상황 등을 사단장 등에게 지휘보고하거나 지휘감독 책임을 묻지 않았다.

7) 2010년 3월에서 5월경까지 사건발생 당시 대대 단위 주간단위로 병력결산을 하였으나 일일결산 시 가해자 2가 병 분대장인 관계로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고, 부지기장인 가해자 1, TOD반장 박○○ 중사와 간부 일일결산 시에도 아무런 관련 보고가 없었으며, 당시 000레이더 기지에서는 기지장 주관으로 월 1회 마음의 편지와 설문지를 받았고,

대대장, 주임원사, 인사과장 등이 수시로 통상 한 달에 2~4회 순찰하면서 설문문을 받기도 하였으며, 기지장이 보호관심병사에 대해서는 주 1회 개별적으로 정밀면담을 하고, 일반병사의 경우에는 2주 1회 면담을 실시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자 2가 ‘마음의 편지’를 통해 신고하기까지 관련 피해사실을 관련 지휘 감독책임자인 간부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8)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상 징계서류는 제59조에 따라 비치·보존 하여야 하나 이 사건 관련자들은 피해자 2가 작성한 ‘마음의 편지’, 피해자진술서 등을 폐기하였다고 하고 있다.

4. 판단 및 조치

가. 가해자들의 성추행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1) 이 사건의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가해자들이 구타 및 가혹행위 외에도 동성의 남성이 자신의 신분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신체의 내밀한 부위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공청소기로 흡입하고, 동물 등에게 활자 자극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성기를 만지고 잡아 쥐어 발기시키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는데, 이는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입장에서 받아들기 힘든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성추행 범죄는 그 해악이 깊어 신체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 폭행에 따른 피해에 비해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이 크다. 이에 대한 사회적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두어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고, 군인의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 내지 제92조8까지의 관련조항을 두어 엄히 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가항의 1)과 같이, 피해자 1, 2, 3, 4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내용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2010. 3월경부터 5월경 사이 000레이더기지 근무 중, 강압적인 방법으로 반복적

으로 욕설 및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강요와 협박에 인한 추행을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2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휘 감독책임 관련자들의 축소·은폐에 대하여

1) 「군인사법」 제47조2(복무규율) 및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 21750호)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또한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본 사건에서 지휘감독자들은 지휘책임이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성추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지휘책임자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관련된 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서는 성군기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도 않았고, 가해자 2, 3 및 지휘감독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더불어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의 자료를 보존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관련자들은 「군인사법」 제47조2, 「군인복무규율」 제15조, 「부대관리훈령」 제236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피해자들은 「헌법」 제12조에서 보호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치사항

위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가해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중한 인권침해 사실과 지휘감독 책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이 인정되므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휘감독기관인 육군본부에서 소속 부대에서 조사하지 못한 전역자 등을 포함한 재조사를 통하여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대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격오지 부대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의 예방적 차원에서 부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2. 6. 2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별 지】 관련규정

1.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군형법」

제92조의2(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성추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추행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 또는 제289조의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추행범죄로 본다.

제4조(특수공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①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36조(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 ① “구타”란 고의로 손·발·팔꿈치·머리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막대기·야전삽·총기 등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가혹행위”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 언어추행은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심한 심리적 충격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문서 등의 수단을 이용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행하여야 하며,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을 은닉할 때에는 사고자 및 관련자를 가중처벌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을 위한 장병 의식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병영저변의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유발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
 3.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병영생활 시설 및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에 관한 관심을 유도·진작시키기 위한 홍보
- 제24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군기 사고”란 성을 매개로 한 군 기강 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그 밖에 성군기 위반사고를 말한다.
2. “성범죄”란 「형법」, 「성추행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군형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형벌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행위(강간, 강제추행, 간통, 혼인빙자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추행, 성매매 등)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제1호와 관련된 “성군기 위반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별 차이로 복무·근무평가·근무조건, 사기·복지 등에서 불이익과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다. 성희롱 행위자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압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고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성군기 위반사고”란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는 경우 등 공소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사고나 그 밖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한 성관련 사고를 말한다.

7 2012. 11. 23.자 12-진정-0491600 결정 [군대 내 집단 구타 및 의료조치 미흡 등]

【결정사항】

육군 00사단장에게, 피진정인 5·6·7에 대하여 각각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피진정인 8에게 ‘주의’조치 및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의무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해당 부대의 지휘책임자들은 소위 ‘생일빵’이라는 악폐습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는 등 부대관리를 소홀히 하고, 관심병사에 대한 신상관리에 미흡하였으며,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 【2】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와 질병을 입었으나, 부대 지휘관은 피해자의 가족이 요구할 때까지 간단한 치료 외에 다른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최초 진료한 군의관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피해자의 치료를 적절하게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3】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및 피해자의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권리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참조조문】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부대관리훈령」 제15조(정의) 및 제26조(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별표1

【진 정 인】 김○○

【피 해 자】 김○○

- 【피진정인】** 1. 김○○ 2. 유○○ 3. 김○○ 4. 김○○
5. 승○○ 6. 강○○ 7. 김○○ 8. 문○○

【주 문】

1. 육군 제00사단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진정요지 나.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5, 6, 7에게 각각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진정요지 라.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8에게 ‘주의’조치 및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의무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진정요지 가, 다, 마.는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육군 제00사단 00포병대대 알파포대(이하 ‘알파포대’) 대원으로 군 복무 중이던, 2012. 5. 13. 위 생활관에서 동료인 피진정인 1, 2, 3, 4로부터 일명 ‘생일빵’이라는 이유로 팔, 다리, 허리, 배 등을 100여대 폭행당하였고, 방탄모로 머리를 5회 정도 폭행당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3은 근무 투입 중인 피해자에게 “왜 절뚝거리냐”면서 군용장비인 진압봉으로 허벅지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나. 포대장(중대장)인 피진정인 5와 대대장인 피진정인 6은 2012. 5. 14. 피해자가 샤워 중일 때 다른 병사가 피해자의 피명을 보고 이 사실을 보고 하였으나 병원진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약 45일 뒤인 2012. 6. 29.에서야 피진정인 5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구타 피해사실을 알려

와, 피해자 부모가 2012. 7. 2. ○○국군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병원진료를 받게 하였다. 이때 피진정인 5, 6 등은 피해자 부모에게 전화로 “팔을 몇 대 맞아 명이 조금 들었다”라고 하였으며, 피진정인 7은 “머리에 방탄모로 여러 번 맞았는데 함몰은 안 되었다. 사회에 나가면 더 큰 일도 있을 수 있다,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자 하였다.

다. 피해자의 부모는 사단장과 면담하면서, 철저한 수사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부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진정 부대 측은 피해자 부의 전화번호를 가해자 측에 유출하였다.

라. 피진정인 8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병원에 가거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4. 피해자가 물체에 부딪쳐 다친 것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급급하며 의료조치를 부실하게 하였다.

마. 피진정인 1, 2, 3, 4등은 자체 처분을 받고 피해자에게 “나는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 몸조심해야 된다, 우리 집에는 돈이 많으니까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등 사후 협박까지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련자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진술요지

1) 피해자는 2012. 5. 13. 21:00경 알파포대 생활관에서 병사 약 19명이 모여 소위 ‘생일빵’이라는 명목으로 피진정인 1, 2, 3, 4로부터 약 100대 가량 머리, 양팔, 다리, 등을 15분간 구타당하였다. 피진정인 1은 주먹으로 왼쪽 팔을 20대 가량, 발로는 무릎과 종아리를 20여대 때렸고, 피진정인 2는 주먹으로 오른쪽 팔을 2회, 방탄모로 정수리 부위를 4~5회

때렸으며, 피진정인 3은 주먹으로 좌측 팔을 30대, 발로는 팔과 옆구리 부위를 20여대 폭행하였다. 또한 당일 21:40경 근무투입 중 진압봉(5cm×60cm)으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였다. 피진정인 4는 피해자의 이마에 딱밤을 2회 때렸다.

2) 분대장 상병 홍○○, 병장 김○○ 등 선임병이 피해사실을 보고 하지 말라고 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못하였으나, 2012. 5. 14. 18:00경 목욕탕에서 샤워 중 다른 포대 병장 조○○가 피해자의 명자국을 목격하고 당일 당직사령 대위 박○○에게 보고하였고, 2012. 5. 15. 아침 알통 구보 시 상병 홍○○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예정되지 않은 위병소 근무를 지시한 사실을 당직사령이 알고, 상의를 탈의시켜 이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 2012. 5. 15. 피진정인 5가 출근하여 피해자와 관련 병사를 불러 피해사실 등을 조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3) 사건 발생 이후, 피진정인 5, 6등이 각각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말라”라고 한 바 있다. 구타를 당한 후, 머리, 팔, 다리, 무릎, 옆구리 등이 아팠으나, 표면적으로 양팔에 명자국만 있어, 지휘관이나 간부들에게 별도의 의료조치를 요청하지 않았고, 지휘관들도 의료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2012. 7. 2. 국군○○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 전까지 군의관이나 의무실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군의관인 피진정인 8은 순회진료를 하여 피해자의 상처를 진료하고 처방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4) 피진정인 1, 2, 3등이 영창을 가기 전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게 와서 “○○아 ○○이가 네 집 주소 외웠다, 전화번호도 외웠다, 제대하고 네가 오지 말아야 할 곳은 ○○도, △△도, 서울 등이다”라고 협박하였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김○○, 당시 같은 부대 병장)의 주장

피진정인 1은 2012. 5. 13. 21:00경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생일파티

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과자를 한가득 넣어준 뒤, 팔뚝을 약 30대 가량 때렸고, 발로 하체부위를 10대 가량 때렸다. 피해자에 대하여 사후 협박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유○○, 당시 같은 부대 일병)의 주장

2012. 5. 13. 21시경 소대원들이 PX에서 과자를 사와서 ‘용서와 화해’시간에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먼저 “생일빙인데 때려도 되니? 때려도 돼?”라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6대 정도 때렸고 피해자의 머리를 방탄모로 가볍게 5회 정도 툭툭 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계속 아프다는 얘기를 하였으나 살려달라는 이야기는 없었다.

3) 피진정인 3(김○○, 당시 같은 부대 일병)의 주장

2012. 5. 13. 21:00경 알파포대 생활관에서 약 20명 가량 모여, 피해자의 생일 축하를 위한 다과를 하였는데, 피진정인 1, 2와 함께 본인도 주먹으로 약 20대를 때렸고 일부 조금 세게 때린 것도 인정한다. 점호가 끝나고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중앙현관에 서 근무지 투입 중인 피해자가 선임보다 늦게 준비하여 현관에 걸려 있던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볍게 치면서 “선임들이 기다리잖아”라고 하였다. 악의로 때린 것은 아니고, 생일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장난스럽게 시작한 것이며, 피해자에 대하여 사후 협박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다.

4) 피진정인 4(김○○, 당시 같은 부대 일병)의 주장

피진정인 4는 피해자의 후임병이며, 오른손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딱밤 1회 때렸을 뿐이다.

5) 피진정인 5(송○○, 당시 소속부대 포대장, 대위)의 주장

가) 사건인지 및 의료조치에 대하여

2012. 5. 13. 폭행사건 발생 시 휴가 중이었고, 5. 15. 01:30경 당직사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건을 인지하였다. 같은 날 07:00경 출근하여 관련자 및 부대원들을 개별적으로 조사를 했고 13:30경 대대장인 피진정인 6에게 “집단성·고의성이 보이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하였는데 피진정인 6은 알았다고 하였다. 이후 조치는 대대장의 권한이다.

2012. 5. 14. 연대 군의관 순회진료 시 피해자는 타박상으로 약 처방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팔이 멍들어 있어 확인하니 타박상이라고 하였고 움직이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대대 의무병에게 진료를 받게 하였으나 관련 약품은 없다고 하여 하사 전○○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바르는 약을 주도록 지시 및 확인하였다. 2012. 5. 16. 아침 피해자의 상태 및 진료사실을 확인하였고 2012. 5. 17 연대 순회진료를 또 받도록 해주었으나 연대 순회진료가 취소된 바 있다.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했으며 2012. 5. 22. 동원훈련 때 연대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한바 이때 군의관은 거의 나왔고 이상 없다고 했으며, 피해자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

나) 피해자 가족 통보에 대하여

피진정인 5는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팔 상태 등을 확인하고, 면담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하여 연락을 하지 않았다. 대대장인 피진정인 6이 피진정인 5에게 피해자 부모에게 피해사실 등을 알렸는지 물어보아, “피해자가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다며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였고, 대대장이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2012. 6. 29.경 가해자들이 구속되어, 더 이상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이 지연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일 전화로 통보하였다.

6) 피진정인 6(장○○, 당시 소속부대 대대장, 중령)의 주장

가) 사건인지 및 징계조치에 대하여

2012. 5. 13. 21:00경 포반 생활관에서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진정인 1, 2, 3, 4가 피해자를 구타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2012. 5. 15. 13:00경 피진정인 5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철저히 조사해서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2012. 5. 16. 피진정인 5가 “가해병사 3명이 피해자에게 팔, 어깨, 등 부위를 70여회에 걸쳐 주먹과 팔로 폭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직접 피해자를 면담해 보니 크게 위축된 상태가 아니었고, 큰 통증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2012. 5. 25. 대대장의 권한으로 가해자들에게 대하여 영창 15일 조치를 하고, 타 대대로 전출 건의하였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사건의 성격상 헌병대에 수사의뢰 등 형사처벌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 같아 지휘관으로써 책임을 느끼며 연대장인 피진정인 7에게는 2012. 5. 17. e-Mail을 통해 사건발생보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 가족 통보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은 피진정인 5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부모에게 연락을 원치 않았다고 하여 연락하지 않은 것이다. 2012. 6. 14. 이 사건 가해자들에게 대한 징계영창 적법성 심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사단 법무실에 상신하였는데, 사단 법무실에서 징계조치와 별도로 형사입건하여 2012. 6. 29.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피진정인 5가 같은 날 피해자의 부모에게 폭행 피해사실을 뒤늦게 알려주게 되었다.

다) 피해자 가족의 전화번호 유출에 대하여

피해자 부모는 2012. 7. 2. 사단장 면담 시 가해자 측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하였는데도 가해자 측의 전화연락이 와 사단장에게 항의를 하였다고 하여, 경위를 파악해 보니,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중령 이○○이 대대 인사담당관 하사 이○○에게 전화하여 사건 경위를 묻고 피해자 측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하사 이○○가 이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어떤 경위로 피해자 부모의 전화번호가 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평소 피해자는 생활전반에 이해도가 떨어지고 다른 병사들과의 단체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멘토 간부 및 병사를 지정하고, 소속 포대장으로 하여금 1일 1회 면담관찰하고, 대대장은 월 2~3회 직접 일대일 면담을 하는 등 A급 보호관심병사로 관리해 왔다.

7) 피진정인 7(김○○, 당시 소속부대 연대장, 대령)의 주장

연대장인 피진정인 7은 2012. 5. 25. 대대장 피진정인 6으로부터 병사 3명이 피해자를 집단구타 하여, 가해자들에 대하여 영창 15일의 징계조치를 하고 타 대대 전출을 건의한다는 문서보고를 받았다.

당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대대장이 가해병사들에 대하여 최고 징계인 영창 15일로 조치한다기에 결재를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에 대한 구타사건을 보았으면 더 중하게 처벌하였을 것이다.

2012. 6. 30. 대대장실에서 피해자의 부모 면담 시 본인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방탄헬멧으로 때린 것이 마치 경미하고 향후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단지 “죄송하다. 관련자는 처벌하겠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8) 피진정인 8(문○○, 당시 소속연대 군의관, 중위)의 주장

가) 피해자에 대한 순회진료 여부에 대하여

2012. 5. 14. 순회진료 시 피해자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 “팔이 좀 아프다”면서 팔을 보여주어, “뭐하다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 “물건에 부딪쳤다”고 하여 “물건에 부딪힌 것에 비하면 심한데 놀렀을 때 압통은 있느냐?”고 하였고 “압통이 있다”고 대답하여, “움직일 때 아프지 않냐?”고 하니 “심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타박상이 의심된다”고 얘기하면서 아프면 골절의심이니 다시 오라고 하면서 진료를 마쳤다.

나) 피해자 진단서 발급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은 사단 법무참모가 재판과 관련하여

“진단서 양식으로라도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하여 진술인이 연대에 들러 피해자의 진단서를 작성한 후, 법무참모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다) ○○대대 의무기록 미비 사유

○○대대는 전산 및 PC설비의 미흡으로 인하여 진료 시 eDEMIS system(의무기록시스템)이 지원되지 않고 있고, 당시 훈련기간 중이라 의무기록 작성이 힘들어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 평상시의 의무기록은 연대 eDEMIS를 바탕으로 기록하며 단순한 소독, 파스 배급 등 진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장기간의 훈련 또는 부재 시 및 Tel order인 경우에는 기록을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다. 참고인 및 관련자의 진술요지

1) 박○○ (대위, 제00사단 00연대 00대대 찰리포대장)

2012. 5. 14. 당직사관 근무하던 중, 조○○ 병장으로부터 “목욕할 때 보니 피해자의 팔뚝에 멍이 들어 있었다. 생일빵을 맞은 것 같다”라는 쪽지를 전달받고 생활관에 가서 피해자가 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알파포대장 피진정인 5에게 전화를 하여 구타사건 발생 사실을 알렸다.

당일 06:30분경 기상 후 알통구보 시 피해자의 멍을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점호에 나오지 않아서 당직 부관에게 피해자가 근무 투입 중인지 확인해 보라고 한 후, 위병소에 전화를 해보니 근무자가 아닌 데도 근무 중이었고, 점호를 끝내고 나서 위병소에 다시 전화해 보았더니 피해자가 근무하지 않고 있어, 점호가 끝나고 하사 전○○, 분대장 홍○○과 피해자를 지휘통제실로 불러서 생일빵이 있었는지 묻고, 피해자의 상의를 탈의시키고 당직부관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였다. 당일 07:00경 알파포대장이 부대에 들어오므로, 생일빵이 있었던 것 같으니 사실 확인해서 대대장에게 보고하라고 전달하였으며, 분대장 홍○○이 임의로 위병소 근무를 교대시켰다고 피진정인 5에게 얘기해 주었다.

2) 김○○(대위, 00사단 00연대 인사과장)

본인은 2012. 7. 2.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피해자의 병원진료를 위해 국군○○병원에 동행하였는데, 진료 중 피진정인 3의 모로부터 피해자의 부에게 전화가 온 것에 대해 피해자의 부가 매우 불쾌해하면서, 누가 가해자 측에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확인 결과 알파포대장 대위 승○○, 인사담당관 하사 이○○는 연락처를 알려 준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가해자의 모에게도 전화하여 확인하였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유출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이○○(중령, 국방부 ○○과)

참고인은 2012. 6. 29. 경 지인으로부터 동료의 아들이 구속이 되었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일 부대 인사담당관인 하사 이○○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경위와 피해자의 이름을 묻고, 가해자 부모에게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를 하라”는 조언을 해주려고 피해자 부모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하사 이○○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부모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

4) 이○○(하사, 00대대 인사담당관)

2012. 6. 29.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심사 후, 13:23경 국방부 중령 이○○으로부터 부재중 전화 1통과 연락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전화를 하였더니 사건경과에 대해 물어봐서 가해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알려주었는데, 같은 날 13:39경 중령 이○○이 가해자 일병 김○○의 모친 전화번호를 물어보아 알려주었고, 피해자의 이름을 물어보아 알려주었으며, 2012. 7. 3. 10:59경 또 다시 전화하여 가해자 모의 전화번호를 메시지로 요청하여 알려주었고, 또한 피해자 부모의 번호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부모 전화번호는 알려 줄 수 없다”라고 대답해 주었을 뿐, 본인이 피해자의 부모 전화번호를 알려 주지는 않았다.

5) 홍○○(상병, 00대대 알파포대 분대장)

2012. 5. 13. 저녁 피해자의 폭행에 가담한 사람은 피진정인 1, 2, 3, 4였고, 익일 5. 14. 당직은 찰리포대장이었는데, 분대장으로서 긴급하게 보고하여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음 날 아침에 직속 포대장인 알파포대장에게 보고 하려고 하였다. 5. 15. 기상 후 06:30분에 알통구보를 하는데 피해자 몸의 멍자국을 찰리포대장이 알아볼 것 같아, 피해자를 알통구보 할 때만 20분 정도 위병소 근무를 보냈다. 찰리포대장이 평소 부대원들에게 엄격했으므로 알게 되면 좋지 않을 것 같았고, 직속상관도 아니므로 나중에 알파포대장에게 보고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진술인은 이를 이유로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받았다.

6) 설문응답자(익명, 제00사단 00연대 00대대 알파포대 병사 16명)

생일빵 관련 피해사실에 대한 익명 설문 실시 결과 16명 중 4명이 소속 부대 내에서 이 사건 외 생일빵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16명 중 1명은 자신의 생일에 생일빵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현재 병영 내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 등 병영 부조리가 남아 있다고 답한 인원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알파포대원 연명부, 피해자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문답서), 참고인(관련자) 진술서, 육군 제0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판결문, 제00사단 보통검찰부 폭행사건 발견 보고서, 관련자 진술조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병영악폐습행위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사본, 신인성검사 결과보고서, 소원수리서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 2012 1/4분기 부대 안전평가 결과보고서, 2/4 사단병력결산 보고서, 2012. 1월 병력결산 보고, 피해자 인사기록부 및 면담(관찰)기록부 사본, 최근 1년 간 포대별 징계기록 사본, 징계관련 기록 사본, 최근 1년 간 사고예방 관련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사본, 피해자 마음의 편지 사본(2012. 3. 5.), 외래진료 의뢰 및 진료결과 회신지, 소견서(○○병원), 진단서(○○병원), 진단서(국군○○병원 대위

최○○, 신경외과), 진단서(국군○○병원 대위 조○○, 정신과), 진단서(국군○○병원 대위 정○○, 정형외과)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11. 7. 12. 입대하여 2011. 9. 9. 알파포대에 전입하였고, 2012. 1. 5. 실시한 新인성검사에서 부적응 및 ‘사고예측 관심’ 판정을 받아, A급 관심병사로 관리되어 온 바 있다.

나. 피진정인 1은 2012. 5. 13. 21:00경 포대 생활관에서 속칭 ‘생일빵’이라는 명목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양팔을 약 40대 가량 폭행하였고, 피진정인 2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팔, 다리를 약 7회 가량 때렸으며, 피진정인 3은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양 팔을 약 50대 가량 폭행하였고, 피진정인 4는 피해자의 이마를 오른손 중지손가락으로 1회 폭행하여, 피진정인 1, 2, 3, 4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군의관 소견)의 치료가 필요한 양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진정인 5는 2012. 5. 15. 조사를 하여 대대장인 피진정인 6에게 발생보고하고, 피진정인 6은 2012. 5. 25.경 연대장인 피진정인 7에게 보고하였으며, 2012. 5.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영창 15일의 징계 결정 후, 2012. 5. 29. 제00사단 법무부에 적법성심사를 요청하여, 2012. 6. 14. 적법통보를 받고, 이 과정에서 제00사단 검찰에서 공동상해죄로 인지하여, 2012. 6. 29. 피진정인 1, 2, 3을 구속 기소하였다.

다. 피진정인 5, 6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발생 후, 약 1개월 15일 간 피해자의 부모에게 폭행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적절한 의료적 처우에 미흡하였고, 피해자는 2012. 7. 2.경에야 진정인 등 가족들의 요구로 군병원 등을 방문하여 병원 진료를 받게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2. 7. 2. 국군○○병원에서 ‘(의증)적응장애’ 및 ‘슬관절 대퇴골 원외부 골타박상, 양측 슬관절 연골판의 경한 퇴행 변화 등’의 진단을 받고, 2012. 7. 9. 인천광역시 ○○병원에서 ‘양측무릎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양측무릎의 내부이상, 내측반달연골’ 및 ‘MRI 상 우측

대퇴골 내과 부위에 골타박상 아직 심한 상태며(이는 구타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임) 양측 무릎부위는 최대한 안정을 요하며 무리한 훈련이나 운동 시 파열위험성이 높은 상태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국방부 ○○ 소속 중령 이○○은 2012. 6. 29.경 피해자의 소속 대대 인사담당관 하사 이○○에게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부모의 연락처를 조회한 바 있고, 2012. 7. 2. 가해자인 피진정인 3의 모가 피해자의 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

바. 피진정인 8은 연대 군의관으로서 2012. 5. 14. 순회진료 시 피해자에 대해 진료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00대대가 eDEMIS system(의무기록 시스템)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피해자에 대한 해당일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로, '물체에 부딪쳐 내원, 골절의 가능성은 낮으므로, 타박상에 준해 치료, 연고제제로 3주 간 치료'라는 내용의 사후 진단서를 2012. 6. 27. 작성하여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진정인 1, 2, 3은 이와 관련 2012. 6. 14. 영창 15일, 피진정인 4는 2012. 6. 28. 휴가제한 5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피진정인 1, 2, 3은 2012. 6. 29. 제00사단 보통검찰부에 의해 기소되어, 2012. 7. 18. 피진정인 1, 3은 각 벌금 2,000,000원, 피진정인 2는 벌금 1,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4. 판단

가. 폭행 행위 및 처벌에 대하여,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타·가혹행위를 한 행위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의 인정 사실과 같이 가해자들이 각 영창 15일, 휴가제한 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군 수사를 통하여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벌금 2,000,000원 등의 확정 판결이 선고된바, 이 항 피진정인 1, 2, 3, 4에 대한 진정요지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기각한다.

나. 지휘 감독책임 관련자들의 보호조치 미흡에 대하여,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2항은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15조 제1항은 ‘지휘·감독 책임이란 사건·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지휘·감독 대상 인원의 비위사실 등 과오·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6조 제5항은 ‘지휘관은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첫째, 피진정인 5가 피진정인 6, 7에게 순차적으로 사건발생보고를 하였다. 이후 가족에 대한 연락 부분은 비록 피해자의 원에 의해 가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다고 하나 피해자가 A급 관심병사였는바 지휘관의 판단으로 가족연락을 취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건 발생 45일 후에야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진료가 늦어지고, 의료 및 법률적 대응에서 가족들의 보호와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둘째, 피해자는 2012. 1. 5. 실시한 ‘신인성검사’에 의해 이미 A급 관심병사로 지정되어, 매일 부대 안정성 평가와 병력결산 시 ‘2주 1회 전화통화 등 가정과 연계한 신상관리’ 조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2012. 4. 27. 이후 2012. 5. 31.까지의 면담(관찰)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셋째, 가해자들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상해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임에도, 피진정인 5, 6, 7등은 행정처분으로써 징계조치하였다가, 사건 발생 약 1개월이 지나서 사단 보통검찰부가 자체 인지하여 기소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해당 부대의 지휘책임자들이 소위 ‘생일빵’이라는 악폐습 행위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는 등 부대관리를 소홀히 하고, 관심병사에 대한 신상 관리에 미흡하였으며,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등 관련 규정상 책임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7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발언의 인권침해성에 대하여는 발언 취지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주장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부의 전화번호 유출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의 소속 부대 측에서 가해자 측에게 피해자 부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대 등 관련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 및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유출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 항 진정요지는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한다.

라. 진료기록 누락 및 적절한 의료조치 등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가 폭행 피해 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단서가 허위로 발급되었으며, 피해자가 진단받은 타박상은 물론, 양측 무릎 연골의 퇴행변화, 적응장애가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당사자 및 관련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타박상 외의 적응장애 및 양측 무릎 연골의 퇴행변화 증세가 가해자들의 폭행에 기인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인과관계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그 직접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최소 3주에서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적응장애, 양측 무릎연골의 퇴행 변화의 상해와 질병을 입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가족이 요구할 때까지 피진정인 5, 6, 7 등 부대 지휘관은 타박상에 대한 간단한 치료 이외 다른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최초 진료한 군의관 피진정인 8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진료기록을 남기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적시에 적절하게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는 피진정인 8이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군보건의료인의 진료기록 작성의무’와 「군의무기록관리 훈령」(국방부 훈령)상 제대별 의무기록 서식 비치기준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가해자의 협박행위에 대하여,

진정인 및 피해자는 폭행 가해자들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을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나 가해자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군 수사과정에서도 협박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사실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항 진정요지는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양현아 위원 한위수

【별 지】 관련규정

1.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①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②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15조(정의) ① “지휘·감독 책임”이란 사건·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지휘·감독 대상 인원의 비위사실 등 과오·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제26조(위반자에 대한처리지침) ① 지휘자를 제외한 병사 사이에서 명령, 지시를 한 경우나 이를 묵인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한다.

② 구타·가혹행위자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징계처벌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와 경미한 구타·가혹행위도 처벌한다.

③ 집단따돌림(일명 ‘왕따행위’를 말한다) 등 인격적 모독과 고통을 가한 경우 주모자와 적극가담자는 처벌한다.

④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⑤ 지휘관은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4.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 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별표 1] 제대별 의무기록 서식 비치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의무기록서식종류	병원급 (이동외과 포함)	사(여)단·함 대·전투비행 단급 의무실	연대·독립 대대급 이하 의무실
진 료 기 록	• 병상일지 표지	○		
	• 퇴원요약지	○		
	• 진단, 처치, 수술기록	○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	○
	• 응급실기록지	○	○	○
	• <삭제,이동> • 입원기록지 ~~~~생 략~~~~	○		

8

**2012. 12. 18.자 12-직권-0001200, 12-진정-0527500(병합) 결정
[육군 제00사단 총기사망사건 및 폭행·가혹행위 직권조사 등]**

【결정사항】

- [1]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제00사단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사망자에 대하여 ‘순직’ 대상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
- [2] 육군 제00사단장에게, 0대대장의 병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등의 책임을 묻어 징계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총기사고 사망자인 피해자 1은 다수의 선임들의 구타·가혹행위 및 일부 후임병들의 막말과 불손한 태도 등에 대하여 제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였는바, 해당 부대는 구타·가혹행위 방지, 사고예방 관리, 보호관심사병제도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1의 부대생활에서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1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 [2] 대대장의 임무수행 중 욕설 및 일부 장병에 대한 구타는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 [3] 대대장이 부하들의 동의 없이 간부체력 측정 미달자들에게 벌금을 거출한 행위는 비록 사후에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에 유래하는 해당 간부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 [4] 연대장이 간부들에게 메일을 보내 사고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사안에 대하여, 대대장이 본인에게도 같은 메일을 보내라고 지시한 행위는 소속 해당간부들에게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제12조·제18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8조·제15조,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36조·제243조

【진정인】 권○○

【피해자】 제00사단 00연대 0대대 0중대 故박○○ 일병(20세)

【피진정인】 최○○(대대장)

【주 문】

1. 육군참모총장에게, 2012. 6. 00. 육군 제00사단 00연대 0대대(이하 '대대')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사망자에 대하여 '순직' 대상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한다.
2. 육군 제00사단장에게, 0대대장(이하 '대대장')의 병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행위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할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사건(12진정0527500)과 관련하여,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대대장(0대대장)의 축소·은폐 제기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I. 조사의 배경

가. 2012. 6. 00. 육군 제00사단 00연대 0대대에 근무하는 장병이, 부대내에 총기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전후로 대대장이 소속 부대 장병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심지어 마대자루로 폭행을 가하였으며, 사망자에 대한 상급부대의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이 진정 건은 익명으로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각하 대상이나, 그 진정내용에 있어 대대장의 인권침해행위와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그 상당성과 생명권 침해의 발생이라는 중대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하기로 결정하였다(이후, 대대장이 부대내 총기 사망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요지로 진정이 접수되어 이를 본 직권조사와 병합하였다).

II. 조사 결과 및 판단

1. 총기 사망사고 관련

가. 사건개요(12진정0527500, 12직권0001200 병합)

- 1) 진정인 : 권○○
- 2) 피진정인 : 최○○(대대장)
- 3) 피해자 1 : 제00사단 00연대 0대대 0중대 故박○○ 일병(20세)
 - 사망일시 : 2012. 6. 00. 05:10
 - 사망장소 : 경기. ○○. ○○. ○○리 소재 소속부대 탄약고 초소
 - 사망개요 : 피해자 1 故 박○○ 일병이 이병 김○○과 함께 소속 부대 탄약고 경계근무 중, 이병이 목에 휴대하고 있던 탄통 하단 열쇠를 가져간 뒤 보통탄 1발을 꺼내 장전한 뒤 자신의 턱 부위에 총구를 대고 발사하여 두부관통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가해병사 현황(피해자 사망 당시 기준임)

- 가해자 1 : 전○○(상병, 00연대 0대대 0중대)
- 가해자 2 : 김○○(병장, 00연대 0대대 0중대)
- 가해자 3 : 조○○(상병, 00연대 0대대 0중대)
- 가해자 4 : 이○○(상병, 00연대 0대대 0중대)

다.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 현황

- 관련자 1 : 김○○(상사, 00연대 0대대 0중대 행정보급관)
- 관련자 2 : 김○○(중위, 00연대 0대대 0중대 0소대장)
- 관련자 3 : 이 ○(대위, 00연대 0대대 0중대장)
- 관련자 4 : 최○○(중령, 00연대 0대대장)
- 관련자 5 : 서○○(대위, 00연대 0대대 0중대장, 사고 당시 당직자)
- 관련자 6 : 장○○(중사, 00연대 0대대 0중대 부소대장, 당직자)
- 관련자 7 : 김○○(중사, 00연대 0대대 0중대 부소대장)

라.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주장요지

1) 가해자들의 진술

가) 가해자 1(상병 전○○, 22세)

(1) 2012. 6. 00. 부대 총기로 자해 사망한 피해자 1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헌병대 등의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왼쪽 뺨을 때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방탄모 부분을 1회 툭 친 정도이다. 또 뺨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뺨을 손바닥으로 미는 정도였다. 피해자 1에게 “이 초코칩 같이 생긴 놈아 먹어라”라는 말은 한 적도 없다. 악의를 가지거나 고의로 강하게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폭행을 한 것은 아니고 장난 식으로 가볍게 치는 정도였으며,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1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외 피해자 1에게 다른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2012. 6. 10. ~ 6. 27. 에 피해자 1에게 자신이 구입한 과자를 허락 없이 먹는다는 이유로 7차례에 걸쳐 “이 새끼야 미쳤구나” 등 욕설과 함께 손바닥과 발로 얼굴부위 등 총 10여대 폭행하고, 피해자 1에게 가벼운 장난 식으로 언어폭력을 하였다.

나) 가해자 2(병장 김○○, 23세)

2012. 5월 중순 ~ 6. 23. 사이에 피해자 1이 후임병사 박○○을 폭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팔 부위를 약 10회 폭행하였다.

다) 가해자 3(상병 조○○, 22세)

2012. 6. 26. 점호 전 생활관에서 피해자 1의 팔, 몸 등을 약 10분 간 폭행하였다.

라) 가해자 4(상병 이○○, 22세)

2012. 5. 15. 정기휴가를 출발하는 피해자 1이 사제(私製) 전출화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사망자 허벅지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마) 기타 부대원의 진술

다수의 선임병들이 친근감 표시 등으로 피해자 1에게 지나친

장난(암바 : 팔 꺾기)과 외모비하(짱구, 초코칩 같다 등) 및 신체 접촉(주먹 등으로 툭툭 치는 행위) 행위가 있었으며, 일부 후임병들도 피해자 1에게 막말과 불손한 태도를 보인바 있다.

2) 소속 지휘관들의 부대 운영 관련 진술(육군 제00사단 헌병대 작성 '중요사건보고' 등 참고)

가) 주간단위 설문은 매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2. 4. 9. 이후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설문 수리과정에서 일부 감독상의 허점이 발생한 아쉬움이 있다.

나) 피해자 1은 부모 등 가족 구성원 문제 등에 대하여 지휘관에게 허위보고를 한 바 있다. 또한, 개인의 2011. 8. 2. 000보충대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검사 결과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되고 정밀진단이 필요하며 군생활에 어려움과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이 예측된다는 판정을 받은바 있다.

2011. 8. 13. 제0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실시한 '육군개안안전지표' 진단 결과 1차 우울증, 2차 우울증 가능성으로 판정 받았고, 소속 중대 전입 후인 2012. 3. 15. 'KIDA신인성검사' 결과 "앞으로 군생활에의 부적응이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며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은 보호관심사병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3) 대대장의 진술

자살사고가 발생한 6중대에서 2012. 4. 9.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매주 실시하는 설문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병영 부조리는 설문조사에서만 식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대정밀진단이나 간부 면담 등을 통하여 더 많이 식별되며, 0중대의 경우 유격훈련 이후 폭행 가혹행위를 식별하여 전○○ 상병을 징계 처리하기도 하였다.

마.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육군 제00사단 총기사망사건 및 폭행·가혹행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보고, 육군 제00사단 중요사건보고(일병, 대대 탄약고 경계근무 중 총기사망), 대대장, 관계인, 참고인 진술서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1은 2012. 6. 00. 05:10경 ○○도 ○○ 소재 제00사단 00연대 2대대 6중대 탄약고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 총기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 1의 총기사망사건 이후 제00사단은 2012. 6. 30. ~ 7. 2. 사고 소대 32명, 대대원 중 피해자 1과 동향인 병사 6명 등 총 38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가해자들 및 부대 선임과 일부 후임병들이 피해자 1에게 행한 구타·가혹행위 사실은 아래와 같다.

구분	조사 내용	관련증거
육설, 구타·폭행, 가혹행위 등	-가해자 1이 2012. 6. 10. ~ 6. 27. 에 피해자 1에게 자신이 구입한 과자를 허락 없이 먹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이 새끼야 미쳤구나” 등 육설과 함께 손바닥과 발로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함. -가해자 2가 2012. 5월 중순~6. 23. 사이에 피해자 1이 후임병사 박○○을 폭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팔 부위를 약 10회 폭행함 -가해자 3은 점호 전 생활관에서 피해자 1의 팔, 몸 등을 약 10분 간 폭행함. -2012. 5. 15. 정기휴가를 출발하는 피해자 1이 사제 진출화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사망자 허벅지 부위를 1회 폭행 -다수의 선임병들이 친근감 표시 등으로 피해자 1에게 지나친 장난(암바 : 팔 쥐기)과 외모비하(짱구, 초코칩 같다 등) 및 신체 접촉(주먹 등으로 툭툭 치는 행위) 행위 함. -일부 후임병(일병 박○○, 임○○, 이○○)들도 피해자 1에게 막말과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등 병 상호간에 위계질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가해자 진술서 -가해자 징계 관련 서류 -총기사망사건 관련 제00사단 5부 조사결과 보고서 -부대원 진술서 -관련자 진술서

라) 총기사망사고 관련 제00사단 5부(인사, 감찰, 헌병, 군수, 교육 훈련) 합동조사 이후 관련 가해병사들인 상병 전○○ 등 4명은 영창 등 징계조치를 받았다.

마) 피해자 1은 2011. 8. 2. 000보충대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검사’, 2011. 8. 13. 제0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실시한 ‘육군개인안전지표’, 2012. 3. 15. 실시한 ‘KIDA신인성검사’ 결과 “앞으로 군생활에의 부적응이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며,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은 보호관심사병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바) 피해자 1의 소속 부대는 마음의 편지 등 주간단위 설문을 2012. 4. 9. 이후로 실시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진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구 분		계급	성명	징계유형
관련자 4	대대장	중령	최○○	견책(징계유예)
관련자 3	0중대장	대위	이 ○	근신5일(징계유예)
관련자 2	0중대 0소대장	중위	김○○	감봉3월(00사단전출)
관련자 1	0중대 행정보급관	상사	김○○	견책
관련자 5	0중대장	대위	서○○	혐의없음
관련자 6	0중대 부소대장	중사	장○○	근신3일
관련자 7	0중대 부소대장	중사	김○○	견책

사) 피해자 1의 총기 사망사고 관련으로 제00사단 5부 합동조사 이후 관련 지휘관의 징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판단

가) 이 사건 피해자 1의 2012. 6. 00. 05:10경 총기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00사단 5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 1이 부대생활에서의 구타·가혹행위를 당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부대의 병영부조리를 조사하여 상기 인정사실 다), 마), 바)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관련 지휘관에 대해서는 인정사실 사)와 같이 징계 조치를

하였으며, 관련 병사들은 인정사실 라)와 같이 영창 등의 징계조치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 1의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한 지휘관 및 부대원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총기사고 사망자인 피해자 1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소속 중대에서 다수의 선임들에 의해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일부 후임병사들이 막말과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구타·가혹행위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한 마음의 편지 등의 부대생활에서의 애로사항 및 고충에 대한 신고에 대한 제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 1은 보호관심병사 제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부대 내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방지, 마음의 편지 등의 사고예방 관리, 보호관심사병 제도 등의 업무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에서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1의 부대생활에서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해당부대에서는 「군인사법」 제47조2, 「군인복무규율」 제15조, 「부대관리훈령」 제3장(군기사고 예방)의 제236조(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 및 제4장의(자살 예방) 제243조(자대복무단계 식별)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군 내 구타·가혹행위 및 자살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엄정히 처리할 지휘·감독의무 및 집행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1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이에 따라, 향후 피해자 1의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개최 시 피해자 1이 국방부 「전공 사상자 처리 훈령」 제3조에 따른 “군내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병사는 순직처리” 등 적절한 조치와 더불어, 본 사건과 같은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00사단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마음의 편지 등의 사고예방관리, 보호관심사병사 지정제도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대대장의 욕설·폭행행위 및 독단적 부대운영 관련

가. 가해자 : 0대대장

나. 피해병사 현황

- 피해자 2 : 강○○(병장, 00연대 0대대 0중대, 현재 전역)
- 피해자 3 : 신○○(병장, 00연대 0대대 0중대, 현재 전역)
- 피해자 4 : 정○○(병장, 00연대 0대대 0중대, 현재 전역)
- 피해자 5 : 정○○(상병, 00연대 0대대 0중대, 현재 0대대 0중대)
- 기타 피해자 : 대대장 부대(0대대) 장병

다. 관련자 현황

소 속	성 명	비 고
육군 제00사단 00연대 0대대	강○○, 김○○, 김○○, 남○○, 박○○, 서○○, 연○○, 오○○, 오○○, 이○○, 이 ○, 전○○, 정○○, 조○○	가나다 순

라. 당사자 및 관련자 등의 주장요지

1) 피해자 진술

가) 피해자 2 : 강○○(병장, 00연대 0대대 0중대, 현재 전역)

피해자 2가 2012. 3월경 방탄모를 쓴 상태에서 대대장이 마대자루를 빼서 방탄모를 세계 1회 때려 마대자루가 부러졌다. 당시 머리가 멍했으며, 엎드려뺨쳐를 시키고, ‘이 새끼, 저 새끼’ 욕설을 하고 ‘죽여 버린다, 발목 잘라버린다’고 하였다.

나) 피해자 3 : 신○○(병장, 00연대 0대대 0중대, 현재 전역)

2012. 5월경 당시 피해자 3은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그냥 서있는 상태에서 대대장이 대빗자루를 부러뜨린 막대기로 위협만 하였으며, 대빗자루로 때렸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다. 당시 야광봉(지름 5~6mm, 길이 15cm 정도) 3~4개를 모아 방탄모를 때렸지만 아프지 않았다. 맨주먹 또는 맨손으로 약간 세계 방탄모를 3~4회 때려 머리가 조금 멍한 정도였으나 아프지는 않았다. 당시 대대장이 ‘이 새끼, 저 새끼, xx놈아’ 등의 심한 욕설을 하였다.

다) 피해자 4 : 정○○(병장, 00연대 0대대 0중대, 현재 전역)

대대장은 피해자 4가 2012. 4월경 음주소란으로 대민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대대장실 앞에서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엎드려뺨쳐 자세로 약 5분 정도 있게 하였는데, 자꾸 넘어지자 완전군장을 착용한 그대로 머리박고 엎드려뺨쳐 자세로 약 5분 정도 있게 하였으며 또 옆으로 넘어지자 똑바로 하라며 전투화를 신은 발로 군장 뒷부분을 한 번 차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5

2012. 4월경 피해자 4와 외박을 나가서 0중대장이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고 같이 저녁식사와 술을 마신 후 ○○○사우나에서 잠을 잤는데 23:30경 피해자 4가 사우나 업주와 “여탕을 갔냐, 안 갔냐”라는 이유로 다툼을 하여 부대로 복귀하였다. 다음 날 09:00경 대대장이 피해자 4와 본인을 대대장실 앞 진지로 불러 완전군장 상태로 다리를 진지에 올리게 하는 엎드려뺨쳐를 10분 정도 시켰고, 머리를 땅에 박은 엎드려뺨쳐를 7분 정도 시켰다. 당시 대대장이 똑바로 못하냐면서 발로 엉덩이를 한 대 췌 가격하였으며 이를 8중대장이 목격하였다. 이후 10:00부터 22:00까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았고 피해자 4는 2일을 더 돌았다.

간부 체력측정 미달자에게 1,000원을 거출한 걸로 알고 있으며, 대대장이 마대자루로 방탄모를 쓴 피해자 2를 때리고, 다시 취사장을 가면 발모가지를 잘라 버린다고 얘기하였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또한, 피해자 3이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대대장에게 맞았다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2) 관련자 진술

가) 관련자 1

대대장이 0중대 김○○ 상사에게 0중대 소대장인 이○○ 중위와 평소 친분 있게 지내고 격을 두지 않고 언행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대대장실에서 폭언·욕설을 했다고 들은 적이 있고, 대대장이 0중대 김○○ 중사에게 위 김○○ 상사와 동일한 이유로 대대장실 또는 0중대에서 폭언·욕설을 하였다고 들었다.

대대장이 피해자 2가 성군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취사장에서 마대자루를 부러뜨린 후 방탄모를 쓰게 한 후 세계 내려쳐서 마대자루가 부러졌었다고 들은 바 있고, 간부들 중 체력측정 기준 미달자에게 푸쉬업, 윗몸일으키기 1회당 1,000원씩 걸었다고 들었다.

또한, 대대장이 0대대 간부들에게 인트라넷을 이용해 마음의 편지 메일을 보내라고 하였는데, 대대장이 지원과장·중대장에게 간부들이 보낸 메일 내역을 출력하여 가져오게 지시하여 간부들이 연대장에게 보낸 메일을 출력하여 지원과장·중대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관련자 2

간부체력 측정은 2012. 5월경에 실시하였다. 측정기준 미달자에 대한 벌금 거출지시는 대대장이 하였는데 간부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중대별 벌금 거출자는 행정보급관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어떤 중대는 총 13명중 00명에게서 00만원 거출하였는데 2~3일 후 당사자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다) 관련자 3

연대장이 직접 간부들에게 메일을 보내 2012. 6. 00. 0대대 0중대에서 발생했던 총기 자살사건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부대의 강·약점,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대대장이 지시에 의해 간부들의 마음의 편지 내용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간부들의 체력 수준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 중간점검 과정에서 기준 미달자에게 조금 더 자극을 주기 위해 미달한 만큼의 벌금을 거출하였다. 당시 간부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했던 사실은 없었으며, 벌금은 다시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라) 관련자 4

피해자 4 및 5는 사복착용으로 대대장에게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으며, 피해자 3은 대대장이 완전군장 착용에 방탄모를 쓴 머리를 맞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대장의 마음의 편지 메일 작성과 관련하여 대대장이 중대장들에게 종합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여 간부들의 마음의 편지를 취합하여 보고·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마) 관련자 5

김○○ 중사가 이○○ 소위에게 반말조로 대화하는 모습을 본 대대장이 김○○ 중사를 불러 폭언을 하였다. 간부들 체력단련 관련하여 벌금을 걷은 사실이 있다.

훈련 중 피해자 3이 행군 간에 이○○ 소위와 손을 잡고 걷는 등으로 인해 대대장에게 심한 폭언을 들었으며 징계처분을 받았다. 연대장에게 쓴 마음의 편지를 중대장에게 그대로 복사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대대장이 지시하여 중대장이 취합한 걸로 알고 있다.

바) 관련자 6

총기사건 후 연대장의 지시로 마음의 편지에 부대의 강점, 개인고충, 애로사항 등을 작성하여 연대장에 보내고 바로 편지함을 삭제하였다. 메일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지도 않았고 출력한 적도 없다.

사) 관련자 7

간부 체력측정과 관련하여 중대별로 측정기준 미달자의 벌금을 지원과장에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

아) 관련자 8

2012년 7월경 연대장이 각 간부들에게 ‘마음의 편지’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어떤 내용의 메일을 보냈는지 물어보거나 출력하여 제출토록 한 사실은 없다.

2012. 5월경 사단 체력검정 실시 2~3주전 대대 자체 간부 체력 검정 연습을 하게 되자, 대대장이 “특급 기준미달자에 대하여 횡수당 1천원씩 벌금을 걷어라”라고 말하였다. 체력검정 연습결과를 체크하여 미달자들에게 1회당 1천원씩 총 00만원 가량을 걷었으나, 대대장이 본인들에게 돌려주라고 하였다. 금전거출 행위가 군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당시 알고 있었으나, 체력단련 동기부여 차원에서 실시한 것일 뿐, 사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

0중대 병사들이 외박 간 성군기 위반 문제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대대장이 해당 병사에게 욕설, 폭행, 부당한 일차리를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보거나 들은 적은 없다.

자) 관련자 9

2012. 5~6월 경 사단 체력검정이 실시 약 1주일 전에 대대장을 포함한 대대 전간부가 사열대 앞에 모여 연습을 한 적이 있다. 기준에 미달하면 횡수당 1천원을 걷겠다고 하였는데, 누가 말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본인은 연습이 끝난 후 미달한 만큼의 벌금을 냈고, 당시 돈을 걷으면서 어디에 사용하겠다고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반환해주겠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으나, 약 1~2일후 돌려받았다.

차) 관련자 10

피해자 1의 자해사망 사건 이후에, 대대장이 간부들을 모이게 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았으며, '기운 내서 잘해보자'라는 격려 취지의 말을 하였다.

카) 관련자 11

대대장이 병사들에 대하여 머리박기를 시켰다는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고, 연대장에게 보낸 메일을 다른 간부가 확인한 사실은 없다. 기타 달리 대대장의 부조리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은 없다.

타) 관련자 12

사단 체력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합격해야 한다. 합격은 특급, 1급, 2급, 3급안에 들면 되고, 불합격되면 재검을 받아야 한다.

올해 5월 ~ 6월경 연대장에게 애로 및 건의사항을 메일로 쓰라고 하였던 적이 있었고, 올해 초에는 메일이 아닌 종이에 써서 제출한 적이 있었다. 종이에 쓸 때는 따로 봉투에 봉해서 제출하지 않았고, 중대 행정반 책상에 모아 두면 담당자가 취합하여 대대로 제출하였다.

대대장이 간부나 사병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였다거나 폭언을 하였다는 등의 진정 관련된 내용을 듣거나 보지 못하였다.

파) 관련자 13

2~3개월 전, 연대장에게 애로 및 건의사항을 메일로 쓰라고 해서 썼는데 지원과장이 간부들의 메일을 일일이 확인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체력점검은 특급, 1급, 2급, 3급, 불합격이 있으며 승진점수에

반영된다. 1년에 2회 특정하며 기준에 미달하면 천원을 내야 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대대장이 하사들의 회식은 올해 7월경으로 기억되며 간부식당에서 했으나 대대장이 별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지 않으며, 자살사건 이후 대대장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차원에서 용사들 면담관리를 잘하도록 교육한 적은 있다.

장병들이 간혹 군장을 돌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대대장이 간부나 병사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보지 못하였다.

하) 관련자 14

2012. 3월경 취사장 내에서 성군기 위반과 금품수수 행위가 식별되었다. 피해자 2가 취사병인데 후임병들로부터 1~2천원 정도 갈취했다는 사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되었고, 선임병의 폭언사실도 확인되었다.

대대장이 피해자 2 등을 대대장실로 불러 완전군장을 시켜 세워두고, 피해자 2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 해보라고 하여, 피해자 2는 성군기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였지만, 금품은 일부 빌렸는데 곧 갚을 예정이라고 하자, 대대장이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 2가 쓰고 있는 방탄모를 가격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 피해자 2는 1천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성군기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2는 자체징계를 받고 영창을 다녀왔다.

0중대 행정보급관 김○○ 상사가 대대장실에 불려가서 욕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대장이 부대자랑이나 건의사항 등을 쓰라고 지시하여 대부분의 간부들이 인트라넷 메일로 작성했는데 대대장이 참모부 소속 지원과장에게도 메일을 한통 보내고 연대장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중대급은 중대장에게 메일을 한통 보내고 연대장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연대장에게 쓴 메일과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중대장이나 지원과장에게 보내라는 것이었고, 메일을 열람한 것은 아니다.

체력측정을 하는데 합격 기준에 미달이면 1회당 1천원을 받았

으며, 중대별로 걷어서 모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대장이 총기 자살 사고를 은폐하도록 지시하거나 교육한 사실이 없다.

3) 대대장의 진술

연대장 메일 내용 중 특이사항이 있으면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중대장에게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연대장에게 보내는 메일과 똑같은 내용으로 대대장에게도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0중대 김○○ 상사나 0중대 김○○ 중사에게 욕설을 한 적은 없고, 0중대 김○○ 중사를 대대장실로 불러 주의를 주면서 우유를 땅바닥에 던진 사실뿐이다. 0중대장이 이사를 한다며 병사 정○○과 정○○을 데리고 나갔는데 정○○과 정○○이 사우나에서 동네 어른들과 다툼이 있었다. 다음 날 출근하여 보고 받고 사단 ‘징계의결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주었다.

사단 체력검정을 1주일 남겨 놓고 대대 간부들의 체력점검을 해 보니 너무 기준 미달이어서 “기준 미달하는 만큼 돈을 모아서 회식이나 하시죠?”라고 하였는데 실제 돈을 걷었는지를 몰랐으나, 나중에 돈을 걷힌 것을 알고 나서는 돈을 돌려주라고 한 바 있다.

피해자 2에게 봉걸레 자루로 방탄모를 내려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2의 행위는 징계의결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체생활에서 용납될 수 있는 도를 넘어선 것이다. 피해자 2에게 사열대 계단 1개 높이로 다리를 올리게 하고 엎드려뺨쳐를 시켰다.

피해자 3에게는 정신 좀 차리라면서 방탄모를 양손바닥으로 덥석 잡은 사실은 있으나 가격한 것은 아니다.

마.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육군 제00사단 총기사망사건 및 폭행·가혹행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보고, 대대장, 관계인, 참고인 진술서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2. 1. ~ 7.까지 제00사단 00연대 0대대장인 대대장이 부대 장병에게 행한 욕설·폭행 및 독단적 부대 운영 관련 사실은 아래와 같다.

인권침해 내용	인권침해 관련 진술 내용	진술자
대대장의 욕설·폭행 등	- 피해자 2가 2012. 3월경 방탄모를 쓴 상태에서 대대장이 마대 자루를 빼서 방탄모를 세게 1회 때려 마대자루가 부러졌다. 당시 머리가 멍했으며, 옆드려뺨쳐를 시키고, '이 새끼 저 새끼'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 발목 잘라버린다'고 하였다.	피해자2
	- 대대장이 봉걸레 자루로 강○○이 쓰고 있는 방탄모를 가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 - 0중대 행정보급관 김○○ 상사가 대대장실에 불려가서 욕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관련자 1, 5, 14
대대장의 총기 사망 사고 축소 은폐행위	- 대대장과 하사들의 회식은 올해 7월경으로 기억되며 간부식당에서 했으나 대대장이 별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지 않으며, 자살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한 적이 없음. 단지, 자살사건 이후 대대장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차원에서 병사들 면담관리를 잘하도록 교육한 적은 있다. - 대대장이 총기 자살사고를 은폐하도록 지시하거나 교육한 사실 없다.	관련자 1, 3, 12, 13, 14
간부 체력 측정 기준 미달 횟수 당 1,000원 거출관련	- 간부들 중 체력측정 기준 미달자에게 푸쉬업, 윗몸일으키기 1회당 1,000원씩 걷었다고 들었다.	관련자 1, 2, 3, 5, 7, 8, 9, 14
	- 5월 간부체력 측정 시 측정기준 미달자에 대한 벌금 거출 지시는 대대장이 하였는데 간부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 중대별 벌금 거출자는 행정보급관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어떤 중대는 총 13명중 대부분의 간부들에게 금전을 거출하였고, 2~3일 후 당사자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 간부들의 체력 수준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 중간 점검 과정에서 기준 미달자에게 조금 더 자극을 주기 위해 미달한 만큼의 벌금을 거출하였음. 당시 간부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했던 사실은 없었음. 벌금은 다시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 간부들 체력단련 관련으로 벌금을 걷은 사실이 있다.	
- 간부 체력측정과 관련하여 중대별로 측정기준 미달자의 벌금을 지원과장에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		

	<p>- 2012. 5월경 사단 체력검정 실시 2~3주전 대대 자체 간부 체력 검정 연습을 하게 되자, 대대장이 특급 기준미달자에 대하여 횡수당 1천원씩 벌금 거출을 지시하였다. 체력검정 연습결과를 체크하여 미달자들에게 1회당 1천원씩 총 00만원 가량을 걷었으며, 약 3일후 본인들에게 돌려주었다. 체력단련 동기부여 차원에서 실시한 것일 뿐, 사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p> <p>- 2012 5-6월 경 사단 체력검정이 실시 약 1주일 전에 대대장을 포함한 대대 전간부가 사열대 앞에 모여 연습을 한 적이 있다. 기준에 미달하면 횡수당 1천원을 걷겠다고 하였는데, 누가 말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다. 본인은 연습이 끝난 후 벌금을 냈고, 당시 돈을 걷으면서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약 1~2일후 돌려받았다.</p> <p>- 체력측정을 하는데 합격 기준에 미달이면 1회당 1천원을 받았다. 중대별로 걷어서 모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p>	
<p>연대 장에 게 보낸 메 일을 대대 장에게도 보내라고 지시</p>	<p>- 연대장이 0대대 간부들에게 인트라넷을 이용해 마음의 편지 메일을 보내라고 하였다. 대대장이 간부들이 보낸 메일 내역을 출력하여 가져오게 지시하여 본인은 연대장에게 보낸 메일을 출력하여 제출한 적이 있다.</p> <p>- 연대장이 직접 간부들에게 메일을 보내 2012. 6. 00. 0대대 0중대에서 발생했던 총기 자살사고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부대의 강·약점,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대장의 지시에 의해 간부들의 마음의 편지 내용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p> <p>- 연대장의 마음의 편지 메일 작성과 관련하여 대대장이 중대장들에게 종합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여 간부들의 마음의 편지를 취합하여 보고·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p> <p>- 연대장에게 쓴 마음의 편지를 중대장에게 그대로 복사하여 준 사실이 있다. 대대장이 지시하여 중대장이 취합한 걸로 알고 있다.</p> <p>- 2012년 5월 ~ 6월경 연대장에게 애로 및 건의사항을 메일로 쓰라고 하였던 적이 있었고, 올해 초에는 메일이 아닌 종이에 써서 제출한 적이 있다. 종이에 쓸 때는 따로 봉투에 봉해서 제출하지 않았고, 중대 행정반 책상에 모아 두면 담당자가 취합하여 대대로 제출하였다.</p>	<p>관련자 1, 3, 4, 5, 12, 14</p>

	<p>- 연대장이 부대장이나 건의사항 등을 쓰라고 지시하여 대부분의 간부들이 인트라넷 메일로 작성했는데 대대장이 참모부 소속의 지원과장에게도 메일을 한통 보내고 연대장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중대급은 중대장에게 메일을 한 통 보내고 연대장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연대장에게 쓴 메일과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중대장이나 지원과장에게 보내라는 것이었고, 메일을 열람한 것은 아니다</p>	
--	---	--

2) 판단

가) 대대장의 욕설·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하여

대대장이 00사단 00연대 0대대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욕설을 하고 일부 장병에게 구타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상기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들, 목격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대대장도 이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대대장이 일부 장병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대대장의 행위는 「군인사법」 제47조의2 및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대장의 체력측정 관련 금전 거출에 대하여

대대장은 사단 체력검정을 1주일 남겨 놓고 대대 간부들의 체력 점검을 해보니 너무 기준 미달이어서 “기준 미달하는 만큼 돈을 모아서 회식이나 하시죠?”라고 하였는데 실제 돈이 걷힌지는 몰랐고, 돈이 걷힌 것을 알고 나서는 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직권조사 현장조사를 받은 간부 대부분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대대장이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체력측정 미달자에게 미달 횡수당 1,000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여 미달한 만큼의 벌금을 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대대장이 간부들에게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체력측정 미달자에게 금전을 거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제재의 금지) 제1항의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부하 직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간부채력 측정 미달자들에게 미달 횡수당 1,000원의 벌금을 거출한 행위는 비록, 사후에 돌려주었다고는 하나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간부들에게 「헌법」 제10조에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연대장에게 보낸 e메일 취합 보고 지시에 대하여

대대장은 중대장들에게, ‘연대장에게 보내는 e메일 내용 중에 대대장이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나, 가능한 분야에 대한 필수적 내용에 한하여 대대장에게도 미리 인지시켜 줄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나 위원회 직권조사 시 현장조사를 받은 간부 대부분은 상기 인정 사실과 같이 대대장이 연대장에 보낸 메일과 동일한 내용을 보내라고 지시하였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연대장에 보낸 메일을 출력하여 각 중대에서는 중대장에게, 대대에서는 지원과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취합하여 대대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군인복무규율」 제8조(정직의 의무)는 “군인은 정직하여야 하며,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에는 허위·왜곡·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장의 직근 상급부대 지휘관인 연대장이 직접 간부들에게 메일을 보내 2012. 6. 00. 0대대 0중대에서 발생했던 총기 자살사고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부대의 강·약점,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메일로 수렴하고자 한 사안을 대대장이 본인에게도 같은 메일을 보내라고 지시한 행위는,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해당 간부들에게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대대장의 총기사망사고 축소·은폐 행위에 대하여

대대장의 총기사망사고를 축소·은폐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대대장이 완강히 이를 부인하고 있고, 총기 사망사고로 인한 제00사단 5부의 감찰참모 등 10명이 2012. 6. 30. ~ 7. 2.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대장이 축소 은폐 등을 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직권조사 결과 대대장이 총기사망사고를 축소 은폐하였다는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진정 주장 외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마) 이러한 대대장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의견으로는 피해자 1의 총기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대대장이 기 징계(건축 : 징계유예) 조치를 받았으나, 당시 징계 사유에 없는 대대장의 추가로 발견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대대장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대장의 욕설·폭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피해자 1의 총기사고 관련 축소·은폐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양현아 위원 한위수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8조(정직의 의무) 군인은 정직하여야 하며,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에는 허위·왜곡·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①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②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36조(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 ① “구타”란 고의로 손·발·팔꿈치·머리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막대기·야전삽·총기 등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가혹행위”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 언어추행은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심한 심리적 충격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문서 등의 수단을 이용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행하여야 하며,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을 은닉할 때에는 사고자 및 관련자를 가중처벌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을 위한 장병 의식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병영저변의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유발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
3.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병영생활 시설 및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에 관한 관심을 유도·진작시키기 위한 홍보

제243조(자대복무단계 식별) ① 지휘관은 전입신병에 대하여 전입기간 단계별로 집중관리하면서 자살우려자를 포함한 보호·관심병사를 선정한다.

② 지휘관은 각 군별 부대관리주 또는 정밀진단을 위한 각종 기간 등을 활용하여 소속 부대원 신상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③ 지휘관은 입체적인 신상파악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자살우려자 및 보호·관심병사를 식별한다.

1. 상담 : 지휘관을 비롯하여 주임원사, 자살예방 전문교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이 간부, 동료, 선·후임 병사, 친구·애인 및 가족 등을 망라하여 실시

2. 상황식 일일결산보고 : 자살징후 인지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보고하되 자살징후 인지 보고 시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식별활동 활성화

④ 자살우려자를 식별한 자는 자살우려자 식별 즉시 대대장급 지휘관까지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대장급 지휘관은 전우조를 임명하여 집중 관찰토록 조치하며, 정신과 진료, 비전캠프 또는 그린캠프 입소, 병역심사관리대 등 상급부대로 신속히 분리 조치하는 등 적절한 지휘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타

9 2012. 8. 16.자 11-진정-0625000 결정 [폭언 및 적법 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해군참모총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해자가 피진정인 1 등에게 자신이 기자회견을 밝혔고, 피진정인 1도 이를 이미 인지하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결혼을 했는지’ 등을 묻은 피진정인 1의 언행은 불필요하게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개인정보를 대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정체성에 대한 위축을 불러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피해자의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진 정 인】 조○○

【피 해 자】 정○○

【피진정인】 1. 홍○○ 2. 강○○ 3. 장○○ 4. 정○○
5. 김○○ 6. 신○○

【주 문】

1. 해군참모총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 ‘다’에 대한 진정부분은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 기자로 2011. 11. 7. 16:00경 ○○해군기지건설 반대 단체회원 4명이 ○○○○마을 해군기지사업단 내로 진입하는 것을 동행 취재하고자 뒤따라 들어갔다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는 바, 재발방지 등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4는 피해자가 명함을 주며 ‘○○○○○’ 기자 신분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가로 막고 핸드폰 사용을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귀가하려고 하였음에도 피진정인 1, 2, 3은 경찰에 인계한다면서 피해자를 해군기지공사장 부지 내에서 부당하게 억류하고 피해자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18:07경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약 2시간 가량 무단으로 억류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 1은 당시 피해자가 기자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아가씨 누구야? 어디서 왔어?”라고 반말을 하고, 심지어 “또 들어 왔어! 겁대가리가 없는 아가씨네”라고 조롱하였으며, “아가씨야, 아줌마야, 결혼은 했어?”라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 5는 피해자에게 “완장 왜 찼어? 벗어! 또 들어왔나? 카메라 못 쓰게 해”라고 반말과 고성을 지르면 강압적으로 대하였고, 피진정인 6은 “아줌마 누구야, 북에서 내려왔어! 북에서 내려온 기자야!”, “미친 년, ×× 년, ○같은 년”, “저년이 동영상 다 올린 것 아냐! 저년이 삼거리에서 밤에 술 쳐 먹고 소리 지른 년이네”라는 모욕적인 말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 피해자들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피진정인 1 홍○○(대령, ○○해군기지사업단 계획통제실장)

본인은 사업부지 내에 무단침입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니 피해자와 피진정인 4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피해자는 수개월 전부터 ○○마을에 거주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부지 내에 무단 침입한 사례가 있어 평소 안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에게 불법 취재를 허용할 수 없다고 고지하였으며, 몇 개월 동안 ○○마을에 머물러 있길래 결혼여부를 확인하고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질문을 한 것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고, 이외 다른 폭언 등 강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 강○○(소령, 민원담당), 피진정인 3 장○○(중사, 공보담당)

본인들은 ○○기지사업단 사무실 근무 중인 2011. 11. 7. 16:00경 공사현장에 무단침입한 남자 4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피진정인 1, 2가 이에 대응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3차례에 걸쳐 무단침입한 사례가 있는 ○○○○○ 기자여서 상부지시에 따라 경찰에 인계하기로 하였다.

이 때, 피진정인 6이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왔는지 등의 상호 대화를 하였고, 경찰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공사장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경찰이 도착하지 않아 112에 전화하여 경찰에 빨리 와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이후에도, 경찰 도착이 지연되어 계속 독촉하였고, 피진정인 4에게 피해자를 경찰에 인계하도록 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당시 피해자에게는 경찰에 인계될 것을 설명해 주었으며, 이 과정은 억류 상황이 아니었다.

3) 피진정인 4 정○○(상사, 해군기지사업단 토지보상담당)

본인은 2011. 11. 7. 오후 신원불상 남자 4명과 피해자가 기지 내로

진입하는 것을 보았고, 진정의 남자 4명은 너무 빨리 ○○해안가 쪽으로 달려가 제지하지 못하고, 20~30미터 뒤이어 따라오던 피해자를 붙잡고 누구인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업단에 허가를 받았는지, 또한 군 차량과 작업인원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해도 되는지를 거꾸로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앞서 들어간 사람들을 취재하려고 들어 왔고 정식으로 취재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여, 취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진 촬영한 것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경찰이 바로 올 예정이니 전화를 자제하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한참 후, 경찰이 도착하여 본인과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무단침입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짜증을 내며 서명을 거부하였고, 이에 출동경찰관은 서명거부로 기록한 후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피해자를 현장에서 귀가 조치하였다.

4) 피진정인 5 김○○(상사, 해군○○기지사업단 계획통제실 근무)

당시 피해자가 이전에 경찰에서 나눠 준 보도완장을 차고 있어 “이건 왜 차고 있어요? 경찰청 보도완장 아닌가요?”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이 없었고, 서로 반말과 고성을 지른 적이 없다.

5) 피진정인 6 신○○(원사, 해난구조대 구조작전대대 ○작전대)

본인은 해군○○기지사업단 파견근무 중인 2011. 11. 7. 16:00경 무단침입한 남자 4명을 더 이상 기지에 진입을 못하도록 하다가 경찰관에게 신병을 인계하였고, 이후 16:10경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어디서 왔어요?”라고 질문을 하자 “기자예요”라고 하여 “기자가 왜 해군기지사업단 내에 불법으로 무단침입을 하느냐”라고 했고 피해자는 기지사업자체가 불법이므로 기지 내 출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참 어이없는 기자네”라고 하면서 지나갔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들

1) 진○○(경사, ○○경찰서 ○○파출소)

본인은 ○○경찰서 ○○파출소 순찰근무 중인 2011. 11. 7. 오후 최초 해군 관계자로부터 무단침입한 성명불상 남자 4명의 신병을 인수하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위 남자 4명의 신병을 넘겨받아 ○○경찰서에서 신원을 확인한 후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를 붙잡아 보호하고 있으니 신병을 인수하라는 신고를 받고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하였다. 당시 해군 관계자가 피해자를 체포하여 인계한 것인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자이고 신원이 확실하여 현행범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다.

2) 강○○(경위, ○○경찰서 정보계장)

본인은 ○○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1. 7. 16:00 경 청년 대학생 4명과 피해자가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 해안가로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당시 취재기자 연행은 예민한 상황이어서 ○○해군기지사업단 소속 홍보담당인 피진정인 3에게 언론기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자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여 피진정인 측이 풀어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와 통화하여 보니 그 때까지도 풀어주지 않은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후 ○○파출소 직원이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해자의 진술서 등 제출자료, 피해자에 대한 전화

통화조사보고,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 진○○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참고인 강○○의 진술서, 해군기지사업단이 제출한 민원처리부, 채증자료, ○○경찰서가 제출한 정보상황일지, 경비상황일지, 통고처분 출동경찰관의 진술서 및 동인(同人)이 정식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 진술조서, 주거침입 수사보고서, 112순찰근무일지, 범칙금 발부대장 등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기자로 2011. 11. 7. 16:00경 ○○해군기지 건설반대 단체회원 이○○ 등 4명이 ○○○○마을 해군기지사업단 내로 무단 침입하는 것을 동행 취재하고자 위 기지사업단 관계자의 사전협의 등 승인 없이 뒤따라 들어갔고, 피진정인 4는 2011. 11. 7. 16:10경 위 이○○ 등 4명의 20~30미터 후방에서 중턱에 있는 ○○○ 바위 해안가 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를 발견, 피해자를 붙잡아 제지하고 경찰에 신병인수를 요청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 3이 2011. 11. 7. 16:50경 순차적으로 합류하여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어서 피진정인 5, 6도 합류하여 잠시 머무른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병인수가 늦어지자 피진정인 2가 재차 경찰에 독촉하여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 진○○ 등이 2011. 11. 7. 18:10경 해군기지 공사현장 정문 앞에 이동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병을 피진정인 4로부터 넘겨받아 현장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무단침입)의 규정을 적용하여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귀가시켰다.

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마을에 오래 기간 체류하는 것이 궁금하여 피해자의 결혼여부를 물어 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라. 나머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관련 피진정인들이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현행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은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214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이라 할지라도 현행범인이 범한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체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통상 사법경찰관리 등 법집행공무원이 강제수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성의 원칙, 즉 수사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자들이 아닌바, 위와 같은 경미사범에 관한 체포요건을 명확히 인지할 신분적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4가 2011. 11. 7. 16:1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피해자를 붙잡아 대기시키다가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한 행위는 경찰관의 늦은 출동에 기인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경우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위 인정사실 다와 같은 피진정인 1의 발언은 당시 피해자가 피진정인 1등에게 자신이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고, 피진정인 1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취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적 지위를 갖는 개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으로 취급한 것으로, 불필요하게 사생활에 관한 개인정보를 대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인격적 정체성에 대한 위축을 불러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1의 부적절한 언행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나머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폭언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위 피진정인들이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의 현 소속기관장에게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 ‘다’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영혜 위원 윤남근



제 3 장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 구금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2건]
-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1건]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5건]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1

2012. 4. 24.자 11-진정-0091200 결정 [교도관의 직무유기 등]

【결정사항】

○○교도소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 2는 진정인과 동료 수용자 간의 소란 상황을 통보받고 이들을 기동대 사무실로 동행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각 분리 수용하지 않고 화해의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바, 결과적으로 다음날 진정인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는 비록 수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수용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교도관이 사고예방을 우선시하지 못한 부주의한 행동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제38조 · 제112조

【진정인】 최○○

【피진정인】 1. 정○○ 2. 고○○ 3. 김○○ 4. 최○○

【주 문】

1. ○○교도소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와 다는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교도소 의료거실에 수용 중이던 2010. 11. 1. 동료 수용자 서○○과 싸움으로 조사 수용된 후, 훈계 처분으로 석방되었는데 이 때 싸움을 한 서○○과 같은 방에 다시 수용되었다. 2010. 11. 13. 야간에 서○○이 진정인에게 “너 잘 때 눈알을 파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진정인은 당직 근무자인 피진정인 1과 2에게 격리 등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다음 날 07:30경 서○○에게 폭행당하여 머리를 3군데 봉합하고 얼굴 등에 심한 상해를 입었다.

나. 위 사고는 소 측의 신변보호 미흡으로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3이 외진치료비를 진정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진정인이 같은 해 12. 10. 고충처리반에 찾아가 가해자 서○○이 처우제한 사항을 버젓이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피진정인 4인 보안과 최○○ 교위는 “야, 임마 니가 남의 수용생활에 왜 참견하냐”며 진정인에게 막말을 하고, 강제로 자술서를 쓰라고 한 것도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도소 보안과 정○○ 교위, 고○○ 교위

진정요지 가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2010. 11. 1. 의료사동에서 동료 수용자 서○○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였는데 즉시 이를 제지하고 화해를 권유했으나 성립하지 않아 조사수용 되었다가 같은 해 11. 9. 원만히 화해가 되어 훈계처분하고 석방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과 서○○은 상황을 고려하여 분리 수용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의료사동에 분리 수용할 공간이 없었고 진정인과 서○○은 화해가 되었다며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비록 서로 언쟁은 하였지만 전부터 생활해온 거실이고 낮은 거실에 수용하는 것보다 환자인 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거실에 수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2010. 11. 13. 20:30경 진정인과 서○○이 다시 소란을 피워 사동 근무자인 피진정인 1이 기동대 근무자인 피진정인 2에게 연락하여 피진정인 2가 양자를 조사하였는데, 이때 진정인이 거실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는 “오늘이 휴일이고 폐방 이후로 거실사정상 전실이 안 되니 서로 화해가 안 된다면 소란부분으로 조사수용 할 수 밖에 없다”고 두 사람에게 고지하였고 이 말을 들은 진정인과 서○○이 “화해하고 거실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여, 서로 이해하며 수용생활 잘하라고 설득하였다.

즉, 진정인의 주장처럼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보다는 진정인과 서○○이 서로 언쟁을 하였지만 양자가 모두 환자이고 야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실하는 것보다 화해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도소 의료과 김○○ 교사

진정내용과 관련된 사고로 진정인은 2010. 11. 14. ~ 11. 15. 간 ○○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출되었다. 진정인의 주장처럼 자비 납부를 강요한 바 없다.

3) ○○교도소 보안과 최○○ 교위

진정인은 2010. 12. 10. 16:30경 상담을 위해 고충처리반에 들어오면서 피진정인 4에게 “징벌자가 그렇게 편히 지낼 수 있나”라며 흥분된 상태로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최○○ 교위가 조용히 할 것을 수 회 지시하였으나 계속 큰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다른 수용자로부터 ‘서○○이 편하게 지낸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여 “수용자 간 허가 없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규율 위반사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을 뿐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거실 배치 현황표, 진정인과 진정 외 가해자 서○○의 진술조서 및 자술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11. 1. 의료1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 서○○과 침구 정리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툼을 하여 조사수용 되었다가 같은 해 11. 9. 훈계처분 후 석방되었다.

나. 2010. 11. 13. 20:30경 진정인과 서○○은 다시 다툼이 일어 사동근 무자인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2에게 연락을 하여 피진정인 2가 진정인과 서○○을 기동대 사무실로 동행하여 사실 확인을 하면서 “거실 사정 상 전방이 되지 않으니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란으로 조사수용 할 수밖에 없다”고 고지하였고, 진정인과 서○○은 모두 “조사 수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같은 의료1실에 수감하였다.

다. 다음 날인 2010. 11. 14. 07:35경 서○○은 진정인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진정인의 얼굴을 폭행하고 자신의 손목 등을 자해하였다. 이에 사동 근무자인 피진정인 1은 피를 흘리는 진정인을 거실 밖으로 분리 후 ○○의료원 응급실로 이송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머리 부위 세 군데에 도합 7봉침, 왼손 손바닥 부위 멍, 오른쪽 코 옆 부위 찰과상, 머리와 뒷목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위 사고로 진정인은 2010. 11. 14. ~ 11. 15. 2일 간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 347,070원은 전액 국비로 납부되었다.

마. 2010. 12. 10. 진정인은 가해자 서○○이 금치처분을 받았음에도 편히 지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 피진정인 4.에게 항의하였고, 피진정인 4는 수용자 간의 허가 없는 대화가 규율 위반 사항임을 고지하고 자술서 작성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진정인은 자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 훈계만 받았다.

4. 판단

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관련하여

교정기관에 의해 인신이 구금되어 전면적인 수용 관리를 받고 있는 수용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교정시설의 장 및 그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교정 공무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인과 서○○은 이미 2010. 11. 1. 싸움으로 한 차례 조사 수용된 전력이 있고 비록 금치처분을 피하기 위해 2010. 11. 9. 화해를 하고 훈계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진정인의 수용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교도관은 보다 면밀한 관리를 통해 두 수용자가 다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진정인과 서○○은 의료사동에 수용된 환자로서 일반 수용자에 비해 수용거실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았고, 첫 번째 싸움 이후 화해의 형식을 취하여 훈계처분을 받았던 점과 원 거실에 다시 수용하는 것이 두 수용자의 수용생활 및 치료에 이익이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같은 거실에 다시 수용되었지만, 상해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밤 진정인이 위협을 신고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진정인들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인이 타 수용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조치는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은 다수의 사동을 야간에 순환하여 근무하는 근무자로서 사고 발생일 의료 사동 야간 근무자로 근무지가 배정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거실 배정과 관련된 권한이 없으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하고 조치사항대로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로부터 소란상황을 통보받고 진정인과 서○○을 기동대 사무실로 동행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조사수용의 방법

으로 분리 수용시키는 선택이 가능했으나 결국 화해의 방식으로 처리하여 익일 상해사고 발생을 차단하지 못하였다. 피진정인 2의 이러한 행위는 비록 수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수용질서 유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도관이 사고예방을 우선시 하지 못한 부주위한 행동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국가기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인은 2010. 11. 14. ~ 11. 15. 2일 간 ○○의료원에서 받은 진료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진료비 납부를 강요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진정인의 진료비가 국비로 납부되었다는 사실만 확인이 될 뿐, 납부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요지나. 항은 진정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인은 2010. 12. 10. 피진정인 4에게 가해자 서○○의 처우와 관련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의 규율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자술서 작성을 고지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진정인 4가 진정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하였는지 여부는 진정인의 진술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요지 다. 항은 진정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태훈 위원 곽란주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용거실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자비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서신수수·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2 2012. 6. 28.자 12-진정-0440800 결정 [중증장애인 구급 시설 수용 관련 긴급구제]

【결정사항】

○○교도소장에게, 피해자가 수용 전에 복용하던 약의 반입, 물리치료 등의 의료적 처우와 목욕시설의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점을 감안하여 적합한 편의가 갖추어진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검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해자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손발을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수용시설의 편의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직권으로 수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함.
- 【2】** 아울러 진정요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와 적절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함.
- 【3】** 또한 「헌법」 제10조 및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항, 「헌법」 제10조

【진정인】 이○○

【피해자】 최○○

【피진정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피권고인】 ○○교도소 소장

【주 문】

○○교도소장에게,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피해자가 수용 전에 복용하던 약의 반입, 물리치료 등의 의료적 처우와 목욕시설의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나.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인바 적합한 편의가 갖추어진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검토할 것.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손발을 사용할 수 없는 선천성 뇌성마비 1급의 중증 장애인인바 2012. 6. 14.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2012. 6. 19. 16:30경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어서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다.

피해자는 현재 수용생활을 감내할 수 없는 건강상태로 이를 방치할 경우 생명 및 신체상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주장

1) 강○○ (○○교도소 의료과장)

입소 첫날인 2012. 6. 19. 중증장애자인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보고, 교정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교도관 회의를 거쳐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해자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하였으나 결국 불허되었다.

이후, 피해자를 5일 정도 세심히 관찰한 결과 피해자가 중증장애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특별히 심각하게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큰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다만, 교정시설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노○○ (○○교도소 보안과장)

○○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재차 건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3) 우○○ (○○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형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후, 담당 검사가 ○○교도소에서 피해자를 면담하여 수용상태를 확인하였고 의료과장을 통하여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 1급으로 두 다리의 보행이 불가능하고, 양손의 떨림 현상이 있어 몸을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등 간병인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장애가 있을 뿐 현재 다른 병이 있거나 급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료거실에 수용되어 재소자 2명의 보조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수용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법적 검토결과, 진정인의 상황이 「형사소송법」 제4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를 상급기관인 ○○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다.

4) 박○○(○○지방검찰청 검사)

○○지청으로부터 송부 받은 의견내용을 검토하였고 규정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건강상태, 재판부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위, 현재 ○○소 의료거실에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황 등을 참작하여 지청의 담당검사 의견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규에 규정된 형집행정지 절차에 따라 불허 처리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의 주장내용, ○○교도소 의료과장 등 관계인들의 진술, 인권위 조사관들의 현장조사 결과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며,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피의사건이 2012. 6. 14. 대법원(2011도9879)에서 형이 확정되어 2012. 6. 19.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나. 피해자에 대하여 ○○교도소 의료과장 강○○는 입소 첫날인 2012. 6. 19. '피해자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며, 목이나 어깨 요통의 증상과 보행장애 및 양손 사용이 불가능하여 수감생활 시 보호자나 간병인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며,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사망의 위험성이 농후한 자료 형의 집행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며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한 바 있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 우○○ 검사는 담당검사의 '현장확인 및 피해자와 의료과장 등 면담자료' 및 관련 법조를 검토하여 상급기관인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고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2. 6. 21. 형집행정지 불허 처분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 측은 2012. 6. 22. 형집행정지에 대하여 재신청을 한 상태이다.

라. 피해자는 현재 보행이 불가능하고 혼자서는 밥을 먹거나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여 ○○교도소 측은 1일 동료수용자 2명씩을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허리디스크와 골반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용 전에 복용하던 한약환을 투여 받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물리치료요구와 목욕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4. 판단

가. 형집행정지는 신청인의 권리로 보기 어렵고(2011헌마347), ○○지방

검찰청이 담당검사의 현장확인과 피해자와의 면담 및 피해자에게 실행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한의 신청을 불허 처분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나. 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직접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지만,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손발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수용시설의 편의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구치소 의료과장의 소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의 요건인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법상 부여된 직권으로 수용여건의 개선에 관해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다. 아울러, 진정한의 진정요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조항 제6호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와 적절한 편의 제공을 위해 기왕에 권역별로 갖추어져 있는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항에 의하면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UN의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 제2항은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적극적인 조치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진정 사건의 판단에 앞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8.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3

2012. 2. 29.자 11-진정-0176900 결정 [아동 그룹홈의 피보호아동 재위탁 관리 소홀]

【결정사항】

○○광역시 ○○○○관장 및 ○○광역시 ○○구청장에게, 소속 사회복지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본 결정내용을 알리고, 아동인권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 ○○○○관장과 ○○구청장은 「사회복지법」 상 관리감독 업무에만 집중한 나머지 「아동복지법」 제30조에서 정한 조사권한을 소극적으로 사용하여 동법이 정한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부합하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유래되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아동복지법」 제1조·제10조·제11조·제16조·제29조·제30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6조·제8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소년법」 제32조, 구 「소년법」(1988.12.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

【진정인】 안○○

- 【피진정인】
1. 유○○(○○아동그룹홈 원장)
 2. ○○광역시 ○○○○관장
 3. ○○광역시 ○○구청장
 4. 김○○(○○광역시 ○○○○관 공무원)
 5. 안○○(○○광역시 ○○구청 공무원)

【주 문】

1. 진정요지 다, 라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3.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광역시 ○○○○관장 및 ○○광역시 ○○구청장에게, 소속 사회복지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본 결정 내용을 알리고, 아동인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 안○○은 진정인의 조카이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진정인이 양육해 오다 2009. 10. 피해자가 만 15세일 때 ○○광역시 ○○구 소재 ○○아동그룹홈(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에 위탁하였으며, 이후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2010. 4. 보호자나 시·구청과 일절 협의나 고지 없이 임의로 피해자를 ○○청소년학교(이하 ‘○○’이라 한다)로 보냈는데, 이 학교는 법원 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이 학교에 피해자를 보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2. 3.은 이를 묵인하였다.

나. 그룹홈 내 폭력과 부실 운영을 관리감독 해야 할 피진정인 5.도 계속적으로 피진정인 1.만 감싸고 특히, 2011. 2. 진정인의 민원에 대하여 서로 대면을 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4, 5는 민원에 대해서 ‘시설에서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미 위탁한 바에야 ○○이든 어디로 보내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인권적 태도를 보였다.

다. 피해자는 ○○에서의 폭력 등 고통을 이기지 못해 2010. 8.경

탈출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쇠골도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였으며, 결국 절도행위까지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원래 보호처인 그룹홈으로 인계되었으나 여기에서 피진정인 1.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했다.

라. 피진정인 1.은 수급비 중에서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용돈을 주어야 하나 전혀 주지 않았고,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해 주기로 진정인과 약속했음에도 기한 없이 지체하여, 피해자가 그룹홈에 적응하지 못하고 5개월 이상을 가출하면서 지내는 과정의 수급비를 모두 착복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광역시 ○○○○관장

「201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에 의거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 의무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인 ○○구청 소관 사항인바, 행정처분 권한 기관도 ○○구청이다. 한편 시설아동의 변동사항은 시설장이 ○○○○관 및 관할 구청에 보고하여 이루어지는 사항이나 이 사건 관련 그룹홈 원장 유○○은 보고하지 않았다. 시설 입·퇴소 및 배치 결정을 하는 ○○○○관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 안○○ 아동의 경우 퇴소자로 분류하지 않고 아동이 대안학교인 ○○으로 위탁됨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주거가 변경된 사항으로 보았으며, 이 대안학교 위탁기간에 대하여 퇴소 조치를 소급하지 않고 입소자로 처리하였다.

2) ○○광역시 ○○구청장

그룹홈 내에서 부적절한 입·퇴소가 이루어진 것을 사후에 인지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만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관련 규정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없다. 다만 입·퇴소와 관련하여 생계급여의 이중

지원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에 의하여 급여의 과잉지급분에 대하여 반환 조치하고,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을 뿐이다.

3) 김○○, 안○○(○○광역시 ○○○○관, ○○광역시 ○○구 소속직원)

진정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면한 사실이 있으나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피해자의 현재 상황

피해자 안○○은 지능이 낮고 친부가 알콜중독 등으로 인해 보호자 역할을 하지 못한 탓에 오랜 기간 이 사건 진정인인 큰아버지가 보호하다가 그룹홈에 위탁되었다. 이후, 그룹홈 보호 시부터 그룹홈 원장이나 같은 그룹홈 보호 아동의 지갑을 훔치는 등 절도 행위를 하고 특히, 2010. 8. 경 ○○을 탈출한 이후에는 야산을 떠돌다 쇠골 골절상을 입기도 했으며 동 학교에서 만난 축법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절도와 강간 등의 범죄에 가담하였으며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가정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출을 자주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관장과 ○○구청장의 관리감독 책임

그룹홈 입·퇴소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해 규율되며 관리감독 책임은 피진정인 ○○○○관장에게 있고, 입·퇴소를 제외한 입소기간 중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근거하고 관리감독 책임은 피진정인 ○○구청장에게 있다. 또한, 이러한 이원화 체계와 별도로, 「아동복지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에 대한 조사’ 권한은 두 기관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설보호아동의 '퇴소'란,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 시설 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시설장은 기관(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 ○○광역시 ○○○○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가 피진정인 유○○에 의해 임의로 ○○으로 재위탁되었으나 이는 입·퇴소 규정상 퇴소가 아니므로 피진정기관인 ○○광역시 ○○○○관은 2011. 1. 진정인의 민원 제기로 인해 비로소 재위탁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피해자를 퇴소자가 아닌 입소자로 분류하였다. 한편 퇴소와 달리 재위탁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소년학교 입소 과정

2010. 4. 3. 피진정인 1.은 유○○은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이 사건 피해자 안○○을 ○○ ○○ 소재 아동보호치료시설인 ○○에 6개월 예정으로 입소시켰으며, 같은 해 8월 이 사건 피해자는 탈출하였는데도 피진정인 2, 3에게 입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진정인 1이 00에 제출한 2010. 4. 3자 <일반위탁 신청(동의)서>에는 보호자명이 '유○○'으로 적시되어 있고, 위탁사유에는 '현재 그룹홈의 형편상 위 아동의 잦은 갈취와 절도에 대하여 예방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기를 원함'이라고 되어 있다.

2011. 1. 27 작성된 피진정인 5의 출장 결과 보고서 및 새로 동일 업무를 맡은 이○○의 기록(2011. 3. 4)에는 ○○이 '가정법원 위탁 시설로 24시간 기숙사 시설이며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안○○ 기록)이라거나, '○○은 법원으로부터 6호 처분을 받은 아동에게 법무부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으나 ○○이는 개별 위탁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라고 적시되어 있고, 피진정인 3.은 이 사건 진정인이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는 동 학교가 아동보호치료시설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소년학교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성격

○○은 ○○ ○○ 소재 아동보호치료시설인바, 법원 위탁뿐만 아니라 일반 위탁 아동도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교육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16조 제3호에서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해,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체계적 선도를 위해 기숙 형태로 탈출을 방지하는 등 일종의 준 구금시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해자는 「아동복지법」이 추구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등 인격 형성권에 심각한 위해를 입은 상태로 ○○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탈출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동 학교에서 만난 선배 아동들과 여러 곳을 배회하면서 형사사건에 휘말려 소년원에 수용되기도 하였으며 가출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탈(脫)시설의 구체적인 형태로 도입된 그룹홈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그룹홈 원장(보호자)이 피보호 아동을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재위탁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보호 아동의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해당 아동이 보호치료시설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아동의 불량 행실의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이 전제되어야 한다. 피진정인 유○○이 보호 아동을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임의로 입소시킨 행위의 타당성 및 인권침해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은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이 피진정인 1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인지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하였는지 여부가 된다.

우선,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 아동이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입소한 후 약 7개월이 지난 2011. 1 경 이 사건 진정인이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

하고 나서야 재위탁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였다. 피진정인 2는 이에 대해 시설장이 신고하지 않는 한 인지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고, 피진정인 3은 입·퇴소 관련 업무는 소관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제3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조사권한은 두 기관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인력과 예산 등의 현실적 한계는 인권침해에 대한 면책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시설장의 자발적 신고가 없이는 사전 인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후 이러한 부적절한 재위탁 행위를 확인한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두 피진정인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동복지법」 제30조의 ‘조사권한’이란 동법 제1조에서 정한 법제정 취지(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 관점에서 단지 동법 제29조의 극심한 범법행위 적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저해가 되는 ‘인권침해적 속성’을 갖는 행위에 대한 일체의 조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위탁 행위를 사후에 인지하였다면 행정처분 외 구두주의 혹은 기타 심각성을 알리는 적극적 관여의 태도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 ○○○○관장과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30조가 정한 조사권한을 소극적으로 사용했으며, 「사회복지법」 상 관리감독 업무에만 집중한 나머지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 보호자로부터 위탁받아 아동을 보호하는 그룹홈이 특정한 이유로 피보호 아동을 타 시설로 일정기간 재위탁 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체계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은 점, 아동보호치료시설 입소가 범원 위탁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보호자도 자의에 의해 자신의 자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재위탁 행위

는 사실상 행정처분을 위한 재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등을 고려할 때 결론적으로, 「헌법」 제10조 후단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서 유래되는 ‘피진정인들의 부작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담당자의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유사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의 권고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등에 대한 판단

진정요지 나항 관련하여, 이 사건 피진정인 김○○와 안○○의 발언 중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 ‘이미 위탁한 바에야 ○○이든 어디로 보내든 상관없는 것’, ‘아이 잘 되라고 보낸 것 아니겠는가’ 등은, 위 진정요지 가항의 판단 취지에 따르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발언의 사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만일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현행법상 허용된 재위탁 행위에 대해 있는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발언 ‘시설에서 때릴 수도 있는 것’의 경우, 당사자 간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며, 피진정인 측은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점 등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은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태훈 위원 곽관주

【별 지】 관련규정

1.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보호조치) ① 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16조제1항제4호의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경우
3.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 9. 생략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생략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제30조(조사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6조(입소조치 의뢰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조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에게 아동의 입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시설장은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우선 당해 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8조(귀가조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양육 또는 가정위탁하여 보호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양육을 결정 하거나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아동귀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시설장 또는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감염병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5. (구)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4

2012. 5. 1.자 11-진정-0471300 결정 [부당한 작업치료 등에 대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작업치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진정인의 작업치료 임금을 재산정하고 작업치료 임금은 개인통장을 통하여 지급할 것,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 제한 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에서 시행하는 작업치료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과 「작업치료지침」의 취지대로 적극적 지도를 할 것과 피진정인의 전화 및 서신 제한 관련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

【결정요지】

- 【1】 작업치료는 주기적 평가, 치료 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 계획 등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되어야 하나, 피진정인의 작업치료에는 주기적·구체적인 평가 내용이 없고, 계획에 따른 치료가 시행되지 않음. 또한 피진정인은 작업강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작업치료 임금을 개인통장이 아닌 간식비 통장 등을 통해 관리하였는바, 「헌법」 제10조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함.
- 【2】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 제한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전화 및 서신 제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는바, 「헌법」 제18조에 따른 피해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함.

【참조조문】

「정신보건법」 제2조·제45조 제1항 및 제2항·제46조의2,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보건복지부 「작업치료지침」, 「UN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가. 작업치료가 환자들의 사회복귀 또는 상태호전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작업치료 계획 및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나. 진정인에게 지급한 작업치료 임금에 대하여 2011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

다. 모든 작업치료 임금은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는 등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할 것,

라.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가. 피진정 병원에서 시행하는 작업치료에 대하여 그 형식과 절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에 있어서도 「정신보건법」과 「작업치료지침」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도를 실시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나. 피진정 병원의 전화 및 서신 제한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3.부터 같은 해 7.까지 과수원에 나가서 사과와 고추를 따고, 풀을 베거나 매고, 비료를 주는 작업치료를 하였는데, 병원에서 한 달 임금으로 22만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은 2008. 9. 22. 입원 이후부터 2011. 5월까지 전화사용과 서신발송을 못하였다. 현재 하루 1통의 전화사용만 가능하다.

다. 진정인은 입원 이후 3년이 넘도록 퇴원을 못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 부당한 작업치료에 대하여

1)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적정한 작업치료, 작업치료 임금 및 지급방법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고려 없이 환자의 자존감 및 재활의지에 대한 의욕 고취, 환자의 상태 향상을 목적으로 과수원 작업을 시행하여서 발생된 문제인 것 같다.

보다 나은 치료적 대안이 없었고, 진정인이 지속적으로 과수원 작업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과수원 작업을 시행하였다.

3)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장○○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활계획 차원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과수원 작업치료를 하였다. 진정인은 작업도중 반복해서 여자 사회복지사를 찾아가는 행동을 보이고 치료진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서 작업

치료를 중단하였다. 현재에도 진정인은 여성 사회복지사에 대한 애정적인 사고가 심해 외부 작업이 어려운 상태다.

과수원 작업치료 초기, 진정인은 재활작업에 대해 만족하였으나 여성 사회복지사를 찾아가는 행동이 증가한 후 제지하는 치료진들에 대한 불만표현이 증가하였고, 병원에서 작업 중지를 지시하자 진정인은 평소 의심이 많고 피해적 사고와 편집사고로 인해 과수원뿐만 아니라 병원의 여러 환경과 식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였다. 이로 인해 과수원 작업환경에 대해 평가 절하하고 부정적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며, 본원에서 작업치료 환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

나) 사회복지사 남○○

진정인은 2011. 3.부터 같은 해 7.까지 주치의 지시에 따라 활동력을 기르기 위해 피진정 병원 바로 뒤편에 있는 과수원에서 작업치료를 하였다. 진정인은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서 컨테이너 박스에 넣고,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하고, 제초 작업을 위해 풀을 베거나 매고 비료를 뿌리는 일을 하였다.

한여름철 과수원 작업치료 시에는 모자와 썬크림을 지급하였으며, 작업시간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으로 하루 6시간을 작업하였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을 취하였으며 한 여름철이지만 작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다. 그리고 작업치료중 환자의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동에서 사전에 알려주어 작업치료를 중단하거나 일시 중지하였다.

작업급여는 휴식 시간을 제외하여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하루 총 6시간으로 산정하였으며 작업치료 임금은 작업치료 환자 간식비 대장으로 입금하고 있다.

다) 작업치료 관리자 김○○

본인은 2008. 12. 1. ○○병원에 입사하여 2012. 2. 15. 퇴사할 때까지 과수원 작업치료를 관리하였으며, 과수원은 14,000평 규모로 ○○농산에서 임대하여 운영하였다.

작업치료 환자들은 과수원에서 부직포를 덮고, 은박지를 깔고, 풀을 베고, 사과를 따고 나르는 일을 하였고, 열매숙기를 하고 사과를 따거나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에는 사람을 빌어 일하였다.

과수원 작업치료는 오전 9:00부터 12:00까지 하고 점심식사 이후 오후 2:00부터 5:00까지 하루 6시간 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낮에 더워서 일하기가 어려워 오전 7:00부터 8:00까지 일하고, 아침식사 이후 오전 9:00부터 11:00까지 일하고, 오후에는 3:00부터 5:00까지 일하고, 저녁 식사 이후 오후 6:00부터 7:00까지 일하였다. 하루 6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적은 없으며 휴일의 경우 토요일에는 작업치료 환자들이 과수원에 나와 일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일요일은 쉬었다.

라) 작업치료 환자 강○○, 정○○, 김□□

2012. 3. 28. 현재 과수원에서 본인의 동의로 작업치료를 하고 있으며, 과수원 작업치료는 오전에는 9:00부터 12:00까지, 오후에는 2:00부터 5:00까지 하루 6시간 일하고 있다.

과수원에서 가지치기 등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직접 비료를 나무 밑에 뿌려 주거나, 풀을 베고, 사과를 따고, 컨테이너 박스를 나르는 일을 하였다. 열매를 숙아 내거나, 수확할 때에는 과수원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주머니 6~8명 정도 와서 같이 일을 하였고, 그 외에는 병원 환자들이 과수원 일을 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전화 및 서신 제한에 대하여

1)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은 공공기관에 자주 전화하여 자신의 불만 등을 토로하였고, 관계 기관에서 진정인의 전화사용 제한을 요청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동일한 내용의 서신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전화와 서신을 제한

할 수밖에 없었다. 의사 지시서에는 기록이 없지만, 간호기록부에는 기록되어 있다.

3)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장○○

진정인은 2010. 5.경까지 전화, 편지, 자유산책이 가능하였으나 ○○시청 등 관공서에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외출과 외박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공무원으로부터 전화사용에 대한 제한 요청이 있어 전화사용을 금지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전화 대신 편지를 보내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유를 설명한 후 제한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전화와 편지 제한에 수긍하지 못하고 치료진 모르게 전화하는 모습을 간간히 보이고 편지 제한에 불만을 표현하였다. 본인은 진정인이 충동억제가 될 만큼 안정되면 전화와 편지가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전화 횟수를 제한하여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간호사 한○○

진정인은 전화사용 제한이 해제되었는데, 그 이후 진정인이 관공서로 자주 전화를 하여 1일 1회로 다시 제한되었다. 지금은 주치의 면담 후 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작업재활요법 참여자 명단, 작업재활요법참여 동의서, 병동 작업출입일지, 입금확인장, 의사지시서, 간호기록부, 현장조사, 전화조사, 참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부당한 작업치료에 대하여

1) 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장○○의 재활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1. 1. 27. 본인이 동의하여 2011. 3. 16.부터 같은 해 6. 10.까지, 2011. 7. 18부터 같은 해 7. 30.까지 과수원에서 작업치료를 하였다.

2) 진정인이 작업치료를 나간 과수원은 면적이 14,000평 정도로 소유자는 피진정 병원 이사장의 형 정○○과 정□□이다. 상기 과수원은 피진정 병원 이사장의 조카가 대표로 있는 ○○농산에서 임대하여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 김○○과 작업치료 환자 7~9명이 관리를 하였다.

3) 진정인의 작업재활요법 일지에 따르면, 작업내역이 '과수원 가꾸기'로 되어 있으나 진정인은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고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하고, 나무 밑에 비료를 주고, 풀을 베거나 매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4) 진정인에 대한 작업재활요법 평가서는 2011. 3. 31, 4. 29, 5. 31, 7. 29. 작성되었고, 평가자는 작업치료 관리자 김○○이며, 평가내용에는 '작업하는 일에 잘 따름', '말없이 잘하고 있음', '작업하는 일에 불평 없이 잘하고 있음', '말없이 잘 따르고 행동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5) 진정인의 작업치료 관련 의사지시서에는 2011. 6. 10. '작업중지', 2011. 9. 1. '과수원일 중단이유, 집에 보내달라고 사회사업실 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간호기록부에는 2011. 3. 16. '외부작업 과수원 나가심', 2011. 7. 13. '복지사 힘들게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작업허락 남', 2011. 7. 18. '과수원 작업 나가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6) 진정인의 작업급여 지급액은 2011. 3. 작업시간 84시간에 126,000원, 2011. 4. 작업시간 126시간에 214,200원, 2011. 5. 작업시간 141시간에 239,700원, 2011. 6. 작업시간 42시간에 71,400원, 2011. 7. 작업시간 64시간에 108,800원이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 전화 및 서신 제한에 대하여

1) 진정인에 대한 의사지시서에 따르면, 2011. 7. 4. '전화금지 왜 하느냐며 불평함', 2011. 8. 9. '전화와 편지를 왜 금지 하냐고 인권위원회에 보낼 편지를 써움. 당분간 전화와 편지를 허용하기로 하고 다시 과거(관공서에 반복적으로 전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 시 금지키로 함', 2011. 9. 21. '반복적으로 보건소에 전화하여 잘못 입원되었다고 말하고, 항의하는 모습 보임. 반복적인 전화로 보건소 일 방해되어 전화금지 시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진정인에 대한 간호기록부에 따르면, 2011. 8. 9. '전화, 편지 금지 해제됨', 2011. 8. 12. '편지는 양어머니에게만 쓰시도록 설명함. 일전에 시청 등 관공서에 전화하여 외박, 퇴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항의 전화가 온 상태인 것을 설명함', 2011. 10. 8. '편지는 부쳤는지, 전화는 해지가 되었는지, 반복하여 확인하여 주의드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 퇴원요청에 대하여

1) 진정인은 무연고자로 2008. 9. 22. ○○시장의 입원 동의와 지능 저하, 충동행위로 인한 자해·타해의 위험, 기억력 장애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의 입원권고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입원기간 중 2010. 8. ~ 2012. 1. 계속 입원 치료심사 청구를 4차례 하였는데, 모두 입원 결정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부당한 작업치료에 대하여

1)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으나,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작업치료지침」에 따르면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 또는 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교육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정신질환에 있어서 작업치료란 생활기능의 회복·유지·개발을 촉진시키는 작업 활동을 이용하여 행하는 치료·훈련·지도 등의 활동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일과 신체적 활동을 통한 치료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는 주기적인 치료진 및 작업장 관리자의 평가, 작업치료 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 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의 작업치료 관리자와 치료진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진정한의 작업재활요법 평가서에는 ‘작업하는 일에 잘 따름’, ‘말없이 잘하고 있음’, ‘작업하는 일에 불평 없이 잘하고 있음’, ‘말없이 잘 따르고 행동함’ 등 매우 단순하고 형식적인 작업치료 평가가 있으며,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치료진의 평가에서는 ‘외부작업 과수원 나가심’, ‘과수원일 중단이유, 집에 보내달라고 사회사업실 갔다’, ‘복지사 힘들게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작업허락 남’ 등과 같은 간단한 언급 외에는 주기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작업치료의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일련의 치료계획에 따라 작업치료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농산에서 임대하여 운영하는 과수원을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과 작업치료 환자 7~9명이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진정인을 비롯한 다른 작업치료 환자들은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고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하고, 나무 밑에 비료를 주고, 풀을 베거나 매는 등 과수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진정 병원에서 실시하였던 작업치료는 치료목적으로 볼 수 없고, 피진정 병원 이사장의 조카가 임대하여 운영하는 과수원에 작업치료 명목으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작업치료 임금과 지급방법의 적정성 여부

「UN의 정신장애인 보호 및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13의 제4조에서는 ‘정신보건시설 환자의 노동은 착취당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환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국내법 혹은 관례에서 정하는 대로 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시설 환자의 노동 또한 국내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되며, 다른 사람의 노동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은 과수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한 여름철인 7월에도 과수원에서 작업을 한 점 등을 볼 때, 진정인이 작업치료 명목으로 받은 시급 1,500원 또는 1,700원은 과수원의 높은 작업강도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에서는 모든 작업치료에 따른 임금은 개인통장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진정 병원에서는 간식비 통장과 간식비대장을 통해 작업치료 임금을 관리하고 있는바, 개인통장을 통한 임금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 병원의 행위는 작업치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제공한 노동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전화 및 서신 제한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것과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 제한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 병원 소속 전문의 장○○은 진정인이 관공서에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관공서로부터 항의가 들어와서 전화와 서신을 제한하였다고 하나,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전화와 서신 제한에 대한 기록이 없고, 2011. 8. 9. 전화와 서신 제한이 해제된 이후 2011. 8. 12.자 간호기록부에 양 어머니에게만 편지를 쓰도록 제한한 기록이 있으나 진료기록부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전문의 장○○은 진정인의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하였다고, 병동 간호사 한○○은 진정인이 관공서에 전화를 자주하여 전화 사용이 1일 1회로 제한되었다가 지금은 주치의 면담 후 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각각 진술하고 있으나, 진료기록부에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렇듯 진정인에 대한 전화 및 서신을 제한하면서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의 계속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에서는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되도록,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가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의 입원절차 및 계속입원과정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무연고자로 ○○시장의 입원 동의와 피진정 병원 소속 전문의 장○○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입원되었으며, 최근 4차례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 결과에서도 계속입원으로 모두 결정되어 계속입원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의 2(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 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그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작업치료지침(보건복지부)」

1. 정의 및 목적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교육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에 있어서 작업치료란 생활기능의 회복·유지·개발을 촉진시키는 작업활동을 이용하여 행하는 치료·훈련·지도 등의 활동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일과 신체적 활동을 통한 치료활동을 말한다.

3. 원내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적용기준

가. 적용원칙

- ①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은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노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②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의 참여는 담당 주치의(혹은 치료진)의 치료처방과 환자 본인이나 가능하면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③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 작업치료 지침 및 적용기준
 - ㉡ 참여환자를 위한 기능평가
 - ㉢ 작업치료를 위한 치료진의 검토회의
 - ㉣ 주기적인 치료진 및 작업장 관리자의 평가
 - ㉤ 작업치료 일지 및 임금대장
 - ㉥ 작업치료 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 계획

아. 작업치료 참여자의 임금

- ③ 모든 작업치료에 의한 임금은 개인통장을 통하여 관리한다.

5. UN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1991년 12월 17일, UN총회 결의문 46/119에 의해 채택) 원칙 13

- ④ 정신보건시설 환자의 노동은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환자들은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 국내법 혹은 관례에서 정하는 대로 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환자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정신보건시설에 보수가 지불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합당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2012. 5. 25.자 11-진정-0632500 결정 [정신병원 의료 조치 소홀 및 통신제한 등]

【결정사항】

- [1] ○○검찰청장에게, 진정인의 입원 중 발생한 상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과실에 대해 수사의뢰
- [2]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진정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진정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요청
- [3]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강박 및 통신제한 조치에 대해 적의조치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감독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은 심각한 부상으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과도하게 신체 제한을 하였고, 통신 제한과 관련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구체적 지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진정인의 전화 사용을 일체 제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임.
- [2] 피진정인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치료를 위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고, 관련사고 사실도 해당 의료기관에게 알리지 않아 진정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 아울러 사고 발생 30여일이 경과하도록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외부 진료결과가 나왔음에도 보호의무자에게 진정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알리지 않는 등 의료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아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함.

【참조조문】

「정신보건법」 제45조·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형법」 제268조

【진정인】 ○○○

【피진정인】 ○○의원

【주 문】

1. ○○검찰청장에게, 진정인의 입원 중 발생한 상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과실에 대해 수사할 것을 의뢰한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진정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진정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3.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강박과 통신제한 조치를 시행했던 것에 대해 적의조치 할 것과 피진정인의 환자 보호조치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감독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의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 2011. 9. 26. 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4층에서 추락하여 골절을 당했고 눈등을 크게 다쳤다. 사고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2일 동안 강박 조치하였고 가족과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진정인은 병원 탈출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여 외부진료를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묶어 놓는 등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피해를 입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1. 9. 26. 새벽에 당직 간호사로부터 진정인의 추락 사고에 대해 연락을 받고 진정인의 의식상태와 상처확인 등 응급조치를 지시했다. 당시 진정인이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2차 사고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강박조치를 지시했다. 그리고 병동 내 보호실에서 진정인의 대뇌손상 감별을 위한 의식상태 확인과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사지 골절여부 확인을 위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같은 날 인근 정형외과에서도 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진정인은 사고 다음 날인 2011. 9. 27.부터 스스로 움직였고, 9. 28. 부터는 일반병실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활동에 제한이 없었으며 식사도 가능하고 수면상태도 양호하였다. 또한 다른 환자들과 어울려 흡연도 하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 진정인이 눈의 통증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다만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2011. 10. 15. ○○병원 신경외과에 외부진료를 실시하였다.

다. 참고인

1) 진정인의 자녀

2011. 9. 26. 오전에 피진정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진정인이 4층에서 탈출하려고 줄을 타고 내려오다가 2m 높이에서 트럭 적재함으로 떨어져서 피가 많이 나지만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이고 병원 진료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며, 진정인이 엄살을 부리는 것 같다고 하였다.

2011. 9. 27. 11:00경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화가 많이 나 있어 치료 차원에서 면회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 면회를 하지 못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정형외과 치료를 했고 X-ray 검사를 해봤지만 이상은 없었다고 했으며, 상황을 지켜보다 이상이 있으면 CT나 MRI 검사를 해야 하고 그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할 거냐고 물어봐서 비용은 가족이 부담할 테니 얼마든지 검사를

해달라고 했다. 그 이후 본인은 같은 해 10. 11.까지 이틀에 한번 정도 진정인 상태를 피진정인에게 전화로 물어봤지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진정인이 업살을 부린다고 하였다.

2011. 10. 28. 진정인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원래는 전화를 할 수 없지만 누가 도와줘서 전화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동안신경이 끊어져서 실명이 됐고 다리도 아파서 걸을 수 없는데 피진정인은 나아진다고 하면서 진통제만 주고 있으니 빨리 퇴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본인이 11. 2.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을 모시고 ○○의원에 가서 CT 검사를 해보니 그곳 의사가 진정인이 그동안 고통이 심했을 거라고 하면서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했다. 이에 본인이 피진정인에게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치료를 해주지 않았고 외부진료를 하지 않았냐고 항의하자 피진정인은 본인이 보기에 진정인의 상태는 멀쩡했고 외부진료를 나가려면 직원 3~4명이 같이 나가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였다.

2) 피진정병원 소속직원 A

2011. 9. 26. 새벽에 본인이 3층 순찰을 돌던 중 4층 흡연실에서 큰 소리가 나서 가서 창밖으로 보니 진정인이 건물 밖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병원 건물의 다른 창문에는 모두 쇠창살이 있지만, 4층에만 쇠창살이 원래 없어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바로 현장에 내려가 보니 바닥에 피가 고여 있었지만 진정인은 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피진정인에게 연락하니 진정인을 5point로 강박하라고 지시했다. 본인이 진정인을 병동 보호실로 데려가서 강박 후상처를 소독해 준 것이 전부였다.

진정인은 추락사고 이후 통증을 계속 호소하며 외부진료를 받도록 해줄 것을 원했고 본인과 소속 직원 B도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실명될 수도 있으니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1. 10. 22.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데리고 근처 안과에

가보라고 했지만, 본인은 소속직원 B와 상의하여 큰 병원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병원에 갔으나 진료 대기시간이 너무 길려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 같은 해 10. 24. 본인이 소속직원 B와 함께 진정인을 ○○의원에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의사로부터 진정인 오른쪽 눈이 실명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본인은 당시 외부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

진정인은 추락 사고를 당한 이후 외부와의 전화통화가 일체 제한되어 있던 상태였지만, 진정인이 불쌍하여 본인이 2011. 10. 28. 피진정인 모르게 진정인이 가족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3) 피진정병원 소속직원 B

진정인은 추락사고 이후 통증을 계속 호소하면서 외부진료를 요구하였다. 피진정인은 2011. 10. 15. 진정인을 데리고 근처 ○○병원 신경외과에 다녀오라고 하였고 본인은 진정인을 데리고 진료를 받게 하였다.

2011. 10. 22. 다시 본인이 진정인을 데리고 ○○안과에 외진을 갔으나 시간이 너무 길려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 해 10. 24.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실명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4) 동료환자 C, D, E

진정인이 추락한 날 아침에 창문을 통해서 보니 진정인이 떨어진 장소에 맨홀뚜껑 반 정도의 크기의 피가 고여 있었다. 사건 당일 4층 창문에는 쇠창살이 없었고 사고 이후에 쇠창살을 피진정인이 설치했다.(동료환자 C)

진정인은 사고 이후 너무 아파하면서 피진정인에게 외부치료를 받고 싶다고 수시로 요구했지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거나 여러 핑계를 대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진통제 주사만 계속 놓았다. 진정인은 사고로 틀니가 깨져 밥을 거의 먹지 못하였고, 외부와의 전화 연락도 전혀 하지 못했다.(동료환자 C, D, E) 본인도 허리가 아파서 외부진료를 요구했지만 피진정인은 외부진료 시 같이 나갈 직원이 없다고 하면서 진료를 거부했다(동료환자 D).

다) 환자들이 외부로 전화를 할 때는 보호사가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통화내용을 메모했다.(동료환자 C, D, E)

5) ○○병원 관계자 F

2011. 9. 26. 13:00경 진정인이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내원했는데 얼굴은 피범벅이었으며, 머리와 얼굴에 무수한 작은 상처가 있었다. 진정인이 횡설수설하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 함께 온 직원에게 물어보니 신경안정제를 투약 받았다고 들었다.

진정인을 치료할 당시 본인은 추락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듣지 못해 골절 여부를 몰랐고 X-ray 검사를 하지 않았다. 진정인 상처부위를 봉합하고 항생제와 소염제를 투약하였다. 진정인과 같이 온 직원에게는 진정인의 두부 손상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6) ○○병원 관계자 G

2011. 10. 15. 진정인이 내원하였다. 안면부 신경 손상의 경우 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과 기간은 통상 3일인데, 이미 부상을 당한 지 3주가 지난 관계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너무 초과한 상태였다. 그래서 본인이 진정인에게 신경손상 후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고, 진정인이 두통과 눈의 통증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약물을 처방하였다. 사람의 신경계는 다른 조직과 달리 손상 후 특정시간이 경과하면 회복되지 않는 불가역성을 가지고 있다.

7) ○○병원 관계자 H

2011. 11. 14. 진정인을 진단한 결과, 우측 상악, 관골, 관골궁, 안와 부위에 대한 골절과 좌측 관골 및 비골 골절이 확인되었고 사고 후 7주 정도 경과하여 수술에 어려움이 있었다. 뼈가 굳기 전에 수술을 하면 보형 처리가 가능하나, 그 시기를 지날 경우에는 치료비용은 자기부담이며 뼈를 절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강박 및 통신제한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8. 26. 자녀들의 동의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은 입원 중 2011. 9. 26. 새벽에 병동 내 쇠창살이 없는 4층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하여 우측 상악, 관골, 관골궁, 안와, 좌측 관골, 비골, 우측 무릎에 골절을 입었고, 무릎 관절의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다) 피진정인은 2011. 9. 26. 03:20경 진정인에 대해 몸통과 사지를 강박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날 13:30경 정형외과 외부진료를 위해 일시 강박 해제하였다. 외부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15:00경 다시 양팔을 강박하였고 다음 날 10:30까지 총 30시간을 강박조치를 하였다.

라) 진정인의 의료기록에는 강박 중 고통을 호소하며 힘들어 하는 모습과 보호실에서 누워있는 상태가 지속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강박 당시 진정인의 증상으로 '탈출 중 부상으로 출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강박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마) 피진정인은 2011. 9. 26. 사고 이전에는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사고 다음 날인 9. 27. 진정인의 자녀 ○○○가 내원했을 때 ○○○에게만 주 1회 전화통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통신제한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같은 해 10. 28.까지 ○○○를 포함한 외부인과의 전화통화를 일체 금지하였다.

바) 사고 이후 진정인의 전화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의료기록에 구체적 사유나 지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통신 제한과 관련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로 볼 수 있는 내용 또한 없었다.

2) 판단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행동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서는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상, 제한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환자를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들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은 2011. 9. 26. 추락사고로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하여 피진정인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진정인이 추가적인 탈출 시도나 자해의 위험이 현저히 낮았음에도 피진정인은 추락사고 직후 진정인에 대하여 10시간 동안 사지와 몸통을 강박하였고, 양팔을 20시간 강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환자의 치료와 보호 목적에서 행해진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없고 더욱이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제한으로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진정인이 추락 사고를 당한 이후 외부와의 전화 통화로 인해 병원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정신과적 치료에 방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음에도 피진정인은 사고 직후 특별한 사유 없이 진정인의 자녀 ○○○에게 통신제한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통신 제한과 관련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구체적 지시로 볼 수 있는 내용 또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일체 제한한 조치는 치료 목적에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행해지도록 한 통신 제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부상에 대한 치료 미흡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9. 26. 추락 사고당시 간호기록지에는 ‘진정인이 눈썹과 이마, 코 주변을 크게 다치고 그 외에 타박상이 심하여 상처부위 에 소독과 지혈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진통제 투약 외에 같은 해 10. 15. 진정인에 대해 신경외과 외부진료를 시행할 때까지 진정인의 상처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나 골절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기록이 없다.

나) 2011. 9. 26. 13:30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정형외과 외부진료를 시행하면서 진정인의 추락사고 사실을 해당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았고, X-ray 등 골절 또는 상해와 관련한 최소한의 검사조차 의뢰하지 않았으며, 상처부위 봉합과 항생제 및 소염제 처방만 받아서 진정인에게 투약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추락사고 당일 오전에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에게 전화로 사고 사실을 알리며 진정인의 상태에 대해 외관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다음 날 보호의무자 ○○○가 진정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과의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정신과적 치료를 이유로 거부하였다.

라) 추락사고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외부진료 요구와 외부진료가 필요하다는 소속 직원들이 건의가 있었지만 외부진료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10. 15.에서야 진정인에 대해 신경외과 외부진료를 시행하였다. 외부진료 결과, 안면부 신경손상 치료를 위한 시간이 이미 경과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4.에는 안과 외부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우안 시신경 손상으로 실명된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단결과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마) 2011. 11. 2.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요청으로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여 ○○병원에서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진료와 함께 무릎관절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치료를 받았으며, 2012. 3. 14. 우안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력 상실로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다.

바)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추락사고 이후 병원 안전시설에 대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점검을 받았고 시설 미비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 요구를 받은 후 안전시설을 갖추었다.

2)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5조 제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이송 시 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추락사고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상처 치료를 위한 조속한 조치나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을 하지 않고, 관련사고 사실도 해당 의료기관에게

알리지 않아 진정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제15조 제2항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추락사고 이후 진정인의 지속적인 통증 호소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체적인 검사나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상처 부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점에 검사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조치를 미루는 등 방치하였다. 비록 정신의료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지라도 정신과적 치료 외에 환자의 상해 정도나 그 악화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환자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입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더구나 추락사고 이후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진정인에 대해 보호의무자와의 면회는 물론 외부와의 교통을 일체 금지하여 사고 발생이후 30여일이 경과하도록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고, 외부 진료결과가 나왔음에도 보호의무자에게 진정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은 의료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 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취지는 물론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과 더불어 사고 은폐를 위한 고의성까지 발견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방치 등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5.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 등의 자유를 제한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5.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을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제7조제1항관련)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장비

가. 입원실

(4) 입원실의 시설 및 비품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예방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2012. 6. 13.자 11-진정-0683200 결정 [보호자 1인에 의한 부당한 입원]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 ○○구청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에 대한 입원 여부를 결정하면서 진정인의 자녀 외 다른 보호의무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정인 자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2. ○○구청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어머니가 생존해 있음에도 아들 1인의 동의만으로 ○○병원 (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1. 11. 2. 음주문제로 입원되었으며, 입원 당시 진정인의 자녀 ○○○가 본인 이외에 다른 보호자가 없다고 하여 그 말만 듣고 직계 혈족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입원동의서 뒷면에 진정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자필 서명을 진정인의 자녀 ○○○로부터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11. 2. 진정인의 자녀 ○○○의 입원동의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에서는 다른 보호의무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호의무자 ○○○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자녀 ○○○ 외에 모친 ○○○이 있으며, 진정인은 2011. 12. 29.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한사람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른 보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등으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환자를 즉시 퇴원하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에 대한 입원 여부를 결정하면서 진정인의 자녀 외 다른 보호의무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정인 자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意的 의사 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意的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7 2012. 7. 18.자 12-진정-0216600 결정 [임신 중인 정신 질환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

【결정사항】

-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가혹행위, 통신제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
- 【2】**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의 가혹행위, 통신제한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요청
- 【3】**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가혹행위, 통신제한 및 정원을 초과한 환자 수용 등 「정신보건법」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이 임신 중인 진정인을 장기간 격리·강박하고, 약물 복용을 강요하여 임신중절 수술에 이르게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전화사용 제한에 있어 진료기록부에 사유·내용·기간을 기록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진정 병원은 기본적으로 입원환자의 전화사용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여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 【3】** 피진정인은 야간 응급환자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정원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나, 병동근무일지에 의하면 정원 초과가 일시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입원환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치료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입원환자가 폐쇄병동에서 생활하게 되는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제45조 및 제46조 제1항

【진 정 인】 ○○○

【피진정인】 ○○의원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가혹행위, 통신제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한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의 가혹행위, 통신제한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3.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가혹행위, 통신제한 행위, 정원을 초과한 환자 수용 등 「정신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0. 2. 16. ○○의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당시 임신 5주차였는데, 피진정인에게 임신사실을 알리고 기형아 출산이 우려되어 정신과 약물 복용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은 입원 당일부턴 진정인을 격리실에 27일 간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았으며 약물 복용을 강요하였다. 진정인은 장기간의 격리·강박을 견디지 못하고 피진정인의 지시대로 약물을 결국 복용하였는데, 이후 기형아의 출산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가족이 진정인의 전화를 받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이 외부에 전화하는 것을 제한하였고, 진정인 외에 다른 환자들의 전화통화도 제한하였다.

다. 진정인 입원 당시, 피진정 병원은 환자가 60명 정도 있었는데, 정원 보다 환자가 많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피진정인은 2010. 2. 16. 입원당일부터 27일 간 진정인을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았으며 침대에 묶인 채 기저귀에 대소변을 해결해야 했다. 입원 후 17일째 되던 날 머리에 이가 생긴 것 같아 피진정인에게 사정해서 샤워하러 격리실을 한번 나온 것 이외에는 격리실에 계속 묶여 있었고, 15일 동안 굶으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진정인은 허락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계속된 강박으로 허리통증이 심해 강박된 상황에서 진통제를 맞았고 피진정인의 지시대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할 수밖에 없었다. 약물 복용 후 곧바로 격리·강박이 해제되었으나, 임신 중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여 기형아 출산이 염려되어 2010. 3. 23. 광명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임신중절 수술 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전화통화 제한을 하여,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피진정인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격리·강박 등에 대하여

진정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진정인을 성심성의껏 치료해 왔다. 2010. 2. 16. 진정인이 입원당시 진정인의 어머니와 언니가 동행하였다. 본인이 처방하는 약은 기형아 출산 우려 등이 없는 약이었으나 진정인은 입원 첫날부터 약물복용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진정인에 대해 강박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단, 직원과 다른 환자에게 공격성을 보였을 때 하루를 초과하지 않고 몇 시간 정도 격리·강박을 실시하였다. 진정인이 임신한 사실은 입원당시 검사를 통하여 2010. 2. 18. 알게 되었다.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 덕분에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감사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의 전화통화 제한에 대하여

진정인이 보호자를 협박해서 일시적으로 전화통화를 제한한 사실이 있다.

3) 진정요지 다.항의 환자의 초과수용에 대하여

야간에 응급환자가 입원하여 일시적으로 환자정원(49명)을 초과한 적이 있다.

다. 참고인

1) 피진정 병원 소속직원 A

가) 진정요지 가.항의 격리·강박 등에 대하여

진정인은 20일에서 23일 정도 격리·강박을 당하였고, 한두 차례 외에는 격리실에서 거의 나오지 못하였다. 그리고 진정인은 강박기간 동안 기저귀가 채워져 있었다. 진정인 외 다른 환자도 하루를 초과하여 강박한 경우가 많으며, 이00 환자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강박당하기도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전화통화 제한에 대하여

진정인은 입원기간 중 전화통화를 제한 당했으며, 원장이 다른 환자에게도 임의적으로 전화통화를 제한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환자의 초과수용에 대하여

본인이 피진정 병원에 입사한 직후에는 환자가 20명 정도였으나 점차 환자가 많아졌으며, 정원 49명을 초과하여 입원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동료환자

가) 진정요지 가.항의 격리·강박 등에 대하여

진정인이 20일 정도 오랫동안 강박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며, 강박 당하는 기간 동안 격리실 밖으로 나온 것을 본적이 없다. (동료환자 B, C, D, E)

격리실 앞을 지나가다가 진정인이 묶인 상태에서 병원직원이 진정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동료환자 B), 본인도 3일 동안 강박 당하였고 강박기간 동안 기저귀를 차고 대·소변을 보았다. (동료환자 E)

본인은 진정인이 강박당하는 동안 대·소변 기저귀를 갈아주고 입덧할 때 토하는 것까지 모두 손으로 봉투에 담아 처리했다. 2009년도에 피진정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중에 진정 외 이○○ 할아버지를 보호사가 환자를 시켜 소, 돼지 똥뭉치 사지를 묶어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 이외도 밥을 안 먹는다, 간호사한테 말대꾸 한다는 이유로 환자를 수시로 가두었다.(동료환자 I)

나) 진정요지 나.항의 전화통화 제한에 대하여

입원한 이후 본인은 전화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원장이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동료환자 F, G, H)

다) 진정요지 다.항의 환자의 초과수용에 대하여

피진정 병원에 환자가 60명이 입원한 적이 있었다.(동료환자 B, C)

3) ○○산부인과 의사 J

진정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중인 환자로 2010. 3. 23. 본원에 내원하여 임신초기로 확인되었다. 당시 진정인은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약물을 상당기간 복용한 사실과 이후에도 정신과 약물의 투약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중절 수술을 강력히 원해 수술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에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기형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으며, 더욱이 정신병원에서 제공하는 약물은 다른 약물보다 태아에게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4)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정인이 복용한 약물은 임산부 및 수유 위험이 있으며, 사람에 대한 입증 실험은 충분치 않으나 동물실험에서는 태아 기형과 관련된 위험성이 존재한다.

5) ○○대학교 ○○○ 교수

진정인이 복용한 약물은 임산부 투여에 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격리·강박 등에 대하여

1) 진정인은 2010. 2. 16. 보호의무자 어머니와 언니의 입원동의와 ‘사고장애 및 행동장애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고, 같은 해 12. 11. 퇴원하였다.

2) 피진정 병원 보호사의 병동근무일지에는 ‘2010. 2. 16. 12:00 ○○○ 입원, 격리실 입실’, ‘2010. 2. 23. ○○○ 강박 계속 유지할 것, 풀어 주지 마세요(원장지시)’, ‘2010. 3. 8. ○○○ 강박 해제, 503호 입실예정’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 피진정 병원의 격리·강박일지에는 개설신고일(2008. 2. 27.)부터 진정인이 입원하기 전(2010. 2. 15.)까지 격리·강박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진정인의 입원일(2010. 2. 16.)부터 수술일(2010. 3. 23.)까지의 기간 중 진정인에 대한 5차례 격리·강박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일시	내용	일시	내용
2010. 2. 16.	1시간 격리	2010. 3. 7.	1시간 강박
2010. 2. 23.	2시간 강박	2010. 3. 8.	3시간 강박
2010. 3. 1.	2시간 격리	-	-

4) 피진정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2010. 2. 16. 입원이후 진정인은 약물 복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0. 3. 7. 진통제(카페낙) 주사, 2010. 3. 8. 약물(rsp, cog) 복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의사지시서(doctor’s order)에는 피진정인이 2010. 3. 8. 진정인에게 위 약물 투약을 지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5) 진정인은 피진정 병원 입원 중인 2010. 3. 23. ○○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전화통화 제한에 대하여

1) 피진정 병원의 병동근무일지에는 ‘2010. 3. 19. ○○○ 21일에 전화 1통만 시켜주세요’, ‘2010. 8. 12. ○○○ 전화 2주 1회’, ‘2010. 8. 19. ○○○ 전화 1회 order’ 등이 기록되어 있다.

2) 진정인의 전화통화 제한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구체적 사유나 지시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환자의 초과수용에 대하여

1) 피진정 병원은 2008. 2. 27. 개설신고를 한 정신과의원으로 입원 환자의 정원은 49명이다.

2) 2011. 1. 1. ~ 2011. 8. 31. 기간 중 피진정 병원의 병동근무일지에는 대부분 50명 이상의 환자가 입원하였으며, 입원환자가 60명 이상이었던 날이 2월 3차례, 6월 2차례, 7월 4차례, 8월 6차례 등 15일에 이른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격리·강박 등에 대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들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그리고 격리·강박을 할 경우에는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을 확인하여 자세 변동을 시행하며, 대·소변을 보게 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

먼저, 피진정인의 부당한 격리·강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격성을 보였을 때 하루를 초과하지 않고 몇 시간 정도만 격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i) 피진정 병원 소속 보호사가 환자 입·퇴원 사항과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는 병동 근무일지에는 2010. 2. 16.부터 2010. 3. 8.까지 21일 동안 진정인이 격리·강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풀어주지 마라’는 피진정인의 지시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ii) 피진정 병원 직원과 당시 동료 환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는 점, iii) 특히, 동료환자인 참고인 I는 진정인이 강박당하는 동안 대·소변 기저귀를 직접 갈아주고 입덧할 때 토하는 것까지 처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iv) 진정인이 약물 복용을 거부하자 격리·강박하고, 약물을 복용하자 격리·강박을 해제한 것으로 병동근무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은 약물 복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환자에 대하여 장기간 격리 및 강박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진정인의 부당한 격리·강박행위가 진정인의 임신중절 수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은 임신 중이어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기 원하지 않았으나, 피진정인의 계속된 격리 및 강박 조치로 인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인정된다. 또한 격리 및 강박 조치는 건강한 성인도 감내하기 어려우며, 「정신보건법」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 중인 환자에게 장기간의 격리 및 강박 조치를 시행한 행위는 환자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임신 중인 환자에 대하여 장기간의 격리 및 강박 조치를 시행하고, 약물 복용을 계속적으로 강요하여 진정인은 임신중절 수술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 및 제46조 제1항 위반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증거인멸 방지 및 증거확보를 위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전화통화 제한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동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제한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의 지시자·수행자, 개시·종료시간을 구체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제한함에 있어 제한 사유나 내용, 제한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 행동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볼 때 피진정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원환자의 전화사용을 제한하고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증거인멸 방지 및 증거확보를 위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환자의 초과수용에 대하여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 된다(「의료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피진정인은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 병원의 병동근무일지에 의하면 2011. 1. 1 ~ 2011. 8. 31. 8개월 동안 60명 이상을 초과한 사례가 15회에 이르고, 참고인들 또한 피진정 병원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수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원을 초과한 환자 수용이 일시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듯 허용된 인원을 초과한 환자의 수용은 입원환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유무형의 다양한 치료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특히 계속된 과밀수용은 입원환자가 폐쇄병동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에 중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의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43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환자의 격리 제한) ①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들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자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 등의 자유를 제한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4.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개설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5.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제7조 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구분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정신과의원
가. 입원실	환자 50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환자 49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

제11조의3(기록의 작성·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입원 당시 대면진단

- 가. 진단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나. 동반한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다.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입원의 필요성
- 라. 대면진단일시

2. 계속입원 심사 청구 및 결과

- 가.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나. 동의한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다. 최초 입원 등의 연월일
- 라.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
- 마. 판정 결과

3. 투약 등 치료내용

- 가. 투약 지시자 및 수행자
- 나. 투약 내용
- 다. 투약일시

4. 치료프로그램의 내용과 결과, 지시자와 수행자 및 실시일시

5. 격리·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격리·강박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

6.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면회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통신·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10년

2.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5년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등”이라 한다)에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필름등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등을 제작한 사람이 필름등의 표지에 본인의 성명과 제작일시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하여야 한다.

8 2012. 7. 25.자 12-진정-0196400 결정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입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 ○○시 ○○구청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환자의 보호의무자 요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 병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진정인과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조모가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진정인의 누나를 보호의무자로 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정신보건법」 제2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 1. 피진정인에게, 입원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2. ○○시 ○○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환자의 보호의무자 요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11. 7. 14. 진정인은 ○○시 ○○구 소재 ○○○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입원 당시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할머니 ○○○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 ○○○과 평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남매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 병원 입원 전에 진정인의 부친이 진정인을 고소하였는데 피진정 병원에서 진정인의 부친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입원에 대하여

입원당시 진정인의 친부와 친누나가 같이 내원하여 입원동의를 하였다. 진정인은 평소 증상으로 인해 가출 후 주거가 불분명하였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없는 상태였으나, 친누나가 병원비 수납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입원할 정신병원을 정할 때도 직접 ○병원을 선택하여 환자를 설득하여 데려오는 등 보호자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였기에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본원에서는 정신건강 의학과 보호병동에 입원하게 됨을 진정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진정인도 입원에 반대하지 않았다.

본원에서는 입원당시 진정인 조모가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친부와 친누나가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보호의무자의 증빙자료는 병원 측 의무사항은 아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의 부친의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하여

진정인이 부친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부친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본원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록부와 피진정병원 소속 ○○○(원무과 담당직원), ○○○(행정과 담당직원) 통화진술, 진정인 제출 2011. 8. 9. ○○지방검찰청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1. 7. 14.부터 같은 달 30.까지 16일간 부친 ○○○과 누나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되었으며, 입원약정서상 담당주치의 의견은 ‘조울증 및 알콜의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2011. 7. 15. ○○구청장이 발행한 ○○○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이 입원될 당시에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부친 ○○○ 외에 진정인의 조모 ○○○이 생존해 있었다.

다. 진정인이 제출한 2012. 5. 8. ○○구청장 발행 기본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조모는 2011. 12. 30. 사망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누나 ○○○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를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마. 진정인이 제출한 2011. 8. 9. ○○지방검찰청○○지청 불기소사건

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2011형제19101호와 의견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부친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 진정인이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수 없었던 점과 피해자인 진정인의 부친 ○○○이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입원 여부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경우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가 부당하게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 병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위 규정에 의거하여 진정인과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조모 ○○○이 보호의무자로서 동의가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진정인의 누나를 보호의무자로 하였다. 이러한 피진정 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부친의 보호의무자 적격 여부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송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본 건의 경우와 같이 형사재판을 청구하기 전까지의 검사의 수사행위가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통상 소송이라 하면 법원의 심판 절차이므로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청구하기 이전의 수사행위까지 소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의 부친이 진정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 따른 소송 당사자가 아닌바, 피진정 병원에서 진정인의 부친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시킨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5.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관주

【별 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 의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 가. 주민등록표등본
 -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다. 건강보험증
 -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를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4 장

외국인·이주민 관련 인권침해

- 부당한 단속 및 강제연행 [4건]
- 부당한 처우 [2건]

부당한 단속 및 강제연행 등

1 2012. 3. 27.자 11-진정-0554000 결정 [부당한 강제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불법체류자 단속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시 증표 및 소속·성명 제시, 조사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사업주 등의 동의절차도 지키지 않고 사업장에 진입하여 단속행위를 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법집행이며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제17조의 사생활의 보호에 대한 침해임.

【참조결정】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156,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139, 04진기131 병합, 2005. 5. 23. 결정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46조·제47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6조·제81조·제8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1조,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훈령) 제3조·제4조·제10조·제11조,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5조

【진정인】 하○○

【피해자】 1. 하○○ 2. 김○○ 3. ○○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1. ○○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에게, 불법체류자 단속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11. 9. 28 14:50경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진정인이 운영하는 신발공장(○○)에 사전 동의 없이 들어와 불법적인 단속을 하였다.

나.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피해자 2와 진정 외 한국 근로자들에게 휴대한 총을 만지면서 위협하고, '숙소에 가서 신원을 확인해보자'는 피해자 2의 주장을 무시하고 오히려 신원조회를 한다며 강제로 연행하였다.

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피해자 3에게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출입국사무소로 강제로 연행한 후 밤새 풀어주지 않았다.

라. 단속과정에 권한이 없는 공익무요원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로서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신발공장에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2011. 9. 28 14:40경 단속을 실시하였다.

공장 내로 최초 진입한 강○○ 직원이 공장 입구에 있던 내국인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속을 고지한 후 단속에 임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단속직원이 구두가공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2에게 단속사실을 고지한 후 피해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구두 뒷굽을 다듬는 일을 하던 피해자 2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니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단속직원이 작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2는 다른 작업을 계속 하면서 “신분증을 숙소에 두고 왔다”고 놀리듯이 화를 내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에, 단속직원은 현장에서 신원확인이 어렵고 피해자 2가 작업용 칼을 들고 있어 현장보다는 단속차량으로 이동하여 휴대용 단말기로 신원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2는 처음에 거부하다가 이후 동행에 응하여 단속차량에서 신원확인 과정을 통해 합법체류자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미소지 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으니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도록 안내하였을 뿐 총기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 한편, 우리 소에서는 2011년도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직원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08년도에는 단속과정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이 작업용 칼로 단속직원을 상해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3)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위 사업체에 대한 단속 시 구두가공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3은 방문동거(F-1) 자격 소지자로서 합법체류자이나 취업은 불가능하므로 불법취업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제18조) 위반으로 피해자 3을 긴급보호조치한 후에 보호실로 이송하였다. 당시 ○○의 한국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였고, 향후 통고처분 받은 후에 체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피해자 3도 진정인의 사업체에서 2011. 9. 25.부터 2011. 9. 28.까지 취업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진정인은 과거 피해자 3을 포함하여 두 차례 외국인을 불법고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관련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 소지자인 피해자 3을 불법고용 하였다가 재차 우리 소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4) 진정요지 라에 대하여 당시 우리 소의 공익근무요원은 진정인의 사업장에서 외국인이 불법 취업하는 상황을 캠코더로 채증하는 업무 등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근거, 단속과 관련하여 직원을 보조하는 업무(계호지원, 채증 활동, 단속현장에서 발생하는 서류 정리 등)를 수행하고 있는바 적법한 업무수행이다.

3. 관련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범단속계획서 등에 의하면 2011. 9. 28. 15:00경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7명이 진정인(당시 부재중)이 운영하는 신발공장을 단속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 단속공무원들은 내국인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속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장직원인 참고인 등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자료에는 단속반원들이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증표 제시, 소속과 성명·단속목적 등을 고지할 시간적 여유 없이 순식간에 공장 내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당시 합법적 체류자(F2 비자)인 피해자 2가 공장 내에서 구두가공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단속직원(노○○, 엄○○ 등)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작업 중이던 피해자 2는 “비자가 2층 숙소에 있으며,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순순히 응하지 않자 단속직원은 신원조회를 위해 공장 밖 도로에 대기 중이던 단속 승합차로 가자고 요구하면서 양팔과 어깨를 붙잡는 등 실랑이가 있었고 단속직원에 의하여 반강제적으로 승합차로 동행된 사실은 있었으나 총기로 인한 위협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당시 구두가공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3은 방문동거(F-1) 자격 소지자로서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자이나 취업은 불가능하므로 피진정인은 불법취업과 관련, 긴급보호조치한 후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로 이송된 사실이 있다.

마. 피해자 3은 진정인의 사업체에서 2011. 9. 25부터 2011. 9. 28까지 불법 취업하였음을 시인하였고, 2011. 9. 29.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통고처분 후 당일 보호 해제되었다.

바.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에는 공익요원 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범단속 계획서 및 단속 현장의 CCTV 자료에 의하면 공익요원 1명이 단속 현장에서 단속 상황을 캠코더로 채증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15조제3항)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단속과 관련하여 직원을 보조하는 업무(계호지원, 채증 활동, 단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서류 정리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미 불법체류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위해 주거, 사업장 등을 방문할 경우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이 출입국관리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외국인의 주거, 사업장 출입조사 등에 있어 영장주의 원칙 준수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2005. 11. 21, 2008. 4. 28.)한 바 있고, 법원 또한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156)는 판결을 한 바 있고,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불법체류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상기 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판례와 같이 고용주 또는 공장 책임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2조 및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속반원은 주거권자 및 관계자에게 증표 제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목적 등을 설명하고 난 이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시 법령상 의무인 증표 및 소속과 성명 제시, 조사목적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사업주 등의 동의절차도 지키지 않고 사업장에 진입하여 단속행위를 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81조(출입국관리 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법집행이며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제17조의 사생활의 보호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미 '출입국공무원의 권한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사실상 체포와 구금의 작용을 내포하고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영장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외국인 단속과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04진인139, 04진기131 병합, 2005. 5. 23. 결정)한 바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비록 피해자 2가 단속업무에 협조적이지

않고 시간을 끈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단속공무원들이 단지 신원 확인을 위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조사자를 위력을 사용하여 단속 차량으로 연행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는 동행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 범위를 넘은 행위이며,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해자 3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의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같은 법 제51조의 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같은 법 제51조에 의해 긴급보호서를 발급하고 ○○을 ○○출입국사무소로 이송조치하고, 조사 후 익일 보호조치 해제(48시간 이내)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로서 조사대상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근무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5조 제3항에 의해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을 단속, 금전취급, 개인정보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일 공익요원이 피해자들에게 강제력을 사용하는 직접적 단속업무가 아닌 단속 상황을 캡코더로 채증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 정도가 법령에 규정된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활동이라 할 수 없어 조사대상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러한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태훈 위원 박란주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8.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항·제2항,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24조(체류자격의 변경허가) 또는 제25조(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위반한 사람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 제51조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56조의3 ①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외국인, 2. 외국인을 고용한 자,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50조에 따른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
2. 제69조와 제70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
3. 제80조와 제81조에 따른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수행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 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훈령)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단속반 편성) 조사과장 또는 조사과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과장”이라 한다)가 단속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준법의식이 투철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단속반장으로 지정
2. 여성 외국인의 단속에 대비하여 원칙적으로 여직원을 포함
3. 적법절차 시비 또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비하여 현장채증 전담직원 지정
4. 기타 단속의 안전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외국인 등 방문조사) 단속반원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단속반장이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용의자 긴급보호) ① 단속반원은 외국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 등 제시요구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으로

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때 용의자의 도주방지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이하 “고지문”이라 한다)으로 용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를 용의자에게 내보이고 그 여백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의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보호서 기재사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에는 용의자 인적사항,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거부 또는 허위진술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원불상”으로 표시한다.

② 긴급보호서의 기재내용은 사무소 도착 즉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며, 이 때 보호시간은 현장에서 실제 긴급보호한 시간으로 한다.

5. 「병역법」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6.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② 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단순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2012. 4. 24.자 11-진정-054840 결정 [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불법체류자 단속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단속반의 책임자는 단속 시작 전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단속에 대한 협조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들은 단속 전에 사업장 책임자에 대한 협조 요청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속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결정】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46조·제47조·제50조·제51조·제56조의 3·제56조의4·제81조·제82조,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3조·제4조·제10조·제11조·제12조

【진 정 인】 심○○

【피 해 자】 ○○ 외 3인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불법체류자 단속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공무원들은 2011. 8. 23. 14:00 경 진정인이 근무하고 있는 ‘○○물산’에 갑자기 들이닥쳐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단속하는 행위는 사전에 공장책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부당한 단속으로 인권침해이다.

나. 단속 공무원들이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4명(○○, ○○○, ○○, ○○○)의 목덜미와 허리춤을 잡고 강제적으로 단속 차량으로 끌고 가 신원조회를 강압적으로 실시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1)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해자

가) ○○(‘○○물산’ 직원, 인도네시아 국적)

단속반원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본인의 허리춤을 뒤에서 잡고 단속 차량으로 끌고 가서 두려웠다.

나) ○○○(‘○○물산’ 직원, 인도네시아 국적)

단속반원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본인에게 신분증이 있느냐고 물었고, 본인이 기숙사에 있다고 하자 본인의 허리를 손으로 둘러 잡고 끌고 가서 두려웠다.

다) ○○(‘○○물산’ 직원, 미얀마 국적)

단속반원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본인의 오른쪽 허리춤을 잡고 단속 차량으로 끌고 가서 두려웠다.

라) ○○○(‘○○물산’ 직원, 미얀마 국적)

단속반원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본인에게 신분증이 있느냐고 물었고, 본인이 기숙사에 있다고 하자 본인의 왼쪽 허리춤을 잡고 끌고 가서 두려웠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은 2011. 8. 13. ○○○○경찰서의 외국인 불법취업 관련 제보에 따라 요청기관의 신뢰성 및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히 이루진 것이다. 단속팀(조사팀장 6급 김○○ 등 단속반원 10명)은 “○○도 ○○군 ○○읍 ○○리 소재 건축자재공장 ‘○○물산’에 불법체류 혐의자 4명이 있다”는 제보내용 확인을 위해 2011. 8. 22. 출입국사범 자체 단속계획에 따라 2011. 8. 23. 동 사업장을 방문·점검하여 외국인근로자 전원이 합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단속활동을 종료하였다.

현장 도착 후 조사팀장은 공장 관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임을 고지하였고, 단속반원들 또한 현장 점검 및 외국인 개별 신원 확인 과정에서 각각 신분증(공무원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증)을 제시하고 단속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더욱이 당시에 기동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공무원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 모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단속 시작 전 공장 책임자에게 고지하지 못한 것은 사무실 위치를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남성 1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방송사 기자라고 자칭하며 현장 단속반원들에게 각각 이름을 대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의 항의는 없었다.

당시 단속 책임자인 자신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팀장’이라고 분명히 고지하였던바 이는 대내외적으로 공식 사용되는 보직명으로 개인 성명 이상으로 책임 관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성명요구에 불응했다’는 진정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단속반원들이 동 사업장에 도착하여 현장 점검 시, 작업 중이던 외국인 4~5명이 모두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외국인들은 외국인등록증이 기숙사에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기숙사에서 가져오게 하는 것보다 단속차량에서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신속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사업장 마당에 주차된 단속차량으로 인솔하여 전산 단말기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의 도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허리춤을 잡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강제로 태웠다’ 혹은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태웠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만일 상기와 같은 조치가 없었더라면 신원 확인을 위해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단속시간이 지체되는 사이 도주를 시도하다 부상을 입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도 차량으로 이동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긴요할 수밖에 없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위해 2005년경부터 이동식 전산단말기를 단속차량에 비치하고 신원조회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 미소지는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위반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벌금(동법 제98조)에 처할 수 있는 위법 사안으로, 이들이 생산현장 근로자임을 감안해 불법체류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한 후 별도의 처벌 없이 작업으로 복귀하도록 하였던바, 이로 인해 여하한 인권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상황 종료 후 신속한 신원 확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차량으로 이동하였음을 재차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다. 참고인의 주장

1) 최○○(‘○○물산’ 공장장)

사건 발생 당시 공장에는 내국인과 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으며, 단속반원 10여 명이 단속차량을 공장 공터에 세우고 단속을 하였다.

진정인이 사무실로 와서 “큰일 났습니다. 외국인을 다 잡아 갑니다”라고 외쳐서 나가 보니 단속조끼를 착용한 사람들과 양복을 입은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이들이 단속차량으로 외국인 직원 두 명(○○, ○○○)의 허리띠를 잡고 끌고가는 것을 보았다. 단속차량으로 가보니 차량 안에는 이미 외국인 직원 두 명(○○○, ○○)이 잡혀 와 있어 본인이 단속차량에 들어가려 하자, 여성단속반원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여 들어가지 않고 단속과정 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하자 책임자로 보이는 양복 입은 사람이 “신고 받고 단속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본인이 공장의 외국인 직원은 총 5명이고 한명이 휴가 중이라고 말하고, 외국인 직원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단속차량 안에서 신원조회를 하고 이상이 없었는지 한 명씩 풀어주었다.

본인은 단속되었던 4명의 외국인 직원들이 모두 단속차량에서 내려와 단속 책임자에게 다시 “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지, 이게 뭐니까? 단속을 개 끝듯이 밖에 못합니까? 외국인 직원들도 놀라고 우리 한국 직원도 놀라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며 항의하였다. 이에 현장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작업장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니, 외국인이 소지하지 않아서 끌고 갔습니다”라고 하였다. 본인은 현장에서 단속절차 위반 및 과잉성을 주장하였다.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단속 전에 본인과 직원들에게 신분을 밝히거나 단속하겠다는 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단속 후에 항의하는 본인과 직원들에게 ‘신고를 받고 와서 단속하는 것’과 ‘법무부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만 하였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10~20여 분 간에 발생하였고, 우리 직원들이 풀러난 후 본인은 단속반원 책임자에게 계속 항의하였으나 단속 공무원들은 막무가내였으며 '너희들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라는 느낌을 받았다.

2) 강○○(참고인, '○○물산' 직원)

본인은 당시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단속 상황을 목격하였다. 공장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속반원 3~4명이 들어왔으며, ○○○의 먹살을 잡고 가는 것을 보았다. 단속 반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거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현장 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피진정인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팀 10명(팀장 김○○)은 외국인 불법취업 관련 제보에 따라 2011. 8. 23. 14:00 경 ○○도 ○○읍 ○○리 소재 건축자재 공장 '○○물산'을 방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는지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하였다.

2) 이 단속과정에서 피진정 단속반원들은 단속 시작 전에 공장 책임자에게 고지나 사전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은 당시 공장 사무실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공장 사무실은 공장의 정문에서 바라보아 바로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바, 육안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무실로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당시 단속반원들은 공장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공장 사무실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공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공장에서 작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4명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였다.

2) 단속반원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포 전에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속 취지 등을 설명한 것에 관해서는 진정인, 피해자 및 참고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기숙사에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단속반원들은 이들을 체포한 후 약 20미터 떨어져 있는 기숙사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게 하는 대신에 ‘○○물산’ 정문 옆 공터에 주차된 단속차량으로 이동시켜 차량에 있던 전산단말기를 이용해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였다.

3) 단속반원들은 4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하여 이들의 허리춤 등을 잡고 강제로 이동시켰으며, 당시 외국인 근로자들은 심하게 저항하지는 않았고 단속차량의 전산단말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원이 합법체류자임을 확인되자 작업장으로 복귀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을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 시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시설에 들어갈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는데 이는 입법상 미비로 보인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동법 제50조는 필요 시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요구할 것을, 동법 제82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0조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방문 시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목적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우리 위원회는 '단속을 위해 주거, 사업장 등을 방문 시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은 「출입국관리법」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주거·사업장 출입조사 등에 있어 영장주의 원칙 준수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2005. 11. 21, 2008. 4. 28.)한 바가 있다. 또한, 법원도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 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단속반의 책임자는 단속 시작 전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단속에 대한 협조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들은 단속 전에 '○○물산'의 공장 책임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단속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사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동법 제56조의4는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들은 '○○물산' 공장에 불시에 들어가서 단속을 시작하여 합법 체류자격을 갖고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의 허리춤 등을 잡고 강제로 단속차량으로 이동시켰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신분증

등이 기숙사에 있다고 말하였으나, 단속반원들은 이를 목살하고 이들을 신원파악을 위해 단속차량으로 이동시켜 인치하였고, 신원파악 결과 모두 합법체류자임이 밝혀져 풀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두려움과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외국인등록증을 기숙사에 보관하고 있었고, 이들이 체포된 공장과 기숙사는 건물이 인접해 있고 불과 2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던 점, 단속반원이 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특별한 행정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단속차량으로 끌고가 신원조회를 한 것은 단속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태훈 위원 박란주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8.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항·제2항,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24조(체류자격의 변경허가) 또는 제25조(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위반한 사람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급 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외국인, 2. 외국인을 고용한 자,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50조에 따른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
2. 제69조와 제70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
3. 제80조와 제81조에 따른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수행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 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훈령)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인에 대하여 폭언, 가혹행위,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범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단속반 편성) 조사과장 또는 조사과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과장”이라 한다)가 단속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준법의식이 투철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단속반장으로 지정

2. 여성 외국인의 단속에 대비하여 원칙적으로 여직원을 포함
3. 적법절차 시비 또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비하여 현장채증 전담직원 지정
4. 기타 단속의 안전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외국인 등 방문조사) ① 단속반원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단속반장이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용의자 긴급보호) ① 단속반원은 외국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 등 제시요구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때 용의자의 도주방지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이하 “고지문”이라 한다)으로 용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를 용의자에게 내보이고 그 여백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의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보호서 기재사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에는 용의자 인적사항,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거부 또는 허위진술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원불상”으로 표시한다.

② 긴급보호서의 기재내용은 사무소 도착 즉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며, 이 때 보호시간은 현장에서 실제 긴급보호 한 시간으로 한다.

3

2012. 7. 10.자 12-진정-0189800 결정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과잉단속]

【결정사항】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과도하게 수갑을 채운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인들은 법령상 의무인 사업주 등의 동의절차도 지키지 않고 사업장에 진입하여 단속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관련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과도한 직무집행 행위이며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제16조의 주거권 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2】** 「출입국관리법」 제27조는 효율적인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하여 외국인에게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할 것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게 그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강제로 연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아니고, 수갑 등 장구사용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참조조문】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제1항· 제56조의4제1항· 제82조· 제83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3조

【진정인】 이○○

【피해자】 1. ○○○ (베트남인) 2. ○○ (중국인)

【피진정인】 1. 윤○○ 2. 정○○

【주 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과도하게 수갑을 채운 피진정인 정○○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12. 3. 7. 오후 5시 30분경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진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기업, ○○도 ○○시 소재)에 사전 고지 없이 진입하여 단속한 것은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나. 위 단속과정에서 합법체류 외국인을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우리 소는 ○○도 ○○시 ○○면 ○○리 소재 '○○기업'이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업체를 방문, 사무실에서 체류외국인의 신분 확인차 방문하였음을 알린 다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조사하였다.

동 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외국인 7~8명 중 다른 외국인들은 신분 확인 요청에 협조하여 주어서 별 문제가 없었으나, 유난히 피해자 1, 2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법체류자들의 행태처럼 강하게 반발함과 동시에 도망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신분증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이에 우리 소 직원들이 이들을 신분증이 있는 장소로 데려가려고 하자, 피해자 1이 단속 직원들의 손을 뿌리치는 등 강하게 반발하여 합법적인 체류외국인이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어서 도주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이 들어 부득이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숙소로 데려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다. 피해자 2는 강제수단(수갑)을 사용하지 않고 신분확인을 위해 단속차량으로 데려가 휴대용 단말기로 신분을 확인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제2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외국인등록증 포함) 등 신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및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5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무소 직원이 위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생각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팀 10명(팀장 : 윤○○ - 피진정인 1)은 외국인 불법취업 관련 신고에 따라 2012. 3. 7. 17:40경 ○○시 ○○면 ○○리 소재 '○○기업'을 방문하여 동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였다.

나. 위 단속활동 과정에서 피진정인 2 정○○은 피해자 1에 대하여 수갑을 채워 약 50미터 떨어진 회사 기숙사로 이동시켜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한 바 있고, 피해자 2에 대하여는 단속차량으로 이동시켜 신원을 확인한 결과 합법체류자로 확인되어 단속활동을 종료하였다.

다. 피진정 기관이 단속활동을 실시하였던 ○○기업에 설치된 총 12개의 CCTV파일을 분석한 결과, 단속반이 단속 시작 전에 공장 책임자에게 고지나 조사협조를 요청하는 화면은 없으며, 우선 단속을 실시하고, 진정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자 1이 단속 과정에서 피진정인 등에게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단속 개시 전에 사업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11. 21. 및 2008. 4. 28. 법무부에 대하여 '단속을 위해 주거, 사업장 등을 방문 시 주거권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은 출입국관리법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주거, 사업장 출입조사 등에 있어 영장주의 원칙 준수 등 형사 사법절차에 준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2009. 3. 12. 선고 2008도7156)한 바 있다.

피진정기관 단속 개시 전 진정인의 사업장 사무실에서 체류외국인의 신분 확인 차 방문하였음을 알린 다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발견하고 단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 분석 결과, 단속 직원의 단속 개시 이후에 단속직원이 사무실로 가서 단속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불법체류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판례와 같이 고용주 또는 공장 책임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2조 및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속반원은 주거권자 및 관계자에게 증표 제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목적 등을 설명하고 난 이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법령상 의무인 사업주 등의 동의절차도 지키지 않고 사업장에 진입하여 단속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에 따른 조사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관련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과도한 직무집행 행위이며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같은 법 제16조의 주거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수갑을 채워 단속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는 ‘○○기업’ 사업장에 불시에 들어가서 단속을 시작하여 합법 체류자격을 갖고 작업 중이던 피해자 1에 대하여 강한 저항 행위가 없었음에도 수갑을 채워 강제로 회사 기숙사까지 이동시켰다. 피진정기관은 피해자들이 「출입국관리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본인들의 단속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법 제27조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할 것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게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수갑을 채워 강제로 연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수갑 등의 장구 사용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 본 사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출입국관리소장에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한 피진정인 정○○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태훈 위원 곽란주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 ①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4 (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50조에 따른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
2. 제69조와 제70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
3. 제80조와 제81조에 따른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수행

제83조(출입국사범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인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범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4 2012. 8. 2.자 12-진정-0349300 결정 [부당한 강제연행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과 단속에 참가한 단속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임의동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단속차량으로 연행한 행위는 공권력 사용의 기준이 되는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넘어서 과도한 행위라 할 것이고, 결국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제46조제1항·제47조·제50조·제51조 제1~5항·제56조의4제1항·제8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1조,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3조제1~7호·제10조제1~2항·제11조제1~3항, 제12조제1~2항

【진정인】 ○○○(네팔인)

【피해자】 진정인, ○○(진정인의 아내)

【피진정인】 1. ○○출입국관리소장
2. 김○○(○○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

【주 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과 단속에 참가한 단속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네팔 국적으로 기업투자 사증(D-8)을 가지고 ○○시 ○○공단에서 자동차부품공장(○○○○○○○○○○, 이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진정인 2와 단속반원들은 2012. 5. 18. 16:00경, 진정인이 부인과 함께 공장 옆 건물인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강제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진정인의 아내를 자기들의 단속차량으로 연행하여 신원조회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이 단속차량으로 연행되면서 “수갑을 왜 채우느냐?”고 항의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관련 문건은 사무실과 차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피진정인 2는 “야 이 새끼야, 말 많이 하지 마” 등의 욕설을 했고, 단속차량 안에서 자신의 수첩으로 진정인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했으며 “조용히 하라”고 욕박지르고 수첩을 진정인의 가슴에 던졌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 1)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 2) 피해자(진정인의 부인 ‘○○’)

2012. 5. 18.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 옆에 있는 협력업체인 ‘○○○’에서 진정인인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단속반원이 본인과 남편을 체포하듯이 붙잡았다. 단속반원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남편과 같이 사무실에 가서는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남편에게 수갑을 채웠다.

단속반원들은 남편과 본인을 단속차량으로 데리고 가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단말기로 조회를 하며 “불법, 불법”이라고 말했으며, 남편이 “서류가 있다”고 말하자 “말하지 마” 하면서, 수첩으로 남편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본인이 손으로 수첩을 막고, 남편은 “차에 가서 신분증을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으나, 그 단속반원은 “이 새끼” 등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수첩을 남편에게 던져 남편의 가슴에 맞았다. 단속차량에 남편은 15분 정도 잡혀 있었고, 본인은 25분 정도 더 있다가 풀려났다.

나. 피진정 기관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체류자격과 관련한 우리사무소의 실태조사 담당자의 제보 및 요청에 의하여, 2012. 5. 18. 오후 진정인의 사업장 옆 건물인 ‘○○○’에 단속을 나갔고 단속반장이 ‘○○○’ 사무실에 들러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단속을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사장은 출타 중이었다.

당시, ‘○○○’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 2는 (이곳 종업원으로 보고)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있지 않았고 신분증이 다른 장소에 있다며 단속반원을 데리고 그 장소로 가서 “사실은 신분증이 차안에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가 단속차량에서 신분을 확인해 보자고 하자 진정인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고 또한 진정인이 도주를 기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미란다원칙과 체포 사유 등에 대하여 고지한 후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및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5조에 의거 수갑을 채우고 단속차량으로 데려왔다. 진정인의 아내인 ‘○○’ 역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으므로 신분확인을 위해 또 다른 단속반원이 차량으로 데려왔으나, 도주 가능성이 희박하고 도주해도 쉽게 제압할 수가 있다고 보아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2가 사법경찰관 신분증을 채차 보여주었고 진정인에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보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차량에 신분증이 있는데 왜 자신이 굳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야 하느냐”며 이름과 생년월일을 쓰기를 거부하여 피진정인 2가 “여기에서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출입국사무소로 데려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재차 이름과 생년월일을 쓸 것을 종용하자 진정인과 진정인의 아내가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신원을 확인하였다.

신원확인 결과 진정인은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 신청 접수 중에 있었고 진정인의 아내 역시 동반(F-3) 자격 소지자며 체류기간연장 중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아내는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단속현장에서 남편과 같이 동거하고 있고 도주할 염려가 없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연행을 하지는 않기로 직원들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 시간동안 진정인의 아내는 단속차량에서 약 15분 정도 대기한 것이다.

잠시 후 참고인인 ‘○○’ 사장 이 모씨가 도착하여 추가적으로 진정인과 이 모씨 사이의 계약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 이때 이 모씨가 진정인의 말만 듣고 거칠게 항의하여 단속반장이 사정 설명을 해주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속반원이 욕을 하거나 수첩으로 진정인의 가슴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

차량에 탑승한 진정인에 대하여 피진정인 2가 신원확인을 위해 잠시 기다리라는 수차례의 말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사용하는 ‘○○’ 사장이 거의 도착했다고 소란을 피우고 차량 밖으로 나가려 하여, 서로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욕설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다. 참고인의 주장

1) 이○○(‘○○○’ 대표)

진정인의 공장 옆 건물에서 진정인과 협력관계의 일을 하고 있다. 당시 진정인은 단속차량에 그의 아내와 함께 잡혀 있다가 먼저 풀려났

고, 본인이 “진정인의 부인은 왜 잡아 갔냐?”고 묻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아내처럼 F-3 사증으로 가사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답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남편 밥 해 주는 게 잘못이냐?”고 항의하자 그제야 부인을 단속차량에서 내려 주었다. 진정인은 차에 10분 정도 있었고 그의 부인은 진정인이 내린 뒤 30분 정도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단속반원들이 철수할 때,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맞았다고 이야기했고, 본인은 피진정인들에게 “누가 때렸냐?”고 항의하였고 단속반원들이 “제3자는 빠지라”고 말하며 급히 현장을 떠났다.

2) 김○○(참고인, 진정인 사업장의 직원)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항의하였더니, 단속반원이 “불법체류자 단속 나왔다, 조사하면 다 나오며, 불법이 아니면 바로 풀려날 것이다”고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기관,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피진정인 2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0명(단속반장 윤○○)은 2012. 5. 18. 16:00경 ○○시 ○○공단 소재 ‘○○○’를 방문하여 진정인(○○○○○○○○○○ 운영)과 진정인의 부인을 불법체류자로 보고 단속활동을 하였다.

2) 이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은 자신의 체류관련 서류가 인근 자신의 사무실(○○○○○○○○○○)과 자신의 차량에 있어 즉시 제시하지 못하

였고, 단속반원들은 진정인과 함께 인접한 진정인의 사무실로 갔으나, 피진정인 2는 더 이상의 서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진정인의 아내와 함께 단속차량으로 연행하여 신원을 확인하였다.

3) 단속반원들은 진정인의 신원파악과 체류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갑을 해제 후 조사를 마쳤으나, 진정인의 아내는 불법사항이 있는지 직원들 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 15분이 더 지체되었다.

4) 진정인은 D-8(기업투자 사증)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연장신청 중이었으며, 관련 서류들은 진정인의 사무실과 단속차량과 약 7미터 떨어져 있는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단속차량 안에서의 피진정인들이 욕설을 하고 수첩으로 가슴 등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참고인도 당시 진정인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고 하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의 아내와 함께 신원조회를 위해 강제로 단속차량으로 이동시켜 신원을 파악한 후 진정인과 그의 아내를 풀어주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강하게 반발하였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반원이 1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의적 방법을 통해 진정인 등을 단속차량으로 동행시키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이고, 합법적 체류자격을 갖춘 진정인 등이 이를 끝까지 거부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진정인에 대해 수갑을 채워 제압을 할 만한 급박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을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제56조의4는 강제력은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방지, 도주우려 및 직무집행을 거부나 방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이미 ‘단속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반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단속차량으로 끌고 가 신원조회를 한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권고(2012. 4. 24.)한 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단속차량까지 연행한 행위는 공권력 사용의 기준이 되는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넘어선 과도한 행위라 할 것이고, 결국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과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 2의 수갑사용 행위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현저히 결여된바 경고조치가 필요하며, 함께 단속에 참여한 단속반원들의 경우 일정한 연대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바 이번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진정인과 그의 아내가 단속차량에 있을 때 단속반원이 욕설을 하고 수첩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태훈 위원 곽란주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8.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항·제2항,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20조(체류자격의 활동),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24조(체류자격의 변경허가) 또는 제25조(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위반한 사람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 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 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급 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①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외국인, 2. 외국인을 고용한 자,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훈령)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범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 등 방문조사) ① 단속반원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단속반장이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용의자 긴급보호) ① 단속반원은 외국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 등 제시요구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때 용의자의 도주방지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이하 “고지문”이라 한다)으로 용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를 용의자에게 내보이고 그 여백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의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보호서 기재사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에는 용의자 인적사항,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 장소 및 보호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거부 또는 허위진술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원불상”으로 표시한다.

② 긴급보호서의 기재내용은 사무소 도착 즉시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며, 이 때 보호시간은 현장에서 실제 긴급보호 한 시간으로 한다.

부당한 처우 등

5

2012. 4. 24.자 11-진정-0147700 결정 [재외동포 고충해소 합법화 조치로 인한 비동포 외국인에 대한 차별]

【결정사항】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대상의 출입국 관련 구제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비동포 외국인이 배제되어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비동포 외국인이 처한 인권적 상황은 인도적 차원에서 불법체류상태의 재외동포와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인도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출입국 관련 사업이라면 비동포 외국인의 인도적인 측면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출신 국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 대한 보편적 입장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참조조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및 제4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

【진 정 인】 고○○ 외 4명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대상의 출입국 관련 구제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비동포 외국인이 배제되어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법무부는 재외동포 고충해소의 일환으로 2011. 1. 3.부터 2011. 6월까지 10년 이상 불법 체류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비속, 부모 또는 배우자가 국적이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자, 산재 후유증으로 치료가 요망되는 자,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자, 불법 체류상태로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방문취업자격으로 불법 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 합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동포 외국인에 대한 인종 및 국적에 의한 차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평등한 노동권과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을 시정조치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재외동포 고충 해소 시행사업은 2011. 6. 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정책으로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포용정책의 차원에서 특별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 비동포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재외동포 우대 정책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독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서도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2)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동포에 대해서 우대를 하려는 것이지 외국인을 차별하려는 것은 아니다. 독일은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독일기본법 제116조, 국적법 제7조, 이민법 제38조 규정), 대만은 국적 또는 거주비자 부여(국적법 제4조, 입출국이민법 제9조), 싱가폴은 이중국적 인정(헌법 제121조), 일본은 자유왕래 및 취업허용 등으로 자국동포를 우대하고 있다.

3. 판단기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및 제4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 「헌법」 제11조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법무부는 2011. 1. 3. 기준으로 10년 이상 불법체류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부·모 또는 배우자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국내에서 자녀출산 자, 산재 후유증으로 치료가 요망되는 자,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자(체류기간 도과자도 포함), 불법체류 상태로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자,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불법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 재외동포 고충해소 차원에서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해 주거나 기술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국내에서 4년 10개월간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재외동포 고충해소 사업은 재외동포에 한하여 장기간 합법적이지 않은 상태의 국내체류 등으로 인해 재외동포가 국적국으로 귀국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다는 법무부의 판단 하에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011. 1. 10.부터 2011. 6. 30.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사업이다.

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400,000여 명이다. 이중 합법적인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68,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가별 불법체류자 수는 중국, 베트남, 태국 등의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동포가 해당 체류국의 배려정책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은 사례로는 1969년 브라질 정부의 법령 제944조에 의한 한인 이민자들의 불법체류 사면, 1980년 다시 브라질 정부의 사면령으로 4,500여 명의 한국국적자가 영주권 취득, 1978년 독일 정부의 과독 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한 합법화 조치 등이 있다.

6. 판단

법무부는 2011. 1. 여러 사유로 국내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7개의 신청대상 영역을 선정하여 재외동포 고충해소방안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근현대사의 역사적 혼란기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의 후손에 대하여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국내에서 각종 제한을 감내해야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 의미 있는 인도적 사업이고 많은 국가에서 동포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는 차별적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재외동포 우대조치는 합리성을 갖지만, 불법체류라는 같은 상황 하에 있는 동포와 비동포를 구분하여 재외동포에게만 인도적 차원의 혜택을 부여하고 비동포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인종차별 철폐 및 평등을 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그 합리성이 결여되어 차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미 우리 정부가 2003. 9.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합법화 조치를 취한 사례를 고려해 볼 때 비동포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책적 관점은 외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인권문제를 국가 간 호혜주의 원칙에서 보호할 수 있는 순기능 측면도 기대할 수 있고, 인도적 견지에서 살펴볼 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동포와 비동포는 현재 국내에서 장시간의 노동, 임금체불, 산업재해 노출 및 공공 의료 접근의 제한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체류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오히려 비동포 외국인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도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비동포 외국인이 처한 인권적 상황은 인도적 차원에서 불법체류상태의 재외동포와 달리 보아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인도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출입국 관련 사업이라면 비동포 외국인의 인도적인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여 출신 국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 대한 보편적 입장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판단기준 등에 따라 살펴볼 때 법무부에서 향후, 인도적 차원으로 출입국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 비동포 외국인이 배제되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태훈 위원 박란주

【별 지】 관련규정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후,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제4조 (c) :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3.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6

2012. 9. 25.자 11-진정-0703800 결정 [난민 신청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대처 미흡]

【결정사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출입국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난민 신청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 등을 정비할 것과 담당 직원들에게 난민의 권리 및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해자가 이전에 밝힌 자국으로의 귀국 희망 의사표시와 달리 난민 신청 의사를 자필로 기재하여 항공사를 통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음에도 해당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난민신청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체 판단하여 더 이상 난민 인정 신청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음.

【2】 설령 피해자가 난민신청 의사에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개인적이고 즉각적인 판단으로 난민신청을 묵살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없으며, 만약 난민신청을 묵살하지 않고 적절한 재조사와 임시상륙허가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쳤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러한 기회 자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에 부족함이 있고, 「헌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11. 12. 29. 결정(이주인권가이드라인 권고)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추방 및 송환의 금지)

【진정인】 김○○, 이○○

【피해자】 ○○○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도 출입국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난민인정 신청' 상황에 담당 직원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매뉴얼 등을 정비할 것과, 담당 직원들에게 난민의 권리 및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해자인 ○○○○○ 출신의 ○○○는 2011년 5월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난민신청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적절한 안내조치를 받지 못한 채 난민 신청 의사가 묵살되었고, 약 2개월 이상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체류하다가 태국으로 출국당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해자는 2011년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매끼 햄버거를 식사로 제공받아 섭취하면서 복통을 호소하였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대한민국에 난민신청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본국인 ○○○○○에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전달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재 ○○○○○ 대사관에 노출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한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2011. 5. 13. ○○ 여권으로 ○○138편(피지 발)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17:30 도착하여 18:40발 ○○653편(방콕 행)으로 환승 예정이 었으나, 환승편에 탑승하지 않고 공항 환승구역에서 숨어 지내다가 다음 날 ○○항공 직원에게 발견되자, 동 직원에게 난민신청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사무소는 2011. 5. 15(일) 피해자에게 난민신청 의사를 묻 자, 피해자는 이를 번복하며 ○○○○○로 가기를 희망하여 편의를 제공 한바 ‘적절한 안내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조사과정에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사무소는 피해자가 난민신청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해자가 비록 입국심사 대상이 아닌 환승객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의사표시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난민의사를 번복하고 본국 귀국을 희망함에 따라 귀국을 지원한 것이다.

참고로, 최초 ‘난민신청’ 의사표시 후 이를 번복하여 우리 사무소의 출입국심사관에게 직접 본국 귀국을 희망했던 피해자 자신의 편의에 따라 간접 경로를 통하여 다시 난민신청을 원한다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인정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국인의 태도에 국가의 주권행위가 흔들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정한 피해자가 ‘2달 반 가량 법률의 근거 없이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있다가 태국으로 강제출국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했던 승객이 아닌 환승객이어서 피해자 에 대한 신병관리 및 강제출국 등은 우리 사무소의 조치와는 무관하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은 피해자와 같은 환승객 또는 입국거부자를 본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대기시키기 위해서 ‘인천공항 항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우리 사무소의 관할이 아니다.

2011. 6. 13. 우리 사무소는 피해자의 복통에 대하여 인천공항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상륙’을 허가한 사실이 있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항공에 의하면, 2011. 5. 17.경 피해자가 ○○여권(출처 불명)을 찢어버려서, 주일 △△△△△대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이메일에 저장된 △△△△△ 신분증 사본을 출력하여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한 것이다.

또한 주일 △△△△△대사관 직원과 직접 통화하며 본인 확인 및 신속한 여행증발급을 요청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자필 진술내용 등을 감안하면, 보호받아야 할 난민신청자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지에서 출발한 ○○항공 ○○138편으로 2011. 5. 13.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18:40발 ○○항공 ○○653편(방콕행)에 탑승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머무르다가 2011. 5. 14. 13:10 경 인천공항 출국장 15번 탑승구 인근 흡연실에서 ○○항공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고, ○○항공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는 2011. 5. 14. 14:30 경 “난민신청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6:00부터 20:40까지 난민신청 관련 조사를 받았다. 동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족관계 등을 포함한 개인적 사항, 여행경로, 난민 신청사유 등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 ○○○○과 팀장은 다음 날(5. 15.)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난민신청 의사를 번복하는 내용의 “△△△△로 가겠다”는 자필진술서를 받아 그 내용을 ○○항공 직원에게 통보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담당팀장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팀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라. ○○항공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에 따라 피해자 출국을 위한 서류발급을 위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제공하여 일본 주재 △△△△△△ 대사관에 연락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여행서류 발급신청서를 일본주재 △△△△△△ 대사관에 팩스로 신청하였으며 이후 우편으로 발송(2011. 5. 24)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마. ○○항공은 2011. 6. 13.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긴급상륙허가를 받아 인천공항 의료센터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사실이 있고, 치료비를 ○○항공에서 부담하였다.

바. ○○항공은 2011. 6. 22. 일본 주재 △△△△△ 대사관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가 “△△△△△ 국적자가 아님”을 통보받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2011. 6. 29. 피해자에게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자필진술서 내용 중 난민신청에 대한 문구를 재차 확인하여,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 ○○○○과 팀장에게 통보하였다.

사. ○○항공으로부터 피해자의 난민 신청 의사 관련 통보를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과 팀장은 피해자가 이미 귀국 희망 의사를 표시하였고,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피해자가 직접 작성했으며, 여행증명서 발급 등을 위하여 주일 △△△△△ 대사관 직원과 직접 유선 통화한 사실 등을 들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항공 직원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이후 난민인정 신청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아. 피해자는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머무르다가 약 1개월 후 2011. 7. 30. 인천→방콕→△△△△△ 여정으로 출국하였으며, 방콕 도착 후 △△△△△ 국적기의 탑승거절로 태국 방콕공항 송환대기실에 머무르다가 2012. 2. 16. 유엔난민기구 태국 대표부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6. 판단

가. 피해자의 난민신청 의사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은 2011. 5. 14.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에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의 난민신청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익일(5. 15.)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처음의 난민 신청 의사를 번복하는 “△△△△△ 귀국 희망” 의사가 포함된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펜과 종이를 준비하여 “△△△△△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기술하기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여권 훼손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범죄자로 언급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가 송환대기실 내에서 유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 외에 피해자의 난민신청 의사 번복이 피진정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이후 피해자가 일정기간 △△△△△ 귀국을 위한 절차를 자발적으로 진행한 점을 볼 때 이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1. 5. 15.의 ‘△△△△△ 귀국 희망’ 의사 표시와는 다르게 2011. 6. 29. 송환대기실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재차 자필로 기재하여, ○○항공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항공은 이를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통보함으로써 피진정기관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해자의 난민 신청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체 판단하여 더 이상의 난민 인정 신청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피해자가 비록 일관성 없이 난민신청 의사를 재차 보였고, 그 배경이 △△△△△ 귀국이 어렵게 되는데 연유한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개인적이고 즉각적 판단으로 이를 묵살한 것은 적절한 태도로 볼 수 없다.

만약 피해자의 난민의사의 재표명이 즉각 묵살되지 않고, 적절한 재조사와 임시상륙허가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쳤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런 기회가 피해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것은 난민협약 가입국(1992. 12. 3.)의 의무 이행상 부족함이 있고,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6년 6월 “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 및 2012년 2월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를 통해 난민신청인들이 난민 인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공항·항만 등에서 난민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원인을 추적해보면, 제도의 미비 또는 공백이 발견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 2는 항만이나 공항에서 입국 전 상태에서의 난민신청자의 임시상륙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이 요건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난민신청절차는 위험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경우 없이 바로 도피하여 한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긴급피난과 같은 경우 외에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 있는데 2012년 2월 제정되어 오는 2013년 7월 시행예정인 「난민법」은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새로 제정된 「난민법」에서 이 사건처럼 출입국항에서 좀 더 폭넓게 난민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그 시행 전이라도 관련된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여 이러한 상황 발생시 담당 직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대처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난민신청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의 복통에 대한 의료조치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2011. 6. 13. ○○항공의 요청에 의거하여 피해자를 「출입국관리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긴급상륙을 허가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항공의 지원으로 인천공항 의료센터에서 복통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 따라 기각하고자 한다.

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하여

비호신청자로서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피해자 국적국의 대사관으로 유출된 것은 민간항공 운수업자인 ○○항공에서 2011. 5. 15. 일본 주재 △△△△△대사관에 피해자의 여행증명서 신청을

팩스로 신청한 것 및 2011. 5. 24. ○○항공에서 우편으로 여행증명서 신청을 전달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는 민간운수업자인 ○○항공과 피해자와의 사인 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각하하고자 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기각하며,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각하한다.

2012. 9. 2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한태식 위원 박란주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①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6조의2(난민의 인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면 심사절차를 거쳐 그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추방 및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학교 및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 학교에 의한 인권침해 [6건]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침해 [1건]

학교에 의한 인권침해

1

2012. 4. 24.자 11-진정-0181800 결정 [고정식 명찰 부착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 【1】 ○○광역시 교육감에게, 교복에 고정식 명찰을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과 관할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2】 피진정인 1. ~ 11.에게, 고정식 명찰 부착의 관행을 시정할 것과, 이를 규정하는 「학교생활규정」 등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학교 안에서 명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불가피하여 교육상 필요한 경우로서 학생 신분에는 개인이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학교 밖에서까지 명찰을 달고 다니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

【참조조문】

「UN아동권리협약」,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진 정 인】 서○○

【피진정인】 ○○지역 18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주 문】

1. ○○광역시 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복에 고정으로 명찰을 부착하게 하여 학교 밖에서까지 성명이 노출되는 관행을 시정할 것과 관할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 내지 11.에게, 학교 밖에서까지 학생들의 성명이 노출되는 고정식 명찰의 관행을 시정할 것과, 이를 규정하는 「학교생활규정」 등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12. 내지 18.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에게 학생들에게 고정식 명찰부착을 강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고정식 명찰 부착을 강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학생들의 개인정보 노출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그 시정을 요구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여자중학교

가) 현재 고정식 명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2012년 하복 착용 시부터 탈부착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이다.

나) 학기 초 신입생 및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칙 및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학생회 임원 및 학부모회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관련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했다.

2) ○○중학교

가) 명찰을 탈부착할 경우 분실과 미부착 등으로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이 있고, 고정식일 경우 학생출입금지구역이나 유흥업소 출입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며, 탈부착으로 변경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고정식 명찰을 유지하고 있다.

나) 2010년도 3월 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명찰 부착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고정식 441명, 탈부착 450명, 양쪽 무방 184명이었다. 학부모의 경우 고정식 511명, 탈부착 397명, 양쪽 무방 161명이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정식 명찰을 부착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적인 부담 등을 고려해 2013학년도에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조치할 예정이다.

3) ○○고등학교

탈부착 명찰 사용 시 학생들이 빈번하게 미부착하는 일이 벌어지고, 교사가 학생의 이름을 숙지하기 어렵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2장 제3절 제3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정식 명찰을 왼쪽 가슴에 부착하고 있다. 인권위가 권고를 한다면 학생인권 보장 측면에서 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다.

4) △△중학교

2010년도 인권위 권고에 의해 탈부착 명찰을 사용하였으나, 학생들이 학교 인근에서 집단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수시로 걸려오고, 학생들이 명찰을 달지 않을 경우 이름을 몰라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또한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야’라고 부르는 것보다 ‘○○야’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 2011년도에 학부모총회 등을 거쳐 고정식 명찰을 부착하게 되었다. 고정식 명찰이 학생지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정할 용의가 있다.

5) □□중학교

가) 명찰을 탈부착식으로 하면 교내에서 명찰을 달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이럴 경우 학교는 ‘그린마일리지’ 별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교와 학생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나) 2011년에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생활지도규정을 개정했다. 향후 인권위가 권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할 것이다.

6) ☆☆중학교

가) 고정식 명찰은 교사가 학생들을 빨리 파악하고, 학생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 친근함을 줄 수 있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이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 효과도 있다. ☆☆중학교 학생생활수칙에 따라 고정식 명찰을 사용하고 있다.

나) 학생회 대의원회의에서 고정식 명찰로 결정했다. 인권위가 권고하고 명찰 탈부착이 학생 인권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7) △△여자중학교

탈부착식 명찰의 경우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제작비 부담과 미부착 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직원회의 및 학부모회의를 통해 고정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권위가 권고하면 그 방향으로 변경할 것이다.

8) ◇◇중학교

학생들의 자긍심 고취, 호명의 용이성과 즐거움, 신분과악 용이, 명찰 분실 방지, 탈부착 방식의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고정식 명찰을 사용하고 있다. 인권위가 권고한다면 그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할 것이다.

9) ▽▽중학교

명찰 부착 방식에 대해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고정식 명찰을 유지해 왔다. 2013년부터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10) ▷▷중학교

학생증과 명찰을 혼용한 목걸이식 명찰을 채택한 적이 있으나 분실 사고가 잦고,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생증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학교생활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명찰의 위치만 규정할 뿐, 고정식 및

탈부착 방식의 선택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에서 신입생들에게 형견 명찰을 제작해주고 학생들이 그것을 교복에 부착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고정식 명찰을 유지하고 있다. 인권위가 권고한다면 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다.

11) □□고등학교

탈부착식은 탈의 시 명찰을 옮겨 달아야 하는 번거로움, 쇠붙이 집게에 따른 부상의 위험성, 분실과 파손 우려, 다른 학생 명찰 도용 가능성, 학교 밖에서의 일탈 개연성 등이 예상된다. 본교는 2007년도 학교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고정식 명찰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여 2013년부터는 탈부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12) <<중학교

2009년도 인권위 권고사항을 토대로 2011년 3월부터 고정식이 아닌 편으로 탈부착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13) ○○○중학교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하여 2010년도에 자체 논의를 거쳐 교외에서는 명찰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탈부착 방식의 경우 파손과 분실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비닐 소재 명찰을 고정식으로 부착하되 교외에서는 명찰이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14) ○○○고등학교

2012년부터 1학년의 경우 목걸이형 명찰을 학교에서 제작해 지급했다. 2학년과 3학년의 경우 이미 부착된 명찰을 떼기 어려워 학생 개인이 판단해 탈부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15) ♡♡중학교

기존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2012년부터 탈부착 방식으로 변경했다.

16) △△고등학교

2012년부터 신입생은 탈부착이 가능한 플라스틱 명찰을 착용하고 있다. 2, 3학년의 경우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형겅 탈부착 방식 또는 바늘 고정 방식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17) ☆☆고등학교

2012년을 앞두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결정하였다. 학교에서는 목에 걸 수 있는 명찰을 모든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학생들은 목걸이 명찰을 사용해도 되고 다른 명찰(고정식, 탈부착식)을 달아도 무방하다. 또한 학교 밖에서는 명찰을 패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18) ◎◎중학교

인권위 권고에 따라 2011년부터 명찰 부착 여부를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학생들은 교내에서 목걸이형 명찰을 착용하고, 학교 밖에서는 착용하지 않는다.

다. 참고인 주장

1) ○○광역시 교육청

가) 인권위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국 각 시·도교육감에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이 시정되고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이 개선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고,

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인권위 권고사항에 따른 조치계획(학교 운영지원과-4224, 2009. 12. 24.)을 우리 교육청에 내려주어 본 교육청은 이에 의거하여 관할 전체 고등학교장 및 각 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학생 명찰 패용과 관련하여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명찰 패용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 밖에서 교복 착용 시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학생 본인의 이름이 공개되어 유괴·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견수렴 시 이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학교 밖에서 명찰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피진정 18개 학교의 답변 내용, 참고인 의견, 진정인 주장, 기타 문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

가. 인권위는 2009년 ○○지역 6개 중학교를 피진정기관으로 접수된 사건(09진인1542 등)에 대해 학생 명찰을 고정식으로 부착해 결과적으로 교외에서까지 이름이 노출되는 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국 각 시·도 교육감, 6개 기관 학교장에게 관행의 시정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나. ○○광역시교육청은 2009년도 인권위 권고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 안내공문을 근거로 관할 전 고등학교장 및 각 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학생 명찰 패용과 관련하여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다. 피진정 학교 중 9. ▽▽중학교, 10. ▷▷중학교, 11. □□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며, 12. ◁◁중학교 내지 18. ◎◎중학교(사립)는 2009년도 인권위 권고사항을 존중해 탈부착식 명찰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라. 피진정 학교 1. ○○여자중학교 내지 11. □□고등학교는 탈부착 명찰의 훼손 및 분실, 학생지도의 어려움, 호명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활발한 소통, 별점 부과에 따른 학생과의 갈등, 안전사고 예방 등의 이유로 고정식 명찰을 사용하고 있다.

5. 판단

가. 각 개인의 성명은 그 자체가 비밀성이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나. 학교 안에서 명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학생 당사자의 개인정보의 침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학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상 필요한 경우로서 학생신분인 개인이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까지 명찰을 달고 다니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어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기관 18개 학교 중 이미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탈부착식 등으로 변경한 학교를 제외한 11개 학교의 경우 고정식 명찰을 사용하는 이유로 탈부착 명찰의 훼손 및 분실, 학생지도의 어려움, 호명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활발한 소통, 별점 부과에 따른 학생과의 갈등, 안전사고 예방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학생들에게 학교 안에서 명찰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학교 밖에서까지 '사생활 불가침의 영역'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명찰부착과 같이 학교가 학생 자신과 관련이 있는 학교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UN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진정 학교들은 학교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부모뿐만 아니라 그 교육을 받게 되는 당사자인 해당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피진정학교 9, 10, 11.의 경우 사립학교로서 본 진정사건의 접수 일인 2011. 4. 8.에는 위원회의 조사대상 기관이 아니었으나 2012. 3. 21. 위원회법이 개정되어 발효되면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또한 진정접수 당시의 피진정학교의 행위 및 그 효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그 권고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학교 1. 내지 11.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학교 및 감독기관에게 권고하고, 피진정학교 12. 내지 18.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태훈 위원 곽란주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2 2012. 5. 7.자 12-진정-0054700 결정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소홀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 ○ 고등학교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 2급으로, 1학년 때인 2010년 말 동료 학생들로부터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하여 등교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고, 2011. 2. 피해자가 학교에 다시 등교한 후 가해 학생들의 추가적인 폭행 및 괴롭힘이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했다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많이 완화되었을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학교 측의 대응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비추어 미흡한 보호조치라 할 것이며,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6조의2

【진정인】 양○○

【피해자】 윤○○

【피진정인】 ○ ○ 고등학교장

【주 문】

○ ○ 고등학교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 2급으로 ○○도 ○○ 소재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바, 1학년 때인 2010년 말 동료 학생들로부터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하여 등교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고, 2011. 2.에 피해자가 학교에 다시 등교한 후, 가해 학생들의 추가적인 폭행 및 괴롭힘이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권리구제 및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뇌병변 장애 2급이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2010년도 말 학교폭력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등교하지 못하다가 2011년 2월부터 다시 등교하고 곧 이어 2학년이 되었다.

이때부터 월요일과 화요일 체육시간에 2010년 당시 가해 학생인 전○○, 허○○과 함께 합반을 하여 수업을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수차례 욕설을 들었고 가을 운동회 날에는 허○○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핸드폰을 빼앗기도 하였다.

2) 2012년 현재 3학년이 되었으나, 지금도 학교폭력 후유증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것이 즐겁지 않고 두렵기만 하다.

다. 피진정인

1) 2010. 11. 피해자 윤○○이 동료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처음 인지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피해자와

가해자 측 주장이 상반되고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당시 학교는 고소사건 조사결과를 지켜 보면서 후속조치를 진행하되, 부모님들끼리의 원만한 해결, 학급 교체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1년 2학년 진급 시 피해자 윤○○은 1반, 가해자 전○○ 허○○은 2반, 가해자 봉○○은 6반에 편성했다.

2)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등을 통해 2011. 10.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보호처분에 처해졌다. 이에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90시간 봉사 명령, 피해자에 대해 접촉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3) 피해자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인바 우리 학교는 피해자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에 수차례 활동보조를 위한 공익요원 배치를 요청했으나 관내 초·중학교에 우선 배정되는 바람에 2011. 11이 되어 1년여 만에 보조원이 배치되었다.

피해자는 장애가 있었으나 비장애 학생들과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받기를 희망하였고 학교는 공익요원 배치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비장애 학생 2명을 1주일 단위로 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통합학급 담임교사가 수시로 살펴보고 지도하도록 했으며 애로 사항이 있는지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4) 2011. 10. 초 가해학생들이 체육시간에 괴롭힌다는 호소를 접하고 도우미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정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2010년 폭행 피해 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결정이 나와 이를 존중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연 뒤 가해자 학부모 면담을 통해 가해자 전학 등을 권고하였으나, 가해자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이중처벌, 자살 등 극단적 선택 우려 등의 의견을 밝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주장, ○○서부경찰서의 의견서, ○○지방법원의 결정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윤○○은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의 건강상태로 뇌병변 2급 장애인이며 2010. 3. ○○도 ○○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나. 2010. 11. 12. 같은 반 학생 전○○, 봉○○, 허○○은 학생식당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주먹으로 가슴, 배, 뒷목 등을 수 회 때린 사실이 있고, 2011. 8. ○○지방법원은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및 사회봉사명령의 보호처분을 하였다.

다. 피진정 학교는 2010. 11.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듣고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시 피해자 부모가 가해학생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 등을 참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수사 및 법원의 처분 경과 등만을 공유하였을 뿐 학교폭력 사실 전반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나 조치한 바는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활동보조를 위해 공익요원 배치를 추진하였으나 2011. 11. 공익요원이 배치되기까지 약 1년간은 비장애 학생 2명을 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다.

라. 피해자는 2010. 11. 위 폭행사건의 후유증 등으로 등교하지 못하다가 2011. 2. 등교한 후 2학년이 되었으나 이때 학교 측은 가해자인 전○○, 허○○을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격리하지 않고 바로 옆 반으로 반을 편성하였고 합반으로 진행되는 체육시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학생 2명이 수업을 함께 받은 사실이 있다.

마. 피해자는 2011. 11. 가을 운동회 및 체육시간에 가해학생들로부터 추가적인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2011. 8. 관할법원의 가해학생에 대한 판결이 나오자 학교 측은 원 사건이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난 시점인 2011. 12.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90시간 학내봉사활동 및 피해자 접촉금지 결정을 하였다.

5. 판단

가. 관련기본권 및 쟁점

학교의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소홀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의 침해이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의 직접적 근거조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으로 볼 수 있고 이밖에도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을 들 수 있다. 이 기준은 아동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별도로 채택된 협약과 법률로서 아동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있음을 볼 때 국가의 보호조치 소홀에 의한 인권침해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교육기관인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회에 진출하여서까지 그 영향 및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여야 하고, 특히 본 진정사건에서와 같이 피해학생은 중증 장애자로 대처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괴롭힘 등을 당했는데도 학교 측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다면, 이는 장애학생의 재활의지 등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4조 및 제49조 등에 의거 보다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 피해자에 대한 학교의 대응 및 보호조치의 적절성 판단

진정내용 중 2010년도 말에 발생한 폭력 등은 이미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 이후의 2차 피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동일 가해 학생들로부터 추가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학교 측은 도우미 학생들에게 확인하는 정도의 조치밖에는 취하지 않았다.

진정내용의 2차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에는 공익요원의 배치도 없던 상태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2011. 3. 학급 분리조치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바로 옆 반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고, 1주일에 두 번의 체육시간은 합반을 하게 된 바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재등교 이후 가해학생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학교 측의 세심한 배려가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는 상황에 따른 적극적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많이 완화되었을 것인데 학교 측의 대응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비취볼 때 미흡한 보호조치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의 조치의견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요원이 배치되었고, 3학년 진학 시 물리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자가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정도의 학급분리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의 보호조치 필요성이 포함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태훈 위원 박란주

【별 지】 관련규정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애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 제6항을 준용한다.

3 2012. 5. 7.자 12-직권-0000100 결정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직권조사]

【결정사항】

○○○○초등학교장에게,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과, 재학생들의 정신적·심리적 상담치료 요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상설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학교 측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소홀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의 침해임. 이 사건에서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발생 사실 및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는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이행이 미흡했다고 판단

【참조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9조

【주 문】

○○○○초등학교장에게, 학생 및 교직원대상의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과, 재학생들의 정신적·심리적 상담치료 요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상설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배경

가. 2011. 5. 12. 다문화 가정 아동(○○○○초등학교 4학년 재학)이 같은 반 학생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이 피해 학생은 사건 발생 후 우울증 앓고 있으며, 부모에게 ‘자살하고 싶다. 가장 고통 없이 죽는 법을 알고 싶다고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초조사 결과, 해당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2012. 2.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 원인이 피해자가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라는 특수한 사정과과의 관련성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학교측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다소 미흡하였던 점, 학교폭력 예방대책이나 사회복지사의 심리·상담서비스 등의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직권조사 결과 및 판단

가. 사건개요

- 1) 피 해 자 : ○ ○ ○ ○ ○ ○
- 2) 피조사자 : ○ ○ ○ ○ 초등학교장 및 관련교사

나. 당사자 및 관련자 등의 주장요지

1) 피해학생의 부모

가) ○○○○초등학교는 2011. 5. 12.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후 피해 학생(○○○○)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 심리적·정신적 충격 상태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은 동료 학생들로부터 발로 차이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이후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 정신과 치료 후 약을 복용하고 있다.

나)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다문화 학생에 대하여 학교 측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은 다문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2) 피조사자(○○○○초등학교장 및 관련 교사 등)

가) 2011. 5. 12. 4학년 5반 교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날 피해학생 학부모가 교장실에 찾아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사건의 본질은 '왕따·폭행 문제'가 아니라, '담임교사의 불성실한 행태에 대한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였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에 화해하였으며, 당시 피해학생 학부모는 "아이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 것이니 이해한다. 아이들 일은 거론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기 때문에 폭력 사안은 아니라고 보았다. 피해자 부모는 사건 발생 전부터 담임교사의 방만한 지도 방식에 불만이 있었고, 사건 후 담임교사의 태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담임교사 교체만을 강력히 요구하였지, 학생 폭력에 대한 거론은 없었다.

나) 사건 발생 이후 당사자가 모두 화해했으므로 일이 원만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학생을 불러 직접 상담하는 것은 특별 대접 받는 학생으로 오해되고, 학급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더욱 멀리 하게 되는 역효과가 우려되어 자연스럽게 가해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것을 지도하였다.

다)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요구하였던 담임교사 교체는 당시 담임교사가 부임한 지 2개월이 갓 지났고, 담임교사 교체의 전례를 남기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할 것이므로 결국 원활한 학교 운영,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사의 교권 보호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담임교사에게 학급 내 집단 따돌림 및 학교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학급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학부모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성실히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학교장과 교감은 해당교사가 학급 관리를 잘하도록 수차례 지도하였고 등교 지도 시 피해학생에게 말을 건네며 기분을 살펴보고 격려의 말을 한 바도 있다. 그리고 4학년 5반 학부모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피해학생의 상태를 물어보면 학급이나 동네에서 명랑하게 잘 지낸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사건 발생 이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마) 우리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으며 그 중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교감, 학교장이 함께 의논하여 학생에 맞는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경우 사건 발생 후부터 10월 중순까지 담임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에게 피해학생이 적응을 잘 못한다든지 하는 등의 보고는 한 적이 없다.

다. 인정사실

1) 학교폭력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

2011. 5. 12. ○○○○초등학교 4학년 5반은 담임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1교시 때 손○○, 박○○ 학생의 주도로 ○○○○에 대한 투표가 있었다. 2교시를 마친 후 쉬는 시간에 박○○ 학생이 조○○ 학생에게 피해학생 ○○○○을 발로 차라고 하여 ○○○○이 발로 차이고 뒷문 쪽에 부딪치면서 넘어졌다. ○○○○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을 발로차고 놀리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 졌다.

2) 학교폭력 발생 원인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수성과의 관련성 여부

4학년 5반 학생들이 작성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술한 내용 검토 및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조사 결과, 피해학생이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3)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치사항

가) 피해학생 ○○○○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5. 13. ~ 17. 3일간 결석을 하였고 담임교사는 2011. 5. 26. 학교장으로부터 '집단 따돌림

사안 및 담임 업무 소홀'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 2012. 2. 서울시 ○○교육지원청은 동 교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주의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가해학생 3명이 피해학생 ○○○○을 폭행이나 추가적으로 괴롭힌 사실은 없으나, 같은 반 김○○ 학생이 겨울방학 전까지 ○○○○을 언어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있어 학교는 2012. 1. 2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Wee 센터와 연계하여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교육 진행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다.

다) 학교는 2012. 1. 30.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다문화 학생의 경우 별도로 담임교사와의 문답 형식으로 진행)하는 등의 자체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한 바 있다.

라. 판단

1) 본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장은 폭력 예방 가정통신 발송, 학교장 훈화, 담임에 대한 지도 및 피해학생 등교 시 피해학생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학교 측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소홀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이며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의 침해이다. 이 보호조치 의무의 직접적 근거조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으로 볼 수 있다. 본 사건에서 학교장은 같은 법 제19조(학교장의 의무)에 따라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동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는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사실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의 조치 등에 관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 신고와 가해자 처벌, 부실

처리한 학교나 행정기관의 징계 등이 학교폭력 사후 처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대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관리감독 차원에서의 대응으로는 학교폭력의 본질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11년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국가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가족과 교육시스템 내에서 아동의 자살 위험 요소에 관한 연구를 착수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제도, 행정적 조치의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 조치가 충분한 예방조치 조항과 속행조치를 포함하여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도 사건 발생 초기, 학교장이 가해학생 학부모를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담임교사에 대한 학교장의 경고조치를 한 이후에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심층상담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듯 ○○초등학교가 사건 발생 초기 학부모 무마 및 담임교사에 대한 징계방식만으로는 향후 학교폭력예방에 실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심리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모든 학생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신적·심리적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상담 교사의 배치 및 상담실의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태훈 위원 곽관주

【별 지】 관련규정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2012. 8. 2.자 12-진정-0391700 결정 [중학교 배구선수에 대한 이적동의 거부]

【결정사항】

○ ○ 중학교장에게, 피해자의 이적동의서를 지체 없이 발급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욕구에 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07. 9. 7. 07진인898 결정, 2009. 12. 28. 09진인4435 결정, 2010. 8. 23. 10진정0161300 결정

【참조조문】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2조 제1·4·11호, 제17조 제4항, 제18조 제1항, 「대한배구협회 선수등록규정」 제2조 제1·4·9호, 제17조제4항

【진 정 인】 이○○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중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이적동의서를 지체 없이 발급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여러 사정상 소속 중학교에서 배구 선수로서 운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타 학교로 전학을 했으나 이후 피진정인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정상적인 선수생활을 하지 못하는바, 이는 인권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의 동생과 부모가 현재 △△에 거주하고 있는 등 전 가족이 주소를 옮기고 거주지를 바꾼 상태의 전출이 아니므로 일종의 위장전입이다. 실제 이사를 했다면 학교에서도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 줄 수 있으나 피해자 상황은 불법 위장전입이므로 이적 동의서를 발급할 수 없다. 또한, 만일 피해자에게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준다면 6명이 출전하는 배구게임에 우리 학교 선수는 5명으로 줄게 되어 사실상 팀이 해체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이적동의서 제도 개괄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2조(정의) 제11호에 따르면, “이적 동의서라 함은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이고, 학교소속 학생 운동선수의 경우 이적동의서 발급 주체는 학교장이 된다. 이적동의서가 없으면 최소 2년 간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다(동 규정 제17조 제4항).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서 이 사건 피해자가 등록되어 있는 대한배구협회도 동일한 내용의 선수등록규정을 갖고 있다.

나. 피해자의 피진정인 학교 배구팀 선수 생활 및 전학 과정

피해자는 2012. 3. 개학과 동시에 피진정인 학교에 특기생으로 정식 입학한 직후 춘계전국중고연맹 배구대회에는 출전하였으나 2012. 3. 26. 서울 소재 ◇◇중학교로 전학을 하여 이적동의서를 요청하였고 피진정인은 거부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와 동생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어머니와 함께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 생활하고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사건의 경우 일관되게 해당 선수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로 보고, 이적동의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해 왔다(2007. 9. 7자 07진인898 결정, 2009. 12. 28자 09진인4435 결정, 2010. 8. 23자 10진정0161300 결정 등).

5. 판단

이 사건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제외한 가족이 진정인이 전학을 간 서울이 아닌, △△에 모두 거주한다는 점을 들면서 위장전입이라고 의심하고 이를 이유로 이적동의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명 ‘위장전입’이라 함은 학생이 전학한 곳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는 않는 상황 등을 일컫는데 이 사건 피해자는 실제 해당 학교로 전학을 하고 주소지를 옮겨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바 ‘위장전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위장전입 여부와 이적동의서 발급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피진정인이 주관적으로 진정인의 행위가 위장전입이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사건에 대하여 일관되게 시정권고를 해온 위원회의 기(既)결정과 다른 판단을 할 상황 변화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욕구에 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태훈 위원 박란주

【별 지】 관련규정

1.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등록”이라 함은 체육회에 가맹된 가맹단체의 당해 종목선수로 선수 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수활동”이라 함은 선수등록을 필한 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당해 종목의 등록선수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적 동의서”라 함은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제17조(선수활동 제한) ④ 전 소속 단체장의 이적 동의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학교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만 2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제18조(선수활동 제한의 예외) ① 학교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소속 학교가 운동부를 해체하여 당해연도에 당해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동일종목 운동부를 설치한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관내 학교의 체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시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전학한 자
2. 당해연도에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시도교육청 관내에는 동일종목 운동부가 설치된 학교가 없거나, 당해 관내 상급학교의 체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시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진학한 자
3. 전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보호자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될 경우 등에 준해 한정)를 인정하여 이적동의를 발급 받은 자이거나 당해 가맹단체 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

2. 「대한배구협회 선수등록규정」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등록”이라 함은 대한배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선수로 선수 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수활동”이라 함은 선수등록을 필한 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본회의 등록선수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9. “이적 동의서”라 함은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제17조(선수활동의 제한) ④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학교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만2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5 2012. 9. 3.자 12-진정-0338800 결정 [불공정한 학교 폭력 대처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학교 내 인종차별적 발언의 예방적 차원에서 전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인종차별적 발언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 결정과는 별도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참조조문】

「아동복지법」 제3조제1~3항 · 제4조제1~5항,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제1~3호 · 제16조제1~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2항 · 제13조제1~4항 · 제14조제1~8항

【진 정 인】 손○○

【피 해 자】 손△△(진정인의 자)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주 문】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이 불공정하다는 주장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학교 내 인종차별적 발언의 예방적 차원에서 전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대만 국적의 화교 3세이며, 피해자 손○○(○○○○초등학교 6학년)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는 2012. 5. 9. 오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 5명으로부터 '짱깨'라는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으면서 폭행을 당하였는데 이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에 있어서 피진정인인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여 불공정한 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므로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학교에서 본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내고 피해자에게도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하여 억울하다.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로부터 이전에 상당 기간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아 왔다. 학교가 피해자를 오히려 폭력 가해자로 간주하는 것이 실망스럽다.

다. 참고인 손○○(피해자의 쌍둥이 형)

이 사건 폭력 상황 가해 학생들은 참고인에게도 종종 '짱깨새끼'라고 놀렸다. 동생이 폭력 가해자로 취급당하는 것이 매우 분하고 억울하다.

라. 피진정인

폭력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최근에 개정된 엄격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였다. 피해자가 다수로부터 폭력 위협에 처하긴 하였으나 큰 위협 상황은 아니었으며 특히 하○○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쫓아가 주먹을 휘둘렀으므로 정당방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였다. 다만, 이 사건 폭력 상황이 인종차별을 함축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3. 인정 사실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 진술, 학교 측의 조사기록,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폭력 상황

이 사건 폭력 상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학교는 신속하게 관련자 진술서를 받는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확보된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일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긴 하나 폭력 상황이 진행된 대체적인 양태에 대해서는 일치하는바, 이 사건 폭력 상황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음이 인정된다 (언급되는 학생은 모두 피해자와 6학년 1반 동급생이다).

1) 2012. 5. 9(수) 3교시 후 쉬는 시간인 11:00경 오○○은 피해자에게 ‘너는 하○○을 못 이긴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하○○은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먼저 시비를 걸었다.

2) 피해자는 “만지지 말라”고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아래와 같은 말싸움이 발생하였다.

- 하○○ : “짱깨 돼지새끼야”
- 피해자 : “누구보고 짱깨 돼지새끼래!”
- 하○○ : “너 중국 놈 맞잖아, 이 ××놈아”
- 피해자 : “어, 이 ××놈아”

3) 위와 같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몸싸움이 진행되던 중 하○○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교실 뒤쪽 벽으로 약 5m 정도 밀고 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정도 가격하였고, 계속 목을 잡아 피해자를 제압

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는 하○○의 입을 주먹으로 2회 정도 가격하여 하○○의 입술이 찢어져 피를 흘렸다.

4) 급우들이 싸움을 말리던 중 오○○은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기도 했으며 서○○는 말리던 학생들에게 팔이 잡혀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면서 뛰어 올라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코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고 코피를 흘렸다.

나. 학교의 후속 조치

1) 2012. 5. 10(목) 학교는 이 사건 폭력 상황이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학교폭력 사안 접수보고를 하였다. 이후 진정한 면담(2012. 5. 11, 금)과 교사 비상대책회의(2012. 5. 12, 토), 학교폭력전담기구회의(2012. 5. 13, 일)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 후, 가해자 4인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2) 2012. 5. 14(월)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자치위원회에는 이 사건 진정한 피해자, 그리고 관련학생 전원과 보호자들이 직접 진술하였고, 논의 결과 오○○, 하○○ 및 피해자 등 3인에게는 동일하게 1호 서면사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및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징계, 서○○에게는 1호 서면사과, 4호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및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을 처분할 것을 결정하였다.

3) 제1차 자치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던 피해자의 진단서(코뼈 골절로 인한 3주 진단서)가 제출된 것을 근거로 피진정인 학교는 5. 31. 제2차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피해자의 정당방위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여 정회하였고 6. 13에 속개되었다.

4) 제2차 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당방위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으나 모욕감에 의한 맞대응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당초의 징계 처분(1호 서면사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을 '서면사과'로 감면하였다.

5) 하○○의 경우, 피해자의 코뼈 골절상에 대한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존 결정과 별도로 출석정지 3일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자치위원회의 권한 문제로 이를 취소하였다. 학교장은 당일 최종 처분 결정을 피해자 포함 해당 학생들에게 통지하였다.

6) 진정인의 요청으로 피진정인 학교의 6. 13 처분에 대한 재심이 7. 5.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서 개최되었으나 기각되었다. 다만, 동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 조치가 늦은 점을 사과하고, 전학을 가셔도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폭력 상황 및 자치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부분

1) 이 사건 폭력 상황에서 하○○, 오○○, 서○○가 행사한 폭력과 피해자 손○○이 행사한 폭력은 애초에 하○○이 인종차별적 언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어 자극하고 먼저 폭력을 행사한 후 나머지 2인의 가해학생이 추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주먹으로 2회 정도 하○○의 입을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와 이들 3인의 가해 학생이 가한 폭력 간에는 동기와 양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1차 자치위원회의 결정은 이 둘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피해자와 가해 학생들에게 사실상 동일한 징계 처분을 함으로써 불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

2) 다만, 자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 결정기구라는 점에서 그 결정 사항의 재량을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애초의 결정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고, 이 결정에 대한 지역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그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사실상 다른 권리구제절차에 의해 피해자 구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학교의 대응 부분

1) 이 사건 폭력 상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에서 정의된 학교폭력 상황에 추가하여 인종차별적 발언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2) 위 법상 학교폭력에는 인종비하적 모욕의 경우를 별도로 예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치위원회가 인종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진정인의 경우 인종차별적 발언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 결정과는 별도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학문의 탐구 이외에도 인성교육을 통한 인격의 도야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 내에서 발생한 동료 학우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은 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고 보이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 학교의 장에게 전체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곽란주 위원 한태식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상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2012. 9. 3.자 11-진정-0471500 결정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인격권 침해]

【결정사항】

○ ○광역시교육감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급우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피해자에게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학우들과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4항 · 제16조의2 제1~3항

【진 정 인】 전 ○ ○

【피 해 자】 문 ○ ○ (진정인의 자)

【피진정인】 노 ○ ○

【주 문】

○ ○광역시교육감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의 중학교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은 2010. 9. ~ 2011. 2. 피해자의 같은 학급 학생들에게 3회에 걸쳐 자의적인 설문조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평소 언행, 초등학교 때의 행위 등을 묻고 피해자가 이상한 학생인 것처럼 답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이는 학생의 인성 등을 교육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2010년 당시, ○○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여름방학 전에 피진정인인 담임교사가 학급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화가 났다. 또한 학우들이 작성한 설문내용을 피진정인이 다시 쓰라고 하여 재작성된 사실, 같은 학교를 다니지도 않은 학생에게 초등학교 시절의 일을 질문한 사실 등 피진정인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 피진정인

1)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이 2010. 8. 허위사실(체벌, 인격권 침해 등)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유사한 내용을 ○○광역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광역시교육청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실무근의 과장된 민원내용을 소명하기 위해 학생들의 진술서가 필요했는데, 마침 진정인이 9. 17. 학교를 방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 감사실에 진정을 낸 사실을 언급하여, 차제에 학급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피해자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교육청에 소명 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2) 2010. 9. 진정인이 본인을 ○○○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기 제출된 학생들의 설문 진술서가 일시, 장소 등이 정확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경찰서 제출용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이때, 설문에 응하기를 희망한 학생들만 이름을 쓰게 한 후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3) 2011. 1. 진정인이 본인을 피해자 폭행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하여 본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사실관계를 입증할 특별한 방법이 없어 2011학년도 학사일정 마지막 날인 2. 24.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들에게 피해자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기명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4) 본인이 학생들에게 실시한 세 차례의 설문조사는 피해자의 평소 언행을 확인한 것이었으며, 단 한 번도 답변자의 이름을 쓰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광역시교육청, 경찰서 등에 허위사실로 진정 및 고소를 한 상황에서 본인은 별도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적도록 강요한 바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주장, ○○광역시교육청 조사결과, 법원 재판기록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6. 8. 당시 ○○ ○○중학교 교사였던 피진정인의 체벌 및 인격권 침해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인용하여 ○○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 조치, 학교장에게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여 각각 수용된 바 있다. 이에, 피진정인은 본인의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다.

나. 피진정인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 ○○중학교 1학년 7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총 3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1) 1차 설문조사는 2010. 9. 17. 피진정인이 ○○광역시교육청 감사실의 조사를 받던 중 진정인이 제기한 주장을 해명하기 위해 학급 학생들에게 개방형 진술서 형태로 작성하게 하였다.

2) 2차 설문조사는 2010. 9. ○○○경찰서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학생 진술서가 명확해야 한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설문을 하였으며, 피해자인 문○○을 특정하여 아래와 같은 설문을 하였다.

가) 문○○이 초등학교 때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나) (2010년) 3월 문○○의 학교생활 태도는?
다) 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불편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
라) (2010년) 4. 6.부터 선생님에게 지도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마) 당시 선생님이 처음부터 문○○을 체벌하였나요?
바) 선생님에게 지도 받을 당시 문○○의 태도가 어떠하였고, 결국 회초리를 사용하게 된 원인과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3) 3차 설문조사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추가로 고소하자 이의 해명을 위해 2011. 2. 24. '참고인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작년 4. 13. 선생님이 문○○을 출석부로 몇 십대 심하게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상황을 쓰시오. 원인은 문○○의 어떠한 행위와 태도 때문이었나요?'라고 설문하였다.

다. 설문의 답변내용을 보면 학우들은 피해자의 부정적 내용(욕설, 싸움, 장난, 괴롭힘 등)을 진술하였고, 상당수 학생들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관련 기본권과 기본권 보호의무

1) 「헌법」 제10조에서 유추되는 인격권이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을 포함한다.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교육적 목적의 위계 질서가 관행적으로 유지된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학생은 학교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고 학생의 인격권 또한 침해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침해된 기본권은 교사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학생인 피해자가 오히려 피진정 교사의 소명권 행사를 위해 실시된 자의적인 설문조사 과정에서 원치 않는 당사자가 되어 학우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거치면서 받게 되는 정신적인 피해, 즉 인격권의 문제라 할 것이다.

2) 더불어 국가 즉,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직접적인 규정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아동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사건에서 피진정 교사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의 문제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그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의 설문조사에 따른 기본권 침해 유무

1) 피진정인이 3회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경우, 피진정인의 소명을 위한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학급 담임으로서 직접 12세 전후(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동료 학생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3회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가 그 시점과 설문내용이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2차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6개의 질문 구성이 특정 학생에 대한 부정적 답변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3번 문항의 경우, ‘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불편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에서 특정학생을 지목한 내용으로 기술하여 문구 자체가 부정적 답변을 유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쓰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학생의 관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설문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실명을 강요한 일이 없으며, 순수하게 자신의 소명을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본인이 설문이 진행되는 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에 관한 부정적 정보가 여러 차례 수집되었고,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피해자에게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이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은 학우들과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는바,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2) 피해학생이 ADHD, 충동장애,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는 장애인인어서 피진정인이 피해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기 힘든 나이의 동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수업에 방해가 되었는지’ 등을 질문한 것은 교사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이며, 설문조사 사실 및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인 모멸감 등을 고려해 보면 피진정인의 소명권 행사 차원에서 실시하였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결국, 교사로서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3회에 걸쳐 사실상 공개적인 방식으로 학급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같은 법 제16조의2의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은 학생들을 지도·교육하는 교사로서 인권교육의 수강 등을 통하여 유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관할 교육감을 통한 인권교육의 실시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곽란주 위원 한태식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 제6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침해

7

2012. 6. 14.자 12-진정-0030600 결정 [출퇴근용 지문인식 강요]

【결정사항】

○○시장에게,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 복무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으므로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복무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수집되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 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 제5조 · 제23조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시장

【주 문】

○○시장에게,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으므로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2011. 10. 28.부터 ○○시청 소속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비용 절감 및 복무관리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지문을 등록해야만 출입이 되는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출퇴근 및 사무실 출입 시 수시로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구제조치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최근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지 이탈 증가 등으로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1. 10. 28.자로 ○○시청 소속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문을 등록하여 출·퇴근 시 지문을 찍도록 하였다. 과거 공익근무요원들(130여 명)에게 출퇴근용 카드(발급비용, 1개당 12,000원)를 발급하여 운영하였으나, 공익근무요원들이 이를 자주 분실하는 등 재발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출·퇴근 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 피진정인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지문등록 시 강제로 지문을 수집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지문등록을 거부하다 추후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근태관리하고 있다. 수집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지문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만큼 외부로 유출되는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 복무관리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면진술서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은 2011. 10. 28.자로 ○○시청 소속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출퇴근용 카드 발급 및 재발급 시 비용이 많이 들고 복무(근태)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출퇴근 시 지문을 찍도록 하는 지문인식 복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5. 판단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 도입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문제이므로 헌법의 기본권 제한에 따르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

1)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서 신체에 부착된 일신전속적인 것이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며, 개인의 기본권 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적 근거로써만 제한이 가능하다.

2) 현재 지문채취에 대한 법률은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여권법」을 들 수 있으나, 피진정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행위는 필요한 법률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워,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 여부가 주목되는바, 피진정기관의 일률적인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의 동의절차가 없었으며, 임의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1) 피진정인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지속적인 근무지 이탈 증가 등으로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출퇴근용 카드분실로 인한 재발급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2011. 10. 28.자로 ○○시청 소속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문을 등록하여 출·퇴근 시 지문을 찍도록 하는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다만, 복무관리를 위한 수시 복무점검 등 대체수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집적되는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그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지문등록 시스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저장관리 과정에서 암호화 등의 안전장치를 취하고 있지만 원 데이터의 복원이나 당사자의 신분확인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3) 또한, 지문등록시스템으로 얻어지는 편익에 비하여 침해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그 '법익의 균형성' 여부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복무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어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수집되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로써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 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할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태훈 위원 곽란주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제 3 편

차 별 시 정 분 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 1 장

성별,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및 성희롱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3건]
-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1건]
- 성희롱 [2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1 2012. 4. 12.자 12-진정-0077900 결정 [항공운항학과의 여학생 입학 정원 제한]

【결정사항】

○○대학교 총장에게,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모집 시 특정 성별에 대한 별도 정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개정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은 입학 시 신체검사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이러한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여성에게 장래 조종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 피진정인이 여학생 정원제한 사유로 남성 조종사를 선호하는 성차별적 채용관행을 들고 있으나 이는 시정해야 할 대상이지 취업전 단계에서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제한을 정당화할 근거로 보기 어려움.
- 【3】 타 대학 일부 학과에서 소수 성별집단에 일정한 정원비율 하한선을 두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정원제한은 남성이 100%에 가까운 성비 불균형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여성 정원 상한규정인 점에서 개선 필요

【참조조문】

「항공법」 제31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76조·제95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진정인】 ○○○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제 3 편
차 별 시 정 분 야

피진정인에게,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모집 시 특정 성별에 대한 별도 정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개정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항공기 조종사가 되고자 대학의 항공운항학과에 지원하려고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인 ○○대학교 총장은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 정원을 정시 모집인원의 8% 이내로 제한하면서 그 사유를 항공사에서 여성 조종사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 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차별행위이므로 시정해 주기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및 관계인 의견

가.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항공운항학과는 항공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특수한 교육과정으로서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므로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양심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여성 조종사의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휴직이 불가피하고 기량유지를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조종사 채용 시 여성을 선호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여학생의 입학 정원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또한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신체조건이 요구되고, 기상 악화와 비상상황 등에 대한 대처능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항공기 조종사를 학부모와 여학생들이 위험직업군으로 인지하고 있어 여학생의 지원을 자체가 낮은 상황이다. 과거 10년 간 ○○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여학생 합격 인원수는 모집제한 인원수인 4명에 대부분 미치지 못하는

0~3명 수준에 불과하므로 진정인이 자격요건만 충족한다면 정원 제한 때문에 입학이 어려울 확률은 높지 않다.

3) 한편, 성적이 다소 부족하여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타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가 운영하는 ◇◇ 비행훈련원의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할 수 있으므로 동 대학이 여성에 대하여 조종사 양성교육의 기회를 심히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참고인 의견

1) 국토해양부 의견

국내 민간항공기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가용·사업용 조종사 등 각 자격별로 소정의 비행 시간 이상의 비행기록이 있어야 한다. 한편,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관한 사항은 각 학교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

2) 교육과학기술부 의견

「고등교육법」 제34조에는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신입생의 선발은 대학이 입학전형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 사건 여학생 정원 제한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비율의 조정이나 제도개선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견

현행 대학입시에서 신입생 모집 시 모집인원의 특성 및 직업과 관련하여 성별 규정을 두고 선발하는 경우는 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사의 적정 성별 분포를 위하여 남·여 어느 한 쪽 성이 전체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발하는 경우, 간호학과 등에서 남학생을 특별 선발하는 경우, 체육학과에서 체육 종목상 남·여 학생의 종목별 선발 인원 제한 및 성별 제한을 두는 경우 등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제 3 편
차 별 시 정 분 야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참고인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견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는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도 ○○시 소재 사립 4년제 대학교로 2011년 기준 재적 학생 수는 총 6,546명이다. 학부에 공과대학(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 항공재료공학과), 항공/경영대학(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항공운항학과, 경영학과), 인문자연학부를 두고 있으며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과 항공·경영대학원을 두고 이 외 부설기관으로 비행교육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 조종사 및 운항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항공법규, 비행역학, 공중항법, 계기비행, 항공기상, 조종실기 등을 교육하며, 그 졸업생들의 주요 진로는 크게 군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 부분의 경우 항공운항학과 재학 중 공군·해군 조종장학생이나 공군 학군사관후보생(ROTC)으로 선발되어 졸업 후 장교로 임관, 군조종사로 근무하게 되며, 민간 부분의 경우 비행교관과정(이하 'IPC'라 한다), (주)△△항공 연계 부기장 양성과정(이하 'APP'라 한다), 계기·사업용 조종사 과정(이하 'CPC'라 한다), 자가용 조종사 과정(이하 'PPC'라 한다) 등을 통해 민간 항공기 조종사 등으로 진출하게 된다.

다. 위 항공운항학과 졸업생 진로 중 민간 항공기 조종사의 채용에 있어 명시적인 성별 제한은 없으며, 2011년 ○○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졸업생 85명 중 여성은 2인으로 이들은 각각 APP과정 교육 중이거나 IPC과정

입교 대기 중이고, 2010년 졸업생 79명 중 여성은 1인으로 APP과정 수료 후 (주)△△항공 입사 대기 중이며, 2009년 졸업생 50명 중 여성은 1인으로 현재 (주)△△항공에서 부기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군 부문에 있어서 공군·해군 조종장학생의 경우 지원자격이 '임관일 기준 만 20~27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군 ROTC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여성을 선발하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항공운항학과 여학생이 군으로 진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공군 ROTC 선발 첫 해인 2011년의 경우, 여성 총 정원 5명, 도태율을 고려한 실제 선발인원 6명 중에서 피진정대학교 진정의 ○○대학교 소속의 여학생이 각 3명씩 선발되었다.

라. ○○대학교 항공운항학과의 2012학년도 전형별 모집인원은 수시 모집 36명, 정시모집 29명으로 총 65명이며,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모집인원 중 여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원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수시 모집에 있어서 '항공운항학과 여학생 선발은 수시 1차 일반학생 전형, 심층면접 전형에 한하며, 선발인원은 일반학생 전형에서 수시모집 항공운항학과 모집인원의 2%, 심층면접 전형에서 수시모집 항공운항학과 모집인원의 2% 내에서 선발한다. 단, 수시 1차 일반학생 전형 및 심층면접 전형에서 여학생 미선발 시 정시 모집 일반학생 전형에 포함하여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정시모집에서는 '항공운항학과 여학생 선발은 정시모집("나"군/"다"군) 일반학생 전형에 한하며, 모집인원은 "나"군/"다"군 별 정시 최초 모집인원의 8% 이내로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12년 ○○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모집인원 총 65명 중 여학생에 허용된 정원은 수시 1차 일반학생·심층면접 전형에 각 1명, 정시모집 "나"·"다"군에서 각 1명 등 총 4명이며 이는 전체 항공운항학과 모집인원의 약 6%에 해당한다. 한편, ○○대학교 항공운항학과 '02~'11학년도 여학생 최종합격자 수는 2005학년도를 제외하고는 0~3명으로 정원제한선인 4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
3
편

차
별
시
정
분
야

마. ○○대학교는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선발 방식에 있어 수시모집 지원자 전원 및 정시모집 지원자 중 5배수 선발자에 대해 민간 및 군 조종사 신체검사 기준을 고려한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불합격 처리 기준」을 두고 이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남녀 모두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어 여성의 선발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된다.

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공시정보에 따르면 2011년 항공운항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교와 그 재적학생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이 가운데 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에 대하여 별도 정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대학은 ○○대학교가 유일하다. 한편, 군 조종사 양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생도 모집 시 성별 선발인원을 분리하여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2013학년도에 경우 여성을 전체 정원의 10% 내외로 선발함을 명시하고 있어, 피진정 학교가 여학생에 대하여 정원의 6% 이내라는 엄격한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 1> 국내 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재적학생 현황 (2011년 기준)

학교명	학과(전공)	재적학생(재학생+휴학생 : 명)			학교별 비중 (학생 수 기준 %)
		남	여	계	
○○대학교	항공운항학과	360	12	372	55.9
◎◎대학교	항공운항학과	200	10	210	31.5
□□대학교	항공운항학과	30	0	30	4.5
△△대학교	항공운항학과	28	0	28	4.2
◇◇대학교	항공운항학과	23	3	26	3.9
합 계		641	25	666	100.0

사. 국토해양부는 2010년부터 민간 항공기 조종사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비행훈련원을 개원하여 피진정 대학교와 진정의 ◎◎대학교를 운영사업자로 지정, 국비 일부 지원을 통해 민간 조종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학사학위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며, 선발 시에 여성에 대한 정원 제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다. ◇◇비행훈련원 교육과정을 통해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약 5천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피진정 대학교와 진정의 ◎◎대학교가 병렬적으로 운영하는 동 과정에서 피진정 대학교가 운영하는 과정의 경우 2011년 신규입교자 수는 55명, 이 중 2명(3.6%)이 여성이며, ◎◎대학교가 운영하는 과정의 경우 2012. 4. 3. 기준 교육생은 28명, 이 중 4명(14.3%)이 여성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 대학의 신입생 모집 시 성별을 분리하여 모집하는 사례가 이 사건 ○○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모집 외에도 타 대학 일부 학과에서 발견되기는 하나, 그와 같이 성별 제한을 두는 경우는 스포츠 특기자 전형에서 스포츠 종목상 남·여 성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교육대학·간호대학과 같이 전통적으로 특정 성별이 대다수를 차지해온 영역에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 등이며, 피진정 대학교와 같이 특정 성별에 대한 취업시장에서의 선호도를 이유로 신입생 모집 시 소수집단에 대하여 더욱 불리한 성별 정원제한을 두는 것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함이 인정된다.

자. 한편, 항공기 조종사 자격 취득과 성별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항공법 시행규칙」 제76조는 항공기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동 규칙 소정의 비행경력(비행시간)을 갖추어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법」 제31조 제1항은 운송용 조종사·사업용 조종사 등 해당 자격별로 실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질환의 유무 등에 대하여 항공신체검사기준에 따른 자격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이와 같은

규정에 특정 성별의 자격 취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비행경력 및 항공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조종업무를 수행하는 데 성별에 의한 제한이 따르지 않음이 인정된다.

5.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인 ○○대학교 총장이 동 대학 항공운항학과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여학생의 입학정원을 총 정원의 약 6%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 피진정인은 국내의 항공사들이 여성조종사를 선호하지 않아 많은 비용을 들여 교육을 받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여학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생보호 차원에서 부득이 성별제한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비행훈련원의 민간조종사 양성과정의 경우 역시 교육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항공운항학과와 달리 입교생 모집 시에 여성에 대한 정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학생의 취업을 일정 정도 보장해주어야 하는 교육기관의 양심과 책임에 따라 항공운항학과 여학생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는 모순된 점이 있다.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남성 구직자를 선호하는 성차별적 채용관행이 민간 항공사들의 조종사 채용 시에 존재하는 경우 이는 오히려 시정해야 할 대상이지 취업의 전 단계에서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은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피진정 대학교의 경우 국내 항공운항학과 재적학생수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관련 학과 학생 선발 시에 취업시장에서의 고용주의 성별선호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특정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대·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성이었다면 합격하였을 성적 및 기타 지원 자격을 갖추고도 여학생 정원 상한제에 의해 교육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여성지원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과거 10년 간 실제 여학생 합격자 수가 정원제한선 4명에 미치지 못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굳이 여학생 정원 제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2005학년도 동 학과 여학생 입학인원 수는 4명으로 여학생 합격자 수가 항상 정원미달이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2010·2011학년도 여학생 합격자 수는 각 3명으로 현행 정원인 4명에 매우 근접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2011년부터는 공군 ROTC에 여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민간 부문뿐 아니라 군으로의 여성의 진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 국비지원 민간조종사 양성과정인 ◎◎대학교 ◇◇비행훈련원의 2012. 4. 교육생 여성 비율은 14.3%에 달하고 있는 점,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점차 완화되는 최근의 사회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입시에서 일정 수준의 성적 및 신체기준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여학생 정원 제한 규정에 의해 탈락하는 여성지원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 대학교는 입학 당시 신체검사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여성이라고 하여 장래 조종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2011년 국내 항공운항학과 설치 대학

제
3
편

차
별
시
정
분
야

5개교 중 피진정인 학교를 제외한 다른 4개교는 신입생 모집 시 성별 정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모집 시 여성에 대하여 반드시 정원 제한을 두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타 대학의 교육학과·간호학과 등 일부 학과에서 소수 성별 집단에 일정한 정원 비율을 할애하여 주는 하한선을 두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정원제한은 현재 남성이 96~100%에 이르고 있는 성비불균형을 그대로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한 여성 정원 상한규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라.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이 항공운항학과의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에 대하여 별도 정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양현아 위원 김성영

【별 지】 관련 규정

1.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울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후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별 정원
 -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제 3 편
차 별 시 정 분 야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제31조(학생의 선발)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제34조까지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①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각각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 입학 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 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 협의체가 제32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 「항공법」

제31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① 제2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명별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중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항승무원”이라 한다)
2. 제26조제5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고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을 하는 사람
3. 제26조제8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사로서 항공업무를 하려는 사람

4. 「항공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76조(응시자격)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또는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기 위한 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9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95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별표 14와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 3 편
차 별 시 정 분 야

2

**2012. 8. 22.자 12-진정-0315200 결정 [기혼여성 직원의
친정부모에 대한 진료비 할인 배제]**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에서 ○○대학교 기혼여성 직원과 기혼남성 직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감면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대학교 기혼여성 직원에게 기혼남성 직원과 달리 진료비 감면대상에 친부모나 친조부모가 아닌 시부모나 시조부모만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에 ○○대학교 기혼여성 직원과 기혼남성 직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감면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진 정 인】 주○○

【피진정인】 ○○대학교병원 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에서 ○○대학교 기혼여성 직원과 기혼남성 직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감면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대학교병원은 ○○대학교 교직원의 가족이 ○○대학교병원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결혼한 여성 직원의 경우 친정 부모

를 할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은 ○○대학교 직원인 진정한의 딸이 결혼한 이후부터는 ○○대학교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피진정인 주장

○○대학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대학교와 ○○대학교병원과의 상호협약을 근거로 하며 협의를 통하여 기혼여성의 경우 시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수 없다. 아울러 2010. 감사원의 10개 국립대학병원 감사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감면제도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되어 진료비 감면대상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받은 상황이어서 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폐지할 예정이고 따라서 진료비 감면을 추가하기는 어렵다.

나. 참고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의견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결과 진료비 감면제도의 감면 기준 및 대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요구되어, 국립대학교 교직원의 경우 맞춤형복지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진료비 감면대상을 병원 직원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하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립대학병원에서 해당 학교의 반발로 진료비 감면규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2012. 6. 28.에도 감사원 지적사항의 조속한 이행 협조 문서를 해당 국립대학병원에 시행한 바 있다. 기혼여성 직원의 친정부모를 진료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고려할 때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감면대상은 병원 직원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주장과 피진정인 및 참고인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과 ○○대학교 총장은 1993. 12. 1. 후생복지사업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교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대학교의 재학생에 대한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의 20%를 감면하고 병원 직원에게는 대학교 교직원 자녀와 동일한 수준에서 학비를 감면하기로 하였는데, 학비 감면의 경우 2008.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폐지되었다. 피진정인은 「진료비감면세칙」에서 ○○대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미혼자녀 등을 진료비 감면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기혼 여성 직원인 경우 부모와 조부모는 시가로 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 병원의 2011. 진료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병원 직원 관련 감면액은 약 1,765,149,000원, 대학교 직원 관련 감면액은 약 152,687,000원이고, 이 가운데 대학교 직원의 부모(시부모 포함)를 대상으로 한 감면액은 약 13,975,000원으로 대학교 직원 관련 감면액의 약 9%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감면액은 병원 직원의 경우 약 156,263,000원이나 대학교 직원의 경우 감면액이 없다.

다. 감사원은 2010. 10개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감사결과 2009. 진료비 감면 총액(197억 원)이 전체 의료부문 적자액(211억 원)에 육박하는 등 과도한 진료비 감면이 국립대학 병원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진료비 감면기준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감면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진료비 감면 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한 적정한 지침을 제정·시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하였다. 아울러, 2010.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감면대상, 진료비 감면기준 표준화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대학병원장 회의를 통하여 통일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2. 6. 28. 반복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립대학병원에 송부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2011. 8. 1. ○○대학교 교직원 및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제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학교에 통보하였고, ○○대학교 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교병원 이사회에 교직원 진료비 감면을 삭제하는 안건이 두 차례 상정되었으나(2011. 10. 19. 제100차 임시이사회와 2011. 12. 19. 제101차 정기이사회) 결정이 보류되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딸이 결혼을 한 이후 진정인을 진료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진정인은 ○○대학교 여성 직원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친정 부모를 진료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부모를 진료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부양을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결정되고, 결혼 이후 진료비 감면대상을 누구로 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으며, 부부가 ○○대학교 직원이라고 한다면 부부 모두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이 남편의 부모로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대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대학교 여성 직원의 경우 시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결혼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친정의 일에 남성인 자녀와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

하기 어렵다는 통념이 작용한 것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로 판단되며 ○○대학교와 사전 합의를 거쳤다는 것이 성차별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조부모를 남성 직원의 친조부모 또는 결혼한 여성 직원의 시조부모로 한정하는 것에도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국립대학병원의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고 ○○대학교 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교병원 이사회에서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안이 2차례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보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가 언제 폐지될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이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성차별적 관행의 시정은 대학교 교직원 진료비 감면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대학교 기혼여성 직원에게 기혼남성 직원과 달리 진료비 감면대상에 친부모나 친조부모가 아닌 시부모나 시조부모만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에 ○○대학교 기혼여성 직원과 기혼남성 직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감면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양현아 위원 김성영

3 2012. 9. 17.자 12-진정-0480102 결정 [남성에 대한 전문대학 간호과 입학제한]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간호과 신입생 모집 시 남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남성의 간호과 실습 참여나 졸업 후 간호사 취업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신입생 모집에서 남학생의 지원을 받지 않아 입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

【진 정 인】 주○○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간호과 신입생 모집 시 남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 대학 간호과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정원 및 정원의 전형 모두에서 남학생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남녀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간호과의 실무 특성상 기본간호학 실습에서 등 마사지, 유방 마사지 또는 도뇨·관장 등의 수기술을 동일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용의 특수성이 있고, 병원 임상실습에서 분만과 부인과 질환 실습 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아동간호학의 경우에도 남학생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여학생만 모집하고 있으므로 병원 임상실습과 간호업무 특성상 여학생 지원에 한하여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및 2013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대학요람,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 비율, 대한간호협회의 2012. 5. 10.자 간호뉴스 자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현황,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대학요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정원은 80명이며,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의 정원외 전형과 정시모집의 정원내 전형, 정원의 전형에는 여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나.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29만여 명(2012. 6.말 기준)이고, 이 가운데 남성 간호사는 5천여 명 정도이며(약 1.8%), 최근 5년 간 배출된 남성 간호사는 3,504명이다. 남성 간호사들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반병동에 배치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병원내 근무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남성 합격자는 2008년에 449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약 4.0%의 비율을 차지하다가 2012년에는 959명이 합격하여 전체 합격자의 약 7.5% 정도로 증가하였다.

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2012학년도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비율 보면, 간호과를 설치하고 있는 전체 88개 전문대학 중에서 남학생 입학자가 없는 대학은 피진정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교, ○○여자대학교, ○○○○대학교, ○○여자대학교, ○○여자간호대학, ○○여자대학교 등 7개 대학이며, 이 중 5개 대학은 여자대학이다. 위 7개 대학 중 ○○○○대학교는 2013학년도에 정원내 전형에서 정원의 10%인 12명을 남학생으로 선발하고 정원의 전형에서는 남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정시모집에서는 남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교는 모집요강에서 여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남학생의 지원이 저조하고 현재 재적학생 중 남학생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간호과를 설치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정원내 전형과 정원외 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 수의 13.4%와 12.9% 정도를 남학생으로 모집하였다.

라. 피진정 대학 간호과의 교육과정은 전공필수와 전공일반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시뮬레이션상황, 응급간호학 등의 교과목은 실습과목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과목 구분은 별지 3.과 같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대 여학생 입학 제한 사건에서 ○○○○대학교가 항공운항학과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여성에 대해 약 6% 수준으로 별도의 정원 제한을 두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모집 시 특정 성별에 대한 별도 정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개정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2012년 제4차 차별시정위원회).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남성이라는 이유로 간호과 모집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解産婦)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특화되어 있던 업무 영역이었다고 하더라도 간호과 모집대상을 여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2년에 배출된 간호사의 7.5% 정도인 959명이 남자이고, 2012학년도에 간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체 88개의 전문대학 중에서 7개 학교에서만 남학생의 입학 제한하였으나, 이 중 5개 대학이 여자대학이고 나머지 2개 대학도 남학생의 입학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남학생의 입학지원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진정인은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용의 특수성과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 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간호학 실습의 경우 등 마사지, 도뇨, 관장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익히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이므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원의 임상실습에서 여성환자가 남학생의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등에서 여학생의 실습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습으로 보완하거나 다른 병원·병실에서 실습을 추진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다. 한편,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교육과정은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등에 다양한 교과목에서 실습을 하고 있어 산부인과 또는 아동간호학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남성 간호사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파트에서 배치되다가 최근에는 일반병동에도 배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자 간호사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김성영 위원 강명득

【별 지】 관련 규정

1.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제7조(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의료법 시행령」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4 2012. 11. 30.자 결정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권고]

【결정사항】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사 성과평가 기준의 근무일수에 산전후휴가(또는 수유시간)를 포함하도록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
- 【2】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수유시간 또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항목 중 근무일수에서 산전후휴가(수유시간 포함)를 제외하는 것은 비록 전체 교사의 의견수렴과 찬반투표 등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기준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성 보호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의무 등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하여 임금 및 임금외 금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1조 2. (b),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74조·제75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 수유시간 또는 산전후휴가 사용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사 성과평가 기준(예시)의 근무일수에 산전후휴가(또는 수유시간)를 포함하도록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수유시간 또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검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진정에 대하여 이를 차별로 인정하고 2011. 8. 26. 피진정 학교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산전후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피진정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시 산전후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조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관행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II. 검토 및 참고기준(별지 1)

「헌법」 제11조 제1항,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1조 2. (b),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74조, 제75조

III. 교원 성과상여금 운영 현황

1.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이 1년 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공무원 중 근무 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개인별 성과를 평가한 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상여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교육부 지침’이라 한다)」을 두고 있고, 각 시·도교육청은 위의 교육부 지침을 준용하여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교육청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교육부 지침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각급 학교장은 교육부 지침과 소속 교육청 지침에 예시된 교사 성과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학교의 실정에 맞는 차등지급 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성과상여금 지급하고 있으며, 평가기준 결정 시에는 해당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서 예시하고 있는 ‘교사성과평가기준’(별지 2) 내용을 살펴보면,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계발 등 4개 평가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급 학교장이 분야별 세부항목의 내용은 조정할 수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위 기준에 따르되,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기준표’를 작성한다. ‘성과상여금 차등지급기준표’ 상의 각 평가분야 기준점수의 합은 100점이고, 평가등급을 S, A, B 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이다.

3. 산전후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사례

16개 시·도교육청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1,883개교 중 499개교(약 4%)에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산전후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현황’ : 별지 3).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살펴보면, ‘교사성과 평가기준’의 ‘담당업무’ 분야 세부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근무일수’를 ‘성과상여급 차등지급기준표’에 반영한 후, 산전후휴가일수를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감점하거나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적용례는 아래와 같다.

- 사례1 : 12개월 근무 시 10점을 만점으로 배정하고 실제 근무한 개월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데 9개월 근무시 8점 부여
- 사례2 : 10일 이하 결근 시 15점 만점으로 배정하고 실제 결근한 일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데 2월 ~ 6월 결근시 13점 부여
- 사례3 : 실제 근무한 1개월당 0.5점 부여하고 최대 6점 부여
- 사례4 : 근무제외의 일수가 연 3일 이하일 경우 15점, 10일 이하 13점, 10일 초과시 11점 부여
- 사례5 : 휴가사용일수에 따라 1일 이하 20점, 3일 이하 18점, 7일 이하 16점, 30일 이하 14점, 30일 이상 12점 등의 점수 부여
- 사례6 : 모든 점수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모든 점수×근무일수/12)
- 사례7 : 10일 이하 결근시 8점, 11~20일 5점, 21일 이상 결근시 2점 부여

16개 시·도교육청은 대체로 산전후휴가 사용에 따라서 차등점수를 받거나 감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과급 등급이 변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나,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본인이 받을 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부여하거나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가 확인되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다른 항목의 성과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한 여성 교사는 개인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성과상여금 차등지급기준표에 근무일수와 관련한 결근일수, 휴가사용일수, 근무월수 등의 항목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산 후 수유기에 있는 영아(생후 1년 미만)를 대상으로 1일 1시간 이상의 수유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학교마다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 받는 불이익이 2점~8점 등으로 확인되었다.

IV. 판단

1.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결정방식의 정당성 여부

성과상여금 제도는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고, 구성원들 간의 투표를 통하여 성과상여금 차등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제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토론과 다수결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해당 제도의 하자 여부를 다룰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이에 더하여 해당 제도의 실질적인 내용이 일부 구성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지 여부 등도 살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성과급 관리위원회를 통해 성과상여금 차등지급기준을 결정한 사실만으로 그 지급기준이 정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산전후휴가 기간 등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반영의 차별 여부

산전후휴가 제도는 여성 근로자가 산모와 태아 또는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출산 전후에 일정기간 동안 휴가를 갖도록 국가가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여성의 모성과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할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산전후휴가는 출산 당사자인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 시기나 기간

등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회적 인정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필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뿐만 아니라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하게 조치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과 산후 90일의 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산전후휴가 사용에 따라서 차등점수를 받거나 감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과급 등급이 변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나 위의 산전후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사례에서와 같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근무일수와 관련된 항목의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성과급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 다른 항목의 성과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한 여성 교사는 개인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사례가 있는 점, 모든 항목의 점수를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산전후휴가 등의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다.

3. 소결

따라서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항목 중 근무일수에서 산전후휴가(수유시간 포함)를 제외하는 것은 비록 전체 교사의 의견수렴과 찬반 투표 등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기준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성보호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의무 등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하여 임금 및 임급 외 금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2. 11. 3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김성영 위원 강명득

【별지 1】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1조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3.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5.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별지 2】 교사성과평가기준(예시)

분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지도	수업시간 수	수업시간 수	수업시간 수
	수업공개 횟수 등	수업공개 여부 및 횟수	수업공개 여부 및 횟수
		개발활동지도	개발활동지도
		자치적응활동지도	자치적응활동지도
		다학년지도 및 다교과지도 등	다학년지도 및 다교과지도
		야간자율학습지도 등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실적	학부모 상담 실적	학부모 상담 실적
	선도·교통 지도 등	학생 상담 실적	학생 상담 실적
		교문지도 및 중식지도 등	교문지도 및 중식지도 등
담당업무	담임 여부	담임 여부	담임 여부
	보직 곤란도	보직 곤란도	보직 곤란도
	업무곤란도	업무곤란도	업무곤란도
	(기피업무 담당) 여부	(기피업무 담당) 여부	(기피업무 담당) 여부
	지도 학생 수상 실적	지도 학생 수상 실적	지도 학생 수상 실적
	근무일수	근무일수	근무일수
	연구·시범학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연구·시범학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연구·시범학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담임학년 곤란도	동아리 활동지도	동아리활동 지도
	통합학급 학생(특수아) 담임 여부 등	교과경시대회 지도	교과경시대회 지도
		교과 부장 여부 등	교과 부장 여부 진학·취업 지도 학교 특성화·자율학교 업무담당 등
전문성개발	연수 이수 시간	연수 이수 시간	연수 이수 시간
	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연구대회 입상 실적	연구대회 입상 실적	연구대회 입상 실적
	수업관련 장학 요원(연구교사, 선도 교사)	수업관련 장학 요원(연구교사, 선도 교사)	수업관련 장학 요원(연구교사, 선도 교사)
	연구 개발 실적(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	연구 개발 실적(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	연구 개발 실적(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
	포상 실적 등	포상 실적	포상 실적
		교과연구회 참여 실적 등	교과연구회 참여 실적 등

【별지 3】 산전후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사례

교육청	초		중		고		특수		합계		
	전체	해당	전체	해당	전체	해당	전체	해당	전체	해당	비율
서울	549	68	266	27	111	7	-	-	926	102	11%
부산	299	13	170	37	139	14	-	-	608	64	11%
대구	215	10	122	4	92	4	8	0	437	18	4%
인천	227*	34	128	34	113	12	7	1	470	81	17%
광주	151*	16	87	6	65	1	4	1	307	24	8%
대전	141	0	87	2	61	4	-	-	148	6	4%
울산	119	12	61	10	50	4	-	-	230	26	11%
경기	1,174	44	593	55	433	43	-	-	2,200	142	6%
강원	-	-	-	-	-	-	-	1	640	1	0%
충북	-	1	-	1	-	0	-	0	488	2	0%
충남	-	6*	-	2	-	3	-	2	1,272	13	1%
전북	-	0	-	0	-	0	-	-	754	0	0%
전남	425	0	246	0	156	1	-	-	827	1	0%
경북	-	0	-	0	-	0	-	0	1,442	0	0%
경남	497	7	266	7	188	3	-	-	951	17	2%
제주	109	1	42	0	29	1	3	0	183	2	1%
합계	-	212	-	185	-	97	-	5	11,883	499	4%

※ 1. 초등학교의 * 부분은 유치원을 포함한 수치임.

2. 이 자료는 각 시도교육청에 산전후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협조 요청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대상학교의 수에 다소 오차가 있고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불이익 사례가 실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음.

성희롱

5

2012. 4. 27.자 11-진정-0594500결정 [국가유공자단체 임원의 직원 성희롱]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면담하여 근무태도 및 동료관계에 대하여 질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붙어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발언한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직원 관리업무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2011. 4. 22. 오전 ○○○○○○회(이하 ‘○○○’라고 한다) 부회장이 피진정인은 ○○○가 운영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에 근무 중이던 진정인을 3층 도서관 옆 회의실로 불러 진정인과 사서들과의 문제 등에 대해 질책하였다. 그러던 중 피진정인은 2010년말 직원 송년회 장소에서 진정인이 외출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업체 사장하고 나가 짝지어서 붙어먹고 다니냐? 유부녀가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녀? 네 신랑도 네가 이런 짓 하고 다니는 것을 알아?”라고 말하며 진정인을 질책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은 ○○○ 회장 지인의 추천으로 입사한 직원으로, 피진정인은 ○○○ 회장의 부탁을 받아 진정인의 근무 초기부터 진정인과 종종 면담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곤 하였다. 그러던 중 ○○○ 관련 행사 준비 과정에서 진정인과 사서들과의 갈등이 생겼는데, 진정인에게도 일정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점을 지적하기 위해 2011. 4. 22. 진정인과 면담을 하였다. 면담 당시 진정인에게 사서 등 다른 직원들과 패를 나누어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와 2010. 12. ◇◇◇에서 있었던 송년회에서 숙소 밖으로 나간 행동에 대해 지적한 사실이 있다. 그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대열을 이탈해서 밤에 나가서 술 먹고 오고 그러면 유부녀로서 안 된다. 남편이나 부모가 단체의 회장이나 부회장을 믿고 1박 2일 송년회를 보냈을 텐데, 대열을 이탈해서 밤에 술 먹고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러한 행동이 사서들에게도 약점이 되는 행동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송년회 당시 다른 직원들이 진정인 등에 대해 짝지어서 술 처먹으러 갔다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전했을 뿐 ‘붙어 먹었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2010. 12. ◇◇◇에서 1박 2일로 열렸던 송년회 둘째 날 아침, 진정인이

배탈이 나 구급차로 병원에 갔는데 당시 모여 있던 직원 중 누군가가 진정인, ▽▽▽, ○○○ 거래업체 ○사장, 총무국장이 ‘짜 맞추서 나가서 술 처먹고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진정인이 술을 먹고 탈이 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2011. 4. 22. 진정인과의 면담 당시 진정인이 자신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한다고 하여, 그래도 나갔다 온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취지로 짧게 이야기하였고 당시 진정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어서 이러한 지적을 수긍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내용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진정인과 참고인 ▽▽▽와의 통화 녹취록, 진정인의 동료직원인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도서관은 ○○○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 ○○○ 회장이 도서관장을 겸임하며, 피진정인은 ○○○ 부회장이자 도서관의 운영 위원이다.

나. 진정인은 2009. 10. 1. 도서관에 입사하여 도서관과 ○○○의 홈페이지 관리, 사서보조 업무를 수행하다 2011. 6. 사직하였고, 피진정인은 2010. 6. 1.부터 현재까지 ○○○ 부회장으로 상근하고 있다.

다. 2011. 4. 22. 오전 피진정인은 도서관 옆 회의실에서 진정인을 면담하였으며, 면담 당시 회의실 밖에 있던 참고인들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유부녀가 업체 사장과 짝지어서 붙어먹고 다닌다. 남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진정인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진정인의 남편 이경이 며칠 후 피진정인을 찾아가 항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진정 사건 다음 날 진정인과 참고인 ▽▽▽와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진정인이 참고인 ▽▽▽에게 ‘진정인의

남편이 붙어먹었느니, ◇◇◇ 얘기한 것을 참을 수 없어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참고인 ∇∇∇가 '나한테 자꾸 붙어먹었다 표현 쓰는데 또 한번 그러시면 가만 안 있겠다고 피진정인에게 말했다고 진정인에게 말하였으며,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진정 관련 발언에 대해 참고인 ∇∇∇에게 "내가 괜찮으니까 난 상관없다. 이렇게 마음은 솔직히 그랬거든. 근데 되게 치욕스럽기는 했어. 솔직히 그 얘기 딱 듣는데, 무슨 내가 창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너 그러고 다니는 거 니네 신랑도 아냐고 딱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그런 여자로 비취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랬거든"이라고 말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11. 4. 22. 오전 진정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진정인 등에 대해 '짜지어서 술 처먹으러 갔다'고 말한 사실을 진정인에게 전달했고, 송년회 장소 밖에서 따로 술을 마시고 온 행동이 유부녀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진정인에게 하였다.

마. 한편, 도서관 직원인 참고인 ∇∇∇는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나타난 발언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고, 도서관 직원 중 한 명도 피진정인의 진정 관련 발언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4.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나.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함의가 있고 불쾌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본 진정사건에서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소속된 도서관의 운영기관의 임원이자 도서관의 운영위원으로 진정인과 업무 상하관계에 있고, 진정 사안이 근무시간 중 직원 송년회 등 업무와 관련된 면담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 내용에 대해 ‘붙어먹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진정인에게 ‘짜지어서 술 처먹으러 갔다’는 말을 전하고 송년회 장소 밖에서 따로 술을 마시고 온 행동이 유부녀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유부녀가 업체 사장과 짜지어서 붙어먹고 다닌다. 남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는 점,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진정인이 참고인 ▽▽▽와의 통화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붙어먹었다’는 등의 표현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점,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참고인 ▽▽▽와 도서관 직원 한 명이 피진정인의 발언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은 현재 ○○○ 또는 도서관에서 피진정인과 상하관계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피진정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라. 피진정인이 진정인과의 면담과정에서 사용한 ‘붙어먹는다’는 표현은 간통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성적 함의를 가지며, 당시 피진정인 발언의 전반적 취지를 볼 때 이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리도록 발언하는 것은

부하직원의 근무태도 및 동료관계 등에 대한 상급자의 정상적인 직원 관리업무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의 발언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발언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양현아 위원 김성영

6 2012. 12. 26.자 12-진정-0688100결정 [토목설계회사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 【2】** ○○ ○○○○ 대표이사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사무실에서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진정인이 불쾌함을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나중에서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말다툼 후에야 진정인이 성희롱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업무상 관계 및 소규모 회사의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언동에 대해 즉시 적극적 거부의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진정인의 발언은 일상적으로 직장 내에서 주고받는 대화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함.
- 【2】** 피진정 회사 대표이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의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정사건 발생 전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후에도 피진정인에게 말조심을 당부하는 정도로 그쳤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진정 회사 대표이사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항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 ○○○○○ 대표이사에게,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1. 10.부터 토목설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는데 직장 상사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컴퓨터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때마다 “야동 봐? 야동 좀 그만 봐”라고 하였다. 그리고 2012. 3.말경 퇴근하면서 피진정인과 같이 버스를 타러 가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나이를 물어보더니 경험도 없냐며 천연기념물이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해 4. 경 근무 도중 힘이 없고 입맛이 없다고 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혹시 임신이 아니냐?”고 웃으면서 말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같은 해 8. 28. 진정인이 매일 챙겨 먹는 약을 보고 “피임약?”이냐고 물었고, 같은 날 점심식사 중에 퇴직금을 받으면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자 “어디? 가슴?”이라고 물었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을 느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및 참고인 의견

가. 피진정인 주장 요지

진정인이 사무실에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때 진정인에게 ‘야동 봐?, 야동 좀 그만 봐’라고 한 적이 있으나, 진정인도 피진정인이 컴퓨터를 보고 있을 때 ‘차장님, 야동 보세요?’라는 말을 하였으므로 이런 점에서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외에 천연기념물, 임신, 피임약, 가슴수술 등의 발언을 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진정인이 기분 나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만약 진정인이 기분 나쁘다는 말을 했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진정인과 컵 세척 문제로 다툰 이후에야 진정인이 성희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같은 회사 동료이기 때문에 진정인이 기분 나빠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들렸으면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성희롱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고 인정할 수도 없다. 진정인은 성희롱 문제가 아니라 컵 세척 문제로 다투고 나서 사무실 분위기가 좋지 않아 결근한 것이다.

나. 참고인 의견

1) 참고인 1(○○ ○○○○○ 대표이사 ○○○)

진정 내용에 대하여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은 없고 물 컵 닦는 일로 인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언쟁을 벌인 후에 진정인이 참고인 1을 찾아와 얘기하여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을 알았다. 소규모 회사이기 때문에 상급자가 성희롱을 하지 못할 것이고, 성희롱이 있었으면 진정인이 당시에 정확히 불쾌감을 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발언이 성희롱으로 느껴져 기분 나빴다는 문자를 피진정인에게 보냈고 피진정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성희롱으로 들렸다면 미안하다고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2. 9. 5. 참고인 1이 마련한 회식자리에서도 피진정인이 본인 이야기가 성희롱으로 들렸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직원들에게 대화를 할 때 성희롱으로 느낄만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였다.

2) 참고인 2(○○ ○○○○○ 이사 ○○○)

피진정인의 '임신' 관련 발언은 들은 적이 있으나 평소 농담하고 웃으면서 도시락을 먹는 관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진정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을 듣고 말조심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였다. 2012. 9. 5. ○○○○○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천연기념물 발언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자 피진정인은 남자를 사귀어 보라는 취지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3) 참고인 3(○○ ○○○○○ 대리 ○○○)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야동 봐? 야동 좀 그만 봐”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은 있다. 그 외에는 특별히 기억나지 않지만 퇴직금을 받으면 무얼 하겠느냐고 참고인 3이 물었을 때 진정인이 팔자주름 수술을 받고 싶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이 가슴 수술이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과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의 주장 내용, 참고인 의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은 토목 설계를 주로 하는 회사로 2000. 3. 설립되었고 진정사건 발생 당시 동 회사에는 대표이사, 이사, 피진정인, 대리, 진정인 등 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피진정인은 동 회사에 2010. 1. 과장으로 입사하여 2011.부터 차장으로 직위를 바꾸어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은 2011. 10.부터 동 회사에 경리직원으로서 근무하였으며, 2012. 9.

3.부터 계속 결근(2012. 9. 5.과 9. 12. 두 차례 출근한 것은 제외)하다가 2012. 10. 5. 사직의사를 밝혔다.

나. 피진정인은 사무실에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야동 봐?, 야동 좀 그만 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2. 4.경 진정인에게 임신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참고인 2도 이와 같은 발언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임신 관련 발언은 사실로 인정된다.

라. 그 외 천연기념물, 피임약, 가슴수술과 관련된 발언은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고 참고인들이 위 발언을 직접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이 2012. 4. 6. 친구와의 NATE 메시지에서 피진정인의 천연기념물 발언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현한 점, 2012. 8. 28. ~ 8. 30, 9. 4. 등 4일 동안 진정인이 참고인 2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진정인의 천연기념물 발언과 피임약 발언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표현한 점, 2012. 9. 5. 11:32경부터 진정인이 참고인 3과 NATE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진정인의 천연기념물 발언, 피임약 발언 및 가슴 발언에 대해 언급한 점, 같은 날 12:38경부터 진정인이 피진정인과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진정인의 피임약, 가슴, 천연기념물 등의 성적 발언으로 괴롭다고 표현한 점, 참고인 2가 2012. 9. 5. 있었던 회식자리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천연기념물 발언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자 피진정인은 남자를 사귀어보라는 취지였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 관련 메시지 내용 및 메시지를 나눈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천연기념물, 피임약 및 가슴수술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2012. 8. 30. 오전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사용한 컵은 바로 세척하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은 컵을 세척하는 것은 진정인의 업무라고 말하는

등 당사자 간의 언쟁이 있었다. 같은 날 진정인은 참고인 1에게 피진정인의 성희롱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고, 참고인 1은 그날 저녁 피진정인, 참고인 3과 회식을 하며 피진정인의 발언에 대하여 진정인이 기분 나쁘다고 하니 사과를 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

바. 참고인 1은 진정인의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나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1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정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2012. 12.말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진정인은 현재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구직 중에 있다.

사. 참고인 1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의 방지 의무가 있으나 진정사건 발생 이전에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함의가 있고 불쾌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나. 업무관련성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다니던 회사의 상위 직급자이고, 이 사건 진정이 사무실 또는 퇴근길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다.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는 성적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적 언동 등이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언동을 한 자의 의도가 아니라 언동의 결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사무실에서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관계이고 불쾌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2012. 8. 30. 컵 세척 관련 말다툼 이후에야 진정인이 성희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업무상 관계 및 소규모인 회사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언동이 있던 즉시 적극적인 거부의를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위 인정사실 나항, 다항, 라항과 같은 피진정인의 발언은 일상적으로 직장 내에서 주고받는 대화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조차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라. 위와 같은 성희롱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이 반복되는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에 대해 대표이사인 참고인 1과 이사인 참고인 2에게 호소하고 동료 직원인 참고인 3에게 확인을 구하였으며, 피진정인에게 사실인정 및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의 형식적인 사과로 사건이 마무리됨으로써 진정인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므로 진정인의 퇴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권고할 필요가 있겠으나, 진정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참고인 1이 진정

인에게 2012. 12.말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참고인 1은 회사의 사용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의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정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오지 않았고 이 진정사건 발생 후에도 피진정인에게 말조심을 당부하는 정도로 그쳤다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피진정 회사 대표이사에게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등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김성영 위원 강명득



제 2 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장애인에 대한 배제 및 불리한 대우 [3건]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9건]
-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3건]

장애인에 대한 배제 및 불리한 대우

1

2012. 1. 10.자 10-진정-0710700 결정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배제 등 차별]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의 소속 학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대상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를 권고
- 【2】 ○○광역시 교육감에게, 향후 관내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대상 장애인 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권고

【결정요지】

- 【1】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수업을 포함한 학급활동 참여는 학생의 수업권과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제한조치는 관련 법령 및 학교운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2】 폭력사건에 대한 학교자체조사에서 상대학생과 학급동료 및 교사들에게는 서면진술서를 받은 반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어떤 서면진술서도 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진술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수업참여 제한조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에서의 차별행위로 결정

【참조조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조 및 제17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진정인】 이○○

【피 해 자】 최○○

【피진정인】 ○○○

【주 문】

1. 피진정인의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관리·감독 기관인 ○○광역시 교육감에게, 향후 관내 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진정인의 아들로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2010. 10. 13.과 같은 해 11. 1. 같은 반 학생 정○○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은 가해 학생의 말만 듣고 피해자에게만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며 집에서 쉬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 8. 진정인이 피해자를 학교에 등교시키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등교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이는 수업 참여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2010. 10. 13. 정○○이 내 왼쪽 머리를 때려 오른쪽 보청기가 떨어졌다. 머리를 맞게 되면 머릿속 칩이 손상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화가 나 정○○의 눈을 때렸다. 이 사건으로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가고 있다가 같은 해 11. 1. 등교했다.

2) 2010. 11. 1. 등교 후 점심을 먹고 왔는데 정○○이 내 책상을 넘어 뜨려 놓고 책을 밟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놀리고 얼굴을 때렸고 나는 정○○을 때리지 못하였다. 같은 날 면담 시 피진정인이 “이제 학교에 오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졸업식 날 와라”라고 말하였기에, 나도 “안녕히 계세요. 졸업식 날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하였다.

다. 피진정인

1) 2010. 10. 13. 사건 당일 진정인은 피해자가 정○○으로부터 교실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함께 있었던 학급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정○○이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이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머리를 누른 사실은 있었다. 그 동안 피해자의 심한 폭력성으로 인하여 학급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였고, 학급 친구들이 잘해 주어도 피해자의 폭력성이 나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스스로 학교에 오기 싫다고 반복하여 말한 바 있다. 이에 사건 이후 진정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를 당분간 쉬게 하면서 목요일, 금요일 특수반 순회수업에 참여하는 식으로 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수능시험을 앞둔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피해자를 집에서 쉬게 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후에 같은 해 11. 1.부터 등교시키는 것으로 하였고 당시 진정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2) 피해자가 다시 학교로 나왔던 2010. 11. 1.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피해자가 점심을 먹고 와서 본인의 책상과 몇몇 학급 친구들의 책상을 얻어뜨리고 뒷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정○○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가방

으로 정○○의 얼굴과 가슴을 쳤고, 이로 인해 정○○이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분을 가격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흥분하여 교실 앞문 쪽으로 가서 유리창 2개를 깨고 정○○의 왼쪽 팔을 다시 4대 정도 때렸다. 그러나 당시 학교에 방문한 진정인은 피해자의 폭력으로 먼저 피해를 입은 학생이 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왜곡하여 주장하였다.

3)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었지만, 피해자가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교내봉사 5일 정도로 감경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럴 경우 피해자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담임교사로서 학급 학생들이 고3 수험생이라는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도 계속 울면서 “자기가 맞았다, 이제 학교에 안 올 거다, 졸업식 날 오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진정인도 피해자를 집에서 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담임교사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출결사항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4)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0. 11. 8. 진정인이 갑자기 문자를 보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진정인은 “○○이가 집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 안 되겠다”고 하면서 “학교에 보내야겠다”고 하였다. 당시 본인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차라리 교실에 오셔서 같이 있으시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라. 참고인

1) ○○고등학교장

피해자는 2009. 7. 특수학교에서 본교의 일반학급으로 전학 온 이후 같은 반 학생들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유 모를 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반 분위기를 공포스럽게 조성하였다. 이번 2010. 10. 13.과 같은

해 11. 1.에 발생한 피진정인 학급의 학생들 간의 다툼은 피해자의 선제 폭력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학생이라고 한다면 폭력행사에 따라 생활지도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경우 과거에도 여러 건의 폭력적 행동에 대해 병원 및 가정에서 안정을 취한 것으로 선처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학급의 학생들이 안정을 찾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귀가 조치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하는 것으로 조치한 것이다.

2) 조○○, 박○○, 한○○, 최○○, 김○○, 최○○, 김○○(○○고등학교 3학년 교사)

피해자는 보청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청력이상이 있으며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이다. 피해자는 피진정인의 반에 2년 간 배정되어 크고 작은 사고를 겪으면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온 덕분에 대학에도 합격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불안정한 정서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폭력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졸업까지 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3학년 진학 후 피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의 정도가 심해졌으며, 일 년 내내 주기적으로 사고가 반복되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장애학생과 통합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괴롭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같은 학년의 다른 지체장애 학생과 달리 지적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한 상태이고 체력이 좋기 때문에 피해자가 학급 학생들을 먼저 놀려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누구도 교칙을 적용한 처벌을 생각하지 않았다. 피해자 어머니인 진정인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출석 문제도 사실 피진정인의 강요가 아니라 피해자와 진정인도 원하였던 측면이 있었고, 이는 수능을 앞둔 다른 학생들을 위하여 여러 교사들이 권유하였던 공여지책이기도 하다.

3) 윤○○(특수교사)

피해자가 특수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인 ○○고등학교에 전학 올 당시 학교 내 특수학급 인원은 이미 정원 초과된 상태였고, 진정인도 피해자가 일반학급으로 배치되어 수업받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는 피해자를 일반학급으로 배치하였다. 피해자는 순회수업 등 1:1 수업에서는 큰 문제없이 수업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집단수업에는 맞지 않아서 학업 수행에 있어서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참고인 진술, 그리고 학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왼쪽 귀는 인공와우수술을 하였고, 오른쪽 귀는 보청기 등 청각장애인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이다. 따라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글도 읽고 쓸 수는 있으나, 발음이 부정확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다. 피진정인은 2009. 7. 1. 피해자가 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배치된 2학년 2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였다.

나. 2010. 10. 13. 사건과 관련하여

1) 피해자는 2010. 10. 13. ‘정○○이 먼저 피해자를 놀리고 때려서 피해자의 보청기가 빠졌으며 이에 화가 나 정○○의 눈을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진정인은 정○○과 학급 동료들인 정○○, 박○○, 박○○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급식실에서 돌아와 먼저 책으로 정○○의 얼굴을 때렸고 정○○은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상체를 숙이게 하였다’라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사건 이후 정○○은 ‘창상으로 후시딘 연고(처치)’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양호실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3)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는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할 테니 2010. 11. 1.까지 등교하지 말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하였고, 정○○에게는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2010. 11. 1 사건과 관련하여

1) 2010. 11. 1. 학교에 다시 등교한 피해자는 ‘정○○으로부터 먼저 맞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정○○과 학급 동료 4명의 ‘피해자가 먼저 가방으로 정○○의 얼굴과 가슴 쪽을 때려 정○○의 오른쪽 얼굴이 긁혔으며, 정○○이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를 때렸다’라는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먼저 공격을 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0. 11. 11. ○○○정형외과에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상해부위의 좌측 협골부 피하출혈, 부종 및 압통이 인지됨’과 ‘추후경과 관찰 요함’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정○○의 경우는 2010. 12. 14. ○○○정형외과에서 ‘좌전박부 타박상’, ‘상기 병명으로 타 이상이나 미발견증이 없는 한 발병일로부터 2주 간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3)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2010. 11. 1. 이후부터 졸업할 때까지 출석으로 처리하면서 학교수업 및 외부행사에 일절 참여시키지 않았고, 정○○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였다.

라. 피진정인과 학교 측은 두 건의 폭력사건 발생 당시 작성된 정○○ 및 같은 학급 동료들 16명의 진술서, 동료 교사들 5명의 참고 의견서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술서 또는 의견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상기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또는 학교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마. 피진정인은 두 건의 폭력사건 발생 직후 진정인과 피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출결사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피해자를 학교에 오지 말고 집에서 쉬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도 일정부분 피진정인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였던 사실이 있다.

바. 피진정인은 두 건의 폭력사건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공식 보고하지 않았고, 학교장은 폭력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회의가 개최된 사실은 없다.

사. 2010. 11. 8.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수업 참여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고, 피진정인은 전화상으로 진정인에게 “차라리 교실에 피해자와 같이 와 있으시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차별금지) 제4항은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법이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은 “각급 학교의 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수업참여에 있어 제한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피진정인은 교육과정에서 담당학급 학생들의 출결사항을 관리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특수교사 등과 협력하여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거부당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수업을 포함한 학급활동에의 참여는 학생의 수업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처럼 피해자에게 등교를 하지 말도록 조치하는 등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학교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며,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상기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또한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10일이내의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역시 해당 조치를 위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3) 피진정인은 이상의 관련 법령에 따라 두 건의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이 두 건의 폭력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하면서 사건 관련 상대 학생과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학급 동료들 및 교사들로부터는 서면진술서를 받은 반면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피해자로부터는 어떠한 서면진술서도 받지 않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력사건의 가해자로 잠정결론지어 피해자에 대해서만 수업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를 수업참여에서 배제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그러나 참고인 진술 등에 의거할 때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대입 수험생들의 학급담임 교사로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분위기 또는 출결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진정인이 소속된 학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7호의 교육책임자이며 피진정인 학급에서 발생한 피해자와 상대방 학생간의 폭력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향후 상기와 같은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피진정인 소속 학교의 교육책임자인 학교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광역시교육감에게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에게 장애인차별예방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김영혜 위원 한태식

【별 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 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 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 가해학생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2012. 5. 25.자 11-진정-0555300 결정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의 차등 부과]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승강기 전기료 부과에 있어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2층 거주 장애인 세대가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앞집 세대의 승강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3층 이상 거주세대와 균등하게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할 것을 권고
- 【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저층에 거주하면서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세대에게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되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한 2층 거주세대에게 앞집 세대가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승강기 없이는 2층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승강기 이용을 위해서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제18조 제1항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2층 거주 장애인 세대가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앞집 세대의 승강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3층 이상 거주 세대와 균등하게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피진정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저층에 거주하면서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세대에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시 ○○○단지 ○○아파트(이하 ‘피진정아파트’라고 한다) ○○○동 2층에 거주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1급 장애인이다.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층은 원래 승강기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 진정인 세대가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앞집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진정인 세대는 2010. 2월부터 2012. 2월까지 2년 동안 타 세대보다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매월 부담하였다. 앞집 세대에서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타 세대에 비해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당 아파트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2층 세대는 승강기 전기료뿐만 아니라 승강기 유지비도 면제해주고 있으나, 장애인 및 노약자가 있거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등 필요에 의해서 승강기 사용을 원하는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승강기 사용신청을 하면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다만, 앞집 세대가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앞집의 승강기 전기료를 포함한 승강기 전기료를 납부하겠다고 승낙을 받고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부과 방식은 공동주택의 특성으로서 장애인 세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만일 진정인 세대가 본인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만 납부하겠다고 한다면 최고층에 거주하는 세대는 승강기 전기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하고, 저층에 사는 세대는 전기료를 적게 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전기료 부과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진정인 세대에게 승강기 전기료를 2배 부과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상의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아파트는 입주민의 청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층에 승강기를 운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2층에 승강기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2층에 거주하는 세대가 필요에 의해 승강기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 앞집 세대에서 승강기 사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3층 이상 거주 세대와 동일하게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집 세대가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3층 이상 거주 세대에 비해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

나. 피진정아파트는 같은 동이라도 각 라인별로 전기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각 라인별 매월 승강기 전기료가 산출되며, 각 라인별 승강기 전기료 총액을 1층, 2층 거주세대를 제외한 3층 이상 거주 층 세대수로 나누어 3층 이상 세대에게 매월 균등하게 부과하고 있다.

다. 진정한 세대가 거주한 피진정아파트 ○○○동은 1997년에 신축된 지하 1층, 지상 15층 계단식 구조로 총 3개 출입 라인(1~2호, 3~4호, 5~6호)이 있으며, 진정한이 거주하는 ○○○호는 같은 동 ○○○호에서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2월부터 2012. 2월까지 총 25개월 동안 같은 동 3층 이상에 거주하는 총 26세대에 비해 매월 2배(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가 부과되어, 진정한 세대는 47,99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라. 피진정아파트 승강기 전기료는 '○○○단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로 구분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2층 이하를 제외하고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되며, 승강기 전기료를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는 매월 중순경 피진정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산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비 부과건을 매월 의결하고 있다.

마. 피진정아파트 ○○○동의 3~4호 출입라인을 운행하는 승강기 내부에는 CCTV가 장착되어 녹화되고 있으며, 진정한의 앞집 세대인 ○○○호 거주자는 2011. 3. 5.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피진정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제출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타 세대에 비해 2층에 거주하는 장애인 세대에게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사용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시설물의 접근·이용을 제한하였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나. 장애인 세대에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한 것이 차별인지 여부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피진정인은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는 2층 거주세대는 앞집 세대가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누구나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타 세대에 비해 장애인 세대에게 2배의 금전적 부담을 안게 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승강기는 공동주택의 공동사용 시설로 아파트 거주자 또는 방문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바, 장애인이라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층 거주 장애인 세대가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 납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다. 승강기 전기료를 2배 부과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i) 공동주택 관리차원의 특성상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아파트 3층 이상 거주 세대의 거주층, 세대원수, 세대별 방문객 수, 세대별 승강기 사용횟수 등을 모두 감안하여 개별 세대별 승강기 전기료를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3층 이상 거주 세대에는 승강기 전기료를 균등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 ii) 개별적 필요에 의해 승강기 사용을 신청하는 2층 거주 세대의 앞집 세대에서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고서도 승강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iii) 2층에 거주하는 승강기 사용신청 세대의 앞집 세대에서 승강기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피진정인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월체어 사용자가 거주하는 진정한 세대에도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i) 피진정아파트 ○○○동 3~4호 출입라인을 운행하는 승강기 내부에 CCTV가 장착되어 녹화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호에서 승강기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매번 확인할 수는 없을 지라도 확인 업무 자체가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피진정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서 진정한 세대의 앞집 세대에서 승강기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함에도 진정한 세대에게 앞집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까지 부담토록 함으로써 피진정인이 관리주체로서의 수행해야 할 관리업무 부담을 진정한 세대에 금전적 부담으로 전가시킨 점, ii) 3층 이상 거주세대에 균등하게 부과되는 승강기 전기료가 월 평균 1,920원(세대당 71원 추가 부담)인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 또는 승강기 사용 전체 세대가 이를 감당하기에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iii) 진정한 세대를 제외하고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한 2층 거주 세대에서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 부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는 월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2층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더라도 승강기 사용을 위해서는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체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iv) 아파트 승강기는 아파트 거주자 및 방문객 등에게 개방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로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비장애인 거주자 및 방문객들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승강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세대에 대한 승강기 전기료 2배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피진정인이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 진정한 세대에게 앞집 세대에서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집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이에 승낙하지 않을 경우 진정한 세대의 승강기 이용에 제한을 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5.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련 규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3

2012. 7. 18.자 12-진정-0222500 결정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 금융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 등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을 권고
- 【3】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동반자의 신분증 지참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나 그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고, 진정인이 청약관련 서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피진정보험사 직원이 진정인에게 구두로 보험상품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고, 녹취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주)○○보증보험 대표이사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으로 2012. 3. 30. ○○보증보험(이하 '피진정보험사'라 한다) ○○지점을 방문하여 진정인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했으나 진정인을 동행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당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지점장은 진정인이 서류를 읽을 수가 없어서 보험체결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서류를 거짓으로 읽어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하였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계약 당사자도 아닌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요구한 것과 시각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2. 3. 30. 16:00경 ○○보증보험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점 대리점 설계사 ○○○(이하 ‘설계사’라 한다)과 면담하고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발급을 요청하였다. 설계사는 청약과정에서 진정인이 보증보험 청약관련 서류를 읽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진정인 및 진정인의 활동보조인 ○○○(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청하였는데 활동보조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않았다.

2) 진정인은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을 확인한 후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만 하면 되지,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왜 필요하냐며 흥분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탁자를 내리치는 등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에 지점 사무실에 있던 지점장 ○○○(이하 ‘지점장’이라 한다)가 장애인을 배려하고 원만히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다 보니 “우리가 거짓으로 서류를 읽어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3) 설계사가 2012. 3. 30. 17:30경 진정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또한, 지점의 부지점장 ○○○(이하 ‘부지점장’이라 한다) 및 설계사가 2012. 4. 16. 진정인을 방문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절차였을 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음을 설명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진정인이 불쾌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2012. 4. 17. 지점장 및 부지점장이 진정인을 방문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인데, 진정인이 이를 장애인 차별로 여겨 불쾌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었음을 설명하였다.

4) 결과적으로, 당사가 진정인에게 보증서 발급을 거절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면 절차상 당사자 간의 오해로 인한 불만사항이 장애인 차별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가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요청

하게 된 것은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어서 청약서류를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동행한 활동보조인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해주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는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 의무 등)에 의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 3. 30. 16:00경 활동보조인과 함께 지점을 방문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약하였으나, 설계사는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므로 활동보조인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청하였으나 활동보조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이 진정인 본인의 신분만 확인하면 되지,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왜 필요하냐며 항의하자, 지점장이 “우리가 거것으로 서류를 읽어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말하였다.

나. 2012. 3. 30. 17:30경 설계사가 진정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다. 진정인이 청약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의 주계약명은 전대차계약(월세 등 지급계약)으로 보험계약자가 진정인이며, 보험가입금액은 3백만원이고, 보험기간은 2012. 4. 9.부터 2014. 4. 8.까지이며, 보증내용은 점포임차료, 관리비 및 원상회복비용이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0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보험대상자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의 거부행위가 진정인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이 진정인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피진정인은 당시 활동보조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진정인이 보증보험 청약관련 서류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바, 본 진정의 보험증권 발급 거부의 주된 원인이 진정인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인 이상, 피진정인의 보험가입거부 행위는 장애를 사유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보험청약서류를 직접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이므로 진정인을 동행한 활동보조인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해주고, 그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며, 아울러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의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의 신분증 미지참에 따른 진정인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청약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피진정인이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의 보증보험청약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면, 먼저, i)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해당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동반자의 신분증 지참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나 그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는 점, ii)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서는 아니 된다는 점, iii) 진정인이 보증보험 청약 관련 서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피진정보험사 직원이 진정인에게 구두로 보험상품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에 대한 근거로 '녹취'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 iv) 현실적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직원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청약관련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도 전화상으로 계약 당사자의 신분 확인, 보험상품 및 보장범위 등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보험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v)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의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보험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진정인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녹취 또는 서명 등을 받아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활동보조인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점, vi) 나아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활동보조인으로 하여금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서류에 서명을 하게 했다는 점, vii) 이에 더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의 내용은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며, 같은 법 제30조에 가족은 원칙적으로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활동보조인이 진정한 가족도 아니며 법정대리인도 아닌 이상 보험계약 체결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 없으며,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요구하고 활동보조인으로 하여금 서명을 대리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서 진정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재발방지의 필요성

이 건에 있어 피진정보험사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등 계약 지연으로 인해 진정한 이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향후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와 유사한 사안이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

위 인정사실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보건대, 계약당사자인 진정한 본인

이 이행보증보험 계약체결을 위해 지점을 직접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보험계약 당사자도 아닌 활동보조인의 신분증까지 요구하고,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팍란주

【별 지】 관련 규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상실 등)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4

2012. 1. 10.자 11-진정-0586500 결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제한에 따른 차별]

【결정사항】

- 1 【1】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주차관리내규」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 【2】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관내 아파트 입주민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이용에 대한 홍보 및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아파트 주차관리내규는 장애유형 및 보행상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장애등급 순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유형의 장애인이 우선 배정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아파트는 장애인 보호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장애인의 탑승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배정, 운영하는 오류를 범하였음.
- 【2】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3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주차관리내규」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아파트를 포함한 관내 아파트 입주 민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이용에 대한 홍보 및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아파트 입주자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다. ○○아파트에서는 장애등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배정하고 있는데, 입주자뿐 아니라 외부 장애인 방문자도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등급 등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아파트는 입주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2011. 9. 20.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에 따라 주차관리내규를 제정하였고, 같은 내규 제12조에서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순 및 연령순으로 장애인 주차자리를 우선배정(4급 이하 장애인 차량은 제외) 하도록 정하였다.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된 모든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됨으로써 실제 중증장애인이 주차 시 빈자리를 찾아 헤매거나 먼 곳에 주차하게 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장애등급순(장애1급, 2급, 3급순, 4급 이하는 제외)으로 원하는 구역을 지정하게 하고, 급수가 낮아 운전이 큰 불편이 없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하기 좋은 일반 주차구역을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방법이라 사료되어, 당 아파트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판을 소유한 차량 10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우선 배정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제출자료, ○○아파트 주차관리내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장조사결과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아파트에는 지하3층에서 지하5층까지 총 941면의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층당 6면씩 총 18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다.

나. ○○아파트는 2011. 9. 2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차관리내규를 제정하였고, 같은 내규 제12조(주차자리 배정)에서 장애인 차량에 대해 장애등급순(4급 이하는 제외) 및 연령순으로 장애인 주차자리를 우선 배정하도록 정하였다.

다. 진정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아파트 주차관리내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우선배정 후순위에 해당되어, 지하 5층에 위치한 주차 자리를 배정받았다. ○○아파트 측에서는 진정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진정인에게 3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진정인은 불합리한 내규의 수정을 요구하며 지하 5층에 주차를 하고 있다.

5. 판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보장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실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3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이 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라 판단하여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관리내규」 제12조는 장애유형 및 보행상 장애정도에 관한 고려나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순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상지절단 지체장애 1급 장애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이 하지절단 지체장애 3급 장애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에 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우선 배정되는 불합리성이 있고, 특히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4, 5급 장애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파트측은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에 대해서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나, 위원회에 제출된 ‘○○아파트 2011년 장애인 우선배정 현황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보호자용 차량에 대해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우선 배정하는 등 장애인의 탑승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배정·운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관리내규 제12조는 「편의증진보장법」 제17조 제3항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토록 하는 규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이는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김영혜 위원 한태식

【별 지】 관련 규정

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2.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③(생략)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3(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5 2012. 5. 1.자 10-진정-0563400 등 93건(병합) 결정
[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결정사항】

피진정인인 지상파 방송3사 및 △△지역방송사에게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선할 것과, 장애인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체 수단으로 자막, 원고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제공 방식에 있어서도 자막을 음성과 동기화시킨 폐쇄자막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의 형태로 제공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각 방송사 웹사이트에 대하여 지상파 방송 3사와 △△지역 방송사에 대하여 웹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웹사이트를 접근·이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접근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등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 이와 같이 방송사들이 관리·운영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게 하는 것은 정보접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6조·제20조 제1항·제21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진 정 인】 1. ○○○ 2. ○○○ 3. ○○○
4. ○○○ 5. ○○○

- 【피진정인】** 1. ○○○ 2. ○○○ 3. ○○○
4. ○○○ 5. ○○○ 6. ○○○

【주 문】

피진정인들에게,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선할 것과, 장애인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체 수단으로 자막, 원고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제공 방식에 있어서도 자막을 음성과 동기화시킨 폐쇄자막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의 형태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들이 운영·관리하는 웹 사이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접근성이 취약해서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크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 웹 사이트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시정해 주기를 원한다.

가. 스크린리더를 사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 ○○○ 및 ○○○ 웹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정보, 반복되는 메뉴 건너뛰기 기능, 회원가입 시 보안문자 음성 정보, 각종 서식의 레이블, 논리적인 순서의 메뉴 구성 등이 제공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현란한 그래픽 등 저시력자의 웹 접근성 저해 요소가 존재하고 장애인 전용 사이트의 내용 제한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취약하다.

나. △△ ○○○, △△ ○○○, ○○○ 웹 사이트의 경우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적절한 링크 텍스트 제공, 바로가기 서비스 기능, 모든 기능 키보드 사용, 페이지 제목 제공, 테이블 설명 기능 등이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크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 웹 사이트(www.○○○.co.kr)

가) ○○○ 웹 사이트 이용자들이 사용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1. 5. 제시한 웹 사이트 개선 계획에 따라 2012. 3.까지 대체 텍스트 제공, 반복되는 메뉴 건너뛰기, 체계적인 메뉴구성, 깜빡임 등 저시력자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 메인 페이지와 라디오 섹션 및 각 라디오 프로그램 웹 사이트 개편 시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개별 섹션 및 사이트는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나)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터넷 서비스 편의제공(자막, 화면해설, 수화) 관련, 자막추출 기술 및 저장 인프라 등 기술적 한계로 자막방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막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자막방송의 스크립트를 자막파일 형태로 추출·저장하는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본사 기술연구소와 함께 자막편집시스템 개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프라가 구축되고 추출된 자막의 품질이 서비스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경우 인터넷 다시보기 등을 통한 자막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막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 해결과 함께 인프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효율화도 검토되어야 한다. 화면해설방송은 실시간 및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수화방송의 경우 지상파에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웹 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다) 장애인 전용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노약자가 ○○○ 다시보기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4. 5.부터 장애인 전용 사이트 '○○○'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 11. 장애인 편의성 개선을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요구 수준의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 준수, 방송프로그램 다시보기/듣기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페이지 개선 등 장애인 전용 사이트를 개편하였다.

2) ○○○ 웹 사이트(www.○○○.com)

가) ○○○ 웹 사이트는 자회사인 △△△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1. 4. 00. 제시한 웹 사이트 개선 계획에 따라 2012. 3.까지 ○○○ 대표 메인,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메인 페이지 등 주요 메인 페이지들을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개선 완료하였다. 그 외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맵, 편성표, 온에어 등 공통서비스와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라디오 프로그램 사이트 등은 2012년까지 개선 완료할 예정이며, 신규 프로그램 사이트는 사전에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제작할 예정이다.

나) 멀티미디어콘텐츠 인터넷 서비스 편의제공 관련, 자막방송의 경우 송출된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자막 데이터를 추출·생성하여 플레이어에서 영상과 동시에 재생될 수 있도록 본사와 협의하여 2012년 상반기 중 검토 작업을 거쳐 2013년 1분기에 적용 완료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방송에서 자막은 1회성/휘발성으로 이탈자가 있어도 이슈가 적지만 인터넷 다시보기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료로 서비스되기에 서비스 노출 전 자막 품질관리 즉, 방송자막에 대한 교정·검수 후 서비스가 불가피하며, 이와 같은 자막관리시스템 구축에 8개월 간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자막 교정·검수 관리 등에 연간 약 8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막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전 방송콘텐츠 약 87,500개는 소급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화면해설방송은 재방송용으로 제작되고 있어 본방송 대비 방송시간이 적어 웹 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중인 서비스에 추가하여 제공하기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반용과 화면해설용 등 2개의 영상물 관리가 필요하여 저장장치, 인코딩 장비 등 별도

추가적인 시스템 구성과 관리비용이 소요된다. 수화방송은 송출된 화면에 수화가 포함된 경우 지상파와 동일하게 실시간 및 다시보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장애인 전용 사이트 운영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2006. 3. 시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기반의 사이트를 개통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위 사이트를 청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검토하고 기획하였으나 사용자의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의거 개별 사이트를 개편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 검토를 중단하였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다시보기 무료 및 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본인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 문제 등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추진을 중단하였다.

3) ○○○ 웹 사이트(www.○○○.co.kr)

가) ○○○ 웹 사이트는 자회사인 ○○○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웹 사이트별 개선팀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기획 및 개발을 진행하여 2012년 말까지 80%이상 웹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이다. 2012. 3.까지 프로그램 다시보기에 대한 자막 서비스 적용과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맵, 편성표, 온에어의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적용하였고, 2012년까지는 TV, 라디오, 뉴스 등 주요 페이지 웹 접근성 구현, 모든 메뉴를 키보드로 이용 가능토록 플래시 사용 메뉴 개선, 장애인을 위한 무료 및 할인서비스 검토, ○○○ 본사와 협조를 통해 방송 송출용 화면해설, 자막방송 등 방송신호를 활용하여 다시보기 서비스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나) 멀티미디어콘텐츠 인터넷 서비스 편의제공 관련, 자막방송의 경우 원본 방송영상물에 자막이 포함되지 않아 실시간 인터넷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나, 다시보기 서비스에서는 공청망을 통해 수신한 동영상(MPEG2)에서 자막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막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

베이스화한 후 서비스하고 있다. 단, 추출된 자막정보가 영상과 동기화하지 않아 프로그램별 전체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영상에 동기화된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정 프로그램 개발, 보정 인력 투입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의 추가가 예상된다. 화면해설방송은 본사로부터 화면해설 부가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원본 방송영상물 소스를 전송받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수화방송은 프로그램 내 수화방송이 삽입된 경우 지상파와 동일하게 실시간 및 다시보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 웹 사이트(○○○.co.kr)

○○○ 웹 사이트는 ○○○에서 운영방향 등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를 통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웹 접근성 점검 결과에서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콘텐츠 명도대비, 정지 기능 제공, 반복영역 건너뛰기, 제목 제공, 기본언어 표시, 표의 구성, 마크업 오류 방지,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과 초점 등의 항목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미디어 플레이어 관련하여서는 신규 동영상 플레이어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 ○○○ 특성상 전체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 ○○○ 웹 사이트(○○○.co.kr)

○○○ 웹 사이트는 △△지역 민영방송으로 ○○○에서 관리하고 외부용역업체를 통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 등 웹 접근성 14개 항목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여 웹 접근성 지침에 따른 인식성, 기술성 부분은 준수율을 높였지만, 운용성 및 이해성 부분은 아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자막 등 제공은 지역 방송콘텐츠에 대한 자막방송 시스템 설치가 2015년까지 완료 예정이므로, 자막방송 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되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방법을 확정한 후 서비스할 예정이다. 더불어, 웹 사이트 전면개편 계획을 2012. 5. ~ 8. 수립하여 전체적으로 웹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웹 페이지 작성을 위한 차기 표준 언어인 HTML5(Hypertext Markup Language)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6) ○○○ 웹 사이트(○○○.co.kr)

○○○ 웹 사이트는 △△△지역의 민영방송으로 ○○○이 관리하고, 자회사인 ○○○을 통하여 위탁운영 하고 있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못한 13개 항목에서 2012. 3.까지 대체 텍스트 제공, 제목 제공, 기본 언어 표시,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표의 구성, 레이블 제공,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 완료하였다. 키보드 사용 보장, 반복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논리적 순서 제공 등에서 조치하지 못한 사항이 존재하는데, 이는 콘텐츠가 방대하여 부분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중영 프로그램 페이지도 검사하기 때문이므로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2012년 중 단계별 개편과는 별도의 웹 접근성 사이트를 구축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웹 사이트 접근성 평가결과

피진정인들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기준으로 지상파 방송3사는 3차레(1차

2010. 11, 2차 2011. 6, 3차 2012. 3), △△지역 방송사는 1차레(2011. 4. ~ 7.) 웹 접근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피진정인들의 웹 접근성 준수율은 지상파3사, △△지역 방송사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사별 웹 사이트 평가결과 준수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지표별 평가 결과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웹 사이트	평가결과(준수율)		증감	비고
	2차 (2011. 6.)	3차 (2012. 3.)		
○○○	8 / 22 (36.4%)	11 / 21 (52.4%)	16.0%p	
○○○	8 / 22 (36.4%)	12 / 21 (57.1%)	20.7%p	
○○○	8 / 22 (36.4%)	11 / 21 (52.4%)	16.0%p	
○○○	8 / 22 (36.4%)		-	2011.4.평가
○○○	7 / 22 (31.8%)		-	2011.7.평가
○○○	9 / 22 (40.9%)		-	

※ 평가결과는 ‘준수항목수/평가항목수’ 임

나. ○○○, ○○○, ○○○ 웹 사이트 접근성 관련

1)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미제공, 반복되는 메뉴의 건너뛰는 기능 미제공, 방송영상물 다시보기 및 방송의견 제시를 위한 회원가입시 보안 문자 입력에서 음성정보 미제공, 회원가입 시 입력항목에 레이블 미제공 등으로 인하여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확인 및 접근이 어렵다는 진정사항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 등이 상기 웹사이트를 접근·이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생략]

2) 또한, ○○○에서 실시하는 국가공인 ○○○(○○○.co.kr)은 방문 접수, 우편접수를 하지 않고 웹 사이트를 통해서만 지원서를 접수 받고 있으며, 장애인들도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시 보조도구 사용, 시험 시간 추가 제공 등 ‘장애인 응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시험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혼자서 시험 접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 초기 화면의 경우 스크린리더가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메뉴 자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3) ○○○, ○○○의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의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해 비용 결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비용 결제 과정에서 팝업창 안내, 대체 텍스트 제공, 레이블 제공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이 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등이 프로그램 다시보기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4) ○○○, ○○○, ○○○ 웹 사이트 개선 현황

가) 피진정인 ○○○는 2011. 5. ○○○사이트에 대해 ○○○ 메인 및 뉴스 페이지, 회원가입 및 인증 페이지, TV 및 라디오 각 프로그램 페이지 등을 2011. 12.까지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 같은 해에 개선 작업을 하여 2012. 3. 현재 대체 텍스트, 반복메뉴 건너뛰기 기능, 체계적인 메뉴 구성, 저시력자 웹 접근성 저해 요소 제거 부분을 ○○○메인 페이지 등에 개선 반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기관 점검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체 텍스트, 반복메뉴 건너뛰기, 회원가입 입력도움 기능 등 장애인이 웹 사이트를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항목들이 개선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2012. 3. 추가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 예산확보 등 실질적인 부분이 담보되지 않아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나) 피진정인 ○○○는 웹 사이트에 대해 2011. 4. 제시한 단계별 개선계획에 따라 ○○○ 메인,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메인 페이지 등 주요

페이지들을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2012. 3. 현재 개선 완료하였다 하고, 회원가입, 로그인, 편성표, 온에어 등 공통서비스와 각 프로그램별 페이지를 2012년까지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기관 점검결과 등에 따르면, 2011년 대비 약 20% 개선이 이루어져 자체 개선 계획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는 있으나, 개선 완료하였다고 한 부문 중 대체텍스트가 제공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웹 사이트 접근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통 서비스, 즉 회원가입 및 결제처리 등은 개선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인 ○○○는 ○○○ 웹 사이트에 대해 2012년까지 80%이상 웹 접근성 준수를 목표로 개선작업을 하여, 2012. 3. 현재 회원가입, 로그인, 편성표, 온에어 등의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적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2012년까지는 대부분의 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전문기관 점검결과에 따르면 약 50% 개선이 이루어졌다. 2011년 대비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웹 접근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나 타 방송사 웹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회원가입, 결제처리 등 기본적인 공통 서비스는 개선이 되지 않았다.

다. ○○○, ○○○, ○○○ 웹 사이트 접근성 관련

1) 피진정인들이 관리하는 웹 사이트는 진정인이 제출한 조사결과와 전문기관에서 점검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접근성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표 생략]

2) ○○○, ○○○, ○○○ 웹 사이트 개선 현황

가) ○○○ 웹 사이트를 관리하는 ○○○는 당초 2011년까지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개선 예정이었으나, 점검결과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피진정인 ○○○은 ○○○ 웹 사이트에 대해 2011년까지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보장 등 웹 접근성 14개 항목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여, 2012. 3. 현재 사용자 인식성, 사용자 조작 용이성 부문에서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1. 7. 점검 결과 대비 대체 텍스트 제공 등 기본적인 접근항목에 대해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키보드 사용 보장, 반복영역 건너뛰기 등 운용성 측면에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피진정인 ○○○은 ○○○ 웹 사이트에 대해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 레이블 제공 등 웹 접근성 준수 8개 항목은 2011. 12. 31.까지 개선 예정이었으나, 키보드 사용 보장, 반복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논리적 순서 제공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 7. 점검결과 대비,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용에 여전히 제약이 있다.

라.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터넷 서비스 편의제공(자막, 화면해설, 수화) 관련

1) 방송사 웹사이트의 경우 방대한 분량의 동영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웹 접근성을 별도로 살펴보았다. 즉 웹 접근성 지침에서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인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2) 웹을 통한 자막서비스는 방송사에서 송출된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시간정보(time code)가 포함된 자막데이터를 추출하고, 영상과 동기화 작업을 한 후, 자막 교정·검수 과정을 거쳐 플레이어가 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즉, 자막데이터 추출·관리와 재생 플레이어 체계를 갖추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수작업(자막입력, 동기화 작업)으로 하여 제공하기에는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현재 방송사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거나 관련 업체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상황에 비추어볼 때 기술적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할 경우에도 실시간 자막서비스에서 자막의 이탈자 등에서 품질의 한계는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와 관련 피진정인들의 편의제공 현황을 보면, ○○○의 경우 자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자막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추출된 자막의 품질이 서비스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경우 자막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기술, 자원 및 예산 측면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의 경우 2012년 상반기 중 검토 작업을 거쳐 2013년 1분기 적용 완료하여 서비스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도입 예산, 구축 기간 및 솔루션 도입 방안, 연간 예상 운영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의 경우 자막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막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나, 추출된 자막정보가 영상정보와 동기화 되지 않아 프로그램별 전체 자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 ○○○, ○○○의 경우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으로 자막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4) 화면해설서비스의 경우, 지상파 3사 및 △△지역 방송사 모두 실시간 및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실시간 방송시 송출화면에 화면해설이 포함된 경우 지상파와 동일하게 서비스 하고 있다. 수화서비스의 경우, 프로그램 내 수화가 삽입된 경우 지상파와 동일하게 실시간 및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 장애인 전용 웹 사이트 운영 관련

○○○와 ○○○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웹 사이트로 ○○○, ○○○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이트는 텍스트 기반으로 다시보기, 뉴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 2011. 11. 방송프로그램 다시보기/듣기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 가능토록 확대 개편하여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사이트를 사용자의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실효성이 없어 향후 폐쇄할 예정임을 밝혔다. ○○○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5. 판단

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및 법인의 의무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같은 법 제21조는 공공기관 및 법인 등이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에서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각장애인 등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웹 사이트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사용자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웹 콘텐츠를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하는 13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국가표준으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0-59호, 2010. 12. 31.)되었으며,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거 의무화된 웹 접근성 부문의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 지침은 장애인 등이 웹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침 1.2(멀티미디어 대체 수단)에서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지침은 제정목적에서 '본 표준에서 제시하는 방법만을 이용하여 구현한 웹 콘텐츠라 하더라도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듯이 동 지침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 및 사용이 어렵다면 이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동 지침이 국가표준으로 제정되고 있는 점, 현재 동 지침조차 준수되지 않은 웹사이트가 다수인 점, 진정한이 특정하고 있는 차별행위가 동 지침에 준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에 준거하여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이 운영하는 방송사 웹 사이트는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모든 기능의 키보드 이용 보장, 회원가입 시 입력도움 등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웹 사이트를 접근·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하며, 또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무료 혹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가입이 되지 않아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접근이 되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등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한편, 피진정인 ○○○에서 관리하는 웹 사이트를 통해서 ○○○에 응시하거나, 수신료 말소/면제 요청 및 시청자불만처리 등 방송관련 민원·행정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해당 웹 사이트의 접근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해당 피진정인의 웹 사이트의 경우 장애인의 웹 사이트 사용성 평가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의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 웹 콘텐츠로서, 이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피진정인들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웹 사이트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진정사항 중 ○○○ 및 ○○○의 장애인 전용 웹 사이트 내용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이트는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추가적인 웹 사이트이고, ○○○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2011년 개선하였고, ○○○는 폐쇄 예정이므로 진정인이 주장하는 차별문제와 웹 접근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웹 사이트의 접근성 보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개선계획에서 밝히고 있듯이, 웹 사이트상 기본적인 정보의 접근 및 사용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기술수준에서 자막을 추출하여 영상과 동기화된 방식의 자막서비스 제공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의 제공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기술 적용 및 관리에 있어 피진정인들의 재무현황 및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된 웹 사이트 구축에 수반되는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에서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 내용과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피진정인 ○○○ 및 ○○○는 2009. 4. 11.부터, 나머지 피진정인은 ‘그 외의 법인’에 해당되므로 2013. 4. 11.부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 외의 법인’에 대하여 2013. 4. 11.까지 적용을 유예한 것은 피진정인을 권리구제 절차에 있어 강제이행(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서 유보한 것이지 피진정인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자체를 면제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피진정인 ○○○ 및 ○○○는 2009. 4. 11.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의 피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금지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대상에 해당한다.

6. 결론

피진정인 ○○○는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방송 콘텐츠 자막서비스는 기술·재정적 한계로 서비스 품질이 확보되면 실시할 계획임을, 피진정인 ○○○는 2012년까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개선하고 자막서비스는 2013년 상반기에 서비스할 계획임을, 피진정인 ○○○도 2012년까지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막서비스는 현재 동기화되지 않은 자막을 제공하고 있음을, 피진정인 ○○○은 전면 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피진정인 ○○○은 2012년 중 단계별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위 사항과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들은 웹 사이트를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기에 제약이 있어 각각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등의 노력은 인정되나, 2010년 진정제기 후 지금까지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점은 방송 관련 서비스라는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 및 관련 규정, 정당한 사유 등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피진정인들이 관리·운영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은 정보접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박란주

【별 지】 1.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중략)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별표3]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5. 문화·예술사업자	○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의료인 등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7. 의료기관 등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8. 체육 관련 행위자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함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원칙 (4개)	지침(13개)	검사 항목(22개)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1.1(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1.2.1(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1.3 (명료성)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1.3.1(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2(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3(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1.3.4(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 (Operable)	21(키보드 접근성) 콘텐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1.1(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1.2(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22(충분한 시간 제공)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22.1(응답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2.2(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3(광고민성 발작 예방) 광고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3.1(깜빡임과 번쩍임 사용제한) 초당 3~50회의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4(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쉽게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24.1(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24.2(제목 제공)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24.3(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해의 용이성 (Understandable)	31(가독성)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3.1.1(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32(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3.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33(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3.3.1(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3.3.2(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34(입력 도움)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3.4.1(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3.4.2(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견고성 (Robust)	4.1(문법 준수)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4.1.1(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4.2(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4.2.1(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별 지】 2. 피진정인 웹 사이트 접근성 평가결과

원칙 (Principle)	지침 (Guideline)	검사항목 (Requirement)	준수여부					
			○○ ○	○○ ○	○○ ○	○○ ○	○○ ○	○○ ○
1.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1.1 대체텍스트	1.1.1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X	X	X	X	X	X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1.2.1 자막 제공	X	X	X	X	X	X
	1.3 명료성	1.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O	O	O	X	O	O
		1.3.2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O	O	O	O	O	O
		1.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대비	O	O	O	X	X	O
1.3.4 배경음 사용 금지		O	O	O	O	X	O	
2. 운용의 용이성 (Operable)	2.1 키보드 접근성	2.1.1 키보드 사용 보장	X	X	X	X	X	X
		2.1.2 초점 이동	X	O	O	O	X	X
	2.2 충분한 시간 제공	2.2.1 응답 시간 조절	O	O	O	O	O	O
		2.2.2 정지 기능 제공	O	O	O	X	X	O
	2.3 광고인성 발작 예방	2.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O	O	O	O	O	O
	2.4 쉬운 내비게이션	2.4.1 반복영역 건너뛰기	X	X	X	X	X	X
		2.4.2 제목 제공	O	X	X	X	X	X
2.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O	O	O	O	O	O	
3. 이해의 용이성 (Understandable)	3.1 가독성	3.1.1 기본 언어 표시	X	X	X	X	X	X
	3.2 예측 가능성	3.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X	O	X	X	X	X
		3.3.1 콘텐츠의 선형화	O	O	O	O	O	X
	3.3 콘텐츠의 논리성	3.3.2 표의 구성	X	X	X	X	X	X
		3.4 입력도움	3.4.1 레이블 제공	X	X	X	X	X
3.4.2 오류 정정	O		O	O	O	O	O	
4. 견고성 (Robust)	4.1 문법 준수	4.1.1 마크업 오류 방지	X	X	X	X	X	X
	4.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4.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	-	-	X	X	X
		준수 개수	11	12	11	8	7	9

6 2012. 6. 13.자 10-진정-0375400 결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에 의한 차별]

【결정사항】

- 【1】** ○○○○시장에게, 시가 소유·지원하는 수련관의 수영장 시설에 시각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예산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2】** ○○시립○○청소년수련관장에게,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운영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시각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이러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은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진 정 인】 이○○

【피 해 자】 1. 전○○ 2. 유○○ 3. 조○○

【피진정인】 1. ○○○○시장 2. ○○시립○○청소년수련관장

【주 문】

- 1. ○○○○시장에게, ○○○○시가 소유·지원하는 수련관의 수영장시설에 시각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예산 등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시립○○청소년수련관장에게,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들은 시각장애인으로 2010. 4. 00.경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 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시립○○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방문했으나 다음과 같이 차별을 당했으니 시정을 원한다.

가. 도로변에서 수련관 출입구를 알려주는 음성유도장치와 수련관 내부에 대한 점자식 안내도 내지 촉지(觸知)식 안내판과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점형블록이 수련관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나. 수영등록을 원했으나 단체강습이 아닌 수강료가 비싼 그룹강습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강습이 없었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달리 방도가 없다고 하는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 미제공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한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립○○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은 2004년 개관 시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

조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도로변에서 주출입구까지 점자안내블록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음성유도장치는 수련시설의 경우 권장사항으로 향후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점자식 안내도는 개관 시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엘리베이터 앞의 점형블록도 개관 시부터 설치하였고 엘리베이터 버튼에도 점자문구를 부착하였다.

진정인이 희망하는 수영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운영할 경우 수영장 안전사고의 대표사례인 익사 등 우려가 있어 통합운영은 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직업재활프로그램과 근로복지공단 의뢰 재활스포츠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시장

수련관의 설치목적 및 운영 형태는 관계법령에 의거 ○○○○시에서 설치하여 민간 청소년단체(법인)에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 수련시설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수련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의 장소이다. 다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유희시간대(학교수업 등)에 시설가동률을 높이고 수익사업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청소년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 성인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교양강좌 및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수련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도로변에서 수련관 주 출입구까지 안내블록, 수련관 건물 내부에 대한 점자식 안내도, 엘리베이터 앞에 점형블록 등 법적 설치의무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설치·운영 중이고, 음성유도장치는 권장사항이나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수련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현재 외부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보조인을 동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단체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다만 비장애인과 통합반 운영은 수영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고, 활동보조인을 제공하여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하므로 민간 운영법인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 성인·유아 등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시 보조금이 아닌 자체 프로그램 운영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인 10명 기준으로 수영 1개 강좌에 따르는 수입·지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수 입		지 출	
350,000원		330,003원	
강습료	35,000원×10명=350,000원	공공요금	15,333원×10명=153,333원
		강 사 비	13,000원×10회=130,000원
		관리운영비	4,667원×10명= 46,670원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설치하여 (재)○○○○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다. ○○○○시는 위 법인에 인건비 등 운영비로 2011년 3억 8천만원, 2012년에 4억 2천만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3년 단위로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나. 수련관에는 주출입구까지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 앞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버튼에는 점자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다. 수련관에서는 헬스, 수영, 탁구, 줄넘기, 요가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청소년프로그램, 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영프로그램 중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마련 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주출입구까지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된 점,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식 안내판이 설치된 점, 엘리베이터 앞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된 점, 엘리베이터 버튼에 점자문구가 부착된 점, 음성유도장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위 안내시설이 이를 보완·대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여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

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사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등을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시에서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체육지도사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이러한 ○○○○시의 의무는 현재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 하여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시가 수련관을 (재)○○○○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할지라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련관의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과 매년 수련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탁 운영의 형식을 넘어 당연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 등의 편의제공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이러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지 않고 있거나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시각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전사고의 우려와 재정적 부담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영장 내에서의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사고의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비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수영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기회 자체를 막는 것으로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정적 부담과 관련해서 수련관의 운영비 등으로 지급되고 있는 ○○○○시의 보조금은 수련관의 중요사업에 속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달리 무료 내지 할인 혜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비록 일정 비용이 추가 발생하더라도 ○○○○시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이를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방지 및 해소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이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 내지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피진정인이 시각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이러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은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시각장애인 등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분리·거부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축·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 제2항 관련)

I.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동 필수	편의 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 시설 ·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수영장	·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 보조 휠체어
실내 시설	실내체육관	·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야외경기장	· 경기장 진입 시설
실외 시설	생활체육 공원 등	·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II. 설치의무 적용 시기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7 2012. 6. 13.자 11-진정-0074901 결정 [장애인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에 의한 차별]

【결정사항】

○○시장 및 ○○도시공사 사장에게, ○○○○○○ 실내수영장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 및 입수보조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조속히 제공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 실내수영장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수영장 내 출입 시 계단 또는 이동식 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며 수영장 입수를 위한 입수보조시설인 경사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2】 ○○구청의 경우에는 ○○○기념관 실내수영장 주출입구 쪽 이면도로의 통행로에 대해서 휠체어 장애인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통행로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수영장 내 장애인 화장실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음이 확인되며,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1. ○○시장 2. ○○도시공사 사장 3. ○○구청장

【주 문】

1. ○○시장 및 ○○도시공사 사장에게, ○○○기념관 실내수영장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 및 입수보조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조속히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 ○○○기념관의 실내수영장에 다음과 같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차별을 받고 있으니 시정을 원한다.

가. 실내수영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바닥 등이 잘 정비되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 등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수영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 안내판이 부식형으로 읽기가 매우 불편하고, 장애인화장실에 물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자동센서 장치가 없는 등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이 없었다.

나.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영장 탈의실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이동형 리프트를 이용해야 한다.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는 크고 무거운 이동형 리프트를 이용할 수도 없다. 또한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장애인은 수영장 내에서 입수할 수도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시장, ○○도시공사 사장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념관 실내수영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적 의무시설 이외에 권장 장애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초등학교 장애인 수영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간대별로 장애인 및 재활치료 위한 전용 레인(일일 평균 55명 이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 월 회원 중 장애인 이용객은 7% 정도가 정규반 수강 중에 있다.

나) ○○도시공사 ○○○○부 강○○

○○○수영장 특별프로그램 중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은 곰두리수영반, 아쿠아로빅반(주3회, 주2회)이 있다. 곰두리 수영반은 초등생부터 중학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2회 운영하고 있고, 아쿠아로빅반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포함하여 비장애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15:00 ~ 15:50 무료 강습 운영하고 있고 자유 수영은 시간대별로 장애인 등을 위해 지정한 레인에서 할 수 있다.

수영장 주출입구에 설치된 점자촉지도의 경우 부식형은 신모델 이자 보급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설치한지 2년 정도 밖에 안 되었고 예산 문제도 있어 방부형으로 교체를 한다면 2013년에 가능하다.

다) ○○구청장

휠체어 이용 시 장애인을 위한 해당 지역 보행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진정인과 보행로 개선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후 2012. 3. 중으로 보행로를 개선할 예정이었으나 재생아스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6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휠체어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시장, ○○도시공사 사장

수영장 시설구조상 승강기 설치가 어려워 이동식 리프트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나) ○○도시공사 ○○○○부 강○○

실내수영장은 2층 건물 구조로 되어 있고 휠체어 장애인 등의 입수 편의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검토했으나 경사로 설치시 수영장 바닥의 파손 등의 문제로 인해 보류가 되었다. 대신 리프트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기념관 실내수영장 주출입구 쪽 이면도로의 통행로의 경우, 통행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2012. 6.중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행로에 대한 정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2) 수영장 주출입구에는 부식형의 점자촉지도가 설치되어 있다.

3) 수영장 내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물 내림 자동 센서, 비상벨, 세정장치, 수도꼭지 감응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4)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은 곰두리수영반, 아쿠아로빅반 등이 운영되고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도 ○○시의 인구는 728,775명이다.

2) ○○○기념관 실내수영장에는 엘리베이터 내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수영장 내 출입 시에는 계단 또는 이동식 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며 수영장 입수를 위한 입수보조시설인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청에서는 ○○○기념관 실내수영장 주출입구 쪽 이면도로의 통행로에 대해서 2012. 6월중 휠체어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행로에 대한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 수영장 내 장애인 화장실에 물 내림 자동 센서, 비상벨 및 인터폰, 세정장치, 수도꼭지 감응장치 등이 설치되었음이 확인되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으로 곱두리수영반, 아쿠아로빅반 등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체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된다.

그리고 점자(또는 촉지도식) 안내도 설치 시 방부형으로 할 것인지 부식형으로 할 것인지는 설치 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부식형의 점자촉지도 설치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 여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 제2항 관련)’에 의하면 편의시설 공통 필수로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내시설 수영장에는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010. 4. 1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체육시설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므로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진정 대상 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체육시설로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와 ○○도시공사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 ○○시장과 ○○도시공사 사장은 수영장 내 엘리베이터 및 입수보조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건물 구조 및 안전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영장이 있는 건물을 직접 현장조사한 진정의 전문가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과는 관계없이 내부 등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현재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이동로는 계단 또는 이동식 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 ○○시의 연간예산 규모(2011년 세출예산 7,472억원)에 비추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된다고 예단하기 어려운 점, 비록 일정 비용이 추가 발생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방지 및 해소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진정대상 수영장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입수보조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 내지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이 사건 대상 ○○○기념관 실내수영장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 및 입수보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8

2012. 6. 13.자 11-진정-03715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제한]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피진정 도서관 내 자료실, 열람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과 ○○시립 ○○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기관과 같은 공공도서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층과 2층 이상으로의 접근 및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서 제한 또는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제2항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피진정 도서관 내 자료실, 열람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과 ○○시립 ○○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 본관(이하 '피진정 도서관 1'이라 한다) 및 ○○시립 ○○도서관(이하 '피진정 도서관 2'이라 한다)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하층의 시청각실 및 건물 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료실, 학습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정보접근, 교양함양, 학습기회 등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 도서관 1은 1993년에 사용 승인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며, 피진정 도서관 2는 1985년 사용 승인된 3층 건물이다. 피진정 도서관들은 각 2층 이상의 건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각 도서관별로 이동도서관, 장애인 택배대출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도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고, 지체장애인이 도서관 내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시 직원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분되어 피진정도서관 1, 2에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나 동 행사 개최 이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도서관 1은 1993. 5. 3. 사용 승인된 후 2003년 3층을 증축하여 3개 층을 도서관으로 사용 중에 있고, 피진정도서관 2의 본관은 1985. 6. 20. 3층 건물로 사용 승인된 후 2005. 10. 26. 1층을 증축하였으며, 별관은 1999. 1. 11. 증축하여 3개 층을 도서관으로 사용 중이다.

2) 피진정도서관 1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지하 1층에 시청각실, 1층에 아동자료실·디지털자료실, 2층에 일반자료실·문화강좌실, 3층에 일반열람실·남녀학생열람실이 있으며, 피진정도서관 2의 본관은 2층 건물로 1층에 한옥어린이자료실, 2층에 일반자료실·족보자료실이 있고, 별관은 3층 건물로 1층에 디지털자료실·시청각실, 2층에 남녀학생학습실·남녀일반학습실, 3층에 연구실·휴게실이 있으나, 피진정도서관 모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지하층 혹은 2층 이상의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는 문화·예술활동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같은 법 제8조는 장애인 차별시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피진정도서관과 같은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2010. 4.

11.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진정도서관에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피진정 도서관 1, 2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i) 피진정 도서관 1, 2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 ii) 피진정 도서관에서는 층간 이동을 원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해 직원들이 휠체어를 통째로 들어 옮기는 형태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방식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무엇보다도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얻고 내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층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층간 이동시마다 도서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직원들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 등 피진정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인적서비스는 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는 점, iii)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의 차별 없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진정 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 도서관의 편의시설 미비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진정인은 피진정 도서관 1, 2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2012년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 우선배분으로 피진정

도서관에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진정도서관에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여수세계박람회와 같은 국가적 행사와 관련된 사업 등에 피진정인이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2011년도에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을 신청했으나 2012년 ○○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분되어 피진정도서관에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예산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

그러나, i) 일반회계 기준으로 ○○시 예산규모가 2011년도 6,731억 원, 2012년도 6,895억 원이며, 피진정도서관 1, 2 모두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총 4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 비추볼 때, 피진정도서관 1, 2에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피진정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ii)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더하여 iii) 피진정인이 동 행사가 끝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피진정도서관 1, 2에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피진정도서관 1, 2에 승강기를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피진정인이 피진정 도서관 1, 2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피진정 도서관의 지하층과 2층 이상으로의 접근 및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서 제한 또는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 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별표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 사업자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9 2012. 7. 4.자 10-진정-0484500 결정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결정사항】

검찰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사기관은 장애인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때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2】**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일반전화 발신번호로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진정한 스스로 답변·문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련 내용 문의 시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의존하여야 하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자에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음.
- 【3】** 최근 전자정보통신의 발달에 걸맞게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므로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과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제26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협약」 제13조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검찰총장

【주 문】

검찰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2010. 8. 3.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사건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발신번호가 일반 전화번호라서 관련 내용을 직접 문의할 수 없었다.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일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인 인권옹호 방안 추진에 관한 지시'(대검 형사기획과 - 8544호, 2004.12.31)를 시달한 바 있다. 이 지침에 청각장애인 관련 업무처리 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16개 협회와 91개 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화통역센터'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사건 관계인 소환은 공적인 업무로서 검찰청에 비치된 공용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만약 검사 또는 수사관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경우 사건 관계인과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임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대질 조사 시 경찰조사과정에 참여한 수화통역사를 참여시키는 등 청각장애인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현재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청각장애인일 경우 가족, 친지 등에게 부탁하여 검사실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가족, 친지 등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향후에는 청각장애인을 출석 요구할 경우에는 청각장애인 스스로 문의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에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및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4. 12. 31. 피진정인은 ‘장애인 인권옹호방안 추진에 관한 지시’(대검찰청 혁신기획과 - 0000)를 소속기관에 시달하였으며, 첨부된 장애인 인권보호 방안은 ① 신체장애인을 위한 출장조사 적극 시행, ② 심신장애인에 대한 진술 보조권 행사 방안, ③ 수화통역인 활용시스템 구축, ④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필·대독, 점자 서비스 제공 방안 등 주로 수사과정에서 진술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다.

나. 2010. 8. 3. 피진정인 소속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피진정 기관’이라 한다)에서는 “2010형제00000호 상해,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지청으로 2010. 8. 19. 10:00까지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지청 000호 검사실 박○○ 수사관”이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를 일반 전화(000-000-0000) 발신번호로 진정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진정인은 청각장애로 인해 음성통화를 할 수 없어 당일 날 저녁 지인에게 전화연락을 부탁하여 출석 요구 사유 등을 확인하였다.

라. 진정인은 2009. 12. 10. ○○○○경찰서에서 관련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수화통역사는 ○○농아인협회 소속 김○○ 수화통역사가 참여하였고 동 수화통역사가 피진정기관의 조사에도 참여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함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6조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행정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장애인 권리협약」 제13조 제1항은 당사국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법원, 검찰 등 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법·행정절차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포함되며, 따라서 수사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에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피진정 기관이 진정인에게 일반전화 발신번호로 출석요구를 한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인지 살펴보면, i)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경우 구술을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ii)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진정인 스스로 답변하거나 문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통보하였던 점, iii) 그 결과 진정인은 출석 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 iv) 그리고 수사 관련 혐의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 등을 볼 때,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출석 요구건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자에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사법·행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라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 여부

피진정인은 검사 또는 수사관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경우 사건 관계인과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아니라도 공용 휴대전화번호나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안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히 통지가 가능한 점으로 볼 때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

피진정인은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2004. 12. 31.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위 방안에는 장애의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한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2008. 4.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적극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보듯이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유·무형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최근에는 전자정보 통신기기의 발달로 화상통화, 3자 통화, 보이스아이, 인터넷 채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있는바, 이러한 통신수준에 걸맞게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예방을 위하여 장애 유형과 특성 등을 고려한 수사과정에서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사법접근성

1. 당사국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0 2012. 7. 18.자 11-진정-05274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공항 여건상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을 권고
- 【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2]를 개정하여 항공기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할 것과, 저비용항공사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항공기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도 동등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항공기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진정인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에 실질적인 제한을 초래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주)○○○항공 대표이사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공항 여건상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2]를 개정하여 항공기 탑승편의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할 것과, 저비용항공사가 장애인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피해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며,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들이다. 진정인은 2011. 9. 중순경 피해자 등과 함께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기위해 ○○○항공(이하 '피진정항공'이라 한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탑승방법에 대해 문의하였다. 피진정항공은 항공기가 탑승교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기까지 버스로 이동한 후 스텝카를 이용해야 하므로 휠체어를 탄 경우에는 보호자가 장애인을 업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나. 피진정항공이 운행하는 항공기에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내에 휠체어 고정 장치를 갖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좌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와 관련

가) 스텝카를 이용한 항공기 탑승은 국내 각 공항의 탑승교 부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며, ○○항공과 ○○○○항공을 제외한 저비용 항공사들은 당사를 포함하여 승객용 리프트카를 구비·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당사는 타 저비용항공사들처럼 걸을 수 없는 승객이 탑승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제공하고, 직원이 승객의 이동 및 기내 착석까지 최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승객이 원할 경우에는 탑승교를 이용하는 항공편으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본인 및 동반 보호자 1명에게는 운임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나) 각 공항의 지상조업사가 저상버스, 리프트카 등 장애인 탑승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가 장애인 탑승편의 시설을 직접 구매 후 지상조업사에 인계해 사용해야 하며, 이럴 경우 공항 당 약 2.5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2) 진정요지 '나'와 관련

좌석을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항공사로서는 휠체어 좌석을 이용하는 승객이 없을 경우 영업 손실을 항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의 지원 없이 기내 휠체어 좌석을 별도 설치하기가 어려우며, 국내 대형항공사도 휠체어 좌석을 별도 설치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당사는 기내용 휠체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다. 참고인(국토해양부장관)

1) 진정요지 '가'와 관련

가) 대형항공사는 높은 운임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전략에 따라 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위해 리프트카를 구비하고 있으나, 저비용항공사는 대형항공사보다 낮은 운임으로 운항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는 영업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대부분 리프트카 없이

승무원 등 인력을 활용하여 장애인 탑승을 보조하는 대신 본인과 동반자의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다만, ○○○와 ○○○○만 장애인 승객을 위해 지상조업사의 리프트카를 대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이 항공기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시설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탑승하도록 되어있는 운항승무원들이 장애인의 탑승을 직접 보조할 수 있고, 이것이 장애인들이 받는 서비스 질을 낮출 수는 있으나 장애인의 이동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리프트카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탑승을 보조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항공사의 경영상 판단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승무원의 보조를 받는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여지가 있고, 장애인들이 리프트카를 이용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 안전한 이동을 보장한다는 점과 「이동편의증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저비용항공사도 가급적이면 리프트카 등 승강설비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2) 진정요지 ‘나’와 관련

항공기에 장착되는 모든 설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운항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며, 휠체어 고정장치 또한 돌풍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이후에 설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휠체어의 기내 이동을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갖춘 고정장치 설치, 기내 이동에 충분한 공간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련 국제기준 정비, 항공기 설계·제작비용 상승, 장애인 승객이 없는 경우 빈 좌석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의 기회비용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으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기내 고정장치를 갖춘 휠체어석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피진정인 및 참고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현장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와 관련

1) 2012. 5.말 현재, 피진정항공, ○○항공, ○○○항공, ○○○, ○○○ 등 총 5개의 국내 저비용항공사 중 ○○○ 및 ○○○○을 제외한 3개 항공사는 리프트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보행이 불가능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스텝카를 이용해 항공기 탑승 시 보호자 또는 항공사 직원이 장애인을 업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피진정항공은 탑승교 이용 불가 시 보호자가 없는 보행이 불가능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호자 없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다.

2) 피진정항공은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 본인, 장애등급 1~3급의 동반 보호자 1명, 장애등급 4~6급 장애인 본인에 한해서는 일반운임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3) ○○항공 및 ○○○○항공은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고 있어 항공사 직원 및 승무원들이 장애인을 기내용 휠체어로 옮겨 태운 후 해당 좌석으로의 이동 및 착석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항공은 기내용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장애인을 업거나 들어서 기내 좌석 착석을 도와주어야 한다.

나. 진정요지 '나'와 관련

피진정항공을 포함한 국내 저비용항공사와 대형항공사인 ○○항공 및 ○○○○항공도 기내에 고정장치를 갖춘 휠체어석을 갖추고 있지 않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교통사업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가’와 관련

1)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피진정인이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구비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항공기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없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i) 공기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항공기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서는 아니 된다는 점, ii) 스텝카를 이용해 항공기 탑승 시, 피진정항공 직원들이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장애인을 직접 업어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며, 특히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점, iii)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호자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등에 업고 계단으로 올라서 탑승하는

경우 장애인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 iv)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하반신마비 또는 전신마비 등의 장애인을 잘못하여 었었을 경우 신체에 착용한 의료기구가 탈착되거나 마비된 팔 또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을 수 있으며, 또한 경사가 심하고 폭이 좁은 스텝카의 계단에서 실족하여 굴러 떨어질 경우 보호자 및 장애인 모두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진정인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항공기 탑승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2)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진정인이 비용을 최소화하고, 장애인과 그 동반자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다고 있다는 이유로, 안전과 편리 그리고 동등에 기초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자의적으로 유보시킬 수 없다는 점과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피진정항공이 인적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에게 항공기 운임을 할인 적용할 지 여부는 민간항공사인 피진정항공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 할 수 있으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피진정항공의 비용절감 정책이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장애인 탑승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리프트카 등의 편의장비를 김포 및 제주공항에 구비하는 경우 공항 한 곳당 약 2.5억원, 총 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피진정인은 추산하고 있으나, 2011년 피진정항공의 매출원가가 약 76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설비를 구비하더라도 매출원가 증가율이 1% 미만이라는 점, 그리고 피진정항공이 편의설비를 구입하는 대신 장비를 렌트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비용절감을 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휠체어 탑승설비를 구비하는데 있어서 피진정인에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진정인의 주장은 휠체어 승강설비 미확보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다. 진정요지 '나'와 관련

항공기 내에 고정장치를 갖춘 휠체어 전용석이 별도로 갖추어지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항공사 직원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휠체어에서 기내용 휠체어로 옮겨 탄 후, 기내의 좁은 통로를 따라 좌석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수반된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i) 비행 중 갑작스러운 기류변화 등으로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 고정장치가 갖추진 휠체어석이라도 일반좌석에 착석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만큼의 안전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 ii) 참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휠체어의 기내 이용을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갖춘 고정장치 설치, 기내 이동에 충분한 공간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련 국제기준 정비, 항공기 설계·제작 비용 상승, 장애인 승객이 없는 경우 빈 좌석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의 기회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iii)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외의 모든 항공기내에 고정장치를 갖춘 휠체어석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기내 휠체어석을 갖추지 못함에 있어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기내에 휠체어석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라. 휠체어 승강설비의 의무화 필요성

참고인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의 [별표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에 기차, 버스, 선박의 내부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에 반해 항공기에는 법적으로 승무원이 탑승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필요할 경우 승무원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항공기 내부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i) 위 진정요지 '가'와 관련한 판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을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및 장애인이 느낄 수 있는 수치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ii) 항공기 승무원이 대부분 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자 장애인을 업거나 들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 iii) 휠체어 승강설비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차량의 경우에도 승강장과 열차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단차가 심한 역사에는 현실적으로 이동식 경사판을 모두 구비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탑승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iv) 휠체어 승강설비가 내부시설로 의무화된 기차나 선박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내부시설로 갖추지 못한 경우, 승강장 또는 부두 등 외부에 이동식 리프트 또는 경사판 등 휠체어 승강설비를 별도 비치하여 해당 교통수단과 연결한 후 장애인에게 탑승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휠체어 승강설비를 항공기 내부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항공기 구조나 기술상의 문제로 어렵다 할지라도, 항공기 외부에 리프트카 등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는 것은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 v) 2011년 말 기준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국내선 점유율이 40%를 넘어섰으며, 항공여행이 대중화되면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차, 선박, 버스 등과 달리 항공기만을 휠체어 승강설비 의무화 대상 교통수단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 vi) 외국의 대표적 저비용항공사인 영국의 이지젯(easyJet), 아일랜드의 라이언에어(Ryanair), 미국의 사우스웨스트(Southwest), 프런티어(Frontier) 항공사 등도 항공기가 탑승교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리프트카 및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여 직원들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기내 착석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공기 탑승편의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련 규정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관련)

1. 교통수단

이동편의 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기타		
		안내 방송	문자 안내 판	행선 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수직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표시	출입구 통로
버 스	시내 버스 (저상형)	○	○	○	○		○		○	○	
	시내 버스 (일반형)	○	○	○	○		○		○	○	
	시내 버스 (좌석형)	○	○	○	○		○			○	
	농어촌 버스	○	○	○	○		○		○	○	
	시외 버스	○	○	○	○		○			○	
철도차량		○	○	○	○	○	○	○		○	○
도시철도차량		○	○	○			○		○	○	○
항공기		○	○	○		○	○	○			○
선박		○	○	○	○	○	○	○		○	○
광역전철		○	○	○			○		○	○	○

11 2012. 7. 18.자 11-진정-03179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보도(歩道)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보도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서 누구나 차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한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므로, 피진정인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통행에 적합하도록 보도의 유효폭 및 기울기 등을 확보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보도를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8조·제2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조 및 별표2, 「도로교통법」 제2조·제6조·제8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구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피진정 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구 ○○○○○길(이하 ‘피진정 도로’라 한다)은 양방향 통행 차도이며 보도(이하 ‘피진정 보도’라 한다)는 한 쪽에만 있는데 보도 폭이 비좁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진정인은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방문 시 보도로 통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진정인은 2011. 4. 15. ○○구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0.8m인 보도 폭을 1.2m로 넓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설치된 보도이므로 편의증진대상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도 폭을 넓히려면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변경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1. 5. 31. 보도 확장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왔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구 ○○ 0동 00-00(복지관)에서 00-000 구간에 걸쳐 개설된 피진정 도로는 ○○공사(舊○○○공사)에서 1997. 12. 24.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2년 사업완료 시 개설하여 본 기관에 기부 채납한 도로로서 1997. 12. 24.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승인일 이후인 1998. 4. 11. 시행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2006. 1. 28.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피진정 도로는 ○○○○아파트(2,400세대) 후문 출입로 및 인접

일반주택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면도로로서, 보도 폭이 1.5m이나 보도 상 장애물(보안등)로 인하여 순 보행 폭이 약 60~70cm로 협소하여 보행자 및 휠체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변 거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경찰서 교통규제 심의 절차를 거쳐 양방향 통행인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후 차도 축소 및 보도 확장(보안등 이설)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3) 본 기관은 주변 거주민들에게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2011. 5. 의견 수렴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일방통행로 지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불가피하게 단시일 내 보도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피진정 도로변 보도정비(확장)는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정비가 가능한 ○○동 00-00호 복지관 앞 단절된 보도 연결 및 보안등 1개소에 대한 이설 공사를 2011. 6. 30. 완료하여 보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는 ○○○○공사가 피진정 도로를 신설하여 도로관리청인 피진정기관에 기부 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1997. 12. 24. 승인한 바 있으며, 동 사업계획은 1997. 12. 31. ○○○○시 고시 제1997-○○○호에 게재되었다.

나. 피진정 보도는 전체 길이 약 240m로 보도의 유효폭은 1m이나 약 20m 간격으로 피진정 보도 위에 설치된 10개의 보안등으로 인해 보안등

밀기둥 부분의 보도 유효폭은 55cm에 불과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보안등이 설치된 부분의 보도 주위로는 통행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 보도의 일부구간은 바닥면의 상하 기울기가 12도에서 26도에 이르고, 좌우기울기도 10도에서 16도가 되는 등 보도의 바닥면이 평탄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여러 곳에 걸쳐 있고, 보도의 남쪽 시작부분에 약 15cm 높이의 턱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보도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을 위해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가 없는 보행자들의 경우에도 2명 이상 나란히 걷기에는 보도 폭이 협소하여 차도로 내려와 통행하고 있다.

다. 피진정 도로는 전체 길이 약 240m, 도로폭 6m(도로 가장자리 제외 시 폭 5m)의 양방향 통행이 되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도로의 한 쪽에만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피진정 보도의 맞은 편에 항상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아 주행차량들의 교행이 어려우며,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도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 시 소형 주행차량의 경우 휠체어와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휠체어를 추월해 통행하고 있으며, 대형 주행차량의 경우 차도의 폭이 좁아 휠체어를 추월하지 못하고 휠체어 뒤를 따라서 통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 피진정 도로의 입구(○○구 ○○○동 00-00)에 위치한 복지관은 2010. 12. 개관한 종합복지관으로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인들이 위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보치아 경기가 있을 때에는 약 100여 명 정도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약 40~50명 정도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이 중 피진정 보도를 이용하려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보도의 폭 및 기울기, 턱 낮추기 등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되어있지 않아 피진정 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를 이용해 복지관을 왕래하고 있다.

다. 피진정기관은 피진정 보도의 폭이 매우 협소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장애가 없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후 피진정 보도를 확장하기 위해 2011. 5. 피진정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제출한 140명의 주민 중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134명의 주민이 반대하였고, 6명이 찬성하였다.

바. 피진정기관은 ○○○○경찰서에 2011. 5. 17. 피진정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요청을 위한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경찰서는 피진정 도로에 ○○동 ○○아파트 진·출입로가 있어 이에 따른 충분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피진정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진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2011. 6. 7. 피진정기관에 회신한 바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과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법률인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에는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하여,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것을, 「이동편의증진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보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보도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보도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서 누구나 차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한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피진정 보도를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행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은 보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보도’란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도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피진정 도로가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1997. 12. 24. 당시 기준으로 시행 중이던 「장애인복지법」(법률 제4179호로 1989. 12. 30. 전부개정, 시행일은 1989. 12. 30.) 제33조 제2항은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994. 12. 30.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제정되고, 1995. 1. 1.부터 시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과 대상시설」에 ‘보도는 휠체어 사용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너비, 바닥의 재질,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도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하기 위하여서는 1.2미터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하고, 보도의 기울기는 2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 보도는 보도의 유효폭, 기울기, 턱낮추기 등에서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시행 법률인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이 규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 보도의 유효폭은 1m에 불과하며 약 20m 간격으로 보안등이 설치된 부분의 보도 유효폭은 55cm에 불과하므로 통상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 유효폭이 80cm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안등이 설치된 피진정 보도의 부분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과할 수 없다는 점, 피진정 보도의 일부 바닥면이 평탄하지 않고 굴곡이 매우 심하며, 보도의 남쪽 시작부분에 턱낮추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피진정 보도의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없으며,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로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내하고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피진정 보도의 유효폭 및 기울기 등을 적합하게 확보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 보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진정인은 피진정 보도의 폭이 매우 협소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장애가 없는 보행자들의 통행에도 불편이 초래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후 피진정 보도의 폭을 확장하기 위해 피진정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 대다수가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진정 보도의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피진정 보도 위에 설치된 보안등 10개를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하거나 보안등의 밑기둥이 없도록 제작된 최신 기술이 반영된 형태의 보안등으로 현재의 보안등을 변경 설치할 경우, 보안등이 설치된 부분의 보도 유효폭이 55cm에서 1m로 확장되므로, 통상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최소 통과 유효폭이 80cm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안등만을 이전 및 변경하더라도 휠체어로 통행하기에 다소 불편은 따르지만 휠체어로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의 유효폭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아울러 피진정 도로가 개설된 부분은 평지이므로 피진정 보도의 일부 구간 중 휠체어로 통행하기에 기울기가 심하며, 평탄하지 않은 바닥면을 평탄하게 재시공하는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 마찬가지로 피진정 보도 남쪽 시작부분의 약 15cm 높이의 턱을 낮추는 데 있어서도 기술적 또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후 피진정 보도를 확장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서도 피진정 보도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은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래의 관례에서는 일방통행지정으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교통안전, 원활한 소통확보 등 공익상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일방통행로를 지정한 것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시(2009구합5177)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경우 근처 주민들이 도로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불편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당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담보하면서까지 우선시 될 수 없으며, 나아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면서까지 더 중요시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제시한 사유는 피진정 보도의 유효폭 및 기울기 등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통행을 위해 적합하게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동편의증진법」 적용 여부

피진정 도로 및 피진정 보도는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으며, 동 계획이 ○○○○시로부터 1997. 12. 24. 승인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1998. 4. 11.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006. 1. 28.부터 시행된 「이동편의증진법」, 2008. 4. 11.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위 법률 시행 전에 이미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관하여 위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마. 소결

종합하여 보건대, 피진정인이 피진정 보도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폭, 기울기, 턱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 보도 등 재화의 이용과 관련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련 규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조(세부설치기준 및 대상시설)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과 그 설치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별표 2]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과 대상시설(제3조관련)

1. 도로

가. 일반사항

- (1) 보도는 휠체어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通行할 수 있도록 보도의 너비, 바닥의 재질,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로에는 양 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점형유도블록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바닥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도의 유효폭과 기울기

- (1) 휠체어사용자가通行하기 위하여서는 1.2미터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유모차등과 서로 교행하기 위하여 1.8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 보도의 기울기는 2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경사진 보도가 길게 연장될 경우에는 30미터마다 쉼 수 있는 수평면 휴식참을 1.5미터 길이만큼 설치할 수 있다.

다. 보도의 경계

- (1)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경계석등과 같은 뚜렷한 표시가 없는 곳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보도와 차도의 교차지점에 시각장애인의 보도이탈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점형유도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보도바닥재

- (1) 보도의 바닥표면은 장애인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평탄하고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보도블록·벽돌등으로 보도를 덮을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3) 휠체어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면은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 (4) 배수구등의 덮개는 휠체어의 바퀴나 지팡이 끝이 틈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자구멍이나 틈새의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5) 가로수의 가지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지면에서 2.5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 (6) 가로수의 밑부분이 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7) 보도나 경사로에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볼라드(bollard)를 설치할 경우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위하여 그 간격이 0.9미터이상이어야 한다.

6.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歩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2012. 8. 22.자 11-진정-0188500 결정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결정사항】

○○광역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시티투어버스는 일반 대중이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휠체어 승강 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티투어버스 이용에 실질적인 제한을 초래한 것은 재화 및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진 정 인】 ○○○

【피진정인】 ○○광역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 ○○광역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가 2007년부터 ○○시 관광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산 코스 시티투어버스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가 아니어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탑승할 수 없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티투어 버스를 비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있으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 시티투어버스는 ○○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순회·관광할 수 있는 윈스톱 관광서비스 제공 및 도시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0. 12. 2.부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2개의 순환코스(○○산, 도심)와 6개의 정기(모집)코스를 운행하며 2층 버스 2대를 포함하여 총 6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2) 도심순환코스의 경우 2010. 4.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대의 2층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산 코스의 경우 2대의 일반버스가 운행 중이나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버스기사 및 가이드가 탑승할 있도록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시티투어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산 순환코스는 사단법인 ○○광역시관광협회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코스는 오르막 및 커브길이 많아 차량 흔들림으로 전동휠체어 적재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리프트를 설치한 2층 버스는 산간도로인 ○○산 순환 도로의 폭이 좁아 커브 길 주행이나 가로수 나뭇가지의 늘어짐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운수업체 문의 결과, 저상 차량은 일반차량에 비해 엔진성능이 약해 탑승객이 많거나 경사도가 심한 노선에는 투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지방자치단체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민간운수사업자에게 신규로 구입하여 줄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하고 현재 본 기관의 재정상태로는 차량 구입 예산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시티투어버스 교체 등이 있을 시 버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우선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시티투어버스 사업의 주체로, 동 사업은 ○○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순회·관광할 수 있는 윈스톱 관광서비스 제공 및 도시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피진정기관이 운행노선, 운행대수 등을 정하여 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이를 심사하여 적격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은 2012. 8. 현재, ○○산 코스와 도심 코스 2개의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도심 코스는 2010. 4.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2층 버스를 개조하여

하루 4회 운행하고 있으며, ○○산 코스는 2007년부터 ○○시관광협회에 위탁 운행하고 피진정기관이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다. ○○산 순환코스는 1일 6회, 45인승 1대와 25인승 1대 등 총 2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혼자 힘으로 버스에 탑승 할 수 없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 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와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기관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나.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피진정기관이 위탁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에 탑승

할 수 없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i) 시티투어버스는 일반 대중이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 ii)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버스기사 및 가이드가 탑승할 있도록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나,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조력자가 등에 업고 탑승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점, iii)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하반신마비 또는 전신마비 등의 장애인을 잘못 업었을 경우 신체에 착용한 의료기구가 탈락되거나 마비된 팔 또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을 수 있으며, 또한 비좁은 버스 계단을 통해 장애인을 업고 내리는 과정에서 조력자가 실족하여 굴러 떨어질 경우 조력자 및 장애인 모두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 iv) 설령, 인적 서비스를 통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위 버스를 탑승한다 하더라도 버스 내 안전장치의 부재로 운행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시티투어버스 이용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재화 및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진정기관의 주장대로, ○○산 코스를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착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가 일반차량에 비해 엔진성능이 약해 탑승객이 많거나 경사도가 심한 ○○산 노선에 투입하기 어렵다면,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일반버스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일반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통상 소요비용이 2~3천만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역자치단체인 피진정기관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피진정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 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 셋째, 피진정기관이 시티투어버스 위탁사업자 선정시 사업자 참가조건을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장착된 관광버스를 소유한 사업자로 한정 공고함으로써 피진정기관이 자체예산 투입을 하지 않더라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티투어버스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 넷째,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장착된 버스를 임차하여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구비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 피진정기관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라. 소결

종합하여 보건대, 피진정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을 위한 탑승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시티투어버스 이용에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 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13

2012. 2. 13.자 11-직권-0002300 결정 [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폭행 등]

【결정사항】

- 【1】 검찰총장에게, 생활인을 폭행·상해를 입힌 생활지도원 4명을 고발
- 【2】 관할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도·감독 의무를 해태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을 권고
- 【3】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가해 생활지도원과 생활인 보호 및 생활지도원 지도를 태만히 한 담당자 징계, 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및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

【결정요지】

- 【1】 생활지도원들이 생활인들을 폭행하고 대퇴부 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판단
- 【2】 관할 구청의 지도·감독공무원이 두 차례나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상 담당 공무원의 의무를 해태한 행위이므로,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 【3】 시설장이 폭행 사건 대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나 재발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 담당 팀장이 일부 생활지도원의 상습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고도 단순 체벌로 간주하여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대법원 1986.7.8. 선고 84도 2933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 5716 판결, 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다 759 판결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제1항 및 제62조 제4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4호,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73조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가. ‘○○’ 생활지도원 ○○○이 2010. 7. ○○. 생활인 ○○○에게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시도하다 ○○○의 오른쪽 대퇴부를 골절시킨 행위,

나. ‘○○’ 생활지도원 ○○○가 2011. 10. ○○. 생활인 ○○○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슬리퍼로 ○○○의 입과 눈, 발목 주위를 폭행한 행위,

다. ‘○○’ 생활지도원 ○○○이 2011. 3. 생활인 ○○○의 눈가에 타박상을 입힌 행위 및 생활인들의 머리와 뺨을 습관적으로 때린 행위,

라. ‘○○’ 생활지도원 ○○○이 생활인 ○○○의 뺨과 머리 등을 손바닥, 손가락,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해, 각 고발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가. 생활인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방치하고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한 ‘○○’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나. 관할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다. ‘○○’ 등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해태한 담당공무원 ○○○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3. ‘○○’ 시설장에게,

가. 생활인 ○○○의 대퇴부 골절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나. 생활지도원 ○○○의 성희롱 행위와 사회재활교사 ○○○의 직무 태만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

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가. 2011. 11. 0.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에서 발생한 생활인에 대한 폭행 등과 관련한 익명 제보가 위원회에 접수되어 2011. 11. 00. 제보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2011. 11. 24.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직권조사 방법 및 내용

위원회는 2011. 11. 익명 제보자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2011. 11. 30.부터 12. 2.까지 ‘○○’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과 피조사자들, 참고인 등 관계인들을 조사하여 사건 관련 진술을 확보하였고, ‘○○’, ○○○○구청, ○○○병원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다. 그 외, 주요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1. 12. 5.부터 12. 23.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직권조사 주요 내용은 ‘○○’ 생활인(이하 ‘생활인’이라 한다)에 대한 폭행, 학대 등의 가혹행위와 관리·감독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 및 조치 여부 등이다.

II.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III. 당사자 주장 요지 및 참고인 진술

1. 피해자의 주장 요지

자원봉사자들이 왔을 때 생활지도원 ○○○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했다가 맞은 경험이 있다. 또한 ○○방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생활지도원 ○○○에게 들켜 자로 성기를 여러 차례 맞았다.

생활인 ○○○가 생활지도원 ○○○에게 폭행당한 사건, 생활지도원 ○○○이 생활인 ○○○의 다리를 찢은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다.

2. 피조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조사자 1(시설장)

1) 생활지도원 ○○○이 생활인 ○○○에게 스트레칭을 시도하다 ○○○의 대퇴부가 골절된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해당 교사의 좋은 의도 등을 고려하여 시말서만 받고 끝냈다.

2) 생활지도원 ○○○가 생활인 ○○○의 입을 슬리퍼로 때린 사건에 대하여는 폭행을 인정하여 ○○○에게 시말서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3) 생활지도원 ○○○이 생활인 ○○○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한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나, 사실이라면 폭행이라고 인정한다.

4) 생활지도원 ○○○이 생활인 ○○○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고자를 이용해 성기를 때린 사건과 관련해서는 종사자 회의시간에 보고받아 알고 있으나, 때린 것이 아니라 건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나. 피조사자 2(사무국장)

1) 생활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생활지도원이 계단 오르내리기, 벽보고 서 있기 등의 처벌을 내리며 그 정도는 시설 내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2) 생활지도원 ○○○이 자격증 없이 ○○○에게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시도하다 ○○○의 대퇴부를 골절되도록 한 것은 가혹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생활지도원 ○○○가 생활인 ○○○의 입을 슬리퍼로 때린 것은 체벌보다 폭행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

4) 생활지도원 ○○○이 생활인 ○○○에게 꿀밤을 때리는 과정에서 얼굴에 멍이 들게 한 사건은 단순 체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5) ‘○○’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폭행 사건은 2010. 11. 퇴직 생활지도원 ○○○과 생활인 ○○○ 간의 사건, 2011. 5. 생활지도원 ○○○와 생활인 ○○○ 간의 사건, 2011. 10. 생활지도원 ○○○와 생활인 ○○○ 간의 사건, 퇴직 생활지도원 ○○○과 생활인 ○○○ 간의 사건 등 4건이었다.

6) ○○광역시 ○○구는 2011. 3. 및 2011. 6. ‘○○’에 대한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다. 피조사자 3(생활지도원 ○○○)

2010. 7. 별다른 오후 일과가 없어 ○○○을 비롯한 ○○○, ○○○ 등 세 명의 생활인에게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도하였는데, ○○○이 스트레칭 도중 스스로 일어나려다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게 된 것이다. 당시 ○○○의 걷는 자세가 이상해 간호사와 함께 ○○○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설 측에 제출하였다. 스트레칭 관련 자격증은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교육을 이수 받은 적도 없다.

라. 피조사자 4(생활지도원 ○○○)

2011. 10. 생활인 ○○○가 생활지도원 ○○○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유인 즉, 식사를 마치고 교회 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가 이를 거부하고 밤을 따러 밖에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를 설득하려 했으나 ○○○가 나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여 내 눈과 팔에 상처가 났고, 당시 옷을 잡아당기는 ○○○를 뿌리치려다 ○○○의 눈과 입을 두 대 정도 때리게 되었다. 사건 이후 시설 측에 시말서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차후에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약조하였다.

마. 피조사자 5(생활지도원 ○○○)

평소 말을 듣지 않는 생활인들에게 꿀밤을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코를 몇 대 때리는 정도의 체벌을 시행하고 있다. 2011년 초 ○○○이 ○○○에 온 자원봉사자들을 따라다니며 하루 종일 커피를 달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코를 자극하려는데, ○○○이 자꾸 피해서 꿀밤을 때리게 되었고, 그것이 빗맞으면서 ○○○의 눈에 맞았다.

바. 피조사자 6(생활지도원 ○○○)

생활인 ○○○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무는 습관이 있어 버릇을 고치려고 본인이 ○○○을 몇 번 문 적이 있다. 그러나 ○○○에게 일상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말을 안 듣는다고 뺨을 때리거나 간식을 주지 않는 행위 등은 한 적은 없다. 대신, 2011년 초까지 교사 사물함에 자를 넣어 놓고 ○○○이 말을 안 들을 경우 허벅지를 몇 대 때린 적은 있다.

사. 피조사자 7(생활지도원 ○○○)

평소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생활인들에게는 팔을 꼭 잡아 행위를 중단시키는 편이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생활인에게는 시설 1층에서부터 3층까지 1시간 동안 계단을 50번 정도 오르내리게 하기도 한다. 이 체벌은 다른 생활인을 밟고 지나가거나 물을 뿌리거나 자위행위를 할 때 주로 시행하며,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에게는 세 번, ○○○에게는 두 번, ○○○에게는 네 번 정도 이런 체벌을 시행한 것으로 기억한다.

생활인 ○○○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은 낮에 한 번, 밤에 세 번, 총 네 번 정도 목격하였다. 밤에는 같은 방 생활인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나서 알게 되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성기를 때린 적은 없다.

아. 피조사자 8(사회재활교사 ○○○)

1) 생활인 ○○○ 폭행 사건은 주말에 발생한 일이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CCTV를 통해 확인하였다. 당시 ○○○가 ○○○의 옷을 잡아당기자 ○○○가 ○○○를 제압하기 위해 바닥에 눌린 후 몸 위에 올라탔고, 그 후 슬리퍼로 입을 수차례 심하게 내리쳤다. 이후, ○○○의 정강이 및 얼굴 부분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2) 생활지도원 ○○○이 생활인 ○○○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손을 꺾거나 손등을 문 사실, 식사 시간에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경우 몸을 제압한 사실, 그 외 ○○○ 교사가 생활인들의 머리를 습관적으로 때리고 다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3) 생활지도원 ○○○이 생활인 ○○○에게 꿀밤을 때려 얼굴에 멍이 든 사건 정도는 생활지도상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4) 생활지도원 ○○○이 생활인 ○○○을 스트레칭하다 다리를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의료적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이후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다.

5) 생활지도원들의 생활인에 대한 폭행을 단순 체벌로 생각하고 묵인한 점, 일부 생활지도원이 생활인에 대한 폭행문제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거나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생활지도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점 등을 인정한다.

자. 피조사자 9(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와 생활인 ○○○ 간의 실랑이 도중 ○○○가 ○○○를 밀쳐 ○○○가 넘어지면서 찰과상을 입은 적이 있다.

차. 피조사자 10(생활지도원 ○○○)

생활인 ○○○가 생활지도원 ○○○로부터 심하게 맞아 발목이 심하게 부었는데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진단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가 생활인 ○○○에게 “너도 말을 듣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고 하여 ○○○이 밥도 먹지 않고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카. 피조사자 11(생활지도원 ○○○)

시설 내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생활지도원 ○○○가 생활인 ○○○의 안면과 팔뚝, 다리 부분에 멍이 들게 한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다.

타. 피조사자 12(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가 생활인 ○○○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건, 생활지도원 ○○○이 생활인 ○○○을 스트레칭 시키다가 다리에 깁스를 하게 된 사건 등에 대해 알고 있다.

파. 피조사자 13(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가 생활인 ○○○를 폭행한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다.

하. 피조사자 14(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가 생활인 ○○○를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거. 피조사자 15(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가 생활인 ○○○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당시 본인은 생활인들이 보지 못하도록 생활인들을 각 방에 인계하였다.

너. 피조사자 16(간호사)

2011. 10. 초 생활지도원 ○○○가 생활인 ○○○를 폭행하여, ○○○의 얼굴 우측 부위 눈 주변과 광대뼈가 위치한 부분,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이 시퍼렇게 멍이 든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의무실에서 약을 발라주었다. 위 폭행과 관련하여 ○○○는 외부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는 점이 부끄러워 간호일지에는 작성하지 않았다.

더. 피조사자 17(○○○○구청 ○○○○○팀장)

본인은 장애인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2010. 10. '○○'의 회계 전반에 대해 감독하였고, 2011. 6.에도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나, 생활인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점검

하지 못했다. 지도·감독 중 인사위원회 서류를 통해 생활지도원 ○○○의 상해 건과 퇴직 생활지도원 ○○○의 폭행 건에 대해 알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 시설측이 적절히 조치하였다고 생각했고, 이에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구 내 모든 시설에 대해 지도·감독 후 한꺼번에 결과보고를 하는 편이라, 종종 중요 사안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 이외, 다른 시설에서 발생한 폭행 건에 대해서도 상부에 보고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만일, ‘○○’에서 생활인들에 대한 여타 폭행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사건 경위서를 받고, 경미한 경우에는 시말서를, 중한 경우에는 사퇴권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속적이고 중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시설폐쇄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의 경우 생활인 이전 문제 등으로 인해 폐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 피조사자 18(○○○○구청 ○○○○○과장)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통상적으로 1년에 1회 정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점검리스트는 연초 계획 수립 시 작성하고 있다. 직원들이 시설에서 지도·점검한 사항 중 문제점으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알고 있으나, ‘○○’에 대해 특별히 보고받은 바는 없다. ‘○○’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인권위 조사 이후 알게 되었다.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시설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며, 향후 ‘○○’에 대한 지도·점검 시 생활인 등에 대한 폭행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만일, 폭력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시설폐쇄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참고인의 진술

가. 참고인 1

밖에 나가지 말라는 생활지도원 ○○○의 말을 무시하고 밖에 나간 생활인 ○○○에게 ○○○이 체조를 시켜주겠다며 다리를 찢어 ○○○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은 아프다며 울었으나 ○○○은 신경 쓰지 않고 다리를 계속 벌려 찢었다.

생활인 ○○○이 1층에서 감자를 먹다가 들켜 생활지도원 ○○○에게 뺨을 맞은 사실, 2011. 4. ○○방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던 생활인 ○○○을 생활지도원 ○○○이 플라스틱 자로 성기를 5대 정도 때린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 당시 ○○○은 아프다며 울었다.

나. 참고인 2

3층 남자 생활지도원들이 주먹으로 말을 듣지 않는 생활인들의 눈과 머리, 등을 때리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였다. 생활지도원 ○○○가 생활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장면도 직접 목격하였다. 2011. 여름에도 생활지도원 ○○○는 생활인 ○○○가 말을 안 듣는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서너 대 때렸었다.

다. 참고인 3

생활지도원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인 ○○○의 손바닥을 자로 심하게 때려 ○○○이 운 적이 있었다. 또한 생활지도원 ○○○이 자원봉사자들이 시설에 왔는데 계속 커피를 타달라고 조른다며 생활인 ○○○을 ○○방으로 데려가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외 생활지도원 ○○○이 생활인 ○○○을 다치게 한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라. 참고인 4

생활인 ○○○이 말을 안 들으면 생활지도원 ○○○이 옷장에 있는 막대기로 ○○○의 등을 세게 때리거나 간식을 주지 않는 것을 목격하였다.

마. 참고인 5

생활지도원 ○○○이 손바닥으로 ○○○의 따귀를 거의 매일 때리고 있으며, 한 번은 ○○○의 머리를 찬 물에 넣었다 뺨 적도 있다.

바. 참고인 6

생활인 ○○○가 생활지도원 ○○○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아 많이 부어 있는 것을 본 적 있다.

사. 참고인 7

생활지도원 ○○○은 생활인 ○○○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따귀를 때리거나 배 부분을 강타하는 경우가 많았다(하루에 2~3회 정도). 심지어 ○○○이 편식을 하거나 식사를 거부할 때 손을 묶고 밥을 먹이거나 손가락으로 강하게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2011. 1. 말 경, 생활인 ○○○이 빨래 심부름을 시키는 생활지도원 ○○○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조르자 ○○○이 ○○○의 머리를 2~3회 정도 세게 구타하였다. 생활지도원 ○○○은 ○○○과 ○○○을 주로 폭행하였으며 폭행 강도는 ○○○ 생활지도원에 비해 더 심하였다. ○○○은 하루 2~3회 정도, ○○○은 하루 1회 정도 생활인들을 폭행하는 것 같다.

2011. 2. 말 경, 생활지도원 ○○○이 생활인 ○○○을 생활지도원 교사실 안 화장실 입구 쪽 벽에 세워놓고 양쪽 볼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적도 있다.

생활지도원 ○○○은 생활인 ○○○이 수돗물이나 변기물을 마실 경우, 등에 손바닥 자국이 날 정도로 심하게 때리곤 하였다.

아. 참고인 8

○○○이 다리 부상을 입게 된 시기가 방학 때라 본인은 이 사실을 개학 후에 알게 되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다리가 푹 부러져서 접합수술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

자. 참고인 9

2011. 11. ○○○이 학교에 오지 않아 시설에 전화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감기 때문에 아파서 등교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3일 후 ○○○이 학교에 왔을 때 얼굴에 멍 자국이 있어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정확히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로부터 ○○○이 잘못을 해서 계단을 50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 정확히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IV. 인정사실

1.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의 현황

가. ‘○○’은 2010. 3. 00. 개원한 ○○광역시 ○○구 ○○동 소재의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1개동으로 되어 있다.

나. ‘○○’에는 시설장과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생활지도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상시근무하고 있고, 촉탁의가 비상시 근무하고 있다(한 달에 1~2회 가량 시설 방문). 2011. 12. 현재 종사자는 총 35명이고, 생활인을 직접 담당·관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은 25명이며, 생활지도원에 대한 총괄책임은 사회재활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다. 시설 내에는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거주인인권위원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 시설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직과 거주인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은 공석 상태이다.

라. ‘○○’의 입소대상은 지적장애인 1, 2급 및 중복장애를 수반한 지적장애인이며, 현재 64명의 중증장애인이 입소해 있다.

2. 시설생활인에 대한 가혹행위(상해 및 폭행, 성희롱 등)

피해자들 및 피조사자들의 주장 요지, 참고인들의 진술내용, 2010. 7. 00. ○○○종합병원의 응급외래기록지, 2010. 7. 00. 촬영된 피해자 ○○○의 대퇴부 골절 사진 및 ○○○의 주치의 의사소견서, 2010. 7. 00. ‘○○’ 간호일지, 2010. 7. 00. 생활실 운영일지, 생활지도원 ○○○이 ‘○○’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사고경위서, 2011. 10. 00. ‘○○’ 인사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2011. 11. 00. 생활지도원 ○○○의 시말서 및 사직서, ‘○○’ 측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의 생활지도원인 ○○○은 2010. 7. 00. ○○○이 시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설 3층 프로그램실에서 ○○○(사건 당시 11세)에게 스트레칭을 시켰고, ○○○이 아프다며 우는 데도 이를 무시한 채 스트레칭을 무리하게 시도하여 ○○○의 오른쪽 대퇴부가 골절된 사실이 있다. ○○○은 스트레칭과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나. ‘○○’의 생활지도원인 ○○○은 2011. 10. 00. 생활인 ○○○의 외출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 반항하자 시설 2층 거실에서 ○○○의 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한 후 슬리퍼로 ○○○의 입과 눈, 발목 주위를 폭행하여 타박상을 입힌 사실이 있다.

다. ‘○○’의 생활지도원인 ○○○은 2011. 3. 00. 커피를 타달라고 조르는 생활인 ○○○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꿀밤을 때리다가 ○○○의 눈가에 타박상을 입혔으며, 평소 말을 듣지 않는 생활인들의 머리와 뺨을 습관적으로 때리는 등 생활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

라. ‘○○’의 생활지도원인 ○○○은 생활인 ○○○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손으로 ○○○의 뺨이나 배 부분을 구타하거나 막대기로 등 부위를 때리고 손목을 쥐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마. ‘○○’의 생활지도원인 ○○○은 2011. 4. 00. ○○방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생활인 ○○○의 성기를 자로 때린 사실이 있다.

바. ‘○○’ 측은 2010. 7. 00. ○○○이 생활인 ○○○의 오른쪽 대퇴부를 골절시킨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의료조치 외 사실 확인 및 구제, 지속적인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으로부터 사건경위서만을 제출받았다. 2011. 10. 00. ○○○가 생활인 ○○○의 입과 눈, 발목 주위를 슬리퍼로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도 없이 사건 발생 한 달 이후인 2011. 11. 00.에 ○○○로부터 시말서만 접수받고 사건을 종료시켰고, ○○○의 폭행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또한 ‘○○’의 사회재활교사

○○○은 ○○○이 생활인 ○○○을 비롯하여 생활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행위와 ○○○이 생활인 ○○○을 수시로 폭행한 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방조한 사실이 있다.

사. ‘○○’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입소 장애인을 체벌 또는 학대, 업무 소홀로 상해 및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시킨 직원 등에게 인사위원회를 통해 주의, 견책, 감봉, 출근정지, 권고사직, 징계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 ○○광역시 ○○구청 ○○○○○과 ○○○○○팀장 ○○○은 2010. 10. 0.과 2011. 6. 00. 장애인시설 점검 시, ‘○○’의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2010. 7. 00. ○○○이 생활인 ○○○에게 상해를 입힌 건, 2011. 1. 00. 직권조사 외 퇴직 생활지도원 ○○○의 ○○○ 폭행 건 등을 확인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 측에 어떠한 개선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V. 판 단

1. 생활인에 대한 가혹행위 관련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은 장애인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등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생활인 ○○○에 대한 상해 관련

‘○○’의 생활지도원인 ○○○은 위 인정사실 2. 가항과 같이 생활인 ○○○에게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시도하여 ○○○의 오른쪽 대퇴부가 골절되도록 하였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은 고의성은 없었으며 단지 스트레칭을 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 스트레칭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었으며, ○○○이 아프다며 우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스트레칭을 지속하여 ○○○의 다리뼈가 골절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이는 스트레칭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의 오른쪽 대퇴부를 골절시킨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학대한 행위에 해당되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된다.

다. 생활인 ○○○, ○○○, ○○○에 대한 폭행 관련

‘○○’의 생활지도원인 ○○○는 위 인정사실 2. 나항과 같이 생활인 ○○○의 입과 눈, 발목 주위를 슬리퍼로 때려 타박상을 입혔다. ○○○는 ○○○가 심한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눈과 입을 두어 대 정도 때린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한 후 슬리퍼로 얼굴과 발목 주위에 타박상을 입을 정도로 때린 행위는 단순히 ○○○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폭행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의 생활지도원인 ○○○은 위 인정사실 2. 다항과 같이 생활인 ○○○에게 꿀밤을 때려 ○○○의 눈가에 타박상을 입혔으며, 평소 말을 듣지 않는 생활인들의 머리와 뺨을 습관적으로 때리는 등 생활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은 ○○○의 문제행동에 대해 체벌 목적으로 꿀밤을 때리다 그것이 빗맞으면서 눈에 멍이든 것이라고 주장하나, 눈 주위의 타박상은 단순 실수로 인한 상해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의 생활지도원인 ○○○은 ○○○에 대한 가혹행위에 대하여 ○○○이 타인을 무는 습관이 있어 이를 고치려고 ○○○을 물거나 자를 이용하여 허벅지를 몇 대 때린 적은 있으나, 뺨 등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2. 라항과 같이 ○○○은 생활인 ○○○의 뺨이나 배 부분을 구타하고 막대기로 등 부위를 때리고 손목을 쥐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의 생활지도원인 ○○○, ○○○, ○○○은 자신들의 행위가 생활인의 문제 행동에 대한 단순체벌 또는 과실치상이라고 주장하나, 비록 체벌이라 하더라도 그 수준이 신체에 타박상을 입히거나 도구를 사용하거나 뺨을 때리는 정도라면 이는 보호자에게 주어진 지도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행위로 보인다. 더구나 시설 내 보호자인 생활지도원은 누구보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들의 행위는 그 보호의무를 현저히 간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이 금지한 폭행 및 학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생활인 ○○○에 대한 성희롱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같은 조 제5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 생활보조원인 ○○○은 위 인정사실 2. 마항과 같이 자위행위를 하던 생활인 ○○○의 성기를 자로 때렸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라 함은 ‘본인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자위행위를 하던 생활인 ○○○의 성기를 자로 때린 것은 ○○○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판단되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 및 모욕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생활인에 대한 시설의 보호의무 해태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1조 및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직·간접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의 의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의무는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누릴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의 시설장은 위 법에 따라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 시설장은 ○○○이 생활인 ○○○에게 상해를 입혔을 당시,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받도록 하는 것 외에 권리 보호 및 보장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실확인 및 사후조치, 지속적인 치료조치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의 취업규칙에 따라 입소 장애인을 체벌 또는 학대, 업무소홀로 상해 및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시킨 직원 등에게 인사위원회를 통해 주의, 견책, 감봉, 출근정지, 권고사직, 징계해고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은 채 ○○○으로부터 사고경위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 그 외 사후조치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의 폭행 건과 관련해서는 2011. 10. 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말서 및 사직서 제출만을 결정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으며, ○○○의 폭행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하였다.

또한 '○○'의 인사위원회 위원이면서 시설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재활교사 ○○○은 생활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생활지도상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체벌 정도로 간과하여 상급자에 보고도 하지 않은 등 생활인에 대한 가혹행위 및 인권문제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였다.

이와 같이 시설 생활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의 의무가 있는 '○○' 시설장과 사회재활교사 ○○○은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인에 대한 각종 가혹행위에 대해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관리·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소홀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61조는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시설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 ○○○○○과 ○○○○○팀장 ○○○은 2010. 10. 7. 00. 및 2011. 6. 00. 두 차례에 걸쳐 '○○'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2010. 7. 00. ○○○에 의한 생활인 ○○○ 상해 건, 2011. 1. 00. 직권조사 외 퇴직 생활지도원 ○○○의 생활인 ○○○ 폭행 건 등을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설 측에 어떠한 개선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상급자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시설생활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방조하였다.

특히, 생활인 ○○○의 경우 사건 당시 나이가 11세였음을 감안한다면, ○○○에 대한 상해 건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인지한 공무원인 ○○○은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학대 사실에 대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0년, 2011년 지도·감독 중 두 건의 폭행 사건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조·묵인한 ○○○의 행위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 수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61조 및 제62조에서 정한 담당공무원의 의무를 해태한 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V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한태식 위원 양현아

【별 지】 관련 규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 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 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감독) ①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장애인복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3.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4.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제25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6. '○○'의 「취업규칙」

제73조(징계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4조의 징계를 한다.

1. 입소 장애인을 체벌 또는 학대하는 경우
2. 입소 장애인을 업무소홀로 상해 및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시킨 경우
3. 입소 장애인에 대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로 인권을 침해한 경우
4. 치료나 재활 목적 이외에 입소자의 뜻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5. 입소 장애인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하는 행위

제74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 6종으로 한다.

1. 주의 : 시말서 없이 장래에 대해 훈계한다.
2. 견책 :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3. 감봉 : 시말서를 받고 1회의 금액의 평균임금 1분의 반액 이하로 감액

하고 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에도 그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4. 출근정지 : 시말서를 받고 5일 이내에 출근을 정지시키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한다.
6. 징계해고 :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해고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고의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5조(징계절차) ① 인사위원회 청원을 통해 징계혐의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 ② 징계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과반수 의결에 의해 결정한다.
- ③ 징계처분의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당해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징계의 종류 중에서 견책과 경고는 본 조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 원의 대표자나 대표자의 명을 받은 소속 부서장이 직접 행한다.

14 2012. 2. 13.자 11-진정-0306100 결정 [장애인시설의
예배 참석 및 헌금 강요 등 인권침해]

【결정사항】

【1】 ○○광역시 ○구청장에게,

- 가. 피진정 시설에 대해서 십일조 및 헌금 강요 및 생활인의 의사에 반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
- 나. 의사에 반하여 납부된 십일조·헌금 반환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 다. 종교 활동 참여에 수반한 유·무형의 강요와 생활인에 대한 건강권 등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 라. 피진정 시설 종사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에게,

- 가. 생활인의 의사에 반한 종교 활동 및 헌금·후원금 강요, 종교 활동 참석 관련 외출 및 식사 제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나. 생활인들을 외부 행사에 참가시킬 경우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가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할 것
- 다.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생활인들을 반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시키고 외출을 제한하며, 외부 쉼기대회에 참석하도록 동원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거주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침해이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에 해당하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 【2】** 거주생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십일조, 헌금, 후원금 등을 내게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침해이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및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 행위에 해당함.
- 【3】** 피진정인이 매일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생활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아침식사 시간에 늦은 생활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임.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30조 제1항 및 제3항·제37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진 정 인】 김○○

【피 해 자】 ○○○○ 거주 생활인들

【피진정인】 송○○(○○○○ 시설장)

【주 문】

1. ○○광역시 ○구청장에게,

가. ○○○○에 대해서 기 조치한 십일조 및 헌금 등의 금지와 함께 거주 생활인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나. 거주 생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십일조 및 헌금 등에 대하여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

다. 종교 활동 참여에 수반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강요와 ○○○○ 거주 생활인에 대한 건강권 등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라. ○○○○ 종사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을 권고한다.

2.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에게,

가. 거주 생활인들의 의사에 반한 종교 활동 참석 강요, 헌금, 후원금 등의 납부 강요, 종교 활동 참석과 관련하여 외출을 제한하는 행위, 식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나. 거주 생활인들을 외부 행사 등에 참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

생활인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참가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할 것,

다.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 시설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인데, 시설장인 피진정인이 피진정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하였다.

가. 예배 참석 강요 및 외출 제한

피진정인은 ○○○○ 내에 있는 직업재활센터 강당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생활인들을 강제적으로 참석시켰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외출을 제한하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들이 예배참석을 거부한 생활인 김○○을 끌어냈고, 불교신자인 생활인 조○○는 예배참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외부작업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조○○의 보호자는 조○○에 대한 외부작업 배제, 권고퇴소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억지로 조○○를 예배에 참석하도록 한 일도 있다. 생활인 김○○·권○○·김○○·최○○은 예배 참석 때문에 외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 불만이 많다.

나. 십일조 및 현금, 후원 등의 강요

피진정인은 생활인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생활인들에게 강제로 십일조, 현금,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있다. 직원들이 직장에 다니는 생활인들의 통장에서 십일조를 걷어가고, 생활인들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일에 현금봉투에 넣어 현금을 내게 한다. 생활인 정○○ 등은 통장에서 십일조, 현금 등이 나가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다. 쫓겨대회 강제 동원

2011. 3월 초 아스콘·레미콘 공장 입주 반대 쫓겨대회에 생활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쫓겨대회 현장은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자칫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정신장애가 있는 생활인인 강○○, 이○○, 하○○, 임○○ 등을 강제로 참가하게 하였다.

라. 아침식사 미제공

아침식사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아침식사를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생활인인 강○○, 안○○, 유○○, 정○○은 아침식사를 못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 요지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피해자 1, 2, 3의 주장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 숙소에 남아 있으면 직원들이 예배에 참석하라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한다.

나) 피해자 1의 주장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생활인들이 참석해서 억지로 참석하고 있다. 내가 원할 때 참석했으면 좋겠다.

다) 피해자 2의 주장

예전에는 ○○○○ 규칙이라 억지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얼마 전에 원장님이 원치 않으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참석하지 않고 있다. 생활인들이 외출을 하고 싶어도 예배 시간에는 외출을 못하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나 외출이 가능하다. 예배 참석을 포함하여 생활규칙이 좀 더 자율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라) 피해자 3의 주장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 피해자 4의 주장

평일은 작업 때문에 외출을 못하게 하고 토·일요일에 외출을 하는데 예배에 참석한 후이나 외출을 할 수 있다. 일요일은 오후 3시경에 외출할 수 있다. 예배 시간에는 누구도 외출할 수 없다. 작업 때문에 피곤한데 매일 두 번 예배에 참석하게 해서 너무 힘들고, 다른 생활인들의 경우 피곤해서 예배 참석을 원치 않는데 시설에서 강제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불만이 많다. 예배 참석이 자율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 피해자 5의 주장

생활인들에게 예배 참석을 강요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생활인들이 하루에 두 번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일요일의 경우는 예배시간 1시간 전에 참석하라고 하는데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1시간 전에 참석하면 5~6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다.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 숙소에 남아 있으면 직원들이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게 한다든지 풀을 뽑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식사를 하지 못했다. 외부작업자들은 퇴근해서 돌아오면 피곤해서 예배 참석을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참석하게 하고 있다.

외출도 자유롭지 않다. 병원 또는 이발소를 갈 때 이외에는 잘 나가지 못한다. 예배 시간에는 외출할 수 없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는 외출할 수 없다.

사) 피해자 6, 7, 8, 9, 10의 주장

○○○○에서는 생활인들을 억지로 예배에 참석시키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외출을 못하게 하고 있다. 강제적인 예배 참석 등 자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었으면 한다.

아) 피해자 11의 주장

예배 참석을 원치 않아 숙소에 있는데 직원들이 와서 강제로 끌어내서 억지로 예배에 참석한 경우가 있다.

2) 진정요지 사항 관련

가) 피해자 1, 2, 3의 주장

시설에서 생활인들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어떤 용도로 얼마가 인출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시설에서 임의적으로 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나) 피해자 1의 주장

매주 현금으로 얼마씩 내는지 모른다.

다) 피해자 2의 주장

본인도 십일조를 내고 있는데 원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시설 측에서 내라고 해서 내고 있다.

라) 피해자 4의 주장

본인의 통장에서 얼마가 인출되는지 모르고 있으며, 예배 시 현금 봉투 안에 들어 있는 돈으로 알 수 있다. 시설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을 하고 있어 얼마를 어디에 후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현금은 매주 이천 원씩 냈고, 십일조는 월급에서 1/10의 금액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십일조, 현금, 후원금은 시설에서 내야 한다고 해서 내는 것인데 생활인들이 원할 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다.

2011. 6. 00.경 저녁에 생활인들을 2층 강당에 집합시킨 후 최○○ 직원이 감사가 나온다면 강제로 예배에 참석시킨 것, 강제로 십일조와 현금 등을 내게 한 것에 대해서 생활인들이 원해서 한 것이라고 말하도록 얘기했다.

마) 피해자 5의 주장

십일조, 현금, 후원금을 억지로 내게 한다. 최○○ 직원과 그의 배우자가 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하며 숙소를 돌아다니면서 현금 봉투에

얼마를 낼 것인지 적으라고 해서 생활인들이 억지로 금액을 기입한다.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후원금도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어디에 후원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번 어울림 축제 때도 재정이 어렵다고 강제로 후원하도록 해서 시설 측에서 일괄적으로 인출한 것이다.

며칠 전 저녁 9시경 2층 강당에 생활인들을 집합시킨 후 최○○ 직원이 감사가 나온다고 강제로 예배에 참석하게 한 것, 강제로 십일조, 헌금 등을 내게 한 것에 대해서 생활인들이 원해서 한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얘기했다.

바) 피해자 6, 7, 8, 9, 10의 주장

시설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인들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생활인들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십일조, 헌금, 후원금을 내도록 하였다.

2011. 6. 00.경 저녁에 최○○ 직원이 생활인들을 2층 강당에 모아 놓고 감사가 나오면 예배 참석이나 십일조, 헌금, 후원금 등은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생활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도록 얘기했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가) 피해자 1의 주장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시설에서 가자고 해서 갔던 것이고 나중에 방송을 보고 알게 되었다. 사진 속에 본인이 서 있는데 이유도 모르고 서 있었던 것이다.

나) 피해자 2의 주장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시설에서 같이 참가하자고 해서 참가를 했던 것이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가) 피해자 1의 주장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침식사 시간에 늦자 시설 측에서 아침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5의 주장

시설 측에서 아침식사 시간에 늦게 왔다고 밥을 못 먹게 했다.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수차례 그런 일을 겪었다. 아침시간은 보통 6시 30분인데 약 기운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본인 이외에 강○○, 유○○, 정○○ 생활인 등이 밥을 먹지 못했다.

다) 피해자 12의 주장

아침식사 시간에 늦은 적이 있는데 다음에 늦으면 설거지를 시키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아침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주지 않은 적은 없다.

라) 피해자 13의 주장

아침식사 시간에 늦으면 본인이 알아서 먹지 않았다. ○○○○에서 강제로 먹지 못하게 한 적은 없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에서는 생활인들에게 강제로 예배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은 회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 증거로 불교신자였던 조○○는 법당에 가기 위해 주일마다 외출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퇴소한 장○○의 경우도 매주 성당에 가기 위해 토요일 외박을 실시하였다.

직업재활센터를 건립했지만 직업재활센터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이 최소 6명인데 ○○광역시의 예산 부족으로 충원이 되지 않아 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1층에서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층 강당 역시 예배실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교육, 소방훈련 등 강당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에서는 생활인들의 동의를 얻어 시설에서 통장관리를 하고 있다. 현금이나 후원은 생활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현금이나 후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금이나 후원을 할 때는 생활인이 사무실의 통장관리 담당에게 현금이나 후원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직원이 그 금액만큼 인출하여 생활인 본인에게 전달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현금 인출 내용은 매주 월요일 자조모임 시간에 통장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므로 강제로 현금이나 후원을 하게 한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은 만성정신장애인들이 사회로 나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다. 그렇기에 생활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본 시설에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 연계활동이다. 본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레미콘 공장 설립이 생활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민들의 쉼기대회에 동참하는 것이 재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연계활동임을 인식하여 재활프로그램 차원에서 생활인들과 함께 참여한 것이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다른 많은 종류의 복지시설들이 있지만 이런 행사에 참여한 시설은 본 시설뿐이다. 3년마다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시설평가에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 있다. 따라서 생활인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은 재활훈련기관으로서 생활인들이 하루 일과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생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매일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생활인들이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 중 하나이다. 하지만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본 시설의 역할이다. 그래야만 약물을 복용하고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훈습되어진 부분만이 변화라는

결실을 가져다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식사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날 아침은 굶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집단급식 시설에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그리고 생활인 본인이 식사할 마음이 없으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굶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을 진정이라고 제기한 진정인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라. 참고인의 진술(피진정 시설 생활 거주인들)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참고인 1

직원들이 예배를 보게 하기 위하여 김○○ 생활인을 강제로 끌어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 참고인 2

김○○ 생활인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거부했는데 시설 측에서 여기서는 예배를 봐야 한다며 억지로 보게 했다.

다) 참고인 3

본인이 입소하기 전에 김○○ 생활인이 퇴소하여 직접 목격하진 못했지만 예배 때문에 직원들이 김○○ 생활인을 강제로 끌어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다.

2) 진정요지 다항 관련(참고인 2)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2011. 3월경에 썰기대회를 했다. 본인은 일을 다녀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생활인들은 시설 측에서 동원해서 참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3) 진정요지 라항 관련(참고인 2)

아침식사 시간에 늦으면 밥을 못 먹게 하며, 그런 경우 점심까지 먹지 말라고 했다. 강○○, 유○○ 생활인 등이 그런 일을 겪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 주장내용,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광역시 ○구청 등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 관련

1) 인정사실

가) ○○○○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아침과 저녁에 2회, 토요일에는 아침 1회, 일요일에는 오전과 오후 2회 진행되는데, 직원들이 생활인들에게 예배 참석을 독촉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외부작업에서 제외하거나 풀을 뽑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곤 한다. 그 외에도 예배시간에는 생활인들에게 외출을 못하게 하고 예배에 참석해야만 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2011. 3. 00. ○○시 ○구 ○○동 소재 레미콘공장 설립 예정지에서 레미콘공장 설립 반대 주민 쉼기대회가 개최되어 ○○○○ 직원 및 생활인을 포함한 28명이 이 쉼기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데 피진정시설에서는 사전에 이에 관해 생활인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쉼기대회에 참석하도록 생활인들을 동원하였다.

2)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을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생활인들을 반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시키고 예배 참석을 이유로 생활인에 대한 외출을 제한 하였으며, 쉼기대회에 생활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였던바, 이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인 피진정 시설의 생활인들이 주로 지적 장애 및 만성적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장애의 특성상 부당한 요구에 반대 하는 행동들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활인들을 배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생활인들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에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의 배제로 인하여 이동의 자유가 침해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 3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인정사실

앞서 든 근거자료 외에 피해자들의 통장내역, 피진정인이 제출한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인들은 십일조로 수 만원에서 10만 원 정도 내고 있고, 현금은 매주 1천원에서 1만 원 가량 내고 있으며, 후원금으로 수 천원에서 2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이는 생활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는 시설 측에서 생활인들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십일조 등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은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거주생활인들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십일조, 현금, 후원금 등을 내게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라항 관련

1) 인정사실

앞서 든 소명자료 등을 종합하면, ○○○○ 아침식사 시간은 대략 06:30 ~ 07:00까지인데 매일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생활인들이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운 면이 있음에도 시설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침식사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생활인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지 않곤 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매일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생활인들이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아침식사 시간에 늦은 생활인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진정시설 시설장과 소속 법인의 책임 여부

1) 피진정인 송○○은 ○○○○ 시설장으로서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

2) 피진정 시설 ○○○○의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은 피진정시설의 거주생활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생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위치에 있고 이를 위한 시설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시 ○구청은 2011. 6. 00. ○○○○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십일조 및 주정현금 모금 금지, 경건의 시간(예배) 프로그램을 근무시간 내로 변경 시행 등 처분지시 한 바 있고, 같은 해 8. 0. 피진정인 송○○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4) 그러나, 그동안 ○○○○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가장 큰 원인 및 책임은 시설장으로서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조사과정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거주생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통제 및 훈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장의 주의의무 소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설장인 피진정인 및 ○○○○○○○○ 이사장에 대한 권고가 필요하나 피진정인과 ○○○○○○○○ 이사장이 동일인이므로 이사장에 대해 권고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진정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 시설장이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한태식 위원 양현아

15 2012. 5. 25.자 11-진정-0586400 결정 [장애아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결정사항】

- 【1】** ○○○○○○ 시설장에게, 교사 박○○ 등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시설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2】** 서울특별시장에게,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구청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

【결정요지】

- 【1】** 교사 박○○은 강○○ 등이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 가까이 생활실 앞에 서 있도록 하였고 소변이 마렵다고 하는 강○○에게 서서 소변을 보라고 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생활지도의 한계를 벗어나 장애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 【2】** 교사 이○○은 빨리 가라는 표시로 하지장애가 있는 강○○의 엉덩이를 발로 건드렸는데, 이는 교사와 장애아동 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도 용인될만한 표현이나 행위로 볼 수 없고, 특정 장애의 특성을 이유로 피해 장애아동에게 모멸감 또는 굴욕감을 안겨줄 수 있는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아동복지법」 제29조

【진 정 인】 ○○○

【피 해 자】 ○○○ 외 5명

【피진정인】 ○○○ 외 9명

【주 문】

1.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 시설장에게, 교사 ○○○과 ○○○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나.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다.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장애아동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위 시설을 포함한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진정요지 가항 및 라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전화통화 제한

○○○○○○(이하 ‘피진정시설’이라 한다)에 생활 중인 장애아동 ○○○, ○○○, ○○○ 등은 야간에 의무실에서 진정인과 전화통화를 하었는데, 이를 본 교사 ○○○, ○○○, ○○○, ○○○은 사무실에 보고하겠다고 하거나 당직일지에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그리고 통화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전화기 주위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였다.

나. 체벌 및 학대

2011. 9. 17. 야간 당직자 교사 ○○○은 야간에 전화통화를 한 장애아동 ○○○, ○○○을 22:00부터 24:00까지 생활실에 서 있도록 벌을 세웠고, 위 장애아동들이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옷에 소변을 보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못 가게 하였다. 또한 아이들이 자신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수건을 던지고 입 닥치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

다. 모욕 및 비하

교사 ○○○은 하지 지체장애가 있는 ○○○에 대하여 밥 먹으러 빨리 가라고 하면서 위 장애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

라. 폭언

1) 교사 ○○○은 의무실에서 통화하는 아이들에게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랑 못 받는다, 원장 따라가라”고 하였다.

2) 교사 ○○○은 장애아동 ○○○에게 “학교에 가서 ○○○를 이렇게 가르쳤는지 물어보러 가겠다”고 협박하였다. 또한 장애아동들에게 “너네들 ○○○, ○○○처럼 살지 마라”고 하였다.

3) 교사 ○○○은 장애아동 ○○○에게 “○○○ 재, 싸가지 없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였다.

4) 교사 ○○○은 장애아동 ○○○의 등을 밀었는데, 이를 목격한 장애아동 ○○○가 “원장님이 우리를 때리면 신고해도 된다”고 말하니깐 “신고하라”고 다그쳤다.

5) 취사원 ○○○은 아침 식사시간에 장애아동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너네는...”이라고 하며 장애아동 ○○○의 밥그릇을 뺏고 등을 한 대 때리면서 사무실로 데리고 갔으며, “너 내 자식 같으면 그냥 안 둔다”고 하였다.

6) 교사 ○○○은 ○○○ 아동에게 “너는 엄마(교사) 편인 줄 알았는데, 너도 애들이랑 같은 편이구나”라고 하였다.

7) 영양사 ○○○은 장애아동 ○○○, ○○○가 식사시간에 5분 늦게 왔다고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내버려 둬! 지네들이 알아서 먹겠지, 난 재네들 관심 없어”라고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한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한

1) 전화통화 제한에 대하여(교사 ○○○, ○○○, ○○○, ○○○)

2011. 9. 초순 당시 본인들은 야간당직교사로서 장애아동 ○○○ 등이 야간에 자신들의 방이 아닌 3층 ‘○○○ 방’에서 전화통화를 해서 그 방을 사용하는 다른 아이들의 수면방해를 우려하여 통화를 제한하였으며, 통화내용을 녹음한 사실은 없다.

2) 체벌 및 학대에 대하여(교사 ○○○)

2011. 9. 21. 장애아동 ○○○, ○○○ 외 3명이 오후 10:00경 의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외부전화를 하여 의료상황이 아닌 일로 들어가는 안 된다고 타일렸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오후 10:30경 1층 생활실로 내려온 ○○○, ○○○에게 잘못을 인지시키기 위해 다시 지도했으나, 본인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며 대항하거나 서로 농담하며 장난하고, 소변이 마렵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본인과 함께 오후 11:45분까지 생활실에서 있었다.

3) 모욕 및 비하에 대하여(교사 ○○○)

본인은 평소 아침시간에 하지장애가 있는 아동 ○○○이 기어 다니는 상황이라 빨리 가자고 하는 표현을 손으로 하지 못하고 발로 한 사실이 있다.

4) 폭언

가) 교사 ○○○

의무실에서 통화하는 아이들에게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랑 못 받는다, 원장 따라가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나) 교사 ○○○

2011. 9. 28. 오전 7:20경 장애아동 ○○○가 식당에서 “당직 엄마(생활재활교사)들 미친년”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 본인이 물었더니, “네”라고 하여 그런 나쁜 말을 학교에서 배웠는지 학교선생님께 물어보러 가겠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 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이야기하였다.

다) 교사 ○○

2011. 9.말경 날씨가 추워져 긴팔과 긴바지를 입으라는 본인의 지도에 장애아동 ○○○이 따르지 않고 이쁜 옷이 없으며 무릎담요를 걸치고 다녀서 “집인데 깨끗한 옷이면 되지”라고 했더니 ○○○이 “○○재, 이상한 애야”라고 하였다. 이에 본인은 ○○○에게 “너 참!,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라고 하였다.

라) 교사 ○○○

장애아동 ○○○이 생리가 시작되어 사용한 속옷과 생리대를 화장실 등에 아무데나 두고 다녀 이를 몇 차례 지적하자, ○○○이 본인을 지나가면서 “알았어, ○○○”라고 말하였다. 이에 본인이 ○○○을 세우기 위해 팔을 잡는 순간 ○○○이 미끄러졌는데, 이를 본 장애아동 ○○○가 “원장님이 우리 때리면 신고해도 된다”고 하였고, 본인은 “신고하라”고 하였다.

마) 취사원 ○○○

2011. 9. 26. 장애아동들이 아침 식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떠들고 있어 ○○○ 장애아동에게 빨리 먹고 학교 갈 것을 이야기 하자, 장애아동 ○○○이 우리들도 말 할 권리가 있다며 식판을 손가락으로 탁탁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본인은 ○○○에게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사무국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면서 ○○○ 아동의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며 사무실로 갔다. ○○○의 밥그릇을 뺏거나 “너, 내 자식 같으면 그냥 안 둔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바) 교사 ○○○

2011. 9. 초순 장애아동 ○○○, ○○○, ○○○가 목욕탕 안에서 밖으로 물을 버리는 장난을 해서 본인이 지도하자, “엄마가 청소하기 싫어서 그러냐”고 하면서 한꺼번에 입을 모아 덩비거나 놀리는 행동을 하였다. 본인은 답답한 마음에 이를 보고 있던 장애아동 ○○○과 ○○○에게 “이런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 ○○○가 ○○○, ○○○에게 “너네 누구 편이냐, 원장님 편 아니냐”고 하였고, 이에 나머지 두 아이들까지 합세하여 덩비는 행동을 하여 많이 실망한 적이 있다.

사) ○○○ 영양사

2011. 10. 중순경 장애아동 ○○○와 ○○○이 식사시간에 늦게 와서 밥을 먹고 있었고 본인은 퇴근시간이라 퇴근하려고 식당문을 지나는데 ○○○가 “저 김치 안 먹을 거예요, 늦게까지 먹을 거예요”라고 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했다. 2011. 9. 중순부터 장애아동들이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욕을 하고, 편식을 하거나 식사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본인이 설명하였지만 “장애아동들도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인권위에 신고할 거라고 했다.

3. 관련 규정

별지기재 2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아동사례, 훈계, 사고일지 등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전화통화 제한

2011. 9. 3. 진정인 ○○○의 원장직무 정지 이후, 장애아동 ○○○, ○○○, ○○○, ○○○, ○○○ 등은 공부를 마치고 오후 09:30경 중증 장애아동의 방인 3층 ‘○○○ 방’에서 진정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당시 당직교사들은 밤 10시 이후에는 다른 아동들의 수면을 방해하므로 위 아동들이 야간에 전화하는 것을 못하게 하였다. 이후 위 아동들이 ‘○○○ 방’에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해서 전화사용을 허용하였다가 2011. 11. 7.부터 교사들의 고충상담 등으로 아동들의 통화를 제한하고 있다.

나. 체벌 및 학대

교사 ○○○이 작성한 2011. 9. 21. 일지에 의하면, 2011. 9. 21. 오후 10시에 ○○○과 ○○○가 허락 없이 의무실에 들어가서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오후 10:30부터 11:45까지 1시간 15분 동안 1층 생활실 앞에 서 있도록 하는 벌을 받은 내용이 있고, 당시 ○○○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였으나 교사 ○○○은 “뒷정리를 할 테니 서서 소변을 보라”고 하였다.

다. 모욕 및 비하

교사 ○○○은 평소 아침시간에 하지장애로 기어 다니고 있는 ○○○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건드리며 빨리 가자고 하였다.

라. 폭언

1) 교사 ○○○은 2011. 9. 28. 오전 07:20경 ○○○에게 “그런 나쁜 말을 학교에서 배웠는지 학교선생님께 물어보러 가겠다”고 말하였다.

2) 교사 ○○○은 2011. 9. 말경 ○○○에게 “너 참,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고 말하였다.

3) 교사 ○○○은 ○○○로부터 “원장님이 우리 때리면 신고해도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신고하라”고 말하였다.

4) 교사 ○○○은 2011. 10. 중순경 ○○○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전화통화 제한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 교사 ○○○, ○○○, ○○○, ○○○은 다른 아동들의 수면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 야간에 전화사용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무실에 보고 하겠다, 당직일지에 남기겠다”고 말한 위 피진정인들의 발언은 당직교사로서 아동들의 생활지도를 위한 권한범위 내의 조치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각한다.

그리고 전화통화를 녹음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체벌 및 학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5조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29조에서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교사 ○○○은 ○○○과 ○○○가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22:00부터 23:45까지 1층 생활실 앞에서 있도록 하였고, 당시 ○○○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였으나 서서 소변을 보라고 하였는데, 이는 교사로서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피해 장애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여겨지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모욕 및 비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서 장애인 또는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교사 ○○○은 빨리 가라는 의사표현으로 하지장애가 있는 ○○○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건드렸는데, 이는 교사와 장애아동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행위로 볼 수 없고, 더욱이 피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을 감안할 때, 특정 장애의 특성을 이유로 하여 피해 장애아동에게 모멸감 또는 굴욕감을 안겨줄 수 있는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 폭언

진정요지 라항의 폭언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라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5.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폭란주

【별 지】 관련 규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 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 3 장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 통·반장 위촉시 나이 제한 등 [5건]

1 2012. 2. 22.자 11-진정-0337500 결정 [○○시 통·반장 위촉 시 나이 제한]

【결정사항】

피진정인 1, 2에게, 통·반장 위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통·반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본질적 요소에 대한 선발기준 및 절차를 더욱 엄밀하게 설정함으로써 업무수행 능력을 가진 적임자를 선발하지 않고 특정한 나이를 통·반장의 자격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7조·제12조·제13조·제14조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1. ○○시장 2. ○○시의회 의장

【주 문】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게, 통·반장 위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시는 2010. 12. 27. 조례를 개정하여 통·반장 정년을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명시함으로써 나이를 이유로 불합리한 배제와 차별이 행해지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를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피진정인 1(○○시장) 주장

통장 위촉 시 하한 연령은 있으나, 상한 연령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2010. 12. 27. 조례를 개정하여 상한 연령을 정하게 된 것이다. 의원 발의로 개정·시행된 지 얼마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분간 개정안을 발의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인권위 권고 등 여건 변화가 있으면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

나. 피진정인 2(○○시의회 의장) 주장

2010. 12. 27. 조례를 개정하여 통·반장 정년을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명시하였는데 이것이 차별소지가 있다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원들 간의 상호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협의·결정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고 함)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통·반장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한 후 서류심사 또는 면접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 동장이 위촉하고 있다. 2010. 12. 27. 조례 개정 이전에는 20세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의원발의로 상한연령을 두게 되었다.

나. ○○시 내 통장의 정원은 560명이고 2012. 1. 30. 기준 현원은 547명인데, 현원의 연령대별 분포는 아래 <표 1>과 같다. 그리고 ○○시 내에 2,432개 반이 설치되어 있으나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만 46명의 반장이 위촉되어 있으며, 2010. 12. 31. 기준 구체적인 반장의 연령대별 분포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시 통장의 연령 현황(2012. 1. 30. 기준)

구분	30세이하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65세	65세이상	합계
인원 수	0명	38명	159명	246명	104명	0명	547명

<표 2> ○○시 반장의 연령 현황(2010. 12. 31. 기준)

구분	50세이하	51세~60세	61세~65세	66세~70세	71세이상	합계
인원 수	4명	12명	13명	8명	9명	46명

다. 조례에 따르면 통장은 반장의 지도 감독과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반적부 정리, 각종 사실확인, 새마을 사업추진 협조, 반원의 비상연락 추진,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방세 고지서 등 각종고지서(독촉장), 통지서 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반장은 조례상 통·반장의 업무 중에서 일반적으로 통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 통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통장·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또는 각종 교육비, 선진지 비교 견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연간 통장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자녀 장학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통·반장은 시·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급부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급부의 내역

대상	구 분	지 급 액
통장	기본수당	월 200,000원
	회의참석수당(최대 월 2회)	월 40,000원 (20,000원 X 2회)
	상여금(설·추석 연 2회)	연 400,000원 (200,000원 X 2회)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정원의 15%범위 내에서 지급)	일반고 기준 연 1,382,400원 (학자금 전액)
	통장 단체상해보험	계약금액 : 31,854,590원 (1일 56,985원)
반장	상여금	연 50,000원 (25,000원 X 2회)

마. ○○시의회의 2010. 11. 22.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는 상한연령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상한 연령을 명시하여 정년을 정함으로써 통·반장 위축 및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통장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교육 등을 통하여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령과 업무능력 또는 신체적 능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었으나, 65세 이상이 되면 업무의 효율적 문제로 인해 나이제한이 있다고 보고 젊은 세대들이 통·반장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는 통·이장 위촉 시 나이차별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피진정기관으로 한 개별진정 사건이 다수 접수되었고, 시정 권고 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사한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시정이 필요한 10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이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도록 일괄 권고하였다(11직권0000400, 2011. 7. 15.). 피진정인 1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통장의 약 70% 정도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2. 1. 16. 이후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고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통·반장은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자치구로부터 공법상의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있는데, 본 진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통·반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만 3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한 것이 만 30세 미만자 또는 만 65세 초과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인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나이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일반적으로 통·반장의 업무는 주로 행정보조 업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활동성과 행정의 이해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최근 일련의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지원활동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 등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통·반장 위촉 시 상한연령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시 의회에서 나이제한을 두는 조례를 개정할 당시 회의록에서도 65세 이상이 되면 업무의 효율문제로 인해 나이제한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하지만 통·반장의 업무에 필요한 활동력과 행정에 대한 능력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특정 나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특정 나이를 초과하는 자가 통·반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력과 행정에 대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통·반장의 위촉과 관련하여 특정한 나이 이상 또는 이하로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라. 통·반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춘 자를 통·반장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해당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위촉 절차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 또는 면접심사를 통해 동장이 통·반장을 위촉하고 있으므로 서류 또는 면접심사 과정에서 통·반장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임기 만료 시 통·반장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연임여부를 판단하거나, 해촉 사유가 발생하면 동장이 통·반장을 해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아울러, 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있고, 20세 이상이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지원할 수 있으며, 25세 이상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30세 미만의 성인에게 통·반장의 업무에 필요한 활동력과 행정에 대한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30세 이상이어야 통·반장 위촉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30세 미만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피진정인이 통·반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본질적 요소에 대한 선발기준 및 절차를 더욱 엄밀하게 설정함으로써 업무수행 능력을 가진 책임자를 선발하지 않고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통·반장의 자격 기준을 설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양현아 위원 김성영

【별 지】 관련 규정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2. 「〇〇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두며,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통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반장은 해당 관할 구역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 이하인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의 신설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 추천된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기준이외로 1회를 추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보충된 통·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통·반장의 임무를 태만히 할 때(단, 주민의 의견을 수렴)
 4. 품위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임무) 통, 반장은 시장,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의 지도 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반적부 정리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 사업추진 협조
 6. 반원의 비상 연락추진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지방세 고지서 등 각종고지서(독촉장), 통지서 교부
- 제12조(편의제공) 통·반장은 시·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3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사기진작)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장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2. 통장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비, 선진지 비교 견학비 등 통장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직접 관련된 경비

2

2012. 10. 17.자 12-진정-0356500 결정 [우체국창구
업무 위탁자 선정 시 나이 제한]

【결정사항】

우정사업본부장이 우체국창구 업무 수탁자의 나이를 만 7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나이차별 행위라고 판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자 모집 시 나이 제한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취급국 운영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업무 전산화나 고종량우편물 처리 등은 우편취급국장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라고 할 수 없고 과거에도 있었던 업무인 점, 2012년 현재 우편취급국장 중 13.8%가 만 70세 이상인 점, 관계 법령상 위탁대상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할 별도 수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자 모집 시 일률적으로 나이를 제한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고령자에 대한 나이차별은 고령화를 능력소퇴나 무능력과 동일시 하고 결과적으로 유사한 연령대에 속하는 이들을 모두 능력소퇴자 혹은 무능력자로 인정하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임.
- 【2】** 피진정인은 우편취급국 위탁업무자의 나이 제한을 중앙회에서 제안했고 설명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는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계약서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절차의 정당성 여부가 차별을 합리화 할 수는 없고,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나이차별 행위이며, 고령화 시대에 국가기관인 피진정인의 나이차별은 더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조조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9조, 「우체국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7조

【진 정 인】 윤○○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우정사업본부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자 모집 시 나이 제한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취급국 운영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우정사업본부는 2009. 9. 1.에 우편취급국 설치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2013. 2.부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의 나이를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만 70세 초과자는 2013. 1. 31.까지만 근무하게 되는데, 이는 나이에 의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우편취급국은 국민편의 증진과 우정사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83년부터 3년 단위 위탁 계약을 통해 국가 우정사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우편취급국을 우체국과 동일하게 생각하므로, 전산취급이나 고중량우편물 접수 등의 직무성격을 고려한 수탁자의 연령 제한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연령제한 추진 절차 또한 2009. 6. 우편취급국의 임의단체인 중앙회(1984년 설립인가)가 연령제한을 요구함에 따라, 2009. 8. 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선정책 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에 합의한 후, 2010. 2. 1. 각 체신청과 우편취급국장 간에 만 7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한 조건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해자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우편취급국은 우체국 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창구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법인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다. 2012. 5. 현재 전국에 768개의 우편취급국이 있으며 통상 우편취급국에는 국장을 포함하여 2명 내외의 직원이 근무하고 주요 업무는 우편물 접수 시스템을 통한 우편물 접수 등이다.

나. 우편취급국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법’이라 한다)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위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가진 법인이나 개인 가운데, 위탁법 시행령 제7조(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치 및 사무실 요건,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수탁자는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되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탁법」 제9조). 「위탁법」, 「위탁법 시행령」,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우편취급국장의 나이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 피진정인은 2009. 8. 31. 우편취급국의 업무가 전산화되고 고중량 우편물 접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탁자 나이를 만 70세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시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서울체신청에 나이 제한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당시 ○○체신청은 ‘기한 내

미제출시 대상자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피진정인은 또한 2010. 11. 12. 위탁계약서 내용 중 위탁기간을 사실상 자동으로 연장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2012년까지 위탁계약 갱신 대상자 중 만 70세를 초과하여 위탁계약 갱신이 불가능한 수탁자는 계약기간을 3년(2010. 2.1.~ 2013. 1. 31.)으로 하여 일괄 위탁계약을 갱신하도록 시행하였다.

라. 피해자를 포함하여 만 70세 이상인 우편취급국장 130여 명은 2009. 12. '우편취급국(70세 정년 당사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0. 10. 26. 피진정인에게 만 70세 나이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10. 11. 30. 나이 제한에 대한 부당함을 재차 주장하는 탄원을 제기하였으나, 2012. 4. 피진정인에게 그 동안 제출한 탄원서를 폐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비대위는 2012. 4. 20. 자로 해산하였다.

마. 우체국 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정년은 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이 60세이며, 전국의 우편취급국장의 연령대별 인원은 다음과 같다 (2012. 5. 현재, 우정사업본부).

구분	법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인원(명)	117	21	122	224	178	106	768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우편취급국 업무 위탁자를 모집하면서 만 70세 초과자를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진정인은 우편취급국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 70세 초과자의 경우 우편취급국의 업무가 전산화되고 고중량우편물 접수 등에서의 어려움이 있어 직무 성격을 고려하여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업무 전산화나 고중량우편물 처리 등은 우편취급국에 고용된 직원이 수행할 수도 있으므로 우편취급국장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 할 수 없는 점, 업무전산화나 고중량 우편물은 과거에도 있었던 업무인 상황에서 2012. 5. 현재 우편취급국장 768명 중 13.8%인 106명이 만 70세 이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위탁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위탁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 평가항목을 두고 있어 업무역량을 평가할 별도 수단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자 모집 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나이차별은 고령화를 능력쇠퇴나 무능력과 동일시하는 인식에서 비롯돼, 결과적으로 유사한 연령대의 일반적 특성을 강조하여 그에 속하는 이들을 모두 능력쇠퇴자 혹은 무능력자로 인정하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데 피진정인이 우체국창구 업무 수탁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행위 또한 나이차별을 유발하는 전형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진정인은 우편취급국 위탁업무자의 나이 제한을 중앙회에서 제안했고 설명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했다는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추진절차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절차의 정당성 여부도 차별을 합리화 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 등 만 70세 이상인 당사자들 13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나이제한을 적용한 계약서 작성시 ‘을’인 피해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우체국창구 업무 수탁자의 나이를 만 70세 이하인자로 제한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나이차별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따라 고용, 재화·용역, 시설 이용 등에서 일률적인 나이 제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기관인 피진정인의 나이차별은 더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김성영 위원 강명득

【별 지】 관련 규정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창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주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위탁업무의 종사자) ① “위탁업무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사람은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6. 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8.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0.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7조(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제7조 관련)

항목	세부 항목	가중치	내용별 (가중치)	비고
위치적 여건 (40)	가.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	10	3km 이상: 10 2.5km 이상 3km 미만: 8 2km 이상 2.5km 미만: 6 ∴	지도상 직선 거리
	나. 신청장소 주변 여건	10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상가지역: 8 ∴	
	다. 이용가능 인구수	10	4만 5천명 이상: 10 4만명 이상 4만 5천명 미만: 9 3만 5천명 이상 4만명 미만: 8 3만명 이상 3만 5천명 미만: 7 ∴	
	라.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 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사무실 요건 (30)	가. 이용 편의성	10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	10	45㎡ 이상: 10 40㎡ 이상 45㎡ 미만: 8 35㎡ 이상 40㎡ 미만: 6 ∴	전용 면적
	다. 건물의 소유 상태	10	본인 건물: 10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5	
업무수행능력(30)		3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실성, 발전 성 등을 종합 평가	
합계		100		

3 2012. 10. 17.자 12-진정-0426900 결정 [지하철역 운영 수탁자 모집 시 나이 제한]

【결정사항】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역 운영 수탁자 모집 시 나이 제한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 운영 수탁자 지원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은 역 운영의 안정성을 이유로 수탁자의 나이를 제한하였다고 하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역 운영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므로 나이 제한이 아니더라도 역 운영의 안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단은 마련되어 있으므로 만 60세를 초과한 사람을 모두 무능력하다고 보고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 피진정인은 동종업체와의 형평성 및 만 60세인 공사 직원의 정년을 감안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종업체와의 형평성은 차별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유사 업무를 위탁하는 동종업체 간에 수탁자의 지원을 제한한 나이가 각기 다른 점은 나이제한이 합리적 판단보다는 자의와 사회통념에 바탕하고 있음을 반증함. 또한 공사 직원의 정년은 업무능력 외에도 호봉 및 연금 등 다양한 급부 관계를 반영하여 결정됨을 고려하면 고용관계가 아닌 위탁관계에 있어 공사 직원과 상호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바,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나이차별 행위라고 판단되며, 특히 고령화 시대에 공공기관인 피진정인의 나이차별은 더욱 개선이 필요함.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도시철도공사 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역 운영 수탁자 모집 시 나이 제한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 운영 수탁자 지원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도시철도공사는 2012. 5. 역 운영 수탁자(책임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을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나이에 의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12. 5. 11개 역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하인 자로 나이 자격을 제한하였다. 이는 2003. △△△역 화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등 역 운영의 특수성 및 수탁자 업무수행기준을 고려하고 동종업체와의 형평성 및 만 60세인 공사 직원 정년 감안, 기타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 등을 위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시철도공사는 ○○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1995. 11.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약 2천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지하철 역 운영 위탁은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과 민간위탁 등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5년부터 도입하였고, 2012. 8. 현재 총 56개 역 가운데 16개 역을 업무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역 운영 수탁자의 주요 역할은 일반 역의 역장에 준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주요 대행 업무는 역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및 관리, 승차권(교통카드 포함) 개·집표 및 운수수입금 관리, 역사시설물 유지관리, 역 구내 승객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기타 역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등이다. 역당 약 10명이 근무하고 계약기간은 2년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2. 4. 20. 수탁자 선정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 '2012년 위탁역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2012. 5. 18. '2012년 위탁역 운영계획(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2. 5. 위탁계약 만료가 도래하는 11개 역의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전년도까지 공고일 현재 만 61세이던 기준을 만 60세 이하인 자로 변경하여 나이 자격을 제한하였다.

다. 역 운영 수탁자 선발방법은 제1차 서류심사에서 모집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제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선발한다. 역 운영 수탁사업자 선정 기준은 서류심사에서는 경력(30점), 자기소개(10점), 역 운용계획(60점)을 평가하고, 면접심사에서는 업무능력(40점), 안정성(30점), 발전성(30점)을 평가한다.

라.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역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 수는 2003.~2011.까지 9년 간 총 235건으로 연 평균 26건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총 23명으로 연 평균 2.5명에 해당한다.

마. 타 광역시의 지하철 역 운영 수탁자의 나이제한은 ◇◇메트로 만 59세, ▽▽도시철도공사 만 60세, ◎◎도시철도공사 만 61세이며 피진정인 소속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이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지하철 역 업무 위탁자를 모집하면서 만 60세 초과자를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진정인은 역 운영 수탁자의 나이를 제한한 이유로 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등 역 운영의 특수성을 들고 있다. 지하철 역내 안전사고는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역사에서 지난 9년 간 발생한 사고 건수를 보아도 적지 않으며, 지하철 역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역사 운용 방침 또한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탁 역의 관리자인 수탁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 안정성 관련 다양한 평가방법과 선발기준 마련 또한 피진정인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그럼에도 지하철 역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역 운영 수탁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헌법」 제 11조에서 보장한 평등권 보호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고령자에 대한 나이차별은 고령화를 능력쇠퇴나 무능력과 동일시하는 인식과 유사한 연령대의 일반적 특성을 강조하여 그에 속하는 이들을 모두 능력쇠퇴자 혹은 무능력자로 인정하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 피진정인은 역 운영의 안정성을 이유로 만 60세 이하로 수탁자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함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나이를 제한한 것은 전형적 고정관념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은 만 60세를 초과하는 연령대에 속한 이들을 모두 역 운영 안전관리에 무능력한 자로 보고 역 운영 수탁자 모집 시 이들을 배제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서 역 운영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두고 있어 나이 제한이 아니더라도 역 운영

의 안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진정인은 또한 동종업체와의 형평성 및 만 60세인 공사 직원 정년을 감안하여 역 수탁 운영자의 나이를 제한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종업체들과의 형평성은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유사한 업무를 위탁하는 동종업체간에 수탁자의 지원을 제한한 나이가 각기 다른 점은 나이 제한의 근거와 기준이 합리적 판단보다는 자의와 사회통념에 바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공사 직원의 정년을 고려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정년의 경우 업무능력 외에도 호봉 및 연금 등 다양한 급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관계가 아닌 위탁관계에서 수탁자의 근무 가능 연령을 공사 직원과 상호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이 지하철 역 운영 수탁자 모집 시 만 60세 초과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나이차별 행위라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따라 고용, 재화·용역, 시설 이용 등에서 일률적인 나이 제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인 피진정인의 나이차별은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김성영 위원 강명득

4 2012. 12. 26.자 12-진정-0397900 결정[○○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검침민간위탁 관리책임자 나이 제한]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상·하수도 검침 등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중 검침민간위탁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에서 나이를 ‘만 65세 미만’으로 한 내용의 개정을 권고

【결정요지】

비리 근절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일견 납득할 수 있으나, 나이의 다소에 따라 비리 발생률이 달라진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개정 내용 중 관리팀장의 최대 근무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장기간 근무로 인한 비리의 발생의 요인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바, 달리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PDA 활용능력이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한다면, 그 활용능력을 팀장의 자격요건으로 정하면 족하므로 굳이 나이를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예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진 정 인】 1. 박○○ 2. 오○○ 3. 황○○ 4. 김○○

【피진정인】 ○○광역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상·하수도 검침 등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중 검침 민간위탁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에서 나이를 ‘만 65세 미만’으로 한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광역시 지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고, 퇴직 후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검침 민간위탁회사에 관리자로 채용되어 근무해왔다. 동 사업본부는 종전까지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상수도 관리경력 3년 이상 또는 요금부서 5년 이상 재직자’로 하다가 2012. 5. 1.자로 자격요건을 ‘○○시 공무원 20년 이상 재직자 중 상수도 사업본부 요금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 연령은 65세 미만, 총 근무경력은 3년’으로 변경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진정인들은 2012년이나 2013년을 끝으로 그만두어야 한다. 검침민간위탁 관리책임자의 연령을 만 65세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 중 상수도의 검침업무는 「상·하수도 검침 등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이하 “상·하수도 검침 위탁업무지침”이라 함.)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의 종사원이 공무원으로 재직 시 담당할 업무를 퇴직한 후에도 계속 수행함으로써 수요가(需用家)와 유착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실제 2011. 7.에 종사원의 계량기 조작 및 검침부 허위 기재로 수도 사용량을 고의로 누락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이 사건 등을 배경으로 요금분야 비리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관리책임자 자격기준과 근무기간 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수도 업무조정위원회 심의와 검침민간위탁 팀장 자격변경안 회의를 거쳐, 연령 및 근무기간 제한규정을 확정하였다. 이 안은 ○○공무원노동조합 상수도사업본부지회에 의견을 조회하고 검침용역사 대표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견이 없어 2012. 5. 1.자로 시행하게 되었다.

나. 상하수도 검침관련 업무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책임자는 지역 실정에 밝아야 하고 상하수도 관련 업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근무 및 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휘·통솔력과

경륜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시 공무원 20년 이상 재직’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검침업무는 단순히 수도 계량기 검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기 고장여부, 옥내누수, 상하수도 업종 확인 등 부수적인 업무와 요금 민원도 처리해야 하고, 2012. 8. 1.부터 피디에이(PDA, 개인휴대 정보통신 단말기) 검침 시스템의 전면 시행 등으로 변화하는 업무 형태에 대응하여야 하므로 관리책임자의 나이를 만 65세로 제한하였다.

다. 이와 같은 제한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연령기준을 불가피하게 정한 사항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에서 허용하는 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법률 제19조에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 65세로 상한 연령을 정한 것이 관련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전화조사보고, 진정인들 전화조사결과보고, 2011년 제1차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조정위원회 상정안건 제출보고, 검침민간위탁 팀장 자격 변경안 회의개최 결과보고 및 회의록, 검침위탁팀장 자격 변경안 용역사 대표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및 회의록, 검침 등 민간위탁 용역 제규정 일부 개정 관련 수탁사 합의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광역시장은 2011. 12. 26.자로 ○○○○ 검침 위탁업무 지침 중 일부를 개정하여 2012. 5. 1.자로 시행하였는데 동 지침의 팀장자격 변경내용을 보면, 개정 전에는 “간접종사원 중 관리책임자는 상수도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요급부서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간접종사원 중 관리책임자는 ○○광역시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으로 요급부서 근무경험이 1년 이상이고, 연령은 만65세 미만인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총 근무기간은 3년까지로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총무팀장, 재무팀장, 기획예산팀장 및 일부 사업소장이 참석한 2011. 8. 25.자 검침민간위탁 팀장 자격 변경안 회의록을 보면, 팀장자격 변경의 이유로 “상수도 경력자를 채용하여 퇴직 공무원에게 취업기회를 넓게 제공해주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2011. 10. 14.에 있었던 검침민간위탁 팀장 자격 변경안 용역사 대표 회의록을 보면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장이 회의에 참석한 용역사 대표들에게 개선안의 제정배경의 이유를, “첫째 퇴직공무원이 시 산하 공사·공단 취업시 근무기준 3년 재직과 균형유지가 필요하고, 둘째 인사방침의 변경으로 상수도본부 산하 직원이 시와 인사교류가 됨으로써 폐쇄적인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된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으며, 셋째 팀장 무기한 장기근속으로 인한 퇴직자의 근무기회가 없어 순환이 되지 않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진정인 1은 2008. 6. 30.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으로 명예퇴직 후 2012. 4. 1.부터 현재까지 ○○사업소의 관리팀장으로, 진정인 2는 2006.말 ○○사업소장으로 정년퇴직 후 2011. 4. 1.부터 현재까지 ○○사업소 관리팀장으로, 진정인 3은 2008.말 ○○사업소장을 명예퇴직 후 2011. 5. 6.부터 현재까지 ○○사업소 관리팀장으로, 진정인 4는 2008. 12.말 ○○사업소에서 명예퇴직 후 2011. 9. 1.부터 현재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에서 관리팀장으로 각각 재직 중이다.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는 12개의 사업소가 있으며, 각 사업소는 검침업무와 관련하여 민간 위탁업체와 1년씩 계약을 맺고 있으며 위탁업체의 관리팀장은 모두 전직 ○○광역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민간위탁 검침 관리책임자의 자격을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진정인은 2011. 7. 발생한 공무원과 위탁업체 직원들의 비리가 위탁업체 관리팀장이 모두 전직 공무원으로 관리팀장의 근무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비리근절 개선대책의 하나로 근무연한 및 나이를 제한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리 근절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일견 납득할 수 있으나, 나이의 다소에 따라 비리 발생률이 달라진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개정 내용 중에 관리팀장의 최대 근무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장기간 근무로 인한 비리의 발생의 요인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바, 달리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 아울러 피진정인은 2012. 8. 1.부터 피디에이 기기를 사용한 검침이 개시되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업무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나, 65세가 넘으면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적응이나 활용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디에이 등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은 경험이나 노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의 상식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다. 만약 피디에이 활용능력이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한다면, 이의 활용 능력을 팀장자격 요건으로 하면 족하고 굳이 나이를 제한하여 사람의 능력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2011. 8. 25.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등이 참석한 회의와 같은 해 10. 14. 동 본부 경영관리팀장이 각 용역사 대표

자와의 회의에서 지침의 개정 배경 이유를 설명하면서 ‘퇴직자의 산하기관 근무 시 근무기간 균형, 폐쇄적인 자격요건의 완화, 그리고 퇴직자의 근무기회 확대’ 등의 이유를 든 것을 볼 때, 비리근절과 정보통신기기 활동능력이 필요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민간위탁 ○○○○ 팀장의 나이를 만65세로 제한한 것은 비리의 근절 등 목적을 위해 일견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 65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며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김성영 위원 강명득

5

**2012. 12. 26.자 12-진정-0704300·12-진정-0782500
(병합) 결정[아파트 동 대표자 선출 시 나이 제한]**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아파트 동 대표자 피선거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단의 피선거권을 특정 나이의 입주자로 제한하면서 실질적으로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주택법」 제44조,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제57조,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0조·제20조

【진 정 인】 1. 양○○ 2. 김○○

【피진정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아파트 동 대표자 피선거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 정 요 지

진정인 1은 ○○아파트 노인정 회장이고 진정인 2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피진정인이 2012. 9. 중순부터 30세 미만 또는 65세 초과자는 아파트 동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동 대표자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및 참고인 의견

가. 피진정인 주장 요지

시설과 장비가 첨단화되고 입주민 간 견해차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올바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 통·반 설치조례」의 통·반장 자격조항을 참고하여 연령을 제한하게 되었다. 아파트 입주민들도 이에 대하여 50% 이상 찬성하였고 과거 노인회 연령대 위주 대표단이 관리비를 노인회 경비 등에 사용하는 등 부실업무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바, 이는 연령에 따른 차별 목적이 아니라 좀 더 활동적인 자를 뽑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나. 참고인 의견(○○시청 주택과)

특정 나이로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신고한다면 「주택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므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아파트 관리규약 변경시 신고의무가 없고 시도지사의 관리대상이 되지 않아 아파트 관리규약이 주택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아파트는 134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내용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참고인 의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아파트는 1개동 총 20층의 134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동 대표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대표자 5명이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이사 2명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으로 임명되며, 현재 대표단의 임기는 2013. 2.말까지이다.

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8월 정기회의'가 2012. 8. 17. 개최되었고, 대표단 5명이 전원 출석한 위 회의에서 '대표단 회장, 총무, 감사, 이사의 나이는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하도록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공동주택관리규약'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피진정인은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입주민의 찬반의견을 물어보기 위해 2012. 9. 10.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찬반의견을 경비실로 제출받거나 동 대표가 서명을 받도록 한 결과 전체 134세대 중 75세대(56.0%)가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2012. 9. 17. 피진정인은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가 있었다는 결과를 공지하였다.

다. ○○아파트 동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제안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관리비 등을 횡령할 경우 등에는 해임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이며, 아파트 입주자는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다.

라.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하여 주택법령 및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지만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하여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 시 나이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아파트는 총 세대수가 134세대인 아파트로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법령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주택법령의 취지에는 부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단 회장, 총무, 감사, 이사의 나이는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피진정인은 시설과 장비가 첨단화되고 입주민 간 견해차도 개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올바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표단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령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나이 이하의 자만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단으로서 업무를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전문적 능력과 활동력 등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지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특정 나이를 초과하는 자가 동대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하였을 경우를 포함한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관리비 횡령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임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과거 노인회 연령대 위주 대표단이

관리비를 노인회 경비 등에 사용하는 등의 부실업무가 있어 연령제한이 필요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현행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은 입주자로서 재산권 행사의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점, ○○아파트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 대표자 자격 제한에 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과도한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단의 피선거권을 특정 나이의 입주자로 제한하면서 실질적으로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김성영 위원 강명득

【별 지】 관련 규정

1. 「주택법」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2.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 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 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4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3.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

4.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7조(동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자의 출마자격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 건물 내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건물등기부 및 호적서류등을 통해 확인된 배우자(제3조 제1호) 중 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구분소유자 및 배우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배우자일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대표회장에 출마하려면 위임장을 공증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당 공동주택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 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
 7. 당 공동주택에 각종 공사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임. 직원
 8. 영 제5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자
-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단 회장, 총무, 감사, 이사의 나이는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한다.



제 4 장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 기간제교원의 맞춤형복지 제도 적용대상 제외 등

[4건]

1 2012. 4. 27.자 11-진정-0181700 결정 [기간제교원의 맞춤형복지 제도 적용대상 제외]

【결정사항】

○ ○광역시교육감에게 맞춤형복지 제도 설계·운영 시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기간제 교원은 계약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정규 교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4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여 동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기간제 교원의 업무가 상시적·지속적이지 않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이 모든 기간제 교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님.
- 【2】**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맞춤형복지 제도는 정규 교원뿐 아니라 1년 이상 근로한 자를 포함하며, 제도의 취지가 사기진작과 근로 의욕 고취에 있고 보수지침에서 선량한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복지제공 노력을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적용 대상의 판단에 있어 기간제 교원이라는 신분만 보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 【3】** 따라서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 교원을 일률적으로 제외한 행위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참조조문】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2011년도 맞춤형복지 제도 업무처리 지침」,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 제도 업무처리 지침」

【진 정 인】 서○○

【피진정인】 ○ ○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주 문】

○○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맞춤형복지 제도 설계·운영 시 1년 이상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정규 교원인데, ○○광역시교육청은 맞춤형복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교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하 ‘복지규정’이라 한다)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보수지침’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을 맞춤형복지 제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외 복지규정 제3조 3항에서 운영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2011(학)년도 학교회계 직원 맞춤형복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학교회계직원을 맞춤형복지 제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다만, 기간제 교원은 담당하는 업무가 학교회계 직원과 달리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임금 및 임금 이외의 금품지급(각종 수당지급 여부 포함)과 관련해 차등을 두는 내역은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 제도, 보육수당이 있으며, 그 외 임금 및 임금 이외의 금품 지급은 정규 교원과 차이가 없다.

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의 교원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1년도 ○○광역시교육청 교원현황(4. 1. 현재)

구분	전체 교원(명)			정규교원(명)			기간제 교원(명)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공립	9,349 (100%)	4,997 (100%)	3,862 (100%)	9,349 (100%)	4,890 (98%)	3,716 (96%)	0	107 (2%)	146 (4%)
사립	84 (100%)	1,279 (100%)	4,718 (100%)	82 (98%)	1,079 (84%)	3,941 (84%)	2 (2%)	200 (16%)	777 (16%)
계	9,433 (100%)	6,276 (100%)	8,580 (100%)	9,431 (100%)	5,969 (95%)	7,657 (90%)	2 (0%)	307 (5%)	923 (11%)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맞춤형복지 제도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다. 관련하여 복지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지침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가능한 선량한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복지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피진정인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보조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로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가운데 2011. 3. 1. 현재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교회계직원(육아휴직자도 포함)을 맞춤형복지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도 2011. 1. 1. 현재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는 학교회계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러나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운 직종 및 한시적 또는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회계 직원이나 시간 강사, 원어민 강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방과후 강사, 공익근무요원, 용역회사에서 채용된 직원 등과 더불어 기간제 교사는 맞춤형복지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다. 기간제 교원은 원칙적으로 정규 교원의 휴직, 직무이탈, 특정 교과외 한시적 담당, 정규 교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정규 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시험 없이 한시적으로 임용되거나(「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교사직을 수행하는 등 정규 교원과 큰 차이 없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피진정인 관할 지역 일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의 임용 기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진정인 관할 일부 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현황(2012. 4. 현재)

형태	학교명	① 전체 교원	② 기간제 교원	③ 1년 이상 근무 기간제교원	④ 비율 (③/②)×100
공립	A	60	5	1	20%
	B	86	8	3	40%
	C	74	19	5	26%
	D	93	18	2	12%
	E	34	13	13	100%
	F	59	13	8	62%
	G	70	7	0	0%

사립	H	64	20	16	80%
	I	75	23	14	61%
	J	75	22	10	45%
	K	51	7	1	15%
	L	67	18	11	61%
	M	80	18	5	28%
	N	66	22	13	59%
※ ① 전체교원 : 정규교원 + 기간제 교원 ※ ④ 비율 : 기간제 교원 중 2012. 4.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교원 비율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외 금품지급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맞춤형복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교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진정인은 기간제 교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워 맞춤형복지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은 기본적으로 정규 교원의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는데, 계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시적 교과 편성 시 해당 교과목을 전담하거나 담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정규 교원과 유사하게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기간제 교원은 계약기간이 1개월부터 1년까지 다양하게 운용되며, 일부 기간제 교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이 모든 기간제 교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맞춤형복지 제도는 정규교원뿐만 아니라 학교회계직원은 물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 일부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도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더욱이 맞춤형복지 제도의 취지가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 의욕 고취에 있고 보수지침에서 선량한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복지제공 노력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데 있어 단지 기간제 교원이라는 신분만 보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맞춤형복지 제도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 교원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외한 행위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외 금품지급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양현아 위원 김성영

【별 지】 관련 규정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③ 운영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맞춤형복지 제도업무 처리기준

3.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적용(영 제3조 제3항)

- ‘공무원이 아닌 자’라 함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예시 : 별정우체국 직원, 청원경찰, 상시근무 일용직 등
- 운영기관의 장은 자체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맞춤형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적용의 필요성, 적용범위 등에 관해서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근무예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의한 견습직원은 「공무원 임용령」 제23조에 의한 시보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가능한 선량한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복지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2011년도 맞춤형복지 제도 업무처리 지침」

4. 적용 범위

가. 적용대상

-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광역시교육감 소속 국가공무원 포함)
- ○○광역시교육감 관할 사립학교 교직원

5.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 제도 업무처리 지침」

1. 적용 대상 직원의 범위(적용대상 기준)

○ 학교회계직원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로서 2011.03.01.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학교회계직원(※육아휴직자도 동일하게 적용)
※ 교육행정기관(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도 2011. 1. 1. 현재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는 학교회계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2. 적용 제외 대상

- 2011.3.1.현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학교회계직원(단,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011.1.1. 기준)
-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운 직종 및 한시적 또는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회계직원
- 국립학교, 사립 초등학교, 사립 유치원 등 재정지원 비 대상 학교
-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원어민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수준별이동수업 강사, 방과후강사, 공익근무요원, 용역회사에서 채용된 직원 등
※ 타 학교로 이동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신규채용에 해당되므로 계속근로에 해당되지 않음

2

2012. 4. 27.자 11-진정-0472600 결정 [사도교육원 운영 시 편입학 학생에 대한 차별]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사도교육원에 입사하는 편입학 학생이 의무 교육과정 이수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사도교육원 운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사도교육원에 입사하는 편입학 학생에게 생활관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연속 학기 입사를 불허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2조,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제50조·제61조·제82조·제83조·제84조,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규정」 제2조·제7조·제9조,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13조

【진 정 인】 강○○

【피진정인】 한국교원대학교총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사도교육원에 입사하는 편입학 학생이 의무 교육과정 이수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사도교육원 운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년에 한국교원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이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신입학 학생의 경우 4개 학기를, 편입학 학생의 경우 2개 학기를 생활관인 사도교육원에 입사하여 이수해야 하는 사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입학 학생에게는 국비를 지원하면서 편입학 학생에게는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4개 학기를 연속 입사하는 신입학 학생과 달리 편입학 학생은 3학년·4학년 1학기 또는 3학년·4학년 2학기로 나누어 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편입학 학생은 학칙 및 내부규정에 따라 사도교육과정 1년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희망 입사생으로 분류되어 생활관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 편입학 학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2학년까지 생활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동 설치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일반회계에서의 급식비도 1, 2학년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편입학 학생을 지원하기 어렵다.

나. 편입학 입시요강에 사도교육원 희망입사대상자로 분류되어 생활관비를 납부한다는 것을 미리 공고하여 편입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동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 편입학 이후에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2013년도 일반회계에 편입학 학생들의 1년 간 생활관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고 향후 신입학 학생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다. 현재 3학년 재학생이 수용인원 부족으로 사도교육원 입사가 힘든 사정을 감안하여 재학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편입학 학생의 입사 시기를 한 학기로 제한하고 나머지 학기는 4학년에 이수하게 하였다. 편입학 학생이 4학년 때 1년 간 사도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한다면 2개 학기 연속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내용, 한국교원대학교의 2011학년도 편입학 모집 요강 및 특전 및 장학 제도,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대학교는 1985. 3.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교원 종합양성 대학교로서, 유치원·초등·중등 교사를 통합 교육하는 교육자 양성기능과 더불어 현직 교원연수, 교육 연구 등 3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실천적 인성 교육을 통해 교실 친화적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졸업 필수요건이므로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할 수 없다. 신입학 학생은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연속 4개 학기 동안 사도교육원에 입학하고, 편입학 학생은 3학년부턴 4학년까지 매 1학기 또는 매 2학기 등 2개 학기 동안 사도교육원에 입학하여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피진정인은 사도교육원 입학 자격을 의무입사생과 희망 입사생으로 구분하는데 의무입사생은 피진정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은 1·2학년 학생 전원이고 희망 입사생은 편입학 학생과 사도교육과정을 마친 3·4학년 학생 등이다. 의무 입사생에게는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라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2년 동안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희망 입사생에게는 생활관비를 징수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2009년부터 편입학 모집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학 편입학 입학요강에서 합격자 중 입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자로 한 기숙사

입사안내에 따르면 최종 등록 후 개별적으로 입사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편입학자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재학생들의 호실 배정이 이루어지므로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입사가 가능하고 학기당 8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편입학 학생의 수는 2009학년도는 일반편입 19명, 학사편입 28명, 2010학년도는 일반편입 17명, 학사편입 15명, 2011학년도는 일반편입 10명, 학사편입 5명 등이다.

마. 피진정인은 일반회계에 1·2학년 편제 정원인 1,170명을 기준으로 급량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희망 입사생으로부터 식비와 관리비를 징수 받아 기성회계로 관리하고 있다. 사도교육원의 방 배정은 의무입사생인 1·2학년 학생을 1순위로 배정하고, 4학년 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 전원을 2순위로 배정하며, 3학년 학생은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데 희망자의 약 60%정도가 포함된다. 편입학 학생의 경우 편입학 정원의 50%를 미리 확보하여 신학기에 배정하고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진정인이 사도교육원 입사와 관련하여 편입학 학생을 희망입사자로 분류하여 생활관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2개 학기 연속해서 생활관을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가. 피진정인은 학칙 등 내부규정에서 사도교육과정을 졸업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편입학 학생에게도 1년의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의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생활관에 입사해야 하는 조건은 편입학 학생과 신입학 학생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입학 학생을 의무입사생이 아닌 희망입사생으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아울러,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은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 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2년 동안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편입학 여부를 불문하고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사도교육원에 입사하는 피진정 대학교 학생은 누구든지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진정인의 답변과 같이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2학년까지만 지원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없다.

나. 피진정인은 편입학 학생이 편입학을 통하여 교사가 될 수 있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교육원 입사 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편입학 학생은 피진정 학교가 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것임에도 이를 혜택으로 보는 것 자체가 편입학 학생에 대한 편견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진정인은 편입학 요강에 사용료를 납부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 편입학 학생이 이를 미리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편입학 학생이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편입학 학생에 대한 생활관 사용료 징수의 차별 여부 판단의 본질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한편, 편입학 학생들은 매 1학기 또는 매 2학기 등으로 생활관 입사 시기가 나뉘고 미이수 시 재이수 기회가 제한되는데 이로 인해 학기마다 개별적으로 주거를 찾아야 하고 정규 학기를 마치고도 졸업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신입학 학생에 비하여 편입학 학생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3학년 재학생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편입학 학생이 의무적으로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4학년 1학기와 2학기를 연속해서 입사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이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사도교육원에 입사하는 편입학 학생에게 생활관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3학년 연속 학기 입사를 불허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편입학 학생을 의무 입사생에 포함하여 이들에게 국고를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학 학생의 급량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입사시기의 단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양현아 위원 김성영

【별 지】 관련 규정

1.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제12조(학비보조 등) ②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 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생활관비와 피복비의 지급기간은 2년에 한한다.

2.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제50조(교육 과정의 이수) ⑤ 학생은 1, 2학년(2년)동안 의무적으로 사도교육원의 기숙시설(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매학기 사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학생은 1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1조(졸업과 학위)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통과된 자로서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1)의 졸업증서에 의거 교육학사 학위를 수여하되, 학위증서에는 반드시 전공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2조(사도교육) 학교 내에서 공동생활을 통하여 사회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인화단결, 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여 교사로서의 인격 도야와 협동정신을 함양하고 교직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의 선도자로서의 기틀을 닦기 위하여 사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3조(생활관 입사 및 숙식비) ① 학생이 1, 2학년(2년)동안 의무적으로 생활관에 입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총장은 교무회의를 거쳐 이를 유보시킬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유보가 결정된 학생은 수업연한 내에 사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생활관에 입사하여 사도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식비를 2년 동안 국고에서 지급한다. 단, 제1항에 의하여 생활관 입사가 유보된 학생이 사도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숙식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되, 사도교육을 미이수한 학생이 재 이수할 경우에는 숙식비를 따로 정한다.

④ 사도교육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4조(피복 지급) 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관에 입사하여 사도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피복의 종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규정」

제2조(직무) 사도교육원에서는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한 통합인성교육의 체계적 실천과 인격도야의 증진 및 학생의 면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무 입사생에 대한 사도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제7조(교육과정) ① 원장은 교육목표에 의거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② 교육평가는 원장이 정하여 실시하되 평가 결과는 “P” 등급과 “F” 등급으로 구분하며 “P” 등급은 이수로 인정하고 “F” 등급은 이수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제9조(입사) ① 본교에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생활관에 입사하여 제12학년 제학기간 중 사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경비) ② 희망 입사자의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

4.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규정 시행세칙」

제3조(교육 구분과 대상) 사도교육원 교육은 의무입사생을 대상으로 한 사도 교육과정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교직적성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3조(입사자격)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입사생 : 본교에 입학허가를 받은 제1·2학년생 전원

2. 희망입사생

가. 본교 제1·2학년의 사도교육과정을 마친 제3·4학년으로서 입사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사등록을 마친 자

나. 본교에 편입학한 자로서 입사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사등록을 마친 자

3 2012. 10. 17.자 11-진정-0644700 결정 [타 시도 전출 교원 선발 시 국가유공상이자 부양자 차별]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타 시·도 전출 교원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 부양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우 장애정도가 같은 국가유공상이자 부양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는 중복수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전출 교원 선발기준에서 장애인 부양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시 국가유공상이자 부양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진정인의 아버지는 장애인 1급 증명서 대신 상이등급 판정 및 장애 비교표 등을 통해 장애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장애 1급 장애인의 부양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상이자의 부양자를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2】** 따라서 피진정인이 타 시·도 전출 희망자 중 장애등급 1급 장애인 부양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시 증빙서류로 장애인 1급 증명서만을 요구하여 1급 수준의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상이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육감

【주 문】

피진정인에게, 타 시·도 전출 교원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 부양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우 장애정도가 같은 국가유공상이자 부양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타 시·도 전출 교원 선발 시 1순위 기준을 '장애등급 1급 장애인 부양자'로 정하고 있다. 진정인의 아버지는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상이자인데,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1급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장애등급 1급 장애인 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진정인을 5순위로 분류하였다. 이는 동일한 장애정도를 갖고 있음에도 장애등급과 상이등급을 인정하는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 있는 국가유공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길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및 관계인의 의견

가. 피진정인 주장 요지

인사관리세부기준에서 장애등급 1급 장애인 부양자를 1순위로 정한 이유는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급 장애인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가능하고 그 이외의 방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장애등급과 상이등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달리 정하고 있어 상이등급을 장애등급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국가유공상이자에게 혜택이 중복 지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인 의견(국가보훈처장)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하여 장애인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국가보훈처의 지원과 장애인 복지지원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진정인의 아버지는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상이자인데 이는 지체 장애 1급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이 타 시·도 전출 교원 선발 시 진정인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참고자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국가보훈처에서 제출한 국가유공상이자와 장애인의 장애분류체계 비교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청은 별거 교원 등의 고충 해소를 통해 교직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도 간 전출 및 교환(파견) 근무 추진 계획을 시행하는데, 대상은 ○○○ 공립학교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교원 중 타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이다. 전출 순위는 전출 대상자가 장애등급 1급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에 1순위를 부여하고,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및 가족으로서 부부 별거자이면 2순위, 부부 별거자는 3순위, 부양책임이 있는 직계존속과 별거중인 경우 4순위, 기타 일반희망자를 5순위로 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전출대상자 선발 시 1순위인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1급 장애인 증명서(등급 표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장애등급 1급 ~ 6급)으로 이중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라도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국가유공상이자와 장애인의 장애분류체계 비교표’에 따르면 진정한 아버지는 상이등급 1급 1항 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상이자로, 장애의 정도는 지체 1급 장애에 해당한다.

라. ○○광역시, ○○○도, ○○○도 교육청 등 일부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 전출 기준에서 국가유공자 및 가족을 1급 장애인 부양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타 시·도 교육청 전출 교원을 선발할 때 장애인 부양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국가가 인정하는 동일한 장애정도를 갖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상이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피진정인은 장애등급과 상이등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상이등급을 장애등급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의 부처 간 행정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중복수혜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지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를 불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순위를 부여한다는 전출세부기준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에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또한, ○○광역시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 전출 교원 선발기준에서 장애인 부양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시 국가유공상이자 부양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진정인의 아버지 경우 현행법상 장애인 1급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판정 및 장애 비교표 등을 통해 장애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장애등급 1급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상이자를 부양하는 자를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타 시·도 전출 희망자 중 장애등급 1급 장애인 부양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장애인 1급 증명서의 제출만을 요구하여 장애등급 1급 수준의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상이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김성영 위원 강명득

【별 지】 관련 규정

1.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제19조(교사의 시·도간 교류)

② 전출 순위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1. 전출 순위

- 가. 1순위: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배우자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존속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비속은 미혼자녀에 한함)
- 나. 2순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 5조 해당자로서 배우자가 전출 희망시도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경우의 부부별거자
- 다. 3순위: 부부별거자
- 라. 4순위: 직계존속별거자
- 마. 5순위: 일반희망자

2.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2012. 11. 30.자 12-진정-0041400 결정 [건설설계분야 위원선임 시 전문가 진입 제한]

【결정사항】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건설기술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 위촉 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대학’ 이외의 학교에 재직 중인 기술 관련 학과 교수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위촉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임 시 「고등교육법」 제2조 중 제1호 대학의 기술 관련 교수로만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목적이 책임성, 전문성, 공정성을 갖춘 심의위원의 위촉을 통해 일괄·대안입찰에서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산업대학·기술대학 등 각 대학의 재직 중인 교수에 대한 업적, 경력, 외부위원 활동 등 개인의 역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제한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조문】

「고등교육법」 제2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국토해양부 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설계심의분과위원 위촉 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대학’ 이외의 학교에 재직 중인 기술 관련 학과 교수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위촉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건설기술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시 공무원, 대학 교수, 공기업·공공기관의 임원급, 정부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 등 특정 조직의 직급과 직위를 기준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선임 시 학위, 공인된 기술 등 검증된 전문능력을 보지 않고 공인된 능력이 아닌 특정 조직의 소속, 직급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최소한의 직장, 직급요건 조차도 갖추지 않고 기술자격 등으로만 규정한다면 위원의 전문성은 확보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행 제도의 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매우 곤란할 수 있다. 심의위원 선정 후 그 명단을 외부에 완전 공개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건설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설계심의제도가 업계의 로비전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위원자격에 직급 요건과 함께 학위, 각종 기술자격 등을 갖춘 자(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진 5급 기술직 공무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 등)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

나. 학계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는 대학 외에도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각 대학의 목적을 감안하면 대학에 종사하는 교수는 각 학교의 목적에 적합한 자가 그 직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대학의 교수가 심의위원으로 요구되는 자격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답변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괄·대안입찰은 국가 등(공기업, 준정부기관 등과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됨)에서 300억 원 이상 복합공정의 대형공사 중 고난도, 고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를 발주할 경우 시행하는 입찰방법으로 입찰자가 입찰가격과 설계도서를 같이 제출하고, 제출된 가격에 의한 가격점수와 설계도서를 평가한 설계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방법이다.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 일괄·대안입찰공사 등의 설계평가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위원회이고, 설계심의분과위원은 정부, 지자체 및 공사·공단에서 일괄·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의뢰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임위원에 해당하며, 안건은 입찰자(보통 3~4개 컨소시엄, 15~25개 건설업체 참여)가 제출하는 설계도서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여 설계점수를 산출하고 설계도서의 결함이나 그 정도를 판단하여 설계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당시 부패방지위원회)는 2002. 12. 6.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 조달청 등에 턴키공사 입찰제도 개선 권고를 하였다. 권고 내용은 입찰과정에서 설계심의를 둘러싼 부당한 로비와 심의의 전문성 문제, 입찰가격 담합으로 인한 비경쟁, 과점구조 및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도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설 설계심의기구의 설치, 심의과정과 내용의 공개 및 응찰업체 간 가격 경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내용 중에 상설설계심의기구의 설치를 보면 과거 발주청에 위임하고 있는

턴키공사의 설계심의를 상설설계심의기구(중앙단위)를 설치하여 집중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설계심의를 전문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건설관련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은 전문 분야별로 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 발주기관의 기술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설계심의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다.

라. 피진정인은 2010년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했고 2012. 1. 31. 기술직 공무원, 공기업 직원, 정부 연구기관, 대학 등에 재직 중인 제2기 설계심의분과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제2기 설계심의분과위원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기술직 공무원 29명(30%), 공기업 직원 30명(31%), 정부 연구기관 직원 3명(3%), 대학교수 35명(36%) 등으로 총 97명이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자격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 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 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 등이다.

마.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설계심의분과위원 중 학계의 교수자격을 위 여러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제1호 대학에 재직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대학을 제외한 다른 고등교육 기관에 재직하는 교수의 위원 선임을 배제하고 있다.

4.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이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임 시에 특정 조직의 일정한 직급, 직위에 따라 위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가 등에서 300억 원 이상 복합공정의 대형공사 중 고난도, 고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를 발주할 경우 시행하는 일괄·대안 입찰제도는 입찰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로비, 불공정한 결정, 입찰가격 담합, 예산낭비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전문성, 책임성,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설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 업무관련 임원 또는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연구원을 설계심의분과위원에 참여시키는 것은 입찰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되며,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의 직급을 제한하는 것도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민간건설 관련 기관이나 회사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설계심의분과위원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괄·대안 입찰에 참여하는 국내 건설사 대부분이 계열사에 연구기관을 두고 있어 이들 연구기관소속 직원이 심의에 참여할 경우 소속된 회사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민간 연구기관의 건설기술 관련 종사자는 대형 건설사 등에서 의뢰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건설 관련 기관, 회사에 재직 중인 자의 설계심의기구 참여를 제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임 시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가운데 제1호 대학의 기술 관련 교수로만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목적이 책임성, 전문성, 공정성을 갖춘 심의위원의 위촉을 통해 일괄·대안입찰에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 각 대학의 재직 중인 교수에 대한 업적, 경력, 외부위원 활동 등 개인의 역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설계심의분과위원에 교수를 위촉할 경우 위원 자격을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대학의 교수로만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3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김성영 위원 강명득

【별 지】 관련 규정

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목적)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목적)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教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위원회는 제8조 제5호 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 기준(제10조제5항 관련)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표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가.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평가

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나.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 중에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3.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운영

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이 표에서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소위원회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된 후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 내용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마.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

- 전과, 수사·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4건]
-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1건]
-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1건]
- 학력·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 [1건]
-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1건]
-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 [1건]

전과, 수사·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1

2012. 1. 27.자 11-진정-0367600 결정 [징계처분자의 학급 임원자격 박탈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 제한]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여 학급 임원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징계처분과 학급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비행의 종류나 징계처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성을 벗어나며, 교내봉사의 징계처분을 받아 징계에 따른 봉사활동을 수행했음에도 학급 임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
- 【2】 학급 및 학생회 임원은 다른 학생들의 리더로서 모범이 될 필요가 있겠으나, 그 자질과 자격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로부터의 선출 과정에서 충분히 가려질 수 있는 것임에도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임.

【참조조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진정인】 김○○

【피해자】 노○○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여 학급 임원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소속 학급의 반장을 맡고 있던 중, 2011. 4. 29. 교내 징계 절차에 따라 교내봉사활동 5일의 징계 처분을 받고 학급 반장 직위가 해제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1. 6. 17. 실시된 제00대 학생회장단 선거에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 및 임원 선발에 지원하려 하였으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급 임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피해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하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중 「정·부반장임명규정」 제7조 '정·부반장이 임명 기간 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급담임 또는 기타 교직원의 제청으로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직에서 해임한다' 규정에 의거 학급 임원 직위가 해제되었으며, 「학생회규정」 제12조('임원 선출은 전(前)학년도 및 선거 공고일 현재 징계 또는 유급 사실이 없는 학생으로 한다.')에 의거 학생회장단 입후보 자격이 박탈된 것이다.

나.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 선출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바, 이는 학생의 평등권 침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및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학교는 ○○도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0000. 12. 설립되어 0000. 4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된 사립학교로서 총 재학생 1,200여명이고 재직 중인 교사는 65 여명이다.

나. 피해자는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1. 4. 29. ○○○ ○○한 사실이 발견되어 2011. 5. 17. 개최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학생선도 규정」 제9조(징계 기준)에 의거 교내봉사활동 5일의 징계 처분을 받고 학급 반장 직위가 해제되었으며, 2011. 6. 17. 실시한 제00대 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하려 하였으나 「학생회규정」 제12조(임원 선출 및 자격)에 의거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다. 피진정인의 「학교생활규정」은 학생회규정, 정·부반장임명규정, 복장 및 용의규정, 학생선도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학생선도규정은 선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⑤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진정 학교의 징계 종류는 ① 교내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④ 퇴학으로, ‘학생선도규정’ 제9조(징계 기준)에 규정된 징계 기준은 <표 1> 과 같다.

<표 1> 징계기준 ※ ○ 1999. 3. 1. 개정, ◎ 2010. 11. 개정

구분	항	내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수	퇴학처분
			3일	5일	7일	10~15일			
○○ (5)	○○	0.○○ 및 ○○를 한 학생		◎	◎	◎	●	●	●
	○○	0.○○ 및 ○○를 ○○○으로 한 학생					●	●	●
	○○	0.○○, ○○○, ○○○○나○○을○○한 학생			○	●	●	●	●
	○○	0.○○나 기타 ○○○○의 ○○을 ○○한 학생	●	◎					

라. 피진정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선도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하고 있다. 피진정 학교는 2011. 8. 진정과 관련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전 학생회규정, 학생선도규정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각각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개정된 내용은 <표 2>와 같이 임원 자격 박탈 및 피선거권 제한에 있어 징계처분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았고 징계 시점에 대한 내용만 일부 개정되었다.

<표 2> 「학교생활규정」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정·부반장 임명	정·부반장은 품행이 방정한 학생 중에서 선거의 과정을 거쳐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1. 리더십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전(前)학년도 간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기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정·부반장은 품행이 방정한 학생 중에서 선거의 과정을 거쳐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1. 리더십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해당 학기뿐만 아니라 직전 학기에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기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11-진정-0367600 결정 [정계처분자의 학급 임원자격 박탈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 제한]】

<p>정·부 반장 교체</p>	<p>정·부반장은 다음 각항의 사유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때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실효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p> <p>1. 징계</p> <p>정·부반장이 임명 기간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급담임 또는 기타 교직원의 제청으로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직에서 해임한다.</p>	<p>좌 동</p>
<p>임원 선출 및 자격</p>	<p>임원선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p> <p>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p> <p>2. 전(前)학년도 및 선거 공고일 현재 징계 또는 유급 사실이 없는 자</p> <p>3 후보자는 학급 담임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교생의 3% 이상 추천을 받아 출마한다.</p>	<p>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p> <p>2. 직전 학기 및 선거 공고일 현재 징계가 없는 자</p> <p>3.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p> <p>4 후보자는 학급 담임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교생의 3% 이상 추천을 받아 출마한다.</p>
<p>임원 자격 상실</p>	<p>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 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기간 동안만 재임한다.</p>	<p>학생회 임원이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학생회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징계를 받아 임원이 비었을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고,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p>

마. 참고로, 서울,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의 고등학교의 학생회 선거 규정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아래의 <표 3> 과 같다.

<표 3> 학생회 선거 규정

구 분	입후보자격의 제한
<p>○○○○ 고등학교</p>	<p>▶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 제12조(임원 자격) •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자</p>

<p>□□□□ 고등학교</p>	<p>▶ 학생회 회장단 입후보자 자격(선거 공고문) •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활동적이고 통솔력이 있어야 한다 •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별점 5점 이상인지는 출마할 수 없다</p>
<p>△△△△ 고등학교</p>	<p>▶ 학생회 회칙 제11조(임원 선출 및 자격) •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활동적이고 통솔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학생 •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가 없어야 하며 유급한 사실이 없는 학생</p>
<p>☆☆☆☆ 고등학교</p>	<p>▶ 학생회 회장단 입후보자 자격(선거 공고문) •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선출과 임명 당시에 별점이 없는 학생</p>
<p>◇◇◇◇ 고등학교</p>	<p>▶ 학교생활규정 제29조(직무 및 선출) 제2항 •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률 90% 이상이며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p>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 이력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징계를 받은 사실로 인해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해자의 징계 내용과 수준을 살펴보면, 피진정 학교의 징계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등 4단계로 징계 단계를 규정하고 있고 대안적 훈육방식으로 별점제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건 진정에서 교내봉사 5일의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징계처분과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비행의 종류나 징계처분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며, 교내봉사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에 상응하는 교내 환경미화 작업, 교원의 업무 보조, 교재 교구 정비 등과 같은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피진정인은 학생회 임원 및 학급의 정·부반장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 선출되어야 하므로 징계의 종류나 경중에 관계없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학급 및 학생회 임원은 타 학생들의 리더라는 점에서 모범이 될 필요가 있겠으나 학급 및 학생회 임원은 지명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출하는 것이고 리더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은 선출과정에서 충분히 가려질 수 있음에도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징계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학급 및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2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양현아 위원 김성영

【별 지】 관련 규정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2012. 3. 21.자 11-진정-0307100 · 11-진정-0658600 · 11-진정-0668500(병합) 결정 [경찰 채용 면접시험 시 신원조사 결과 활용 관련 제도 개선 권고의 건]

【결정사항】

경찰청장에게, 수사를 받은 전력 등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

【결정요지】

- 【1】** 「보안업무규정」 상 신원조사의 대상은 공무원 임용예정자로서 시험 응시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에도 경찰 채용 면접시험 응시자의 신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함.
- 【2】** 경찰 채용 면접시험에서 활용하는 신원조사 결과에는 범죄 경력은 물론 수사 받은 전력을 포함하고 있어, 면접시험에서 경미한 범죄 경력이나 수사 받은 전력이 있는 응시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수사를 받았거나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된 자까지도 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바, 이는 차별의 소지가 높으므로 면접시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경찰공무원법」 제7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43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제38조의2,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주 문】

- 1. 경찰청장에게, 수사 받은 전력 등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사건 11-진정-0307100, 11-진정-0658600, 11-진정-0668500은 기각한다.

【이 유】

I. 권고 배경

2011년도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면접시험에서 벌금형의 범죄경력 또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의 수사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사 받은 전력 등과 면접시험 탈락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웠지만, 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면접시험 시 심사위원들에게 응시자의 범죄경력과 함께 수사 받은 전력 등이 포함된 신원조사 결과를 제공한 사실은 확인하였다.

이는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되어 있는 임용결격사유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나 수사 받은 전력이 있는 응시자들에게 면접시험에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시정을 위하여 경찰채용 면접심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II. 진정 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11-진정-0307100·11-진정-0658600·11-진정-0668500(병합)

가. 사건개요

1) 진 정 인

가) 조○○

나) 조◇◇

다) 김△△

2) 피 해 자

가) 조○○

나) 조◇◇◇

다) 안▽▽

3) 피진정인

가) ○○○도 지방경찰청장

나) ○○○○시 지방경찰청장

다) ○○지방경찰청장

라) 경찰청

4) 진정요지

피해자 가) 내지 다)(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는 2011년도에 경찰 공무원(순경)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면접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과 체력 시험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벌금형의 범죄경력 또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의 수사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되었다. 이는 경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과거 수사경력 등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중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심사 위원들에게 적성검사·PAI검사(인성검사) 결과, 신용정보조회서, 고교 생활기록부, 범죄경력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 등 면접 시 필요한 참조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다.

2) 피해자들은 각각 피진정인들이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에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모두 최종 결과에서 불합격하였다.

3) 피진정인들이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선발 예정인원 및 최종합격자와 관련, 피진정인 가)는 12명 모집에 11명 선발, 피진정인 나)는 259명 모집에 246명 선발, 피진정인 다)는 203명 모집에 203명 선발하였다. 피진정인 가)와 나)는 면접시험에서 과락자가 발생하여 선발 예정인원을 채우지 못하였다.

4)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 모집정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점, 면접시험에서 과락 점수제를 운영하는 점, 피진정인 나)가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한 인원을 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나)는 20점 만점인 면접시험을 제외한 점수(자격증 점수 포함)가 합격자 평균점보다 3.06점 높고 합격자 최저점보다는 12.5점이 높아 면접 점수에서 과락 점수인 2점 이하를 받지 않았다면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피해자 나)의 주장처럼 수사 받은 전력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로 인해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했는지는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는 피해자 가)와 피해자 다) 역시 다르지 않다.

5) 따라서 경미한 범죄경력 또는 수사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불합격되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정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정내용

이상과 같은 이유로 11-진정-0307100, 11-진정-0658600, 11-진정-0668500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진정은 그 주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III. 경찰 채용 면접시험 시 신원조사 결과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검토

1. 경찰공무원 채용 시 면접시험 운영 현황

가.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전과와 관련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경찰청장은 경찰 채용과 관련한 법규의 제·개정을 담당하고,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권은 광역시·도 경찰청장 등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33조).

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필기, 체력, 면접 등 영역 별로 40% 이상 성적자에게 단계별로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데 선발 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시 채용담당 공무원인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공무원들의 검토를 받아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 항목을 정하여 해당 부서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8조의2). 이에 따라 각 광역시·도 경찰청장은 면접시험 심사 위원들에게 적성검사·PAI 검사(인성검사) 결과, 신용정보조회서, 고교 생활기록부, 범죄경력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 등 면접 시 필요한 참조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 경찰청장은 2011년 하반기부터 면접시험 평가 시 평가요소1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과 평가요소2인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에 대해 각각 1점부터 10점까지 평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은 평가요소 1, 2에 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로 하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1과 2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있다(「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2. 면접심사 시 신원조사 결과 활용의 문제점

가. 경찰청장은 2011. 5. 6. 대한민국 정책포털인 '공감코리아(www.korea.kr)'에 '경찰채용시험, 필기비중 ↓, 체력·면접 35% → 50%로'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작년 하반기 모집한 신입순경 교육생 중 일부가 벌금 전력자임을 파악하고, 향후 신입경찰관의 도덕성과 준법성 제고를 위해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되어 있는 임용결격사유를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일부 범죄에 대하여 벌금이상 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1. 10. 4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필기위주의 채용시험 제도를 대폭 개선한 '경찰, 채용시험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도덕성·준법성에 관한 면접 평정을 강화하여 인성이 바른 사람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시 범죄경력 포함 신원조사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업무규정」에서 명시한 신원조사 대상은 공무원 임용예정자, 즉 채용시험에 합격 후 임용을 앞두고 있는 자를 말하며, 시험응시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 국가공무원 채용 시

에는 면접시험이 끝난 후 시험 합격자에 한해 신원조사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청장은 경찰 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한 자들의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된다.

다. 경찰청장이 면접시험에서 활용하는 신원조사 결과에는 범죄 경력은 물론 수사 받은 전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명시된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 등 수사 받은 전력 등도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이상의 과도한 정보가 담긴 신원조사 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에서 경미한 범죄 경력이나 수사 받은 전력이 있는 응시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은 경찰 업무가 고도의 청렴·준법·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서 명시한 전과 관련 결격사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신원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법집행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준법성은 중요한 자질일 수 있으나 공무담임권은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그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경찰청장의 재량권에 합리적인 범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체적 심사 기준 등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등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설령 경찰업무가 고도의 청렴성·준법성·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채용 시 이와 관련한 보완이 필요하였다면, 현행 「경찰공무원법」 상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돼 있는 임용결격사유에 사회적 우려가 높은 일부 범죄를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상과 같이 경찰청장이 경찰채용 시 면접시험에서 수사 받은 전력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수사를 받았거나 기소유예 된 자, 무혐의 처분된 자까지도 단지 수사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바, 이는 차별의 소지가 높아 면접시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찰 채용 시 면접시험에서 신원조사 결과 활용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항과 같이 권고하고, 개별 사건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항과 같이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012. 3. 2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양현아 위원 김성영

3

2012. 10. 17.자 12-진정-0166200 결정 [공단 직원채용시 양심적 병역거부 전력을 이유로 한 합격 취소]

【결정사항】

○○○○공단 이사장에게, 임용 결정사유로서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를 규정한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제8호의 개정을 권고

【결정요지】

○○○○공단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형 복역 후 병역이 면제된 사실을 이유로 진정인의 직원채용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임용을 불허하였는바, 그 근거가 된 공단의 인사규정 제14조 제8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와 국방의 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자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와 비교하여도 과도한 규정인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2005. 12. 26. 전원위원회 결정, 헌법재판소 2001헌가1 결정 2004. 8. 26.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공단 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제8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2001. 11.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복역하고 2003. 8. 만기 출소하였다. 그 후 진정인은 2012. 3.에 있었던 ○○○○공단의 직원 채용에 최종합격하였으나, 동 공단의 인사규정에 '병역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는 직원에 임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었다. 국가공무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데, 피진정 공단은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라고 규정을 두어 진정인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공단은 「○○○○공단법」에 의거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6조(사업)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교통안전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 고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의 임용을 불허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 10. 19.에 개정된 인사규정에서 '병역 기피자'를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2002. 12. 5.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제2항이 신설되어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의 국외여행에 제한이 있으므로, 공단에서도 2003. 7. 31.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하였다. 공단 인사규정의 임용 결격사유가 「국가공무원법」과는 다소 상이하나 기관 설립의 근간이 되는 「○○○○공단법」에서 명시한 고유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병역법」에 따라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채용할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공단 인사규정의 개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나. 2012년 신입사원 공채에는 14개 분야 65명 채용에 모두 2,788명이 지원하여 약 43: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진정인의 경우 기술직 ○○○○ ○○○ 6급 분야에 최종 면접 합격이 취소된 경우로 공단에 임용된 사실이 없다. 우리 공단에서는 공단 입사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는 물론 임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1년 6월 이상의 징역을 살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입사지원서에 ‘군필’이라고 허위 기재한 후 우리 공단에 입사지원을 한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 답변서, 「○○○○공단 인사규정」(이하 ‘공단 인사규정’이라 한다), 진정인에 대한 합격안내 통지문, 피진정 공단의 ‘신규 임용 불가 알림’ 공문(인재양성처-000, 2012. 3. 16.), 진정인의 입사지원서, 2012년도 ○○○○공단 직원 공개 채용 공고문, 참고인 병무청 직원 전화조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단은 1979년 제정된 「○○○○진흥공단법」(현재는 「○○○○공단법」)에 따라 1981년 ○○○○진흥공단으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종합검사, ○○·○○안전, ○○사고 피해가족 지원, ○○○ 성능 시험연구, ○○안전 연구·교육, ○○○○ 체험 연구·교육, ○○○○ 정보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12. 3. ○○○○공단 신입사원 공개채용 기술6급 ○○○○○ 분야에 응시하면서 신규채용 지원서의 군복무 관련란에 ‘면제’가 아닌 ‘군필’로 표기하였으며, 2012. 3. 14. 피진정인으로부터 최종 합격통보를 받았다. 이에 진정인은 다음 날인 3. 15. 유선으로 피진정인에게 병역기피 사실을 통보하고 임용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자 피진정인

은 같은 해 3. 16. 진정인에게 '신규임용 불가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제8호에 따라 직원으로 신규 임용될 수 없음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였다. 피진정인이 통보한 공문에는 '김○○님께서도 우리 공단 규정 제14조(결격사유) 제8호에 따라 직원으로 신규 임용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2001. 11.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2003. 8. 만기 출소하였다.

라.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제8호(결격사유)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는 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진정인이 11년 전에 병역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한 진정인의 합격을 취소(임용 불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일반적으로 국가의 투자나 출자,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며 공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전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일견 그 취지와 목적을 수궁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의 인사규정 제14조 제8호와 같이 결격사유를 '병역의무자로서 병역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로만 규정할 경우, 현재 병역기피중인 자, 병역기피 후 병역을 필한 자, 과거 병역기피로 인해 형을 복역한 자도 포함되므로 이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또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에 진정한의 경우처럼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다가 병역기피자가 된 경우와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미 여러 차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를 통해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을 각국에 촉구하거나 결의 하였다[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제46호(E/CN/1987/60) 등]. 또한 헌법 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도 '동 법률조항(「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양심에 반하여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의 형벌권을 한발 양보시키고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조금 더 보장될 수 있는 해석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며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2001 헌가1 결정, 2004. 8. 26.). 이렇듯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하나로 국내외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도 2005. 12. 26. 전원위원회 결정을 통해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와 국방의 의무를 고의로 기피하는 자는 그 내용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마땅히 서로 다르게 취급받아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인사규정의 동일한 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이 취급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다.

나.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 과거 병역 기피의 사실을 임용 결정사유로 두고 있지 않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결정사유가 되지 않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2003. 8. 만기 출소한 진정인에게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제8호를 적용하여 채용 합격을 취소한 것은 과도한 조치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진정인은 「병역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진정인이 국외 여행의 결정 사유가 있어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 출장에 제한이 있는 자이므로 해외여행에 결정사유가 있어 합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70조 제2항의 해외여행의 허가 규정은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 편입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진정인은 「병역법」 제65조와 동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이므로 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해외여행에 결정 사유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주장은 법리 적용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병역면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서의 군복무 관련 확인란에 '군필'로 표시하였으므로 지원서 허위 작성으로 보아 합격을 취소하였다고 하나 피진정인이 2012. 3. 16. 진정인에 통보한 공문을 보면 피진정인의 주장과는 달리 진정인의 주요한 합격취소 사유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 병역기피였음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이 내부 인사규정 제14조 제8호에 따라 진정인의 최종 합격을 취소하고 임용을 불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행위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의 인사규정 제14조 제8호를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김성영 위원 강명득

【별 지】 관련 규정

1.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受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0조(국외여행 허가)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
-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2.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4 2012. 10. 31.자 12-진정-0720400 결정 [불기소처분
경력을 이유로 한 군무원 채용 불허]

【결정사항】

공군참모총장에게, 향후 군무원 채용 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상 실효된 전과 또는 보존기간이 도과한 수사경력 등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임용적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상 이미 보존기간이 수년이 도과한 수사경력(불기소처분 경력)을 유일한 사유로 들어 진정인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려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치에도 위배되므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진 정 인】 ○○○

【피진정인】 공군참모총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군무원 채용 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상 실효된 전과 또는 보존기간이 도과한 수사경력 등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임용적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2년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12. 9. 14. 오전 발표된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이후 공군본부로부터 신원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임용불가 통지를 받았다. 채용 담당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진정인이 16년 전 대학생 시절에 시위에 가담하였다가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16년 전의 불기소처분 경력을 이유로 군무원 채용에서 최종합격 결정을 번복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해 주기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공군 군무원 채용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결과 '특이점 없음' 또는 「군사보안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1393호, 2012. 2. 13.)」 및 「군사보안적부심의 규정」 제10조에 따른 보안적부심의 결과 '적격'인 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채용 시에 신원조사 결과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던 전례가 거의 없어 신원조사 결과가 접수되기 전인 2012. 9. 14. 10:00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2012년 군무원 채용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업무상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12년 군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후 10여 분이 경과한 2012. 9. 14. 10:10 경 신원조사 의뢰자 가운데 '신원특이자(진정인)'가 있음을 인지하고 당일 11:20 경 합격자 명단에서 진정인의 이름을 제외한 후 최종합격자 명단을 재공고하였다. 진정인에게는 임용 절차상 특이사항이 발견되어 최종심의가 필요하므로 일주일 후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진정인에 대한 보안적부심의회가 개최되었으며, 보안적부심의회는 향후 진정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군 조직 및 해당부대에 미칠 잠재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임용 부적격'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2012. 9. 20. 진정인에게 임용불가를 통지하였다. 보안적부

심의회의 결정은 군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보안을 위한 적법한 재량행위라 할 것이며, 군 특수성에 따라 군 간부의 채용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고 하여 그 엄격한 잣대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년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12. 6. 30. 필기시험 및 2012. 8. 면접시험 등을 거쳤으며, 2012. 9. 14. 10:00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위와 같은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이후, 공군 본부의 군무원 채용 담당자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에 특이사항이 있음을 발견하고 당일 11:20 경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진정인을 제외하고 최종합격자 명단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공고하였다. 재공고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공개채용 83명, 특별채용 14명 등 총 97명이며 이들의 임용예정일은 2012. 11. 1.이다.

나. 피진정인은 군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명단을 재공고한 이후 2012. 9. 17.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33조 및 제34조, 「군사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1393호, 2012. 2. 13.)」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보안적부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심의회는 진정인에 대하여 '임용 부적격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군사보안 적부심의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2012. 9. 20. 진정인에게 '임용불가'를 최종 통지하였다. 동 심의회 위원장은 공군본부 감찰실장이고 위원은 인사운영처장, 정보지원처장, 법무실장이다.

다. 위 ‘보안적부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위해 사용된 유일한 자료는 2012. 9. 14.자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회보서이다. 동 회보서에는 ‘진정인이 1996. 8. 16. 23:00 ○○대학교 이과건물을 잠입 점거하여 한총련 진군가를 부르고 1996. 8. 20. 5:45 동 건물 옥상에서 경찰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전경 이○○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무원집행을 방해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1996. 12. 26.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를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관리하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시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8조의2는 수사경력자료(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의 보존기간은 해당 죄목 법정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등을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1996. 12. 26.자 불기소처분을 이유로 군무원 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해당 직무의 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성실성, 신뢰성 등의 인적 특성을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진정인이 군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군사

기밀의 취급 등 해당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정인의 과거 수사경력조회 결과 등을 임용여부 결정의 근거자료로 사용한 것 자체는 그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2012. 9. 17. '보안적부심의회'에서 진정인에 대한 임용 부적격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한 유일한 기초자료가 진정인에 대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신원조사회보서이며, 동 회보서에 기재된 특이사항은 진정인에 대한 1996. 12. 26.자 기소유예 처분 사실뿐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규정에 의하면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기록은 해당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최장 10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진정인의 기소유예 처분 사실은 2006. 12. 이후에는 이미 수사자료표에서 삭제 되었어야 할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상 이미 보존기간이 수년이 도과한 수사경력(불기소처분 경력)을 근거로 여타의 다른 자료 없이 이를 유일한 사유로 들어 진정인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려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치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이 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김성영 위원 강명득

【별 지】 관련 규정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2.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안업무규정」

제31조(신원조사)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

제33조(권한의 위임) 국정원장은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8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군무원을 인사발령할 때에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임용 적부심사 등) ① 임용권자는 제9조에 따라 군무원의 임용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 추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서류의 구비 여부, 해당 기관의 정원과 현원, 임용예정자의 임용 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5. 「군사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73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① 신원조사 결과 회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임관·임용예정자 및 진급 대상자는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신원조사 결과는 대상별로 양식과 방법을 구분하여 회보한다.

③ 신원조사 결과 보안상 유해(보안적부심의 기준상 부적격 및 심의 대상)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별표6 「군사보안 적부심의 규정」에 의한 보안적부심의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

[별표 6] 군사보안 적부심의 규정

제10조(임관·임용 등 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로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임관·임용 또는 중요 보직의 제한과 비밀취급 인가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5

2012. 5. 10.자 결정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 사건에 관한 의견표명]

【결정사항】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성희롱 및 임금 차별 등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 단체 및 업체에게 외국인 선원 인권보호 대책 마련 및 피해자 구제 필요성에 대해 의견표명

【결정요지】

- 1)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외교통상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은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제기된 외국인 선원 폭행, 폭언, 성희롱 및 임금문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조사하고 외국인 선원의 인권 보호 및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외국인 어선원 단체협약 체결 시 외국인 선원의 권리 규정 및 선상 인권침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절차 등을 명시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국내와 조업지 국가 간에 기준이 다른 경우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인권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3) 주식회사 ○○○○ 대표이사는 소속 선박에서 제기된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침해, 성희롱 및 임금차별 주장에 대하여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내·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승선전 교육 및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참조결정】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 사건(2012.4.12 결정)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해양경찰청장은, ○○○호 등 뉴질랜드 해역 내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제기된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행, 폭언, 성희롱 및 임금문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공정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의 인권 보호 및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외국인 선원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어선원 단체협약」 체결 시 외국인 선원의 권리 규정과 함께 선상 인권침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국내와 조업지 국가의 기준이 다른 경우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인권보호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주식회사 ○○○ 대표이사는, 소속 선박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침해, 성희롱 및 임금차별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내·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승선전 교육 및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유】

I. 의견표명 배경

국제민주연대, 서울공익법센터 APIL, 좋은기업센터 등 3개 단체가 2011. 10. 7.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성희롱 및 임금 차별 등과 관련된 진정(11-진정-0569300)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접수함에 따라 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진정사건은 뉴질랜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국적 원양어선 ○○○호에서 일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한국인 관리자들로부터 폭행 및 폭언, 성희롱 및 임금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으로 위원회 조사

결과, 폭행 및 폭언은 사인 간의 인권침해 문제에 해당하고, 임금차별은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계약서의 종류를 특정할 수 없고 한국인 관리자와 피해자들은 임금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당한 비교대상이 아니므로 폭행 및 폭언, 임금차별을 주장하는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성희롱에 관한 사항은 객관적 증거 자료의 부족으로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그러나 동 진정사건은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국적 선박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것으로 뉴질랜드 정부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경영대학의 조사보고서가 발간되는 등 현지에서 주요 인권 문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원양어선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II.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 「선원법」 제3조, 제27조

III. 사건 발생 배경 및 조사 경과

1. 사건 발생 배경

주식회사 ○○○○ 소유의 ○○○○호는 뉴질랜드 ○○○○수산에 용선(傭船)된 총 톤수 1,950톤, 승무원 50명의 원양어선으로 2010. 11. 25. 스페인 비고항을 출발하여 2011. 1. 22.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도착한 후 뉴질랜드 항구와 EEZ를 오가며 조업하고 있었다. 동 선박이 뉴질랜드 리틀턴항에 정박 중이던 2011. 6. 20.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집단으로 선박을 이탈하여 선박 내에서 구타, 성희롱 및 임금체불 등을 당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위 사건 이후 오클랜드대학교 경영대학은 앞서 2010. 8. 18. 새벽 뉴질랜드 남섬 더니든 남동쪽 800km 지점 공해상에서 침몰한 ○○○○호 생존 인도네시아 선원 및 위 ○○○○호 이탈 선원 등을 면담 조사하고 뉴질랜드 EEZ 내 한국원양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행, 임금 체불, 성희롱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및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음을 주장하는 조사보고서를 2011. 9. 발표하였고 국제민주연대, 서울공익법센터 APIL, 좋은기업센터 등 3개 국내 단체는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2011. 7.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뉴질랜드 EEZ 내 외국선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2012. 3. 1.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뉴질랜드 EEZ 내 일부 외국용선(대부분 한국국적 용선)에서 인권침해 및 안전기준 미준수 등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하고 외국용선에 대한 감독 강화, 안전 및 선원 보건사항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및 국제협약 가입, 용선의 뉴질랜드 국적화 등 총 15개 권고사항을 뉴질랜드 정부에 제시하였다.

2. 위원회 조사 경과

위원회는 진정 접수 후 성희롱 피해 주장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조사,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체류하고 있는 ○○○○호 이탈 인도네시아 선원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인도네시아로 귀국한 선원들에 대하여는 인도네시아이주노동자단체[ATKI : Asosiasi Tenaga Kerja Indonesia (Association of Indonesian Migrant Workers)]를 통해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들이 인도네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고 일부는 다른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어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성희롱의 피진정인도 현재 원양어선 승선 중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대상 범위의 제한과 조사의 현실적 한계 등으로 인해 위 진정사건을 2012. 4. 12. 제4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각하 및 기각하였다.

IV. 판단

위원회는 동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이 지리적, 공간적 특성, 언어 및 통신수단의 제한, 복잡한 선원 공급 및 임금지급 절차 등으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저임금 및 임금체불 등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은 반면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가 미비함을 확인하였다.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2011. 6. 20. ○○○○호에서 집단 이탈한 것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누적되어 있던 중 인도네시아 선원 한 명이 한국인 기관장으로부터 2011. 6. 17. 안면 부위를 맞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공해상 또는 외국에서 제3국 근로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 및 구제가 어렵고 국가 간 갈등 또는 국제사회에서 이슈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기관 및 사업주는 제3국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호 등 뉴질랜드 해역 내 한국국적 원양어선에서 제기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임금문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합동조사단 구성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관련 부처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선원법」 및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업계도 선원과의 단체협약에 인권 보호 및 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 포함,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국내와 조업지 국가의 기준이 다른 경우 적용 기준의 명확화, 소속 선원들에 대한 교육과 인권보호를 위한 세부 관리 규정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 사건에 관한 의견표명】

2012. 5. 10.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6

2012. 12. 26.자 12-진정-0485900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동성애 차별 반대 광고 게재 거부]

【결정사항】

○○구청장에게, 향후 광고 내용이 동성애 또는 성적 지향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광고 게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진정인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해 광고 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세계인권선언」 제2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제26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5조 제2항

【진정인】 이○○

【피진정인】 ○○구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광고 내용이 동성애 또는 성적 지향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광고 게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5. 3.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LED전자게시대(이하 '전자게시대'라고 한다)에 성 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게재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광고 내용이 청소년 선도에 방해가 되고 미풍양속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광고 게재를 불허하였는데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이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성애에 관한 것으로 이를 전자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에 반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광고내용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 제2항 제2호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3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며, 「동성애차별금지법」이 반대여론으로 인해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고, 군대 내 동성애 금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나오는 등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진정인에게 광고게시가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역, ○○역, ○○역, ○○역, ○○역, ○○병원 앞 등 총 6개소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민간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위 전자게시대에 광고를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고신청 홈페이지(www.○○○○○○○○○○.co.kr)에 회원 가입 후 광고 지역, 업종, 광고문구

등을 직접 입력하게 되고, 입력된 사항에 대한 피진정인의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쳐 광고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나. 진정인은 2012. 5. 3. 피진정인에게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 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라는 문구로 전자게시대에 광고 게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온라인 민원으로 문의하였고, 피진정인은 2012. 5. 10. 광고 내용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5조 제2항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및 제3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광고 게시가 불가하다고 진정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광고 게시 불허에 대해 ○○○○지방법원에 ‘동성애자 차별 금지 광고 게시 반려 처분 무효 가처분’ 소송(2012카합 0000)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2012. 6. 26. 신청인의 광고 게시 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광고 게시 거절 내지 반려 등의 행위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본안판결에 의할 경우 권리실현의 지연으로 신청인에게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진정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 6. 17.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의 하나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청소년 유해물의 심의기준(제7조 관련)이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2003. 3. 31. 결정 02진차80·02진차130 병합 사건)하였고, 이후 해당 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바 있다. 또한 2010. 10. 25. 헌법재판소에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 제92조가 군대 내 동성애자의 평등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용역·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성적 지향의 광고내용을 이유로 광고 게재를 거절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과거 유전적 원인이나 질병으로 분류되거나 타락한 성관계로 배격되었던 동성애는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동성애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동성애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금지를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동성애를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의 하나로 규정한 청소년 유해물의 심의 기준이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진정인이 광고하고자 한 내용이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는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원칙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광고 내용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비록 동성애에 대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아직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가진 일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해 광고 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김성영 위원 강명득

【별 지】 관련 규정

1.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3.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학력·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

7

2012. 10. 31.자 12-진정-0194400, 0194403, 0194404, 0194405(병합) 결정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결정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에 의한 학벌 차별문화 조성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

- 1]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각급 학교나 동문회 등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음.
- 2] 전국 중등학교장들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결정요지】

- 1] 특정학교 중심의 진학 홍보는 이른바 ‘명문학교’의 진학을 가문의 영예나 출신 학교의 자랑으로 인식하여 온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임.
- 2] 그러나 특정학교 합격 홍보는 그 외의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등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 이로 인하여 본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학교 선택보다 ‘명문학교’ 입학에 몰두하게 되고, 인적 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또한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는,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바, 학력·학벌은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해서는 아니 됨.
- 3]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학력·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음.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교육기본법」 제2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에 의한 학벌 차별문화 조성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한다.

1. 전국 각 도 및 광역시(서울특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교육감들은, 각급 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자제 하도록 각급 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2. 전국의 중등학교장들은,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유】

I. 의견표명 배경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09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을 유발한다는 진정 사건 80여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 학교 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을 알리는 홍보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중학교에서도 특정 고등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 공지를 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 내지 강화하지는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II. 판단 기준

「헌법」 제11조

III. 판단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특정학교 중심의 합격 홍보 관련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소속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결과를 홍보하면서 서울대 등 일부대학 또는 특수목적고 등의 학교명과 합격자 명단 또는 인원 등을 표기한 현수막을 교내나 학교 건물 등에 게시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해당 학교들은 이른바 ‘명문대학’ 진학 정도를 널리 알려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자긍심 및 자신감 고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명시된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정보 공시’ 등의 목적으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일부 교육청도 2012. 2. 3. 특정대학 입학생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특정대학의 입학생 증가를 해당 교육청의 성과로 홍보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특정학교 중심의 진학 홍보는 이른바 ‘명문학교’의 진학을 가문의 영예나 출신 학교의 자랑으로 인식하여 널리 홍보해 온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출신학교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을, 동창회, 종친 등이 주체가 되어 특정학교 합격 홍보 현수막 등을 게시하기도 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학교가 나서서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것은 위 각급 학교의 주장과 같이 일부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학벌주의는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 이름, 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따라서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 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가 행해지는 것은, 위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학력이나 학벌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임에도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은 그 사람이 가진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해버리게 된다.

이에 위원회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학력·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2. 10. 3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김성영 위원 강명득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차별

8

2012. 3. 21.자 11-진정-0304500 결정[병력을 이유로 한 ROTC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ROTC 선발시 지원자의 현재 건강상태나 예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수술병력만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육군규정 000 건강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ROTC 선발 신체검사 시 지원자의 과거 수술 전력을 참고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담낭절제후 증후군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담낭 유무가 소화 작용에 반드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군사훈련 등 육체적 활동이 많은 직무수행과도 상관관계가 없음이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됨.
- 【2】 따라서 담낭절제수술을 받은 경우 담낭절제후 증후군의 발생 가능성과 향후 장교 임무수행에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건강상태나 예후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미 완치되어 일반인과 동일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진정인을 ROTC 선발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육군규정 000」 제62조 및 제65조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육군참모총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ROTC 선발 시 지원자의 현재 건강상태나 예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수술병력만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육군규정 000 건강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ROTC 00기에 지원한 여학생으로 2011. 5. 2.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신체검사 과정에서 작년에 받은 담낭염 수술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해 5. 27. 재검 시 동행했던 ROTC 선임교관이 진정인에게 담낭염 수술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였으나 이미 완치된 터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같은 해 6. 10. 2차 결과발표에서 불합격하였다. 담낭염 수술병력이 있다고는 하나 이미 완치되었음에도 ROTC 선발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및 참고인 의견

가. 피진정인 주장 요지

1) 장교는 군대의 기간(基幹)으로 전쟁전문가이자 부대 관리자가 되어야 하고, 교관이자 리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병사들에 비해 높은 신체 및 체력 수준이 요구된다. 장교 선발은 향후 건강상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적은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장애정도에 따른 신체 등급을 세부적으로 규정·적용하고 있는데, 진정인의 경우처럼 담낭절제수술을 받은 자는 「육군규정 000 건강관리규정」(이하 '육규'라 한다)에 의거 4등급 판정을 받아 불합격 처리된다.

2) 육군본부 군의관의 소견에 의하면, 담낭절제수술을 받은 경우 소수에서 담낭절제증후군(위장관 기능저하, 위상복부 통증, 만성적인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므로, 담낭절제술의 병력이 향후 장교 임무수행에 있어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질병이라도 환자에 따라 상태가 다르고 예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의학의 발전과 수술방식의 변화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의학의 특성상 모든 경우를 규정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우나, 향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담낭절제술과 관련한 평가기준표의 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나. 참고인(○○○○병원장) 의견

1) 육군 선발 신체검사는 가능한 한 신체 건강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군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그 판정기준은 ‘육규’를 적용하고 있다.

2) ROTC 선발 신체검사는 ‘육규’에 명시된 장교 선발 신체검사 기준에 의해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데, 진정인의 경우 담낭절제술로 인해 ‘육규’ 제65조(합격 등위) 및 [별표3] 신체 각과별 요소평가 기준표에 의거 4급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것이다.

3) ROTC 선발신체검사에 참여한 담당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이 받은 담낭절제수술의 경우 수술 이후 소화 기능의 장애가 있을 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으며, 장교로서의 임무수행과도 별 상관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참고인 의견, 대한외과학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ROTC 제도는 대학생 중 지원자를 선발하여 2년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인데, 지원 자격은 학군단이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1,2학년), 여학생(2학년)으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27세인 자이다.

나. 진정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ROTC 00기에 지원하였는데 2011. 5. 2.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및 같은 해 5. 27.에 실시된 재검 결과, 1년 전에 받은 담낭염 절제수술로 인해 4급 판정을 받고 같은 해 6. 10. ROTC 선발에서 불합격 처리되었다.

다. 진정인은 급성 담낭염으로 2010. 3. 4. 응급 복강경하담낭 절제수술을 받았는데 2011. 5. 6.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증명서에는 ‘수술 후 특이소견 없이 외래 추적 관찰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일상생활 가능. 향후 치료 계획 없음’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기록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은 담낭절제술을 받은 자의 경우 소수에서 위장관 기능 저하, 위상복부 통증, 만성적인 설사 등과 같은 담낭절제증후군이 발생 가능하므로 향후 장교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육규’에 불합격등급인 4급으로 정하였다.

마. ROTC 선발 신체검사는 ‘육규’ 제65조(합격등위) 및 [별표3] 신체 각과별 요소평가 기준표에 규정된 장교 선발 신체검사 기준에 의거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데, 위 조항에 따른 신체 각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담낭절제술은 종합체격등위 4급이며, 4급은 장교 선발 시 합격 등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대한외과학회 자문 결과에 따르면, 담낭절제술 후 증후군의 증상은 크게 담낭절제술 후 통증과 담낭절제술 후 설사로 나누어지는데 실제 증후군의 발생률은 5% 정도이며, 과거에는 개복술로 시행하던 담낭절제술이 최근에는 95%이상 복강경수술로 진행되고 있는데, 개복술에 비하여 통증이 적고 입원기간도 짧다. 이러한 수술 기법의 발전에 따라 수술 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감소되었고, 인체 내에서 담낭이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소화 작용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며 군사훈련 등 육체적인 활동이 많은 직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없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모집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진정인이 ROTC를 선발함에 있어 과거 담낭염 수술 이력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합격시킨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ROTC 선발 신체검사는 신체 건강한 우수한 인적 자원을 선발하여 군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므로 지원자의 과거 수술 병력을 참고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담낭절제후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 5%로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담낭 유무가 소화작용에 반드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군사훈련 등 육체적 활동이 많은 직무수행과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담낭절제수술을 받은 소수의 경우에 담낭절제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담낭절제술 병력이 향후 장교 임무를 수행하는데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의 현재 건강상태나 예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미 완치되어 일반인과 동일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진정인을 ROTC 선발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양현아 위원 김성영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

9

2012. 4. 12.자 11-진정-0646000 결정 [재개발조합의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비 지급 거부]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건물의 실지 용도 등 해당 요건을 검토하여 실제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또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고시원에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볼 때 진정인은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 볼 수 있음.
- 【2】 따라서, 피진정인이 건물의 실지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공부(公簿)상 주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결정】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구합118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9. 5. 선고 2007구합870 판결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3항

【진 정 인】 황○○

【피진정인】 ○○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건물의 실지용도 등 해당 요건을 검토하여 실제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시 ○○○구 ○○○동 재개발지역 내 ○○고시원에서 9년 넘게 거주하고 있으며 2006. 3. 20. 주민등록도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최근 재개발지역에 이주가 단행되면서 ○○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시원 거주자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아니라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고시원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주거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과 서울행정법원 판례(2009. 1. 16. 선고 2008구합38162 판결)에 의하면, 진정인은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다.

나. 「공익사업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등의 입법 취지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등 생활보상의 일환인데, 고시원 거주자는 독자적으로 싱크대나 도시가스, 화장실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정착도가 떨어지고 보증금도 없어 언제든지 이주할 수 있는 상태에 가깝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보상을 받을 정도로 생활의 근거를 잃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고시원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보상을 하고, 고시원 입실자에 대하여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게 되면 이중으로 보상을 하게 되므로 고시원 입실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4. 7. 25. ○○시 ○○○구 ○○동 ○○○-○○○번지 소재 ○○고시원의 방 1칸을 보증금 및 임대차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월세 20만원에 임차하여 건물이 철거되기 전인 2011. 3. 말경까지 거주해 왔으며, 위 주소지로 2006. 3. 20.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다. 진정인의 방에는 침대, 텔레비전, 냉장고, 컴퓨터, 에어컨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주방이나 화장실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진정 조합은 0000. 11. 29. ○○시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0000. 10. 23. ○○시 ○○○구 ○○동 000번지 일대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이다.

다. 건축물대장에는 진정인이 거주하는 고시원 건물의 주 용도가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지하1층과 지상 1, 2층은 점포, 지상 3층은 의원과 사무실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다. 위 건물의 지상 3층은 고시원으로 사용되었으며, 고시원에는 30여명이 거주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0000. 5. 31. ○○시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았으며, 진정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제외하여 진정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일반적으로 고시원은 각종 고시 및 시험을 준비하는 장기 수험생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습 공간을 말하는데, 경제 위기가 시작된 1990년대 후반부터 전·월세 등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시설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고시원 거주자는 약 43,301명으로 추정된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재화의 공급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는 주거 형태를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공익사업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과 제3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 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 판례(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에 따르면, 주거이전비의 성격에 대해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구합1183 판결)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시행지구내 편입되어 있는 건물(일반 음식점)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건물이 외관상 주택의 형태로 건축되어 있고 그 내부에 주거시설이 되어 있는 점, 세입자가 위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2007. 9. 5. 선고 2007구합 870 판결)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여관 건물이 철거될 경우 여관에 주민등록 전입을 마치고 일상생활을 해 온 장기투숙자에 대해 원고가 여관에서 오랜 기간 매월 차임을 내고 기거해온 점, 여관에서 단순히 잠만 잔 것이 아니라 취사, 빨래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생활해 온 여관은 주거로 보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익사업보상법」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또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 주거시설이 되어 있고, 실제로 취사, 빨래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주거하는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위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인 2006. 3. 20.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고시원에 거주하여 온 점, 고시원 내부에 주거시설이 되어 있는 점, 진정인이 고시원에서 취사, 빨래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진정인이 거주한 고시원은 주거용 건물이고 진정인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진정인을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자 대상에 포함하여 진정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건물의 실지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공부상 주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양현아 위원 김성영